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전

법률출판사
주체101(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출판사로부터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의 사회생활, 사회적활동을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공동 규범이고 준칙이다.

은 사회에 준법기풍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모든 공민들이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본 출판사는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체 93(2004)년에 법전을 출판한데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제2판)을 편찬하여 발행한다.

차 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5)

주 권 부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67)

행 정 부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관정법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86)

형민사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2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2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2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2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판계법	(263)

재판, 인민보안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2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2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2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2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2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2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3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3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314)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3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3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3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정량법	(3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보호법	(3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3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3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3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3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391)

에너르기, 금속, 지하자원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너르기관리법	(3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4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4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4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4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4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4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4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453)

교통운수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4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4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4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4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4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5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	(5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5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5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5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5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5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5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575)

농업, 수산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5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5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6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6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6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6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파수법	(6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6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6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647)

계량, 규격, 품질감독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6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6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6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6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6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6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6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6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698)

인민봉사, 건설, 도시경영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7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7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7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7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7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7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7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7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7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770)

국토, 환경보호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7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7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7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7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8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8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8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8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8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8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8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8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8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	(8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8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8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873)

재정, 금융, 보험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8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8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8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9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9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9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9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9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9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933)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9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9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9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9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9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9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9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9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10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10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10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1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10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10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관리법	(1037)

교육, 문화, 체육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0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10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10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10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0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10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0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1094)

보건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1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1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1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1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1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11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11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11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1154)

사회복지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11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11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보호법	(1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1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11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1188)

북남경제협력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11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1199)

외교, 대외경제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12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12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12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12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1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12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실미수입법	(12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12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12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2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2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2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2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2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12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2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2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2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회계법	(13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13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3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13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3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13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3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3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370)

자모순에 의한 법찾아보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5)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1229)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243)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51)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790)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802)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725)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1049)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79)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284)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1150)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법	(275)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996)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042)
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 산수입법	(884)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동식물검역법	(693)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698)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42)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34)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67)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1252)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330)
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873)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661)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352)
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973)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1235)
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366)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1199)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654)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629)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945)
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1188)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1169)
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597)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603)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635)
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587)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1154)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287)
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813)
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1074)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733)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336)
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835)
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1224)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1325)
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263)
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358)

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714)
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356)
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351)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1134)
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1087)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1217)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1079)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385)
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808)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179)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210)
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494)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832)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984)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843)
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280)
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1058)
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933)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391)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1196)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531)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550)
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556)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1162)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342)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703)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783)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742)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249)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752)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989)
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678)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1249)
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917)
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453)
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566)

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378)
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314)
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256)
8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535)
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641)
9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1246)
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688)
9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617)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623)
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1146)
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86)
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1342)
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929)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480)
1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373)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864)
1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1175)
1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978)
1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1159)
1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1020)
10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402)
1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1032)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1037)
1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1115)
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1208)
1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1239)
1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443)
1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721)
1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414)
11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907)
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62)
1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851)
1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446)
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487)
1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877)
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272)

1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672)
1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465)
1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474)
1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298)
12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611)
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1211)
1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1013)
1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1094)
1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1025)
1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1007)
1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774)
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1336)
1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71)
1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311)
1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665)
1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	(859)
13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759)
1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796)
1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1266)
14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1260)
14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542)
1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93)
1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127)
1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429)
1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575)
1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233)
1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520)
1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506)
1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82)
1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901)
15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895)
1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770)
1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912)
1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303)
1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819)
1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827)

15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1370)
1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961)
1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1181)
1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1128)
1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647)
1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1066)
1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421)
1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683)
16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968)
16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437)
1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953)
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870)
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323)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1102)
17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398)
1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283)
1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1278)
1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1302)
1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1273)
1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1269)
1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1310)
1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1292)
1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1317)
18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1257)
1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924)
1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1109)
1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1121)
18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765)
18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1002)
1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주체81(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수정보충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는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가,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빨령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룡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러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

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제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

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옹계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동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전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 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체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여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정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전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최고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 기 제1차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인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제10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제10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위원회사업을 직접 지도한다.
3. 국방부문의 중요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5. 특사권을 행사한다.
6.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을 낸다.

제10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국방위원회

제106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이다.

제107조 국방위원회는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09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2. 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5.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6.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제110조 국방위원회는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4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들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최고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19.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

제11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2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5절 내 각

제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6절 지방인민회의

제137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41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립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립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2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3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44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7 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4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7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8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9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5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5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5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제8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53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54조 최고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6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7조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최고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8조 최고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9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60조 최고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61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최고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62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63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64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65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6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7조 최고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8조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7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2이다.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주 권 부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장 법

주체82(1993)년 10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장법의 기본

제1조(국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를 바로하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장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통성번영의 상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장을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국장의 형태와 제작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세로의 직경이 더 긴 타원형이다.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뿔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태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제정한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국장을 만들도록 한다.

제4조(국장사용원칙)

국가는 국장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거나 걸며 인쇄하도록 한다.

제2장 국장규격과 제작

제5조(국장의 규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타원의 긴 직경과 짧은 직경의 비는 6대 5이다.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

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편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
뚝, 고압철타,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은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제6조(국장의 분류)

국장은 크기에 따라 6가지로 나누며 그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제7조(국장의 크기변경)

국장을 공인 같은데 조각하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국장의 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의 주되는 색은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밤색, 연분홍색, 노란 흙색, 노란 풀색으로 한다. 일부 색은 주되는 색에 다른 색을 더한 색으로 한다.

국장 각 부분의 색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9조(국장제작자)

국가는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한다.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0조(국장제작질서의 준수)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장을 한가지 색으로 만들수 있다.

제3장 국장사용

제11조(건물에 사용)

국장을 건물에 사용하는 기관은 건물지붕 또는 정면우의 중심에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제12조(문건, 출판물에 사용)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데 인쇄하는 기관은 문건, 출판물의 윗부분 또는 중심에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압인에 사용)

국장을 압인에 새기려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일상적으로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제15조(회의장에 사용)

국장은 회의장, 회담장, 행사장, 전람회장 같은데 걸거나 달수 있다.

제16조(시위, 집회에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같은것을 할 경우 국장을 사용할수 있다.

제17조(공인에 새기는 기관)

국장을 공인에 새길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지방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8조(공문서, 증명문건에 사용하는 기관)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같은데 인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도(직할시)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국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9조(인쇄, 형상, 장식에 사용)

국장은 국가적명의로 되는 표창장, 기발, 초대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집단체조, 직판물, 화폐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제20조(비규격국장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국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국장존엄의 훼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을 상표 같은것으로 리용하여 국장의 존엄을 훼손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국장관리

제22조(국장의 손상방지)

시위, 집회 같은데 참가하여 국장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국장의 원상보존)

국장을 붙였거나 건 기관은 국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국장을 새긴 공인, 문건의 보관)

국장을 새겼거나 인쇄한 공인,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것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파오손된 국장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파오손되었거나 퇴색되었을 경우 제때에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국장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제26조(국장의 제작, 사용, 관리에 대한 중앙의 지도기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27조(국장의 제작,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타,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

1. 나라이름을 쓴 띠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이며 띠의 윗부분은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이 띠의 평평한 윗부분의 왼쪽 끝점으로부터 오른쪽 끝점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4이고 아래부분의 두 끝점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0이다. 그뒤에 구부러진 띠의 두 끝점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3이다.

벼이삭을 감싼 띠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5이며 이 띠가 타원과 닿은 량쪽 옷끝점과 벼이삭과 닿은 량쪽 옷끝점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 12 되는 가로선에 놓인다.

띠의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는 주름선이 그어져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매개 글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 6이다.

3. 벼이삭이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이다. 벼알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 6이고 아래부분의 벼알은 모양이 다 보이며 위로 올라가면서 벼알은 겹친 형태로 보인다.

벼알의 수는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55개이고 벼알은 각각 7개이다.

국장 아래부분에 교차되어있는 벼대는 각각 3개이며 벼대 3개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이다. 타원에 닿는 벼대 끝부분은 타원과 긴 직경과의 사립점으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8의 거리에 있다.

4. 오각별 외접원의 중심은 긴 직경의 옷끝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1의 거리에 있는 점이며 오각별 외접원의 직경은 타원의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8이다.

오각별에서 퍼져나간 빛살의 수는 40개이다. 오각별의 매개 각의 끝점에서 빛살이 퍼져있고 각의 끝점과 끝점사이에 7개의 빛살이 퍼져있으며 빛살의 윗부분은 타원과 닿고 아래부분은 긴 빛살과 짧은 빛살이 엇바꾸어 퍼져있다.

5. 백두산 장군봉의 끝점은 오각별 외접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9의 거리에 놓이며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장군봉 끝점까지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0이다. 장군봉 오른쪽 가까이에 있는 산봉우리의 높이는 장군봉과 같으며 장군봉 왼쪽 산봉우리의 높이는 장군봉높이보다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만큼 낮다.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왼쪽과 오른쪽 벼알과 닿은 부분의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 4이다.

백두산 왼쪽 아래의 작은 산봉우리의 높이는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이다.

6.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저수지언제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6~7이다.

저수지우에는 백두산기슭으로부터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 저수지언제의 옷선으로부터 위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의 거리에 구름선이 있다.

7. 저수지언제의 옷선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우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저수지언제의 너비와 물문윗단으로부터 저수지언제 옷면까지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저수지언제에는 24개의 물문이 있으며 보이는 물문의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이며 물문의 너비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다.

8. 발전소뒤에 있는 언제의 옷선은 저수지언제보다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만큼 아래에 놓이는 가로선이며 그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7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 부분의 너비를 더한 것이다.

발전소의 왼쪽에 있는 비탈진 똑웃면의 너비와 높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다.

발전소뒤에 있는 언제에 표시된 물문의 개폐실은 3개이다. 개폐실은 언제의 옷선에서 아래로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의 가로선에 있으며 개폐실의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다.

9. 발전소건물의 옷층지붕의 두 가로경계선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 12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그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3, 48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 부분의 너비를 더한 것이다.

발전소건물의 아래층지붕의 두 가로경계선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아래로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7, 19의 거리에 있는 가로선이며 그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8, 52에서 벼이삭이 있는 넓은 부분의 너비를 더한 것이다.

10. 변압기실은 발전소 옷층에 9개 표시되어있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이며 왼쪽으로부터 6개의 변압기실 다음에는 소형변압기실이 있고 2개의 창문이 있다.

발전소 옷층옆면의 높이는 변압기실 우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이며 옆면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이 되는 창문이 14개 있다.

11. 발전소물문은 6개이며 물문의 너비와 물우에 나타난 부분의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3, 4이다.

12. 발전소물문의 왼쪽에 있는 물길잡이쪽의 보이는 부분의 너비와 높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 1이며 똑웃면의 긴 길이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9이고 물길잡이쪽 오른쪽 아래점으로부터 발전소물문의 왼쪽 아래끝점까지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이다.

13. 고압철탄의 옷끝점은 타원의 중심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5만큼 위에 놓이는 가로선과 긴 직경으로부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21만큼 왼쪽으로 놓이는 세로선과의 사귄점이며 철탄 옷부분의 량쪽 기둥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2이고 아래부분의 왼쪽 및 오른쪽 기둥의 길이는 각각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 22이다.

철탄 옷부분의 기둥사이의 거리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4이며 아래부분의 기둥사이의 각은 30° 이다.

첼람의 윗부분에는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4를 밑변으로 하고 1백분의 8을 다른 변으로 하는 2등변삼각형이 아래우에 2개 있고 그가운데 짧은 직경의 1백분의 17을 밑변으로 하고 1백분의 10을 다른 변으로 하는 2등변삼각형이 1개 있다.

이 3개의 삼각형의 밑변 두끝에는 애자들이 달려있고 애자와 발전소사이에는 전기줄이 편결되어있다.

14.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은 발전소우의 비탈진 뚝과 평행곡선으로 흐르며 고압첼람주위에는 물의 흐름이 표시되어있지 않다.

발전소물문에서 나오는 물흐름의 각은 15° 이다.

부록 2. 국장의 크기(짧은 직경)

- | | |
|----------|---------|
| 1. 200cm | 4. 80cm |
| 2. 160cm | 5. 50cm |
| 3. 120cm | 6. 30cm |

부록 3. 국장 각 부분의 색

1. 오각별과 빛살, 떠는 해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갈에서 붉은색을 기준으로 하며 떠의 우로 향한쪽 기슭은 연분홍색이다.

2. 백두산의 윗부분은 흰색이다.

3. 백두산의 아래부분과 그늘진 부분은 진한 푸른색이고 저수지물우에 떠있는 구름선은 연한 푸른색이며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색은 푸른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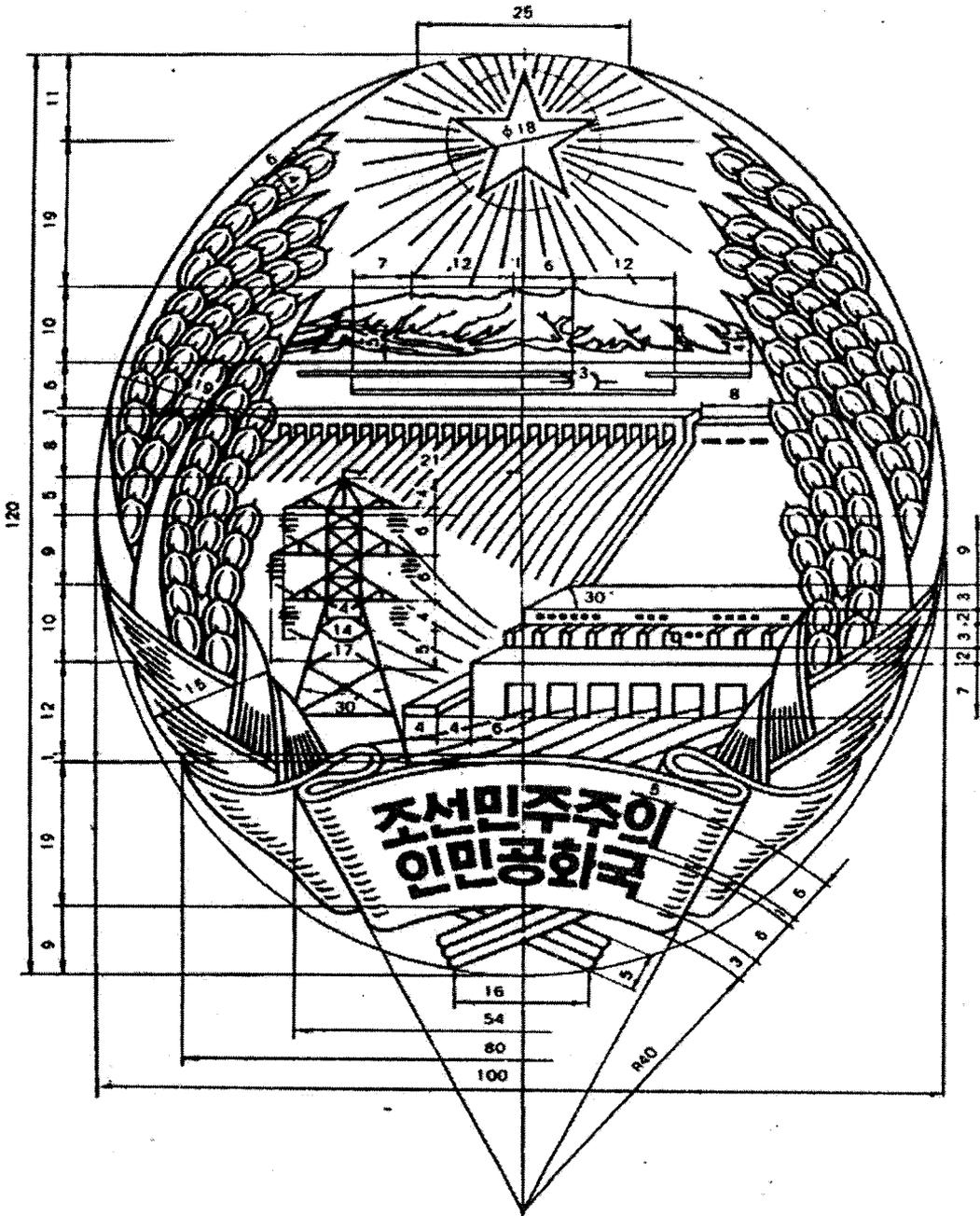
4. 벼알과 글자는 진한 노란색이며 벼잎은 노란색이 섞인 풀색이다.

발전소건물의 지붕과 언제의 윗부분은 연한 노란 흙색이며 비탈진 뚝의 옆면은 연한 노란 흙색에 약간의 연한 재빛을 더한 색이다.

5. 발전소 윗층옆면은 연한 노란 흙색에 약간의 연분홍색을 더한 색이며 발전소 아래층옆면은 노란 풀색에 약간의 연분홍색을 더한 색이다.

6. 떠, 벼이삭과 벼대부분, 언제, 뚝, 발전소의 테두리선과 떠의 주름선, 벼알과 벼알의 사이짚들, 창문, 변압기실, 고압첼람, 물문은 진한 차색이 섞인 밤색이다.

부록 4. 국장규격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규격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기 법

주체 81(199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0호로 채택
주체 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51호로 수정보충
주체 89(2000)년 5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33호로 수정보충
주체 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 90(2001)년 7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438호로 수정보충
주체 91(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370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778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57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7호로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835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기법의 기본

제1조(국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국기의 제작과 사용, 계양식, 보관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속에서 국기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국가의 존엄을 지키며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기의 상징과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국기의 의미와 활동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형태와 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와 세로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제5조(국기규격과 색의 기준)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해당 장소와 대상에 어울리게 1대 2와 달리할수도 있다.

2.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 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3. 국기의 색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갈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6조(국기규격의 구분)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1대 2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규격을 부록 2와 달리 정할수도 있다.

제7조(국기제작자)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를 나노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질 좋은 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제8조(드리우는 국기의 제작)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끈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 놓이는 국기를 만들수 있다.

제9조(국기의 금색수)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제10조(국기대의 재질과 색)

국기대는 나무, 인발판 같은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것으로 한다.

제11조(국기대의 길이)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12조(국기대의 설치)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지붕우의 중심에 세울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 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 곳에 세울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3조(국기대축)

국기대축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축의 형태를 다르게 할수 있다.

제14조(국기대축의 색)

국기대축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제15조(국기대축의 직경)

국기대축의 직경은 국기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장 국기사용

제16조(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우는 기관, 장소)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린다.

1. 금수산태양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울수 있다.

제17조(명절, 행사시의 사용)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 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이 경우 국기를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주위환경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여러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제18조(회의장에서 사용)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해당 장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수 있다.

제19조(시위, 집회, 체육경기시의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20조(재외대표부책임자의 차에 사용)

다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 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수 있다.

제21조(외교의례사업시의 사용)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제22조(군사임무수행시의 사용)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제23조(배에서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조기)

국기는 조기로 띄울수 있다.

제25조(국기를 띄우고 내리는 시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제26조(국기사용시간의 변경)

국기를 행사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올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올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제27조(국기사용제한)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수 있다.

제28조(국기계양방법)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

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기발, 오색기발 같은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땡기와 함께 띄울수 있다. 땡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땡기는 조기의 옷매듭점에 단다.

제29조(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국기를 내리는 방법)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는 책임일군 또는 당일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제31조(국기의 인쇄, 형상, 장식)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판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수 있다.

제4장 국기계양식

제32조(국기계양식의 준비)

국가는 해당 기관, 단위에서 국기계양식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33조(국기계양식의 날자)

국기계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2월 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제양식을 할수 있다.

제34조(국기제양식의 시간)

국기제양식은 명절날 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제35조(국기제양식을 하는 기관)

국기제양식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내무군 포함)부대 또는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는 방학기간에 국기제양식을 하지 않을수 있다.

제36조(국기제양식의 장소)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제양식은 김일성광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제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제37조(국기제양식의 참가성원)

국기제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밑에 진행한다.

제38조(국기제양식때의 례의)

국기제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기제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제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제39조(국기제양식의 절차, 방법)

국기제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제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군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여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군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수 있다.

4. 국기제양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례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향 또는 좌우위치에 서있다가 국기제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5. 국기제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제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제40조(국기를 내리우는 의식)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제5장 국기보관관리

제41조(국기보관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42조(국기의 손상방지)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43조(나쁜 날씨때의 국기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는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국기존엄의 훼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파오손, 퇴색된 국기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었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국기와 관련한 중앙의 지도통제기관)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제47조(국기와 관련한 지방정권기관의 지도)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국기와 관련한 감독통제)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제작과 사용,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직경의 비

1. 국기를 세로 6등분하여 6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푸른 폭으로 하며 남은 6분의 4를 24등분하여 24분의 1을 각각 아래우의 흰 폭으로 하고 24분의 22를 붉은 폭으로 한다.
2. 붉은 별의 가운데점과 흰 동그라미의 가운데점은 국기의 세로 2등분선과 국기 대쪽의 가로 3등분선과의 사침점이다.
3. 흰 동그라미의 직경은 국기의 붉은 폭과 흰 폭을 합한 세로의 3분의 2의 길이이며 붉은 별의 외접원의 직경은 흰 동그라미의 직경에서 흰 폭 세로의 2분의 1을 뺀 길이이다.
붉은 별의 끝은 흰 동그라미의 둘레에 붙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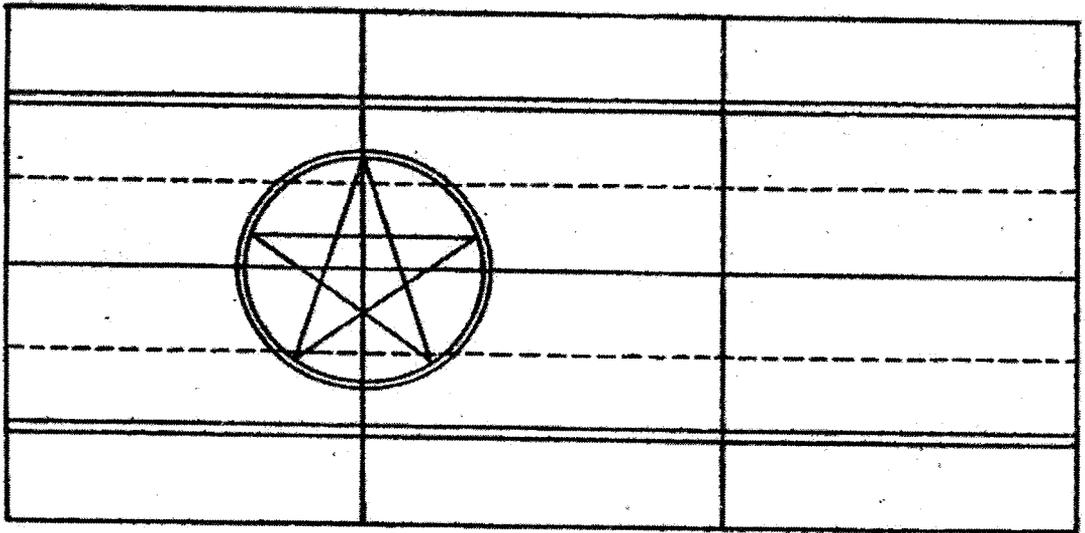
부록 2. 국기의 용도별규격(가로×세로)

1. 400cm이상×200cm이상
2. 340cm이상×170cm이상
3. 280cm이상×140cm이상
4. 200cm이상×100cm이상
5. 140cm이상×70cm이상
6. 80cm이상×40cm이상
7. 50cm이상×25cm이상
8. 30cm이상×15cm이상

부록 3. 국기의 크기에 따르는 국기대의 규격(길이)

1. 12m이상
2. 10m이상
3. 8m이상
4. 6m이상
5. 4m이상
6. 2m이상
7. 0.5m이상
8. 0.3m이상

부록 4. 국기제작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제작도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주체81(1992)년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1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선거법의 기본

제1조(선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은 최고인민회의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각급 주권기관을 인민의 총복으로 꾸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일반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선거원칙으로 한다.

17살이상의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으며 조국에 머무르는 기간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희망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자가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선거권을 박탈당하였거나 행위능력이 없는것으로 판정된것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참가할수 없다.

제3조(평등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평등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누구나 한 선거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매 선거자의 투표효력은 같다.

제4조(직접선거원칙)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는 직접선거원칙으로 한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공민은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직접 투표하여 선거한다.

누구도 선거자의 선거할 권리를 대신 행사할수 없다.

제5조(비밀투표방법)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누구도 선거자에게 찬성 또는 반대투표한 사실의 공개를 요구할수 없으며 투표와 관련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보복할수 없다.

제6조(선거권의 행사조건보장, 선거비용)

국가는 공민이 선거할 권리를 원만히 행사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장 대의원수와 선거날자

제7조(대의원수를 정하는 기준과 기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가 결정한다.

제8조(선거주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5년, 도(직할시)인민회의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4년에 한번씩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대의원선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90일안에 실시한다.

제9조(선거조직방식)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따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한해에 겹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날자에 함께 할수 있다.

제10조(선거날자를 정하는 기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안에 실시한다.

제11조(선거날자의 공포기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60일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은 40일전에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으로 공포한다.

제3장 선거구

제12조(선거구조직)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선거하는 대의원수에 따라 행정구역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조직한다.

제13조(선거구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수는 선거하는 해당 인민회의의 대의원수와 같다.

제14조(선거구조직기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안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해당 군부대가 조직한다.

제15조(선거분구)

선거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구안에 분구를 조직한다.

선거분구는 행정구역, 선거자수, 교통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해당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16조(선거분구와 선거구를 일치시켜 조직하는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분구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는 일치시키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제17조(선거구와 선거분구의 조직날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40일전까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구와 분구는 선거날 30일전까지 조직한다.

제4장 선거위원회

제18조(선거위원회의 정원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중앙에 선거지도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 포함)의 정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위원회 11명 또는 13명(중앙선거지도위원회 9명 또는 11명)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 9명 또는 11명
3. 구, 분구선거위원회 5명 또는 7명

제19조(선거위원회의 조직기관)

중앙선거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도(직할시)선거위원회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시(구역), 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조직한다.

제20조(선거위원회의 구성)

각급 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장 1명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21조(선거위원회의 구성성분)

각급 선거위원회는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각계각층의 성원들로 조직한다.

제22조(선거위원회의 성립조건)

각급 선거위원회는 그 성원의 3분의 2이상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참가한 성원의 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을 채택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사업에 필요한 실무일군을 동원할수 있다.

제23조(선거위원회의 조직과 해산기간)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선거위원회는 선거날을 발표한 날부터 10일 안에 조직하며 구, 분구선거위원회는 선거 구, 분구를 정한 날부터 5일안에 조직한다.

각급 선거위원회는 선거결과가 발표된 다음 3일후에 해산한다.

제24조(선거위원회 성원의 로동보수)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사업에 동원된 기간의 로동보수는 그들이 일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불한다.

제25조(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위원회 성원을 교체한다.

1. 사망, 중병 같은 사유로 선거위원회 성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
2.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혼란과 지장을 주었거나 엄중한 후과를 빚어낸 경우
3. 정당,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선거위원회 성원이 소속 정당, 사회단체 성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4. 구, 분구선거위원회 성원이 해당 선거구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등록된 경우

제26조(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기관)

각급 선거위원회 성원의 교체는 해당 선거위원회를 조직한 기관에서 한다.

제5장 선거자명부

제27조(선거자명부의 작성단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자명부는 선거를 할 때마다 선거분구(구)를 단위로 작성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함께 할 경우에는 하나의 선거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8조(선거자명부의 작성기관)

선거자명부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함께 선거날 15일전까지 작성한다.

공민등록기관은 선거자명부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의 선거자명부는 해당 군부대가 작성한다.

제29조(선거자명부의 등록대상)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할 권리를 가진 모든 공민을 등록한다.

제30조(선거자명부의 등록내용)

선거자명부에는 선거자의 이름, 성별, 난날, 사는 곳을 정확히 써넣는다.

제31조(선거자명부의 공시날자)

선거자명부는 모든 선거자들이 볼수 있게 선거날 15일전까지 선거분구(구)의 편리한 장소에 그 사본을 공시한다.

선거자명부의 공시는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의 이름으로 한다.

제32조(선거자명부에 대한 의견제기)

공시된 선거자명부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선거자 또는 관계자는 그 사실을 해당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제기된 사실의 정확성을 신중히 조사하여 선거자명부의 잘못이 확인되면 곧 명부를 고치고 그에 대하여 해당 선거자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선거자의 이동수속)

선거자명부가 작성된 다음 다른 선거구로부터 거주지를 옮겨왔거나 다른 선거구로 거주지를 옮겨가는 공민은 선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의 이동사유를 분구(구)선거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자의 제명)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자를 선거자명부에서 제명한다.

1.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잃은 경우
2. 법에 따라 선거할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
3. 선거분구(구)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제6장 대의원후보자

제35조(대의원 후보자의 추천권자)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

추천자는 추천한 대의원후보자를 구선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6조(대의원 후보자의 등록조건)

추천된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는 1백명 이상의 선거자회의에서 자격심의를 거쳐야 해당 선거구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될수 있다.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제37조(대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는 주민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부대에서 한다.

선거자회의에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참가시킬수 있다.

제38조(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내용)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이름, 성별, 연령, 사는 곳, 정당, 사회단체, 직장직위, 경력을 소개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대의원후보자가 인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있는가 하는것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39조(대의원후보자등록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등록은 후보자의 자격심의를 위한 선거자회의 참가자들의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0조(대의원후보자등록과 그 순위)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등록하고 그에 대하여 본인과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대의원후보자등록순위는 추천순위에 따른다.

제41조(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의 등록)

여러 선거구에서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는 어느 한 선거구에만 등록할것을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거구에서의 추천은 취소된다.

제42조(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등록될 대의원후보자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43조(대의원후보자의 추천, 등록기간)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추천과 등록사업은 구선거위원회를 조직한 날부터 5일안에 시작하여 선거날 3일전까지 끝내야 한다.

제44조(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의 취소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대의원으로 선거받을 자격을 잃은 경우
2. 정당,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소속 정당, 사회단체 성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3. 사망, 중병 같은 사유로 대의원의 사업을 할수 없게 된 경우

제45조(대의원후보자의 등록취소의 결정)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등록취소는 후보자를 등록한 해당 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대의원후보자등록을 취소한 사유를 상급선거위원회와 본인, 추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대의원후보자의 보충추천등록)

후보자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는 다른 대의원후보자를 추천등록할 수 있다.

제47조(대의원후보자의 공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를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연령, 정당, 직장직위를 밝혀 공시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선전

제48조(선거선전의 조직지도)

선거선전은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지도한다.

제49조(선거선전의 자유)

정당, 사회단체, 선거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선거선전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제50조(선거선전의 기간)

선거선전은 선거날을 공포한 때부터 하며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선전은 대의원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한다.

제51조(선거선전의 형식과 방법)

선거선전은 출판선전, 방송선전, 직관선전, 예술선전, 구두선전 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제52조(선거선전의 내용)

선거선전에서는 선거자들에게 선거의 목적과 의의, 선거법에 규제된 선거자의 권리, 선거절차와 방법을 알려주거나 후보자를 소개하며 높은 정치적열의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할것을 호소할수 있다.

제53조(선거선전의 금지사항)

선거선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반대투표, 기권, 선거파괴를 선동하는것
2. 개별적후보자를 비방하는것
3. 선거위원회의 승인없이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는것
4. 선거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은 선전조직을 내오는것

제8장 선거장

제54조(선거장을 꾸릴 의무)

분구(분구가 없을 경우에는 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장을 꾸려야 한다.

제55조(선거장의 구비조건)

선거장에는 투표실과 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사업할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화재와 자연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있어야 한다.

제56조(투표실)

투표실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수 있게 선거날 3일전까지 꾸린다.

투표실에는 투표함과 필기도구를 갖추어놓는다.

선거장과 투표실은 기발, 꽃 같은것으로 장식할수 있다.

제57조(선거장의 경비조직)

선거장에는 선거날까지 낮과 밤경비가 조직되어야 한다.

선거장경비는 분구(구)선거위원회가 조직한다.

제58조(선거장의 소개)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날 3일전까지 선거자들에게 선거장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선거자는 자기가 선거하게 될 선거장과 투표실상태를 돌아볼수 있다.

제9장 투 표

제59조(투표시간과 투표단위)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투표시간은 계절을 고려하여 선거때마다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정한다.

투표는 선거분구(구)단위로 한다.

제60조(선거참관성원)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선거구 선거자가운데서 5명의 선거참관성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선거참관성원은 선거자의 투표를 제외한 선거진행정형을 볼수 있다.

제61조(투표시작절차)

투표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참관성원과 함께 투표실과 투표함의 정상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을 봉인한 다음 시작한다.

제62조(선거자의 투표)

선거자는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하여야 한다.

한 선거구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에서 발급한 선거권증명서를 가지고 다른 선거분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선거자는 선거권증명서를 떼가지고 다른 선거구에 가서 투표할수 있다.

제63조(선거표)

투표하려는 선거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에게 공민증 또는 공민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내보여 선거자명부와 대조확인하게 한 다음 선거표를 받는다.

선거표의 규격과 양식은 선거때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제정하며 그 제작을 조직한다.

제64조(무기명 투표)

투표는 무기명투표방법으로 한다.

선거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으며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을 가로 긋는다.

제65조(투표조건의 보장)

선거자가 찬성 또는 반대표시를 하고 투표할 경우 투표실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나 들여다볼수 없다.

제66조(투표를 끝내는 절차)

분구(구)선거위원회는 투표마감시간이 되면 투표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리고 투표를 끝마쳐야 한다. 투표마감시간이 되었다 하여도 투표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선거자가 있으면 투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7조(이동투표)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

제68조(이동투표참가정형의 보고)

이동투표를 보장한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은 투표마감시간전으로 해당 선거분구(구)에 도착하여 분구(구)선거위원회에 봉인된 이동투표함을 바치고 투표참가정형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투표결과의 확정

제69조(투표결과의 계산시기와 장소)

투표시간이 지나고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를 계산한다.

투표결과의 계산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선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다.

제70조(투표결과의 계산절차)

투표결과의 계산을 시작할 때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은 선거참관성원들과 함께 투표함의 봉인상태를 확인하며 선거참관성원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함에 있는 선거표수와 내어준 선거표수를 맞추어보아야 한다.

투표함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어준 선거표수보다 적거나 같으면 유효선거이며 투표함에 있는 선거표수가 내어준 선거표수보다 많으면 무효선거이다.

무효선거인 경우 분구(구)선거위원회는 그 사실을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선거표의 무효)

찬성과 반대의 표시가 명확치 않거나 제정된 규격, 양식과 다른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무효결정은 분구(구)선거위원회 성원들이 다수가결로 한다.

제72조(계산방법, 투표결과에의 보고)

투표결과에의 계산은 대의원후보자별로 유효한 찬성표들을 갈라놓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한다.

분구(구)선거위원회는 출석한 성원전원이 합의하여 투표결과보고서를 만들고 투표한 다음 곧 상급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73조(당선자의 확정방법)

당선자확정은 구선거위원회가 한다.

구선거위원회는 분구선거위원회에서 보내온 투표결과보고서를 대의원후보자별로 종합계산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제74조(당선조건과 기준)

당선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대의원후보자이다.

한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자의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들이 받은 찬성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것으로 한다.

제75조(선거결과에의 보고)

당선자를 확정 한 구선거위원회는 곧 선거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선거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76조(당선자의 발표)

당선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중앙선거위원회가, 도(직할시)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도(직할시)선거위원회가, 시(구역),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시(구역), 군선거위원회가 발표한다.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결과에 대한 종합자료는 중앙선거위원회(중앙선거지도위원회)가 발표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충선거

제77조(재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가운데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2. 당선자가 임기시작전에 사망하였거나 선거받을 권리를 잃었을 경우

제78조(무효선거로 판명된 경우의 재선거)

선거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효선거로 된 해당 선거구 또는 분구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과정의 일부가 이 법을 어겨 무효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79조(보충선거의 실시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를 실시한다.

1. 대의원이 사망한 경우
2.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어 소환된 경우
3.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 경우

제80조(보충선거를 실시하는 선거구)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보충선거는 대의원이 결원된 해당 선거구에서 한다.

제81조(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는 조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충선거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제82조(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

재선거와 보충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2장 신소처리와 제재

제83조(신소의 제기)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 공민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이 법을 어겼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선거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84조(신소의 처리)

공민으로부터 신소를 받은 해당 선거위원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심의 결정하고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5조(재신소)

신소에 대한 해당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신소자는 인민재판소에 문제해결을 제기할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의견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각급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제8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선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주체 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 82(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
주체 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 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지방주권기관법의 기본

제1조(지방주권기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인민들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지방주권기관과 그 조직)

지방주권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이다.

지방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을 단위로 조직한다.

제3조(지방주권기관의 구성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4조(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5조(지방주권기관의 활동원칙)

지방주권기관은 모든 활동에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구현한다.

제6조(지방주권기관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활동원칙, 임무, 권한을 규제한다.

제2장 지방인민회의

제7조(지방인민회의의 지위)

지방인민회의는 해당 지역안의 인민대표기관이며 주권기관이다.

제8조(지방인민회의의 구성, 대의원의 자격)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이 될수 있다.

제9조(지방인민회의의 임기)

지방인민회의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해당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1조(정기 및 임시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회의날자통지)

지방인민회의의 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기 5일전에 대의원들에게 알린다. 이 경우 상급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의성립조건)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4조(지방인민회의의 의장)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5조(의안제출)

지방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16조(의안보고자)

지방인민회의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아닌 대의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17조(지방인민회의의 결정채택방법)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 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제18조(결정서등본의 제출)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의 결정서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에 참가하여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 채택되도록 창발적인 의견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안의 공민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 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을 해설선전하며 그 집행을 도와주어야 한다.
3.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의 법과 규정, 인민회의의 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가를 료해할수 있다.
4.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업을 하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일하는 참다운 인민의 총부이 되어야 한다.
5. 해당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6.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대의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0조(대의원의 책임)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과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대의원이 선거자들의 신임을 잃었거나 대의원의 임무를 수행할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환된다.

제21조(대의원의 소환)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결정한다.

인민회의의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3장 지방인민위원회

제22조(지방인민위원회의 지위)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집행기관이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안에서 국가정책의 집행자이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제23조(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11~15명,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구성인원은 9~13명범위안에서 해당 인민회의가 결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24조(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지방인민회의, 상급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과 내각 위원회, 성의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역의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역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인민위원회사업을 지도한다.
11. 해당 지역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지도한다.
12. 국가표창, 렬사증, 사회주의애국회생증수여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13. 인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신소와 청원을 처리한다.
14. 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1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보선하고 다음번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6.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지방예산,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5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구성)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제26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소집)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분기에 1차이상, 상무회의는 필요한 때 소집한다.

전원회의는 지방인민위원회성원의 3분의 2이상 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27조(전원회의, 상무회의의 의안)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와 그밖의 중요한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제28조(회의 집행)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집행한다.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하는 부위원장이 집행한다.

제29조(의안제출권)

지방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할 의안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제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30조(의안보고자)

지방인민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한 보고는 해당 인민위원회 성원이 한다.

의안을 제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도 보고를 할수 있다.

제31조(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 지시)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지방인민위원회가 내는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인민위원회성원의 반수이상 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제32조(결정서, 지시문등본의 제출, 시달)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서, 지시문등본을 상급인민위원회에 보내며 결정서, 지시문을 채택한 날부터 1주일안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지방인민위원회 임무수행의 연장)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34조(지방인민위원회의 비상설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필요한 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5조(책임과 복종관계)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복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적 법

주체52(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
주체84(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1조(국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공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
주적권리를 옹호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민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
적을 포기하지 않은자
2.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자

제3조(공민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
를 받는다.

제4조(귀국, 래왕의 자유원칙)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
유로이 오갈수 있다.

제5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자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
생한자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자

제6조(청원에 의한 국적취득)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제7조(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출생후 3개월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화국국적을 가진다.
2. 14살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부모의 의사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3. 성인으로 되는자의 국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제8조(해외공민과 외국인사이에 출생한자의 공화국국적입적신청)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부모의 국적변경에 따르는 자녀의 국적)

부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입적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변경된다.
2. 14살이상 16살에 이른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 이 경우 부모의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부모일방의 국적변경과 자녀의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1조(결혼, 리혼 및 립양, 파양과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 또는 립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2조(국적회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던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국적을 회복할수 있다.

제13조(국적제적자의 지위와 권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국적실무사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공민등록기관이 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15조(국적입적, 제적청원의 결정기관)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6조(국적관련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행 정 부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3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3호로 수정보충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제1조(평양시관리법의 사명)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은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려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평양시는 국가의 정확한 수도건설정책과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었다.

국가는 수도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간다.

제3조(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관리원칙)

평양시를 잘 꾸리는것은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평양시에 대한 계획적관리원칙)

평양시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평양시관리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평양시의 환경개선과 인구집중방지원칙)

평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평양시의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율, 산업면적비율, 1인당 록지 면적 같은 주요수도관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평양지관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평양시의 령역, 도시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등록, 주민봉사와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평양시의 령역

제7조(평양시령역의 구분)

평양시령역은 수도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

중심지역에는 만수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한 지역이, 주변지역에는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이 속한다.

제8조(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의 설정)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너비, 위성도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맞게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9조(중심지역의 정리)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지대의 관리)

보호지대는 중심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도시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보호지대에 산림과 유원지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녹지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보호지대에는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하거나 건설할수 없다.

제11조(위성도시의 건설)

위성도시는 중심지역의 인구집중을 조절하고 경제적, 사회봉사적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정한 도시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위성도시의 건설순차를 정하고 해당 위성도시의 성격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농촌지역의 관리)

농촌지역은 농축산물생산기지, 보장기지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수요와 공급조건을 타산하여 중심지역에서 가까운 농촌지역을 남새, 고기,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제13조(도시건설과 경영의 기본요구)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얼굴인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건설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총계획의 승인)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설총계획, 위성도시는 해당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제15조(공장, 기업소의 환경영향평가)

평양시령역에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단체는 해당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를 일으키거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지 못하였거나 물동량이 많아 도시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장, 기업소는 중심지역에 들수 없다.

제16조(체육문화시설의 배치)

도시계획기관은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수도의 면모를 조화롭게 꾸려나갈수 있도록 경기장, 체육관, 극장, 영화관, 박물관, 기념탑, 유희장 같은 체육문화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살림집의 건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명시서의 발급과 건설허가)

중심지역에 건설하는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내각이 그밖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19조(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

평양시에서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판리는 평양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판리는 해당 기관이 할수 있다.

제20조(도시의 수림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기 좋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시를 수림화하고 록지배치를 균형화, 립체화하며 도시안에 여러가지 물품치를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한다.

제21조(상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선진적인 물소독 및 정제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고 완전히 정화된 음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2조(하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은 하수도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관리운영을 정상화하여 생활오수와 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화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대로 산업폐수를 자체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3조(난방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지역별로 중앙열난방과 전기난방, 자체난방대상을 바로 정하고 난방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난방열을 생산공급하는 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과 더운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난방시설을 변경시키거나 난방열을 뽑아 쓸수 없다.

제24조(대기관리)

도시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건물과 가로수배치를 잘하여 도시통풍과 환경보호한계기준에 따르는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심지역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보이라를 운영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운행할수 없다.

제25조(도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도로망을 완비하고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그 수명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에 인입선을 내거나 도로시설물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하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하천의 강안정리와 바닥파기를 정상적으로 하고 환수체계를 세워 평양시안의 하천들에 늘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물수위변동과 물흐름량에 맞게 갑문관리와 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7조(가로등관리와 거리불장식)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에 여러가지 형식의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켜야 한다.

기념비적건축물과 거리의 곳곳에는 불장식을 하여 수도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한다.

제28조(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은 오물종합처리장을 꾸리고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 도시오물, 공업폐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는 공업폐설물을 오물종합처리장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제29조(거주 및 기관등록의 기본요구)

거주등록, 기관등록은 주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정확히 장악하기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거주 및 기관등록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거주등록)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평양시민증)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어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3조(기관등록과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등록을 제때에 하며 해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34조(기관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기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정해진 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와 다르게 기관등록을 할수 없다.

제35조(기관등록의 변경)

명칭, 관리기구, 정원이 달라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내각이나 평양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로력의 배치)

로력배치는 기관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한다.

해당 로동행정기관은 로력배치를 할 경우 거주지역과 출근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주민봉사

제37조(주민봉사의 기본요구)

주민봉사를 잘하는것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시안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

제38조(식량과 연료의 공급)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상업, 급양, 편의봉사)

상업, 급양, 편의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살림집과 그 구획관리)

평양시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살림집을 정상적으로 개진보수하여 그 수명을 늘이며 수도의 면모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살림집구획은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합적인 생활단위로 꾸려야 한다.

살림집구획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들수 없다.

제41조(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교통망건설총계획에 따라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교통운수수단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지하전동차, 지상륜환렬차, 궤도 및 무궤도전차,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기본운수수단으로 한다.

제42조(전기통신과 우편통신의 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전기통신을 컴퓨터화하고 첨단기술과 운영방법을 받아들여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며 우편통신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43조(출판보도물의 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보도물의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주민들이 신문, 방송 같은것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보육 및 교육조건의 보장)

어린이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위생영양학적, 교육학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청소년교육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탁아소,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육 및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치료 및 위생방역대책)

보건기관은 인민병원과 진료소, 해당 전문병원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여 주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의사들이 담당구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예방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며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의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로동조건보장)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로동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평양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부문별관리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를 위한 부문별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49조(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평양시관리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평양시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수도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평양시관리사업에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51조(평양시에 대한 상품보장)

국가계획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상업망에 넣을 상품생산을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평양시관리와 관련한 법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평양시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

주체94(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7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조(공무원자격판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법은 공무원자격판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무원의 자격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무원자격판정의 의무적참가원칙)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다.
국가는 모든 공무원이 자격판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3조(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

공무원자격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있는가
2.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가
3. 사업조직지휘능력이 있는가
4. 사업실적이 있는가
5. 준법기풍이 서있는가
6.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였는가

제5조(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

공무원자격판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부원이상 일꾼
2. 도(직할시)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꾼
3. 시(구역), 군급기관의 부원이상 일꾼
4. 해당 기관의 부원이상 일꾼

제6조(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

공무원자격판정의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또는 선거된 일꾼
2. 통신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있는 일꾼

3.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일군

4. 그밖에 따로 정해진 일군

제7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공무원자격판정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내각밖의 중앙기관에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둔다.

필요에 따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기관의 아래기관에도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8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10~13명, 각급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은 5~10명범위안에서 해당 기관이 결정한다.

제9조(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자격판정시험문제를 제시한다.
2. 판정날자와 장소를 정하고 30일전에 공포한다.
3. 공무원자격에 대한 평가사업을 한다.
4. 공무원자격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한다.

제10조(공무원자격급수)

공무원자격급수는 1~6급까지로 한다.

공무원자격급수에 따르는 기준은 공무원자격판정기준에 근거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공무원자격판정관할)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내각밖의 기관과 따로 정한 기관의 1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부문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기관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2~6급공무원의 자격판정은 해당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제12조(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

공무원자격판정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자격판정주기를 5년으로 할수 있다.

제13조(공무원자격판정기간의 설정)

공무원자격판정기간은 판정주기마다 국가적인 사업을 고려하여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공무원자격급수판정의 분류)

공무원자격판정은 제자리급수판정, 올라가는 급수판정으로 나누어 한다.

올라가는 급수판정에는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할수 있다.

제15조 (공무원자격판정의 시험방법)

공무원자격판정시험은 필답 또는 구답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실기응용의 방법을 배합할수 있다.

제16조 (합격하지 못한 판정결과의 처리)

제자리급수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한 공무원의 자격급수는 한급 내리운다. 이 경우 내려갈 급수가 없는 공무원은 6개월안으로 다시 자격판정을 받을수 있다.

제17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의 공개)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를 7일안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새로 입직하는 공무원의 자격판정)

국가기관에 새로 입직한 공무원은 1년안으로 공무원자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지도)

공무원자격판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는 공무원자격판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공무원자격판정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0조 (공무원자격의 박탈)

정당한 리유없이 공무원자격판정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을 박탈한다.

제21조 (행정적책임)

공무원자격판정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제22조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처리)

공무원자격판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공무원자격판정위원회와 상급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6호로 채택

제1조(행정구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법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전반적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행정구역의 구분)

행정구역은 나라의 령토를 국가관리체계에 따라 구분한 지역적단위 또는 그 구획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구역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 동)로 구분한다.

제3조(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의 권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없애며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를 정하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4조(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의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전반적지역에서 인민경제의 고르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주민구성과 그들의 생활상특성, 교통조건, 교육조건, 보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조건과 주민행정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의 당사자)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관할구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주민행정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무회의에서 토의하고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을 할수 있다.

제6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도(직할시)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신청문건제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을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린접한 시(구역), 군의 행정구역과 관계되는 문제는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문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 및 제기]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로부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제출되면 정확히 검토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 부족점이 있거나 신청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제9조[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제출한 신청문건의 검토처리]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 부족점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보낸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부족점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0조(신청문건의 작성방법)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에는 신청리유와 목적, 내용, 행정구역의 실태자료, 린접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합의한 정형 같은것을 밝히고 해당 행정구역도를 첨부한다.

신청문건의 양식과 작성방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제11조(신청문건의 심의기간)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는 해당 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에 한다.

제12조(국가적요구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경우)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료해처리할수 있다.

제13조(신청문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보장)

인민위원회와 측지기관, 수로기관, 과학연구기관 같은 해당 기관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문건의 심의승인기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의 심의승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한다.

제15조(정령공포)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신청문건이 심의에서 승인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공포한다.

제16조(정령공포기간)

해당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쳐줄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공포되면 1개월안으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지형지물의 변경에 대한 보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간석지건설, 토지정리, 물길공사, 고속도로, 저수지, 발전소건설 또는 자연조건의 변화 같은 사유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때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구역경계표식물의 설치 및 보호)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정해진 장소에 행정구역을 구분할수 있는 경계표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의 구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행정구역도와 행정구역관련문건은 정해진 기간 보관한다.

제20조(행정구역도의 작성, 배포)

행정구역도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국가측지기관이 한다.

국가측지기관은 행정구역이 달라졌을 경우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사항)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없애는 행위
2.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는 행위
3. 행정구역경계표식물을 파손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4.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

제22조(국가지명위원회의 조직)

지명사업을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비상설로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명을 명명하거나 고증하거나 고치는 사업을 한다.

제23조(원상복구, 벌금, 중지)

승인없이 행정구역을 내오고 없었거나 행정구역의 명칭, 경계 또는 지명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경계 표식을 파손시켰거나 없었거나 옮겼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승인없이 다른 행정구역의 토지를 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2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주체 87(1998)년 6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0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 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 99(2010)년 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5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신소청원법의 기본

제1조(신소청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은 신소청원의 제기, 접수등록, 료해처리에
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국가관리사업을 개선하
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신소청원과 그 권리보장원칙)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
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
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

국가는 공민의 신소청원권리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신소청원의 접수등록원칙)

신소청원을 제때에 정확히 접수등록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신소청원의 료해처리원칙)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에서 원칙성과 과학성, 객관성, 공명정대성을 보장하
도록 한다.

제5조(신소청원사업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은 신소청원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신소청원사업부문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
이도록 한다.

제6조(비밀보장의 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신소청원의 제기

제8조(신소청원의 당사자)

공민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가 담긴 신소청원을 하는것은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이다.

공민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에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도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제9조(공민의 신소)

공민은 신소를 직접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소할수 있다.

제10조(신소청원의 제기방법)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이름, 사는 곳, 직장직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11조(신소청원자와의 면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를 제때에 만나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가 요구하는 일군 또는 그 대리인이 만나주어야 한다.

제12조(신소청원내용의 과학성, 객관성보장)

신소청원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객관적사실을 가지고 신소청원을 하여야 한다.

자료나 사실을 과장, 날조하여 신소청원을 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3조(재신소청원)

신소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신소청원을 다시 할수 있다.

제14조(신소청원자의 편의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내용을 써넣을수 있는 함을 설치할수 있다.

제3장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제15조(신소청원접수등록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료해처리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신소청원을 빠짐없이 접수하고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신소청원접수등록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신소청원사업부서가 통일적으로 한다.

신소청원사업부서가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은 따로 정해진 일군이 한다.

제17조(신소청원의 등록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신소청원과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 자기 단위에 직접 제기된 신소청원을 따로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신소청원의 접수날자)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소청원을 등록한 날로 한다.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접수날자는 의뢰, 이관문건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19조(신소청원등록에서의 특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이름, 직장직위, 사는 곳 같은것을 등록하지 않을수 있다.

제20조(신소청원의 의뢰, 이관)

신소청원은 그것을 접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리관할이 맞지 않거나 직접 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을 의뢰할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밝혀야 한다.

제4장 신소청원의 료해처리

제21조(신소청원료해처리의 기본요구)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접수등록한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에 리해관계를 가진 일군은 해당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없다.

제22조(료해처리관할)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관할은 다음과 같다.

1. 최고주권기관 사업, 최고주권기관 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재판 또는 법적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 인민생활이나 위법행위, 인권유린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접 할수 있다.
2. 인민생활, 행정경제사업, 행정경제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3. 검찰사업, 검찰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검찰 기관이 한다.
4. 재판, 중재, 공증과 관련한 신소청원, 재판, 중재, 공증일군의 사업방법, 작풍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재판기관이 한다.
5. 인민무력, 인민보안, 국가안전보위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6. 대외사업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3조(료해처리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간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24조(중요신소청원의 료해분담)

중요신소청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에서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 가운데서 중요한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 또는 신소청원사업일군이 료해한다.

제25조(재신소청원의 료해분담)

같은 내용의 신소청원이 다시 제기된 경우에는 이미 료해한 일군보다 직무가 높은 일군이 료해한다.

제26조(신소청원의 료해순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을 접수등록한 순서로 료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요신소청원,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신소청원은 다른 신소청원보다 먼저 료해하여야 한다.

제27조(신소청원의 료해방법)

신소청원의 료해는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 해당 일군을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 담화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의 내용을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료해하며 제기된 문제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신소청원의 료해사업을 방해하거나 료해자료를 파장, 날조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8조(신소청원료해일군의 권리)

신소청원을 료해하는 일군은 정해진데 따라 필요한 사건기록, 검열문건, 회계문건 같은것을 볼수 있으며 전문일군을 동원시키거나 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신소청원자, 피신소자, 확인자로부터 진술서, 확인서를 받으며 사건취급, 문제처리를 잘못된 일군으로부터 비판서를 받을수 있다.

제29조(사건,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

형사, 민사, 중재사건 또는 검열과 관련한 신소청원의 료해는 해당 사건이 결속되거나 검열총화가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러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밑에 사건취급, 검열중에도 신소청원을 료해할수 있다.

제30조(료해의 중지사유)

부당하거나 날조된것이 확인된 신소청원에 대하여서는 료해를 중지한다. 이 경우 신소청원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준다.

제31조(공동료해)

신소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제기될 경우에는 정해진 기관이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료해할수 있다.

공동료해사업에는 신소내용과 관계있는 일군을 참가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은 공동료해사업에 필요한 인원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의 반송)

의뢰, 이관받은 신소청원은 다시 의뢰, 이관할수 없다. 그러나 료해처리할수 없는 신소청원은 그 이유를 밝혀 의뢰, 이관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낼수 있다.

제33조(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

신소청원에 대한 료해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처리문제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처리문제의 토의결정은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에서 건별로 한다.

제34조(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의 작성)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를 끝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소청원료해처리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의뢰받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문건은 그것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35조(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

해당 중앙기관은 제기된 신소청원의 처리문제를 결정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보내여 집행하게 할수 있다.

신소청원처리통지문건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건에 지적된대로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소청원처리결과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신소청원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신소청원자에게 신소청원의 처리결과를 알려준 날이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가 끝난 날로 된다.

제37조(비밀준수, 신소청원문건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료해처리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며 신소청원과 관련한 문건을 정확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중앙지도기관)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신소청원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이다.

신소청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39조(신소청원사업의 장악지도)

중앙기관은 아래단위에서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를 바로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의 접수등록, 료해처리정형을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신소보는 날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처리를 위한 신소보는 날 또는 해당 일군협의회를 정해진 날자에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소보는 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제41조(신소청원사업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소청원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신소청원사업을 하는 일군은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42조(신소청원사업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소청원의 료해처리사업에 간섭하는 행위, 신소청원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 신소청원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복수하는 행위 같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국가관리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형 민 사 부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소송관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 법

주체 79(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주체 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10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05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4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6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

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 죄

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1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2조(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4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리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리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제18조(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9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1조(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3조(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절 형 별

제27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9. 자격정지형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29조(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2조(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제34조(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5조(재산몰수형의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제36조(재산몰수당함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7조(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교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9조(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6. 자백하였을 경우
7.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8.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9.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10.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제42조(형벌을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제43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제44조(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45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 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 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6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규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8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정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제49조(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을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제51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2조(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제53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 규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4조(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5조(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56조(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7조(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2.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3.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4.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5.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6.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58조(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9조(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3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 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4조(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파괴, 압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압해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알함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6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족죄)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졌거나 자금을 대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제68조(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9조(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0조(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불신고, 방임죄

제71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74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전략예비물자의 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약취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동임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군수품분실죄)

군수품을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군수품매매죄)

군수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4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군수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 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

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관리일군이 군수품생산용자재와 생산한 군수품을 류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9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0조(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91조(국가재산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조(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국가재산속여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국가재산대량락취죄)

이 법 제91조-제94조에 지적된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락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락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락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01조(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공화국화폐와 외국화폐가 위조되었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증권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대부질서위반죄)

은행일군이 비법적으로 현금을 대부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화폐교환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폐를 매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7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외화사용질서위반죄)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9조(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국가납부질서위반죄)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1조(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고리대죄)

고리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비법적인 영업죄)

개인이 국가기관의 승인없이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무역 및 외화별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및 외화별이기관, 단체의 관리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6조(법인행세죄)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7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밀수죄)

밀수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수출입질서위반죄)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4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화차, 짐배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의 리용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6조(운수수단운행방해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

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8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9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2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랑비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를 류용, 랑비하여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을 주었거나 받았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6조(재산을 랑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재산을 랑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7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 공정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

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8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을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0조(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국가건물리용질을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3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질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히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6조(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국가살림집리용질을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농업생산질서위반죄)

농업생산질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0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1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2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3조(량정질서위반죄)

량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4조(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5조(계량기구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친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전력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7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8조(체신사업질서위반죄)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9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0조(해난구조의 무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2조(난방열도용죄)

비법적으로 난방열을 도용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3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64조(토지이용질서위반죄)

토지이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토지보호질서위반죄)

토지보호질서를 어겨 토지를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6조(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지하자원의 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7조(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개인이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8조(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9조(산림람도벌죄)

개인이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람도벌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0조(과실적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비법적인 산개간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3조(환경보호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4조(하천보호질서위반죄)

하천보호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5조(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76조(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7조(로동안전질서위반죄)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8조(화재방지규정위반죄)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9조(교통사고죄)

자동차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자가 차의 통행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1년이

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0조(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대량의 분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1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2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녀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고의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8조(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목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목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도용죄)

리기적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2조(컴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3조(정보파손죄)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허위정보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혼란을 조성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5조(후비양성질서위반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6조(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할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7조(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락아소, 유치원일군이 어린이보호, 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증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0조(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자가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증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제조를 잘못하였거나 의약품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가 증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환자를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어 판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증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품,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들어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5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09조(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것 같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허위품설날조, 류포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허위품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2조(공인비법사용, 위조죄)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3조(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였거나 전자매체의 제작,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5조(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독립임무수행태만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9조(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0조(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2조(비법협조죄)

공화국을 적대시하는자를 비법적으로 도와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3조(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5조(증인협박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6조(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7조(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에 처할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고의적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8조(일반범죄불신고죄)

국가재산강도죄, 고의적중살인죄, 개인재산강도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9조(도주죄)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0조(퇴물죄)

대량의 퇴물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퇴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1조(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2조(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담보처분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3조(부당한 신소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4조(대외적권위훼손죄)

우리 나라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직무상범죄

제235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6조(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7조(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8조(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9조(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관리일군이 공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 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0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1조(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2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3조(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4조(부당한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5조(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이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46조(불량자적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7조(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8조(미성인범죄추진 죄)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9조(매음죄)

매음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0조(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1조(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였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2조(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3조(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4조(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5조(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7조(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8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9조(양로사업질서위반죄)

양로사업을 잘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0조(학대판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판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보호대상자가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망되게 하였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습득물횡령죄)

주은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2조(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4조(표파괴죄)

표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표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5조(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66조(고의적중살인죄)

람육,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67조(고의적경살인죄)

람육,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9조(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0조(과실적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거나 눈, 귀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피해자가 죽게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과실적중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중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4조(고의적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5조(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6조(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7조(어린이훔친 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8조(유괴죄)

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9조(강간죄)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여성을 강간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른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여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여성에게 하였거나 여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83조(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4조(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5조(개인재산속여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6조(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조(개인재산대량락취죄)

이 법 제283조-제286조에 이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락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조(개인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9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락취죄)

개인재산락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0조(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주체81(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형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균종로선의 관철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균종의 힘과 지혜에 적극 의거하며 균종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한다.

제4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5조(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전면성과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형사사건취급에서 조선어의 사용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를 우리 말로 하도록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자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8조(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의 준수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를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형사소송관계자

제9조(형사소송관계자)

형사소송관계자에는 형사소송담당자와 형사소송판여자가 속한다.

형사소송담당자는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이다.

형사소송판여자로는 변호인,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보증인, 피소자 같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관여하는자가 된다.

제10조(수사의 담당자)

수사는 해당 법기관의 전문수사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권한을 가진 일군도 수사를 할수 있다.

제11조(예심의 담당자)

예심은 해당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2조(기소의 담당자)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한다.

제13조(재판의 담당자)

재판은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4조(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의 담당자)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제15조(비밀엄수 및 형사사건조사방해금지)

형사소송관계자는 형사사건취급처리와 관련된 비밀을 지키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리해관계에 따라 형사소송에 참가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자신이나 가족, 친척관계에 있는자가 피해자, 범죄자이거나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할수 없다.

제17조(형사소송임무를 겸할수 없는 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수 없다. 그러나 검사, 증인은 손해보상청구자로 될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는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도 자기가 담당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의 다른 소송관계자로 될수 없다.

제18조(같은 사건을 다시 예심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6조의 요구를 어긴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을 담당할수 없다.

제19조(같은 사건을 다시 감시, 기소할수 없는 사유)

형사사건을 파장날조한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돌려보낸 근거로 된 경우 검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감시와 기소를 다시 담당할수 없다.

제20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 비상상소심 또는 재심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다. 그러나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여 재판소가 반송하였던 형사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에는 참가할수 있다.

제21조(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는 사유)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22조(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자와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형사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23조(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는 사유)

이 법 제16조, 제17조의 사유가 있거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지 못한자는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으로 될수 없다.

제24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수사,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단계에서는 재판소에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제25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하는 시기)

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러나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수 있다.

제26조(수사, 예심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검사는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한다.

제27조(재판에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심리에 참가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바꾼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심리할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정지하고 재판소를 다시 구성한다.

제28조(형사소송관계자들의 포기)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기록수, 변호인, 증인, 감정인, 손해보상청구자,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은 이 법 제16조-제23조의 사유가 자신에게 있을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제2절 증거

제29조(과학적증거에 기초한 형사사건의 취급처리)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한다.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확인되어야 사건해결의 기초로 쓸수 있다.

제30조(증거의 종류)

증거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가 된다.

제31조(증거로 확정하여야 할 대상)

범죄의 표징을 이루거나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되어야 한다.

제32조(증거의 수집, 리용)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리용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증거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적인 수단과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34조(증거의 고착)

찾아낸 증거는 진술서, 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을 찍거나 락도를 그리거나 녹음, 녹화 같은 방법으로 고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진술서, 조서에 밝힌다.

제35조(증거의 검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수집된 증거자체를 분석하거나 확인한 다른 증거, 새로 수집한 증거와 대조확인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검토한다.

제36조(증거의 평가)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수집하고 검토확인된 증거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7조(피심자, 피소자진술의 평가)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수 없다.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의 범죄를 증명하지 못한것으로 인정한다. 자수, 자백한 자료도 그와 관련있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인정한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이라는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범죄가 증명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증거물의 등록, 고착형식)

증거물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냈는가에 따라 증거물발견조서, 증거물제출조서, 수색,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에 등록한다.

증거물의 특징, 상태, 흔적을 따로 고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물검증조서로 고착한다.

제39조(증거물수집과 립회)

증거물을 찾아내고 고착시킬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40조(증거물의 보관)

증거물의 보관은 사건기록과 함께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한다.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 기관이 보관하기 어려운 증거물은 봉인하여 해당 기관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수집한 귀금속은 은행에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으며 현금은 은행의 해당 구좌에 입금시키고 립시입금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인다.

제41조(증거물의 이관)

형사사건을 다른 기관의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에 보낼 경우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준다.

임자 또는 해당 기관에 이미 돌려주었거나 넘겨준 증거물과 이관이 적합하지 못한 증거물은 근거문진을 검증조서와 함께 넘겨준다.

제42조(사건종결전단계에서 증거물의 처리사유)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증거물은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줄수 있다.

물수할 필요가 없는 증거물가운데서 소유자, 점유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 지장이 없다면 수사원, 예심원의 결정, 판사의 판정으로 그 사건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임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돌려받은 증거물을 형사사건종결전에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변형시키지 말데 대하여 알려준다.

제43조(증거물의 처리방법)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주려는 수사원, 예심원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으며 판사는 판정서를 작성한다.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에는 임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형사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처리한 증거물은 특징, 상태, 흔적을 검증조서, 사진 같은것으로 고착하여 근거문진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44조(종결한 형사사건의 증거물처리)

형사사건을 종결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증거물은 몰수하거나 폐기하며 그밖의 증거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 기관에 넘겨주고 그 사실을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이 경우 증거물을 돌려받았거나 넘겨받은 피해자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거문건과 함께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절 관 할

제45조(관할설정기준)

관할은 사건이 어느 한 법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취급처리될수 있도록 법기관의 사명과 임무, 범죄발생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제46조(수사관할)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수사한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7조(특별수사기관의 관할)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수부문 법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그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한다.

제48조(예심관할)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할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들의 법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49조(특별예심기관의 관할)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수부문 법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하며 그밖의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50조(인민재판소관할)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최고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51조(도재판소관할)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을 규제하고있는 법조항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제52조(특별재판소관할)

군사재판소는 군사상범죄사건과 군사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군수재판소는 군수공업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부문 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53조(최고재판소관할)

최고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특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54조(지역관할)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할수 있다.

제55조(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관할에 속한 사건의 재판관할)

여러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56조(관할이 다른 사건의 재판관할)

관할이 다른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에서,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57조(관할분쟁의 금지)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준다.

제4절 변 호

제58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보장)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59조(변호인의 임무)

변호인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한다.

제60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심자, 피소자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도 변호인을 선정할수 있다.

제61조(변호인선정권의 포기)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수 있다.

제62조(피심자, 피소자의 변호인선정시기)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제63조(판사의 변호인선임의퇴시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되었을 경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을 의뢰한다.

제64조(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으로는 각급 변호사회의 변호사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을 갖춘자도 변호인으로 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판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65조(변호인선정신청 및 선임의퇴)

피심자, 피소자, 그의 가족, 친척 또는 소속단체대표자는 예심원, 판사에게 변호인선정신청을 한다.

변호인선정신청을 접수한 예심원, 판사는 선정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3일안으로 신청내용을 알려준다.

이 법 제63조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하려는 판사는 해당 변호사회에 변호인선임의 퇴를 한다.

제66조(변호인선정 및 선임통지)

변호인의 선정신청이나 선임의퇴를 받은자 또는 변호사회는 3일안으로 그 동의여 부를 해당 예심원, 판사에게 알려준다.

변호인의 선정동의에 대하여 통지받은 예심원, 판사는 곧 변호인의 선정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제67조(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

변호사, 변호사자격을 갖춘자가 변호인의 선정신청, 선임의뢰를 거부하거나 검사 또는 판사가 변호인의 선정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인을 다시 선정 또는 선임한다.

변호인의 재선정, 재선임은 이 법 제65조에 따른다.

제68조(사선변호인의 우선권)

공선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사선변호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선변호인이 변호인으로 된다.

제69조(변호인의 피심자, 피소자담화)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

제70조(변호인의 사건기록열람)

변호인은 범죄사건이 기소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열람할수 있다.

제71조(변호인의 증거수집과 검토확인)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72조(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에 대한 변호)

변호인은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해관계가 다른 피소자를 함께 변호할수 있다.

제73조(변호인의 의견제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 또는 판사, 재판소는 제기받은 의견을 3일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준다.

제5절 형사소송물건

제74조(형사소송물건작성의 목적)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소송행위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물건을 작성한다.

형사소송행위와 결과는 물건에 고착되어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제75조(형사소송물건의 종류)

형사소송물건에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준비, 재판심리단계에서 작성하는 결정서, 진술서, 조서, 기소장, 판정서, 판결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76조(형사소송문건의 작성방법)

형사소송문건에는 작성날자와 장소, 작성자의 이름과 직장직위, 소송행위의 법적 근거와 진행과정, 결과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관계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수정, 보충, 삭제한 곳에는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는다.

제77조(형사소송문건의 비공개)

형사소송문건은 법에 따라 보게 되어있는자를 제외하고는 열람할수 없다.

제6절 형사소송기간과 물건 송달, 소송비용

제78조(형사소송기간의 계산)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은 시간, 날, 달, 해로 한다. 이 경우 계산사유가 생긴 다음 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날 24시로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마지막 달가운데서 계산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끝나는 날이 국가적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형사소송기간이 끝난다.

제79조(형사소송문건의 발송기간에 따르는 효력인정)

상소장, 항의서, 결정서 같은 형사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낸것으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문건을 보내야 할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문건을 받아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80조(형사소송문건의 송달)

형사소송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접수하였을 때 송달된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성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형사소송문건을 접수할수 있다.

제81조(형사소송비용의 부담)

인민참심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이 형사사건조사처리에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나 려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자의 경우 로력보수와 려비는 그를 부른 기관이 부담한다.

제7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

제82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과 담당자)

형사사건의 취급은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시작된다.

수사원이 수사시작결정을 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예심원, 검사의 결정, 예심에 넘기는 검사의 결정, 검사에게 넘기는 재판소의 판정이 있을 때부터 형사사건의 취급이 시작된다.

제83조(형사사건의 취급시작기초)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범죄에 대한 신고에 기초하여 한다.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서도 형사사건의 취급을 시작한다.

제84조(증거보존 및 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르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현장,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가 못쓰게 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곧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에 신고한다.

제85조(범죄의 신고형식)

범죄에 대한 신고는 말이나 글로 할수 있다.

제86조(범죄의 신고접수방법)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는 신고서를 받거나 신고조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신고접수자는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거짓신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정형 같은것을 밝힌다.

제87조(범죄신고의 의무적접수와 이송)

인민보안, 검찰, 안전보위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며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한 신고자료는 곧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제88조(범죄에 대한 신고처리결과의 통지)

범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처리정형을 1개월안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고처리를 한 기관의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수 있다.

제89조(직접 수집한 범죄자료의 고찰)

인민보안, 검찰, 재판, 안전보위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직접 수집한 범죄자료를 해당 법규에 따라 고찰한다.

제8절 형사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90조(형사사건의 병합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으로서 각기 제기된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한다.

제91조(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은 주모자를 취급하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주모자를 모를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취급하기 시작한 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여러명이 함께 저지른 범죄사건에서 일부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사민이 군인, 군사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사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사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반사민이나 철도운수부문 종업원이 군수기관 종업원과 함께 군수비밀보장과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군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철도운수부문 종업원과 일반사민이 함께 철도운수질서를 침해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철도운수부문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2조(혼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건병합에서 지켜야 할 요구)

혼자서 자기가 사는 곳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 사건을 병합하여야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취급하고있는 법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일부 범죄가 상급법기관의 관할에 속하거나 군사법기관, 군수부문 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 관할에 속하는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상급법기관 또는 군사법기관, 군수법기관, 철도운수부문 법기관, 안전보위기관에서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제93조(형사사건의 병합절차)

형사사건을 병합할 경우에는 사건병합결정, 판정을 하고 하나의 형사사건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94조(형사사건분리사유)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제1심재판소는 여러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도주하였거나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으로 앓고있어 병이 나을 때까지 다른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에 대한 취급처리를 뒤로 미룰수 없거나 관할이 서로 달라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는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그 사건을 분리할수 있다.

제95조(형사사건분리절차)

형사사건을 분리하려 할 경우에는 사건분리결정, 판정을 하고 해당한 사건기록을 작성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분리한 형사사건을 관할법기관에 넘기는 절차는 이 법 제152조에 따른다.

제9절 형사소송의 중지 및 형사사건의 기각

제96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97조(형사소송의 중지절차)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2.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3. 판사,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98조(의료처분의 절차)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이 법 제99조 2호, 3호에 따라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곧 알린다.

제99조(의료처분의 종류)

의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2. 일시적인 정신병환자에 대한 의료처분
3. 중병에 걸린자에 대한 의료처분

제100조(의료처분받은자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결정서, 판정서에 지적된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2. 병치료에 전념하여야 한다.
3. 증거를 없애는것 같은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1조(보증인의 선정)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의료처분을 하는 경우 2명의 보증인을 세운다. 이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제102조(보증인의 의무)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2.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역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의료처분결정의 통고)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의료처분결정, 판정을 한 경우 의료처분을 받은자와 그의 보증인에게 결정, 판정내용과 지켜야 할 의무를 알려준다.

제104조(의료처분받은자에 대한 감시)

의료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감시는 그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은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 류동정형을 본인이나 보증인으로부터 통보받으며 정상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의료처분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 100조를 어긴 경우에 의료처분을 적용한 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5조(형사소송중지의 해제, 취소)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자가 이 법 제100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하고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06조(형사사건의 기각사유)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경우
2.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3.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특사로 형벌적용이 면제되었을 경우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6. 이 법에 규정된 예심기일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 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7. 범죄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8.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있을 경우

제107조(형사사건의 분리기각사유)

여럿이 함께 저지른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자에게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기각한다.

제108조(형사사건의 기각형식과 절차)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0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수사원은 수사취소결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2. 예심원은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하고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3. 검사는 형사사건기각결정을 한다.
4.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기각판정을 하고 검사에게 알린다.

제109조(형사사건의 기각통지)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신고자, 피해자,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110조(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 의료처분)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을 취소하거나 기각하는 경우 이 법 제99조 1호에 따라 의료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111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구속자, 증거물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경우에는 구금, 구류되어있는 범죄 혐의자, 범죄자, 피심자, 피소자를 곧 놓아준다. 이 경우 증거물처리는 이 법 제44조에 따른다.

제112조(기각한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수사, 예심을 취소하거나 형사사건을 기각한 수사원,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피해자에게 돌려줄수 없는 물건을 몰수하고 근거문건을 사건 기록에 붙인다.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앞항의 경우 재산담보처분기간을 1개월 연장할수 있다. 그 내용은 수사, 예심취소 결정서, 사건기각결정서, 판정서, 판결서에 밝힌다.

제113조(형사사건의 기각취소)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형사사건의 기각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취소하는 결정, 판정을 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신고자, 피해자에게는 형사사건의 기각취소에 대하여 알려준다.

제114조(형사사건기각취소의 효력)

형사사건의 기각취소를 한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와 수집한 증거는 효력을 가지며 그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제10절 사회적교양처분

제115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4살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 형벌을 주지 않교도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6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수 있다.
2. 판사,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정, 판결을 할수 있다.

제117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처리)

구류되어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 판정,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곧 놓아준다.

제118조(사회적교양처분을 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 경우 증거물, 손해보상 및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112조, 제348조에 따른다.

제119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의 지위)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인정한다.

제120조(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의 담당자)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있는 리(읍, 구, 동)에서 책임진다.

미성인에 대하여서는 그의 부모도 책임진다.

제121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사유)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운다. 이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한다.

제122조(사회적교양처분의 취소절차)

검사, 판사, 재판소는 이 법 제121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 또는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11절 손해보상

제123조(손해보상의 청구자)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 또는 판사,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검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접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4조(손해보상청구의 통고)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저지른 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려준다.

제125조(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로는 범죄를 저질러 물질적손해를 준 피심자, 피소자, 범죄의 련루자 또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하여 재산적책임을 질자가 된다.

제126조(손해보상청구의 대상)

손해보상청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물질적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127조(손해보상청구의 형식)

손해보상청구는 말로 하거나 글로 써낼수 있다.

말로 한 손해보상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서에 밝힌다.

제128조(손해보상청구의 시기)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에서 사실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로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제129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손해보상청구는 형사재판에서 함께 심리해결한다. 그러나 손해보상청구심리가 재

판심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따로 심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소가 한다.

제130조(기각된 손해보상청구의 재청구금지)

손해보상청구를 형사재판심리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수 없다.

손해보상청구를 민사재판에서 기각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할수 없다.

제131조(손해보상청구수수료의 면제)

범죄로 입은 물질적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다.

제132조(손해보상금의 제출)

수사원, 예심원, 검사, 판사, 재판소는 손해보상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보상금을 해당 은행에 입금시키게 하고 립시입금증을 받은 다음 손해보상금제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3장 수 사

제133조(수사의 임무)

수사의 임무는 범죄자를 적발하는것이다.

제134조(수사의 시작)

수사할 범죄자료를 얻은 수사원은 곧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제135조(수사시작결정서의 처리)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136조(수사에 필요한 진술의 청취)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제137조(수사의 방법)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수 있다.

앞항의 행위는 이 법 제4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38조(관할지역밖에서의 수사)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밖에서도 수사를 직접 할수 있

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39조(수사의 의뢰)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 게 의뢰할수 있다.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한다.

제140조(수사원의 증거수집제한)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증거수집을 할수 없다. 그러나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수 없게 되는것 같은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141조(수사사건의 이송)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수사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검사에게 알리고 해당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어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42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143조(체포한 범죄혐의자,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구금된자에게 이 법 제96조의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이 법 제10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

제144조(구금하지 않을 범죄자의 처리)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날자, 사유 같은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45조(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곧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예심에 넘긴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은 범죄자는 체포하여 예심에 넘긴다.

제146조(수사에 대한 감시)

수사감시를 맡은 검사는 감시결정서를 작성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소송문건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장 예 심

제1절 예심의 임무와 기간

제147조(예심의 임무)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제148조(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

예심에서는 객관적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데서 논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힌다.

제149조(반복조사금지)

예심에서는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가 검토확인된 경우 그대로 쓸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시작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 피심자심문, 예심종결과 같은 중요한 예심행위만을 진행하고 예심을 종결한다.

제150조(예심의 기간)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낸다.

검사, 판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안으로 끝낸다.

제151조(예심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52조(예심사건의 이송)

예심원은 자기 관할이 아닌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긴급히 필요한 예심행위를 한 다음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이송결정을 하여 관할법기관의 예심원에게 보낸다. 이 경우 피심자가 구류되어 있다면 사건이송 및 피심자이감결정을 한다.

제153조(관할지역밖에서의 예심)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할수 있다.

제154조(예심의 의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밖에서 범죄사건에 대한 개별적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의뢰할수 있다.

예심을 의뢰받은 예심원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곧 회보한다.

제155조(예심에 대한 감시)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예심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예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검찰소에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상급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2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추궁

제156조(예심의 시작)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한다.

예심원은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부터 24시간안으로 검사에게 알린다.

제157조(형사책임추궁)

예심원은 피심자의 확정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다. 이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58조(형사책임추궁결정과 변호인선정권리의 통고)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준다. 이 경우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고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힌다.

제159조(형사책임추궁결정서의 발송)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안으로 검사에게 보낸다.

제160조(형사책임추궁결정의 변경, 취소, 추가)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이후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변경, 취소하거나 새로운 형법조항을 추가하여 적용할 사유가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낸다.

제3절 피심자심문

제161조(피심자심문시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심문한다.

제162조(피심자심문시간)

피심자심문은 8~20시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규정된 시간밖에도 피심자를 심문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163조(피심자의 소환 및 구인)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예심장소에서 심문하려는 예심원은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심자를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164조(피심자호송)

구류한 피심자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한다.

피심자의 호송은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원이 한다.

제165조(피심자체포의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체포의뢰결정을 한다.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낸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한다.

제166조(강제적인 심문의 금지)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수 없다.

제167조(피심자심문의 개별화)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경우 서로 편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피심자가 없는 장소에서 피심자를 심문한다.

제168조(피심자의 권리통고)

피심자를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피심자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169조(피심자의 권리)

예심에서 가지는 피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지적된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2. 예심원이 추궁하는 범죄를 인정할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반증하거나 정확히 조사해명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3. 예심원을 비롯한 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4. 자기의 진술을 심문조서에 직접 쓰거나 심문조서의 내용을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5.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170조(피심자의 진술과 예심원의 질문)

예심원은 피심자를 심문하는 경우 그에게 형사책임추궁인정여부와 범죄에 대하여 먼저 말하게 하고 필요한 질문을 한다.

제171조(피심자심문에 기록수 및 립회인참가)

피심자심문에는 기록수가 참가한다.

예심원은 필요에 따라 피심자심문에 2명의 립회인을 세울수 있다.

제172조(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 또는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심문)

예심원은 조선말을 모르는 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통역을, 병어리, 귀머거리피심자를 심문할 경우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수 있는자를 붙인다. 이 경우 통역인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통역인 또는 해석인을 심문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173조(피심자심문조서의 작성)

피심자를 심문한 경우 심문조서를 작성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것을 그대로 적는다.

필요에 따라 피심자에게 진술내용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174조(피심자심문조서내용의 확인)

예심원은 피심자심문을 끝내면 피심자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그가 말한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본다.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하면 거부하고 조서에 밝힌다.

심문조서에는 피심자의 지장을 받는다. 피심자가 심문조서에 지장을 찍지 않겠다고 할 경우 그 사실을 조서에 밝힌다.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제175조(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관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제176조(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어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어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7조(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8조(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9조(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80조(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1조(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자를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범죄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82조(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려준다.

제183조(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2. 자택구속처분
3. 지역구속처분

제184조(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5조(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고철에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6조(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7조(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최고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수 있다.

제188조(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189조(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를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190조(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수 있다.

제5절 검증과 심리실험

제191조(검증, 검진의 목적)

예심원은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범죄사건과 관련된 흔적,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제192조(검증의 종류)

검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장검증
2. 증거물검증
3. 죽은 사람에 대한 검증
4. 산 사람에 대한 검진

제193조(범죄현장에서 증거물검증)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을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검증할 수 있다.

제194조(검증의 동의)

검증에 필요할 경우에는 임자의 동의를 얻어 묘를 파거나 물건을 파괴할 수 있다.

임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검증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95조(검진결정서 및 검진말김결정서의 작성)

검진하려 할 경우에는 검진결정서를 만든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검진을 맡길 때에는 검진말김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96조(검증, 검진의 시간)

검증, 검진은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검증,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97조(검진결정서의 제시)

검진을 하는자는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검진결정서 또는 검진말김결정서를 검진을 받을자에게 제시한다.

제198조(검증, 검진의 립회)

검증, 검진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녀성에 대한 검진의 립회는 녀성을 시킨다.

제199조(검증에 감정인의 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다.

제200조(검증, 검진조서의 작성)

검증, 검진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

진을 붙일수 있다.

수사원, 예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검진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든다.

제201조(심리실험의 사유)

보거나 듣거나 일정한 행위의 가능성여부와 그러한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이루어질수 있었겠는가를 검토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수 있다.

제202조(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

심리실험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검토확인하여야 할 행위나 현상이 있는 당시와 같은 장소, 시간, 환경,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2.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여러번 하여야 한다.
3. 심리실험참가자에게 예심원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제203조(심리실험의 금지사유)

사람의 생명, 건강, 인격이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실험을 할수 없다.

제204조(심리실험조서의 작성)

심리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심리실험을 위한 조건보장정형, 심리실험과정, 결과를 밝힌다.

제6절 감 정

제205조(감정의 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긴다.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의무적으로 감정한다.

제206조(감정의 종류)

감정에는 법의학감정, 법정신병학감정, 법화학감정, 흔적감정, 필적감정, 탄도학감정, 기술감정, 회계감정, 인물감정 같은것이 속한다.

제207조(감정기관)

감정은 국가의 전문감정기관이 한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208조(감정의 의뢰)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감정말김결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낸다. 감정말김결정서에는 해명할 내용과 감정에 필요한 자료, 감정인의 의무, 허위감정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밝힌다.

감정을 맡길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넘겨준다.

제209조(감정의뢰에 대한 의무적리행)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10조(감정서의 작성과 회보)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곧 보낸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한다.

제211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12조(감정인의 통고)

감정을 맡길 경우에는 누구에게 맡긴다는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준다.

제213조(감정인심문)

감정을 맡긴 예심원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것이 있거나 감정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감정인을 심문할수 있다.

알함의 경우 이 법 제232조, 제233조에 따른다.

제214조(재감정)

감정에서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7절 수색과 압수

제215조(수색, 압수의 목적과 사유)

범죄자를 찾아내고 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한다.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를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압수는 사건해결에 의의있는 물건, 문서를 내놓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할수 있다.

제216조(수색, 압수의 승인)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색, 압수하려는 예심원은 수색, 압수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는다.

제217조(수색, 압수결정서의 제시)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수색, 압수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자에게 제시한다.

제218조(수색장소의 경비조직)

수색장소에는 필요한 성원으로 경비를 세울수 있다.

제219조(수색, 압수의 시간)

수색, 압수는 낮에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밤에도 수색, 압수를 할수 있다.

제220조(수색, 압수의 립회)

수색, 압수를 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수색, 압수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녀성의 몸을 수색할 경우에는 녀성을 립회시킨다.

제221조(외교적절차에 의한 수색, 압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것을 압수하려 할 경우에는 외교적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참가하며 대외사업일군과 해당 대표부의 대표자를 립회시킨다.

제222조(압수대상과 방법)

압수는 범죄와 관련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한다. 이 경우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이며 압수당한자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준다.

제223조(수색, 압수조서의 작성)

수색, 압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과정에 발견한 물건, 문서의 위치와 상태, 특징, 수량, 제기된 의견을 밝힌다.

제8절 증인심문

제224조(증인으로 될수 있는 사유)

증인으로서는 해당 범죄사건에 대하여 들었거나 보았거나 느낀것이 있는자가 될수 있다.

제225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조서를 수정, 삭제, 보충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26조(증인의 의무)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은 범죄와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며 예심원의 물음에 정확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227조(증인심문장소)

증인심문은 그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할수 있다.

제228조(증인의 소환 및 구인)

증인을 해당 장소에서 심문하려는 경우에는 소환장을 보낸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수 있다.

구인의 집행은 구인결정에 따라 예심원이 한다.

제229조(조선말을 모르는 증인, 병어리, 귀머거리증인심문)

조선말을 모르는자, 병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의 절차는 이 법 제 172조에 따른다.

제230조(증인심문의 개별화)

증인심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같은 범죄에 대한 증인들이 서로 견제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제231조(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심문)

14살에 이르지 못한자를 증인으로 심문할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킨다.

제232조(증인심문절차)

증인을 심문하는 예심원은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이유, 증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하여주고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예심원은 증인이 알고있는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고 그의 진술이 끝나면 필요한 질문을 할수 있다.

제233조(증인심문조서의 작성)

증인을 심문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 173조, 제 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9절 대질심문과 시별심문

제234조(대질심문의 사유)

같은 범죄에 대한 여러 진술자의 말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차이를 다른 방법으로 해명할수 없을 경우에는 대질심문을 한다.

제235조(대질심문에서 지켜야 할 요구)

대질심문을 하려는 예심원은 해명하려는 문제를 진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말며 그들이 공모하거나 다른 진술자의 위협이나 거짓진술의 영향을 받아 본의아닌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제기된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한다.

제236조(차이점을 밝히기 위한 질문)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의 진술이 끝나면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변하게 한다.

제237조(상대방의 진술에 대한 질문권의 보장)

예심원은 대면시킨자에게 상대방의 말에서 밝힐것이 있으면 밝히고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게 한다. 이 경우 예심원의 승인을 받게 한다.

제238조(대질심문조서의 작성)

대질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 제173조, 제174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한다.

제239조(식별심문의 목적과 요구)

범죄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가려내기 위하여 식별심문을 한다.

식별심문은 식별대상과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물건을 동시에 식별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한다.

제240조(식별대상특징의 사전료해와 식별정형확인)

예심원은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그가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자세히 물어보고 조서에 밝힌다.

식별과정에 식별자가 어떤 특징에 의하여 아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갈라냈는가를 묻고 그것을 확인한다.

제241조(식별심문의 립회)

식별심문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2조(식별심문조서의 작성)

식별심문을 하였을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에는 식별자가 증인인 경우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데 대하여 알려준 정형, 식별대상을 보이기 전에 식별자에게 알고있는 대상의 특징을 물어본 정형과 그에 대한 답변, 식별과정과 결과를 사실대로 밝힌다.

필요에 따라 식별자에게 식별한것을 조서에 직접 쓰게 할수 있다.

제 10 절 재 산 담 보 처 분

제243조(재산담보처분의 목적)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을 취급하는 예심원은 형벌집행을 위하여 재산담보처분을 한다.

재산담보처분은 범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국민의 재산상손해를 보상시켜주기 위해서도 할수 있다.

제244조(재산담보처분의 대상)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산몰수형을 줄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자의 재산
2. 손해보상청구에 책임있는 피심자 또는 피심자의 범죄에 대하여 물질적으로 직접 책임을 져야 할자와 그 련루자의 재산

제245조(재산담보처분의 시기)

재산담보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고 손해보상자를 확정 한 다음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항에 관계없이 재산담보처분을 할수 있다.

제246조(재산담보처분의 범위)

재산담보처분은 재산상가치가 있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청구가 제기된

량 또는 몰수할 재산량만큼 한다.

제247조(재산담보처분결정)

재산담보처분을 하려는 예심원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한다.

결정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8조(재산담보처분의 결정서제시와 립회)

재산담보처분을 하는 예심원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재산담보처분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자에게 제시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249조(재산담보처분조서의 작성)

재산담보처분을 한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준다.

재산보관자에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처분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다.

제250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또는 취소)

예심원은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 그것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것을 확증하면 해제 또는 취소결정을 한다.

제251조(재산담보처분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

재산이 없어 담보처분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조서를 작성한다.

제252조(썩거나 못쓰게 될 재산의 처리)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물건은 그 이유를 밝힌 결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결정서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사건 기록에 첨부한다.

제11절 예심의 종결

제253조(예심의 종결사유)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를 밝히는데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한다.

제254조(예심의 종결절차)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물어본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여준다.

제255조(검사의 예심종결참가)

예심의 종결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56조(예심종결조서의 작성)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것을 밝힌다.

제257조(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다음 곧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긴다.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제258조(권리침해에 대한 의견제기와 검사의 처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해석인, 립회인,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것을 알았을 경우 그날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제259조(권리침해의견에 대한 예심원, 검사의 처리)

예심원, 검사는 이 법 제258조 1항의 의견을 제기받았을 경우 48시간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 또는 검찰소장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찰소장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예심 또는 감시를 계속한다.

제5장 기 소

제260조(기소의 임무)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넘기는것이다.

제261조(기소의 기간)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 처리한다. 그러나 10일안에 검토처리할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제262조(기소를 위한 구류기간)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제263조(사건기록검토내용)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심을 두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2. 수사,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3.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제264조(범죄사건기소)

검사는 예심이 충분하고 옹계 진행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한다.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는 경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보낸다.

제265조(기소장의 작성)

범죄사건을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는 기소장을 작성한다.

기소장에는 작성날자,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조항과 형사소송법조항, 기소할 재판소를 밝힌다.

제266조(기소장에 첨부할 문건)

기소장에는 재판심리에 참가시켜야 할 피심자와 증인, 감정인의 이름과 사는 곳, 피심자를 구류(구금)한 날자와 구속되어있는 곳, 증거물, 손해보상청구와 재산담보처분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인다.

제267조(범죄사건을 예심에 돌려보내는 결정)

검사는 예심이 불충분하게 되어 기소할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제268조(반복기소의 금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할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해당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기소할수 없다.

제6장 제1심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재판소구성

제269조(제1심재판의 임무)

제1심재판의 임무는 재판심리를 통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것이다.

제270조(제1심재판의 공개)

제1심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271조(재판의 독자성보장)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을 법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272조(확정된 사실의 인정)

형사재판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이 범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확정한다.

제273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심재판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74조(재판소성원의 고착과 교체)

같은 범죄사건의 재판은 처음 구성하였던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도중에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75조(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의 참가)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검사나 변호인의 참가없이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276조(재판심리에서 재판장)

재판장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77조(재판심리에서 검사)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한다.

제278조(재판심리에서 변호인)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79조(법정 정면장식과 좌석배치, 재판복의 착용)

법정 정면벽가운데 윗부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걸며 그아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드리운다.

재판소성원은 법정 주석단자리에, 검사와 변호인, 증인, 피소자는 주석단아래의 좌측과 우측에 서로 마주한 자리에, 재판서기는 주석단아래의 가운데자리에 앉는다.

재판소성원은 재판할 때 정해진 재판복을 입는다.

제280조(피소자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재판심리의 참가를 거부하는 피소자는 구인 또는 구속하여 재판한다.

제281조(제1심재판을 위한 구류기간)

제1심재판을 위하여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5일이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제282조(법정에서 피소자구속금지)

법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항하거나 도망치려는 피소자는 구속할수 있다.

제283조(피소자의 의무)

재판심리에서 피소자는 물음에 답변하며 재판장의 승인없이 법정에서 떠날수 없다.

제284조(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 경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손해보상청구를 따로 할수 있다.

제285조(현지공개재판의 조직)

재판소는 균증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수 있다.

제286조(제1심재판기간)

제1심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낸다. 그러나 제1심재판기간에 재판심리를 끝낼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10일간 연장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낸다.

제287조(재판에 대한 검사의 감시)

검사는 재판에 참가하거나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재판이 법적질차와 요구에 따라 정확히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의 의견을 받은 경우 재판준비에서는 판사, 재판심리에서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절 재판준비

제288조(재판준비의 담당자)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재판준비판정을 한다.

제289조(사건기록의 검토내용)

재판준비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사,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2.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3.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4.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것은 없는가
5.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290조(범죄현장과 증거자료의 확인)

판사는 재판심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에 나가 범죄현장과 증거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 없다.

제291조(범죄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판정)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기소된 범죄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기소한 형법조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범죄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긴다.

제292조(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

재판심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기소장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범죄사건의 이송판정)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은 사건이송판정을 한다.

제294조(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내용)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에는 재판날자, 장소, 범죄사건명, 구성성원,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겠는가를 지적한다.

제295조(재판준비에서 검사의 의견처리)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이 법 제97조, 제107조, 제108조, 제116조, 제291조 2항, 제292조, 제293조에 따라 판정하려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항의를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판정서등본은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보낸다.

제296조(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한 검사의 항의)

재판준비에서 한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검사는 상급재판소에 항의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360조에 따른다.

제297조(기소장 및 판정서등본의 송달)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기소된 형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변호인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298조(재판심리날자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5일전에 인민참심원,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주며 증인, 감정인에게는 소환장을 보낸다.

재판심리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한다.

앞항의 경우 구인절차는 이 법 제228조에 따른다.

제299조(신청, 의견의 처리)

피심자가 기소된 다음 재판준비단계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

청과 의견은 사건을 맡은 판사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재판심리에서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신청과 의견은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3절 재판심리

제300조(제1심재판의 절차)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론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로 한다.

제301조(제1심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기소장 등본접수정형과 구금, 구류날자를 묻고 피소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302조(재판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주고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303조(오지 않은 증인, 감정인의 통고)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소환한 증인, 감정인이 오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 판정을 한다.

제304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검사가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판서기에게 기소장을 읽게 한다.

제305조(기소사실의 인정확인)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306조(심리순서의 확정)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정한다. 정한 심리순서는 법정에 알린다.

제307조(피소자심문순서)

피소자에 대한 심문은 먼저 피소자에게 자기 범죄를 말하게 한 다음 재판소가 정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308조(피소자에 대한 개별심문)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심리하는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피소자를 한사람씩 법정에서 불러다 심문할수 있다.

제309조(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에 대한 처분)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키는 피소자는 판정으로 법정에서 내보내고 사실심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310조(증인심문의 시작)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서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에게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311조(증인심문의 순서)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자가 먼저 심문하게 한다.

앞항에 지적된자의 심문이 끝나면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제312조(재심문 또는 대질심문)

필요에 따라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과 증인, 증인과 피소자를 대면시켜놓고 심문할수 있다.

제313조(심문받은 증인의 처리)

심문받은 증인은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 법정을 떠날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재판장은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문받은 증인을 사실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법정에서 내보낼수 있다.

제314조(증인심문의 중지)

사실심리에서 범위가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인심문을 그만둘수 있다.

제315조(재판심리에 감정인의 참가)

감정인을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316조(감정의뢰와 감정인심문)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전문과학기술지식이 필요한 경우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하는 절차는 이 법 제208조-제213조에 따른다.

제317조(재판심리에서 재감정)

재판소는 감정결과에 부족점 또는 의문이 있거나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다시 시킬수 있다.

제318조(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한다.

검사, 변호인도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를 검토할수 있다.

제319조(수사, 예심조서의 검토방법)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사실심리에서 수사,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수 있다.

제320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소는 범죄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작성하며 그것은 사실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321조(새 증거의 수집)

증거를 더 수집하려는 재판소는 사실심리를 정지하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322조(손해보상청구의 심리)

사실심리에서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다.

재판장은 손해보상청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게 손해보상청구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피소자에게 답변하게 한다.

제323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324조(론고와 변론의 순서)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25조(론고의 내용)

론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며 기소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제326조(변론의 내용)

변론은 형사소송법의 요구에 맞게 재판이 진행된 정형과 피소자의 법적권리정형, 기소된 범죄사실과 적용된 기소법조인정, 범죄의 원인과 찾아야 할 교훈, 피소자의 개준성 정도를 근거있게 밝히면서 형벌량정에서 참작하여 줄데 대한 내용으로 한다.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

제327조(보충론고와 변론)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으로 론고와 변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328조(론고와 변론의 기초)

론고와 변론은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된 증거에 기초한다.

제329조(피소자의 마지막말)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는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피소자의 마지막말에서 범죄사건의 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330조(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채택을 위한 협의를 한다.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331조(기소의 추가사유)

기소의 추가는 이미 기소된 범죄밖에 피소자에게 형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가 있다는것을 발견하였거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새로운 범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2조(기소의 추가시기)

기소의 추가는 재판준비, 재판심리에서 할수 있다.

제333조(기소의 추가절차)

재판소는 발견한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판정서에 지적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돌려보내며 범죄는 밝혀져있으나 형법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기소를 추가한 다음 재판심리를 계속한다.

제334조(기소의 변경사유)

기소의 변경은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형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335조(기소변경의 시기)

기소의 변경은 재판의 준비와 재판심리에서 한다.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에서도 기소의 변경을 할수 있다.

제336조(기소의 변경절차)

재판소는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거나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가볍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계속 심리하여 판결한다.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다름이 없으나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판정으로 고친 다음 피소자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룰수 있다.

기소된 피소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항을 형벌을 무겁게 줄수 있는 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37조(새 범죄자 및 범위반자에 대한 처리)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가 아닌 다른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거나 다른 범

적제재를 주어야 할 사실이 있다는것을 발견한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내거나 다른 제재를 주는 판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구속처분판정을 할수 있다.

제5절 관 결

제338조(판결의 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339조(판결채택의 참가성원)

판결의 채택에는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참가한다.

제340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2.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3.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것인가
5.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제341조(판결, 판정의 채택)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제342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유죄 또는 무죄판결을 한다.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이다.

제343조(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경우에는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할수 있다.

제344조(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재판소는 이 법 제1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을 한다.

제345조(무죄판결)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한다.

제346조(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한다.

제347조(피소자의 석방)

구류되어있는 피소자에게 무죄판결,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를 곧 놓아준다.

최고검찰소 소장과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제외한 앞항의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348조(증거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

판결, 판정을 한 경우 범죄의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의 처리는 이 법 제44조, 제250조에 따른다.

제349조(손해보상청구의 해결)

손해보상청구의 해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가 없거나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수 있다.

제350조(사건반송의 판정)

재판소는 판결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의심에서 범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 법의 원칙과 절차를 심하게 어겼다는것이 인정될 경우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51조(사건반송의 금지)

다른 증거를 더 수집하지 않아도 이미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재판을 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반송할수 없다.

제352조(판결서의 작성)

판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자,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부분에는 해당 판결이 의거하는 형사소송법조항, 그에게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한데 대하여 지적하며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처분문제 같은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것을 쓴다.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353조(판결서, 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354조(재판조서의 작성기간과 열람)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5일안으로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검사, 변호인은 재판조서작성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수정, 보충, 삭제할 내용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재판서기에게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355조(재판조서의 작성)

재판조서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행위
7. 재판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신청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356조(상소, 항의제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수 있다.

제357조(검사의 항의판할)

시(구역), 군검찰소 검사는 해당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 최고검찰소 검사는 각 도(직할시)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358조(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 항의를 할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재판소 제1심재판에서 채택한 판결, 판정
2. 제2심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정

제359조(상소절차)

상소를 하려 하는자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받은자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보낸다.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소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것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어줄수 있다.

제360조(항의절차)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낸다. 그러나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의 판결, 판정에 대한 항의서는 3일안으로 낸다.

제1심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보낸다.

항의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3일 그밖의 형벌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항의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항의를 할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것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어줄수 있다.

제361조(판결, 판정의 집행중지)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362조(제1심판결, 판정의 확정)

제1심판결, 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기간이 지났을 경우
2.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지지하였을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 판정을 내렸을 경우

제7장 제2심재판

제363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364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65조(제2심재판기간)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안으로 심리해결한다. 로동단련형사건은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끝낸다.

제366조(제2심재판심리에 검사, 변호인참가)

제2심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피소자,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367조(사건기록의 발송과 검사의 검토기간)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 검사는 로동단련형을 적용한 사건기록은 2일 그밖의 사건기록은 10일간 검토할수 있다.

제368조(제2심재판날자의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369조(제2심재판심리의 범위)

제2심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되지 않은 사실에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한다.

제370조(제2심재판심리의 절차)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을 알리고 제1심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리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성원들에게 의견을 말하게 한다.

제371조(제2심재판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재판심리를 끝낸다는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

제372조(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판정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2.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3.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4.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제373조(판정의 채택)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 그것을 읽는다.

판정서를 읽을 때 검사와 변호인도 참가한다.

제374조(제1심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채택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375조(범죄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수사,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심하게 어겼거나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형법조항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경우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376조(범죄사건의 이송)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판결을 어기고 채택한 판결, 판정을 취소하였을 경우 범죄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보내는 판정을 한다.

제377조(범죄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한다.

제378조(판결의 변경)

제2심재판소에서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1심재판소가 형법조항을 형벌이 무겁게 규정된 조, 함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형벌을 지나치게 무겁게 적용한 경우
3. 제1심재판소가 응당 적용하여야 할 부가형벌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4. 손해보상청구심리에서 사실인정은 옳바로 하였으나 판결을 잘못 내린 경우

제379조(반송사건에 대한 재판심리)

제2심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0조(불이익변경의 금지와 허용)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범죄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 판결을 한 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없다. 그러나 피소자는 형벌이 무겁다고 상소하였고 검사가 형벌이 가볍다고 함의한 범죄사건으로서 처음 정한 형벌보다 무겁게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죄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재판소가 해당한 형벌을 줄수 있다.

제381조(부대판정)

제2심재판소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판정으로 지적할수 있다.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2조(재판결과에 통지)

제2심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준다.

제8장 비상상소심과 재심

제1절 비상상소심

제383조(비상상소심의 임무)

비상상소심의 임무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

로잡는것이다.

제384조(비상상소심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385조(비상상소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86조(판사회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해결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 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판사회의판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이상 이 찬성하여야 채택한다.

제387조(검사의 비상상소심참가)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388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389조(비상상소의 제기기간)

비상상소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비상상소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수 있다.

제390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의 제기는 범죄사건의 처리에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판결, 판정이 확정된 사건기록에 나타나있을 경우에 한다.

제391조(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는 범죄사건)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이미 집행한 형벌이 낫다는 리유로 비상상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수 없다.

제392조(비상상소의 제기신청)

비상상소를 제기할 범죄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393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요구)

최고재판소 소장파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

에서 처리한 범죄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394조(판결, 판정집행의 정지)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해당 재판소를 통하여 정지시킬수 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이나 집행중에 있는 판결, 판정은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395조(비상상소의 제기)

최고재판소 소장과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제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비상상소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최고재판소 소장이 제기한 비상상소사건은 비상상소심을 하기 전에 사건기록을 최고검찰소에 보낸다.

제396조(비상상소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397조(비상상소심의 범위)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98조(비상상소의 심리절차)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최고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399조(비상상소사건의 처리)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이 법 제374조-제378조에 따라 범죄사건을 처리한다.

제400조(판정의 집행시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01조(비상상소심결과의 통지)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준다.

제2절 재 심

제402조(재심의 임무)

재심의 임무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잡는것이다.

제403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404조(재심의 기간)

최고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05조(검사의 재심참가)

재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제406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07조(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제기는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수 있다.

제408조(재심제기의 사유)

재심제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것이 알려진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

제409조(재심제기의 신청)

재심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2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재심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최고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검사가 재심제기사유를 직접 얻었을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

제410조(판결, 판정집행정지)

최고검찰소 소장은 필요에 따라 최고재판소 소장을 통하여 재심을 제기하기 위해 사건기록을 요구한 범죄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제411조(재심의 제기와 거부)

최고검찰소 소장은 재심의 제기신청이 정당할 경우 재심제기서를 만들어 사건기록과 함께 최고재판소에 보낸다.

재심제기신청이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사건기록을 돌려보낸다.

제412조(재심날자의 통지)

최고재판소는 재심날자를 재판하기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413조(재심의 범위)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심리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것을 심리해결한다.

제414조(재심사건의 심리)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415조(재심사건의 처리)

최고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검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내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제기를 거부하고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안으로 알려준다.

제416조(재심판정의 집행시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한다.

제417조(재심결과의 통지)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안으로 재심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낸다.

제9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418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사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제419조(집행문건의 발송)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2일안으로 집행문건을 해당 형벌집행기관에 보낸다.

제420조(판결, 판정집행에 대한 감시)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421조(사형판결의 집행)

사형판결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사형집행지휘문건은 최고재판소가 발급한다.

제422조(사형집행결과의 회보)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은 사형을 집행하고 결과를 3일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알린다.

제423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 판정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해당 형벌집행기관이 한다.

제424조(형기의 계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한다.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어있었을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고있는자가 형벌집행기관 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한다.

제425조(선거권박탈형 및 벌금형의 집행)

선거권박탈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화가 한다.

벌금형의 집행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26조(자격박탈형 및 자격정지형의 집행)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의 집행은 기본형벌집행이 끝난 다음 형벌집행기관이 보낸 판결서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한다.

제427조(재산몰수형의 집행)

재산몰수형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붙이고 몰수당한자에게는 몰수재산목록등본을 준다.

재산몰수형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8조(손해보상재산의 집행)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의 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손해보상재산목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재산임자에게 주고 손해보상청구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은 해당 재판소의 판사가 3일안으로 해결한다.

제429조(재산의 강제집행)

재산임자가 재산몰수형, 손해보상을 위한 재산집행을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한다.

제430조(형벌집행의 중지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중지한다.

제431조(형벌집행의 기각사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고칠수 없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죽은 경우에는 형벌집행을 기각한다. 이 경우 범의감정을 한다.

제432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제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하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을데 대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검찰소소장에게 한다.

검찰소소장은 제기받은 내용을 검토확인하고 그것을 부결하거나 해당 재판소에 제기한다.

제433조(형벌집행의 중지 및 기각, 만기전석방의 심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집행을 중지 및 기각시키거나 형기가 끝나기 전에 내놓는것은 해당 재판소가 검사의 참가밑에 10일안으로 심리해결한다.

제434조(형벌집행중지를 받은자의 처리 및 관리)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게는 의료처분을 적용하거나 자택구속처분을 적용한다.

형벌집행을 중지받은자에 대한 관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제435조(형벌집행중지의 해제)

해당 재판소는 형벌집행을 중지하였던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에게 형벌집행중지사유가 없어진 경우 그것을 해제하는 판정을 한다.

형벌집행중지기간은 형벌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436조(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리)

형벌집행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지중에 있는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의 취급시작은 이 법 제82조에 따른다.

제437조(판결, 판정집행과 관련한 신청의 심리날자 통지)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 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제438조(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청에 대한 재판심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 법

주체 79(1990)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주체 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4호로 수정
주체 88(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주체 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민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의 원칙)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적관리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맺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규률의 준수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관

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인민의 복리증진원칙)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재산관계자들의 편의보장원칙)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이나 그밖의 법률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민사관계 당사자들사이의 협력과 방조원칙)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국가, 사회이익의 존중원칙)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민사관련조약의 효력)

민사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11조(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공화국령역안에 창설된 합영, 합작기업 그밖에 법이 인정한 다른 나라 법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12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등록)

조직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창설된것으로 인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민사상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13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다.

제14조(대표자와 대리인에 의한 민사법률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1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가 관리하고있거나 소유하고있는 재산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16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병합과 분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경우 그의 민사상권리의무도 갈라지거나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해산을 결정한 경우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17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소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18조(민사법률관계 당사자로서의 국가)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한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공민의 민사권리능력)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수 없다.

제20조(공민의 민사행위능력)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것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조(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의 민사법률행위)

민사행위무능력자, 신체기능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성인의 민사행위무능력자인정은 재판절차로 한다.

제22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증할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증된 후 2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소식이 있을 때부터 5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을 때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로 인증할수 있다.

제23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의 취소)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증되었던 공민이 나라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증을 취소한다. 이 경우 변경된 재산관계는 취소할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취소시킬수 없다.

제3장 민사법률행위

제24조(민사법률행위의 형식)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말이나 서면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는다.

제25조(민사법률행위의 취소, 변경)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제26조(민사법률행위의 유효조건)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7조(무효한 법률행위의 효과)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28조(취소할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의 형태)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 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취소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9조(민사법률행위취소의 효과)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30조(민사법률행위의 효력)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민사법률행위의 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제32조(대리의 종류)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33조(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인은 대리를 위임한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대리를 위임한자에게 돌아간다.

대리를 위임한자는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자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제34조(대리의 위임형식)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의 임무)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제36조(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대리를 위임한자가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말로 한 대리의 위임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편 소유권제도

제1장 일반규정

제37조(소유권의 형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38조(소유권의 발생기초)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발생된다.

제39조(소유권자의 권한)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제40조(비법점유재산의 반환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점유하고있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소유권실현방해행위의 배제청구)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2조(공동소유권)

소유권은 여럿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하는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43조(공동소유재산의 분할)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 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제2장 국가소유권

제44조(국가소유의 성격과 원천)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제45조(국가소유권의 대상)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전시설

제46조(국가소유권의 담당자)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한 없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47조(국가소유권의 실현)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48조(국가소유권과 경영상관리권의 이전)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관리권만 넘어간다.

제49조(국가소유의 고정재산리용권)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

제50조(국가소유재산의 살림집리용권)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인민정권기관은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해당 재판소의 판결서등본에 기초하여 살림집리용권자를 새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51조(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52조(임자없는 물건의 소유권)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3장 사회협동단체소유권

제53조(사회협동단체소유의 성격과 원천)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사회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자체 투자로 마련한 재산, 사회협동단체의 생산물, 사회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사회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4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농기계, 배, 증소공장, 기업소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제55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56조(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이전)

사회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57조(사회협동단체소유재산의 반환청구)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4장 개인소유권

제58조(개인소유의 성격과 원천)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수 있다.

제60조(개인소유권의 담당자와 그 권한)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공민이다.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자유로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61조(가정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권)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제62조(개인소유재산의 반환청구)

공민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63조(상속권)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3편 채권채무제도

제1장 일반규정

제64조(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65조(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권리의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66조(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67조(채무리행의 방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하는 책임을 진다.

제68조(채무위반으로 생기는 손해방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여 생긴 손해가 커지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손해가 커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69조(채권채무관계에서의 값)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

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며 고의적으로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70조(여러 당사자들사이의 채권채무)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제71조(분할채권채무자의 권리의무)

분할채권자는 자기 몫의 리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 몫의 채무만을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2조(몫이 명백치 않은 분할채권의무)

분할채권자가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가 지는 의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그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제73조(연대채권채무자의 의무)

연대채권자는 저마다 채무의 전부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는 저마다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진다.

제74조(연대채권자, 채무자들사이의 관계)

채무를 전부 리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제75조(연대채권자의 청구권행사제한)

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연대채권자의 리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그것은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6조(연대채무의 면제)

채권자가 한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연대채무자의 몫은 적어진다.

제77조(채권채무의 양도)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78조(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채무리행당사자)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수 있

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80조(채무리행기간의 준수)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1조(채무리행방법)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제82조(채무리행에서 물건의 질)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수 있다.

제83조(특정물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의 채권채무)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84조(종류물의 특정물로의 전환)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때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85조(종속재산의 인도)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86조(채무리행장소)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돈으로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87조(보상한 파손물의 소유권)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88조(채권채무관계에서 선택권)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는 여러 행위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정할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89조(선택권행사의 지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90조(계약의 체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 때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없다.

제91조(계약의 합의조건)

계약당사자는 계약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공민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수 없다.

제92조(계약체결방식)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93조(계약의 형식)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는다. 말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말로 맺을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맺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94조(부동산거래계약)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95조(계약의 동시리행)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대상을 잡아둘수 있다.

제96조(계약의 취소)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97조(계약대상의 검사)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그것을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98조(계약대상의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점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99조(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한 책임)

계약대상을 점유하고있는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에게 허물이 없거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대상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00조(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맺을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맺은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101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제102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설정)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03조(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104조(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변경)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105조(자재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06조(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07조(자재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자재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그것을 주고받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08조(자재공급방법)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109조(공급된 자재의 검수)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110조(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11조(계약된 자재의 공급조절)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량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

제112조(자재값의 청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수 있다.

제113조(상품공급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옹계 련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상품공급계약당사자의 의무)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15조(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116조(상품공급계약의 합의조건)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17조(상품공급방법)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118조(공급된 상품의 검수)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0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제119조(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처리)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1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한다. 신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을 넘겨받은 때부터 3개월안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20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체결)

수매기관이 국가의 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1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당사자의 의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하는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122조(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합의조건)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는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23조(수매품의 질과 규격)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의 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에 수매계획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4조(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 그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125조(수매기간)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26조(수매할 농산물의 검사)

수매기관은 농산물의 질을 정확히 검사하고 그 량을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다.

제127조(수매한 농산물의 보관)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제128조(기본건설시공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29조(기본건설시공계약당사자의 의무)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제때에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130조(기본건설시공계약의 합의조건)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는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131조(건설조건외 보장)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수 있다.

제132조(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준수)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3조(공사실적의 확인)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제때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134조(건설물의 인계인수)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하는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다.

제135조(건설물의 보증)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 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비용은 허물있는자가 부담한다.

제136조(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할 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한다.

제137조(화물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138조(화물수송계약의 합의조건)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는 짐의 이름, 수송량, 보내는 곳과 닿는 곳,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과 보내는자, 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139조(짐과 운수수단의 보장)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40조(짐을 싣고부리는 작업)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것이 없는 한 짐임자가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141조(짐의 보관관리)

운수기관은 짐받을자에게 짐을 넘겨줄 때까지 잘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운수기관은 나르는 짐을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제142조(수송기간의 준수)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143조(도착짐의 통지)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가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144조(도착짐의 검사)

짐받는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당한 리유없이 사고조서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45조(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화물의 수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것은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른다.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제146조(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의 목적)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147조(계약을 체결할수 없는 대상)

국가에 승인받아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48조(팔고사기계약의 체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49조(팔고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판다는것을 알면서 맺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50조(소매계약당사자)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151조(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

신용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자는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152조(수매계약대상과 당사자)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회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사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153조(수매계약기간의 준수)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수매시키는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54조(수매품의 수송)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 운반을 담당하는자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155조(시장에서 팔고사기계약)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156조(작업봉사계약의 체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 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57조(작업봉사계약당사자의 의무)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58조(작업봉사계약의 체결시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159조(작업맡기는자의 의무)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수 있다.

제160조(작업에 필요한 자재, 부속품의 보장)

작업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작업하는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161조(작업대상물의 취급)

작업하는자는 작업맡기는자가 낸 작업대상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작업대상의 구조변경금지)

작업하는자는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쓰지 말아야 한다.

제163조(작업기간의 준수)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말긴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164조(작업의 질보장)

작업하는자는 작업결과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한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한 책임진다.

제165조(작업결과를 넘겨받을 의무)

작업말긴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한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66조(보관계약의 체결)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상편리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한다.

제167조(보관계약당사자의 의무)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168조(보관계약의 체결시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제169조(물건을 보관시키는자의 의무)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170조(물건을 보관하는자의 의무)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제171조(업무수행과 관련한 물건의 보관)

려관, 극장, 회관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보관시킨자가 따로 보관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2조(보관물을 찾을 의무)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173조(보관물을 원상대로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제174조(보관물을 정확히 돌려줄 의무)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는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175조(법적의무없이 하는 재산의 보관관리)

공민은 법적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 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 받을수 있다.

제176조(법적의무없이 보관관리하는 재산의 처리)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7조(빌리기계약의 체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 행하여야 한다.

제178조(빌리기계약당사자의 의무)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 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는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 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179조(빌리기계약의 형식)

공민이 도서, 특허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제180조(쓸수 있는 상태의 물건을 빌려줄 의무)

빌려주는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 그 사실을 빌리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181조(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쓸 의무)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2조(빌린 물건의 수리)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83조(빌린 물건의 다시 빌려주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책임진다.

제184조(보증금을 설정한 빌리기계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맺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제185조(위탁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6조(위탁계약당사자의 의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제187조(위탁받은 행위수행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88조(위탁받은자의 의무)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자가 계약조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9조(위탁받은자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제190조(유리한 행위결과의 처리)

위탁받은자는 위탁한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191조(위탁행위결과에 대한 보수와 비용의 지불)

위탁한자는 위탁받은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92조(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재산거래에서 계약규범의 적용)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193조(려객수송계약의 체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려행은 렬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렬행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94조(려객수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렬행목적지까지 태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맺어진다.

제195조(려행조건의 보장)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6조(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보낼 의무)

운수기관은 손님을 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7조(표값반환 및 표사용기간의 연장)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 하거나 그를 태워갈수 없게 된 경우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198조(려행자의 권리)

려행하는 손님은 학령전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제199조(려행질서의 준수)

손님은 렬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200조(저금계약의 체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1조(저금계약당사자의 의무)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2조(저금하는 공민의 권리)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203조(저금하는 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줄 의무)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어느때든지 저금하는 돈을 맡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04조(저금의 비밀준수)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키고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205조(보험계약의 체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놓고있는 돈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06조(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 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맺어진다.

제207조(고의적인 보험사고)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주지 않는다.

제208조(허물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09조(인체보험료의 납부)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으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210조(인체보험금의 지불)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211조(재산보험료의 납부)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212조(재산보험사고의 통보)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213조(위임계약의 체결)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한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214조(위임계약당사자의 의무)

위임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자는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범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215조(위임할수 없는 행위)

양자관계나 유언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수 없다.

제216조(위임받은 범위의 준수)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217조(위임받은 행위과정에 생긴 손해의 책임)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위임한자앞에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도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자가 책임진다.

제218조(위임수행정형의 통보)

위임받은자는 위임한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19조(위임행위에 들인 비용의 보상)

위임한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0조(위임계약의 취소)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21조(꾸기계약의 체결)

공민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 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꾸기계약은 맺을수 없다.

제222조(꾸기계약당사자의 의무)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는 경우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맺어진다.

제223조(꾸기계약리행기간)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맺은 경우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
나 물건을 갚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꾸는 공민은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갚을수
있다.

제224조(꾸기계약의 리행대상)

공민은 꾸는 돈이나 물건을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다른 물건으로 갚을수 있다.

제225조(은행대부계약의 체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26조(은행대부계약당사자의 의무)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
에 맺어진다.

제227조(대부의 반환원천담보)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맺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228조(대부금을 지정된 항목에 쓸 의무)

대부받은자는 대부금을 튜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229조(대부금의 반환)

대부받은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더 높은 률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230조(합동작업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231조(합동작업계약당사자의 의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232조(합동작업계약의 합의조건)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는 작업대상, 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233조(합동작업대표의 선출)

계약당사자는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4조(합동작업결과물의 분할)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에게 작업실적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리득행위

제235조(부당리득의 반환의무)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236조(부당리득의 반환시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것을 안 때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37조(부당리득의 반환원칙)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38조(부당리득재산의 보관관리)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239조(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부당리득의 처리)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을 경우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4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

제1장 민사책임

제240조(민사책임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 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 단체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허물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1조(허물에 의한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허물이 있는자가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 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것으로 본다.

제242조(민사책임을 형태)

민사책임은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형태로 지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민사책임형태를 병합하여 지을수 있다.

제243조(행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간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제244조(부분적행위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16살에 이른 부분적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245조(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246조(비법점유재산의 반환)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점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7조(재산비법침해의 책임)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248조(인신침해의 손해보상)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사람의 존엄과 명예를 심히 훼손시켜 그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남긴 자는 시효에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249조(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에게 준 손해의 보상)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짐승의 임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떨어지거나 면제된다.

제250조(국토환경보호법규위반에 의한 손해의 보상)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1조(공동침해행위의 련대적책임)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2조(계약위반의 책임)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253조(계약을 량편 당사자들이 위반한 책임)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254조(계약의 변경, 취소시 손해보상)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5조(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에 의하여 끼친 손해의 책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6조(정당방위와 긴급피난시 책임면제)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리익

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7조(긴급피난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상)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그것으로 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58조(민사책임과 행정적, 형사적책임의 관계)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장 민사시효

제259조(민사시효의 적용)

민사상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재판, 중재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260조(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61조(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2년

제262조(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한 민사시효기간)

예산제기관, 기업소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그 청구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난것으로 본다.

제263조(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의 처리)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때에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64조(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민사상의무의 자발적리행)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제265조(민사시효기간의 정지)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기간의 계산은 계속된다. 나머지 시효기간이 3개월이 못될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한다.

제266조(민사시효기간의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공민호상간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혹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일반계약분쟁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267조(민사시효기간의 연장)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자가 민사시효기간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

제268조(민사시효의 의무적 적용)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69조(민사시효기간의 시작)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서는 채무가 생긴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수 있게 된 때

제270조(민사시효기간의 시작날자)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271조(민사시효기간이 끝나는 날)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 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3(1994)년 5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7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69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26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98(2009)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64

제1장 민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민사소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활동을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의 책임성과 소송당사자의 적극성결합원칙)

국가는 재판소의 책임성에 소송당사자의 적극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에서 민사소송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3조(민사소송당사자의 권리와 소송행위조건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한다.

제4조(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민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 에 제기되는 민사상권리, 이익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 이 또는 공화국재판소에 제기된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개인들사이의 분쟁해 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민사사건의 해결형식)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8조(민사사건조사심리의 기초)

민사사건에 대한 조사심리는 소송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소송제기에 기초하여 진행한다.

제9조(민사사건조사심리의 어문)

민사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에는 통역인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에는 해석인을 붙인다.

다른 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써낼수 있다.

제10조(재판심리의 공개)

민사사건의 재판심리는 공개한다.

국가 또는 국민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재판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제11조(재소송제기의 금지)

소송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같은 대상에 대하여 같은 근거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12조(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의 인정)

재판소는 민사재판에서 심리검토하여야 할 사실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민사사건취급처리에 참가하거나 소송상임무를 겸할수 없는 조건)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민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있을 경우 그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 참가할수 없다.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임할수 없다.

제14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5조(한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6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

소송당사자는 이 법 제13조-제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소에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수 있다.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를 시작한 다음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할수 있다.

제17조(소송관계자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의 처리)

재판소는 이 법 제13조-제15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제외한 그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꾼다.
2.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18조(민사사건의 처리기일)

재판소는 민사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제1심 사건은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하여 2개월안에 처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상급재판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제2심과 비상상소심, 재심, 판사회의사건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기간의 계산)

소송기간은 년, 월, 일로 정하며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소송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날의 24시까지로 하며 월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소송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 그런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 날이 지나면 끝나는것으로 본다.

소송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명절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끝난다.

제20조(소송문건의 인정)

소송장, 상소장을 비롯한 소송문건을 법이 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냈을 경우에는 그 기간안에 낸것으로 인정한다.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그 기간을 늘여줄수 있다.

제21조(소송비용)

소송비용에는 국가수수료와 문건송달에 필요한 우표값 같은것이 속한다.

제22조(재판준비, 심리에서 작성할 문건)

재판준비 또는 재판심리에서는 조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든다.

제3장 소송당사자

제23조(소송당사자의 자격)

소송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될수 있다.

소송당사자로 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송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당사자의 권리)

소송당사자는 재판심리에 참가하여 자기의 주장을 설명할수 있으며 필요한 신청을 하거나 사건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할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내놓고 그것을 조사하여 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증거조사에 참가할수 있다.

제25조(원고의 청구권포기와 그 범위의 변경)

원고는 제기한 청구를 포기하거나 그 범위를 변경할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는 서로 화해할수 있다.

원고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거주지변동의 통보)

소송당사자는 소송이 제기된 다음 거주지(소재지)를 옮겼을 경우 재판소에 알려야 한다.

제27조(소송당사자의 교체)

재판소는 원고로 될수 없는자가 제기한 소송이거나 피고로 될수 없는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자격있는 소송당사자로 바꿀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격있는 당사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인입할수 있다.

제28조(소송제기의 대상)

소송은 한 당사자 또는 여러 당사자가 한 당사자나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할수 있다.

공동원고나 피고는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며 소송행위를 다른 공동원고나 피고에게 맡길수 있다.

제29조(제3자의 소송제기)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는 그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이 법 제6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제3자는 원고가 가지는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제30조(제3자의 재판심리참가)

제기된 사건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재판결과에 대하여 리해판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자신의 요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이미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가할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포기, 승인, 변경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할수 없으며 판결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맞소송을 제기할수 없다.

제31조(소송상권리, 의무의 이전)

소송이 제기된 다음 민사상권리와 의무가 계약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갔거나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상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소송당사자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이미 진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소송행위의 방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공민은 소송행위를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33조(대리의 실현)

대리인을 통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소송행위를 맡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재판소에 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그 사실을 기록한 재판심리조서는 위임장을 대신한다.

제34조(위임장의 내용)

소송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청구를 포기, 승인하거나 소송당사자와 화해하며 돈 또는 물건을 주거나 받을데 대한 소송행위를 맡기는 경우 그 내용을 위임장에 밝혀야 한다.

제35조(소송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위임을 받은자, 법정대리인이 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행위능력이 없는자는 소송대리인으로 될수 없다.

제4장 증 거

제36조(증거수단)

증거로는 소송당사자의 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감정결과, 검증결과 같은것이 될수 있다.

재판소는 민사사건의 취급처리를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제37조(소송당사자의 주장과 필요한 증거제시)

소송당사자는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며 그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다른 증거를 더 내게 할수 있다.

제38조(재판소의 증거수집)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정확히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제39조(소송당사자의 증거제시시기)

소송당사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내야 한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증거는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낼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증거제출에 관한 재판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아 초래된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그 가 책임진다.

제40조(증거의 검토)

소송당사자가 내놓았거나 재판소가 수집한 증거는 사실심리에서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되어야 판단과 해결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41조(증거의 수집의뢰)

재판소는 관할지역밖에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을 해당 재판소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재판소는 의뢰서에 지적된 기간안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보내야 한다.

제42조(증인의 자격)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의있는 사실을 알고있는자가 될수 있다.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해당 사실을 옳게 리해할수 없거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수 없는자는 증인으로 될수 없다.

제43조(증인의 권리)

증인은 알고있는 사실을 직접 써내거나 말로 할수 있으며 진술내용이 잘못 기록된 경우 그에 대하여 고쳐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4조(증인의 진술의무)

증인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야 한다.

제45조(증인의 소환)

재판소의 부름을 받은 증인은 소환장에 지적된 곳으로 제때에 와야 한다.

증인이 재판소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제46조(증거문서, 증거물의 제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증거문서나 증거물을 제때에 내야 한다.

증거문서원본을 낼수 없을 경우에는 사본을 낼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감정의 의뢰)

재판소는 사건내용을 밝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 판정으로 감정을 맡길수 있다.

감정을 맡기는 판정서에는 감정대상과 내용, 기간을 밝히며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과 그의 의무를 지적하여야 한다.

제48조(감정기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에 맡긴다.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자격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49조(감정인의 권리)

감정인은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으며 다른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판사의 승인밑에 감정인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에게 감정에 필요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현장검증에 참가할수 있다.

제50조(감정인의 의무)

감정인은 말은 감정을 정확히 하고 감정서를 재판소에 내며 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재판심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1조(재감정)

재판소는 감정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정으로 다시 감정을 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수 있다.

제52조(증거보존의 신청)

소송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말, 증거문서, 증거물 같은것을 증거로 보존하여줄것을 재판소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소는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증거를 수집하고 조서를 만든다.

제5장 재판관할

제53조(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할 사건)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로 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산분쟁사건
2. 리혼사건
3.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한 사건
4. 민사상권리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에 대한 확인사건
5. 이밖에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사건

제54조(각급 재판소의 관할)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관할지역안의 시(구역), 군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과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을 재판하며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에 속하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의 외국법인, 외국인이 당사자로 나서는 민사사건은 지대안의 재판소가 재판한다.

최고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제55조(피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거주지(소재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6조(원고거주지재판소의 관할)

다음의 사건은 원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개별적공민을 상대로 하는 재산청구사건
2.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3.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4. 1살이 되지 못한 어린이를 가졌거나 여러명의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가 제기하는 사건
5. 교화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6.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사건

제57조(법률행위지, 계약리행지재판소의 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재판은 법률행위지 또는 계약리행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8조(부동산청구사건의 재판관할)

부동산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은 그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59조(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재판관할)

수송기관을 상대로 하는 짐수송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은 짐이 닿아야 할 곳이나 짐이 닿은 곳 또는 짐을 부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제60조(맞소송, 제3자가 제기한 사건의 재판관할)

소송당사자가 맞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3자가 소송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이미 심리를 시작한 재판소가 한다.

제61조(사건의 이관)

재판소는 이 법 제55조-제59조를 어기고 제기한 사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 사건을 해당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재판심리를 시작하였거나 다른 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다른 재판소에 넘길수 없다.

제62조[시(구역), 군인민재판소관할사건의 이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다른 재판소에 보내어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도(직할시)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보낼수 있다.

사건을 다른 도(직할시)안의 재판소에 보내려 할 경우에는 최고재판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소송의 제기

제63조(소송제기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사상권리,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검사는 국가와 사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소송장의 제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재판소에 소송장을 내야 한다.

제65조(소송제기날자의 인정)

소송은 당사자가 낸 소송장을 재판소가 접수한 날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소송장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낸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한다.

소송장이외의 소송문건을 우편 또는 기요문서로 보낸 경우에도 소송장을 보냈을 때와 같이 인정한다.

제66조(소송장의 내용)

소송장에는 재판소의 명칭, 소송당사자의 이름, 나이, 성별, 직장직위, 주소, 청구내용과 그 근거로 되는 사실, 해당한 증거를 써넣는다.

제67조(소송장의 첨부문건)

소송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첨부한다.

1. 피고의 수에 해당한 소송장의 사본
2. 소재불명자를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는 공증기관의 인증문건
3. 재산을 갈라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목록
4. 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5. 문서의 송달에 필요한 우표
6. 국가수수료납부증

제68조(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 사건)

다음의 사건은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사건
2. 건강에 해를 주었거나 생명에 위험을 준 것과 관련한 손해보상청구사건
3. 범죄행위로 입은 손해보상청구사건
4. 검사가 제기하는 사건

제69조(맞소송의 제기)

피고는 제기된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소송은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법 제64조, 제66조-제67조의 절차에 따라 제기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재판심리를 시작한 다음에도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0조(소송장의 검토, 불비점퇴치)

재판소는 원고가 낸 소송장을 검토하고 이 법 제66조-제67조에 규정된 요구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필요한 기간을 정해 주어 불비한 점을 고치게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불비한 점을 고친 경우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처음 받은 날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장의 불비한 점을 정해진 기간안에 고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장을 돌려보낸다.

제71조(소송의 거부)

재판소는 제기된 소송의 내용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다.

제72조(소송의 거부에 대한 의견제기)

소송당사자는 재판소가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았거나 소송의 제기를 거부한데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3조(사건의 병합, 분리)

재판소는 자기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합치거나 갈라 재판할수 있다.

제7장 재판준비

제74조(재판준비담당자)

민사사건을 신속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준비를 한다.

재판준비는 사건을 맡은 판사가 한다.

복잡하고 중대한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소장의 승인을 받아 판정으로 재판준비에 다른 판사를 인입할수 있다. 이 경우 인입된 판사는 소송당사자를 만나거나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에 참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75조(소송장사본, 답변서의 송달)

판사는 원고가 낸 소송장의 사본을 2일안으로 피고에게 보내며 그에게 소송장사본을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답변서를 내게 한다.

답변서는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그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다.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안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재판준비와 심리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6조(증거수집, 수속상문제의 해결)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수속상문제를 해결한다.

증거수집과 관련한 증인진술을 받을 경우 판사는 증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소송당사자면담)

판사는 재판준비를 위하여 소송당사자를 만날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해결에 지장을 줄 경우 그를 구인하는 판정을 할수 있다.

구인판정의 집행은 제45조 3항에 따른다.

제78조(감정의 의뢰, 현지조사)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감정을 맡기며 현지조사를 할수 있다. 그러나 증

인을 맞대어놓고 사실사정을 입증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79조(현장의 검증)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현장검증을 할수 있다.

현장검증에는 소송당사자와 소송관계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제80조(증거수집, 현장검증조서의 작성)

판사는 증거물을 수집하였거나 현장검증을 하였을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한 차례로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 록화물 같은것을 첨부할수 있다.

제81조(재산담보처분)

판사는 사건을 받은 때부터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어느 단계에서나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자기의 결심에 따라 판정으로 피고의 재산을 담보처분할수 있다.

담보처분은 해당 재산이 없이는 판결의 집행을 보장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당 재판소집행원이 한다.

제82조(재산담보처분의 해제, 취소)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것이 입증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판정으로 해제 또는 취소한다.

제83조(재판준비의 중지)

다음의 사유가 제기되면 판정으로 재판준비를 중지한다.

1.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2. 소송당사자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3. 재판, 중재 또는 행정적절차에 따라 취급되고있는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는 해당 사건을 해결할수 없을 경우
4.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84조(재판준비중지의 해제)

재판소는 이 법 제83조 1~2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 때부터, 3~4호의 경우 재판준비를 중지한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3개월안으로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소의 결심에 따라 재판준비를 계속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그 준비를 계속한다.

제85조(소송취소신청의 승인)

판사는 원고의 청구포기 또는 소송당사자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소송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을 판정으로 승인한다.

제86조(사건의 기각)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사건을 기각한다.

1. 중재, 행정적절차로 처리할 사건인 경우
2.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사건인 경우
3.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되었으나 그를 자격있는자로 바꿀수 없는 사건인 경우

4. 소송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의 권리, 의무를 다른자에게 물려줄수 없는 사건인 경우
5.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병사, 사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사건인 경우
6. 피고가 임신중에 있거나 1살에 이르지 못한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리혼사건인 경우
7. 리혼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확정된 때부터 1년이 못되는 리혼사건인 경우
8. 소송행위를 계속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을 경우

제87조(사건기각판정에 대한 상소)

재판준비단계에서 내린 사건기각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88조(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판정서에는 재판심리날자와 장소, 재판심리에 부를 증인, 감정인,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같은것을 밝힌다.

제89조(재판심리날자와 장소의 통지)

판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7일전에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을 보내며 검사, 소송당사자 그밖의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심리날자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2일전에 재판소에 사건기록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90조(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방법)

재판소는 재판심리날자를 알리는것을 비롯하여 소송행위와 관련한 통지를 서면으로 하며 통지서와 소송문건을 직접 본인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낸다.

제91조(재판준비조서의 작성)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재판준비에 재판서기를 참가시켜 조서를 만들게 할수 있다.

제8장 재판심리

제92조(재판소구성)

재판심리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신체기능장애자, 소재불명자, 로동교화형을 받고있는자를 상대로 제기된 리혼청구사건과 판결, 판정, 대외경제중재재결의 집행 또는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의 심리는 판사 혼자서 할수 있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93조(한 사건의 재판심리성원)

한 사건의 재판심리는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94조(검사의 재판심리참가)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제95조(재판장의 지위)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소송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96조(재판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재판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소송당사자를 확인한다.

제97조(결석심리, 사건기각)

피고나 제기자 일방이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고나 제기자 일방의 참가없이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원고가 재판심리에 호출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한다. 이 경우 소송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98조(소송상권리와 의무의 통고)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제99조(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의 참가정형을 확인한다.

증인,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검사와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재판심리를 계속하거나 미룬다.

통역인, 해석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0조(소송관계자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소송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인,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 문제를 해결한다.

제101조(새 증거, 다른 증거의 신청)

재판장은 소송당사자에게 새로운 증거를 내거나 다른 증인을 부르거나 그밖의 신청이 없는가를 묻고 제기된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한다.

제102조(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심리중지)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 같은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판정으로 재판심리를 미룬다.

제103조(사실심리의 시작)

재판장은 사실심리를 시작한다는것을 알린 다음 원고에게 주장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고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제104조(사실심리순서의 결정)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묻고 사실심리순서를 정한다.

제105조(소송당사자의 심리순서)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의 차례로 하며 그것이 끝나면 소송당사자에게 서로 질문하게 한다.

감정인은 재판장의 승인밑에 소송당사자에게 질문할수 있다.

제106조(증인의 심리)

증인에 대한 심리는 순서에 따라 1명씩 법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소송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는것을 알려준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말하게 한다.

제107조(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질문)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 증인을 심리하여줄것을 요구한 소송당사자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며 그다음 상대편 당사자에게 질문하게 한다.

다른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질문할수 있다.

재판소는 이미 심리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리하거나 증인을 맞대어놓고 심리할수 있다.

제108조(미성년증인의 심리)

재판소는 미성년을 증인으로 심리할 경우 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원 그밖의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제109조(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의 증인심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미루는 경우 참가한 증인을 심리하고 다음번 재판심리에 부르지 않을수 있다.

제110조(심리받은 증인의 처리)

증인은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 정해진 장소를 떠날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송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심리한 증인을 재판심리가 끝나기 전에도 보낼수 있다.

제111조(수집, 보존한 증거의 검토)

재판소는 이 법 제41조, 제52조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거나 증인을 심리한 경우 사실심리에서 그 조서를 읽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112조(증인심리의 중지)

재판소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송당사자와 검사의 의견을 묻고 증인에 대한 심리를 그만둘수 있다.

제113조(감정인의 심리)

감정인에 대한 심리는 먼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정결과를 말하게 한 다음 물어보는 방법으로 한다.

소송관계자는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인에게 물어볼수 있다.

감정인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읽고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4조(감정의뢰, 재감정)

재판소는 사실심리과정에 감정을 할 필요가 제기되거나 이미 한 감정을 다시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판심리를 미루고 판정으로 감정을 맡긴다.

제115조(증거물, 증거문서의 심리)

증거물과 증거문서에 대한 심리는 그것을 법정에서 내놓고 해당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6조(현장검증, 증거자료의 확인)

재판장은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의 위임에 의하여 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어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수 있다.

제117조(재판심리과정에 나타난 사유의 해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3조, 제85조-제86조에 지적된 사유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심리하고 해당하는 판정을 한다.

제118조(리혼사건심리에서 해결문제)

재판소는 리혼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또는 가정재산을 가르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리혼당사자 일방에게 일정한 기간 부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양의무 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제119조(소송비용부담문제의 심리)

재판소는 소송비용과 그 부담문제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120조(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의 보충질문)

재판장은 인민참심원, 검사, 소송당사자에게 더 보충하여 물어보게 한다.

제121조(사실심리의 종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전면적으로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소송당사자, 인민참심원, 검사에게 사실심리를 끝마치는데 의견이 없는가를 묻고 인민참심원들과 합의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것을 알린다.

제122조(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청취)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난 다음 소송당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검사에게 사건 해결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게 한다.

소송당사자가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심리를 다시 한다.

제123조(재판심리종결의 통고, 판결채택의 합의)

재판장은 재판심리가 끝나면 그에 대하여 소송관계자들에게 알리고 판결을 채택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로 간다.

제124조(재판심리조서의 작성)

재판서기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심리조서를 만든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5.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6. 재판심리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소송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
9. 소송당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
10. 검사의 의견

제125조(재판심리조서에 대한 소송당사자, 검사의 의견과 그 처리)

소송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심리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철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경우 판정으로 재판심리조서를 고치게 하며 부당할 경우 이유를 붙인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9장 판결, 판정

제126조(판결의 채택조건)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다고 인정되면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채택한다.

판결의 채택에는 그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127조(판결채택에서 토의결정할 문제)

재판소는 판결을 채택할 경우 다음의 문제를 토의결정한다.

1. 소송당사자의 청구사실과 답변이 근거가 있는가.
2. 어느 법규범을 적용하며 청구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3. 증거물과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4. 위법행위를 한자에게 어떤 제재를 줄것인가.
5. 소송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시킬것인가.

제128조(판결의 채택방법)

판결의 채택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129조(판결의 종류)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청구를 승인하는 판결
2. 청구를 거부하는 판결

제130조(담보처분한 재산, 증거문서, 증거물의 처리)

재판소는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증거문서,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주지 말아야 할것은 기록에 붙이거나 몰수하고 그밖의것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증거물을 임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31조(소송비용문제의 해결)

재판소는 소송비용을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의 청구를 승인한 경우 피고에게, 거부한 경우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2. 이 법 제68조에 규정된 사건의 청구가 승인된 경우에는 국가수수료를 피고에게 물릴수 있다.
3. 소송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1호에 관계없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수 있다.

제132조(판결의 채택날자)

판결은 재판심리가 끝나는 날에 내린다.

제133조(판결서의 내용)

판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힌다.

1. 재판심리날자와 재판소명칭
2. 재판소성원, 재판심리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과 재판심리장소,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4. 소송당사자의 이름과 간단한 신분관계
5. 원고의 청구사실과 피고의 답변
6. 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증거
7. 판결에서 의거한 법규범
8. 청구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론
9. 담보처분한 재산과 증거물의 처리정형
10. 소송비용의 부담
11. 판결, 판정의 집행방법과 상소, 항의절차

제134조(판결의 선고)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35조(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리혼당사자와 사건관계자가 범질서를 어기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면서 사회적분위기를 흐리게 한것을 비롯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한 제재를 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위법행위의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고 위법자료를 검사 또는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준다.

제136조(판정으로 채택할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판정으로 해결한다.

1. 사건을 이송하거나 소송당사자를 바꾸는 경우
2. 판사가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거나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처리를 끝맺는 경우
3. 재판심리절차상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4. 소송관계자의 신청을 해결하는 경우
5. 재판심리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
6. 대외경제중재기관의 재결집행신청을 해결할 경우

제137조(판정의 채택절차)

판정의 채택은 판결의 채택절차에 따른다.

재판심리절차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처리하는 판정은 재판심리조서에 적어넣는 방법으로 한다.

제138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금지과 변경)

제1심재판소는 이미 내린 판결, 판정을 취소할수 없다. 그러나 이 법 제136조 4호에 해당하는 판정과 자녀양육당사자결정, 자녀양육비, 부양료청구와 관련하여 내린 확정된 판결, 판정은 교칠수 있다.

제139조(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상소, 항의를 할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40조(상소, 항의기간)

상소, 항의는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소송당사자와 법적제재를 받은자, 검사에게 준다.

리혼당사자들사이에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 재판소는 판결서등본에 의견을 밝혀 해당 인민정권기관에 보낸다.

제141조(상소, 항의절차)

상소, 항의를 하려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는 상소장이나 항의서를 판결, 판정을 내린 제1심재판소에 내야 한다.

상소장, 항의서에는 상소, 항의의 리유와 요구를 적어야 하며 제1심재판소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도 밝힐수 있다.

상소장에는 국가수수료납부증을 첨부한다.

제142조(상소장, 항의서의 처리)

제1심재판소는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상소장, 항의서를 해당 사건기록과 함께 5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보내야 한다.

제143조(항의의 취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한급 높은 검찰소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수 있다.

제144조(상소의 취소)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소한 소송당사자는 제2심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145조(판결의 확정)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 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소, 항의가 있었으나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한 경우
3. 상소, 항의할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경우

제10장 제2심재판

제146조(제2심재판의 임무)

제2심재판에서는 상소, 항의자료와 사건기록에 근거하여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147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검사가 참가한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나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가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수 있다.

재판심리날자는 제2심재판을 시작하기 3일전까지 검사와 소송당사자,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에게 알린다.

제148조(제2심재판절차)

제2심재판은 판사가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49조(소송당사자에 대한 질문, 사실심리의 금지)

제2심재판소와 검사는 제1심재판기록과 제출된 상소, 항의자료에 기초하여 소송당사자와 재판에서 법적제재를 받은자에게 물어볼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사실심리는 할수 없다.

제150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지지)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옳게 내려졌다고 인정되면 그것을 지지하고 상소, 항의를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151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수정)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사정을 명백히 밝혀놓고도 판결, 판정을 정확히 내리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칠수 있다.

제152조(사건의 반송)

제2심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제1심재판소의 재판준비단계 또는 재판심리단계에 보낸다.

1. 재판소구성에서 법을 어긴 경우
2.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
3.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조사검토하지 않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였을 경우
4.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상권리를 보장하여주지 않았거나 소송당사자로 될수 없는 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경우

제153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취소, 사건의 기각)

제2심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 법 제86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54조(제1심재판소 판결, 판정의 부족점해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의 판결, 판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지적하는 판정을 따로 할수 있다.

제155조(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 항의금지)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수 없다.

제11장 비상상소

제156조(비상상소의 대상)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157조(비상상소의 제기사유)

비상상소는 사건기록에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것이 나타났을 경우 언제든지 할수 있다.

제158조(비상상소의 제기자)

비상상소는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59조(비상상소제기자의 권한)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기록을 요구하며 그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수 없다.

제160조(비상상소제기를 위한 사건기록의 요구)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수 있다.

사건기록에서 비상상소제기의 사유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견을 붙여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에 보내며 그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해당 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161조(비상상소제기의 신청)

소송당사자와 사건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비상상소를 제기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제162조(비상상소사건심리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해결한다.

제163조(최고재판소 판사회)

최고재판소 판사회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판사회는 그 정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인 사람이 참가하여야 성립되며 판정은 참가한 성원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판사회의의 집행은 최고재판소 소장이 한다.

제164조(검사의 비상상소사건심리참가)

최고재판소 판사회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165조(비상상소사건의 심리 및 처리)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제기된 자료를 검토한 다음 최고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비상상소사건은 판정으로 해결한다.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이 법 제150조-제154조에 따라 민사사건을 처리한다.

제166조(집행한 재산의 처리)

최고재판소는 확정된 판결, 판정이 비상상소에 의하여 변경, 취소된 경우 집행한 재산에 대한 처리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장 재 심

제167조(재심의 제기사유)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 사실이 나타났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실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알려진 경우

3. 소송당사자 또는 재판소성원이 사건해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4. 이미 취소된 판결, 판정이나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에 근거하여 판결, 판정을 내렸다는것이 확증된 경우

제168조(재심의 제기자)

재심은 최고재판소 소장 또는 최고검찰소 소장이 최고재판소에 제기한다.

제169조(재판소와 검찰소의 재심신청)

재판소와 검찰소는 필요한 경우 재심의 제기를 신청할수 있다.

재심의 제기신청은 한급 높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한다.

제170조(소송당사자, 제3자의 재심신청)

소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재심을 제기하여 줄것을 해당 재판소 또는 검찰소에 신청할수 있다.

재심제기신청은 해당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1조(재심신청의 조사처리)

재심제기신청을 받은 재판소 또는 검찰소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리유가 정당할 경우 해당한 의견을 붙여 최고재판소 또는 최고검찰소에 보내며 부당할 경우 판정 또는 결정으로 거부한다.

제172조(재심재판소의 구성)

재심사건은 최고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재심사건의 심리에는 최고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최고재판소는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를 3일전에 최고검찰소에 알린다.

제173조(재심사건의 심리절차)

재심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를 하고 재심제기사유를 검토한 다음 최고검찰소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한다.

제174조(재심사건의 처리)

재심사건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재심제기의 사유가 정당한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사건을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한다.

제13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175조(판결, 판정의 집행시기)

판결, 판정의 집행은 그것이 확정된 다음 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판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판결, 관정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에 반항하는 경우 집행원은 인민보안기관에 판결, 관정집행의 보장을 의뢰할수 있다.

제176조(집행문발급과 그 처리)

재산청구에 대한 판결, 관정이 확정되면 그 판결, 관정을 내린 재판소의 판사는 자기의 결심 또는 소송당사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발급한다.

집행문발급에 대한 신청은 판결, 관정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안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원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그것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77조(의무자의 재산집행참가)

집행원은 집행행위를 할 경우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리고 의무자를 참가시켜야 한다.

의무자는 집행할 재산에 대하여 지적할수 있다.

제178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집행)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은행을 통하여 한다.

해당 은행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고 그 정형을 집행원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집행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리행할 때까지 관정으로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돈자리를 동결시킬수 있다.

제179조(집행의 중지)

판사는 다음의 경우 집행을 일정한 기간 중지시킬수 있다.

1. 빚을 물어야 할자에게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있을 경우
2.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집행의 중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3. 재산이 없어서 집행할수 없을 경우

제180조(집행한 재산의 처리, 집행조서의 작성)

집행원은 집행이 끝난 다음 해당 절차에 따라 집행한 재산을 권리자에게 넘겨주며 집행조서를 판사에게 주어야 한다.

제181조(집행사건의 기각)

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집행사건을 기각한다.

1. 집행문발급의 기초로 된 판결, 관정이 취소된 경우
2.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집행을 신청하였을 경우
3. 공민인 소송당사자가 집행에 대한 신청을 포기하였을 경우

제182조(집행행위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집행원의 집행행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리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는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5일안으로 신청자를 참가시키고 그것을 심리해결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소송당사자는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

주체100(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6호로 채택

제1장 해사소송관계법의 기본

제1조(해사소송관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소송관계법은 해사소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당사자들의 해사청구권실현을 원만히 보장하고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재판이란 해사분야에서 계약위반 또는 기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사건을 해결하는 민사재판의 한 부분이다.
2. 해사재판소란 해사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해결하는 기관이다.
3. 해사청구란 해상경제활동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자기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된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데 대한 요구이다.

제3조(해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소송활동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해사분쟁사건의 해결방법)

재판적절차로 해결하려는 해사분쟁사건은 해사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해결한다.

제5조(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한 해사청구)

다른 나라 당사자가 공화국해사재판소에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있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가 소송대리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당사자도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해사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6조(해사분쟁사건에 대한 입증책임)

해사분쟁사건해결에서 입증책임은 해사청구권자에게 있다.

제7조(법의 적용)

이 법은 우리 나라 령역에서 제기되는 해상분쟁사건해결에 적용한다.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해당 법규에서 해사소송과 관련하여 규제한 내용이 이 법과 다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관 할

제8조(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사건관할)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계약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해상려객 및 짐수송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2. 배의 매매, 건조, 수리, 해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3. 기간용선, 빈배용선계약 같은 배임대계약 또는 배저당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4. 배 및 배집대리업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5. 배운영에 필요한 물자공급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6. 배집보관 및 배집작업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7. 해난구조, 배끌기, 난파선제거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8. 배집보험, 배의 선체 및 기계장치보험, 건조보험, 수리보험, 선주보호보상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해상분쟁

제9조(기타 해상분쟁사건관할)

해사재판소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해상분쟁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1. 배집수송이나 배집작업과정에 일어난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2.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3. 배에 의한 함시설물, 배길표식물 그밖의 해상 및 해저시설물파손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4. 배에 의한 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5. 배에 의한 수산 및 양식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6. 침몰된 배나 폐기폐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배길리용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7. 배나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8. 해저자원칩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9. 연해, 항수역을 포함한 바다에서의 물고기잡이, 양식 같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리용, 측량, 탐사, 시설물설치, 해양과학조사,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분쟁

제10조(해사분쟁사건종류에 따르는 해사재판소의 관할)

해사분쟁사건은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다음의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1.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충돌발생지, 피해입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피해를 입힌 배의 억류지 또는 배등록주소지의 해사재판소
2. 오염피해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오염발생지, 피해발생지 또는 피해방지대책을 취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3.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사분쟁은 배의 첫 도착항소재지, 공동해상손해청산지 또는 항해가 끝나는 지역의 해사재판소
4. 기타 해사분쟁은 법률행위지의 해사재판소

제11조(관할의 배제)

해사재판소는 당사자사이에 해사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12조(해사중재재결의 집행관할)

해사중재재결의 집행은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해사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해당 지역에 해사재판소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대상의 재산소재지나 집행의무를 지닌자 거주지의 도재판소가 접수처리한다.

제13조(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분쟁당사자들이 배짐증권 같은 수송문건이나 기타 계약서에 분쟁사건을 우리나라에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화국 해사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가진다.

제14조(해사청구담보처분에 대한 관할)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담보처분과 관련한 신청이 제기되었을 경우 당사자사이에 합의한 중재 및 재판관할에 관계없이 그 관할권을 가진다.

제15조(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된 경우의 해사분쟁사건관할)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되었을 경우 당사자사이에 중재나 재판관할을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해사분쟁은 기금을 설립한 해사재판소가 관할한다.

제3장 해사청구담보처분

제1절 일반규정

제16조(해사청구담보처분의 구분)

해사청구담보처분은 해사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피청구권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리용, 처분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을 원상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의무지우는 소송상강제조치이다.

해사청구담보처분에는 배의 억류, 배짐담보처분 같은것이 속한다.

제17조(해사청구담보의 형식)

피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로 돈이나 물건,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 같은 것을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담보서를 내는 경우에는 공화국선주보호보상기관의 덧보증을 내야 한다.

해사청구담보의 형식은 해사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사재판소가 정한다.

제18조(해사청구담보제공의 법률적효과)

해사청구담보의 제공은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제19조(해사청구담보의 범위)

해사청구권자가 피청구권자에게 요구하는 담보물의 값은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부당한 해사청구담보처분에 대한 손해보상)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담보처분을 잘못 신청하여 피청구권자나 리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담보처분된 재산을 법이 정한 기간에 리용하여 얻을수 있었던 순리익을 초과할수 없다.

제21조(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에 대한 의견제기)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는 5일안으로 해당 해사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해사재판소는 그것을 검토하고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을 취소하거나 제기된 의견을 거부할수 있다.

의견을 접수처리하는 기간에도 해사청구담보처분판정의 집행은 보류되지 않는다.

제2절 배의 억류와 강제판매

제22조(배억류신청)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실현을 위하여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억류신청은 해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 임의의 단계에서 배가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억류대상의 배가 현재 항구에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것을 예견하고 그 배가 들어올수 있는 항구지역의 해사재판소에 배억류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알함 후단의 경우에 따르는 배억류판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3조(배의 억류판정)

해사재판소는 배억류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억류대상의 배가 출항하기 전에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배억류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문을 발급한다.

제24조(배의 억류조건)

배의 억류는 다음의 해사청구를 근거로만 할수 있다.

1. 배의 운영으로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2. 해난구조와 관련한 해사청구
3. 배에 의한 환경파괴와 관련한 해사청구
4. 침몰, 난파,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견져내기, 제거, 복구, 해체 기타 위험성 제거에 드는 비용과 그러한 배와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5. 배의 리용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6. 려객 또는 배짐수송합의를 위반한것과 관련한 해사청구
7. 배짐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8.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9. 배끌기, 배길안내, 배운영, 관리, 유지, 봉사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0. 배건조, 재건조, 수리, 구조변경 또는 장비설치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1. 항, 운하, 도크, 부두, 갑문의 리용에 드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2. 선원생활비, 귀국비, 사회보험료 같은 선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3. 배나 배임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과 관련한 해사청구
14. 배보험로나 선주보호보상기관의 부조금과 관련한 해사청구
15. 배임자나 빈배용선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수수료, 중개비, 대리비와 관련한 해사청구
16. 공동소유자들사이 배의 리용이나 수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해사청구

제25조(억류대상의 배)

이 법 제24조의 조건으로 억류할수 있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소유한 배
2. 해사청구에 책임있는 빈배용선자가 임대한 배
3. 저당에 든 배
4. 소유권이나 점유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배
5. 우선적해사청구가 제기된 배

제26조(배억류금지사항)

이 법 제24조와 제25조의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권자의 기본영업장소 또는 배를 제외한 재산이 공화국령역에 있을 경우에는 배를 억류할수 없다.

제27조(배의 억류기간)

배의 억류기간은 배를 억류한 날부터 30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억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단계에서 배억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8조(배억류판정의 집행)

배억류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배억류판정집행문을 보내어 배억류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억류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억류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29조(배억류판정의 집행시 배문건압수)

해사재판소는 억류한 배의 모든 문건을 압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리해관계자는 해사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압수한 배문건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 있다.

제30조(배억류신청 및 집행비용)

배억류를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신청 및 집행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해사재판소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31조(배의 억류판정해제)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억류판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의 억류판정을 내린 날부터 30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억류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가 강제판매되었을 경우

제32조(배의 재억류금지)

피청구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배의 억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사청구와 관련하여 억류하였던 배를 다시 억류할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담보의 성격과 금액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채무리행의 담보자가 그 리행을 할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를 다시 억류할수 있다.

제33조(배강제판매의 신청과 판정)

해사청구권자는 배억류기간이 다 되도록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억류된 배의 관리유지를 잘하지 못할 경우 배억류판정을 한 해사재판소에 그 배의 강제판매를 신청할수 있다.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34조(배의 강제판매에 대한 통지)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판정을 내린 경우 배를 강제판매하기 30일전에 그에 대하여 배등록국의 등록기관과 이미 알고있는 우선적해사청구권자, 배의 저당권자와 배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제판매할 배의 이름, 강제판매하는 날자와 시간, 장소, 리유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35조(배강제판매위원회의 조직)

해사재판소는 배의 강제판매를 위하여 배강제판매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배강제판매위원회는 해사재판소의 집행원과 해당 전문기관의 배감정원을 포함하여 3~5명으로 구성한다.

제36조(강제판매하는 배에 대한 구매신청)

강제판매하는 배를 사려는자는 강제판매통지서에 밝힌 기간안에 배강제판매위원회에 구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강제판매형식에 따라 배강제판매위원회가 요구하는 문건과 리행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내야 한다.

제37조(강제 판매된 배의 넘겨주기)

해사재판소는 강제 판매대상의 배를 사려는자가 해당 배값을 전부 지불하면 그 배를 모든 배문건과 함께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3절 배집 담보처분

제38조(배집 담보처분의 신청과 판정)

해사청구권자는 해사청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해사재판소에 배집 담보처분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배집 담보처분신청을 접수한 해사재판소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39조(담보처분대상의 배집)

담보처분대상으로 될수 있는 배집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청구권자가 점유하지 않은것으로서 피청구권자의 소유로 되어있는 배집
2. 해사청구권자가 류치하고있는 배집

제40조(담보처분기간)

배집의 담보처분기간은 배집을 담보처분한 날부터 15일이다. 그러나 해사청구권자가 배집 담보처분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또는 소송단계에서 배집 담보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1조(담보처분판정집행의 담당자)

배집 담보처분에 대한 판정의 집행은 해사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필요에 따라 해사재판소는 세관 또는 해당 권한있는 기관에 집행문을 보내어 배집 담보처분판정을 집행하게 할수도 있다. 이 경우 배집 담보처분판정집행문을 받은 기관은 배집 담보처분판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배집 담보처분의 해제)

해사재판소는 다음의 경우 배집 담보처분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배집 담보처분판정을 내린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사청구권자가 중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2. 해사청구권자가 배집 담보처분판정의 해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3. 피청구권자가 청구권자에게 해사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4. 배집이 강제 판매되었을 경우

제43조(배집 강제 판매 신청)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배집 강제 판매신청을 해사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1. 배집 담보처분기간안에 피청구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2. 담보처분된 배집이 쉽게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
3. 담보처분된 배집의 보관비용이 배집가격을 초과할 경우

제44조(배집 강제 판매 판정)

해사재판소는 배집의 강제 판매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7일안으로 승인하거나 거

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45조(배짐강제판매판정의 집행절차)

배짐의 강제판매절차는 이 법 제34조-제37조에서 규정한 배강제판매절차에 따른다.

제4장 해사청구의 책임제한

제46조(해사청구의 책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의 해사청구에 대하여서는 피청구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사청구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배에서 일어났거나 배의 운영 또는 구조작업과정에 발생한 인명피해나 재산적 손실과 관련한 해사청구
2. 배짐, 려객과 손짐의 해상수송이 지연된 결과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3. 침몰, 손실, 손상, 좌초, 포기된 배와 배짐의 건져내기,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성 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4. 배우에서 짐의 제거, 파괴 기타 위험성제거와 관련한 해사청구
5. 손해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해사청구

제47조(해사청구책임제한의 법률적효과)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청구권자의 책임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제48조(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

해사청구책임제한을 요구하는자는 해사재판소에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액수와 리유, 이미 알고있는 리해관계자의 이름, 주소, 통신수단, 해사청구와 관련한 증거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은 당사자사이의 중재 또는 재판관할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9조(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에 대한 의견제기)

피청구권자의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에 의견있는 리해관계자는 그 신청이 제기된 날부터 30일안으로 해사재판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리해관계자가 정한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인정한다.

제50조(해사청구책임제한판정)

해사재판소는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의 발생원인이 피청구권자가 해당 손해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행위 또는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방만한 행위에 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승인할수 없다.

제51조(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설립)

해사청구책임제한신청자는 책임제한이 승인되었을 경우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소송제기전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해사재판소에 내야 한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은 해사재판소가 접수할수 있는 돈이외의 담보를 제공하여 설립할수도 있다.

제5장 채권등록과 청산수속

제52조(채권의 등록신청)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설립과 관련한 판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법이 정한 기간안에 해사재판소에 강제판매되는 배 및 배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관련된 채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채권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한것으로 인정한다.

제53조(채권의 등록)

해사재판소는 채권등록신청을 접수하면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등록한다.

제54조(채권자회의소집)

해사재판소는 피청구권자가 진 채무를 심의하고 확인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통지하여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5조(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토의)

채권자들은 채권자회의에서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을 토의하고 손해보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할수 있다.

제56조(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에 대한 해사재판소의 결정)

채권자회의에서 강제판매수익금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의 분배안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이 정한 해사청구권순위에 따라 해사재판소가 결정할수 있다.

제57조(수익금과 리자의 분담방법)

배나 배짐의 강제판매로 이루어진 수익금과 그 리자 또는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과 그 리자는 동시에 분배한다.

채무를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이전 배임자나 짐임자,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을 설립한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제58조(지불판정의 신청사유)

해사청구권자는 다음의 경우 해사재판소에 재결이나 판결,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

라도 해사청구담보금이나 배 또는 배짐강제판매수익금, 해사청구책임제한기금에서 자기의 청구금액을 지불해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1.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사이에 해당 해사청구에 대한 분쟁이 없을 경우
2. 해당 해사청구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백할 경우

제59조(지불판정신청서의 제출)

청구금액을 지불해줄것을 신청하는 해사청구권자는 지불받을 액수와 그 근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밝힌 지불판정신청서를 해사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지불판정과 그 집행)

해사재판소는 지불판정신청서를 검토하고 그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지불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사청구권자는 피청구권자가 지불판정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 해사재판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 족 법

주체 79(1990)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주체 82(1993)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5호로 수정보충
주체 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주체 96(2007)년 3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61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20호로 수정보충

제1장 가족법의 기본

제1조(가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결혼, 가족제도를 공고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결혼의 보호원칙)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가정공고화의 원칙)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4조(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보호원칙)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5조(상속권의 보장원칙)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6조(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원칙)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7조(가족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사회주의적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관계를 규제한다.

제2장 결 혼

제8조(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만 할수 있다.

제9조(결혼년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기풍을 장려한다.

제10조(결혼촌수)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자사이에에는 결혼할수 없다.

제11조(결혼등록)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수 없다.

제12조(재외공민의 결혼등록)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화국공민의 결혼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수 있다.

제13조(결혼의 무효)

이 법 제8조-제10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14조(무효로 된 결혼에서 자녀양육)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양육문제에는 이 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장 가 정

제15조(가정의 공고화)

가정을 공고히 하는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당하게 꾸려야 한다.

제16조(남편과 안해관계의 성립)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7조(남편과 안해의 자유활동사항)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수 있다.

제18조(남편과 안해의 평등권)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9조(배우자의 부양의무)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20조(남편과 안해관계의 해소)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리혼판결은 확정된 때부터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리혼조건)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수 없을 경우에는 리혼할수 있다.

제22조(리혼시 자녀양육당사자의 결정)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23조(자녀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을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24조(양육비면제신청)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수 있다.

제25조(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분등록기관에 등록된 때부터 법적효력을 가진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는 결혼생활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26조(자녀의 성)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27조(자녀교양의무)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인인으로 키워야 한다.

제28조(미성년자녀의 대리)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미성년자녀의 대리인으로 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29조(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0조(립양의 권리)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년자녀를 립양할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양자녀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교양할 능력이 없는자는 미성년자녀를 립양할수 없다.

제31조(립양의 동의)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자가 6살이상일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2조(립양의 등록)

립양은 양부모로 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33조(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34조(파양)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35조(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한다.

제36조(형제자매관계)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주어야 한다.

돌볼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미성인, 로동능력이 없는자의 부양)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하며 그들이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38조(국가의 부양대상자)

이 법 제37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로동능력이 없는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39조(재산분할)

리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가정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거나 상속, 증여받았거나 그밖에 개인적성격을 띠는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4장 후 견

제40조(후견인의 선정조건)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41조(후견인의 자격)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수 있는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42조(주민행정기관에 의한 후견인선정)

미성인과 신체상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자에게 이 법 제41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선정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43조(후견인의 권리)

후견인은 후견받는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44조(후견인의 의무)

후견인은 후견받는자를 보육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

제45조(후견의무수행에 대한 감독)

후견의무수행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장 상속

제46조(상속순위)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47조(상속몫)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48조(상속권의 박탈)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자, 고의적으로 상속조건을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제49조(상속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상속받기로 된자가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50조(유언상속)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유언의 무효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51조(사망자의 빚에 대한 책임)

상속받은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2조(상속기간)

공민은 상속의 승인, 포기를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6개월안에 상속받을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재판소는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상속의 승인, 포기기일을 6개월 더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53조(상속분쟁의 해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6장 제재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의 추궁은 재판소의 판정, 판결로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

주체91(200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2호로 채택

제1장 상속법의 기본

제1조(상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개인소유재산의 상속권보장)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3조(상속받는자들의 권리평등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받는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유언에서 상속몹을 따로 정하였거나 법에서 상속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독자적생활능력부족한자의 리익우선보장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제5조(당사자들의 의사존중원칙)

국가는 상속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속에서 리해와 양보, 협력 같은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6조(상속에서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상속문제의 취급처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상속의 개시)

상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의하여 시작된다.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서도 상속은 시작된다.

제8조(상속의 수속장소)

상속의 수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에서 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가 상속수속장소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소재지 또는 사망지에서도 상속수속을 할수 있다.

제9조(상속받을수 없는자)

상속받는자라 하더라도 상속시키는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자, 유언을 위조하였거나 그 근거를 없애버린자,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지 못하게 된자는 상속받는자로 될수 없다.

제10조(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대리행사)

행위무능력자의 상속 또는 증여받을 권리는 그의 대리인이 행사한다.

제11조(상속시키는자의 재산상권리의무상속)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를 상속받는다.

부양료를 받을 권리 같은 상속시키는자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편관된 권리는 상속할수 없다.

제12조(나눌수 없는 재산의 공동소유사유)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수 있다.

제13조(상속할수 있는 재산)

상속할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른 전기재
5. 각종 재산상청구권과 채무
6. 그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제14조(상속권의 시효)

상속받는자는 상속권이 침해당한것을 안 때부터 1년안으로 그것을 회복시켜줄데 대한 청구를 재판기관에 할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수 없다.

제2장 법정상속

제15조(법정상속의 기본요구)

사망한자의 재산은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된다.

상속받는자의 신분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데 따른다.

제16조(법정상속의 조건)

법정상속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이 없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3.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4. 유언에서 지적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제17조(법정상속의 순위)

상속받는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가 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4촌안의 혈족이 된다.

제18조(상속받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순위)

상속받는자로 된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자녀는 해당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19조(법정상속의 몫)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몫은 같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생존기간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리행하였거나 로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은자의 상속몫은 늘일수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자의 상속몫은 줄일수 있다.

제20조(법정상속의 승인, 포기)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것을 안 때부터 6개월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수 있다.

6개월안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재산, 권리의무의 상속)

상속이 승인된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제한없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하여 상속할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권리의무는 계승할수 없거나 제한된다.

제22조(채무, 증여의 리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리행할수 있다.

재판기관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에게 상속재산목록을 요구할수 있다.

제23조(채무리행과 증여재산의 이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의 해당한 채무를 리행하며 증여받게 된자에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4조(채권비률에 의한 채무의 리행)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의 채권비률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전부 리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는 증여를 리행하지 않는다.

제25조(법정상속의 포기)

상속받는자의 상속포기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26조(포기한 법정상속몫의 이전)

같은 순위의 상속받는자가운데서 상속을 포기한자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같은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몫은 다음순위의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제27조(유언에 의한 상속, 증여의 기본요구)

공민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유언할수 있다.

유언한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 증여된다.

제28조(유언상속, 증여받는자의 권리)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다.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자로 지정된자는 상속권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유언상속, 증여의 몫)

유언자는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에게 상속, 증여몫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줄수 있다.

제30조(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한다.

조건을 붙인 유언의 효력은 그것이 마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제31조(유언의 효력상실조건)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

유언상속에서는 대위상속을 할수 없다.

제32조(유언상속, 증여의 승인, 포기)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는자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포기할수 있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게 된다는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것으로 인정한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포기한 재산의 처리는 법정상속절차에 따른다.

제33조(증여받을 권리의무의 이전)

유언에 따라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자는 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를 넘겨받는다.

제34조(유언자의 자격)

유언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 된다. 그러나 16살에 이른 직업을 가진자는

자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유언할수 있다.

제35조(유언의 효력)

유언은 명백하고 진실한 의사가 반영된것이여야 한다.

속임수, 강박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6조(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 대한 증여)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수 있다.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상 남겨놓아야 한다.

제37조(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기에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작성 날자를 쓴다.
2. 말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한다. 이 경우 립회인 1명은 유언내용을 쓴 다음 유언자와 립회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고 유언날자를 쓴다.
3. 말로 하는 유언을 녹음할 경우에는 2명 이상 립회인의 말과 유언날자도 녹음한다.
4.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공증인앞에서 한다. 이 경우 공증인은 유언내용을 기록하여 유언자와 립회인에게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받고 유언날자를 기록한다.

제38조(유언의 립회인이 될수 없는자)

유언의 립회인으로 될수 없는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
2.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와 친척이 되는자
3. 행위무능력자
4.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있는자

제39조(유언의 무효인정)

유언의 무효인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다.

제40조(유언의 취소, 변경)

유언자는 자기의 유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여러차례 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상속의 집행

제41조(상속집행의 기본요구)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게 된 상속받는자는 상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곧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상속시키는자가 거주하고있던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이 상속받는자에게 알린다.

제42조(상속집행자의 지정)

공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는자가 집행자로 된다.

상속받는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상속집행자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자가 된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며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다.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상속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알아볼수 있다.

상속의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수 있다.

제45조(상속의 통지)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재산을 구분하고 상속받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상속의 절차)

상속재산은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접수하고 채무를 리행한 다음에야 나눌수 있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리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몫에 따라 채무를 리행한다.

제47조(채권의 증명)

상속집행자는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증명할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리행을 거절할수 있다.

제48조(출생할자의 상속몫)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자의 몫을 남겨놓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9조(출생할자의 상속몫처리)

출생할자의 몫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받은자는 출생한자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출생하여야 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몫은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상속된다.

제50조(상속재산관리자의 선정)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

상속시키는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있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제51조(상속재산의 관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자가 진다.

제52조(상속재산관리자의 권리)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수 있으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리행할수 있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 유언에 따라 증여받게 된자를 전부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넘겨줄수 없다.

제53조(채권, 증여유언의 접수)

재산관리자는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할수 있다.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를 리행하거나 증여할수 있다.

제54조(상속재산처리문건의 제출)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처리를 끝낸 경우 그 정형을 문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수 있다.

제55조(상속재산의 국고납부)

상속, 증여받는자가 없거나 또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

제56조(연고자의 선정에 따르는 상속재산분배)

재판기관은 상속시키는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어줄수 있다.

제57조(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주체90(2001)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손해보상법의 기본

제1조(손해보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허물있는자의 손해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하여 허물있는 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제3조(손해의 완전보상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줄어들었거나 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완전보상하도록 한다.

제4조(커지는 손해를 막을데 대한 원칙)

재산이나 인신의 침해로 발생된 손해가 커지는것을 가능한 조건에서 막는것은 피해자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어겨 늘어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는데 들인 피해자의 비용은 손해보상액에 첨가할수 있다.

제5조(보관관리자의 손해보상원칙)

맹수나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같이 높은 주의를 돌려 보관관리해야 할 대상에 의하여 끼쳐진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허물이 없어도 보상책임을 지운다.

피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관리할 의무를 진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6조(재산담보처분의 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손해보상을 담보받기 위하여 재판기관에 침해한자의 재산을 담보처분할데 대한 청구를 할수 있다.

재산을 담보처분한것이 근거가 없는것으로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자는 담보처분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제7조(행정적, 형사적책임을 지는자를 대상한 손해보상청구원칙)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가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8조(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비법적으로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계약에 기초한 민사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의 보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

제9조(손해보상관계 당사자의 자격)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에는 재산이나 인신이 침해된데 대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자와 손해보상의무를 진자가 속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피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 권리의 계승인이, 손해보상의무를 진자로는 피해를 끼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그의 무의 계승인이 된다.

제10조(해산, 병합, 분리의 손해보상청구권자)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청산인이, 병합, 분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손해보상청구권자로는 그 권리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된 공민의 손해보상청구권은 그의 상속인 또는 재산관리자가 가진다.

제11조(대리인의 손해보상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청구권은 부모나 후견인이 행사한다.

제12조(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양도, 채무의 상쇄)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청구권을 포기, 양도하거나 청구액을 줄이거나 자기의 채무와 상쇄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권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일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

행위무능력자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이 경우 후견인은 자기 재산이나 관리하고있는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으로 보상한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행위무능력자의 손해보상의무는 그를 통제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14조(부분적행위능력자의 손해보상)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 부분적행위능력자는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손해에 대한 보상의무는 부모나 후견인이 진다.

제15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손해보상)

소재불명되었거나 사망한자의 손해보상의무는 재산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진다. 이 경우 관리하고있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손해를 보상한다.

제16조(직무집행자의 손해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고정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의무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손해를 보상한 다음 자기 성원을 상대로 허물정도에 따라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제17조(집짐승피해에 의한 손해보상의 의무)

집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한데 대한 손해보상의무는 임자나 관리자가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을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수 있다.

제18조(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의 손해보상)

여러 가해자들의 련관된 행위로 손해보상몫을 구분할수 없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임의의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손해를 보상한자는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몫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제3장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19조(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재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 재산상손해에 대하여서만 진다.

금액으로 계산할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재판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0조(토지침해의 보상)

농경지 같은 토지를 침해한자는 원상복구하고 그것으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

침해된 토지의 원상복구범위와 손해보상의 계산은 국토감독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산림침해의 보상)

산림을 람도벌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자는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

산림자원의 값과 새로운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산림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2조(금지된 대상침해의 보상)

금지된 기간이나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의 동식물을 사냥, 채취하였거나 줄어들게 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3조(농작물침해의 보상)

농작물을 침해한자는 경작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명승지, 천연기념물파손의 보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파손시킨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5조(지하자원침해의 보상)

지하자원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그 값을 보상한다.

지하자원의 값은 채취공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6조(수산자원침해의 보상)

양어, 양식하는 수산자원을 침해한자는 수산자원의 값이나 양어, 양식에 들인 비용을 보상한다.

금지된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였거나 정해진 어종, 어획량, 어로기간, 어로방법을 어긴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수산지도기관 또는 국토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7조(환경오염의 보상)

정해진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미광, 버림물, 유해가스 같은것을 내보내었거나 기름을 류출시켜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의무자와 손해보상액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8조(건물, 시설물파손의 보상)

건물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그 리용을 방해한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밖의 손해를 보상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9조(전도장치, 기계설비파손의 보상)

전도장치, 기계설비, 운수수단 같은 재산을 파손시킨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과 그 침해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해당 감독기관이 정한다.

제30조(문화유물파손의 보상)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도굴, 밀매, 훔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1조(원료, 자재침해의 보상)

원료, 자재, 반제품 같은것을 못쓰게 만들었거나 류용하였거나 훔친자는 재산의 값과 그 침해로 발생한 경영상손실을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2조(상품, 비료 같은 재산침해의 보상)

상품, 비품, 도서, 농토산물, 집짐승 같은 재산을 침해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은 재산이 침해되기 전의 소매 또는 수매가격, 판매실현이 가능했던 가격으로 한다.

제33조(보험재산침해의 보상)

보험에 든 재산을 침해당한자는 보험보상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기관은 가해자로부터 해당한 금액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34조(남은 보상재산의 소유)

침해한 재산의 값을 전부 보상한 가해자는 그 재산의 남은 가치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35조(채권증권, 신용결제증권침해의 보상)

저금, 보험 같은 채권증권이나 행표, 수형 같은 신용결제증권의 거래를 침해하였거나 그것을 위조한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증권침해로 발생한 손해 가운데 피해자의 허물이 있을 경우 손해보상청구권은 그 만큼 제한된다.

제36조(저작권침해의 보상)

저작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저작물을 심의, 편집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모방한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저작권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7조(발명, 특허권침해의 보상)

발명, 특허권을 침해하여 재산상손실을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다른 사람의 과학기술적발명자료를 도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였거나 제3자에게 넘겨주어 발명, 특허권을 받게 하였다는것이 증명될 경우에도 그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보상액은 발명권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8조(상표권, 공업도안권침해의 보상)

상표,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것과 관련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준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상표나 공업도안, 기업이름 같은것은 해당 기관에 등록된것이어야 한다.

제39조(불가피한 재산침해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구원된 재산의 비율에 따라 그 임자들이 손해를 보상한다. 이 경우 구원된 재산량은 침해된 재산량보다 커야 한다.

제4장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

제40조(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의 기본요구)

인신침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침해하여 끼친 손해에 대하여 진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였거나 인격, 명예를 침해하여 정신적고통을 준 경우에도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제41조(건강침해의 보상)

사람의 건강을 침해한자는 치료비나 로동에 참가하지 못하여 끼친 수입손실액을 보상한다.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한데 대한 치료비는 해당 기관이 받아 국고에 납부한다.

제42조(로동능력상실의 보상)

로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시킨자는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비와 수입손실액, 피해자의 부양을 받던자의 부양료를 보상한다.

제43조(수입손실액, 부양료의 보상)

수입손실액에 대한 손해보상은 피해자의 로동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한다.

부양료에 대한 보상은 미성인인 경우 로동능력을 가질 때까지, 부양을 계속 받아야 할자는 사망할 때까지 한다.

제44조(사망의 보상)

인신침해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에는 생전치료비, 장례비, 부양료 같은것을 보상한다.

제45조(양도할수 없는 손해보상청구권)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양도할수 없다.

제46조(보상하지 않는 인신피해)

자신이나 제3자의 건강,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인신피해를 준데 대하여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신이나 제3자의 인신침해를 직접 막기 위한것으로 되어야 하며 방위의 범위에서 이루어진것이여야 한다.

제5장 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

제47조(손해보상액의 확정과 보상방법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손해를 제때에 고착시켜야 한다.

손해의 고착은 가해자에게 말로 확인시키거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수 있다.

확인서작성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에 제기하거나 제3자를 립회시키고 확인서를 작성할수 있다.

제48조(합의에 의한 손해보상액의 확정)

공민의 재산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액을 침해된 재산의 소매 또는 구매가격 같은것에 기초하여 재판기관이 정한다.

제49조(손해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이 늘지 못하게 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전 3년간 해마다 얻은 이익의 평균으로 한다. 이 경우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손해보상액의 계산을 의뢰할수도 있다.

제50조(손해량이 증명되지 않는 보상액의 계산)

재산침해로 늘지 못하게 된 손해량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침해된 재산값의 5%로 한다.

제51조(인신침해손해보상액의 계산)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액의 계산은 보건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확인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건강을 침해당한자의 수입손실액계산은 피해를 받기 전 정상적인 근무 6개월간 생활비의 평균으로 할수 있다.

제52조(손해보상액의 재사정제기)

손해보상관계의 당사자는 인신침해와 관련한 손해보상액이 확정된 다음 로동능력 상실정도가 달라질 경우 손해보상액을 다시 정하여줄것을 재판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제53조(손해보상청구의 시효)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당한자는 시효기간안에 손해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54조(손해보상의 의무)

손해보상의무자는 손해를 제때에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이 조성되는 차제로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권자는 손해보상의무자의 보상능력이 조성된데 따라 재판기관에 손해보상을 다시 청구할수 있다.

제55조(손해보상액의 형식)

손해보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법이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침해된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보상시킬수도 있다.

제56조(의견상이의 해결방법)

재산이나 인신침해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

주체84(1995)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2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제1장 대외민사관계법의 기본

제1조(대외민사관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민사관계법은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보장하며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대외민사관계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공민사이의 재산가족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며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규제한다.

제3조(자주적권리의 존중원칙)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자주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4조(평등, 호혜의 원칙)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5조(공화국법률제도의 기본원칙견지)

국가는 대외민사관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6조(대외민사관계 관련조약의 효력)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나 대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관례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7조(2중국적자의 본국법)

둘이상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1. 당사자가 가진 국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우리 나라 국적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2. 당사자가 가진 국적이 다른 나라의 국적인 경우에는 국적을 가진 국가들 가운데서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3. 당사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들에 다 거주하고있거나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

제8조(무국적자의 본국법)

국적이 없는 당사자가 어느 한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고있지 않거나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제9조(지방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 국적자의 본국법)

지방에 따라 내용이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당사자의 본국법은 그 나라의 해당 법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소속되어있는 지방이나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의 법으로 한다.

제10조(거주지법의 인정)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도 거주하고있는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당사자가 둘이상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1조(거주지가 없는자의 거주지법)

어느 나라에도 거주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거처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12조(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의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 법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3조(외국법이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의 준거법)

이 법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진 다른 나라의 법 또는 국제관례를 적용하여 설정된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우리 나라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14조[반치(되돌이)]

이 법에 따라 다른 나라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나라 법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되돌이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5조(해외공민의 가족관계 법률행위의 효력)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 이 법 시행일전에 한 결혼, 리혼, 립양, 후견 같은 법률행위는 그것을 무효로 할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우리 나라 영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

제16조(대외민사관계 당사자)

대외민사관계의 당사자로는 대외민사관계에 참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인, 공민과 다른 나라의 법인, 공민이 된다.

제17조(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준거법)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국적을 가진 국가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서 다르게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한 준거법)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본국법을 적용한다.

본국법에 따라 미성인으로 되는 다른 나라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성인으로 되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에서 그가 한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가족, 상속관계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행위능력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19조(행위무능력자의 인증조건에 대한 준거법)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인증조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인증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인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로 인증하지 않을수 있다.

제20조(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인증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인증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인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1조(소재불명자, 사망자의 인증에 대한 준거법)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이 우리 나라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3장 재산관계

제22조(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점유권, 소유권 같은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선박,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과 수송중에 있는 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해당 수송수단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또는 수송수단이 속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3조(지적소유재산권에 대한 준거법)

저작권, 발명권 같은 지적소유재산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에 규정된것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24조(재산거래행위에 대한 준거법)

매매, 수송, 보험계약을 맺는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25조(전보, 서신으로 계약체결할 경우의 준거법)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이 전보 또는 서신 같은것을 리용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나라의 법은 제의통지를 한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의통지를 한 곳을 알수 없을 경우 계약체결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은 제의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한다.

제26조(재산거래행위방식에 대한 준거법)

재산거래행위의 방식은 행위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27조(특수경제지대에서 재산관계와 관련한 준거법)

우리 나라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설립 같은 재산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28조(해난구조계약에 대한 준거법)

해난구조계약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한다.

1. 령해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
2. 공해에서는 해난구조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
3. 공해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여러 선박이 구조한 경우에는 구조받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

제29조(해상공동부담손해에 대한 준거법)

해상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 법이 없을 경우 해당 항차가 끝나는 항구 또는 선박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속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들이 같은 국적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0조(위임대리, 부당리득에 대한 준거법)

법적의무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보는 행위 또는 부당리득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으로 되는 행위나 사실이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1조(위법행위에 대한 준거법)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위법행위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로 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이 규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지울수 있다.

제32조(공해상에서 선박충돌경우의 준거법)

공해상에서 국적이 같은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에 표시한 국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적이 다른 선박들이 위법행위로 충돌한 경우에는 선박충돌과 관련한 문제를 취급하는 재판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3조(채권양도에 대한 준거법)

채권양도에 대하여서는 양도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4조(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취소하는 경우의 준거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하거나 취소하는것 같은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권 채무관계에 적용하는 준거법과 채무자가 제3자앞에 가지는 권리의 준거법을 같이 적용한다.

제4장 가족관계

제35조(결혼조건과 방식의 준거법)

결혼조건에 대하여서는 결혼당사자 각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국법에 따라 결혼조건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의하여 현재 존속되고있는 결혼관계나 당사자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것 같은 결혼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의 방식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6조(결혼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결혼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부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부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부부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37조(리혼과 그 방식의 준거법)

리혼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리혼당사자들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같이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리혼당사자들의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리혼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리혼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38조(공화국국민이 한편 리혼당사자인 경우 준거법)

리혼당사자들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이 법 제37조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9조(부모, 자녀관계의 확정에 대한 준거법)

친부모, 친자녀관계의 확정에 대하여서는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한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제40조(립양, 파양과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립양과 파양에 대하여서는 양부모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양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립양과 관련하여 양자녀로 될자의 본국법에서 양자녀로 될자 또는 제3자의 동의나 국가기관의 승인을 립양의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립양과 파양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립양과 파양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

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1조(부모와 자녀관계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

부모와 자녀관계의 효력에 대하여서는 자녀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부모와 자녀가운데서 한편 당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한다.

제42조(후견과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후견에 대하여서는 후견을 받을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후견의 방식은 후견인이 후견을 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3조(후견인이 없는 외국공민의 후견인선정경우의 준거법)

우리 나라에 거주, 체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공민에게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라 후견인을 정할수 있다.

제44조(부양관계에 대한 준거법)

부양관계에 대하여서는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부양을 받을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이 부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45조(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준거법)

부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이 있는 나라의 법을,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동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상속시키는자가 마지막에 거주하였던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나라 공민에게 상속인이 없을 경우 상속재산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넘겨받는다.

제46조(유언, 유언취소와 그 방식에 대한 준거법)

유언과 유언취소에 대하여서는 유언자의 본국법을 적용한다.

유언과 유언취소의 방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유언행위가 있는 나라의 법, 유언자가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에 따라 갖춘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제47조(해외공민의 가족관계에 대한 준거법)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의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유언에 대하여서는 거주하고있는 나라의 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8조(분쟁해결의 준거법)

대외민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은 이 법에서 따로 규정한것이 없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법에 따른다.

제49조(재판, 중재관할)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관할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0조(재산거래분쟁시 해당 기관이 가지는 관할권)

재산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재판, 중재관할을 합의하지 않았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우리 나라 영역에 소재지를 가지고있거나 거주하고있을 경우
2. 분쟁의 원인으로 되는 재산손해가 우리 나라 영역에서 발생된 경우
3. 피고의 재산 또는 청구의 대상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4. 분쟁의 원인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제51조(행위무능력자,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 사망자인증과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행위무능력자와 부분적행위능력자, 소재불명자와 사망자인증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법인, 공민, 재산과 관련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2조(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한 관할권)

결혼과 관련한 분쟁, 리혼에 대하여서는 소송제기당시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인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3조(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부부의 재산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거나 원고 또는 피고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으면서 그 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4조(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부양관계와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립양, 파양, 부모와 자녀관계, 후견, 부양관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을 경우에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5조(상속과 관련한 분쟁시 관할권)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서는 상속인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우리 나라 공민이거나 상속재산이 우리 나라 영역에 있을 경우 상속인의 국적,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관할권을 가진다.

제56조(재판, 중재의 거부 또는 중지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요구에 관계없이 재판 또는 중재를 거부하거나 중지한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다른 나라에서 동일한 내용의 분쟁에 대하여 재판 또는 중재를 먼저 시작한 경우
3.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중지할데 대하여 합의한 경우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57조(외국에서 한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판결, 재결을 인정할 경우의 자료 요구)

다른 나라 영역에서 증거의 수집, 증인심문 같은 분쟁해결의 수속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인정, 집행과 관련하여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58조(외국에서 제공한 증거의 인증조건)

다른 나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제공한 증인심문조서, 증거물 같은것은 해당 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분쟁해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외국판결의 인정조건)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의 판결은 그것을 서로 인정할데 대한 국가적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한 다른 나라 해당 기관 판결집행의 당사자로 되는 우리 나라 공민이 그 집행을 요구하거나 동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 내린 판결을 인정할수 있다.

제60조(외국판결, 재결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수 있다.

1. 판결, 재결의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제도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2.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경우
3. 판결, 재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의 판결, 재결과 관련이 있을 경우
4. 판결, 재결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인정한 제3국의 판결, 재결과 동일한 내용인 경우
5. 판결, 재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당사자를 참가시키지 않고 내려진 경우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에 따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1조(외국판결, 재결의 집행시 준용조문)

이 법 제59조, 제60조의 규정은 다른 나라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도 적용한다.

제62조(외국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한 의견제기)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이 내린 판결, 재결의 집행에 대하여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당사자가 리해관계를 가질 경우 판결, 재결이 확정된 때부터 3개월안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재판, 인민보안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조(재판소구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재판소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

제4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5조(특별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명 및 선거)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자격)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 자격이 없는자는 판사로 될수 없다.

제7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8조(판사, 인민참심원의 해임)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

제9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한재판소 성원으로 될 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1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 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12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일수)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 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3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재판소 판사회회의의 구성)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최고재판소 판사회회의에서 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판정의 채택)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 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최고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최고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사업에 대한 책임)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아래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 증 법

주체84(1995)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1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8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공증법의 기본

제1조(공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증신청자의 편의도모원칙)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한다.

제3조(공증에서 정확성, 합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신청자의 권리행사, 의무리행원칙)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공증기관)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6조(공증기관의 설치지역)

국가공증기관은 도(직할시)소재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소재지에도 둘수 있다.

제7조(공증사업에 대한 지도)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최고재판소가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제8조(공증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공증대상

제9조(인증대상)

국가공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인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관계와 관련한 인증
2. 기술 및 전문가자격, 학위학직, 명예칭호, 지적권리와 관련한 인증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와 관련한 인증
4.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5. 상속과 관련한 인증
6. 계약과 관련한 인증
7. 법인 및 위탁, 대리와 관련한 인증
8. 채권채무, 손해보상과 관련한 인증
9. 상표와 관련한 인증
10. 사고, 검사와 관련한 인증
11.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과 관련한 인증
12. 기업의 규약과 관련한 인증
13.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과 관련한 인증
14.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과 관련한 인증
15. 이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에 대한 인증

제10조(재산과 법인등록)

국가공증기관은 중요한 개인재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법인을 등록한다.
등록된 재산이나 법인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제11조(공탁)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제12조(민사사건의 증거보존)

국가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제3장 공증관할

제13조(지역별공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

는 공증을 한다.

도(직할시)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과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제14조(거주지, 소재지에 따르는 공증관할)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공증할수 있다.

제15조(건물, 재산, 증거의 공증관할)

건물은 건물이 있는 곳,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공증한다.

제16조(소재불명자, 사망자, 유언의 인증관할)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의 인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의 인증은 유언한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제17조(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의 인증관할)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는 곳 또는 계약을 체결한 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제18조(공증의 신청)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증의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제19조(공증신청문건)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사는 곳, 신청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공증신청문건의 불비점퇴치)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할 경우 5일안으로 수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서를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제21조(공증신청의 처리기간)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공증신청내용의 검토)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격, 신청내용과 증거문서의 진실성,

합법성 같은것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증과 관련한 국가공증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공증문서의 작성)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용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우 공증문서를 만든다.

공증문서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당사자에게 준다.

제24조(공증의 거부)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1.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었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5조(공증의 거부통지)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제26조(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국가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 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 검증조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27조(공탁재산과 증거의 처리)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제28조(공탁재산에 대한 집행문발급)

국가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집행문에 따르는 집행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29조(공증문서의 작성어문)

공증문서는 조선글로 쓴다.

다른 나라 사람은 공증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쓸수 있다.

제30조(공증인의 배제)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해당 국가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공증인을 바꾸는 경우 해당 재판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일군이 공증할수 있다.

제31조(국가수수료와 비용)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하는 비용을 정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공증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해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국가공증기관 소재지에 있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의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33조(재판소의 판정에 대한 상소)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34조(상소의 검토와 처리)

상소를 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공증신청내용의 재조사)

국가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공증신청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재판소의 확증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주체82(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

제1장 변호사법의 기본

제1조(변호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변호사활동의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변호사의 활동내용)

변호사는 변호인,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한다.

제4조(변호사의 자유로운 선택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송 및 법률행위를 수행하는데서 자기를 방조하거나 대리할수 있는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도 변호사의 법률상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5조(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

공정성, 객관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변호사활동의 근본원칙이다.

변호사는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여 활동한다.

제6조(변호사활동의 독자성원칙)

국가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7조(변호사양성원칙)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8조(변호사위원회의 지도)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제2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제9조(변호사의 권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형사사건기록을 볼수 있으며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수 있다.
2. 증인, 감정인과 담화할수 있다.
3. 변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확인하며 증거를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에 앞서 재판소에 증거를 심리하여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호에 필요한 증거문서,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5.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이 보장될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검사 또는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6. 말은 사건의 제1심판결, 판정에 대하여 상급재판소에 상소할수 있으며 상소를 심리하는 제2심재판에 참가할수 있다.

제10조(국가의 법과 규정집행)

변호사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잘 알고 그것을 존중하며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법해설과 준수의 방조)

변호사는 인민들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변호인)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옹기 분석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 법률고문)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위임에 따르는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 법률고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법률상담과 문서의 작성, 심의)

변호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르는 법률상담과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의 작성, 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엄수)

변호사는 직무집행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16조(법률상방조의 신청접수)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제17조(대리활동에서 민법의 준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효과, 대리권의 소멸 같은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제18조(동시변호, 대리의 금지)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할수 없다. 그러나 한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수 있다.

제19조(법률상방조신청의 거절)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신청하는자가 사실을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 그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다.

제3장 변호사자격

제20조(변호사의 자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변호사로 될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
2. 법부에서 5년이상 일하던자
3. 해당 분야의 전문가자격을 가진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자

제21조(겸직변호사)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수 없다.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학직 소유자는 겸직변호사로 일할수 있다.

제22조(변호사의 자격심사)

변호사자격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공화국변호사자격의 부여)

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변호사자격을 줄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 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할수 있다.

제24조(변호사의 자격박탈)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이익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변호사자격박탈심사는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한다.

제4장 변호사보수

제25조(변호사의 보수조건)

변호사보수는 변호사가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결과 같은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는다.

1.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3.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문서를 작성, 심의하였을 경우

제26조(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보수기준은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정한다.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정해진 기준에 준하여 변호사보수를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7조(변호사의 보수면제)

해당 변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5장 변호사조직

제28조(조선변호사회의 설립)

변호사들의 조직으로서 조선변호사회를 둔다.

제29조(조선변호사회의 구성)

조선변호사회는 상무기관으로서 중앙과 도(직할시),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와 해당 부문에 조직된 위원회아래에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제30조(변호사위원회의 임무)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제31조(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

주체86(1997)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2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제1조(공민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은 공민을 장악등록하는데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민등록법의 규제대상)

공민등록법은 공민의 출생, 거주, 퇴거등록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제3조(공민등록기관)

공민등록은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공화국공민의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 기관이 한다.

제4조(공민의 거주등록)

공민은 살고있는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거주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조(공화국국적에 입적한 공민의 등록)

다른 나라 국적에서 제적하고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공민이 우리 나라에 거주하려 할 경우 공민등록을 한다.

제6조(주민등록대상)

인민보안기관은 공민을 주민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과 직업, 결혼, 리혼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힌다.

제7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대상)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출생등록을 한 공민에게는 출생증을,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공민증을,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준다.

제8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부의 이름으로 공민이 거주한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이 발급한다.

제9조(출생등록)

출생등록은 난날부터 15일안으로 한다. 이 경우 출생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낸다.

출생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민족별 같은것을 밝힌다.

제10조(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신청)

공민은 17살에 이른 날부터 15일안으로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공민증, 평양시민증발급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발급기일)

출생등록신청서, 공민증발급신청서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관리)

공민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분실하거나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빌려줄수 없다.

제13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반납 및 회수)

공민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인민보안, 안전보위기관에 입대하거나 또는 사망하였거나 정신병에 걸렸거나 공화국국적에서 제적되었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거주하던 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바친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

제14조(퇴거등록)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공민은 퇴거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등록신청서를 거주지역의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퇴거등록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난날, 난 곳, 사는 곳, 퇴거하여 가는 곳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거주등록기간)

퇴거등록을 한 공민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의 기재사항변경)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에 등록된 이름, 성별, 난날, 난 곳은 고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름, 난날, 난 곳을 고치려는 공민은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인민보안기관에 내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신분을 고치는 허가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공민등록의 제적)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공화국국적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공민등록에서 제적한다.

제18조(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공민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민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공민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주체93(2004)년 10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23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제1조(도로교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원칙)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과학화,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3조(우측통행의 원칙)

도로통행의 기준은 교통안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도로교통사업체계 확립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로교통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도로교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대표부, 기업,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제7조(도로교통지휘신호의 종류)

도로교통지휘신호는 건능길, 차길의 사킴길에서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보장하는 안전표시이다.

교통지휘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제8조(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교통보안원이 하는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곧바로 가게 하는 신호
2. 돌아가게 하는 신호
3. 일반예고신호
4. 특별예고신호
5. 궤도전차안내신호

제9조(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신호등으로 하는 통과신호
2. 노란색신호등으로 하는 일반예고신호
3. 붉은색신호등으로 하는 정지신호
4. 붉은색신호등과 노란색신호등을 함께 켜서 하는 특별예고신호
5. 사각형신호등으로 하는 궤도전차안내신호

제10조(교차도로에 교통보안원의 배치, 자동신호등의 설치)

인민보안기관은 도로교통이 복잡한 곳과 차길의 사킴길에 교통보안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제정된 곳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는 도로에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도로안전시설물은 보행자와 차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식이다.

도로안전시설물에는 경고, 금지, 지시 및 안내표식과 도로바닥선, 도로안전보호울타리와 란간, 빛반사대 같은것이 속한다.

제12조(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정해진 곳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안전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통행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표식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를 통과한 전기선, 통신선의 안전대책)

도로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 것을 늘이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높이를 보장하며 높은 전압의 전기줄 밑에는 쇠그물망을 치거나 해당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를 수리하거나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돌림길을 내고 해당 도로안전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도로안전시설물의 계획적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사업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행자의 통행

제15조(보행자통행의 기본요구)

보행자는 도로통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보행자는 걸음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걸음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6조(건능길의 통행)

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는 건능길, 지하건능길, 구름다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건능길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너려 할 경우에는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고속도로의 통행금지)

보행자는 고속도로로 통행할 수 없다.

고속도로를 건너려는 보행자는 구름다리나 지하건능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8조(대렬의 통행)

대렬은 걸음길로 질서있게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차길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9조(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의 통행)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신체장애자 또는 학령전어린이가 도로에서 다니거나 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보행자의 손수레와 애기차리용)

손수레나 애기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걸음길로 통행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짐을 싣거나 애기를 태운 손수레, 애기차를 리용할 경우에는 구름다리 밑이나 지하건능길우로 통행할 수 있다.

제21조(보행자의 버스, 전차리용)

버스, 전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줄을 서서 오르내려야 하며 차에 매달리거나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 집짐승, 폭발물,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가지고 버스, 전차에 오르지 말며 차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보내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제22조(보행자의 삼륜자전거리용)

삼륜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의 너비가 삼륜자전거집합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보행자의 자전거리용)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자전거길로 통행하며 자전거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에는 학령전어린이 1명을 태울 수 있으며 실은 짐의 너비는 자전거손잡이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학령전어린이를 태우거나 짐을 실은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구름다리밧이나 지하건능길우로 통행할수 있다.

신호종, 조명등이 없거나 제동장치가 불비한 자전거는 리용할수 없으며 교통이 복잡한 곳, 차길, 자전거길에서는 자전거를 따라앞설수 없다.

제24조(보행자의 우마차리용)

우마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도시안에서는 정해진 길과 시간에만 통행하여야 한다.

실은 짐은 정해진 길이와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차가 어길수 없는 좁은 차길, 도시도로, 다리에 우마차를 세워두거나 배설물받이가 없는 우마차를 리용할수 없다.

제4장 차의 통행

제25조(차통행의 기본요구)

차의 통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도로교통안전의 기본담보이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과 차감독기관은 운전사의 자격심사와 등록을 엄격히 하고 차를 정확히 등록, 검사하여야 한다.

제26조(차운전면허의 종류)

차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수 있다.

운전면허에는 자동차, 트랙포르, 무궤도전차, 오토바이, 지정차운전면허가 속한다.

제27조(면허시험신청문건과 응시)

차의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운전면허시험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면허시험에서 합격한 공민을 등록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에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28조(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사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내용이 달라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협조원의 차운전금지)

협조원은 차를 운전할수 없다.

차를 운전하려는 협조원은 운전사의 립회밀에 정해진 시간과 차길, 그린길차운전시험장 같은 곳에서만 할수 있다.

제30조(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차감독기관은 승용차, 화물차, 버스, 트럭트르,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오토바이 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규정한 편제밖의 승용차, 소형버스는 등록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제때에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제31조(차등록의 종류)

차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첫 등록은 해당 차감독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동등록은 해당 차감독기관에 등록된 차를 이관받았거나 차를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명칭과 소속,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 변경등록은 등록된 차의 구조와 용도, 색깔 같은것을 고치거나 번호를 바꾸려는 경우에 한다.

제32조(차의 등록)

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차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감독기관은 차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차는 차경력표에 밝힌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폐기된 차, 비법적으로 구입한 차, 중고승용차와 소형버스, 조향륜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첫 등록을 할수 없다.

차감독기관은 3~5년에 1차씩 차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차등록증서의 발급, 재발급)

차감독기관은 차를 등록하고 차경력표, 번호판 같은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는 차감독기관에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차등록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차기술검사의 종류)

차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폐기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지정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 기술검사는 차를 첫 등록한 경우, 변경기술검사는 차를 변경등록한 경우, 폐기

기술검사는 차를 폐기하는 경우, 정기기술검사는 정해진 주기로, 지정기술검사는 필요한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한다.

제35조(차의 기술검사)

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술검사신청문건을 차감독기관에 내며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공구,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차감독기관은 기술검사신청문건을 검토하고 검사를 하며 그 정형에 대하여 차경력표에 밝혀야 한다.

제36조(차등록의 삭제)

차등록을 삭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차감독기관에 삭제신청문건과 차등록증서를 내고 차등록삭제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은행기관은 차등록삭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한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37조(차에 장치물의 설치와 표식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차에 장치물을 설치하거나 표식을 할수 없으며 수은지 같은것을 붙이거나 색유리를 끼울수 없다.

제38조(차의 번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에 정한 규격과 형식, 방법대로 번호판을 달고 차번호를 써야 한다.

차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주된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아야 하며 지방별로 구분할수 있어야 한다.

등록수속을 위하여 통행하는 차는 해당 차감독기관이 발급한 립시표식판을 달아야 한다.

차의 번호판은 차등록기관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제39조(불비한 차의 통행금지)

차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 가스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내보내거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 어지러운 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조명 및 신호장치, 뒤비침거울, 유리닦개장치 같은것의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40조(차운전사의 임무와 금지사항)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차경력표, 운행증과 공구, 비품, 예비부속품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고 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술이나 주정이 높은 음료, 약물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배차, 교통안전지령체계와 검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리정비한 차를 배차하고 교통안전지령을 주며 매일 검차를 하여야 한다.

검차원은 차대수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으로 둘수 있다.

제42조(차의 달림선)

차는 차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된 차길에서는 정해진 차달림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되어있지 않는 차길에서는 차의 속도와 종류, 형, 운행목적 같은 것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43조(차의 경적금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같은 구역이나 도시안에서는 차의 경적을 울릴수 없다.

제44조(차의 속도)

차는 차달림선에 규정된 속도로 통행하며 규정된 속도를 낼수 없을 경우에는 오른 쪽달림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7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차의 급제동, 급저속금지)

통행하는 차는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

사고위험이 조성되어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려 할 경우에는 해당 한 안전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46조(차의 저속통행)

사립길, 정류소와 건능길표식이 있는 곳,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복잡한 곳 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차는 속도를 낮추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47조(차의 고속도로도로통행)

고속도로도로로 통행하는 차는 시속 80km이상으로 해당 달림선에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도로에 들어서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차는 정차선 또는 1선으로 통행하며 정해진 속도로 해당 달림선에 들어서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도로를 건너가려는 차는 해당 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한다.

고속도로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48조(차의 안전거리, 차대렬에 끼여들기금지)

차는 제정된 안전거리를 보장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의 대렬에는 끼여들수 없다.

제49조(차의 따라앞서기와 금지장소)

차는 차달림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앞선 차를 따라앞서려 할 경우 해당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차는 따라앞서려는 차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차를 또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좁은 차길, 따라앞설수 없는 표식이 있는 구간의 차길, 굽인돌이, 사립길, 건능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능길 같은 곳에서 차를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제50조(차의 어기기)

언덕길 같은 곳에서 어기는 차는 먼저 본 차 또는 내려오는 차가, 큰길과 좁은 길에서 어기는 차는 큰길로부터 들어오는 차가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51조(차의 정차와 주차금지장소)

멈춰서려는 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정차시간을 초과하지 말며 밤에는 해당한 등불을 켜야 한다.

굴길, 다리, 사طم길, 철길건능길, 시야가 제한된 언덕길과 굽인돌이 같은 곳, 정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주차표식이 없는 곳에는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52조(차의 승차인원)

승용차, 버스 같은 차에는 정해진 수의 인원만을 태워야 한다.

화물차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태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을 실은 화물차에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정해진 수의 상하차인원만을 태울수 있다.

제53조(차의 짐적재정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포장)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실을수 없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져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을 하고 실어야 한다.

제54조(승차가 금지된 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탱크식 화물차와 련결차, 강재, 원목,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고 소방기재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55조(차의 련결차)

련결차를 끌려는 차는 련결고리를 2중으로 하여야 한다.

여러대의 련결차를 끌러 할 경우에는 매 련결차에 제동,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차의 고장퇴치, 고장난 차의 끌기)

통행중에 고장난 차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에 세워놓고 경고표식을 한 다음 고장을 퇴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를 세워둘수 없는 도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

고장난 차를 끌고가려는 차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밤에는 조명등을 켜야 한다.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차는 앞차를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제57조(건능길에서 보행자의 우선권보장)

차는 건능길에서 보행자가 차길을 건너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차길을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58조(차의 사립길통행)

차는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립길에서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할수 없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립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59조(차의 굴길통행)

굴길을 통행하는 차는 시속을 낮추면서 조명등을 켜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굴길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0조(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차는 다리의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1조(차의 철길건능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차는 건능길 10m 앞에 차를 세우고 열차의 운행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가 있는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의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2조(차의 밤통행)

밤에 통행하는 차는 조명등을 켜고 조명의 보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차가 어기는 경우에는 원거리등과 근거리등을 엇바꾸어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63조(버스, 전차의 통행)

버스, 전차는 문을 닫고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사립길에서 려객을 태운 버스, 전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는 버스, 전차를 세울수 없다.

제64조(특수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교통안전차, 도로시설관리차 같은 특수차는 필요한 경보장치와 표식등,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차는 긴급한 일이 제기되었거나 도로안전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만 경보장치와 표식등, 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달림선에 제정된 속도보다 높은 속도 또는 낮은 속도로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특수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차와 시험차의 통행)

교육차와 시험운행을 하려는 차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육차, 시험차에는 제정된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6조(무한궤도차의 통행금지)

무한궤도차는 포장도로로 통행할수 없으며 화물차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무한궤도차의 포장도로통행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67조(트랙포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도시에서 트랙포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국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끼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수 있다.

제68조(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운전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사고현장을 빨리 정리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9조(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0조(교통상안전과 편리보장)

인민보안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 장악하고 지도하여 보행자와 차의 교통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교통보안일군, 차감독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의 양성)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보안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 차감독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제72조(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73조(도로교통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안전교양실》을 꾸려놓고 도로교통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운전사회의와 《설비점검의 날》, 《사고방지대책의 날》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4조(학생들의 교육교양)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들속에 교통안전과 교통도덕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며 《교통안전교양마당》 같은것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75조(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출판, 보급)

출판기관과 문학예술기관,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과 관련한 대중잡지, 그림책, 절그림, 소설, 영화, 연극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창작, 출판, 보급하여야 한다.

제76조(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관리와 리용, 보행자와 차의 통행, 차운전자격심사, 차의 등록과 검사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7조(사고위험개소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질서를 어겼거나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고위험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78조(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는 억류한다. 이 경우 억류기일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제79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위치를 변경시켰거나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80조(벌금)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관리 및 리용질서를 어겨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통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81조(운행중지)

차의 기술상태가 불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리용하였거나 통행질서를 심히 어겼거나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제82조(운전자격의 정지)

차의 운전사등록과 운전자격심사, 통행질서위반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운전사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83조(운전자격의 강급)

차사고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차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운전자격급수를 낮춘다.

제84조(운전자격의 박탈)

통행질서위반행위의 정상이 무겁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운전사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85조(차의 몰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거나 등록되지 않은 차를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번호판, 장치물 같은것을 설치하였거나 차경력표를 위조한것 같은 엄중한 교통질서위반행위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8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교통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4호로 채택

제1장 총기류관리법의 기본

제1조(총기류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기류관리법은 총기류의 등록과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총기류란 저격무기, 사냥총, 경기용총 같은 사격수단을 말한다.

총기류에는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수 있는 수단도 속한다.

제3조(총기류의 제작원칙)

총기류는 국가가 정한 기관, 기업소가 제작한다.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제작할수 없다.

제4조(총기류의 소유 및 매매금지원칙)

총기류는 국가의 통제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소유할수 없으며 사고팔수 없다.

제5조(총기류에 의한 사고방지원칙)

국가는 총기류관리를 엄격히 하여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6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안에서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인민무력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총기류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제7조(총기류공급과 운반의 기본요구)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운반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조(총기류의 공급기관)

총기류는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통일적으로 넘겨받아 공급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넘겨받는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총기류공급신청)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총기류공급신청서에는 총기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과 총기류의 수량, 리용목적, 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총기류의 공급방법)

총기류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보안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총기류를 정해진 질서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계획에 없거나 해당 문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총기류를 공급할수 없다.

제11조(총기류의 접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총기류의 번호, 등급, 수량, 성능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급받은 총기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총기류의 등록)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총기류의 운반허가)

총기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총기류를 운반할수 없다.

제14조(총기류의 운반수단)

총기류의 운반은 렬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무장 인원이 호송한다.

제15조(총기류운반의 안전성보장)

총기류를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수수단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총기류를 실고부릴 때와 운반과정에 정해진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총기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제16조(총기류의 운반도중 체류 및 숙박)

총기류를 운반하는 도중에 체류 또는 숙박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3장 총기류의 보관

제17조(총기류보관의 기본요구)

총기류보관을 잘하는것은 총기류의 도난 또는 분실을 막고 성능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의 보관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8조(총기류보관기관)

총기류보관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갖추고 총기류를 규정대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총기류보관시설건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을 사고위험성이 적고 총기류보관에 편리한 장소에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주변에는 보초소, 감시대, 은폐호, 울타리, 차단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총기류보관시설경비조직)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무장경비를 조직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경비인원은 경비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총기류보관시설의 출입)

총기류보관시설에는 해당 인원외에 누구도 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다른 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책임일군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리성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제22조(총기류보관시설관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보관시설에 대한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비가 새거나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기류보관시설과 그 주변에서는 화재를 발생시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3조(총기류실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실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기류실사는 총기류등록대장에 기록된 내용과 현물을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4조(총기류의 기술검사, 수리, 정비)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에 대한 기술검사를 진행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수리,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쓸수 없는 총기류의 처리)

인민보안기관은 자기의 사명을 보장할수 없게 된 총기류를 해당 절차에 따라 등급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수 있다.

제4장 총기류의 리용

제26조(총기류리용의 기본요구)

총기류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총기류에 의한 사고를 막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총기류를 정해진 규정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총기류의 리용허가)

총기류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리용장소와 목적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총기류를 내주거나 받는 질서)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총기류를 내주거나 받아들이는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비상동원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기류를 밤에 내주거나 받아들일수 없다.

제29조(총기류의 휴대)

승인없이 총기류를 휴대하고 다닐수 없다.

공무집행을 위하여 총기류를 정상적으로 휴대하는 인원은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총기류휴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기류를 립시로 휴대하는 인원에게는 립시총기류휴대증을 발급한다.

제30조(총기류휴대자의 임무)

총기류휴대인원은 총기류를 항상 몸에서 떼어놓지 말며 정해진대로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총기류의 반환)

총기류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것을 인민보안기관에 바쳐야 한다.

총기류를 반환받는 인민보안기관은 총기류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총탄, 수류탄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탄이나 수류탄 같은것을 리용한 다음 그 정형을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탄피와 남은 총탄, 수류탄을 바쳐야 한다.

제33조(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총기류를 공무집행, 경비근무, 훈련과 기타 허가받은 용도밖의 다른 일에 리용하는 행위
2. 총기류를 집 또는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짐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행위
3. 총기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기는 행위

4. 승인없이 총기류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여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가는 행위
5. 총기류를 파손시키는 행위
6. 총기류를 자체로 만드는 행위

제34조(총기류도난, 분실신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총기류를 도난당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인민보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총기류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총기류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총기류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총기류관리부문의 일군양성, 과학연구사업강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교육, 과학연구기관은 총기류관리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총기류관리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총기류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총기류의 공급과 운반, 보관,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총기류의 회수)

총기류를 허가없이 리용하였거나 위법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41조(벌금적용)

총기류를 파손시켰거나 총기류보관시설의 건설과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기류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제4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6호로 채택

제1장 화약류취급법의 기본

제1조(화약류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약류취급법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약류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화약류의 종류, 취급자격)

화약류에는 화약, 폭약, 화공품 같은것이 속한다.

화약류의 취급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제3조(화약류의 생산, 보관원칙)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을 바로하는것은 화약류취급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며 제정된 장소에만 보관하도록 한다.

제4조(화약류의 공급, 운반원칙)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제정된 질서대로 운반하는것은 화약류의 람용과 분실, 그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를 계획된 단위에만 공급하며 운반에서 안전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제5조(화약류의 사용원칙)

화약류는 생산과 건설의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화약류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화약류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적용대상)

이 법은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다른 나라 기업,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제8조(화약류생산과 보관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생산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생산, 보관하여야 한다.

공민은 화약류를 보관할수 없다.

제9조(화약류의 생산기관)

화약류의 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업소가 한다.

생산허가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한다.

제10조(화약류생산시설의 승인과 검사)

화약류의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 이설, 변경하려는 기업소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생산시설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새 종류의 화약류생산)

기관, 기업소는 새 종류의 화약류를 생산하거나 연구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려 할 경우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화약류의 규격)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정된 규격대로 생산하여야 한다.

화약류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13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제품검사설비안전도를 보장하고 성능실험설비를 갖추며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제14조(화약류의 포장)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화약류의 포장을 제정된 규격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은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생산한 화약류의 이관)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생산한 화약류를 정확히 검수하여 화약류공급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제16조(화약류생산폐기물의 처리)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는 폐기물처리장과 폐수정화장을 꾸려야 한다.

폐기물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

화약류를 생산하는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하고 로동보

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화약류를 생산할수 없다.

제18조(화약류의 보관창고건설)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약창고, 화공품창고를 건설, 확장할 경우에 안전기술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약류의 보관창고는 주민지역, 건물, 시설물로부터 해당한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화약류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종류와 특성, 안전성에 맞게 보관관리하며 보관량과 기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화약류보관창고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할수 없다.

제20조(화약류의 입출고, 실사)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고정형은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며 보관한 화약류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제21조(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보수정비)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보관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생산, 보관시설은 사용할수 없다.

제22조(화약류보관창고의 경비)

화약류를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보관창고에 무장경비성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는 교대창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화약류생산, 보관시설의 출입질서)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는 제정된 인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화약류를 생산,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장, 창고 같은 곳에 다른 인원이 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화약류의 생산, 보관장소에는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입할수 없다.

제24조(위험작업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안전거리안에서 발파, 불놓이, 용접 같은 폭발을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폭풍피해권안에서 건설금지)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의 폭풍피해권안에는 다른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설치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폭풍피해권안에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

제26조(화약류공급과 운반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공급과 운반은 화약류를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화약류의 운반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7조(화약류공급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화약류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약류공급계획을 생산량과 수요, 소비량, 작업대상과 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세워야 한다.

제28조(화약류의 공급기관)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공급기관이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기술적특성과 현장조건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화약류공급기관은 화약류의 원단위소비기준, 재고량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29조(화약류의 공급장소)

화약류의 공급은 화약류보관창고에서 한다.

화약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해당 공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30조(화약류의 운반허가)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운반은 제정된 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화약류의 운반수단)

화약류의 운반은 공급기관으로부터 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제정된 렬차, 화물자동차, 짐삐스로, 화약류보관창고에서 일일화약류보관창고까지는 전차, 권양기, 고무바퀴달구지, 자전거로 한다.

일일화약류보관창고에서 발파작업현장의 화약류운반은 화약배낭, 화약함으로 한다.

제32조(화약류의 운반수단검사)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반수단과 짐함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반수단과 짐함에는 불끄는 기재를 갖추고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화약류의 상차)

화약류를 렬차, 자동차로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과 폭약, 퇴관, 도폭선을 따로 실어야 한다. 그러나 퇴관과 도화선, 수지관도폭선은 함께 실을 수 있다.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실을수 없다.

제34조(화약류운반차의 승차금지)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는 운반인원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화약류를 운반하는 공민은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에서 불을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제35조(화약류의 운반기일과 도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운반을 정한 기일에 해당 도로로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약류를 실은 화차가 목적지까지 제정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제36조(화약류운반차의 정차, 주차질서)

화약류를 실은 운수수단은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정차, 주차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지역, 도시도로에 운수수단을 주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고 경비를 세워야 한다.

제4장 화약류의 사용

제37조(화약류사용의 기본요구)

화약류의 사용을 바로하는것은 그 효과를 높이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화약류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해당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화약류의 사용허가)

화약류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사용장소와 주변의 안전성을 정확히 따져보고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화약류사용시 갖추어야 할 기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필요한 조명기재, 신호기재, 발파기

재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화약류의 사용장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를 승인된 장소에서 제정된 질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남은 화약류는 화약류보관창고에 입고시켜야 한다.

제41조(화약류를 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질서)

화약류를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의 사용에 대하여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정기적인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발파작업시의 안전대책)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환경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발파작업은 발파설계지령서대로 하여야 한다.

제43조(발파대의 조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를 전문으로 하는 발파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발파대를 조직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임발파공 또는 겸임발파공을 두어야 한다.

제44조(대발파시의 안전조치)

대규모의 발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험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발파시간, 신호, 대피장소를 알려주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발파는 전기발파로 주간에 하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발파질서)

발파는 발파공이 한다.

발파공은 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도화선에 불을 달지 말아야 한다.

제정된 기준보다 많은 도화선에 불을 달려 할 경우에는 묶음식발파를 하거나 여러 명의 발파공이 하여야 한다.

제46조(갱안에서의 발파)

갱안에서 발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파가스중화제를 써야 한다.

가스 또는 폭발성탄먼지가 있는 갱안에서는 제정된 폭약을 사용하며 전기발파로 하여야 한다.

유독성가스가 생기는 폭약은 갱안에서 사용할수 없다.

제47조(화약류의 수출입)

화약류를 수출,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화약류취급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화약류취급기관의 의무)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화약류취급에서 제기된 문제는 제때에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화약류취급일군의 양성, 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그들의 전문 기술수준을 높이며 《사고방지대책월간》과 《사고방지대책의 날》에 화약류취급과 관련한 안전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분기마다 화약류취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제52조(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화약류취급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화약류취급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3조(비법행위의 금지,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화약류를 가지고있거나 팔고사거나 또는 제조, 수출입, 바꿈질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발견한 비법행위를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수수료의 지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약류취급허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5조(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화약류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화약류의 생산과 보관, 공급과 운반, 사용질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원상복구, 손해보상)

화약류의 취급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7조(중지)

화약류의 취급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를 합의받지 않고 화약류의 생산, 보관시설, 설비를 건설, 제작하였거나 해당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2. 불비한 생산설비로 화약류를 생산하며 로동보호, 로동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위험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3. 화약류의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관시설이 불비한 경우
4. 규격에 맞지 않는 화약류를 생산할 경우
5. 발파작업질서를 어겼을 경우
6.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한 경우

제58조(벌금)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화약류를 공급하였거나 운반, 보관, 입출고, 사용질서를 어겼거나 화약류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59조(몰수)

화약류를 몰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없이 화약류를 생산, 보관, 운반, 사용하였을 경우
2. 공급계획에 없는 화약류를 공급하였을 경우
3. 용도에 맞지 않게 화약류를 사용하였을 경우
4. 보관창고밖에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5. 공민이 화약류를 가지고있었을 경우
6. 보관능력을 초과하여 화약류를 보관하였을 경우

제6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약류취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8호로 채택

제1조(폭발물처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은 폭발물의 발견과 탐지, 회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폭발물의 분류)

폭발물은 폭발성을 가진 물건이다.

폭발물에는 폭탄, 포탄, 수류탄, 지뢰, 총탄, 신관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폭발물처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투하, 매몰, 설치하였거나 묻혀있는 폭발물을 해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제4조(폭발물처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폭발물처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5조(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기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도(직할시)인민보안기관이 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그러나 자체로 처리할수 없는 폭발물은 인민보안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수 있다.

인민보안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를 위하여 전문폭발물처리대를 조직할수 있다.

제6조(폭발물의 계획적탐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 많이 투하, 매몰된 장소, 중요도로와 철길, 행사장 같은 곳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제7조(파철집합장소의 조사)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제철소, 제강소, 고급속사업소, 수매소 같은 곳에 모아놓은 파철무지속에 폭발물이 없는가를 월 또는 주 1차씩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정형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파철상하차시 폭발물의 확인)

파철을 신고부리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을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그 장소를 차단한 다음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폭발물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폭발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0조(훈련장에서 폭발물의 확인)

실탄사격훈련을 하는 기관은 훈련이 끝난 후 불발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탄피를 정확히 회수하여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불발탄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때에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폭발물발견장소의 차단)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발견한 장소의 일정한 구역을 차단하고 사람, 운수수단, 짐짐승 같은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차단구역에는 위험표식을 하고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폭발물의 소유금지)

승인없이 폭발물을 보관하거나 리용, 판매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얻었거나 비법적으로 가지고있는 폭발물을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13조(폭발물의 운반)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견한 폭발물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하는 수단에 안전시설을 갖추고 붉은색삼각기발을 달아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의 운반수단에는 폭발물처리일군밖의 다른 인원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을수 없다.

제14조(폭발물운반차의 운행)

처리하려는 폭발물을 실은 운반수단은 정해진 시간과 도로에 제한없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안전속도를 유지하며 주민지역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 세우지 말아야 한다. 교통지휘일군은 폭발물의 운반수단을 지체시키지 말고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15조(폭발물의 처리장소)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지형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폭발물처리장소를 정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인민보안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합의없이 폭발물처리장소와 안전시설을 없애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

제16조(폭발물의 처리방법)

폭발물의 처리는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순폭폭발의 방법으로 할수 없는 폭발물은 해체하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폭발물을 매몰하거나 물속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할수 없다.

제17조(폭발물의 처리절차)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폭발물처리신청문건에는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처리장소와 날자, 시간, 방법, 차단조직정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상급기관은 폭발물의 종류와 수량,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정확히 료해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18조(폭발물의 처리)

폭발물의 처리는 폭발물처리장소에서 2명이상의 전문폭발물처리일군이 한다.
폭발물처리장소에는 폭발물처리일군외에 누구도 들어갈수 없다.

제19조(폭발물처리시의 안전대책)

폭발물을 처리하려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처리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폭발물의 처리날자와 시간, 장소, 주의사항 같은것을 미리 알려주며 처리장소에 대한 인원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폭발물의 처리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폭발물의 폭약처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을 해체하는 과정에 나온 폭약을 순폭처리하거나 화약류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다른 나라의 의뢰에 의한 폭발물처리)

인민보안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의뢰하여온 폭발물을 탐지, 처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22조(폭발물처리정형의 보고)

폭발물을 탐지, 회수, 처리하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그 정형을 정확히 대상에 기록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

폭발물처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사업체제를 바로세우고 폭발물처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폭발물처리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폭발물처리일군의 우대)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처리일군의 생활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폭발물처리일군에게는 해당하는 가급금을 준다.

제26조(폭발물처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폭발물의 탐지, 회수, 처리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능력있는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벌금, 몰수)

폭발물을 바치지 않고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며 해당 폭발물은 몰수한다.

제2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 방 법

주체94(2005)년 2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64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소방법의 기본

제1조(소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방사업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화재방지사업원칙)

화재방지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재방지구역을 분담하고 화재방지책임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불끄기사업원칙)

불끄기는 화재로부터 국가재산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화재신고체계를 바로세우고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도록 한다.

제4조(소방수단의 현대화)

국가는 소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소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소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소방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화재방지

제7조(화재방지의 기본요구)

화재를 방지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과 국민의 생활상안정을 보장하

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감시분담)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개소를 장악하고 그에 대한 감시를 분담하여야 한다.

감시를 분담받은 종업원은 화재위험개소를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위험개소퇴치, 소방시설보수정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개소를 찾아내고 제때에 퇴치하며 소방시설을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보수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퇴치)

지방정권기관은 공민들속에서 화재방지를 위한 교양을 강화하고 그들이 살림집의 화재위험개소를 제때에 퇴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소방규칙작성, 보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소방규칙을 만들고 종업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새로 입직한 종업원과 실습생, 립시로 동원된 인원은 소방규칙을 학습시키고 일을 시켜야 한다.

제12조(화재위험시설, 화재수감부의 설치 및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 불취급시설 같은 화재위험시설과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시설,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의 설치 및 관리는 해당 전문기술일군이 하여야 한다.

제13조(소방안전설명서 및 화재위험성물질표식)

화재위험성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에 인화점, 발화점 같은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거나 화재위험성물질표식을 하여야 한다.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화재위험성물질표식을 하지 않은 화재위험성 제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14조(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성물질을 소방수단이 갖추어지고 안전조건이 담보되어있는 건물이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위험성물질을 정해진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에는 석유, 프로판가스 같은 주민용연료만 보관할수 있다.

발화성물질은 다른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과 함께 보관할수 없다.

제15조(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보관건물에서 불취급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소방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 또는 소방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창고에 사무실, 경비실, 침실의 설치금지)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창고에는 사무실, 경비실, 침실을 꾸리거나 불취급시설을 설치할수 없다.

불탈성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며 설치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화재위험성물질의 운반)

화재위험성물질을 운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용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전용수송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리용하려는 수송수단에 필요한 소방기재를 갖추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소방차통로차단, 소방시설파손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방시설을 파손시키거나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예견된 건물사이의 통로와 소방대의 통신수단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와 소방대가 리용하는 통신수단을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경영기관과 소방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화재위험개소의 통보)

화재위험개소를 발견한 공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즉시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총계획의 소방지표)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외부소화전, 소방용수, 건물의 불막이안전거리와 안전구획, 화재위험성물질생산과 저장시설의 위치,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 소방대건물 같은 소방지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21조(건설설계의 소방지표)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설계에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반영된 소방지표와 화재위험성정도에 따르는 불견딤급수, 화재위험시설의 배치, 불막이시설, 내부소화전과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 피난 및 진입통로와 설비, 불막이재료 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2조(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취급건물의 위치)

화재위험성물질을 전문으로 생산, 보관취급하는 기업소, 단체의 위치는 도시주변 또는 살림집구획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 건조장, 가열로, 탈곡장, 정미소, 식량창고 같은 불탈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의 위치는 화재위험성이 없는 곳에 정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의 공급소, 창고의 건설명시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한다.

제23조(소방시설의 검사)

건설주기관은 건설물의 시공을 끝내면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소방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리용할수 없다.

제24조(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취급시설정기검사)

인민보안기관은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취급시설과 수송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보관취급시설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화재위험성물질을 판매공급할수 있다.

제25조(탈곡장, 식량창고, 정미소, 건조로검사 및 사용허가)

탈곡장, 식량창고, 정미소, 건조실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리용허가를 받은 대상에만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26조(행사때 소방대책)

촛불, 축포, 전기장식물 같은것을 리용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전기장식물을 검사하거나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화재위험표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경공업제품에 화재방지와 관련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새겨야 한다.

제3장 불끄기와 구조

제28조(불끄기와 구조의 기본요구)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고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는것은 화재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불끄기와 구조에서 기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불끄기기재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불끄기기재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30조(화재의 통보)

화재를 발견한 공민은 즉시 관할소방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화재통보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제31조(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작업)

화재를 발견한 군중자위소방대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화재현장가까이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불끄기와 구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32조(인민보안소방대, 산업소방대의 불끄기작업)

화재통보를 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불끄기준비를 갖추고 제때에 현장에 나가 인원과 중요재산을 먼저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가까이에 있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에 불끄기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지원을 의뢰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불끄기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33조(소방차의 통행)

화재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규정된 달림속도, 달림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은 소방차가 멈춤없이 달릴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방차는 통행이 제한된 차길과 차길이 아닌 곳으로 통행하거나 음향 또는 불빛으로 경보신호를 할수 있다.

제34조(소방차통행의 보장)

도로로 통행하는 차와 보행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는 소방차대렬에 끼여들수 없다.

제35조(불끄기의 지휘)

불끄기지휘는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이 한다.

지원을 의뢰받고 불끄기에 동원된 소방대는 관할지역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

불끄기지휘일군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경계구역을 정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화재현장에서 내보내거나 교통차단을 조직할수 있다.
2. 화재경계구역에서 화재위험성물질과 불탈성물질의 수송을 차단하거나 전력공급을 중지시킬수 있다.
3. 필요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불끄기와 구조, 부상자의 구급처치와 후송에 동원시킬수 있다.
4. 불끄기에 필요한 수원, 건물, 시설물을 리용할수 있다.
5. 불이 퍼지는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시킬수 있다.

제37조(화재사고현장보존과 조사)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불을 끈 다음 화재사고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8조(화재사고현장출입)

화재사고현장에는 해당 일군만이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가 끝난 다음 현장과 재산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39조(화재사고조사일군의 권한)

화재사고조사일군은 화재사고와 관련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를 보거나 공민의 진술을 들을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봉사료)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의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에 서 일어난 불을 끈 경우에는 해당한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소방기구

제41조(소방대조직의 기본요구)

소방기구를 바로 조직하는것은 소방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 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소방대의 분류)

소방대는 소방관할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자위소방대는 소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소방대와 일하면서 불끄기에 참가하는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인민보안소방대는 시(구역), 군인민보안기관에, 자위소방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속한다.

제43조(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의 조직)

시(구역), 군에는 인민보안소방대를, 규모가 특별히 크고 화재위험성이 많은 기업소에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를 조직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의 조직승인은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44조(군중자위소방대의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군중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군중자위소방대를 부락별로 조직할수 있다.

제45조(인민보안소방대의 임무)

인민보안소방대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지진피해 같은 구조작업도 할수 있다.

제46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그러나 산업소방대는 정한데 따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불끄기도 한다.

제47조(소방대조직 및 해산합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위소방대를 새로 조직하거나 없애려 할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8조(소방대의 권한)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관할지역에 있는 소방대상과 소방차의 통로, 소방용수, 불취급정형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불량개소를 즉시 퇴치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겸직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겸직으로 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를 꾸려야 한다.

겸직소방일군과 화재방지책임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방지사업을 맡아하여야 한다.

제50조(소방대와 겸직소방일군의 타사업동원금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 겸직소방일군은 불끄기와 구조, 화재방지와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장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소방사업에 대한 지도)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방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자위소방대에 대한 지도)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는 불끄기훈련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를 정상적으로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소방수단, 지휘수단의 현대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

극 받아들이어 소방수단을 현대화하며 불끄기작업과 지휘를 무선화, 컴퓨터화하여야 한다.

제55조(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방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6조(소방제품생산)

소방수단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규격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새 규격의 소방수단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소방전문가양성 및 소방과학연구사업강화)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소방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소방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8조(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 소방사업조건보장장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9조(벌금부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불취급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 운반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기 또는 불취급시설의 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4. 불끄기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5. 화재위험성물질의 생산, 보관취급설비를 검사받지 않고 사용하였을 경우

제60조(중지)

건물 또는 시설물의 시공과 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할 경우
2. 소방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물을 사용할 경우
3.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비하지 않았을 경우
4. 전기, 불취급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제61조(몰수)

화재위험성물질의 보관취급질서를 어겨 화재위험을 조성하였거나 화재위험으로 리용이 중지된 설비와 제품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제품을 몰수한다.

제62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소방시설과 기재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획, 노동, 재산관리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정량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주체 88(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 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6호로 수정보충
주체 99(201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1조(인민경제계획법의 사명)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국가의 지령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비준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제3조(인민경제관리에 대한 중앙집권적지도원칙)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밑에 인민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한 계획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보장원칙)

인민경제계획은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한다.

제5조(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 균중로선의 관철원칙)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 것으로 만드는것은 인민경제계획사업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서 균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인민경제계획작성의 근본원칙)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계획실행규률을 강화하며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7조(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원칙)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계획사업체제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계획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8조(인민경제계획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계획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인민경제계획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일군양성체제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제10조(인민경제계획작성사업의 조직)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민경제계획작성기준)

국가의 정책은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기준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기준, 경영실태, 통계,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3조(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은 국가적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제14조(인민경제계획의 구분)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15조(인민경제전망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생산적고정재산의 갱신과 확대, 자연부원의 개발, 과학기술발전 같은 경제발전에서 주는 요인을 타산하여 인민경제전망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6조(예비수자의 작성)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수자를 묶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타산하여 예비수자를 묶어야 한다.

예비수자는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통제수자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인민경제발전방향에 따라 통제수자를 묶어 해당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받은 통제수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8조(인민경제계획초안의 작성과 검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균중토의를 진행하고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만들어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인민경제계획지표의 등록)

인민경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가계획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는 지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비준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는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다.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

제21조(인민경제계획의 비준, 시달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의 비준과 시달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심의, 승인하고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받아 집행할 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2조(인민경제계획의 심의제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와 지방인민경제계획의 심의승인)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4조(인민경제계획의 시달)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비준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10월말까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5조(인민경제계획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수 없다.

제26조(인민경제계획의 대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정형을 료해하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

제27조(인민경제계획실행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은 법적과제이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행방도를 알려줄 의무)

인민경제계획실행의 직접적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계획과 그 실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9조(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맺어야 한다.

제30조(인민경제계획의 월별분할)

해당 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월별분할은 분기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1조(인민경제계획의 실행준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준비를 하여야 한다.

계획실행준비를 하지 않고는 생산과 건설을 할수 없다.

제32조(인민경제계획실행의 선후차, 수출품과 협동생산품의 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먼저 생산하며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은 월 상순안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

로동행정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4조(내부예비의 동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어 인민경제계획실행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35조(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의 장악)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실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매일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생산과 건설의 금지)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은 할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민경제계획을 변경시켜 실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총화

제37조(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를 바로하는것은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총화하여야 한다.

제38조(인민경제계획실행총화주기)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기,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순별로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39조(예비총화와 완전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예비적으로 총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계획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인민경제계획실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계획실행에 중심을 두고 련관된 지표들의 계획실행정형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40조(인민경제계획실행의 평가기준)

인민경제계획실행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실행실적으로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의 전달, 공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은 공시할수 있다.

제6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인민경제계획작성방법의 개선)

국가계획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계획작성방법을 개선하고 그에 기초하여 계획사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그 총화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계획실행실적제외 및 손해보상)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을 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류용, 낭비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분담된 계획지표를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거나 인민경제계획을 정해진 기간에 시달하지 않은 경우
2. 인민경제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친 경우
3.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경우
4.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한 경우
5. 계약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6. 지표별계획에는 상관없이 생산하기 쉽고 수입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7. 인민경제계획이 없이 생산, 건설을 한 경우

제48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

주체 91(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채택
주체 93(2004)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2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토계획법의 기본

제1조(국토계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토계획의 분류)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토계획에는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이 속한다.

제3조(국토계획의 작성원칙)

국토계획을 바로 작성하는것은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작성에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4조(국토계획의 비준원칙)

국토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국토계획의 실행원칙)

국토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것은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토지정리와 산림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 같은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6조(기본건설계획과 설계의 작성, 실행원칙)

국토계획은 기본건설계획과 설계작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본건설계획과 설계를 국토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제7조(전인민적인 국토관리의 원칙)

국가는 국토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토를 아끼고 사랑하며 국토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 있게 양성하며 국토계획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국토계획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국토계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국토계획의 작성

제10조(국토계획의 작성기관)

국토계획의 작성은 국토계획사업의 첫 공정이다.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제11조(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침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경제발전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5. 국방상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국토계획의 전망기간)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은 50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을 50년보다 짧게 할수 있다.

제13조(국토계획작성의 기준)

국토계획작성의 기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에 근거하여 국토계획작성과제를 설정하고 지도서를 만들어 해당 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4조(국토실태의 조사, 장악)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국토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국토실태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한 정보자료의 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원상태, 인구수, 경제발전 전망, 건설실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환경실태, 위성사진, 지도 같은 정보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국토계획초안의 작성)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실태를 연구, 분석하고 국토계획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계획초안에는 국토개발전략과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림, 하천, 호소, 바다의 리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개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파 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국토건설총계획작성의 기초)

전국국토건설총계획은 경제, 문화발전전망 같은것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과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에,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의 작성은 도(직할시)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한다.

제3장 국토계획의 비준

제18조(국토계획비준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의 비준절차를 엄격히 지키는것은 국토계획의 정확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작성한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내각에,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국토건설총계획의 비준제기)

내각은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 또는 상무회의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0조(전국,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1조(기타 국토건설총계획의 심의승인)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도(직할시)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된 국토건설총계획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2조(비준된 국토계획의 시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비준된 국토계획을 1개월안으로 국가계획기관, 국가건설감독기관,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4장 국토계획의 실행

제23조(국토계획실행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의 실행은 국토와 자원, 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관리하기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4조(국토계획실행순차의 제정)

국토계획을 시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당면 또는 전망 과제와 년차별, 대상별순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과제, 건설총계획의 작성)

국토계획실행을 위한 대상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국토건설, 개발신청문건의 제기)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부지조사보고서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27조(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을 승인한 경우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여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의 발급은 건물, 시설물의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개발승인서의 발급은 자원의 조성과 개발, 도시 및 산업지구의 건설, 보호구역과 특수구역의 설정 같은 경우에 한다.

제28조(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대상)

도시와 산업지구 영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건설위치지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29조(건설명시와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지출허가 같은것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원을 개발하거나 보호구역을 설정하려 할 경우에는 건설명시를 받지 않는다.

제30조(국토건설, 자원개발조건)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국토개발승인서에 지적된대로 국토를 건설하거나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국토건설, 자원개발에 착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1조(국토계획대상과 관련시설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계획대상과 그 관련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복공사를 없애며 노력과 자재, 자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국토계획실행정형의 보고)

국토계획을 실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계획의 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5장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국토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국토계획정보기지의 축성, 변동실태의 보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국토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보존, 봉사할 수 있는 국토계획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환경의 변동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국토건설총계획의 준수의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와 하천정리, 산림조성, 도로와 중소형발전소건설 같은 사업을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7조(국토계획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계획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38조(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토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 하여야 한다.

제39조(중지)

승인없이 국토건설을 하거나 자원개발을 하는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40조(손해보상)

국토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를 주었거나 토지리용허가를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토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7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시계획법의 기본

제1조(도시계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있게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분류)

도시계획은 도시와 마을계획령역의 토지를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 녹지 같은것을 건설, 개진, 정비하는것과 관련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도시계획에는 도시, 마을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도시계획의 작성원칙)

도시계획을 바로 작성하는것은 도시를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시계획작성에서 도시성격과 규모, 형성방향을 정확히 규정하며 도시계획령역을 도시, 마을총계획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제4조(도시계획의 심의, 승인원칙)

도시계획의 비준은 작성한 도시계획을 심의,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계획의 심의, 승인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도시계획의 실행원칙)

도시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는것은 도시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시건설, 개진, 정비사업을 도시계획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6조(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도시계획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시계획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7조(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8조(도시계획분야에서 교류, 협조)

국가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도시계획의 작성

제9조(도시계획작성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건설의 선행공정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에 앞서 도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도시계획작성의 기본기준이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국가의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계획의 작성기관)

도시계획의 작성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의 작성을 주문한다.

중요대상의 도시계획작성은 내각이 조직한다.

제12조(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도시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기념비적건축물, 역사유적, 천연기념물을 원상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나라의 경제문화발전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4.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5. 도시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인구밀도, 건축밀도를 줄이며 큰 도시주변에 위성 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토지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7. 나라의 기본도로와 철도는 도시중심을 통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도, 시, 군, 지역별에 따르는 살림집의 층수는 도시 및 마을계획설계기준에 맞게 정하며 거리는 살림집을 위주로 형성하여야 한다.
9. 도시를 수림화, 원림화하며 자연재해와 공해를 방지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국방상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의 작성방법)

도시, 마을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세부계획은 도시, 마을총계획에,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세부계획과 구획계획 같은것을 합쳐 작성할수도 있다.

제14조(도시계획의 전망기간)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은 20년이다.

필요한 경우 도시, 마을총계획의 전망기간을 20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제15조(국토개발의 승인)

도시, 마을총계획의 작성을 주문하려는 기관은 국토개발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마을총계획령역안의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국토개발승인과 건설위치지정을 받지 않는다.

제16조(도시계획작성자료의 조사, 장악)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자료를 조사, 장악하지 않고는 도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7조(도시계획작성자료의 요구)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계획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인구수, 자원상태, 경제발전 전망자료, 환경실태, 기상수문자료, 지형 및 지질자료, 위성정보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도시계획에 반영할 내용)

도시, 마을총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망인구수
2. 도시계획령역과 건설령역, 보호령역의 규모와 경계
3.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살림집지역, 공공건물지역, 산업지역, 철도, 항만, 비행장지역, 창고지역, 특수지역, 중요기관, 기업소구획의 규모와 경계
4. 도시중심부의 위치
5. 도로와 광장, 시내교통망, 기술시설망과 그에 따르는 시설물의 배치, 녹지의 배치, 지대조성
6. 재해 및 공해방지시설의 배치와 도시계획적조치

제19조(세부계획에 반영할 내용)

세부계획에는 계획구역의 설정, 기능별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층수, 배치, 형성방향, 도로와 기술시설물, 녹지의 배치, 지대조성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구획계획에 반영할 내용)

구획계획에는 대상별대지경계, 건물능력과 층수, 도로와 기술시설물, 녹지와 수종배치, 지대조성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계획의 비준

제21조(도시계획의 비준의 기본요구)

도시계획비준절차를 지키는것은 도시계획의 실행을 담보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도시계획을 제때에 심의,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계획초안의 합의)

도시계획작성기관은 작성한 도시계획초안을 관계기관과 합의한 다음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에서 비준하는 도시계획초안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도시계획초안에 대한 검토와 비준)

도시계획비준기관은 도시계획초안이 국가의 도시건설정책과 도시계획작성원칙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의 비준은 해당 기관의 상무회의 또는 간부회의에서 한다.

제24조(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의 심의, 승인)

시급도시총계획과 중요대상의 도시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내각이 승인하는 도시총계획초안을 심의하고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읍총계획과 시급도시, 읍의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제26조(로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의 심의, 승인)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로동자구, 마을총계획과 세부계획, 구획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제27조(비준된 도시계획의 하달)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비준한 도시계획을 제때에 도시계획작성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비준된 도시계획을 중앙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28조(도시계획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준된 도시계획내용을 승인없이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정보충하려 할 경우에는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의 실행

제29조(도시계획실행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의 실행은 비준된 계획의 요구대로 도시를 건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된 도시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0조(도시계획의 실행)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 실태와 전망적 요구, 투자규모 같은것을 타산하여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 한개 구획 및 한개 거리씩 집중완성하는 원칙에서 도시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의 작성, 하달)

비준된 도시계획을 받은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계획작성기관은 도시 순차 및 년차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건설계획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단위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32조(건설명시서의 발급)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명시서의 발급은 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도(직할시)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중요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3조(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대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건설명시서의 유효기간을 3년이상으로 할수도 있다.

유효기간안에 대상건설총계획이나 대상설계를 작성하지 못한 대상의 건설명시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4조(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의 작성)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건설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와 건설총계획,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대상의 계획화)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에 반영된 대상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36조(토지의 리용허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건설명시서에 기초하여 토지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7조(건설의 허가)

도시계획을 실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대상에 따라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에 대한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건설의 착공)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받은 대상의 건설을 제때에 착공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령역안에 립시건물과 시설물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허가받은 대상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그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9조(도시계획실행정형의 보고, 총화)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실행정형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의 실행정형을 해마다 총화하여야 한다.

제5장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도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의 축성)

국가건설감독기관은 도시계획작성에 필요한 정보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정보기지를 꾸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시계획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중지)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 개진, 정비하는것 같은 행위는 중지시킨다.

제45조(손해보상)

도시계획령역안에 건설위치지정을 하였거나 또는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였거나 건설허가, 토지이용허가, 자금공급을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시킨다.

제46조(몰수 또는 철거)

도시계획과 어긋나게 건설한 대상은 몰수하거나 철거시킨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시계획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75(1986)년 2월 20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제2494호로 수정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1장 사회주의로동의 기본원칙

제1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복리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한다.

제2조 로동은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가장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된다.

제3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공동의 목적과 리익을 위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로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

제4조 사회주의하에서 공민은 로동에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 로동에 참가한다.

제5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

모든 근로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제6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나라와 사회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근로자들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을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모든 근로자들이 로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7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로동이 즐거운것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상요구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추진하여 종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점차 줄여나간다.

제8조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근로자들을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9조 로동생산능률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다.

국가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다그치고 천리마운동을 심화발전시키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과 생산의 빠른 발전을 보장한다.

제10조 사회주의하에서 로동은 전일적인 사회주의경제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방침에 따라 전인민경제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한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재부는 전적으로 나라의 부강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하며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인다.

제12조 로동과 휴식을 옹계 결합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을 보호하는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한 힘을 회복할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선진적인 로동보호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은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구현하며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로동정책을 더욱 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장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근로자들은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담당자들이다.

로동을 사랑하고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은 공민의 영예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공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자원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16조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로동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로동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제17조 근로자들은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주인답게 일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회주의로동규률은 자각적규률이며 사회주의로동규률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응당한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사회주의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마음대로 직장을 리탈할수 없다.

제19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의 본분이다.

근로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새로운 기준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단위시간안에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제20조 근로자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지혜와 정력을 발휘하며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어 맡겨진 계획과제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근로자들은 알뜰한 일본새로 일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생산물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자들은 자기가 맡은 기대와 설비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원료와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로자들은 자기의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경각성있게 지키며 로동보호법규를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지위는 로동의 성실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로동에서 모범인 사람은 인민의 사랑과 높은 존경을 받는다.

로동에 주인답게 참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근로자들은 로력 영웅칭호와 명예칭호를 비롯한 국가적표창을 받는다.

제3장 사회주의로동조직

제25조 사회적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나라의 로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근로자들의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적극 발양시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자원을 통일적으로 동원리용한다.

제26조 국가는 사회적으로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로동조직에서 균중로선을 구현하며 로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로동계획화는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과 수요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맞물린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제28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사이의 로력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부문 로력자수의 우선적증대를 보장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비생산부문 로력자수를 규정하는 원칙에서 로력을 배치하며 직접부문 로력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며 로력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인민경제의 로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충족시킨다.

각급 경제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국가의 경제정책의 요구에 맞게 로력보충조절계획을 세워 인민경제발전계획에 예견된 로력수요를 제때에 보장하며 인민경제부문들과 지역들에 로력을 정확히 조절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로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으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 공장,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공정의 특성, 기술장비수준, 작업조건 등에 맞게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력관리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로력랑비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480분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과 휴식과 학습을 옹계 배합하여 근로자들의 로동을 정규화하고 학습을 정상화하며 휴식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기관, 기업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여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을 때에는 제때에 다른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생산적작업에 대한 립시지원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일시적으로 로력이 남는다고 하여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제적할수 없다.

제35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력을 마음대로 다른 일에 동원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공장, 기업소의 생산로력은 국가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동원할수 없다.

농번기에는 그 누구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일에 농장원들을 동원할수 없다.

제36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관리일군들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간 생산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4장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제37조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이며 로동에 의한 분배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생산력발전을 다그치는 힘있는 수단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의식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

근로자들은 성별, 연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38조 국가는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서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등급제를 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제정한 생활비등급제와 생활비지불원칙에 립각하여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생활비의 기본형태는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이며 생활비의 추가적형태는 가급금제와 상금제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도록 생활비지불형태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독립채산제원칙에 따라 공장, 기업소들의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원가계획실행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생활비자금을 분배한다.

공장, 기업소는 생산계획실행정형, 제품의 질, 설비, 자재의 리용정형 등을 바로 평가하여 일을 잘한 근로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1조 로동정량은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적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등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하는 원칙을 관철한다.

제42조 국가는 인민경제부문별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공장을 꾸리고 거기서 측정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적용하며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로력일은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의 로동결과를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협동농장은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협동농장원들과 협동농장에 복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로력일에 따르는 분배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배양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실시하여 로력일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며 추가적로력보수를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5조 국가는 공업과 농업의 발전, 로동생산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모든 부문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며 각이한 지대의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높이며 전반적으로 로동자, 사무원과 농민의 생활수준을 균형적으로 높이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5장 로동과 기술혁명,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

제46조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공업화의 성과에 기초하여 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해방하며 그들에게 로동생활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7조 국가는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을 없앤다.

제48조 국가는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앤다.

제49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기술혁신운동을 대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창의고안, 합리화운동을 적극 장려하며 창의고안과 합리화안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발명가 및 창의고안자, 생산혁신자에게 국가적배려를 돌리며 기술자격을 준다.

제50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함께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와 농장고등전문학교, 야간 및 통신교육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

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통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최신과학기술을 체득하고 현대적기계설비를 잘 다루며 인민경제를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키운다.

제5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기술기능학습체제와 기능전습체제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소유하고 자기가 다루는 기계설비와 자기 부문 기술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기술기능향상을 위하여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행제를 실시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기사급수, 기능등급판정시행을 정기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제6장 로동보호

제53조 로동보호사업을 잘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하며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중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앞세우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다.

제54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교양사업체제를 세우고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켜 로동보호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정책과 해당 부문의 로동안전기술지식을 체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들을 일시킬수 없다.

제55조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의 첫째가는 사업이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로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한 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한 개소를 정비한 다음에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7조 건설 및 설계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의 건설과 기계설비의 제작에서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

신설, 확장, 보수한 공장, 기업소, 건물, 구축물과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는 해당 검열, 감독기관의 준공검사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조업하거나 돌릴수 없다.

제58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제59조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0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보장하여주며 작업필수품 및 영양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근로자들은 작업할 때 지정된 로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로동보호물자를 극력 아껴써야 한다.

제61조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생산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표준조작법과 로동보호규정을 만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증진에 엄중한 후과를 끼치는 현상이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제7장 로동과 휴식

제62조 근로자들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8시간로동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제63조 근로자들은 하루로동시간이 끝나면 휴식한다.

경제기관, 기업소들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64조 근로자들은 주에 하루씩 휴식을 보장받는다.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은 쉬는날로 한다.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근로자들을 로동시킨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반드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내지 21일간의 보충휴가를 받는다.

제66조 여성근로자들은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받는다.

제67조 국가는 정양소, 휴양소망을 여러가지 형태로 늘이고 그 시설을 현대화하며 관광, 탐승 등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늘어나는 문화적휴식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킨다.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는 직장정양소를 잘 운영하여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충분히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

제68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며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제69조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쓸모있고 문화적인 살림집과 합숙을 보장한다.

국가는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협동농장원들이 그것을 무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0조 국가는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에게 낮은 값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제7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72조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근로자자녀들에게 의무교육을 주며 그들을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무료로 공부시킨다.

모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학생복과 교과서를 낮은 값으로 공급받으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다.

제73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적보조금을 주며 그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을 준다.

제74조 국가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에 이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로동년한을 가진 경우에 년로년금을 준다.

제75조 국가는 로동과 사회정치활동에서 공헌을 세운 국가공로자들이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돌린다.

제76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기간에 평균생활비 또는 평균로력일을 주며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일시적보조금 또는 평균로력일을 준다.

제77조 국가는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의 원인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양육을 받아오던 부양가족들에게 유가족년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은 국가가 맡아 키운다.

제78조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을 양로원과 양생원에서 무료로 돌보아준다.

제79조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제에 의한 의료상혜택을 준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은 치료, 료양, 예방, 해산 등 모든 의료봉사를 무상으로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채택

제1장 로동정량법의 기본

제1조(로동정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은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로동정량은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로동기준이며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로동정량에는 종합로동정량과 세부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로동정량사업의 개선강화원칙)

로동정량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정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로동정량제정원칙)

로동정량의 제정은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균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5조(로동정량적용원칙)

로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로동정량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로동정량일군대렬강화원칙)

국가는 로동정량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로동정량의 갱신원칙)

국가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전문가양성)

국가는 로동정량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전문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로동정량의 제정

제10조(로동정량제정의 담당자)

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으로 나누어 제정한다.

표준로동정량은 로동정량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1조(표준로동정량의 제정방법)

로동정량제정기관은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단위를 바로 정하고 그 단위에서 이룩된 로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하여야 한다.

표준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단위가운데서 로동생산능률이 높은 단위의 로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로동정량을 제정할수 있다.

제12조(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에 따르는 로동정량제정)

표준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를 정확히 작성하여 로동정량제정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3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을 자로 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작업공정별에 따라 로동정량제정대상과 방법을 바로 정하고 종합로동정량, 세부로동정량, 노력배치기준, 작업량과제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14조(로동정량심의신청)

제정한 로동정량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심의신청문건을 만들어 상급기관을 통하여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로동정량의 심의)

로동정량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로동정량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제16조(로동정량심의결과의 통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로동정량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로동정량의 통계기관, 은행기관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로동정량을 해당 지역의 통계기관과 은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로동정량의 재사정)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2년주기로 재사정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로동정량의 재사정주기를 앞당기거나 늦출수 있다.

제3장 로동정량의 적용

제19조(로동정량의 적용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의무적으로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로동정량은 적용할수 없으며 승인된 로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20조(로동정량적용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로동정량을 정확히 알려주며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림시로동정량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시작하는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 림시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할수 있다.

림시로 제정한 로동정량은 1개월이상 적용할수 없다.

림시로동정량을 1개월이상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다른 단위에 동원되었을 경우 로동정량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림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동원되어 일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을 적용한다.

제23조(승인된 로동정량과 달리 적용하려 할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로동정량을 고쳐 적용할수 있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로동정량의 적용시기)

로동정량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표준로동정량은 해당 표준로동정량표에 밝힌 적용날자부터 적용한다.
2. 승인된 로동정량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재사정한 로동정량은 해당 상급기관이 승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4. 립시로동정량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5조(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진행하는 같은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6조(로동정량에 기초한 로동의 평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로동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로동정량과 다르게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거나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7조(로동정량적용결과의 장악과 분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년별로 로동정량적용결과를 정상적으로 장악분석하고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적용결과에 대한 장악과 분석은 도급작업참가정형과 로동정량수행정형을 기본대상으로 한다.

제4장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국가의 로동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로동정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로동정량사업개선대책)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료해를 정상적으로 하고 개선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일군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조(로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1조(로동실적의 삭감, 로동보수금액의 회수)

로동정량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된 로동실적은 삭감하며 지출된 로동보수금액은 회수한다.

제3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로동정량에 대한 심의승인을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로동정량을 망량 제정,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승인되지 않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승인없이 립시로동정량을 1개월이상 적용하였을 경우
5. 로동정량을 제때에 재사정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로동보수지불을 로동정량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7. 승인된 로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쳐 적용하였을 경우
8. 이밖에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3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5호로 채택

제1장 로동보호법의 기본

제1조(로동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로동보호부문 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정확한 로동보호정책에 의하여 가장 인민적인 로동보호제도가 마련되었다.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로동보호의 기본원칙)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한다.

제4조(로동보호사업의 선행원칙)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제5조(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로동보호사업원칙)

로동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로동보호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일군양성원칙)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로동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로동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로동안전교양

제9조(로동안전교양체계의 확립)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로동재해와 건강상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로동안전교양의 대상과 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바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직종과 작업대상, 작업조건에 따라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로동안전교양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 로동안전규정, 로동안전조작법, 로동위생지식 같은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킬수 없다.

제12조(로동안전교양원칙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로동안전교양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직종에 따라 새로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에게는 5~20일간, 직종을 바꾸는 근로자들에게는 2~5일간 로동안전교양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2. 작업을 조직하거나 작업대상과 작업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로동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3. 로동안전과 관련한 인식정도를 료해하고 합격이 되었을 경우에만 일을 시켜야 한다.
4. 로동안전교양을 받거나 작업실습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5. 로동안전교양과정안을 정확히 만들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로동안전교양실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실에는 근로자들의 로동안전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14조(로동안전재교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재교양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재교양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로동안전교육)

해당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로동안전공학과 로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장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제16조(로동보호조건보장의 기본요구)

로동보호를 위한 조건보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대한 로동보호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로동안전시설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18조(로동안전시설의 점검보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불비한 로동안전시설을 제때에 정비하여야 한다.

제19조(로동안전시설의 정상가동보장, 해체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치된 로동안전시설은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없이 해체할수 없다.

제20조(로동위생조건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21조(편의시설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게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건강검진, 치료)

보건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게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제23조(직종의 변동)

로동행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업성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제때에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험한 일을 시키며 젓먹이어린이를 가진 여성근로자들에게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생산건물, 시설물의 건설)

설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로동안전, 로동위생 같은 로동보호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그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부족점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설비, 검사기구는 정상적으로 검정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제27조(로동보호물자공급의 기본요구)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에는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르는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 같은것이 속한다.

제28조(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 실습을 하는 연구사, 실습생과 필요에 따라 동원된 인원에게도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9조(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는 다른 물자보다 먼저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로동보호물자의 공급, 회수)

로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쓰던것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1조(로동보호물자의 보관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보관시설을 갖추고 로동보호물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로동보호물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32조(영양제공급, 영양제식당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렵고 힘든 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수 있다.

제33조(우대물자의 공급)

탄광, 광산, 금속, 립업, 수산, 지질탐사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는 피복, 식료품, 기호품 같은 우대물자를 공급한다.

우대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4조(제복의 공급)

철도운수, 탄광부문과 따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제복을 공급한다.

제복을 공급하는 부문과 대상, 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장 로동과 휴식

제35조(로동과 휴식보장의 기본요구)

로동과 휴식을 옹게 결합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로동시간)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로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로동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7조(시간외로동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을 초과하여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여성근로자들의 로동)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젓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 시간외 로동, 휴식 일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 수 없다.

여성근로자들이 일할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 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9조(휴식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 같은 쉬는날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40조(휴가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데 따라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는 다음해로 넘길수 없다.

제41조(정휴양의 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양, 휴양을 통한 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 해주어야 한다.

제6장 로동안전규률의 확립

제42조(로동안전규률확립의 기본요구)

로동안전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로동재해를 미리 막고 안전한 로동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43조(로동안전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근로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로동안전지령의 선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지령을 주며 작업이 끝난 다음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규정의 요구에 어긋나게 작업을 조직할수 없다.

제45조(작업전 로동안전상태의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의 안전상태와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의 착용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제46조(위험개소의 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사고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개소를 퇴치한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47조(작업교대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교대를 하는 경우 로동안전 및 로동위생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안전 및 로동위생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교대하여야 한다.

제48조(설비점검, 위험표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점검을 할 경우 로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대상과 설비에는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유해작업장의 검사)

유해작업장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제50조(위험물질취급, 열 및 내압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성, 독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열 및 내압설비를 가동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로동보호감독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에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진행할수 없다.

제7장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

제52조(로동재해구호와 사고심의의 기본요구)

로동재해의 구호와 사고심의는 로동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며 사고의 원인을 해명하고 재사고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와 사고심의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53조(구호대의 조직)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이나 단위에 로동재해구호를 위한 전임구호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구호대는 겸임으로 조직할수도 있다.

제54조(설비 및 기자재보장)

해당 기관은 산소호흡기, 자동인공호흡기, 산소, 시약, 운수수단, 통신수단, 측정수단 같은 로동재해구호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구호대의 비상동원준비)

해당 기관은 구호대의 로동재해구호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든지 신속히 동원할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구호대의 훈련과정안은 어길수 없다.

제56조(로동재해에 대한 구호작업)

해당 기관은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호대를 동원시켜 구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발생한 로동재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린접 또는 지구구호대를 동원시킬수 있다.

제57조(구호대의 타사업동원금지)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는 로동재해구호작업에만 동원할수 있다.

제58조(구호작업을 위한 운행조건보장)

인민보안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과 설비, 기자재를 실은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로동재해발생에 대한 통보)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제때에 로동행정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조직)

로동재해방지와 사고심의를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과 기관, 기업소에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제61조(사고심의의 제기)

로동행정기관은 발생한 로동재해와 관련하여 해당 비상설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사고심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62조(사고심의관할)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는 사고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사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기관, 기업소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나누어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수 있다.

제63조(사고심의내용)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에서 토의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로동재해가 발생한 날자, 시간, 장소, 형태

2. 로동재해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
3. 로동재해를 발생시킨 단위의 로동보호실태
4. 로동재해로 인한 인적 및 재산적손실
5. 책임관계와 처리문제
6. 로동재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문제
7. 로동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
8.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

제64조(사고심의정형보고)

로동재해와 관련한 사고심의가 끝나면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5조(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로동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6조(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로동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7조(로동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물자,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68조(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성과의 도입)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로동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69조(로동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로동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70조(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보호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로동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국민의 재산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2조(행정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로동안전교양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로동보호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켰을 경우
3.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로동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휴식과 휴가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로동보호물자를 대상과 기준에 맞게 공급하지 않았거나 류용, 랑비, 부패변질 시켰을 경우
6. 녀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켰거나 로동보호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7. 로동재해구호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사업조건을 보장하지 않아 로동재해구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밖에 로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

제7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7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주체99(2010)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4호로 채택

제1장 기업소법의 기본

제1조(기업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은 기업소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기업소의 정의)

이 법에서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단위이다.

기업소에는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는 생산, 건설, 교통운수, 봉사단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기업소의 조직원칙)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를 신설하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업소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기업소의 경영원칙)

기업소의 경영은 경제적공간들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경제활동이다.

국가는 기업소들이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정확히 세워 경영활동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5조(기업소의 물질기술적도대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간, 지역간 련계가 밀접해지는데 맞게 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도대를 부단히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경영활동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제8조(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기업소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기업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9조(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기업소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10조(법의 적용제외대상)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기업소의 조직

제11조(기업소의 조직기관)

기업소의 조직은 기업소의 급수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에는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속한다.

제12조(기업소의 조직근거)

기업소의 조직은 국가적조치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업소를 조직할수도 있다.

제13조(기업소조직신청)

기업소를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업소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종업원수, 업종과 지표, 규모 같은것을 밝힌다.

제14조(기업소조직신청문건의 심의와 결과통지)

기업소조직기관은 기업소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그것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으로 통지한다.

제15조(기업소의 등록)

새로 조직되는 기업소는 기업소조직이 승인된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업소조직승인문건, 건물리용허가문건 같은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소등록증의 발급)

기업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30일안으로 심의하고 해당 기업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된 기업소에 기업소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기업소등록증이 없이 경영활동을 할수 없다.

제17조(기업소의 재등록)

기업소는 기업소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안으로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 인민위원회에 내어 재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소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업소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이 승인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18조(기업소의 정리)

기업소조직기관은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수 있다.

기업소정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기업소등록증의 반납)

기업소는 통합, 분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없어졌을 경우 10일안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기업소등록증을 바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기업소의 관리기구

제20조(기업소의 관리일군)

기업소에는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지배인, 기사장, 부지배인 같은 필요한 관리일군을 둔다.

관리일군은 기업소의 사업을 책임진 지휘성원이다.

제21조(지배인)

지배인은 기업소를 대표하며 기업소전반사업을 책임진다.

지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사장 또는 정해진 관리일군이 지배인의 사업을 대리한다.

제22조(기사장)

기사장은 기업소의 계획작성, 생산지도, 기술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기사장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부지배인)

부지배인은 기업소의 자재공급, 제품판매, 로동행정, 운수, 후방경리 같은 사업을 책임진다.

부지배인은 자기 사업정형을 지배인 또는 지배인이 없을 경우 기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부서)

기업소는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부서를 꾸리고 사업분담을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리일군은 자기의 직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기업소의 사업준칙작성)

기업소는 국가의 통일적인 기업소관리규범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사업준칙 같은것을 작성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소사업준칙은 종업원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기업소의 회의운영)

기업소는 경영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행정 간부회의, 참모회의, 종업원총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회의운영절차는 기업소사업준칙으로 정한다.

제27조(비상설위원회의 조직운영)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 과학기술심도의업위원회, 재정검열위원회, 설비점검검열위원회 같은 비상설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기업소의 기구변경)

기업소는 기구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소조직기관의 승인없이 기구를 변경할수 없다.

제4장 기업소의 경영활동

제29조(경영전략, 기업전략의 작성)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경영전략, 기업전략은 기업소의 로력과 기술장비상태, 원료, 자재의 보장과 리용정형, 련관단위의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같은것을 고려하여 세운다.

제30조(인민경제계획의 작성 및 실행)

기업소는 해마다 국가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계획작성방향, 기업소의 경영전략, 기업전략에 따라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은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1조(생산공정관리)

기업소는 생산일정계획의 작성과 생산지령, 생산공정추진사업을 통하여 월 생산계획을 일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공정관리를 짜고들어야 한다.

생산일정계획의 실행정형은 교대별, 일별, 순별로 총화한다.

제32조(과학기술발전사업)

기업소는 국가의 과학기술발전방향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추세, 기업소의 현실태와 생산발전전망을 깊이 연구분석한데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한 기술혁신을 하여 국가에 이익을 준 일군과 종업원에게는 해당한 평가를 한다.

제33조(기술개선)

기업소는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할수 있게 기술개선목적과 목표,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기술개선은 그 단계와 대상, 선후차와 방도 같은것을 정확히 정하고 경제적실리가 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기술관리)

기업소는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기술공정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낡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기업소는 공장대학, 공장고등기술전문학교, 통신 및 야간교육망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36조(품질관리)

기업소는 품질관리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생산한 제품은 품질검사를 하고 합격되어야 판매할수 있다.

제37조(설비관리)

기업소는 설비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창조운동 같은 대중적관리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동력관리)

기업소는 석탄을 비롯한 연료를 잘 보관하고 효과있게 리용하며 열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사고를 없애고 열효률을 높이며 열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소는 연료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며 폐열을 회수리용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9조(전력리용)

기업소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기업소는 전력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며 교차생산조직에 따르는 전력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0조(자재관리)

기업소는 자재소요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자재공급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자재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자재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제41조(재산실사)

기업소는 기업소재산에 대한 실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재산실사정형은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제품판매)

기업소는 생산한 제품을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계획과 계약에 따르지 않은 제품판매는 할수 없다.

제43조(로력관리)

기업소는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로력관리를 정해진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로력은 최대한 고착시키며 류동로력을 없애고 로력을 절약하여야 한다.

제44조(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 로동보수)

기업소는 로동정량을 과학적으로 제정, 적용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기업소는 로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로동보호사업을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업소는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를 정확히 실시하여 종업원들에게 국가의 인민적시책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건물, 시설물관리)

기업소는 건물, 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47조(종업원생활조건의 보장)

기업소는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부식물공급문제, 땀감문제 같은 생활상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소는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병동, 정양소, 료양소 같은것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8조(재정관리)

기업소는 정해진 재정관리질서에 따라 재정관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업소는 독립채산제실시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경영총화)

기업소는 경영총화를 순별, 월별, 분기별, 반년별, 년도별로 정상적으로 지어야 한다.

경영총화에서는 기업소경영활동에서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찾고 직장, 작업반과 일군들의 활동정형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기업관리를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경영활동결과는 종업원들에게 공개한다.

제5장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

기업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기업소사업을 엄격히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경영활동정형의 보고)

기업소는 경영활동정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해당 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지도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2조(기업소의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소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은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돌려쓸 수 없다.

제53조(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업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업소의 경영활동이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

주체99(2010)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5호로 채택

제1장 자재관리법의 기본

제1조(자재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재관리법은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자재의 정의)

이 법에서 자재는 생산과 건설에 쓰이는 설비, 원료, 연료, 반제품, 시약 같은것을 말한다.

제3조(자재의 공급원칙)

국가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자재를 우가 책임지고 아래에 내려다주는 자재공급체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조(자재의 리용원칙)

자재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자재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재의 리용분야를 바로 정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한다.

제5조(자재관리의 현대화원칙)

국가는 자재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자재관리사업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6조(자재절약의 대중화원칙)

자재를 아끼고 절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대중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재절약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면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높여 자재관리를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적용대상)

이 법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자재의 공급

제9조(자재공급계획의 작성)

자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자재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자재공급계약의 체결)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자재에 대한 세부적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맺는다.

제11조(자재공급계약의 체결시 합의사항과 효력)

자재공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약을 맺을 경우 자재의 품명, 규격, 품질, 수량, 값과 공급기간,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포장방법, 거래은행 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 공인을 찍고 책임일군이 수표하여야 한다.

공인과 책임일군의 수표가 없는 계약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2조(자재공급의 선후차)

자재공급기관은 자재공급의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그에 맞게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대상의 자재를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자재의 공급절차)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자재를 생산하여 공급자자재공급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공급자자재공급기관은 확보된 자재를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자재보유기준보장)

자재공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 및 건설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자재보유기준에 맞게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자재의 수송 또는 현지공급)

자재공급기관은 교통운수기관과 화물수송계약을 맺고 자재를 제때에 실어보내야 한다.

거리관계, 자재의 수량, 특성 같은것을 고려하여 자재를 현지에서 직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할수도 있다.

제16조(자재의 검수)

자재의 검수는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자재에서 수량부족이나 불량 같은것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립회밑에 그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있는 자로부터 조서를 받을수 있다.

제17조(공급받은 자재의 대금결제)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금결제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무현금행표로 한다.

제18조(자재의 조절공급)

자재공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장되어있는 자재, 전람회 또는 전시회에 내놓은 자재, 해당 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재, 계획변동으로 남은 자재 같은것을 제때에 장악하고 필요한 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자재포장용기의 반환)

자재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포장을 해체한 경우 정해진데 따라 자재를 포장하였던 용기를 자재공급기관에 제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재의 리용

제20조(자재의 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계획과 자재의 용도에 맞게 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자재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제21조(자재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의 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며 자재소비기준을 무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자재소비기준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새 기술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효률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적극 받아들여 자재를 종합적으로 리용하며 자재소모를 줄이고 그것을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제때에 개조하거나 갱신하여야 한다.

제23조(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의 회수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 같은것을 망탕 버리지 말고 재생하여 리용할수 있는것은 모조리 회수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물자교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공급계획에 맞물리지 못한 자재, 모자라거나 없는 자재 같은것을 정해진 물자교류질서에 따라 해결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제25조(국내자재의 리용률제고)

수입자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수입자재의 리용률을 줄이고 국내자재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경제적공간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리용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하며 가격, 원가, 로동보수 같은 경제적공간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7조(자재소비정형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소비정형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재의 총소비량과 품종, 규격, 재질에 따르는 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자재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보관책임자를 정하고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그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종류별, 규격별, 재질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자재의 실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로 자재를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비정기실사도 할수 있다.

제30조(자재의 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재를 출고전표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출고하여야 한다. 자재출고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자재소비정형의 장악과 보고)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재소비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자재소비정형을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재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자재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은 자재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자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재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재관리법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5조(민사적책임)

자재공급계약 또는 화물수송계약을 정당한 리유없이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 또는 연체료 같은것을 물린다.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36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재공급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생산과 건설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자재공급계약체결과 리행질서를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자재공급계획이 없는 단위에 자재를 공급하여 경제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자재의 대금결제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5. 자재소비기준을 어기고 자재를 낭비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자재리용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폐기폐설물, 고자재 같은것의 회수리용체계를 세우지 않아 자재를 낭비하였을 경우
7. 물자교류질서를 어기고 마음대로 자재를 주고받았을 경우
8. 자재보관질서를 어겨 자재를 부패, 변질, 도난, 사장시켰을 경우
9. 자재를 비법적으로 개인들에게 넘겨주었거나 팔았을 경우
10. 이밖에 자재관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37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

주체97(2008)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38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설비관리법의 기본

제1조(설비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비관리법은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리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설비의 정의)

설비는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설비에는 기계와 기구, 장치, 공업로, 생산용탑과 탱크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설비의 등록과 실사원칙)

설비의 등록과 실사는 설비를 장악기록하며 그 상태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설비를 제때에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제4조(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원칙)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잘하는것은 설비의 정상가동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설비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운전하며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한다.

제5조(설비의 조절, 폐기원칙)

국가는 설비를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쓸수 없는 설비를 제때에 폐기하도록 한다.

제6조(모범기대 창조운동)

설비관리의 주인은 생산자대중이다.

국가는 생산자대중속에서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설비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설비관리에 대한 연구사업강화, 일군양성)

국가는 설비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2장 설비의 등록과 실사

제8조(설비등록과 실사의 기본요구)

설비의 등록과 실사를 바로하는것은 설비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확히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등록대장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등록대장을 갖추고 설비를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설비등록지표에 따르는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등록지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설비등록지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한다.

제11조(설비의 현물, 화폐적등록)

설비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현물등록에서는 설비의 명칭과 등록번호, 형, 능력, 수량, 생산 또는 설치 년, 월, 일, 설치장소, 등록근거 같은것을, 화폐적등록에서는 설비의 도매가격과 운반,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기록한다.

제12조(륜전설비, 배, 인쇄설비, 전파설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륜전설비와 배, 인쇄설비, 전파설비 같은것을 등록할 경우 설비관리감독기관의 배정 또는 이관, 인수지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

새로 건설한 대상에 설치한 설비의 등록은 그것을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인계, 인수가 끝난 후에 한다.

설비시운전에서 합격되지 않은 설비는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없다.

제14조(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설비를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과 거래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15조(설비의 변경등록과 삭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소속관계가 변경되었거나 설비가 폐기되었을 경우 제때에 변경등록하거나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륜전설비와 배, 인쇄설비, 전파설비 같은것을 변경등록하였거나 등록에서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해당 부문의 감독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설비실사위원회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수량과 기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비실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실사는 설비실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한다.

제17조(정기실사와 총실사)

설비실사는 정기실사와 총실사로 나누어 한다.

정기실사는 분기에 1차, 총실사는 년간에 1차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임시실사를 할수 있다.

제18조(설비실사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실사하는 경우 수량의 증감과 기술상태 같은것을 설비등록대장, 재정회계등록대장과 정확히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설비실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9조(설비실사정형의 장악과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실사과정에 등록하지 않은 설비, 분실한 설비, 못쓰게 된 설비, 놓고있는 설비 같은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분기설비실사자료는 해당 상급기관에, 년간설비실사자료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3장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

제20조(설비운전과 점검보수의 기본요구)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는 설비를 안전하게 가동시키며 그 기술상태를 검사하고 불량개소를 제때에 퇴치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운전과 점검보수를 바로하여 설비사고를 없애며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설비운전자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능공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기술기능을 원만히 갖춘 운전공이 설비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와 룬전설비 같은것의 운전은 해당한 자격을 받은 운전공만이 한다.

제22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의 준수)

설비운전공은 설비의 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을 만들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로동안전원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기능과 책임성이 높은 일군을 로동안전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안전원은 설비의 가동상태를 정상적으로 살피며 사고요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설비배치와 리용률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용도와 능력에 맞게 그것을 배치하고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설비배치는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설비경력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별로 경력서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설비경력서에는 설비평정, 정밀도검사, 기름주기, 구조변경,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 설비리용정형 같은것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설비의 점검보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계획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설비의 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설비보수에는 쓸수 있는 다른 설비의 부속품을 떼내어 리용할수 없다.

제27조(설비보수자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재정은행기관은 설비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보수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28조(설비보수의 질과 기일보장 및 보고서작성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보수방법을 받아들여 설비보수의 질을 높이며 보수기일을 지켜야 한다.

보수한 열 및 내압설비, 료전설비 같은 설비는 해당 전문기술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비보수가 끝나면 설비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설비점검검열의 날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점검검열위원회를 조직하고 매주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설비점검검열위원회는 설비점검검열내용을 포치하고 검열에서 나타난 우, 결함들을 총화평가하며 나타난 결함은 제때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설비에 대한 평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설비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로 설비평정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비의 능력과 정밀도, 기술상태와 중요부분품들을 검토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31조(설비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설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고 장비수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중요설비의 구조를 고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합의한 기술합의문건과 설계도면, 구조변경신청서를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설비사고의 심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때에 설비사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심의는 기술감정결과에 근거하여 사고의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사고 복구대책을 세우며 책임있는 일군에게 해당한 제재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

사고심의결과는 해당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설비의 조절과 폐기

제33조(설비의 조절과 폐기의 기본요구)

설비를 조절하고 폐기하는것은 설비의 리용률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정형을 료해하고 실리의 요구에 맞게 조절하며 쓸수 없는것은 제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설비의 조절방법)

설비관리감독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리용범위를 과학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조절하여야 한다.

설비의 조절은 설비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빌려주거나 이관, 인수하는것 같은 방법으로 한다.

설비를 빌려주거나 이관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설비의 빌려주기)

설비를 빌려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빌려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것을 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설비경력서와 기술관리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상급기관에 등록된 중요설비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비를 빌려주는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제36조(비법적인 설비빌려주기와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는 공민에게 빌려줄수 없다.

공민은 승인되지 않은 설비를 가지고있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고 리용할수 없다.

제37조(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으려 할 경우 설비이관, 인수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에는 설비명, 등록가격, 설비이관, 인수의 목적과 내용 같은것을 밝히고 설비를 넘겨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어야 한다.

제38조(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의 발급)

설비이관, 인수합의신청서를 받은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설비이관, 인수가 승인된 경우에는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적조치에 따르는 설비동원)

국가적조치에 따르는 설비동원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이 발급한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에 따라 한다.

제40조(설비의 넘겨주기)

설비이관, 인수합의지도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안으로 설비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를 넘겨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고정재산이관, 인수조서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1조(비법적인 설비교체, 설비파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넘겨주는 경우 다른 설비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넘겨주는 설비에서는 부속품, 공구, 지구 같은것을 떼낼수 없다.

제42조(몰수한 설비의 배정)

몰수한 설비의 배정은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를 몰수하였을 경우 몰수조서와 함께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 또는 내각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43조(설비의 폐기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리용전망이 없는 설비를 제때에 폐기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설비폐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설비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설비폐기신청서에는 설비의 기술상태와 폐기리유, 쓸수 있는 부대설비 및 부분품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44조(설비폐기신청에 대한 승인)

해당 상급기관과 설비관리감독기관은 설비폐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정해진 기간안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폐기설비의 처리)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상급기관은 설비의 폐기를 승인한 경우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것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되는 설비에서 쓸수 있는 부대설비나 부분품 같은것을 해당 상급기관 또는 설비관리감독기관이 정해준대로 회수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설비의 폐기로 나오는 파철과 유색금속의 처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제5장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설비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설비관리정형에 대한 료해)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며 설비의 가동과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설비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설비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설비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설비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설비운영의 중지와 벌금)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사고위험성이 있는 설비를 운영하거나 용도와 능력에 맞지 않게 또는 운전자격이 없는 운전공이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그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0조(설비회수)

설비를 사장시켰거나 제때에 넘겨주지 않거나 비법적으로 넘겨주고 받았거나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51조(손해변상)

설비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52조(설비의 몰수)

등록하지 않았거나 비법적으로 구입하여 리용하거나 팔고산 설비, 사고를 일으킨 료전설비 같은것은 몰수한다.

제5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설비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호로 채택

제1장 물자소비기준법의 기본

제1조(물자소비기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낭비를 없애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물자소비기준의 정의)

물자소비기준은 단위제품을 만들거나 단위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한도를 규정한것이다.

물자에는 원료, 자재, 연료, 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물자소비기준의 제정원칙)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은 물자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4조(물자소비기준의 적용원칙)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적용하는것은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의 공급과 리용체계를 바로세워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의 의무화원칙)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물자에 대한 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제6조(물자소비기준의 갱신원칙)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것은 인민경제의 끊임없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 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도록 한다.

제7조(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강화원칙)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8조(적용대상)

이 법은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2장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제9조(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물자소비기준제정을 바로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0조(물자소비기준지표의 구분)

물자소비기준은 대상에 따라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으로 나눈다.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 사업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데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옹계 결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11조(물자소비기준제정의 담당자)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2조(물자소비기준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 조건에 맞게 제정하여야 한다.
2. 수입물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3.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제정하여야 한다.
4.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물자에 대하여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13조(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작성하여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서와 사업요강에 따라 한다.

제14조(물자소비기준초안의 심의, 등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성된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5조(아래단위의 물자소비기준 등록)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부문, 도(직할시)지표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한 다음 그 사본을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6조(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하달)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17조(실험, 실측, 계량, 자료분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와 관련한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여 물자소비기준제정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제18조(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9조(표준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기업관리수준이 높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물자소비기준을 표준물자소비기준으로 제정하여 생산제품이나 기술장비 같은것이 비슷한 다른 공장에도 일반화시킬수 있다.

제20조(임시물자소비기준의 제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제품과 생산량이 적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변하기 쉽고 반복성이 없는 제품 같은것에 대하여 임시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1조(물자소비기준의 갱신)

다음의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물자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2. 새 제품에 대한 시험생산이 끝나고 정식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3. 원료조건, 소재의 규격, 재질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4. 작업조건과 방법,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기술경제적지표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이 완료되었을 경우
6. 기타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을 경우

제22조(물자소비기준의 갱신기간과 심의, 등록)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조건이 제기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고 심의,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과 심의, 등록은 물자소비기준제정절차에 따른다.

제3장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제23조(물자소비기준의 의무적인 준수)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은 물자소비기준에 맞게 물자를 쓰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4조(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물자소비기준만을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한 계획작성 및 실적평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실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한 계획실행실적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6조(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물자공급)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를 공급하며 그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물자를 공급하지 않거나 배수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다.

제27조(물자소비기준에 따르는 가격제정, 감독)

가격제정기관과 품질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물자소비기준에 엄격히 준하여야 한다.

제28조(생산지표이관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생산지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해당하는 물자소비기준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넘겨받은 물자소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

러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제정받아 적용할수 있다.

제29조(합영, 합작부문에서 물자소비기준의 적용)

합영, 합작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대편 당사자가 제기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할수도 있다.

제30조(물자소비기준적용기간의 준수와 연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은 적용할수 없다.

물자소비기준을 적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완료되기 30일전에 연장신청문건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에 대한 총화와 보고)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제4장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물자소비기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3조(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체계의 확립)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책임일군이 직접 책임지고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사업을 진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일군은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균중적인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종업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며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물자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창의적인 안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제36조(물자소비기준자료집출판)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의 출판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을 출판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감독통제)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사업 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보상)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반복작업을 하여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물자소비기준을 망탕 제정하거나 적용하여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
2. 물자소비기준이 없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3.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제정하여 내려보내지 않아 계획작성과 생산,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6.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8.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공급을 하지 않아 물자를 낭비하였을 경우
9. 계획작성이나 실적평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지 않고 진행하여 해당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이밖에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제40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5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부동산관리법의 기본

제1조(부동산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부동산의 구분)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것으로 나눈다.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 같은것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관철원칙)

부동산은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로동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부동산의 등록과 실사원칙)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것은 부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제5조(부동산의 리용원칙)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부동산의 사회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및 적용원칙)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공간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데 기초하여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7조(부동산의 전인민적보호원칙)

부동산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부동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와 외국투자기업 및 단체, 외국인의 부동산관리, 리용질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부동산의 관리분담

제9조(부동산에 대한 관리분담의 기본요구)

부동산의 관리분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10조(토지의 관리기관)

토지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2. 산림토지, 산업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3. 주민지구토지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관리한다.
4. 수역토지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한다.
5. 특수토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1조(건물, 시설물의 관리기관)

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경영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자원의 관리기관)

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국가지하자원개발기관이 한다.

제13조(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의 관리기관)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을 위한 임시건물과 시설물도 함께 관리한다.

제3장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제14조(부동산의 등록요구)

부동산의 등록은 부동산을 빠짐없이 장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등록기관)

부동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 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등록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이 한다.

제16조(부동산의 현물, 화폐적등록)

부동산의 등록은 현물, 화폐적으로 한다.

화폐적으로 등록할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현물만 등록한다.

제17조(토지의 등록방법)

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한다.

지적도에는 지목, 지번, 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건물, 시설물의 등록방법)

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물등록대장에 한다.

등록대장에는 건물, 시설물의 리용자명, 리용면적, 건물의 수명, 보수주기 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의 등록방법)

자원의 등록은 자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해당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부동산실사)

부동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태를 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부동산실사정형보고)

부동산실사를 진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부동산의 리용

제22조(부동산리용의 기본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리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부동산리용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제24조(부동산의 리용허가신청)

부동산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용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부동산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5조(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한다.

부동산을 임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리용기간도 밝힌다.

제26조(부동산의 리용승인)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7조(부동산리용허가증의 재발급)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리용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28조(부동산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의 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시설물부지면적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자원을 채취하면서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6.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부동산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금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0조(부동산의 넘겨주기 또는 빌려주기금지)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수 없다.

제31조(부동산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리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에 바친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장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

제32조(부동산가격과 사용료적용의 기본요구)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폐적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에 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제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부동산사용료의 의무적납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대상과 절차,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5조(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

부동산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할수 없다.

제36조(부동산사용료납부장소와 기간)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해당 지역의 재정기관에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부동산관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부동산정책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해당 중앙기관은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부동산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부동산관리사업에서 협조)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기관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호상 통보한다.

제41조(부동산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2조(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부동산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3조(원상회복, 손해보상, 리용중지)

부동산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동산리용허가증을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벌금의 적용, 수입금의 몰수)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부동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겨 부동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리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

제45조(분쟁해결)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46조(신소제기 및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에너지, 금속, 지하자원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너지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주체87(1998)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8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장 에네르기관리법의 기본

제1조(에네르기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은 에네르기의 공급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에네르기랑비를 없애고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에네르기의 종류와 그 관리의 과학화원칙)

에네르기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핵물질 같은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것이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에네르기관리를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에네르기의 공급원칙)

에네르기공급은 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생산된 에네르기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에네르기의 리용과 절약원칙)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지역적특성에 맞게 에네르기형태별로 리용분야를 규정하고 그 효율을 높이며 에네르기를 적극 절약하도록 한다.

제5조(에네르기관리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6조(에네르기관리의 대중화원칙)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에네르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에네르기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에네르기공급

제8조(에네르기공급의 기본요구)

에네르기공급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에네르기를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에네르기공급계획의 작성)

에네르기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에네르기바란스, 에네르기소비기준, 에네르기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수송조건, 생산계획, 생산공정의 기술장비수준, 에네르기절약예비 같은 것을 고려하여 에네르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석탄공급)

석탄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정해진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제11조(전력공급)

전력공급기관은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르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규격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12조(연유공급)

연유공급기관은 연유공급시설을 꾸리고 정해진 규격의 연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연유는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공급할수 없다.

제13조(에네르기의 계량)

에네르기공급기관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를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에네르기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수송기재를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를 제때에 수송하며 그 도중손실 없애야 한다.

제3장 에네르가리용

제15조(에네르기바란스와 소비계획의 작성)

에네르기의 합리적리용은 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문별인민경제계획에 앞서 증장기, 단기, 년간 에네르기바란스를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에네르기소비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에네르기소비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계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로 기록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비대장에는 에너지 총소비량, 종류별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에너지시설비용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낮은 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보충, 갱신하여야 한다.

제18조(효율이 높은 에너지시설, 기술공정의 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너지비용에서 효율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받아들이고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생산공정을 설계하는 경우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의 리용효율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설비의 연소효율, 열효율을 정해진 기술지표대로 보장하며 변환된 력학적에너지와 열에너지의 리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20조(에너지손실의 저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너지시설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에너지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폐열, 남은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에너지시설의 경부하, 무부하운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와 에너지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에너지시설의 경부하운전, 무부하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자가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제22조(연료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의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그것을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에너지리용건물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너지를 리용하는 건물을 새로 건설하려 할 경우 에너지바란스와 소비조건, 공급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설계기관은 건물의 설계에서 조명, 난방, 환기와 온수공급에 드는 에너지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외벽체와 창문을 통한 열손실을 적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중소형발전소건설과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중소형발전소를 적극 건설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발전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제25조(대용에너지의 동원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 같은 중요한 에너지를 대용할수 있는 연료와 초무연탄, 저열탄, 연재탄, 지열, 생물에너지 같은것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에네르기설비의 제작,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에네르گیری 용효률이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것을 제작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7조(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에네르گیری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8조(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에네르گیری의 생산과 공급,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공급된 에네르گیر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에네르기소비정형의 장악)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매월 에네르기소비정형을 해당 통계기관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에네르기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에네르기관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과학기술의 연구와 도입)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대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기술을 연구완성하며 에네르گیری용효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에네르기공급과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에네르گیری의 공급, 설비운영중지, 손해보상)

에네르기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에네르گیری를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에네르گیری의 공급,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에네르기공급과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 력 법

주체84(1995)년 1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9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력법의 기본

제1조(전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생산, 공급, 리용 및 급전지휘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력수요를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전력공업발전원칙)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다른 여러가지 에너르기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세우도록 한다.

제4조(전력생산원칙)

전력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전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제5조(전력공급 및 리용원칙)

전력공급은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송배전시설을 꾸리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며 효과있게 쓰도록 한다.

제6조(급전지휘원칙)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전력계통운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

제7조(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록 한다.

제8조(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를 절약하며 전력시설물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전력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한다.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0조(전력시설건설의 계획화)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 송배전시설 같은 전력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자원조사)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에 앞서 전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소건설위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연료원천지와 그 매장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망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경제적효과성의 타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믿음성이 있는 수력발전소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건설은 여러가지 연료조건에 맞는 형식과 규모를 정하고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한 전망적수요와 전력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력시설건설기관)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력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송배전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6조(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전력시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중소형발전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균중적운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18조(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질서에 따르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되는대로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전력생산

제19조(전력증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 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0조(전력생산계획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관리를 잘하여 수력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할수 없다.

사수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2조(수력발전소의 물 확보)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내며 언제와 물길 같은 수력구조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뿜아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제23조(수력발전소, 저수지의 보호구역)

수력발전소와 그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수력발전소,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저수지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지 말며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저수지보호구역의 나무를 베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지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생산용석탄은 전력생산밖의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제26조(전력생산용증기의 리용)

전력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필요에 따라 전력생산용증기를 감압시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제때에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선별하지 않은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수 없다.

제28조(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전력을 생산할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할수 있다.

제4장 전력공급

제29조(전력의 합리적공급)

전력공급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고 정격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생산되는 전력가운데서 일정한 량을 조절예비로 남겨두고 전력공급계획을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조절예비를 남겨두지 않을수 있다.

생산된 전력이 계획보다 적을 경우에는 매월 또는 시기별로 전력사용한도를 주어야 한다.

제31조(전력공급계약)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과 전력사용한도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비생산부문에 공급하는 전력에 대하여서는 대상에 따라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제32조(영농용전력 및 장마철전력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게 된 전력을 조절할수 있다.

제33조(조절예비전력의 공급)

조절예비전력은 사고, 자연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급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전력의 질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하는 전력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되는 전력의 질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리유와 송배전시설의 능력 같은것을 검토하고 요구하는 질이 보장된 전력을 공급할수 있다.

제35조(전력의 정상적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설의 정비보수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력공급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자가소비전력의 공급금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소비전력은 전력생산과 송배전설비의 운영에만 리용할수 있다.

제37조(전력도중손실줄이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전체계를 바로세우고 송배전시설을 정비보강하며 정전축전기, 동기조상기 같은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한다.

제38조(전력시설의 관리)

전력시설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0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의 관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는 다른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전기위험》, 《출입금지》 같은 필요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력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자기 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킬수 없다.

제5장 전력의 리용

제42조(전력공급계획, 전력사용한도의 준수)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연료, 동력의 낭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급계획 또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43조(교차생산조직)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사이, 부문사이, 도사이, 기업소사이, 직장사이, 공정사이, 기대사이의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비련속생산공정의 교차생산조직은 계절별, 월별, 순별, 주별, 일별, 교대별, 시간별로 한다.

제44조(전력소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45조(전력다량소비공정의 개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전력을 많이 쓰는 생산공정을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생산공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6조(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운전을 중지시킨다.

제47조(전열리용허가)

전열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열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열리용허가는 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그러나 용량이 큰 전열설비나 전열을 난방으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이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 가정용전기제품은 등록하고 정해진 전력소비량한도에서 리용할수 있다.

제48조(전력낭비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운전을 하지 말며 필요없는 전등 또는 전력소비가 많은 전등을 켜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설비의 용도와 용량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9조(무효전력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0조(전력계량수단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소비를 측정할수 있는 곳에 카드식적산전력계를 비롯한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하거나 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체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1조(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전력료금의 지불)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전력을 소비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52조(전기절약을 위한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콤팩트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 같은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전력소비가 많은 전열설비의 생산, 수입금지)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전열설비는 생산, 수입할수 없다.
전열설비를 생산,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54조(전력소비통제)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과학기술적으로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력소비통제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급전지휘

제55조(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의 통일적지휘)

급전지휘는 전력계통운동을 장악하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급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과정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제56조(급전지휘조건의 보장)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급전지휘에 간섭하거나 급전사령실의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7조(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급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9조(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중앙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제60조(전력공급급수의 설정)

국가는 전력공급 및 소비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1조(예비전력계통의 구성)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2조(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에 현대적인 보호장치를 받아들이고 그 동작기준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3조(급전지휘통신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지휘를 하여야 한다.

통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4조(전력시설의 보수)

급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제7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5조(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전력부문 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6조(전력시설관리에 대한 관정의 조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설을 건설 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관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67조(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68조(전기절약월간)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69조(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력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시설건설의 질을 보장하고 전력시설건설과 생산, 공급, 리용, 급전지휘질서를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0조(전력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1. 전력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리용한 경우
2.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한 경우
3. 무효전력생산설비와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4. 전력료금을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
5. 전력을 낭비하였거나 몰래 훔쳐냈을 경우

제71조(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전력시설보호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2조(손해보상)

전력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 교차생산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3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질서를 어겼거나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거나 조절예비전력, 자가소비전력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3. 전력설비의 생산, 수입,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4.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력생산과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급전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급전지휘에 간섭하였거나 복종하지 않았거나 급전지휘통신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전력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전력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7. 전력시설 또는 전력설비를 파손시켰을 경우
8. 콤팩트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직산전력계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9. 전력부문 일군이 전력감독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전력부문 일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전력계량수단을 해체하였거나 거짓행위로 전력계량을 정확히 할수 없게 하였을 경우
12. 승인없이 자기 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켰을 경우
13.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전력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74조(형사적책임)

제7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

주체81(1992)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3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9호로 수정

제1조(원자력법의 사명)

원자력을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자력법은 원자력의 개발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동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자립적원자력공업건설의 기본요구)

국가는 원자력공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원자력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원자력공업건설원칙)

국가는 원자력공업건설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4조(원자력리용, 핵설비, 핵물질의 장악통제)

국가는 원자력의 리용과 핵설비, 핵물질의 수출입을 장악하고 감독통제하도록 한다.

제5조(원자력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방사능광물의 탐사와 채취)

우라늄광, 토륨광 같은 방사능광물의 탐사와 채취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제7조(방사능광물, 핵연료의 통제기관)

방사능광물과 핵연료의 연구, 생산, 취급, 수출입은 승인받은 기관만이 한다.

제8조(핵연료순환체계)

국가는 방사능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핵연료순환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제9조(원자로, 핵연료의 관리)

원자로건설, 개조, 이설, 관리와 핵연료관리는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다.

제10조(핵폐기물의 피해방지)

원자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폐기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1조(방사선피해의 방지)

방사성물질을 취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는 작업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방사선피해의 보상)

국가는 방사성물질취급일군들에게 방사선에 의한 피해를 가질수 있도록 유해가급 금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고 필요한 영양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도록 한다.

제13조(보호구역)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핵설비를 리용할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4조(원자력부문의 지도)

원자력부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리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설원자력위원회)

국가는 자립적인 원자력공업을 건설하고 핵안전보호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로 원자력위원회를 둔다.

제16조(원자력공업기지)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은 원자력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핵동력개발과 방사성동위원소기술의 도입에 필요한 기관, 기업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제17조(원자력의 리용에 대한 발명의 장려)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대한 발명을 특별히 평가하고 장려한다.

제18조(원자력발명자료의 관리)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는 해당 기관이 관리한다.
원자력에 대한 발명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원자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9조(핵안전감독체계)

국가는 원자력발전소, 난방용원자로, 시험원자로, 핵가속기 같은 핵시설과 방사성물질취급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안전감독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제20조(핵안전의 감독통제)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에 대한 감독통제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의 관리와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취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주체96(2007)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06호로 채택

제1장 중소기업발전소법의 기본

제1조(중소형발전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기업발전소법은 중소기업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중소형발전소의 정의)

중소형발전소는 20 000kW까지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이다.

중소형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풍력 같은 여러가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

제3조(중소형발전소의 건설원칙)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치는것은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중소기업발전소를 경제적실리에 맞게 전군중적운동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중소형발전소의 운영원칙)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은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운영체제를 바로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그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원칙)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전력손실과 낭비를 없애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과학연구성과의 도입원칙)

국가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성과를 중소기업발전소운영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전기절약, 전력시설물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생산된 전기를 절약하며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시설물을 적극 보호하도록 한다.

제2장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제8조(중소형발전소건설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은 나라의 전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이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계절적영향을 적게 받는 위치에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건설계획의 작성)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수요와 로력, 자재, 설비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술과제의 제출과 검토)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를 작성한 다음 대상의 규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기술과제를 3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설계의 작성)

중소형발전소건설의 설계작성은 전력설계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측량, 지질조사, 위치선정 같은것을 정확히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설계의 심의, 승인)

중소형발전소건설설계에 대한 심의와 승인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전력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안을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소형발전소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제14조(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계획에 따라 시공계약을 맺어야 한다.

맺은 시공계약은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15조(시공공정별 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제16조(조업기일의 보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설계와 표준공법의 요구대로 하며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 중소형발전소를 시공하거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실리있는 중소형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리가 많은 중소형수력발전소를 먼저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력자원을 정확히 조사하고 수력지점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중소형화력, 풍력, 조수력발전소의 건설을 기후, 지리적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전력과 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9조(발전설비의 규격화, 표준화, 계열화)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설비를 규격화, 표준화하고 생산을 계열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설비를 자체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규격대로 생산하며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발전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형발전소건설의 종합검사, 준공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이 완공되면 종합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는 대상의 규모에 따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준공검사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중소형발전소는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다.

제3장 중소형발전소의 운영

제21조(중소형발전소운영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운영을 바로하는것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2조(전력생산계획의 시달)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에 따르는 전력생산계획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소형발전소의 발전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력생산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3조(전력생산계획의 수행과 변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전력생산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전력생산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전력생산의 정상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략차의 변화에 맞게 발전체계를 부단히 변화시켜 수차와 발전기의 효율을 높이며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5조(중소형수력발전소의 물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언제, 취수구, 수로 같은 시설을 제때에 정비하고 물관리를 바로하여 높은 수위와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중취수구를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전력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수력발전소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보호시설물을 만들어 가물, 홍수, 돌사태 같은 피해로부터 전력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겨울에는 물뽑기 같은 추위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7조(발전효율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여 타빈과 풍차, 수차의 발전효율을 높여야 한다.

효율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은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제28조(설비의 점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점검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설비의 불량개소를 찾아 등록하고 퇴치하여야 한다.

설비점검으로 퇴치할수 없는 불량개소는 보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설비의 보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보수는 소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보수주기를 지키며 발전설비의 가동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설비의 폐기, 이관, 인수)

중소형발전소의 설비에 대한 폐기, 이관, 인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재산감독기관은 해당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전력생산실적자료의 장악)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생산실적을 국가계획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리용

제32조(중소형발전소전력리용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생산된 전력의 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리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만큼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전력계통의 련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소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계통을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가까이에 있는 국가전력계통에 련결하고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제34조(여러 중소기업발전소의 전력계통구성)

한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하나의 전력계통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발전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남는 전력의 공급)

중소형발전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고 남는 전력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거나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전력계통에 넣을수 있다. 이 경우 전력시설공사를 전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6조(요금의 지불)

전력을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금지불은 측정 한 전력공급량에 따른다.

제37조(국가전력계통의 전력리용신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갈수기 또는 기타 사유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부족할 경우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승인신청문건을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송배전기관은 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제38조(국가전력계통의 전력차단)

국가전력계통의 전력을 임시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기업발전소에서 전력을 다시 정상적으로 생산할 경우 송배전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전력계통의 전력공

급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력을 2중으로 공급받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9조(시, 군이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

시(구역), 군자체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리용은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전력공급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전력리용효률의 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의 리용효률을 높여 전력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송배전체계를 정비하고 무효전력, 과대용량 같은것에 의한 전기낭비현상을 없애야 한다.

제5장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중소형발전소건설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의 지도)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소형발전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5조(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중소형발전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중소형발전소사업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전력생산과 리용의 통제)

중소형발전소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리용하여 중 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과 리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벌금적용, 손해보상)

벌금을 물리거나 손해보상을 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한 전력을 허위보고하였을 경우
2. 발전능력대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3.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을 경우
4. 건설한 중소형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5. 전력을 낭비하였거나 전력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발전설비를 분실, 파손시켰을 경우

제48조(중지)

중소형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전력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건설할 경우
2. 설계대로 건설하지 않을 경우
3. 종합검사와 준공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남는 전력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5. 전력을 초과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중소형발전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 유 법

주체96(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2호로 채택

제1장 연유법의 기본

제1조(연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유법은 연유의 생산, 수송과 보관, 공급과 판매,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연유의 량비를 없애고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연유의 정의)

연유는 현대산업의 동력원천의 하나이며 국가의 중요전략물자이다.

연유에는 료전기재와 가열설비의 연료로 쓰이거나 제조공업의 용매제로 쓰이는 휘발유, 디젤유, 중유, 항공석유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연유생산의 원칙)

연유생산을 늘이는것은 연유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연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질좋은 연유를 생산하도록 한다.

제4조(연유수송, 보관의 원칙)

연유의 수송과 보관은 연유를 소비지로 실어나르며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연유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5조(연유공급, 판매에서 지켜야 할 원칙)

연유의 공급과 판매를 바로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연유를 공급, 판매하도록 한다.

제6조(연유소비의 원칙)

연유의 소비는 연유를 생산, 경영활동에 리용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연유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 소비를 극력 낮추도록 한다.

제7조(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연유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균등적인 연유절약)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연유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연유를 극력 아끼고 절약하도록 한다.

제9조(교류, 협조)

국가는 연유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연유를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주민생활에 쓰이는 연유의 관리질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에 따른다.

제2장 연유의 생산

제11조(연유생산기관)

연유의 생산은 연유를 확보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생산은 원유가공기업소가 한다.

제12조(연유생산계획초안의 작성)

연유생산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연유를 생산하려는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연유생산계획의 승인)

국가계획기관은 원유확보량, 연유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제기된 계획초안을 검토하고 연유생산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유생산계획은 원유가공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연유의 생산)

원유가공기업소는 원유가공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생산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계획된 연유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준수)

원유가공기업소는 연유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며 제정된 규격의 연유를 생산하여야 한다.

연유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16조(연유출하)

생산된 연유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출하할수 있다.

출하하는 연유는 탱크에서 가스성분을 충분히 제거하고 물이 섞이지 않은것만 하여야 한다.

제17조(연유의 수입)

생산한 연유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유를 수입한다.
연유의 수입은 수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연유의 수입절차와 방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에 따른다.

제3장 연유의 수송과 보관

제18조(연유수송과 보관의 요구)

연유를 정확히 수송하고 보관하는것은 연유의 질과 량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연유를 제때에 수송하며 그 보관취급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9조(연유의 수송수단)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하거나 화재를 막고 불을 끄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유조차나 유조선 같은 전문수송기재로 한다.

유조차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는 화물차로 연유를 수송할수 있다.

제20조(송유관에 의한 수송)

500t이상 되는 연유의 수송은 송유관으로 한다.

송유관관리운영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계량하여 수송하며 연유의 도중손실을 극력 없애야 한다.

제21조(유조선에 의한 수송)

수입하는 연유와 유조차수송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연유의 수송은 유조선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조선의 항차조직을 짜고들며 배짐증권에 반영된 연유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조차에 의한 수송)

연유생산지 또는 도착지로부터 공급지까지의 연유수송은 유조차로 한다. 이 경우 연유수송을 책임진 인수원이 립회하여야 한다.

립회인이 없이 연유수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는 연유수송기관이 책임진다.

제23조(연유의 인수)

연유인수원은 연유를 정확히 인수받아야 한다.

연유의 인수는 유조차의 연봉상태를 확인하고 송장에 반영된 현물이 정확한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족되는 량은 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제24조(연유의 실고 부리는 작업)

연유를 실고 부리는 작업은 전문시설이 갖추어진 역과 부두, 공급지에서만 한다.

필요에 따라 전문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곳에서 연유를 싣고 부리는 작업을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연유의 보관)

연유의 보관은 연유창에 한다.

연유창에는 연유공급, 판매소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연유보관창고가 속한다.

제26조(연유창의 승인)

연유창은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나오거나 운영할수 있다.

연유창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품종별, 규격별로 보관하고 공급할수 있는 시설과 불끄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연유의 검수)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연유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고되는 연유를 정확히 검수하여야 한다.

연유의 검수는 연유의 량과 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8조(연유의 종류별, 규격별보관)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며 품질이 서로 다른 연유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쓰던 탱크에 다른 종류의 연유를 보관하려 할 경우에는 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제29조(화재의 방지대책)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취급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유를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가스농도에 의한 폭발을 일어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환기시켜야 한다.

제30조(출입금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연유보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유창의 일정한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한다.

출입금지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출입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

출입금지구역에는 울타리를 치며 그안에는 정해진 성원만이 출입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창출입금지구역가까이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

연유공급, 판매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수송과 보관과정에 생기는 자연감모를계산을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원유제품자연손실기준을 수송조건, 온도, 보관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연유의 위탁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연유공급, 판매기관에 위탁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보관료를 내야 한다.

제4장 연유의 공급과 판매

제34조(연유공급, 판매의 기본요구)

연유의 공급과 판매는 수요자에게 필요한 연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의 공급과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5조(연유공급계획의 작성과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연유생산량, 연유설비대수와 소요량,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연유공급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연유공급기관과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6조(연유의 공급지령)

국가연유공급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는 연유는 공급지령에 따라 공급한다. 이 경우 먼저 중요대상에 대한 공급지령을 한다.

제37조(연유의 결제)

연유공급기관은 공급지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연유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하는 연유의 결제는 무현금행표로 한다.

제38조(연유의 월, 분기 공급)

국가의 연유공급계획에 따르는 연유공급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다. 공급계획이 없이 연유를 공급할수 없다.

제39조(연유의 판매기관)

연유의 판매는 수입한 연유를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팔아주는 봉사사업이다. 연유의 판매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연유판매기관만이 한다.

제40조(연유공급, 판매소의 배치)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수요자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소는 지역별수요, 교통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민지로부터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1조(연유의 판매가격)

연유의 판매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을 어기고 연유를 판매할수 없다.

제42조(연유판매의 신청)

연유를 구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판매기관에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유판매기관은 신청량에 따르는 판매대금을 계산하여 해당한 진표를 떼주어야 한다.

진표는 해당한 판매소에서 정한 기간까지 리용할수 있다.

제43조(연유의 제량, 공급, 판매)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를 정확히 제량하여 기준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연유의 비중을 마음대로 조절하여 연유를 공급,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연유의 송달)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문에 따라 연유를 송달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주문송달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송달비를 내야 한다.

제45조(공급, 판매자료의 기록, 보관)

연유공급, 판매기관은 연유공급, 판매량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정형을 월 1차이상 실사하며 남거나 모자라는것은 그 원인을 해명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유공급, 판매실사자료는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연유의 소비

제46조(연유의 소비에서 지켜야 할 요구)

연유의 소비를 바로하는것은 연유를 절약하고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연유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여야 한다.

제47조(연유의 계획적소비총화)

연유를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여야 한다.

연유소비정형을 일별, 월별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48조(연유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설비를 등록하고 연유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연유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49조(연유의 리용용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를 생산과 경영활동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연유를 시장같은데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연유의 교환)

연유공급, 판매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다른 종류의 연유와 교환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연유교환비율을 지켜야 한다.

제51조(연유량비의 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연유소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며 필요없이 료전기재의 발동을 걸어놓거나 빈차운행 같은것으로 연유를 량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52조(연유소비설비의 교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벌리고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연유를 많이 소비하는 설비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53조(연유의 손실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보관시설과 연유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연유의 자연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제6장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중앙지도기관은 아래 단위의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지도서의 작성)

중앙연유지도기관은 연유관리기술지도서를 작성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 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관리기술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연유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7조(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대응연료개발)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연유의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응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연소효률을 높이고 대응연료를 개발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58조(연유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연유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연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연유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위법현상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9조(중지)

연유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연유수입질서를 어겼거나 계획없이 연유를 공급하였거나 연유공급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유의 생산과 공급을 중지시킨다.

제60조(보상, 벌금)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유를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2. 정한 판매가격을 어겼거나 승인없이 연유공급비중을 조절하였을 경우
3. 화재사고를 일으켜 재산상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연유판매를 잘못하였거나 판매자금을 제때에 입금시키지 않았을 경우
5. 계량계측수단의 눈금과 량을 속여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6. 연유의 인수와 검수를 잘못하였을 경우
7. 연유와 판매전표를 류실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8. 휘발유, 디젤유에 나프샤, 갱질유, 석유 같은것을 섞어 질이 나쁜 연유를 공급하였을 경우
9. 위조전표를 리용하였을 경우

제6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연유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5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4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04호로 수정보충

제1장 흑색금속법의 기본

제1조(흑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흑색금속법은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흑색금속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흑색금속의 정의)

흑색금속은 철과 그 합금이다.

흑색금속에는 선철과 합금철, 립철, 해면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2차금속가공제품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흑색금속공업발전원칙)

흑색금속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흑색금속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흑색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서워 발전시킨다.

제4조(흑색금속생산확대원칙)

흑색금속생산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화사업과 생산조직을 바로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며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주체철생산원칙)

주체철생산은 흑색금속공업발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의 원료, 연료, 기술에 의거하는 철생산방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주체철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6조(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흑색금속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흑색금속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낭비를 없애고 소비 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파철관리원칙)

파철은 흑색금속생산의 중요한 원료이다.

국가는 파철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파철을 남김없이 거두어들여 흑색금속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흑색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흑색금속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흑색금속의 생산

제10조(흑색금속생산확대)

흑색금속생산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흑색금속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흑색금속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11조(흑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생산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12조(흑색금속생산계획의 실행)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흑색금속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3조(흑색금속생산의 질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흑색금속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에서는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자원에 의한 합금철과 합금강생산비중을 높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14조(품질검사)

생산된 흑색금속은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흑색금속의 용도에 따르는 품질과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

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품질검사에서 합격되지 않은 흑색금속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제15조(로의 생산성제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로정고압조업, 초고전력제강, 로외정련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설비관리 및 점검보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제17조(물자소비기준 및 기술경제적지표준수)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전력과 콕스탄을 비롯한 원료, 연료, 자재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18조(원료보장)

흑색금속생산원료를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품위높은 철광석과 파철, 합금철, 석회석, 형석, 고회석 같은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계획대로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9조(전력, 연료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내화물의 보장)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마그네샤크링카와 내화점토생산을 늘이고 그 순도를 체계적으로 높이며 원료배합과 소성을 잘하여 질좋은 내화물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질이 보장되지 않은 내화물은 공급할수 없다.

제21조(흑연, 전극보장)

흑연, 전극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는 기술적특성이 담보된 흑연, 전극을 생산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흑연, 전극의 기술적특성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22조(원료, 연료, 자재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3조(흑색금속생산량의 장악과 보고)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는 흑색금속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생산정형은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흑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제24조(흑색금속의 계획적인 공급과 리용)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흑색금속을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며 그 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5조(흑색금속공급계획의 작성)

흑색금속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흑색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그에 대한 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제26조(흑색금속공급계약의 체결)

흑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기초하여 흑색금속생산기관, 기업소와 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흑색금속공급계약을 맺을수 없다.

제27조(흑색금속공급장소)

흑색금속의 공급은 흑색금속생산기업소에서 직접 한다.

필요한 경우 흑색금속의 생산량, 수송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적당한 지역에 전문판매소 같은것을 꾸리고 할수도 있다.

제28조(흑색금속의 공급순위)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흑색금속공급)

흑색금속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과 계약에 따라 정해진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 규격, 재질의 흑색금속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사이에 기술합의를 하고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흑색금속의 수송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흑색금속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흑색금속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흑색금속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흑색금속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흑색금속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흑색금속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흑색금속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2조(흑색금속소비기준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리용에서 대상별, 공정별, 제품별에 따르는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흑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흑색금속을 공급할수 없다.

흑색금속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33조(흑색금속의 수출)

흑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만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파철관리

제34조(균증적인 파철관리)

파철관리를 바로하는것은 흑색금속생산에 절실히 요구되는 파철을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철수집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파철을 모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35조(계획작성 및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지역별, 기관, 기업소, 단체별, 지표별로 정확히 세워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파철생산, 국가납부계획은 흑색금속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파철수매계획은 그밖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준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파철생산, 국가납부 및 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6조(생산, 가공과정에 나오는 파철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 나오는 쇠물찌끼, 철강재뿔다리, 철판자투리, 절삭밥 같은것을 수집하여 재질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아 놓아야 한다.

제37조(철제폐기품의 수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문에서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은 철도운수기관에 넘겨준다.

폐기품에서 그대로 쓸수 있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것은 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쓸수 있다. 이 경우 그대로 쓰는 부속품이나 부분품, 부대설비 같은것에 해당하는 수량의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 또는 철도운수기관의 인수확인서가 없이는 폐기된 철제설비나 비품, 구조물, 전도장치 같은것에 대한 재정처리를 할수 없다.

제38조(파철수집의 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게 매주 하루를 파철수집의 날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야 한다.

제39조(파철의 가공 및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종류별로 해당 용도와 규격에 맞게 절단, 압착, 분쇄하여야 한다.

가공된 파철은 절삭밥, 파주철, 중파철, 경파철, 합금강파철 같은것으로 갈라 산화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파철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계획에 따라 파철을 고금속관리기관에 정확히 납부하여야 한다.

파철납부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계획수행을 미달한 비를 만큼 파철을 공급하지 않을수 있다.

제41조(파철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상적으로 파철을 수집하여 고금속관리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수매하여야 한다.

파철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재질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고 파철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2조(수매한 파철의 이관)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파철을 대장에 기록하고 고금속관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파철을 넘겨받은 고금속관리기관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3조(파철납부 및 수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쓸수 있는 철제설비, 부속품 기타 철제품 같은것을 파철로 납부하거나 수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파철공급)

파철은 공급계획에 따라 파철을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계획외에 파철을 공급할수 없다.

제45조(파철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모아놓은 파철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46조(파철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주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집한 파철을 정해진 공급단위에 직접 넘겨줄수 있다. 이 경우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의 확인이 없이는 파철납부실적평가를 받을수 없다.

제47조(철도운수를 통한 파철수송)

파철을 철도로 수송하려 할 경우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파철량을 정

확히 확인하여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고금속관리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파철은 수송할수 없다.

고금속관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파철을 수송하는 과정에 생긴 부족사고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진다.

제48조(파철터, 계량수단설치를 위한 장소와 조건보장)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구내에 파철터와 계량수단을 설치할수 있는 장소와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파철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파철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거나 수출하거나 파철로 제품을 임가공하여주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파철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를 고금속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도운수부문에서 나오는 파철에 대한 대금결제는 철도운수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5장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1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흑색금속사업정형 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흑색금속의 생산과 공급, 리용, 파철수집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흑색금속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흑색금속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흑색금속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5조(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흑색금속의 생산, 공급, 리용과 파첼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손해보상)

흑색금속공급계약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린다.

제57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여 흑색금속부문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작사고를 냈을 경우
3.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보수를 잘하지 못하여 설비가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낭비하였을 경우
5. 원료와 연료, 자재, 전력 같은것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계획없이 또는 계획, 계약과 어긋나게 흑색금속, 파첼을 공급하였을 경우
7. 흑색금속의 보관관리를 잘하지 않아 그것을 루실시켰을 경우
8. 흑색금속 또는 파첼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였을 경우
9. 흑색금속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0. 철제폐기품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계획없이 파첼을 자체로 소비하였거나 파첼을 임가공하여주었을 경우
12. 승인없이 파첼을 정해진 공급단위가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을 경우
13. 파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였을 경우
14. 파첼을 제때에 운반하지 않아 흑색금속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8조(형사적책임)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

주체95(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3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7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유색금속법의 기본

제1조(유색금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은 유색금속의 생산, 공급과 리용, 회수와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유색금속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유색금속의 정의)

유색금속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유색금속에는 철을 제외한 모든 금속이 속한다.

제3조(유색금속의 생산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5조(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원칙)

국가는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도록 한다.

제6조(전군중적인 유색금속관리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유색금속관리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해설선전하여 그들이 유색금속을 귀중히 여기고 예비를 적극 찾아내도록 한다.

제7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유색금속의 광석이나 정광, 제품과 가공절단품, 철삭밥, 잔사, 사장되어 있거나 못쓰게 된 유색금속제품 같은 파유색금속의 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금, 은, 백금 같은 귀금속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유색금속의 생산

제8조(유색금속생산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생산을 늘이는것은 유색금속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유색금속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9조(유색금속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유색금속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유색금속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광실수률, 정광품위의 보장)

유색금속정광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선광실수률과 정광의 품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1조(유색금속광석, 정광의 보관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을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유색금속광석이나 정광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12조(제련실수률의 보장)

유색금속을 제련하는 기관, 기업소는 정한 제련실수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련실수률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3조(유색금속정광의 수송)

유색금속정광을 수송하는 기관은 정광의 수분을 기준대로 보장하며 정광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

제14조(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유색금속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공급계획을 정확히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유색금속의 공급)

유색금속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다.

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을 내야 한다.

제16조(파유색금속의 공급)

파유색금속의 공급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 한다.

파유색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승인한 파유색금속공급문건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유색금속의 수송)

유색금속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은 판매문건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송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18조(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

유색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색금속제품생산소비기준은 어길수 없다.

제19조(유색금속의 계획적리용)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유색금속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에 유색금속을 리용할수 없다.

제20조(유색금속의 자체리용)

회수하게 되었거나 대품으로 받은 유색금속을 자체로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유색금속의 수출)

유색금속을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수출문건에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파유색금속과 그 주피는 수출할수 없다.

제22조(유색금속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의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보관시설은 정해진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유색금속가공설비의 비법소유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을수 없다.

제4장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

제24조(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의 기본요구)

유색금속의 회수와 수매는 유색금속의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을 계획적으로 회수, 수매하여야 한다.

제25조(유색금속의 회수계획실행)

국가계획기관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연간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유색금속회수계획실행평가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서 발급한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에 따라 한다.

제26조(유색금속의 회수기간, 비율)

유색금속회수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과정에 생기는 파유색금속을 월에 1차씩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이 경우 유색금속회수비율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유색금속폐기품의 회수)

유색금속이 들어있는 전도장치, 설비, 비품 같은것을 폐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과정에 나오는 유색금속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28조(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의 회수)

유색금속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의 변경 같은 사정으로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3개월안으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바쳐야 한다.

리용하지 못한 유색금속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몰수한 유색금속의 회수)

검찰기관과 인민보안기관, 재판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몰수한 유색금속을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몰수한 유색금속을 넘겨주고 받는 질서는 압수, 몰수규정에 따른다.

제30조(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의 발급)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유색금속을 바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유색금속회수확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유색금속의 수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이나 해당 수매기관에 유색금속을 수매할수 있다.

유색금속을 수매받은 기관은 그것을 품종별로 정확히 계량하고 해당한 값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2조(수매받은 유색금속의 회수)

해당 수매기관은 수매한 유색금속을 수매대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유색금속을 넘겨받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은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유색금속의 교환)

상업기관과 해당 구매기관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색금속제품을 파유색금속과 교환하여 줄수 있다.

유색금속제품과 파유색금속을 교환하는 상업기관과 구매기관은 해당 제품의 유색금속소비기준을 초과하여 파유색금속을 받지 말아야 한다.

제34조(구매, 교환할수 없는 유색금속)

상업기관과 해당 구매기관은 동, 연, 아연, 알루미늄주괴 같은 유색금속제품과 가정용품을 제외한 유색금속부속품, 전기선, 통신선같이 그대로 쓸수 있는 유색금속제품을 구매받거나 교환용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

제35조(비법적인 유색금속의 회수, 매매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유색금속을 거두어들이거나 또는 보관, 운반하거나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색금속을 다루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파유색금속회수과제를 줄수 없다.

제36조(유색금속의 대금결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색금속제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판매기관, 파유색금속에 대한 대금결제를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유색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유색금속관리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색금속감독 및 회수지도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색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역과 항,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문건과 장소, 설비 같은것을 볼수 있다.
2. 범위반자를 단속하고 조서를 받을수 있다.
3. 범위반행위를 한 운수수단을 조사할수 있다.
4.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과학기술적방조와 인원, 운수수단의 보장 같은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1조(유색금속관리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조건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색금속감독 및 회수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유색금속관리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조건을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유색금속생산, 리용의 중지)

유색금속광석의 선광실수률과 정광품위, 제련실수률을 기준대로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계획 또는 승인, 합의를 받지 않고 유색금속을 리용, 수출할 경우에는 생산, 리용, 수출을 중지시킨다.

제43조(유색금속공급의 중지)

유색금속회수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유색금속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유색금속공급을 중지시킨다.

제44조(손해보상, 벌금)

유색금속을 류용, 량비, 분실, 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5조(몰수)

비법적으로 용해, 주조, 압연, 연신설비 같은 유색금속가공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유색금속제품을 만들었거나 매매하였거나 수송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설비와 제품, 얻은 돈과 물건, 리용된 운수수단과 도구를 몰수한다.

제4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색금속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

주제95(2006)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2호로 채택

제1조(주물품협동생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물품협동생산법은 주물품의 생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물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주물품을 생산하거나 그에 필요한 원료, 자재, 전력같은것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주물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주물품의 협동생산조직원칙)

주물품의 협동생산은 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련계를 맺고 주물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조직형태이다.

국가는 주물품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그 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도록 한다.

제4조(물질기술적토대의 강화원칙)

국가는 주물품생산기업소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5조(주물품생산기업소의 설정)

국가는 주물품의 협동생산을 위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한다.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주물품생산기업소설정의 기준)

내각은 주물품에 대한 지역별, 품종별수요와 수송조건, 설비의 현대화수준 같은것을 고려하여 주물품생산기업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주물품생산을 할수 없다.

제7조(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 시달)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주물품의 생산능력과 수요같은것을 타산하여 협동생산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주물품생산의 의뢰)

주물품생산을 의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에 기

술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주물품의 품종, 규격, 질량, 수량 같은것을 밝히고 필요에 따라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접수한 기술합의신청서를 검토하고 발견된 결함을 퇴치하여 다시 제기하게 할수 있다.

의뢰받은 주물품을 생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주물품생산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은 국가계획에 기초하여 맺는다.

제11조(주물품의 생산조직)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협동생산계약이 맺어지는데 따라 주물품생산조직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물품생산장비의 보장)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장비생산기지를 꾸리고 필요한 장비를 제때에 생산리용하여야 한다.

주물품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장비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제13조(주물품의 생산)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의뢰받은 주물품을 정한 기간에 생산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주물품을 출하할수 없다.

제14조(설비와 장비, 자재, 제품관리)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설비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설비를 부단히 갱신하여야 한다.

장비, 자재와 주물품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관리하며 생산한 주물품을 제때에 판매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선진주조방법의 도입)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선진주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생산능률과 주물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전력소비기준의 준수 의무)

주물품생산기업소는 주물품t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17조(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기관)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18조(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원료,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 전력의 보장)

교통운수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와 주물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질 좋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의 양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주물품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종업원의 기술기능제고)

주물품생산기업소는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

양성한 기능공을 고착시켜야 한다.

제22조(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주물품협동생산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물품의 질과 수요를 보장하며 협동생산을 강화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3조(생산의 중지)

로동위생환경 또는 주물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24조(벌금, 몰수)

승인없이 주물설비를 가지고있거나 주물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제25조(손해보상)

주물품협동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전력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원료, 자재, 주물품을 제때에 수송하지 못하였거나 주물품협동생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여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6조(분쟁해결)

주물품협동생산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2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주물품협동생산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

주체 82(1993)년 4월 8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 14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3호로 수정
주체 93(2004)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868호로 수정
주체 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01호로 수정
주체 96(2007)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227호로 수정
주체 98(2009)년 7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7호로 수정

제1장 지하자원법의 기본

제1조(지하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자원법은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지하자원의 분류와 소유권)

지하자원에는 금속, 비금속, 가연성광물자원과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지하자원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지하자원탐사원칙)

지하자원탐사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자원탐사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지하자원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지하자원개발원칙)

지하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자원개발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며 지하자원개발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지하자원의 효과적, 합리적리용원칙)

지하자원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지하자원리용질서를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하자원을 효과있게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지하자원의 균중적보호원칙)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지하자원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지하자원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원칙)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에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8조(지하자원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지하자원탐사

제9조(지하자원탐사의 기본요구)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우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기본담보이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채취공업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자원탐사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지하자원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지하자원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지하자원탐사계획을 고쳐야 한다.

제11조(탐사의 분류)

지하자원탐사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로 나누어 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현행탐사와 전망탐사를 바로하여 탄광, 광산의 확보매장량을 늘이고 개발후보지를 마련하며 탐사지역의 지하자원을 종합적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자원탐사설계)

지하자원탐사설계는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헛탐사와 반복탐사를 없애고 지하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탐사설계는 정한데 따라 해당 상급기관의 합의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설계에 의한 지하자원의 탐사)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지하자원탐사를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4조(탐사속도와 효률의 제고)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 우리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지하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정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거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자원매장량의 계산과 심의)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계산된 지하자원매장량의 심의는 해당 중앙기관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한다.

제17조(지하자원매장량의 등록)

심의승인된 지하자원매장량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등록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자원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8조(지하자원매장량의 실사)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자원개발

제19조(지하자원개발의 기본요구)

지하자원개발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취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을 다양화하며 굴진을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개발의 승인)

지하자원개발승인은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신청서를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개발목적과 규모, 매장량, 품위 같은것을 따져보고 개발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자원개발의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서가 없이는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제21조(토지리용허가와 위치지정)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지하자원개발승인서에 지적된 산림토지, 농업토지를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보장하며 그 위치지정을 해주어야 한다.

지하자원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이용허가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제22조(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 승인)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설계기관과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를 높은 채취률과 생산능률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승인은 해당 상급기관과 건설지도기관이 한다.

제23조(설계에 의한 지하자원개발)

지하자원개발은 지하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24조(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세우는 사업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채취률, 선광거듭률계획 같은 지하자원개발기술지표계획을 바로세워야 한다.

제25조(채굴의 합리적조직)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채굴기준과 지하자원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광체를 다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켈수 없는 지하자원의 등록)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켈수 없는 지하자원과 채굴장에 남아있는 지하자원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27조(폐광, 폐갱)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 할 경우 갱을 리용하여 할수 있는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작업을 하고 갱과 채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탄광, 광산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시킬수 없다.

제28조(사고, 자연피해의 방지)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제29조(지하자원매장량의 변동정형등록)

지하자원개발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과정에 지하자원매장량이 변동되는 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승인없이 등록된 지하자원매장량을 삭감할수 없다.

제30조(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의 개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지열, 지하수, 광천자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31조(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지하자원개발에전구역에서 건설합의)

지하자원개발을 예견하는 구역에 넓은 부지를 차지하는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하자원의 탐사와 채굴, 건설작업 같은것을 하는 과정에 새로운 종류의 지하자원과 특이한 지질현상, 희귀한 광물, 화석 같은것을 발견할 경우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지하자원리용

제34조(지하자원의 리용률제고)

지하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원료, 연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개별적공민은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을 채취하거나 제련, 제철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5조(지하자원관리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 광석, 정광, 원유 같은 광물자원이 허실되지 않도록 신고부리는 시설과 저탄장, 저광사, 창고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한 광물자원은 비법적으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개인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36조(지하자원의 수송도중손실방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보강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수송도중에 광물자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광물자원가공에서 거뭇물기준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광, 제련 같은 광물자원가공공정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정해진 거뭇물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거뭇물기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광물자원의 가공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광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생산기술 공정을 꾸려 그 주성분과 부성분을 회수하여야 한다.

분광, 버력, 미광, 광재안에 있는 유가성분을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하여야 한다.

제39조(대용광물원료, 연료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적거나 아직 찾아내지 못한 광물자원을 대용광물원료와 연료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제40조(지하자원의 수출)

귀금속광석과 그 정광, 석탄 같은 지하자원은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광종개발대상지확인파 주광물의 품위를 합의 받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제41조(광천자원의 효과적리용과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금지)

광천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광천보호구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며 약수와 온천 같은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광천자원관리기관의 합의없이 광천보호구역에서 광물자원을 탐사하거나 폭파 같은 방법으로 개발, 건설작업을 하여 광천자원이 줄어들게 하거나 그 성분함량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2조(지하자원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국가가 지정한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4조(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을 지도하는 기관)

지하자원보호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국가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은 지하자원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하자원을 적극 보호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대한 국가적지원)

국가는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공을 세우며 이 부문 근로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제46조(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7조(지하자원탐사, 개발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부문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제48조(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자원탐사, 개발, 리용정형과 지하자원의 수출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지하자원의 개발과 수출의 중지, 승인취소, 몰수, 벌금)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지하자원개발승인서의 요구를 어긴 경우에는 개발, 수출의 중지, 승인의 취소, 비법적으로 채취한 지하자원과 리용한 설비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0조(손해보상)

지하자원탐사와 채굴을 되는대로 하였거나 거둬들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지하자원매장량장악질서를 어겨 지하자원과 자금을 손실, 랑비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지하자원법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 탄 법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4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석탄법의 기본

제1조(석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석탄공업발전원칙)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석탄탐사원칙)

석탄탐사는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탄광개발원칙)

탄광개발을 다그치는것은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한다.

제5조(석탄생산원칙)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6조(석탄공급, 리용원칙)

석탄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석탄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석탄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석탄자원보호, 탄광지원)

석탄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탄광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석탄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석탄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석탄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과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석탄탐사

제10조(석탄탐사선행)

석탄탐사를 선행시키는것은 석탄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탐사를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앞서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탐사계획의 작성)

석탄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석탄탐사의 분류)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제13조(석탄탐사설계)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사과정에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탐사설계를 고치고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설계에 의한 석탄탐사)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승인된 설계대로 석탄탐사를 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5조(탐사속도와 효율제고)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탐사속도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석탄매장량의 계산)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석탄매장량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석탄매장량계산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가 한다.

제17조(계산된 석탄매장량의 심의)

계산된 석탄매장량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현행탐사, 전망탐사에 의하여 조사한 석탄매장량계산자료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8조(석탄매장량의 등록)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심의승인된 석탄매장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석탄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탄광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9조(석탄매장량의 실사)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석탄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탄광개발

제20조(계획적인 탄광개발)

탄광개발은 석탄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탄광개발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탄광개발신청)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어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탄광개발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개발위치,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을 밝힌다.

제22조(탄광개발신청절차)

탄광개발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규모탄광개발신청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직접 한다.

2. 중소규모관광개발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관광관리기관,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한다. 중소규모관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관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관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한다.

제23조(관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는 관광개발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관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관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관광개발승인문건에는 관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관광개발구역, 관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관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관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관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24조(관광개발승인의 등록)

관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해당 기관에 관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규모관광개발승인등록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중소규모관광개발승인등록은 지구중소관광관리기관과 지하자원감독기관에 한다.

제25조(관광개발승인변경신청)

관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관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관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을 만들어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6조(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관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광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해주지 않는다.

제27조(관광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관광개발을 할수 없다.

1. 중요공업지구와 도시지구, 도시상수도수원구역
2. 철도, 중요도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3. 중요강하천, 언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4.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5. 그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제28조(중소규모관광의 개발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관광만을 개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둘이상의 중소규모관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탄광의 개발전망구역과 현행채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구역에서는 중소규모 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제29조(탄광개발계획의 작성)

탄광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탐사자료와 탄광개발승인문건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30조(탄광개발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기술과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광개발기술과제에는 개발위치와 립지조건, 개발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원료, 연료, 동력의 소요량, 공사비, 개발기간,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탄광개발기술과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탄광설계기관이 한다.

탄광설계기관은 탄광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설계의 요구준수)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탄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에서는 탄층의 놓임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3조(준공검사)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제34조(중소규모탄광후보지의 지정)

승인된 중소규모탄광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탄광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중소규모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대규모탄광은 중소규모탄광에 갱을 임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5조(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정에서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탄광개발구역에서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전망구역에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탄광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석탄생산

제37조(석탄중산)

석탄생산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캐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굴진과 박토를 석탄생산에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제38조(석탄생산계획의 작성)

석탄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석탄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굴진선행)

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굴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굴진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제40조(채굴의 합리적조직)

탄광은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석탄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석탄을 모두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채굴좌표경계선의 준수)

탄광은 승인된 채굴좌표경계선안에서 채굴작업을 하여야 한다.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잔주를 마음대로 채굴할수 없다.

제42조(캘수 없는 석탄장악)

탄광은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석탄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43조(석탄운반)

탄광은 운반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만가동시켜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44조(선탄)

탄광은 현대적인 선탄시설을 갖추고 캐낸 석탄에 대한 선별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석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탄과정에 나온 버력은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품질검사)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석탄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설비관리 및 보장)

탄광은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탄광설비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탄광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에 계획대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7조(사고와 자연피해방지)

탄광은 석탄생산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조명, 통풍 같은것을 보장할수 있는 로동위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8조(로동보호용구의 보장)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부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용구가 없이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제49조(폐광, 폐갱)

탄광을 폐광하거나 갱을 폐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제50조(석탄공급계획의 작성)

석탄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1조(석탄공급계약체결과 리행)

석탄은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계획에 따라 석탄공급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제52조(석탄계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석탄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53조(품위와 규격에 맞는 석탄공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의 공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을 계획대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공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제55조(석탄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석탄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6조(석탄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탄장,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석탄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7조(석탄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석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8조(석탄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9조(저열탄, 연재탄의 리용)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저열탄, 연재탄을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열탄, 연재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60조(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의 리용)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쓰거나 주민연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석탄건류, 액화, 가스화)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건류, 액화, 가스화하여 그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2조(석탄수출의 금지)

석탄은 수출할수 없다.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석탄공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4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석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석탄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석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6조(탄부들의 생활조건보장)

탄부는 석탄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 탄광은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7조(탄광보호)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여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탄광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탄광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8조(탄광경영방법의 개선, 종업원에 대한 교양)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탄광경영방법을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탄광은 종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에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석탄사업실태보고)

탄광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 석탄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탄광개발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4. 탄광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탄광개발을 합동하였을 경우

제72조(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 및 석탄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광을 개발할 경우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탄광을 개발할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할 경우
4. 승인없이 탄광개발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5.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는 경우
7.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경우

제73조(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4조(손해보상)

석탄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5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3. 석탄탐사, 채굴을 무책임하게 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갯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5. 석탄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계획에 없는 석탄을 공급하였을 경우
7. 선탄 또는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석탄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8.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지 않았거나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0. 탄광개발승인,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탄광을 폐광 또는 갯을 폐갱시켰을 경우
12. 석탄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낭비하였을 경우
13. 석탄을 수출하였을 경우
14. 다량의 석탄을 개인에게 넘겨주어 상적행위에 리용하도록 하였을 경우
15. 탄광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16.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7. 그밖에 이 법을 어겨 석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76조(형사적책임)

제7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교통운수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짐수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

주체76(198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37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1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철도법의 기본

제1조(철도의 지위와 사명)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

제2조(철도에 대한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철도는 중요산업국유화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철도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수송은 사회주의확대재생산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생산과 수송의 균형을 바로잡으며 생산에 앞서 수송능력을 미리 조성하는 원칙에서 철도운수를 발전시킨다.

제4조(철도건설원칙)

철도를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지역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다 같이 발전시키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5조(철도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은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중심과업이다.

국가는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철도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6조(철도운영의 정규화원칙)

철도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국가는 철도에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철도운영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7조(늘어나는 수송수요의 보장원칙)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생산의 정상화와 끊임없는 장성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철도수송에서 문화성, 봉사성제고원칙)

철도수송은 사회와 전체 인민을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철도를 알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며 철도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철도보호원칙)

철도를 전군중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수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도를 힘있게 지원하며 철도를 보호관리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10조(철도운수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철도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철도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12조(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철도운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운수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철도운수수단과 장비를 중량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의 전기화)

철도전기화는 우리 나라 철도운수발전의 기본방향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철도전기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철도에 전력을 단독선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질 좋은 전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차량, 레루, 침목, 고착품의 생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차량, 레루,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관차와 전동열차, 증량화차, 객차, 증량레루, 콘크리트침목, 철길고착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철길의 강도보장, 철도역구내선확장)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의 증량화, 현대 화요구에 맞게 철다리를 비롯한 철길구조물을 보강하고 증량레루, 콘크리트침목을 받아들여 철길의 강도를 높이며 철도역구내선을 늘여야 한다.

제16조(새 철길건설, 철도망완비)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증량화, 현대화된 새 철길을 전망적으로 건설하며 통과능력이 긴장한 구간에 복선과 우회선, 련결선을 놓아 나라의 철도망을 완비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철길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철도역구내와 구간의 자동화)

철도운수기관은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술수단을 널리 받아들여 철도역구내와 구간을 자동화하며 철도사령지휘체계를 무선화, 텔레비존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제18조(화물역과 전용선)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수송능력이 늘어나는데 따라 화물역과 전용선에 화물을 싣고부리거나 보관하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차에 손상을 줄수 있는 설비와 시설은 화물역과 전용선에 설치할수 없다.

제19조(철도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증량화, 현대화와 운영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를 다른 부문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사, 기관조사, 수리공, 철길원을 비롯한 철도종업원들을 철도부문사업과 인연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장 열차운행

제20조(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

철도에서 열차운행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철도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열차운행조직과 지휘에서 유일적인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철도운행을 정규화하여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본선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21조(열차다님표)

철도운수기관은 열차다님표를 정확히 만들고 모든 열차를 다님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열차다님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제22조(렬차편성계획)

철도운수기관은 렬차편성계획에 따라 렬차를 편성하여야 한다.
렬차편성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23조(화차교류과제)

철도운수기관은 화차교류과제를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운용화차는 보유기준보다 더 가지고있을수 없다.

제24조(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만이 운영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기관차의 견인중량과 달림거리를 늘이고 정해진 화차회귀일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다른 나라의 차량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리용한 차량을 정해진 기간안에 돌려보내야 한다.

제25조(렬차지휘와 운전취급)

철도일군은 렬차지휘와 운전취급에서 규정과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렬차지휘와 운전취급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철도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26조(차량의 장악등록과 예비조성 및 동원)

철도운수기관은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장악등록하며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수송에 필요한 기관차와 화차, 객차의 예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가적인 긴급화물수송시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의 전용차량을 동원시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운수기관이 요구하는 전용차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철도역)

철도역은 수송을 직접 맡아 수행하는 기층단위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사업을 강화하여 렬차운전취급과 려객 및 화물수송에서 철도역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철도화물수송

제28조(철도화물수송의 기본요구)

철도화물수송은 철도운수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철도운수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제29조(철도화물수송계획과 계약)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사이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철도화물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30조(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국가계획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역수송, 반복수송, 빈물동수송을 비롯한 불합리한 수송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집중수송)

철도운수기관은 큰 공장, 기업소나 일정한 지역에 실어나를 많은 량의 화물은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중수송의 요구에 맞게 계약된 물자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집합수송)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집합생산을 늘여 수송도중에 허실될수 있는 화물, 포장재가 많이 들거나 신고부리기 힘든 화물은 집합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빈 집합은 제때에 임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제33조(련대수송)

국가계획기관과 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련대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조직은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철도화물의 분류와 포장)

철도화물은 차판짐, 적은짐, 잔짐, 손짐으로 나누어 수송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송하려는 화물을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규격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은 수송할수 없다.

제35조(철도화물의 실기)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화차의 적재정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섬유, 쇠밥, 벼짚을 비롯하여 압착할수 있는 부피가 크거나 가벼운 화물은 압착하여 실어야 한다.

제36조(특수화물의 수송)

방사성물질, 폭발성물질을 비롯하여 특수한 수송조건을 요구하는 화물의 수송은 따로 정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37조(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분담)

철도역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그러나 차판짐을 신고부리는 로력이 없는 철도역과 전용선, 전용장소에서 화물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짐임자가 한다.

제38조(화물의 신고부리기, 화차머무름시간)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물을 제때에 신고부려야 한다.

화물을 신고부린 화차는 정해진 시간안에 철도역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의 화차머무름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39조(화물의 넘겨주고 받기)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물수송을 맡긴 기간에 생긴 손해의 보상을 철도운수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제40조(화물관리)

철도운수기관은 화물관리와 반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임자를 모르거나 보관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화물은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제41조(철도운임과 요금)

다른 나라 화차 또는 련운화차를 리용하거나 화물수송을 맡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하는 운임과 요금을 물어야 한다.

철도운임과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철도려객수송

제42조(철도려객수송의 기본요구)

철도려객수송은 손님들의 련행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봉사활동이다.

철도운수기관은 련행하는 손님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여 그들의 안전하고 문화적인 련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려객렬차의 조직)

철도운수기관은 손님들의 련행에 편리하게 련객렬차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한 구간에는 통근렬차, 통학렬차, 관광렬차, 림시려객렬차를 조직할수 있다.

제44조(철도역과 객차의 봉사시설)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역과 객차안에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갖추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손님들에 대한 안내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조명, 급수, 난방이 보장되지 않는 객차는 운영할수 없다.

제45조(차표판매)

철도운수기관은 객차정원수에 맞게 차표를 팔아야 한다.

단체려행을 조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철도에서 상업봉사)

철도운수기관은 련차식당을 잘 운영하며 련차안에서 손님들에게 청량음료를 비롯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은 철차상업에 필요한 식료품원자재를 생산공급하며 철도역구내에서 손님들에게 과일을 비롯한 지방특산물을 늘 팔아주어야 한다.

제47조(려행도중에 생긴 환자치료)

철도운수기관은 렬행도중에 생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과 렬차에 탄 보건일군은 철도운수기관의 요구에 따라 렬행도중에 생긴 환자의 치료에 동원되어야 한다.

제48조(철도려행, 렬객렬차리용질서의 준수)

공민은 철도려행질서와 렬객렬차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가 없거나 손님들의 렬행과 차안의 질서유지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을 가지고 객차에 오를수 없다.

제6장 철도보호

제49조(철도보호의무)

철도를 보호하는것은 렬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철도운수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를 아끼고 사랑하며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50조(철도보호구역)

철길과 철도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보호구역을 정한다.

철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1조(철도보호구역의 관리)

철도보호구역안에서 논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는것을 비롯하여 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에는 나무를 심으며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관리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를 리용할수 없다.

제52조(철도시설물의 보호)

철도운수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철길뚝, 철다리, 차굴주변의 강기슭, 산비탈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옹벽공사와 사태막이공사, 물빼기공사를 하여 자연피해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요철길구간에는 보호란간, 보호철망 같은것을 설치하며 철다리밑으로 도로가 지나간 곳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전기삭음피해방지)

철도운수기관은 철도전기화구간에 대한 전기절연대책을 세우며 철도시설물의 전기삭음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54조(전용선건설, 보수)

전용선은 철도본선에서 직접 끌수 없으며 철도역의 측선에서 끌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는 전용선을 놓거나 고치거나 철거하려 할 경우 철도운수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전용선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는 차량과 철길을 비롯한 철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전용선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감독통제는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55조(철길통행금지)

주민은 철길로 다니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도로관리기관, 철도운수기관은 철길전능길을 만들 경우 사이거리가 2km이상 보장되게 하며 철길전능길에 립체다리나 지하전능길을 건설하여야 한다.

립체다리나 지하전능길을 건설할수 없는 철길전능길에는 감시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제56조(철도역과 철길주변관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역과 철도시설물을 잘 꾸리고 그 주변관리를 위생문화적으로 하며 철도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기본철길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양묘장으로 리용하며 사름를 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철길과 잇닿아있는 산들의 부대기발, 무림록지들에는 나무를 심어 수림화하여야 한다.

기본철길로부터 정한 거리안에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짓지 말며 이미 있는것은 옮겨야 한다.

제57조(철도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철도표식물, 신호통신시설, 봉사시설과 전기철도급전시설을 손상, 파괴하거나 철도운수기관의 승인없이 거기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전차선로, 신호통신선로우로 고압선을 늘일 경우에는 규정된 높이를 보장하고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8조(차량관리)

철도운수기관은 차량에 대한 보수정비를 계획적으로 하여 차량의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차량의 구조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9조(철길의 점검, 보수)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구간을 정하고 렬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길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철길특주변에는 왜싸리나 잔디 같은것을 심어 철길특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며 언제나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짐함과 수송비품관리)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짐함과 수송비품을 잘 관리하며 그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짐함과 수송비품은 다른 용도에 쓸수 없다.

제61조(철도보호에 대한 교양)

철도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서 철도를 애호하며 철도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2조(자연재해시 철도복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 같은 일로 철도복구작업이 제기될 경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제7장 제 재

제63조(원상복구와 손해보상)

차량과 철도시설물을 손상, 파괴하였거나 화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4조(벌금과 렬차에서 내리우기)

철도려행질서와 렬차리용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철도수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렬차에서 내리울수 있다.

제65조(체차료와 위약금, 화차리용의 중지)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하였거나 화물수송계약과 철도에 대한 자재공급계약을 리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체차료 또는 위약금을 물리거나 화차의 리용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6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철도운영과 보호관리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6호로 채택

제1장 철도차량법의 기본

제1조(철도차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차량법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철도차량의 정의와 구분)

철도차량은 철도를 리용하여 려객이나 짐을 실어나르는 른전기재이다.

철도차량에는 기관차, 객차, 화차 같은것이 속한다.

철도차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철도차량의 생산원칙)

철도차량의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은 철도수송능력을 부단히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생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철도차량생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현대적인 철도차량을 수요에 맞게 생산하도록 한다.

제4조(철도차량의 등록원칙)

철도차량의 등록은 철도차량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철도차량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한다.

제5조(철도차량의 관리운영원칙)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을 잘하는것은 철도차량의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철도차량의 관리운영에서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6조(철도차량의 보호원칙)

철도차량을 적극 보호하는것은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철도차량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7조(철도차량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철도차량을 현대화하고 그 관리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철도차량기술일군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철도차량의 생산

제9조(철도차량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철도차량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10조(철도차량생산단위)

철도차량의 생산은 전문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에서 한다.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차량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와 객차, 화차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철도차량의 중량화, 고속도화실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원만히 풀며 선진기술을 제때에 생산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12조(객차의 안전성과 문화성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여행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객차를 생산하여야 한다.

객차에는 달림장치, 련결완충장치, 제동장치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차내조명과 급수, 난방, 탕풍장치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13조(화차생산)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특성이 서로 다른 품종의 화물을 원만히 실어나를수 있게 무개차, 유개차, 세멘트차, 유조차 같은 화차를 종류별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14조(철도차량생산의 질보장)

철도차량생산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생산에서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생산되는 철도차량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철도차량의 수입)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으며 성능이 좋은 철도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철도차량의 시운전)

새로 생산 또는 수입하였거나 수리한 철도차량은 시운전을 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만 운영할수 있다.

해당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철도차량의 표식)

철도차량에는 정해진 규격의 철도표식을 하고 번호를 달아야 한다.

철도차량표식의 규격과 번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철도차량의 부분품, 부속품생산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과 부속품을 지표별로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철도차량의 등록

제19조(철도차량의 등록기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제20조(철도차량등록의 종류)

철도차량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 등록은 철도차량을 새로 생산하였거나 수입하였을 경우에, 이동등록은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철도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을 경우에, 변경등록은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것을 달리하였을 경우에 한다.

제21조(철도차량의 등록신청)

철도차량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철도차량관리기관은 철도차량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철도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철도차량의 이동등록 및 변경등록)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미 등록된 철도차량을 이관받았거나 소속 또는 명칭이 달라졌거나 철도차량의 구조와 용도, 색깔, 번호 같은것을 변경시켰을 경우 제때에 이동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철도차량의 등록증서, 경력서의 발급)

철도차량관리기관은 등록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차량등록증서와 철도차량경력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철도차량등록증서는 철도운수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철도차량경력서는 철도차량에 보관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철도차량등록증서의 재발급)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등록증서 또는 철도차량경력서를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실, 오손리유를 밝힌 재발급신청서를 철도차량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철도차량의 실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등록하지 않은 차량, 못쓰게 된 차량 같은것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실사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4장 철도차량의 관리운영

제26조(철도차량의 관리체계수립)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철도차량을 언제나 만가동할수 있게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철도차량의 기술검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데 따라 철도차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은 운영할수 없다.

철도차량의 기술검사절차와 방법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8조(철도차량의 기술검사종류)

철도차량의 기술검사는 첫 기술검사, 이관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폐기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지정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 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첫 등록하였을 경우에, 이관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이관받았을 경우에, 변경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변경등록하였을 경우에, 폐기기술검사는 철도차량을 폐기하려 할 경우에, 정기기술검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철도차량을 수리하였을 경우에, 지정기술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제29조(철도차량의 운영)

철도차량은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따라 운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30조(철도차량의 리용)

철도차량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계획에 따라 철도운수기관과 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철도차량을 배정할수 없다.

철도차량리용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에 해당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1조(다른 나라 철도차량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철도차량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은 정해진 기일안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철도차량의 무사고운행보장)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에 대한 정비를 정상적으로 하고 표준조작법대로 운영하여 언제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당한 리유로 짐실은 철도차량을 지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철도차량의 인계인수)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을 인계인수할 경우 그 기술상태와 정비상태, 부속품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4조(철도차량의 수리)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장난 철도차량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 운영수리, 임시수리로 나누어 진행한다.

철도차량의 수리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35조(철도차량수리의 질보장)

철도차량을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상 요구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철도차량을 질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제36조(철도차량의 구조변경 및 이관)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려 할 경우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을 넘겨줄 경우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

제37조(철도차량의 폐기)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수 없게 된 철도차량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수 있다.

철도차량의 폐기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5장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철도차량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차량의 생산과 관리운영을 위하여 돌려진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0조(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철도차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철도차량의 생산과 등록,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철도차량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철도차량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철도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3.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불합격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고 제마음대로 철도차량을 운영하여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철도차량관리를 잘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
6. 부당한 이유로 철도차량을 지체시켜 경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철도차량의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다른 나라의 철도차량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아 대외적권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9. 승인없이 철도차량의 구조를 고치였거나 철도차량을 다른 기관, 기업소에 넘겨 주었거나 폐기시켰을 경우
10. 철도차량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훔쳤거나 파손시켰거나 그것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

주체86(1997)년 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장 자동차운수법의 기본

제1조(자동차운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동차운수법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자동차운수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자동차운수는 교통운수의 기본부문의 하나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고리이다.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동차운수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자동차운행의 정규화원칙)

자동차운행에서 규율은 생명이다.

국가는 자동차운행에 대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며 자동차운행을 정규화하도록 한다.

제4조(자동차운행의 집중수송원칙)

자동차집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집중수송, 집합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고 여러가지 앞선 수송방법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의한 집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자동차의 려객수송원칙)

자동차려객수송은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봉사사업이다.

국가는 자동차려객수송조직을 개선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려객수송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자동차의 기술정비원칙)

자동차관리를 잘하는것은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자동차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자동차의 기술정비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7조(자동차의 관리원칙)

자동차는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운전사들과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자동차운수부분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자동차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기술인재와 운전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자동차운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자동차운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자동차운행

제10조(자동차의 무사고운행)

자동차운행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자동차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행조직과 지휘를 바로하고 운전사의 책임성을 높여 자동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동차다님표)

자동차운수기업소는 자동차운행조직을 다님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님표는 자동차운수기업소에서 만들어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불필요한 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자동차의 불필요한 운행을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운전수와 운행문건)

자동차운전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격을 가진 운전사만이 한다.

자동차운행지령을 받은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기술검사증, 운행증과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자동차의 운행속도)

자동차운전사는 제정된 도로를 따라 규정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를 세우지 못하게 된 장소에서 짐을 싣고 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내리올 수 없다.

제15조(운행중 사고방지)

자동차운전사는 운행중 사고위험이 나타나면 자동차운행을 중지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며 먼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중점검을 하여야 한다.

도중점검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6조(표준운전조작법, 교통안전질서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표준운전조작법과 교통안전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운행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를 계획적으로 포장하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건설을 전망성있게 하며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운행의 신속성,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집수송

제18조(자동차집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집수송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짐을 실어나르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19조(자동차집수송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수송수요와 수송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자동차집수송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20조(자동차집수송계약)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계획에 근거하여 수송계약을 제때에 맺고 그것을 리행하여야 한다.

짐수송계약은 연간, 분기별, 월별로 맺는다.

제21조(불합리한 수송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어날라야 할 짐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여 역수송, 반복수송, 한쪽거리수송 같은 불합리한 수송을 없애야 한다.

제22조(먼거리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에 따라 먼거리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짐의 종류와 특성, 수송조건에 따라 전문수송, 봉사수송, 기동수송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집중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많은 량의 짐을 짧은 기간에 실어날라야 할 경우 집중수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련대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련대짐수송계획에 따르는 수송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련대짐수송은 수송의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제26조 (집합수송)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집합을 널리 리용하여 짐수송의 문화성을 보장하며 수송도중 짐의 허실, 파손을 막아야 한다.

집합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집합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련결차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련결차의 리용률을 높여 더 많은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련결차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와 운행조건에 맞게 달아야 한다.

제28조 (빈차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차운행을 없애며 자동차의 적재정량대로 짐을 싣고 다녀야 한다.

부득이 빈차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동차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짐포장과 싣고 부리는 작업의 기계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은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제정된 규격대로 포장하며 싣고 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자동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30조 (짐의 호송)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의 자동차로 짐을 실어나르는 경우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와 합의하고 호송원을 붙이지 않을수 있다.

제31조 (운송점)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중요주민지구에 운송점을 내오고 주민들의 짐을 수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송점을 리용할수 없다.

제4장 자동차려객수송

제32조 (자동차려객수송의 기본요구)

자동차려객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출퇴근과 려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려객수송에서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여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려객수송의 분류)

자동차려객수송은 려객수송형태에 따라 도시려객수송, 고속도로려객수송, 농촌려객수송 같은것으로 나누어 한다.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제정된 운행로선에서 버스운행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운행로선과 정류소)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판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판과 해당 기관은 버스운행로선과 정류소를 인민들의 교통에 편리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35조(택시, 단체려객수송)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보장하며 답사, 관광, 견학 같은것이 제기되는 경우 단체려객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단체려객수송을 보장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에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출퇴근보장)

자동차운수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가지고있는 버스를 근로자들의 출퇴근보장에 동원시킬수 있다.

출퇴근보장에 동원된 버스는 정해진 로선에서만 운행할수 있다.

제37조(빈버스운행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빈버스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빈버스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태워야 한다.

제38조(농촌버스의 운영)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농촌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농촌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39조(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

지방정권기관과 자동차운수기관, 기업소는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버스정류소, 손님기다림칸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버스리용질서의 준수)

공민은 버스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지정된 차표를 내지 않거나 손님들의 려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집을 가지고 버스에 오를수 없다.

제5장 자동차관리

제41조(자동차관리의 기본요구)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관리를 잘하여 자동차의 실동률을 높여야 한다.

제42조(자동차의 등록, 기술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등록하고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등록과 기술검사는 자동차감독기관이 한다.

제43조(차고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보관관리할수 있는 차고를 건설하여야 한다.

차고에는 자동차보관관리에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44조(자동차의 기술상태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기술상태에 대한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량한 자동차는 운행시킬수 없다.

제45조(자검자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운전사를 고착시키고 자검자수를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에는 자검자수에 필요한 공구, 예비부속품 같은것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

제46조(자동차의 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자동차수리정비소 같은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주기에 따라 자동차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47조(수리의 질과 기일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수리에서 분해, 가공, 조립, 시험, 검사 같은 공정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지켜 수리의 질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자동차의 구조개조 및 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자동차의 구조를 고치거나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부속품, 부분품을 떼내거나 바꿀수 없다.

제49조(자동차의 폐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동차의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쓸수 없게 되어 폐기하려 할 경우 자동차감독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수부문의 계획화사업, 수송조직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연유의 절약)

자동차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소비기준을 낮추며 대용연료를 적극 도입하고 연유를 절약하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벌려야 한다.

제52조(자동차운수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부속품, 다이야생산기지를 꾸리며 자동차운수 부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유, 부속품, 다이야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동차운행과 수송,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억류, 회수)

승인없이 자동차를 바꾸었거나 빌려주었거나 또는 교통안전질서를 지키지 않았거나 자동차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억류하거나 회수할수 있다.

제55조(손해보상)

수송계약규률을 어겼거나 자동차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자동차운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

주체96(2007)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6호로 채택

제1장 지하철도법의 기본

제1조(지하철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하철도법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지하철도운수의 발전원칙)

지하철도는 도시의 려객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지하교통운수수단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지하철도운수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지하철도의 건설원칙)

지하철도건설을 바로하는것은 도시의 교통망을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현대적으로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지하철도의 관리원칙)

지하철도관리는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를 과학기술적으로 문화성있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5조(지하철도의 운영원칙)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철도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6조(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지하철도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지하철도의 건설

제8조(지하철도건설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건설은 도시의 려객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를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는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도시의 상태, 도시발전전망계획과 그에 따르는 려객흐름량, 건설지대의 지질학적, 수문학적조건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

지하철도건설계획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도시건설총계획과 지하철도건설설계에 기초하여 지하철도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

지하철도건설설계의 작성은 지하철도설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설계기관은 지하철도건설을 위한 조사자료와 려객수송능력, 환경보호의 요구 같은것을 고려하여 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하철도건설의 담당자)

지하철도건설은 지하철도전문건설기관이 한다.

지하역의 벽화와 조각장식 같은것은 해당 전문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13조(설계의 요구, 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지하철도건설기관은 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와 기술규정, 표준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4조(로동재해의 근절)

지하철도건설기관은 로동안전시설을 정한대로 갖추며 로동재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건설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철도건설작업의 기계화)

지하철도건설기관은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건설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철도구조물의 건설)

지하철도에는 차굴, 역사, 공기갈이굴, 계단승강기굴, 위생기술설비실, 변전소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필요에 따라 차고, 검차소 같은것도 지하에 건설할수 있다.

제17조(지하철도역건설)

지하철도역은 도시령역에서 러객들이 많이 집중되는 지점에 지상교통운수수단과의 맞물림을 고려하여 건설한다.

계단승강기궤은 두개 또는 한개 건설할수 있다.

제18조(지하철도설비의 설치)

지하철도에는 운영을 위한 계단승강기, 신호, 전력, 통신, 조명, 위생기술설비 같은것을 설치한다.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설비는 설치할수 없다.

제19조(준공검사)

지하철도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지하철도는 지하철도운영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문건 같은것을 함께 넘겨준다.

제3장 지하철도의 관리

제20조(지하철도관리의 기본요구)

지하철도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지하철도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관리를 정확히 분담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정기검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지하철도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새로 받았거나 수리한 지하철도설비는 시운전에서 합격되어야 운영할수 있다.

제22조(기술정비)

지하철도설비의 기술정비는 주기에 따라 한다.

기술정비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지하철도운영기관이 한다.

제23조(집중정비)

지하철도설비의 집중정비는 월에 1차 한다.

설비집중정비날에는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제24조(수리)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지하철도설비를 계획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는 대수리, 중수리, 소수리로 나누어 한다.

제25조(수리의 결과 기일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과 지하철도설비의 수리를 의뢰받은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수리공정을 정확히 지키며 수리의 결과 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구조물의 보수)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를 바로하여 지하철도의 문화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소보수로 나눈다.

대보수기간에는 해당 지하철도역을 운영하지 않는다.

제27조(렬차와 지하철도역의 관리)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차와 지하철도역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깨끗이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28조(공기갈이굴보호구역)

국가는 지하철도의 공기갈이굴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한다.

공기갈이굴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9조(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공기갈이굴보호구역에 들어가거나 보호구역에서 공기갈이와 굴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보장)

지하철도근무성원은 공기갈이굴을 보수하거나 지하철도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기갈이굴의 보수 또는 설비의 정비를 위한 지하철도근무성원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균중적인 지하철도의 보호)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지하철도를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지하철도의 설비와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지하철도의 운영

제32조(지하철도운영의 기본요구)

지하철도운영에서 규률은 생명이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유일한 사령지휘체계를 세우고 렬차의 무사고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렬차운행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차운행표를 정확히 만들고 렬차를 운행표대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렬차운행표는 마음대로 고치거나 위반할수 없다.

제34조(렬차의 운전)

렬차의 운전은 해당 자격을 가진 기관사만이 한다.

기관사는 렬차운전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조사가 없이는 렬차를 운전할수 없다.

제35조(렬차운행시격의 보장)

렬차사령과 운전지휘원, 기관사는 정한 렬차운행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운전지휘원은 시격계 또는 시격지시기가 고장난 경우 기관사에게 해당 시격을 알려주며 제때에 수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계단승강기의 운영)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계단승강기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렬객류동량이 많은 시간에는 계단승강기를 모두 돌려야 한다.

렬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시간에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공기갈이, 사고방지조치)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공기갈이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지하철도안에 맑고 깨끗한 공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역과 정한 곳에는 소방설비를 갖추며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지하철도의 운영시간)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정한 운영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렬객류동량이 특별히 많은 경우에는 정한 운영시간을 더 늘일수 있다.

지하철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9조(지하철도운영의 공시)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운영시간이 변경되었거나 집중정비 또는 대보수로 지하철도를 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때에 지하철도지상역들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봉사성의 제고)

지하철도운영기관은 렬객들에 대한 봉사성을 높이며 그들이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 또는 그밖의 사정으로 지하철도운영을 일시 중지하는 경우 렬객들에게 예견되는 운영시간 같은것을 즉시 알려주며 제때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지하철도근무성원의 요구준수)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렬객은 지하철도근무성원의 근무수행을 방해하지 말며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지하철도리용의 편리보장)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역에 방향표식판, 종합안내판 같은것을 설치하여 렬객들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시간에는 지하역의 위생시설을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43조(차표판매)

지하철도차표는 지하철도의 지상역에서 판다.

지하철도차표판매시간은 지하철도의 운영시간과 같게 정한다.

제44조(차표에 의한 지하철도의 리용)

공민은 지하철도차표를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여야 한다.
돈 또는 버스표 같은것을 내고 지하철도를 리용할수 없다.

제45조(지하철도에서의 금지사항)

공민은 지하철도에서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것 같은 행위를 하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짐을 가지고 지하철도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지하철도역에서의 상업봉사활동)

지하철도운영기관은 지하철도역에서 려객들의 편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상업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8조(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하철도지도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국가적지원과 우대)

국가는 지하철도부문을 적극 도와주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이 부문 근무자들을 특별히 우대한다.

제50조(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하철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전력의 공급)

전력공급기관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필요한 질좋은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시설과 설비에 대한 정상적인 점검보수체계를 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전력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제52조(물의 공급)

도시경영기관은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지하철도운영기관은 급수관정비와 물탱크관리를 바로하여 물을 지하철도의 관리 운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3조(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하철도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지하철도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지휘중지, 자격정지)

지하철도열차운행지휘와 운전지휘 또는 운전조작을 잘못하여 열차운행시격을 심히 어겼거나 설비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여 려객들에게 불편을 준 경우에는 해당 지휘를 중지시키거나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55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지하철도의 설비와 건축물에 손상을 주었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벌금,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내기)

지하철도리용질서를 어겼거나 지하철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지하철도역밖으로 내보낸다.

제5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지하철도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주체89(2000)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19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5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6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6호로 수정보충

제1장 민용항공법의 기본

제1조(민용항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기와 비행장의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령공에 대한 자주권의 행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공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는 승인없이 공화국령공에서 비행할수 없다.

제3조(항공운수의 발전원칙)

항공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늘어나는 항공수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민용항공기의 관리원칙)

항공기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사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민용항공기의 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비행장운영의 과학화원칙)

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사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비행장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6조(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 일군양성원칙)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민용항공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항공보험제의 실시원칙)

국가는 항공사고에 의한 피해와 손해를 제때에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보험제를 실시한다.

제8조(민용항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국제협약의 효력)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항공성원

제10조(항공성원의 의무)

항공성원은 민용항공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항공성원은 승무임무, 지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항공성원의 구분)

항공성원은 승무성원과 지상근무성원으로 나눈다.

승무성원에는 승조장, 비행사, 항법사, 승무기사, 승무무전수, 승무안내원, 승무지도성원이, 지상근무성원에는 비행지휘원, 비행기술정비원, 항공무선통신수, 항공수송조직 및 봉사성원이 속한다.

제12조(항공성원의 자격)

항공성원으로는 항공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항공성원의 자격을 주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13조(항공성원의 소지증서)

항공성원은 해당 자격증, 건강검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격증, 건강검진증의 유효기간을 연기받으려 할 경우에는 자격판정,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제14조(항공기승조의 구분)

항공기의 승조는 승조장과 해당 승무성원으로 구성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의 종류와 운행목적, 해당 조건에 맞게 승조의 구성과 인원수, 비행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승조장의 의무)

승조장은 비행임무수행과 안전, 항공기에 있는 인원과 재산, 화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승조원과 령객은 승조장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제16조(항공기위험시 승조장의 위치)

승조장은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항공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야 한다.

제17조(조난시 승조장의 임무)

승조장은 조난신호를 받았거나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배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항행일지에 기록하고 비행지휘소에 통보하며 가능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승조장의 권한)

승조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승조를 지휘하며 항공기안의 질서를 세운다.
2. 항공기의 출발, 리착륙, 항로비행의 중지, 리륙한 비행장으로의 귀환, 비상착륙에 대한 결심을 한다.
3.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자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울수 있다.

제3장 항공기

제19조(항공기의 구분)

항공기는 민용항공사업의 기본수단이다.

항공기에는 비행기, 직승기, 활공기, 기구 같은것이 속한다.

제20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에는 정해진 국적표식과 등록표식을 한다.

항공기를 등록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21조(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

항공기의 비행유용성검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하고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항공기의 접수)

항공기를 새로 접수하는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기술상태를 담보하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넘겨받아야 한다.

항공기를 대수리하였거나 정해진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3조(무선통신수단의 설치, 리용허가)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이 발급하는 항공기무선국사용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제24조(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문건)

항공회사는 항공기에 항공기등록증명서, 비행유용성증명서, 항행일지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5조(항공기의 운행허가)

항공기의 운행허가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의 국적, 등록표식과 해당 문건의 구비상태, 안전장비 상태와 소음, 방사, 유해물질류출기준이 초과되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비행장

제26조(비행장의 소유권과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비행장은 국가의 소유이다.

민용비행장은 국내비행장과 국제비행장으로 나눈다.

제27조(국제비행장에 설치할 검사, 검역기관)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국제비행장의 운영자료를 항행통보로 공포하여야 한다.

국제비행장에는 통행검사기관, 세관, 검역기관을 설치한다.

제28조(비행장의 등록과 운영허가)

비행장의 등록과 운영허가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의 건물, 시설물, 비행보장수단의 상태를 정확히 검토하고 비행장의 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비행장운영허가증은 제3자에게 빌려줄수 없다.

제29조(비행장의 운영기준)

해당 기관은 비행장을 항공기의 리착륙, 정박을 보장하며 려객, 손짐, 화물, 우편물의 취급, 항공기와 승무원들에 대한 봉사를 원만히 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정해진 기준을 보장하지 못한 비행장은 운영할수 없다.

제30조(비행장구역안의 표식)

해당 기관은 비행장구역안의 건물과 시설물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표식,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표식과 신호장치는 비행장식별표식, 신호장치와 구별되어야 한다.

제31조(비행장주변의 안전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행장주변에 고압송전선, 탑이나 살림집, 목장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비행장주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장 항공기의 운행

제32조(항공기운행의 기본요구)

항공기의 운행은 계획에 따라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지휘와 통보봉사를 정확히 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중구역의 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구역은 공화국의 령토, 령해의 상공과 잇닿은 평양 비행통보구역안의 모든 공중공간을 포괄하는 비행지휘구역이다.

비행지휘구역은 항공로와 항로지점, 비행장구역, 비행훈련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으로 나눈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항공기는 항공교통기관의 비행지휘를 받으며 해당 구역에 따라 정해진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34조 (항공기운행의 승인)

항공기를 운행하려는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5조 (항공기의 비행허가)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허가를 받고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리착륙순서와 시간, 비행방식을 정하는 사업은 비행지휘소가 한다.

제36조 (항공기의 비행)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비행하려 할 경우에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항공기의 국경통과)

항공기는 국경통과지점상공에 도착하기 전에 비행지휘소의 통과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 비행제대고도를 비행지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항공기의 비행방조)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나 항로지점에서 벗어났을 경우 즉시 비행지휘소에 알리고 비행지휘소가 지적하는 항공로나 항로지점, 비행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비행지휘소는 항공기가 승인된 비행계획과 정해진 비행규칙대로 비행하도록 가능한 방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항공기의 통신)

항공기는 비행과정에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정해진 질서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린접국가 또는 해당 비행지휘소들과 비행지휘협동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의 준수의무)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견시비행 또는 계기비행규칙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을 정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6장 항공영업

제41조(항공영업의 구분)

항공영업은 항공운수의 중요분야이다.

항공영업에는 항공운수영업과 항공작업 같은것이 속한다.

제42조(항공운수영업의 허가)

항공운수영업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받은 항공회사가 한다.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의 발급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43조(항공회사의 운영허가증발급)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항공회사는 회사의 운영지도서, 운영제원, 항공기운영을 위한 최소기준, 수송규칙, 요금표 같은 항공회사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신청문건의 검토와 예비검열, 검열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운영제원을 승인하고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한 후에도 해당 항공회사에 대한 검열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4조(다른 나라 항공운수영업의 허가)

정부사이의 협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 할 경우에도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항공수송계약)

항공수송은 항공회사와 려객 또는 짐임자사이에 맺은 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계약에 따라 항공회사는 비행기표, 돈 무는 손집표, 화물부침표 같은것을 발급하며 려객 또는 짐임자는 정해진 요금을 물 의무를 진다.

제46조(항공수송계약리행의 중지)

항공회사는 비행안전담보가 없거나 항공수송이 공화국의 법 또는 출발, 도착하는 나라의 법에 위반되거나 려객의 상태가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해당 수송계약의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제47조(비행기표의 물리기)

려객은 산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안에 물릴수 있다.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물릴 경우에는 해당하는 수수료를 문다.

제48조(운행이 중지, 취소되는 항공기의 화물처리)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화물을 부친자와 받을자에게 알리고 그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9조(화물부침표에 지적할 사항)

항공회사는 화물부침표에 출발지점, 도착지점과 경유지점을 밝혀야 한다.

화물부침표에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50조(부치는 화물의 수속)

화물을 부치는자는 항공회사에 해당 문건을 내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항공회사에 화물을 넘겨준 다음 발송되기 전까지는 화물을 부치는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화물부치는자의 책임)

화물을 부치는자는 화물부침표의 내용대로 신고하며 정해진대로 포장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넘겨주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화물을 부친자가 진다.

제52조(발송한 화물의 처리)

화물을 부친자는 발송한 화물을 넘겨받을자가 없거나 넘겨줄수 없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수 있다.

제53조(받을 화물의 수속)

항공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받을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의 도착에 대하여 통지받은 화물을 받을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항공회사의 책임)

항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려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인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송지연, 취급부주의 같은 사유로 려객이나 손짐,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항공기의 사고 또는 항공기에서 떨어진 물체에 의하여 제3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55조(항공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조건)

항공회사는 사망, 피해, 손해, 사고의 원인이 려객이나 짐임자의 허물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56조(수송도중 화물의 책임)

수송도중 손짐이나 화물의 손상,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고된 범위에서만 진다.

짐임자는 손짐이나 화물의 수량 또는 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위험화물의 수송)

항공회사는 위험화물을 정확히 분류하고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화물수송과 관련한 국제민용항공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8조(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계약)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을 위한 계약을 맺을수 있다.

항공기의 임대계약, 전용계약, 호상교환계약은 국제민용항공협약 해당 조항의 요구에 맞아야 한다.

제59조(항공기의 려용계약)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회사와 항공작업계약 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고 농업, 건설, 립업, 수산, 탐사부문의 작업과 촬영, 과학연구, 체육문화활동, 의료방조,

조난구조 같은데 항공기를 리용할수 있다.

조난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구조작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항공작업계약)

항공회사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작업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작업대상과 량, 작업구역, 항공작업에 리용할 비행장 또는 착륙장, 해당 설비의 리용절차, 요금지불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1조(계약의 리행의무)

항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작업을 끝내며 작업의 질, 작업과정에 제3자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공작업을 주문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62조(항공작업의 지휘)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작업조직과 진행, 항공기의 리용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여 작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항공작업이나 항공기의 리용과정에 환경, 농작물, 집짐승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63조(손해보상청구)

항공영업과정에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항공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7장 다른 나라 항공기의 운행

제64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 리륙, 통과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부사이의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착륙, 리륙, 통과비행할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항공법규를 지켜야 한다.

제65조(정기항로비행의 승인)

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66조(비정기항로비행허가의 신청)

비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비행허가신청서를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비행허가신청기간은 항행통보로 공포한다.

제67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중지)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문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문건을 갖추지 않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68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착륙조건)

비행지휘소는 통과비행승인을 받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공화국의 비행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항공기에 실은 화물을 검사할 필요가 생겼거나 또는 항공기의 비행에 불리한 일기조건이 조성되었을 경우 착륙시킬수 있다.

제69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구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사고가 생긴 경우 구조대책을 세우고 해당 나라의 민용항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사)

다른 나라 항공기가 승인없이 공화국의 공중구역으로 들어왔거나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착륙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과 책임은 항공기의 승조장 또는 해당 항공회사가 진다.

제71조(비행료금)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8장 항공보안

제72조(민용항공보안사업의 기본요구)

공화국령역에서 민용항공보안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보안사업질서를 바로세우고 항공보안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73조(민용항공보안사업의 관할)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보안사업을 한다.

1. 항공기탑치 또는 그와 관련한 행위
2. 항공기에 탑승한 려객에 대한 폭력행위
3. 비행장의 봉사성원에 대한 폭력행위
4. 지상에 있는 항공기를 파손시키는 행위
5. 비행에 위험을 줄수 있는 장치, 물건 같은것을 가지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행위
6. 비행장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7. 비행하는 항공기에 거짓통보를 하는 행위

제74조(항공보안질서의 준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보안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려객과 항공성원의 안전, 항공기의 운행과 비행장, 민용항공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75조(항공보안검사를 받을 의무)

려객, 항공성원은 항공기의 탑승전에 손짐, 휴대품에 대한 항공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검사를 받지 않은 려객, 항공성원은 항공기에 탑승할수 없다.

제9장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

제76조(항공기 조난구조, 사고조사의 기본요구)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는 조난당한 인원과 재산을 구원하고 항공기사고의 원인을 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화국령역에서 항공기의 조난구조, 사고조사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제77조(항공기의 조난인정)

승조의 힘으로 극복할수 없는 사태가 생겨 항공기와 인원에게 위험이 조성되었거나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져 위치를 알수 없는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는것으로, 충돌 또는 추락하여 파괴되었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거나 비행장이 아닌 곳에 불시착륙한 항공기는 조난당한것으로 인정한다.

제78조(항공기의 조난신호)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거나 조난당하였을 경우 즉시 조난구조지휘소에 보고하며 조난신호를 보내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받은 비행지휘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난구조지휘소와 지방정권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9조(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

항공기의 조난에 대하여 통보받은 조난구조지휘소는 즉시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원부터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은 비상재해극복작업절차대로 한다.

제80조(항공기의 조난자료처리)

조난당사자와 조난탐색, 구조작업에 동원된 성원은 사고현장과 증거물을 보존하며 조난과 관련한 자료를 조난구조지휘소에 내야 한다.

제81조(다른 나라 항공기의 조난작업승인)

다른 나라 민용항공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사고가 났거나 조난당한 자기 나라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작업 및 사고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조난탐색, 구조작업의 비행지휘)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휘는 해당 비행지휘소가 한다. 조난탐색, 구조작업구역은 비행통보구역과 같다.

제83조(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조의 조직과 사고조사방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조 또는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정권기관과 인민보안기관, 법의감정기관, 해당 기관은 항공기사고조사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제84조(항공기의 사고조사, 사고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항공기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그안의 물품, 비행보장수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고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기의 사고조사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장 항공보험

제85조(항공보험의 구분)

항공보험은 항공회사와 항공운수수단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항공보험에는 항공기기체보험, 항공려객상해보험, 항공수송보험, 항공화물보상책임보험, 항공기제3자보상책임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제86조(의무적인 항공보험)

항공회사는 항공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항공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을수 없다.

제87조(항공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리행절차와 방법은 공화국의 보험법규에 따른다.

항공보험금액의 범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할수도 있다.

제11장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

제88조(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민용항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9조(민용항공사업의 지도)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민용항공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90조(민용항공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민용항공정책과 항공법의 집행, 국제협약의 리행을 위한 세칙, 규칙, 지도서를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필요한 경우 민용항공법의 수정보충안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기한다.

2. 다른 나라와 민용항공분야의 협정을 체결한다.
3. 공중구역의 리용조직과 비행지휘, 비행보장사업을 한다.
4. 국제, 국내항공로와 그 리용절차를 정하고 공포한다.
5. 새로운 국제, 국내항공로운영신청을 접수, 검토하고 허가한다.
6. 항공기사이의 수평분리표준과 비행제대고도를 정한다.
7. 민용항공시설의 신설, 유지, 갱신, 관리와 관련한 대책을 세운다.
8. 민용항공사업에 필요한 인원보장, 항공성원양성사업을 한다.
9. 민용항공검열원을 임명하며 비행안전검열, 항공성원들의 자격검열사업을 한다.
10. 이밖에 국가민용항공지도기판이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제91조(비행과 관련한 자료의 통보)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위험구역과 관련한 자료를 항행통보와 통신수단을 통하여 해당 항공기들에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92조(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비행장의 운영정형, 항공회사의 영업실태, 항공교통의 관리정형 같은 민용항공사업전반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비행장이나 항공회사의 운영중지, 해당 승인의 취소, 항공성원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강급, 벌금부과, 손해보상 같은 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94조(의견상이의 해결)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

주체69(198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해운법의 기본

제1조(해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운법은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해상운수발전원칙)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 항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배관리운영원칙)

배의 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한다.

제4조(배의 안전한 항해보장원칙)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항해지휘체계를 바로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해상수송원칙)

해상수송을 짜고드는것은 배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간이다.

국가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켜 늘어나는 해상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배의 취급원칙)

국가는 배취급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배취급에서 봉사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해난사고방지원칙)

국가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으며 해상수송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해상보험제를 실시한다.

제8조(해상운수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9조(해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해운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운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

제11조(배의 소유권과 등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배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배 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하고 배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2조(배의 국적취득)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배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국적삭제증서가 있어야 공화국국적을 소유할수 있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였던 배는 국적등록부에서 삭제되어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강제판매된 배에 대하여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공화국국적배의 국기계양)

공화국국적을 소유한 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단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배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우리 나라에 있고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제14조(용선, 합영배의 국기계양)

다른 나라 배를 장기간 용선하여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우리 나라 국기를 달수 있다.

합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배에는 공화국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켜도 다른 나라 기발을 달수 있다.

제15조(배의 검사)

배는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 싣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수 있다.

제16조(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의 검사)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조직한다. 그러나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7조(배의 문건과 표식)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선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수 있다.

제18조(배의 리용과 구조변경)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그 사명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배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려 하거나 배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배의 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대한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주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배수리기업소는 배수리를 정해진 기간안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배의 매매, 폐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 사거나 폐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선 원

제21조(선원의 지위와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선원은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다.

선원은 배와 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당직근무와 항해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선원의 자격)

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23조(선원증)

선원은 공화국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공화국력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정한 기간 승선시킬수 있다.

제24조(선장의 지위와 임무)

선장은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이다.

선장은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항해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선장의 책임과 대리행위)

선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앞에 책임진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집임자가 없는 곳에서 선장은 공동으로 미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 배 또는 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리행위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집임자가 진다.

제26조(다른 나라 항에서 방조)

다른 나라 항에 들어간 배의 선장은 그 나라 주재 공화국령사대표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방조를 받을수 있다.

제27조(선원들의 노동조건보장)

배 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해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

제4장 항 해

제28조(항해지휘)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배 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항해준비상태의 검사)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기술준비와 항해예비물자, 인명보호수단, 배문건 같은것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질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는 출항시킬수 없다.

제30조(해상충돌예방, 특수항해질서의 준수)

항해하는 배는 해상충돌예방질서와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질서를 지켜야 한다.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바다, 대기의 오염행위금지)

공화국령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버림물, 오물을 버리거나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2조(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주는 행위의 금지)

항수역과 배길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에 침몰된 배를 항무감독기관이 정한 기일 안에 건져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을 줄수 있는 수증작업을 하거나 립시시설 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로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3조(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

배길표식기관은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통일적인 배길표식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한 배길표식물은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수로의 조사)

수로기관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수 있도록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며 정해진 항해질서, 항해위험구역, 배길조건의 변동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공화국수역에서 단속에 응할 의무)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배는 조선인민군 해군함선과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배의 단속에 응하여야 한다.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5장 해상수송

제36조(해상수송계획의 작성과 실행)

해상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수송계획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7조(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

우리 나라 항구들사이의 배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에서 집중수송, 련대수송을 강화하며 짐함수송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8조(우리 나라 짐의 우선 수송)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짐부터 먼저 실어날라야 한다.

빈배로 항해하거나 체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어나를 짐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39조(짐수송계약)

해상수송은 짐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우리 나라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40조(용선의뢰)

용선은 용선중개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중개기관에 의뢰서를 내야 한다.

제41조(용선계약)

용선을 의뢰받은 용선중개기관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배로 다른 나라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다른 나라 당사자와 용선계약을 맺을수 있다.

제42조(용선계약대상과 내용)

용선계약은 짐수량에 따라 배전체 또는 일부 짐칸을 대상으로 맺는다.

용선계약서에는 배와 짐이름, 짐수량과 그것을 싣거나 부리는 항, 계약조건 같은 것을 밝힌다.

제43조(용선중개기관의 임무)

용선중개기관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정확히 리행하게 하며 배운임, 체선료, 조출료를 정해진 기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44조(계약한 배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실는 항에 대야 한다.

수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로 바꾸어 델수 없다.

제45조(짐문건과 짐의 인계)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을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의 이름과 수량, 기호, 특성 같은것을 밝힌 문건과 실어나를 짐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짐대신 다른 짐을 실어보내려 할 경우에는 미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46조(배의 짐배치)

배에서 짐의 배치는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국제해운법규 또는 관례에 따라 갑판에 싣는 짐으로 인정되어있지 않는 짐을 갑판에 싣으려 할 경우에는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수송문건에 밝힌다.

제47조(짐의 결보기상태, 수량의 확인)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넘겨주고 받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짐의 결보기상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배짐증권의 발급과 효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배에 실은 다음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배짐증권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짐증권에 따른다. 그러나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수송을 의뢰하였거나 배짐증권에 수송계약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수송계약서의 내용이 배짐증권의 내용보다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9조(직항수송의무)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길로 목적지까지 직항하여 짐을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사람과 배, 재산의 구조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직항하지 못한것은 배길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50조(배짐증권에 의한 짐인수)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짐증권이 여러부 발급되었을 경우 목적항에서는 1부를 내고 짐을 찾을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짐증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는 발급된 배짐증권을 전부 내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1조(짐수송부담금)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배짐증권정보를 내고 짐수송과 관련한 부담금을 물어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52조(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배의 짐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목적항에 들어갈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항에 짐을 부릴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는 손해와 비용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상한다.

제53조(배에 실은 위험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실은 위험짐이 사람이나 다른 짐에 위험을 줄수 있는 경우 그것을 부리거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짐의 성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실은 위험짐의 처리비용은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54조(짐받을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다음에도 짐을 돌려주거나 계약된 짐수량,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부리는 항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넘겨받기를 거절, 지체하거나 넘겨받을 당사자가 없는 짐의 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에서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짐넘겨받기를 거절 또는 지체하거나 짐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짐을 부려보관시키고 그에 대하여 짐을 받거나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짐의 보관료와 위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짐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56조(배운임의 납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배운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배운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된 수량보다 짐을 더 실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운임을 물어야 한다.

제57조(짐의 손실원인에 따르는 배운임의 납부)

짐자체의 성질이나 결함,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짐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운임을 전부 묻는다. 그러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손실된 짐에 대해서는 배운임을 묻지 않는다.

제58조(수송계약의 불리행에 대한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실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었거나 짐을 제때에 임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9조(배관리자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 전쟁 및 적대행위, 해당 당국의 조치를 비롯한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좌주를 비롯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짐자체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4. 짐함이나 그 봉인상태가 정상인 경우

제60조(다른 나라 당사자에 대한 배관리운영자의 책임)

짐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당사자앞에 지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 그러나 국제협약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61조(려객수송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렬객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며 렬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렬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려객은 제정된 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6장 배에 대한 봉사

제62조(봉사관련법규와 봉사순위)

배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배에 대한 봉사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르며 그에 정해있지 않은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배에 대한 봉사는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물자를 실은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63조(다른 나라 배의 대리업무)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맡아한다.

우리 나라 항과 령해, 공동수역의 우리측 지역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와 짐자료, 비용을 선박대리기관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제64조(배길안내)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수 있다.

배길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제65조(배길안내를 받는 선장의 의무와 책임)

배길안내를 받는 배의 선장은 배길안내원에게 배의 항해 및 조종상특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66조(배끌기작업)

배끌기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뺄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

끌배운영기관은 배끌기작업을 원만히 할수 있는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끌리는 배의 선장은 끌배선장에게 자기 배의 조종상특성과 결함 그밖의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67조(배끌기작업의 지휘)

배끌기작업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끌리는 배의 선장이 지휘한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배의 선장도 끌기작업의 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제68조(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는 그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진다.

잘못을 가를수 없을 경우에는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가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와 련대적으로 책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69조(배의 기술봉사와 물자공급)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에서 요구하는 기술봉사를 하며 연유, 물, 식료품, 남새 같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70조(태풍, 해난으로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 대한 방조)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태풍과 해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항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게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7장 해난구조

제71조(해난구조기관과 그 임무)

해난구조는 바다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해난구조와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는 사업은 공화국해난구조기관이 한다.

중앙해양지도기관과 해난구조기관은 해난구조체계를 바로세우고 발견된 해난을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제72조(해난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을 발견한 즉시 해난구조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구조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73조(선장의 구조의무)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

제74조(해난구조료의 납부)

해난구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구조료를 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75조(가라앉은 재산의 구조)

우리 나라 수역에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간안에 건져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6조(배충돌시 선장의 임무)

배는 안전항해의 요구를 지켜 충돌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배들이 충돌한 경우 선장은 상대측 배의 안전을 도와주며 배이름과 선적항, 떠 나온 항과 목적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7조(배충돌시 잘못에 따르는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릴수 없으면 같은 몫으로 손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현대적으로 책임진다.

제78조(배충돌로 생긴 손해보상)

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는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79조(공동해손의 보상)

항해중 배와 짐, 운임을 공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는 공동으로 보상한다.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비례하여 보상한다.

제80조(공동해손보상청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손해보상에 대한 지불담보를 하여야 짐을 찾을수 있다.

제81조(공동해손의 청산)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지정한 손해청산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안으로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할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제82조(해난사고의 통보, 인증)

선장은 항해과정에 있는 해난사고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상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자기 배의 잘못이 없이 생긴 해난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가 있는 다음 처음 도착한 항에서 해당 권한있는 기관 또는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3조(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준 손해의 책임)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일으킨 배의 가격범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

제8장 해상보험

제84조(해상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을 실시하는것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기관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상보험은 배짐과 운임, 짐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익, 배, 배운영과 관련되는 리익,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 같은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85조(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시기)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계약은 보험에 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신청서를 내고 보험기관이 보험증권을 내주면 맺어진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험료를 문 때부터 발생한다.

제86조(재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기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보험대상에 손해가 생긴것을 알면서 해상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87조(피보험자의 권리의무이전)

해상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길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물 의무는 넘길수 없다.

제88조(수송하는 짐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해상보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정한 기간 배를 통하여 편이러 보내거나 받게 될 짐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상보험에 넣을수 있다.

해상보험계약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보냈거나 그것이 도착할 때마다 짐과 배, 배길의 상태, 보험금액에 대하여 곧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89조(보험대상의 위험변동에 대한 통보와 덧보험료)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이 당할수 있는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에 대한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 보험료를 더 받을수 있다.

제90조(보험대상의 손해통지)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리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다.

제91조(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는 손해)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

제92조(보험보상금)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수 없다.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이 완전히 없어진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기고 보험금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수 있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

제93조(손해보상청구권의 이전)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해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9장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94조(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5조(해운사업에 대한 지도)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배관리운영과 항해, 해상수송, 배취급, 해난사고와 그 구조 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96조(과학연구사업과 그 성과도입)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해운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운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97조(해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8조(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와 배의 항해질서준수정형, 항의 관리운영과 배취급정형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99조(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

선박운영, 선박용선, 해상중계수송, 항을 통한 무역집의 환적 같은 해운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운업에 대한 영업허가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제100조(벌금)

배의 입출항, 항해질서를 어겼거나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을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101조(원상복구, 손해보상)

항, 갑문시설물과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0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10장 분쟁해결

제103조(분쟁해결방법)

해운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제104조(청구문건의 제출, 청구권보장기간)

분쟁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구문건을 청구권보장기간안에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청구권보장기간은 6개월이다. 그러나 우선적인 해사청구권보장기간은 1년이다.

제105조(법률봉사단체를 통한 청구문건의 제출)

해사중재 또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로 되는 당사자는 공화국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청구문건을 낼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는 정해진 법률봉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문건을 내야 한다.

법률봉사단체는 해당 법규에 맞게 법률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배역류판정과 그 집행)

재판기관은 빚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책임밑에 배와 짐 그밖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억류할데 대한 판정을 할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은 재판소 집행원이 집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빚을 근거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였거나 관리운영하는 배나 재산을 억류할수 없다.

제107조(배의 강제판매)

재판기관은 빚을 물지 못하여 억류당한 배가 30일이 지나도록 채무리행담보를 세우지 않거나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그 배를 강제판매시킬수 있다.

판매대금은 재결 또는 판결에 기초하여 우선적해사청구권의 순위로 물어주며 나머지는 배임자에게 반환한다.

제108조(보상책임의 제한)

배의 항해,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정해진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 또는 결과를 예측할수 있는 행위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받을수 없다.

제109조(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피해, 로동보수와 관련한 청구권
2. 항만비용과 관련한 청구권
3. 해난구조, 공동부담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4. 항구조물과 설비에 끼친 손해보상, 충돌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5. 짐과 계약상책임에 따르는 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제110조(우선적인 해사청구권과 저당권, 항차, 청구액의 관계)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에서는 전항차보다 다음항차에 발생한것이 더 우선적이며 같은 항목에서는 그 청구액에 비례한다.

제111조(분쟁해결의 기준문건)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공화국의 해당 법규, 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

주체95(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로 채택

· 제1장 해상집수송법의 기본

제1조(해상집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은 배에 의한 해상집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해상집수송의 장려원칙)

해상집수송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집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바다를 통한 집수송을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원칙)

해상집수송에서 계약당사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국가는 해상집수송계약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해상집수송에서 신용보장의 원칙)

해상집수송에서 신용을 보장하는것은 국가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고 해상수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해상집수송계약당사자들이 배와 짐을 정확히 보장하며 짐관리와 배운임지불의무를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적용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상집수송법은 우리 나라 당사자들사이 또는 우리 나라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해상집수송계약을 맺고 리행하는 해상집수송에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과의 관계)

해상집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운분야의 국제협약과 관례는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짐수송자

제7조(짐수송자의 행위)

짐수송자는 수송의뢰자와 해상짐수송계약을 맺은 당사자이다.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위임된 범위안에서 짐수송자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짐수송자의 행위로 된다.

제8조(짐수송자의 책임기간)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서 짐을 넘겨받은 때부터 짐받는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그 짐에 대하여 배짐증권소지자앞에 책임진다.

배짐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소지자앞에 책임진다.

제9조(항해의 준비)

짐수송자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을 안전하게 수송할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짐칸, 랭동칸, 랭장칸 같은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0조(배선)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신는 항에 제때에 대하여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2일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11조(짐의 다루기)

짐수송자는 짐의 실기와 쌓기, 고루펴기, 관리, 부리기를 배의 항해와 짐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담당자에게 짐의 실기와 쌓기, 고루펴기, 부리기를 정확히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의 요구대로 짐을 다루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서는 해당 작업담당자가 책임진다.

제12조(갑판짐)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우 짐수송자와 짐보내는자는 합의하고 그 사실을 수송문건에 밝혀야 한다.

갑판짐에 생길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서는 계약에 따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부담한다.

제13조(직항)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항까지 직항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것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인 항로를 따라 항해한다.

항해도중 인명이나 재산구조 기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항로를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항로리탈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위험짐의 처리)

짐수송자는 수송도중 위험성이 있는 짐에 의하여 인명이나 배, 짐, 환경에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을 파괴하거나 버리는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5조(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하면 짐받는자에게 짐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짐받는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짐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거나 넘겨받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짐받는자가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에게 알리고 짐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키는것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짐수송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비용은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부담한다.

제16조(배짐증권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 짐받는자로부터 배짐증권정보를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짐을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발급된 배짐증권정보 전체를 넘겨받아야 한다.

배짐증권정보가 없거나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 배짐증권정보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짐을 넘겨줄수 없다.

제17조(지불담보서에 의한 짐의 넘겨주기)

짐수송자는 짐받는자가 배짐증권을 제때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짐을 넘겨주어도 좋다는 짐보내는자의 동의서, 짐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짐받는자와 그가 거래하는 은행의 담보서를 받고 짐을 넘겨줄수 있다.

제18조(짐의 류치)

짐수송자는 운임이나 비운짐자리운임, 체선료 또는 대기로, 짐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동해손분담금 같은것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짐의 실품고부러기를 거절, 중지하거나 실은 짐을 류치할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비용은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9조(짐의 경매처분)

짐수송자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짐에 대하여 경매처분하여줄것을 재판소에 제기할수 있다.

짐이 쉽게 부패변질되거나 짐보관비용이 짐의 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매처분을 제기할수 있다.

제20조(경매처분대금의 분배)

경매처분한 짐의 값에서 경매처분에 들인 비용과 짐수송자가 받아야 할 몫은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돌려준다.

짐수송자는 경매처분한 짐의 값이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에게 청구할수 있다.

제21조(짐수송자의 책임면제조건)

짐수송자가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전쟁 및 무장충돌, 적대행위, 해적행위의 경우
2. 검역, 해당 당국의 행정적 및 법적조치의 경우
3. 바다, 항해수역에서 예견할수 없었던 위험, 사고의 경우
4. 항해 또는 배관리에서 선원, 수로안내원의 실수인 경우
5.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그 대리인의 행위인 경우
6. 파업, 작업정지 기타 장애의 경우
7. 짐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의 경우
8. 짐의 포장, 표시이 불량한 경우
9. 배의 숨은 결함인 경우
10. 해난구조행위의 경우
11. 인명, 재산,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의 경우
12. 짐수송자의 잘못이 아닌 화재나 기타 원인의 경우

제22조(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입증책임)

발생한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짐수송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허물이 없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3조(짐수송자의 책임제한)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짐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손해보상액을 짐의 포장당, 단위당 666.67SDR 또는 1kg당 2SDR의 금액가운데서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수 있다.

짐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한다.

제24조(책임제한권의 상실)

짐수송자는 짐에 대하여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제한을 받을수 없다.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제25조(짐보내는자의 의무)

짐보내는자는 수송계약에 따라 실을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고 배짐증권,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넘겨받는 당사자이다.

짐보내는자는 인명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짐실기와 보관관리, 부리기에 적합한 짐을 짐수송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짐을 바꿀수 없다.

제26조(짐의 표시)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자에게 넘겨줄 짐 또는 포장에 주기호, 출발항, 목적항, 경

유항,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취급주의사항 같은 필요한 표식을 지워지지 않게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짐자료의 제공)

짐보내는자는 보내려는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같은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짐수송자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짐과 관련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비용은 짐보내는자가 부담한다.

제28조(짐의 수송수속)

짐보내는자는 짐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세관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며 짐을 배에 싣기 전에 짐수송자에게 상선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선의뢰서에는 짐보내는자의 이름, 통고인, 짐받는자의 이름, 배의 이름, 짐실는 항, 짐부리는 항, 짐의 최종도착지,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필요한 자료, 짐의 결보기상태를 밝혀야 한다.

제29조(실을 짐의 보장)

짐보내는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짐의 싣기작업을 끝낼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짐의 싣기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싣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짐반환 및 짐받는자, 짐부리는 항의 변경)

짐보내는자는 짐을 돌려주거나 짐받는자 또는 짐부리는 항을 변경시켜줄것을 짐수송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짐수송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1조(짐보내는자의 책임면제)

짐보내는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입은 짐수송자 또는 배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32조(짐의 넘겨받기)

짐받는자는 짐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로부터 짐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짐수송자와 짐받는자는 짐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짐의 손실, 손상에 책임있는자에게 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제33조(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짐받는자는 넘겨받은 짐이 손실, 손상되었을 경우 짐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쌍방이 확인한 짐에 대하여서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34조(짐넘겨주기지연의 통지)

짐받는자는 짐의 넘겨주기가 지연되었거나 짐을 넘겨받지 못하였을 경우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안에 짐수송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한 기간안에 통지하지 않은 짐의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35조(대리인,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의 효력)

짐받는자가 짐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하여 짐수송자의 대리인 또는 배의 선장에게 한 통지는 짐수송자에게 한것으로 인정한다.

제4장 배짐증권

제36조(배짐증권의 발급)

배짐증권은 짐수송자가 짐을 접수하여 배짐증권에 밝혀진대로 수송하고 배짐증권 소지자에게 넘겨준다는것을 약속하는 수송문건이다.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로부터 짐을 넘겨받으면 그의 요구에 따라 쌍방이 확인한 항해사인수증에 준하여 배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배짐증권대신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을 발급할수도 있다. 이 경우 해상운송장 같은 수송문건은 유가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7조(대리인에 의한 배짐증권발급)

배짐증권은 짐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할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은 발급한 배짐증권을 짐수송자의 승인밑에 짐보내는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배짐증권에 한 선장의 수표는 짐수송자가 수표한것으로 인정한다.

제38조(배짐증권의 재발급)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을 발급한 후에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배짐증권을 다시 발급하여줄것을 요구할 경우 이미 발급한것을 회수하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발급한 배짐증권을 제때에 회수할수 없을 경우에는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로부터 정한 기간안에 돌려주겠다는 담보서를 받고 재발급하여줄수 있다.

제39조(배짐증권의 양도)

지시식으로 발급된 배짐증권은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배짐증권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제40조(배짐증권의 기재내용)

배짐증권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짐수송자의 이름
2. 짐보내는자의 이름
3. 짐받는자의 이름 또는 짐도착통지를 받을 당사자의 이름
4. 배의 이름

5. 짐신는 항과 짐부리는 항
6.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성질 기타 짐보내는자가 제공한 자료
7. 짐의 결보기상태
8. 배운임의 지불관계
9. 갑판에 실은 짐
10. 배짐증권발급장소와 날자, 부수
11. 짐수송자의 수표

제41조(배짐증권의 비교란에 밝힐 내용)

배짐증권을 발급하는 짐수송자는 배짐증권에 밝힌 짐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식, 무게 또는 결보기상태 같은것이 넘겨받은 짐과 맞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배짐증권의 비교란에 밝힐수 있다.

제42조(결함없는 배짐증권의 효력)

배짐증권의 비교란에 결함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짐수송자가 짐보내는자로부터 배짐증권에 밝힌 상태의 짐을 정확히 넘겨받은것으로 인정한다.

결함이 없는 배짐증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수 없다.

제43조(배짐증권의 앞면과 뒤면기재내용의 효력)

배짐증권의 앞면과 뒤면에 기재한 내용이 서로 모순될 경우에는 앞면의 기재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44조(통과 및 련대짐수송에 따르는 배짐증권의 발급)

해상수송을 포함하는 통과 또는 련대짐수송을 할 경우에는 통과 및 련대짐수송에 따르는 배짐증권을 발급한다. 이 경우 그 배짐증권은 해상짐수송과 관련하여 발급한 배짐증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장 배의 운임

제45조(배운임의 지불의무)

배의 운임은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가 지불한다.

짐보내는자, 짐받는자 또는 용선자는 계약에 따라 짐수송자에게 배의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배운임의 지불방법)

배의 운임지불은 전불 또는 후불, 총괄지불 같은 방법으로 한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없이 배의 운임을 상쇄, 공제, 반환할수 없으며 계약에서 정한 운임률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47조(배운임의 전불)

배의 운임을 전불로 정하였을 경우 짐수송자가 짐을 넘겨받으면 배의 운임을 지불한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짐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

한다.

배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짐수송자는 짐보내는자에게 배짐증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제48조(배운임의 후불)

배의 운임을 후불로 정하였거나 운임지불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가 목적항에 도착한 다음 짐부리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이 손실,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입항승인을 받은 배는 목적항에 도착한 배로 인정한다.

제49조(배의 총괄운임)

배의 운임을 총괄로 지불하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실은 짐에 관계없이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한다. 그러나 배의 적재능력이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모자라 짐을 다 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배의 운임에서 덜 수 있다.

제50조(실지 못한 짐과 더 실은 짐의 운임)

계약한 짐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비운짐자리운임을 지불한다.

계약보다 짐을 더 실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운임을 더 지불한다.

제51조(짐보내는자의 계약위반시 배운임의 지불)

짐수송자는 여러 짐보내는자의 짐을 한배로 수송할 경우 계약기간안에 일부 당사자가 짐을 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배를 출항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짐을 실지 못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의 운임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제52조(계약취소로 손해를 본 배운임의 보상)

수송의뢰자는 해상짐수송계약을 짐신는 항에 배가 도착한 다음 출항전에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3분의 2를, 출항한 다음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짐수송자와 여러 수송의뢰자가 맺은 계약을 전체 또는 일부의 수송의뢰자가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한 배운임의 전액을 보상한다.

제6장 용 선

제53조(용선의 형태)

용선은 항차용선, 기간용선, 빈배용선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중 개인을 통하여 한다.

제54조(배의 보장)

배임자는 계약에서 정한 배 또는 짐칸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배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한 배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용선자와 합의하여 다른 배를 보장할 수 있다.

제55조(재용선)

용선자는 용선한 배를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맺고 보장할수 있다. 이 경우 배임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재용선계약은 기본용선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56조(용선된 배의 저장, 양도)

배임자는 용선된 배를 저장시키거나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용선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용선된 배를 양도할 경우에는 용선계약도 함께 양도할수 있다.

제57조(해난구조비를 지불받을 권리)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용선한 배로 해난구조를 하였을 경우 구조비총액에서 구조작업에 든 비용과 제3자에게 준 손해보상액, 구조작업에 동원된 선원의 보수 기타 구조작업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받을수 있다.

제58조(용선료의 지불)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배를 보장받은 대가로 배임자에게 용선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용선자의 잘못이 아닌 원인으로 배를 운영할수 없게 되었거나 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배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마지막소식이 있는 날부터 용선료의 지불을 정지할수 있다. 이 경우 선불로 지불된 용선료는 배의 리용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제59조(용선한 배의 반환)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배임자에게 배를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배자체의 정상적인 마모와 손상은 결함으로 보지 않는다.

제60조(배반환기간이 지난 후의 배운영)

기간 또는 빈배용선자는 항차도중 배의 반환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항차를 끝내고 배를 돌려줄수 있다. 이 경우 항차기간을 20일이상 초과할수 없다.

배의 반환기간이 끝난 다음 발생한 용선료는 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지불한다. 그러나 용선료들의 시세가 계약에서 정한것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1조(용선계약의 취소)

용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어겼거나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밖의 계약취소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3일안에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규정한 손해보상 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62조(항차용선)

항차용선은 한 항구로부터 다른 항구까지 한방향으로 한번 항해하거나 두 항구사이를 한번 또는 여러번 왕복으로 항해하면서 짐을 수송하기 위하여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짐칸을 빌리는 행위이다.

용선자는 배의 전부 또는 일부 집칸을 빌린 대가로 배임자에게 배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3조(항차용선계약)

항차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항차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항차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짐의 무게, 용적, 품명, 짐실는 항과 부리는 항, 짐실고부리는 기간, 배의 운임, 조출료와 체선료관계,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4조(기간용선)

기간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을 태운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기간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배의 항해감당력보장과 관련한 의무는 배임자가 진다.

제65조(기간용선계약)

기간용선을 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기간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간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국적, 선급, 톤수, 적재능력, 속도, 연료소비,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용선료의 지불조건,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6조(기간용선자의 지시권한)

기간용선자는 용선한 배의 선장에게 배의 운영, 짐수송과 관련한 지시를 준다. 이 경우 배임자와 맺은 계약조건과 어긋나는 지시를 할수 없다.

제67조(배임자의 류치권)

기간용선자가 용선료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자는 배에 실은 짐과 용선자가 얻은 수입에 대하여 류치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68조(빈배용선)

빈배용선은 용선자가 배임자로부터 선원이 없는 배를 일정한 기간 빌려 운영하는 행위이다.

빈배용선자는 짐수송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9조(빈배용선계약)

빈배용선하려는 용선자는 배임자와 빈배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빈배용선계약서에는 배임자와 용선자의 이름, 배의 이름, 선적항, 선급, 톤수, 적재능력, 항해구역, 용도, 용선기간, 배의 보장과 반환시기, 장소, 배의 검사, 관리, 수리, 용선료의 지불조건, 배보험, 계약종결, 분쟁해결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70조(빈배용선자의 의무)

빈배용선자는 용선기간 배의 관리와 수리에 대하여 책임진다.

배의 구조, 기관, 보이라, 장비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배임자와 합의하며 배를 돌려줄 경우에는 배임자의 요구에 따라 본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71조(빈배용선자의 배보험)

빈배용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방식에 따라 배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7장 분쟁해결

제72조(분쟁해결의 방법)

해상집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한다.

제73조(분쟁해결의 기준)

해상집수송과 관련한 분쟁해결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 배짐증권소지자가 용선자가 아닐 경우에는 배짐증권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진행한다.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과 배짐증권,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것은 해당 법규와 국제협약, 관례에 따른다.

제74조(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

해사청구권의 시효기간은 1년이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사청구권의 시효가 정지되며 그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날부터 계속된다.

해사청구권자가 배역류를 신청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거나 해당 청구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제75조(손해보상청구제기)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를 재판이나 중재에 제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법률봉사단체를 통하여 할수 있다.

제76조(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

손해보상청구액의 계산은 계약에서 정한 목적항에서 짐수송자가 짐받는자에게 짐을 넘겨줄 당시 거래되는 짐값에 준하여 한다.

해당 짐의 값을 알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과 유사한 종류와 품질의 짐값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

주체93(2004)년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호로 채택

제1장 배길표식법의 기본

제1조(배길표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배길표식물의 종류)

배길표식물은 등불, 모양, 색깔, 소리, 전파 같은것을 리용하여 항만, 연안수역, 하천, 호소에서 배길안내를 위한 기본수단이다.

배길표식물에는 등대, 등간, 등표, 립표, 부표, 도표, 음향신호설비, 무선신호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배길표식물의 현대화원칙)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배길표식물을 현대화하고 수로항해학적요구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원칙)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배길표식물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그 기술적성능과 재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배길표식물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배길표식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배길표식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배길표식부문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배길표식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배길표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길표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길표식물의 설치

제9조(배길표식물설치의 기본요구)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바로하는것은 해난사고를 미리 막고 배의 항해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배길표식물설치의 담당자)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배길표식물설치의 신청)

배길표식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만들어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배길표식물신청서에는 설치리유, 위치, 종류, 제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배길표식물설치신청의 심의)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를, 부결한 경우에는 배길표식물신청서에 그 리유를 밝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13조(배길표식물설치의 중요요구)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항해하는 배에서 잘 보여야 한다.
2. 정해진 형태와 색깔, 등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비침과 보임거리, 음향과 무선전파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견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배길표식물설계의 작성)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계를 설계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설계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배길표식물의 설치방법)

배길표식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기술규정과 표준공법을 지키며 설치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6조(배길표식물의 준공검사)

배길표식물을 설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길표식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17조(배길표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치한 배길표식물을 정한 기간안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배길표식물은 승인없이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8조(배길표식물의 설치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원의 출입,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수 같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달라진 배길표식물의 제원통보)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설치하였거나 달라진 배길표식물의 제원을 제때에 수로공보를 통하여 내보내며 등대표와 해도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3장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

제20조(배길표식물관리운영의 기본요구)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은 배길표식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1조(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유지)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대표에 밝혀진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2조(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측정)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달라진 성능과 제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에 곧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배길표식물의 보수)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수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못쓰게 된 배길표식물은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24조(배길표식물의 보호구역)

국가는 배길표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5조(배길표식물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일구거나 물고기잡이를 하는것 같은 배길표식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배길표식물의 보호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에 배, 때목 같은것을 매여두거나 배길표식물을 파손시킬수 있는 거리로 향해할수 없다.

제27조(등불, 음향신호, 무선신호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의 식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등불, 음향신호, 무선신호 같은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배길표식물의 사고신고)

배길표식물이 파손되었거나 배길표식물에 이상이 생긴것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배길표식기관에 곧 알려야 한다.

제29조(배길표식물의 리용료금)

배길표식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배길표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배길표식사업지도기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배길표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과학기술적지도와 선진기술의 보급)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로력, 자재, 설비,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5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

주체93(2004)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채택

제1장 수로법의 기본

제1조(수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은 수로의 조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와 군사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로부문의 투자원칙)

수로사업은 바다와 하천, 호수의 구획과 지형지물의 위치, 특성 같은것을 조사확정하고 통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3조(수로의 조사원칙)

국가는 수로의 조사사업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수로통보원칙)

국가는 수로자료의 출판질서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무선항해정보 같은 통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수로자료의 리용원칙)

국가는 출판된 수로자료를 안전한 항해와 인민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수로시설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수로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수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국제수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수로의 조사

제9조(수로조사의 기본요구)

수로의 조사는 수로사업의 선행공정이다.

수로조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

제10조(수로의 조사방법)

수로의 조사는 수로측량과 해양관측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중관측, 기구관측 같은 방법으로도 수로조사를 할수 있다.

제11조(수로측량기관, 기업소의 의무)

수로측량은 수로측량기관, 기업소가 한다.

수로측량기관, 기업소는 바다와 하천, 호수의 수로향해학적요소들과 자연지리적 상태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해양관측기관, 기업소의 임무)

해양관측은 해양관측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양관측기관, 기업소는 바다물의 물리화학적성질과 구조, 바다흐름, 밀짚물, 물질의 특성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제13조(해도편찬의 수로조사기관, 기업소)

해도를 편찬하기 위한 수로조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수로조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일반해도편찬을 위한 수로조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14조(수로조사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의 작성)

수로를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대상에 따르는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수역, 기간, 기술적내용과 방법, 정확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수로조사자료의 질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정해진 기간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자료는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수로자료는 리용할수 없다.

제16조(기술기재의 준비)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필요한 배를 비롯한 기술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기재에는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술기재의 검정)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쓰이는 기술기재를 정상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술기재는 수로조사에 리용할수 없다.

제18조(수로조사일군의 자격)

수로조사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일군은 수로조사를 할수 없다.

제19조(표준조작법의 준수)

수로조사일군은 수로조사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표준조작법을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수로변화상태의 조사)

수로조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수로의 변화상태를 장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조사한 수로자료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수로조사조건의 보장)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수로조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수로조사신청서의 제출과 승인)

자체로 수로조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조사신청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장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제23조(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를 바로하는것은 안전한 항해와 바다자원의 개발리용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수로자료에는 해도와 수로지, 수로예보 같은 항해참고자료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것이 속한다.

제24조(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계획)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기관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조건을 타산하여 편집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해도의 출판)

해도의 출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정한 해도출판기관이 한다.

해도출판기관은 해도의 편집지도서를 작성하고 편집원도와 출판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편집지도서와 편집원도, 출판원도는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발행)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인쇄하거나 발행하려 할 경우에는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는다.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7조(해도, 항해참고자료의 배포)

인쇄한 해도, 항해참고자료는 검사와 배포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배포승인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또는 무선항해경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9조(항해자료의 배포)

배길표식, 항해위험물의 변경 같은 항해자료는 수로공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내보낸다.

수로공보의 배포단위 또는 무선공보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제30조(긴요한 항해자료의 경보)

긴요한 항해자료는 무선항해경보로 내보낸다.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항해경보와 일반항해경보로 나누어 한다.

제31조(긴급항해경보)

긴급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저화산, 지진 같은 위급한 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2. 비행물체가 떨어질것이 예견될 경우
3. 충돌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4. 떠다니는 기뢰 같은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5. 항해하는 배에 급히 중대한 위험이 닥쳐올수 있을 경우
6. 그밖에 긴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제32조(일반항해경보)

일반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암초 같은 항해위험물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
2. 가라앉은 배 또는 그 표식을 발견하였을 경우
3. 알수 없는 물체가 떠있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4. 조난당한 배를 발견하였을 경우
5. 좁은 수역안에서 규모가 큰 배 또는 여러척의 배가 항해하고있을 경우
6. 배길표식물의 설치, 철수, 등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
7. 배길의 변경과 봉쇄가 예견될 경우
8. 해일, 태풍 같은 현상이 예견될 경우
9. 그밖에 항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경우

제33조(새로 발견한 항해자료의 통보)

배의 선장은 항해수역에서 새로 발견하였거나 달라진 항해자료를 정리하여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수로자료의 리용

제34조(수로자료리용의 기본요구)

수로자료의 리용은 출판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 수로자료통보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실을 꾸리고 수로자료리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수로자료리용신청서의 제출)

수로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36조(수로자료의 열람, 대출)

수로자료의 리용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열람, 대출할 수 있다.

열람은 열람실에서만 하며 대출하는 수로자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7조(수로자료의 리용)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38조(수로자료의 대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수로자료를 빌려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수로자료의 반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수로자료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된 수로자료는 기요문서로 등록하고 리용한다. 그러나 일반항해참고자료 같은것은 기요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41조(수로자료의 기밀엄수)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리용과정에 알게 된 수로자료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42조(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질서)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
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로시설물의 관리

제43조(수로시설물관리의 기본요구)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수로시설물의 파손을 막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
한 중요방도이다.

수로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로시설물을 그 규격과 기술적요구, 안전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수로시설물의 종류)

수로시설물에는 국가수로측량기점과 부동표식물, 배길표식물, 수위 또는 해양관
측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수로기관, 기업소는 수로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45조(수로시설물의 관리기관)

수로시설물의 관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분담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수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물리화학적특성
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수로시설물의 관리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시설물을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류실된 수로시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에 알려야 한다.

제47조(수로시설물의 변경)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
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수로시설물보존실태의 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수로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료해장악하여 그 정
형을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수로시설물의 리용)

국가수로측량기점 같은 수로시설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수 있다. 이 경
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0조(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수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1조(수로사업에 대한 지도)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수로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로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수로부문의 과학연구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수로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로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4조(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5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수로의 조사, 자료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하여 로력과 자재를 낭비하였거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중지)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리용하였거나 그 기밀을 누설시킨 경우에는 수로자료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5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항 만 법

주체75(1986)년 9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항만법의 기본

제1조(항만의 지위와 리용목적)

항만은 나라의 관문이며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항만을 전적으로 인민경제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2조(항만개발리용원칙)

항만을 적극 개발리용하는것은 해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는데 따라 항만을 개진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전망성 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항만관리원칙)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항만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항만 설비와 시설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4조(항운영원칙)

항운영을 잘하는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과량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항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항사업을 단일화, 정규화, 규범화한다.

제5조(항에서 봉사원칙)

항에서 봉사사업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항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려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한다.

제6조(항만분야의 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제7조(항만분야의 대외활동원칙)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항만관계 국제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항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항만건설

제9조(항만건설계획의 작성)

항만을 개진확장하며 전망성있게 건설하는것은 항의 배대는 능력과 짐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0조(항만설계)

항만설계기관은 항을 통과하게 되는 짐의 종류와 류동방향, 지형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항만건설기관)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한다.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2조(항만구조물건설)

항에는 물결막이둑,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배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신고부리는 설비와 운반설비의 설치)

항에는 기중기, 자행선, 수송판, 벨트콘베아 같은 짐을 신고부리거나 나르는데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14조(창고, 적재장건설)

항에는 항의 규모와 특성, 짐통과능력에 맞게 창고와 적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무역항의 중계창고와 적재장은 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15조(항 철길, 룬환도로의 건설)

항에는 배짐작업에 유리하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일수 있게 철길을 건설하며 짐운반수단이 늘어나는데 맞게 룬환도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16조(배길표식물의 설치)

항에는 등대를 비롯한 배길표식물을 수로학적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17조(어항시설)

어항에는 물고기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큰 어항에는 랭동공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18조(려객항시설)

려객을 취급하는 항에는 배에 의한 렬객수송을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렬객부두와 여러가지 봉사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제19조(항건설물의 준공검사)

시공주기관은 항만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제20조(항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고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항만관리

제21조(항만관리의 기본요구)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22조(항만의 경계)

항만경계를 긋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제23조(항만에 대한 관리분담)

항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한개 항만을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 경우에는 내각이 정해주는데 따라 관리한다.

제24조(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과 보수)

항운영기관은 물결막이둑 같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며 파손된 항만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25조(배터와 배길의 준척)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의 배터와 배길을 정상적으로 준척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항만수역에서 준침,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신고부리는 설비, 운반설비의 수리정비)

항운영기관은 짐을 신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27조(창고와 적재장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적재장을 보수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창고와 적재장에는 통로와 짐쌓는 구역을 정하고 짐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항 철길과 도로의 보수정비)

철도운수기관과 항운영기관은 항에 있는 철길과 도로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진흙길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안전대책을 세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항운영시설의 보수정비)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시설 같은 항운영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 해양 및 관측 설비의 관리)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항수리기지)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무역항 같은 중요항에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32조(항구내관리)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늘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주변을 록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설의 제한)

항안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과 시설물을 두거나 건설할수 없다.

항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안에 건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항수역의 오염방지)

항수역에 공업폐설물, 독이 있거나 어지러운 물질을 버리거나 흘려보낼수 없다.

배는 항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을 경우 오물과 버림물, 기름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

제35조(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터치거나 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설비, 시설물, 물자의 보호)

항운영기관과 항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연유를 비롯한 인화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7조(다른 나라 배의 입출항)

다른 나라 배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항에 어느때든지 나들수 있다.

제38조(다른 나라 배의 공화국국기제양의무)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

제39조(항운영기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

항에 나드는 배는 항운영기관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40조(항에 들어온 배의 안전보장)

항운영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머무름터를 정하여주며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곧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1조(배를 대고때는 질서)

배는 부두에 대고때는 질서를 지키며 항만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배대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물결막이쪽, 호안에 배를 대거나 짐을 부릴수 없다.

제42조(항만에서 측심, 전파탐지, 무선통신기재의 사용금지)

다른 나라 배는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할수 없다.

제43조(공민의 항출입질서준수의무)

공민은 항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수 없다.

제44조(안전항해와 해난구조)

항운영기관은 항수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항에 머무르는 배는 해난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운영기관에 알려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난구조작업에 동원되어야 한다.

제4장 항운영

제45조(배머무름시간단축의무)

항은 해상수송의 거점이다.

항기관은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46조(비상설항련합위원회)

항운영에서 기본은 배취급이다.

배취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련합위원회를 둔다.

제47조(싣고부리는 작업기준량을 정하는 기관)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작업기준량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8조(작업계약의 체결과 리행)

항기관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과 작업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9조(배취급순위)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정이 있는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

제50조(대리기관을 통한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

무역항에서 관계기관은 배임자대리기관과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입출항승인)

배의 입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으로부터 배의 입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한 검사와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52조(입출항검사)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무역배는 입출항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출항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밑에 항에 있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한 배는 입출항할수 없다.

제53조(배길안내)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배길안내기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길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4조(작업준비완료통지서제출)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입항련합검사가 끝난 다음 로동안전대책과 작업준비를 끝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대리기관에 내야 한다.

제55조(짐모으기작업)

항에 짐을 모으는 일은 짐임자기관이 한다.

짐임자기관은 배선계획에 맞물려 배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짐을 모아야 한다.

제56조(짐작업의뢰)

짐작업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이 낸 짐작업의뢰서에 의하여 한다.

짐작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내야 한다.

제57조(실고부리는 작업)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짐적재도면과 짐작업기술공정표, 짐취급지도서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항기관은 짐을 실고부리거나 실어나르는 일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제58조(수입품을 보내는 사업)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관에 보내는 일은 짐임자대리기관이 한다.

짐임자대리기관은 수입품을 제때에 수요자기관에 보내야 한다.

운수기관은 수입품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짐의 보관과 처리)

항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수 없다.

짐임자기관은 배에 실을 짐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안에 림시로 보관시킬수 있다.

짐을 보관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수 있다.

제60조(짐의 넘겨주고 받기)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 받는것은 운수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사이, 짐임자대리기관과 항기관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61조(짐검수와 배잠김감정)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때의 검수는 국가검수기관이 하며 더미짐에 대한 배잠김감정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검수기관과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짐검수와 배잠김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62조(배운영물자와 식료품보장)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봉사기관은 선원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남새를 비롯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항만비용의 청산)

항만비용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항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한다.

다른 나라 배운영기관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

제64조(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

국내운수항, 공업항, 어항, 려객항의 운영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5장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5조(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당 기관은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66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배길표식물, 항만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7조(벌금)

공업폐설물, 오물, 독이 있는 물질, 버림물, 기름으로 항수역을 메우거나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68조(기재와 배몰수)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할수 있다.

제69조(배와 인원의 억류)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은것과 관련한 벌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물지 않거나 항만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할수 있다.

제7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항만건설과 관리, 항운영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

주체96(2007)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08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배등록법의 기본

제1조(배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배등록의무)

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등록된 배의 법적보호)

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4조(국기계양)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양한다.

제5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배등록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에 따르는 배등록을 하지 않는다.
총톤수가 5미만의 기계배와 배길이 12m미만의 작은 배에 대한 등록은 따로 정한 데 따른다.

제7조(배등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배등록의 신청

제8조(배등록신청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신청은 배등록사업의 첫 공정이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신청대상의 배)

다음의 배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배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합영, 합작하여 운영하는 배
3.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배

제10조(배등록의 신청)

배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배등록신청은 중앙해사감독기관에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해사대표기관에 직접 할수도 있다.

제11조(배등록신청의 구분)

배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새로 건조하였거나 구입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 배등록신청을 한다.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배이름, 선적항, 소유관계, 배구조 같은것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배의 변경등록신청을 한다.
3. 대부상환 또는 기타 채무리행담보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배의 저당등록신청을 한다.
4. 빈배용선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빈배용선등록신청을 한다.
5.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배의 진출 및 전입등록신청을 한다.

제12조(배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같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이관련증서, 배등록삭제증서, 배연혁기록부, 배매매증서, 채무관련증서, 공증기관확인서, 계약서, 구조변경승인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제13조(배등록신청문건의 반송)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 수 있다.

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함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제14조(배등록의 삭제신청)

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 폐선 같은 리유로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 종류, 톤수, 사용년한, 신청리유, 채권채무관계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명문건을 첨부한다.

제3장 배등록의 심의

제15조(배등록의 심의의 기본요구)

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심증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배등록의 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국제항해하는 배와 국내항해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

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7조(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배의 톤수측정)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톤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국내톤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

제19조(배등록의 승인 또는 부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힌다.

제20조(등록할수 없는 배)

다음의 배는 등록할수 없다.

1. 항해감당력이 담보되지 않은 배
2. 해양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

제21조(배등록의 재심의제기)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1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의견제기)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배의 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채권채무관계, 등록일자 같은것을 밝힌다.

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수 없다.

제24조(배등록의 구분)

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

제25조(공화국국적소유)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26조(우리 나라 수역에서 경제활동)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 과학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 에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7조(등록된 배의 표식과 기술검사)

배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기와 배의 이름, 선적항, 국제해사기구번호, 만재잠김선 같은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

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제28조(등록된 배의 법규준수의무)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29조(배등록의 정지)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빈배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동의서를 발급할수 있다.

제30조(배등록의 삭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삭제한다.

제4장 배등록증서

제31조(배등록증서와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유관계, 등록일자, 종류, 톤수 및 기술제원, 발급일자,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32조(림시배등록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었거나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진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항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6개월이다.

제33조(배등록증서의 재발급)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4조(배의 항해)

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수 있다.

제35조(배등록삭제증서)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이 삭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때에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6조(배이름과 선적항, 해당 번호, 부호의 지정)

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배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제5장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제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배등록자료의 구비)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 등록톤수,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

제40조(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배등록증서회수)

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제42조(항해중지)

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수 있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채택

제1장 배안전법의 기본

제1조(배안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건조, 검사, 안전관리와 안전 보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배의 설계 및 건조원칙)

배의 설계와 건조를 바로하는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건조에서 선급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배의 검사원칙)

배의 검사는 배의 기술적상태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배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여 배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원칙)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제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5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원칙)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가 공화국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6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배를 설계,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생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3. 해사감독 및 항운영기관
4.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제7조(법의 제외대상)

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배안전과 관련한 국제적교류와 협조)

국가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배의 설계 및 건조

제9조(배설계의 구분)

배설계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 또는 설비, 의장품의 제작을 위한 선행공정이다. 배설계에는 배의 건조설계, 개조 및 수리설계, 설비설계, 의장품설계 같은것이 속한다.

제10조(배설계의 담당자)

배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배의 설비, 의장품 같은것에 대한 설계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할 수도 있다.

제11조(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출을 줄이고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배설계계약)

배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배설계의 단계)

배설계는 과제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 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4조(표준설계문건의 리용)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배설계심의의무)

배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배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할수 없다.

제16조(배설계심의신청)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가 완성되면 해사감독기관에 배설계심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배설계문건과 도면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배설계심의)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는 경우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설계되었는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의 설계심의를는 해당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18조(배설계의 유효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제19조(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설비,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용접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수 있다.

제20조(성능검사시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및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그것을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제21조(배설계의 수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수 있다. 이 경우 설계기관, 기업소는 수정한 설계내용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계류 및 항해시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류 및 항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총화설계)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완성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은 다음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총화설계문건은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24조(배의 설비)

배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선급규정의 요구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및 기계장치

3. 전기설비
4. 화재방지설비
5. 구명설비
6. 항해안전설비
7. 조타, 계류, 양묘설비
8. 오염방지설비
9. 생활보장설비
10.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설비

제25조(만재잠김선의 표식)

배는 만재잠김선을 표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하는 배는 만재잠김선에 관한 국제협약, 국내항해하는 배는 선급규정에 따라 만재잠김선을 표식한다.

제26조(만재잠김선을 표식하는 배)

만재잠김선을 표식하는 배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항해하는 배
2. 길이 24m이상의 배
3. 길이 24m미만의 배로서 13명이상의 력객을 수송하는 배
4. 이밖에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배

제27조(배톤수의 제정)

배는 톤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제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제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다.

제28조(무선설비)

국제항해하는 력객선과 총톤수 300이상의 배는 해상조난안전체계에 따르는 무선설비를 갖추며 총톤수 300이하의 배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제29조(발명, 창의고안의 도입)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3장 배의 검사

제30조(배검사의 담당자와 구분)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의 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항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제31조(배검사의 신청)

배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배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을 한다.

제32조(제조검사와 운항검사)

제조검사에서는 예비검사, 공정검사, 시운전검사를, 운항검사에서는 초기검사, 년차검사, 중간검사, 갱신검사를 한다.

필요에 따라 운항하는 배에 대한 추가검사를 할수도 있다.

검사종류에 따르는 검사내용과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3조(림시운항검사)

해사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하기전에 항해하러 하거나 양도 또는 검사, 톤수측정, 개조, 수리, 폐선할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에 대하여 림시운항검사를 할수 있다.

제34조(다른 나라에서 배의 검사)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배에 대한 검사는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지정하는 다른 나라 검사기관이 할수 있다.

제35조(배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대상에 따라 선급증서, 협약증서, 운항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림시운항검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림시운항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는 배증서를 항상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36조(배검사에 대한 의견제기)

배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배검사에 대한 의견을 제기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료해처리하고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배증서의 재발급)

배는 배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재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신청리유를 정확히 검토하고 배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배증서의 반환)

배가 실종, 침몰, 폐선 또는 판매되었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었을 경우에는 배증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39조(선급제정)

배는 해당한 검사를 받은 다음 구조적, 기술적, 운영적특성에 따르는 선급을 제정받아야 한다.

선급을 제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40조(변경승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를 받은 다음 배와 배설비의 형태, 구조, 재료를 변경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검사원의 주재)

해사감독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위하여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는 현장에 검사원을 주재시킬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장에 주재하는 검사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2조(설계기관, 제작공장, 기술봉사소에 대한 인증)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거나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급규정에 따라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할수 없다.

제43조(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수입)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견본 같은것을 내야 한다.

제44조(배 검사료금의 지불)

배검사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제45조(안전관리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안전관리는 배에 대한 안전보호대책을 세워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체계수립의 내용)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안전관리와 관련한 문건과 배증서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3. 배를 안전하게 운영할수 있는 지휘체계를 세워야 한다.
4.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성원들의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고 연락체계를 기동성있게 세워야 한다.
5.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세워야 한다.
6.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7. 안전관리의 요구에 맞게 배의 승선인원과 기술상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8. 내부안전관리검토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7조(안전관리검열의무)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정형에 대한 검열을 받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을 받지 않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48조(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검열신청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관리검열진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체계를 바로세우고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검열은 초기, 년차, 중간, 갱신 및 추가검열로 나누어 한다.

제50조(안전관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검열에서 합격된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에는 안전관리증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새로 운영하는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잠정안전관리증서 또는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발급한다.

제51조(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리행증서는 5년간, 잠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간,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는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안전관리증서는 중간검열, 안전관리리행증서는 년차검열을 통하여 그 효력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52조(안전보장체계의 수립과 리행)

배와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은 외부로부터 침습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3조(안전보장일군의 선정)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일군을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갖춘자만이 될수 있다.

제54조(안전보장계획)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며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55조(안전보장설비의 운영)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보장검열의무)

국제항해하는 려객선, 총톤수 500이상의 배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검열기준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제57조(안전보장검열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검열신청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배 또는 항운영기관의 자료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안전보장검열진행)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실태에 대한 검열을 하고 안전보장증서 또는 잠정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안전보장증서는 배를 새로 운영 또는 구입하였거나 국적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급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간, 잠정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59조(항해구역의 설정)

배는 정해진 항해구역안에서 항해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크기와 속도, 항해감당력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에 항해구역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60조(항해안전규정의 준수)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며 인명안전규정, 충돌예방규정과 해상집의 배치, 보관, 취급,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5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제61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의무)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62조(다른 나라 배의 입항에 대한 통지)

배대리기관은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오는 경우 그 배에 대한 검열을 제때에 할수 있도록 해사감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해사감독기관의 검열권한)

해사감독기관은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를 엄격히 검열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64조(다른 나라 배의 결함에 대한 대책)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

에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나 항해감당력에 본질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시킬수 있다.

제65조(다른 나라 배의 결함퇴치후 검사)

다른 나라 배는 결함을 퇴치한 다음 해사감독기관에 신청하여 해당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6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통보 및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별 외국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7조(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8조(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9조(선급규정의 작성 및 지도)

내각과 중앙해사감독지도기관은 선급규정을 비롯한 해사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70조(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나라 배의 억류 및 벌금부과)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긴 다른 나라 배는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7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배설계에 도입하여 배안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배의 검사와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받았을 경우
5.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 항해하였거나 만재잠김선규정, 인명안전규정, 충돌예방규정, 해상집안전규정을 어기고 항해하였을 경우
6. 배설비, 무선설비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설비, 의장품의 형태, 구조를 변경시켰을 경우
8.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9. 안전관리와 안전보장검열에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10.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공화국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73조(형사적책임)

제7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5호로 채택

제1장 선원법의 기본

제1조(선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원법은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선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배의 관리와 항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선원의 구분)

선원은 배판리의 주인이며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선원은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선원의 양성원칙)

선원양성은 능력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선원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질적수준을 부단히 높이도록 한다.

제4조(선원의 등록원칙)

선원등록을 바로하는것은 해사감독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선원의 기술자격심사원칙)

국가는 선원기술자격심사질서를 바로세우고 기술자격심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제고원칙)

국가는 선원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그들이 항해와 배판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선원의 양성과 등록, 기술자격심사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선원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선원양성 및 등록, 기술자격심사기관, 선원

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와 선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선원의 양성

제9조(선원양성기관)

선원양성은 해당 전문교육기관과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 선원양성기관에서 한다.

선원양성기관에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고는 선원이 될수 없다.

제10조(선원양성의 질적수준보장)

선원양성기관은 선원양성의 질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교육 또는 훈련수준을 끊임 없이 높여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담당수행할수 있는 선원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

해당 전문교육기관은 항해와 배의 기관, 전기설비, 무선통신 같은 전문분야의 교육을 위한 과정안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선진적인 교수방법을 받아들여 쓸모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분야의 교육과정안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12조(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운영)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을 위하여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 같은것을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임무)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훈련시설과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훈련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과 방법을 바로 정하며 훈련생에게 항해와 배관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지식과 동작을 실속있게 배워 주어야 한다.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선원훈련과정안은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14조(선원훈련구분과 대상)

선원훈련은 기초안전훈련과 전문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처음 배에 승선하거나 일정한 기간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배에 승선하려는 선원에게는 기초안전훈련을, 지휘선원과 정해진 배에 승선하려는 선원에게는 전문훈련을 준다.

제15조(실습)

선원양성기관은 실습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실습을 통한 교육 또는 훈련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양성에 필요한 실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6조(배에서의 선원훈련)

배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훈련정형을 훈련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선원훈련교원 및 지도선원의 자격)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의 교원과 배의 훈련지도선원은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고는 선원훈련을 줄수 없다.

제18조(선원훈련평가신청)

훈련을 받은 선원은 해사감독기관의 훈련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의 훈련평가를 받으려 할 경우 15일전에 선원훈련평가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19조(선원훈련평가와 증서발급)

선원훈련평가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해당 선원에 대한 훈련평가를 제때에 진행하여야 한다.

선원훈련평가결과 합격된 선원에게는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한다.

선원훈련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3장 선원의 등록

제20조(선원등록기관)

선원등록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기준과 절차를 바로 정하고 선원등록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선원등록신청)

선원등록의 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을 등록하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선원등록신청문건에는 해당 선원의 신분관계,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기술자격소유정형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2조(선원등록심의기간)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선원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등록심의결과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선원등록심의자료요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선원등록을 신청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선원등록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및 처리)

선원등록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등록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안에 해사감독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선원등록)

해사감독기관은 등록이 승인된 선원을 선원등록부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선원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된 선원에게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과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을 구분하여 해당한 선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권을 대신한다.

선원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7조(선원등록의 변경, 삭제)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등록을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또는 소속이 달라졌을 경우
2. 선원의 직무가 달라졌을 경우
3. 선원이 해임되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28조(선원증의 재발급)

다음의 경우에는 선원증을 재발급받는다.

1. 선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2. 선원증이 오손되었을 경우
3. 선원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4. 선원증의 변경등록란을 다 썼을 경우

제29조(선원증의 반환)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이 사망하였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30일안으로 선원증을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선원증을 재발급받을 경우에는 낡은 선원증을 바쳐야 한다.

제4장 선원의 기술자격심사

제30조(선원기술자격심사의 기본요구)

선원기술자격심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기준과 선원기술자격시험응시기준을 바로 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국제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문

- 항해1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선장
- 항해2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선장
- 항해3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부선장
- 항해4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부선장
- 항해5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항해사
- 항해6급: 총톤수 500이상 300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당직원: 항해 및 정박당직에 망라되는 갑판원

2. 기관부문

- 기관1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기관장
- 기관2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기관장
- 기관3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부기관장
- 기관4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부기관장
- 기관5급: 기관출력 3000kW이상 배의 기관사
- 기관6급: 기관출력 750kW이상 3000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당직원: 기관당직에 망라되는 조기원

3. 전기부문

- 전기사1급: 발전기출력 500kW이상 배의 전기사
- 전기사2급: 발전기출력 500kW미만 배의 전기사

4. 무선통신부문

-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 무선통신사1급: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항해구역 A1~A4까지 항해하는 배의 통신사
-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 무선통신사2급: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항해구역 A1~A2까지 항해하는 배의 통신사
- 세계해상조난안전체계 일반운영사: 항해부문의 지휘선원

제32조(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

국내항해하는 배의 선원기술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1. 항해부문

- 항해1급: 총톤수 500이상 100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2급: 총톤수 150이상 50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3급: 총톤수 50이상 15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4급: 총톤수 10이상 5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5급: 총톤수 5이상 10미만 배의 항해사
- 항해6급: 총톤수 5미만 배의 항해사

2. 기관부문

- 기관1급: 기관출력 750kW이상 2500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2급: 기관출력 300kW이상 750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3급: 기관출력 150kW이상 300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4급: 기관출력 75kW이상 150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5급: 기관출력 25kW이상 75kW미만 배의 기관사
- 기관6급: 기관출력 25kW미만 배의 기관사

3. 전기부문

전기사: 발전기출력 500kW미만 배의 전기사

제33조(배길안내사자격급수)

배길안내사자격급수는 다음과 같다.

배길안내사1급: 총톤수 3000이상 배의 배길안내원

배길안내사2급: 총톤수 3000미만 배의 배길안내원

보조배길안내사: 보조배길안내원

제34조(해사감독기관의 선원기술자격심사조직임무)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계획을 바로세우고 심사기간과 기술자격시험방향을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며 선원기술자격심사성원을 능력있는 일꾼으로 선정하고 선원기술자격시험문제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35조(선원기술자격심사의 신청)

선원기술자격심사신청은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선원의 기술자격심사를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심사를 하기 15일전으로 해당 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선원기술자격심사의 구분)

선원기술자격심사는 제자리급수심사, 올라가는 급수심사로 구분하여 한다.

제37조(선원기술자격심사)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심사결과는 15일안으로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의 조직)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위하여 비상설로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선원기술자격심사위원회에는 해당 전문일꾼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제39조(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된 선원에게 해당한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선원기술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40조(선원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선원기술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선원기술자격증을 재발급 받는다. 이 경우 해당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41조(다른 나라 선원의 기술자격증 또는 보증서발급)

우리 나라 배에 승선하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선원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 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42조(림시선원기술자격증의 발급)

국제항해하는 배의 항차중에 사망, 급병 같은 리유로 결원된 지휘선원의 직무에 한급 낮은 기술자격을 가진 지휘선원을 림시배치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그에게 6개월기간의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선장, 기관장, 무선통신사의 직무에는 3개월기간의 림시선원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제43조(선원기술자격증의 효력)

선원기술자격증이 없이는 선장, 기관장, 부선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무선통신사, 전기사 같은 지휘선원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제5장 선원의 임무

제44조(선원의 일반임무)

선원은 자기가 맡은 임무에 정통하며 그것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5조(선장)

선장은 배의 총책임자이다.

선장은 선원과 려객, 배관리, 항해에 대한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며 배에 있는 인원 및 재산보호, 배의 안전항해보장, 해상환경보호책임을 진다.

제46조(부선장)

부선장은 갑판부문의 책임자이며 선장의 1대리인이다.

부선장은 항해 및 정박당직, 배관리, 화물수송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장이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제47조(항해사)

항해사는 배의 안전항해와 해상환경보호,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부선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대리임무를 수행한다.

제48조(기관장)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책임자이다.

기관장은 기관부문의 설비와 갑판부문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지휘한다.

제49조(부기관장)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부책임자이며 기관장의 1대리인이다.

부기관장은 기관부문의 항해 및 정박당직과 기관정비사업을 조직집행하며 담당설비에 대한 관리운영과 정비를 책임진다.

제50조(기관사)

기관사는 기관장의 지시밑에 담당할 설비의 관리운영과 정비를 하며 기관의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

제51조(전기사)

전기사는 배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진다.

전기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2조(무선통신사)

무선통신사는 배업무통신과 조난통신을 원만히 보장할 책임을 진다.

무선통신사는 선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53조(갑판장)

갑판장은 갑판원의 책임자이다.

갑판장은 갑판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선체와 갑판구조물을 비롯한 갑판설비와 기공구, 비품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4조(갑판원)

갑판원은 갑판장의 지시밑에 화물과 갑판설비를 관리하며 갑판에서 제기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55조(조기장)

조기장은 조기원의 책임자이다.

조기장은 조기원의 작업을 조직하며 기관부문의 설비에 대한 정비와 자재관리를 책임진다.

제56조(조기원)

조기원은 조기장의 지시밑에 기관부문의 설비운영과 정비를 한다.

제57조(기타 선원)

의사는 배의 위생관리와 선원의 건강을 책임진다.

후방부문의 선원은 후방사업과 생활상편의보장사업을 책임진다.

제58조(당직근무)

선원은 정해진 당직기준에 따라 항해 및 정박당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직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6장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9조(선원사업에 대한 지도)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선원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한다.

제60조(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지켜야 할 요구)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선원양성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해당한 증서를 갖춘 선원을 승선시키며 선원기술자격소유정도와 능력에 맞게 적합한 임무를 주어야 한다.
2. 정해진 최소안전정원기준과 의료기준에 맞게 선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3. 로동안전, 로동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우며 선원에게 휴식과 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4.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선원의 경력,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정형, 신체검사정형, 자격증소유정형 같은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선원생활조건에 맞는 배설계 및 건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경우 침실, 식당을 비롯한 생활시설을 선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선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선원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3조(다른 나라 배 선원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수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선원에 대하여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증서 또는 자격증소지정형과 선원양성,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검열결과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할때까지 항해를 중지시킬수 있다.

제64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선원등록신청을 거짓으로 하여 선원등록사업에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2. 선원등록, 선원훈련평가, 선원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3. 선원증이 없는 인원을 배에 승선시켰을 경우
4. 선원기술자격급수에 맞지 않게 임무분담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당직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최소안전정원기준을 어겨 배의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선원증, 선원기술자격증, 선원훈련증을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8. 배설계와 건조, 개조를 무책임하게 하여 선원생활에 불편을 조성하였을 경우

제65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64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주체86(1997)년 9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해사감독법의 기본

제1조(해사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은 해사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에서 사람의 생명과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배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해사감독사업의 강화원칙)

해사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사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3조(해사감독기관의 설치원칙)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어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해사감독체계의 수립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도록 한다.

제5조(해사감독의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 보장원칙)

국가는 해사감독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해사감독일군의 자격)

해사감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국가는 해사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해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해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국제해사협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배의 등록

제9조(배 등록의 기본요구)

배를 등록하는것은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에 배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배이름, 선적항, 호출부호, 번호의 제정)

배의 이름과 선적항은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과감독기관이 정한다.

제11조(배 등록의 신청)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한 배등록신청서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내용과 등록증서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선적항, 배임자기관의 이름, 영업주소,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배의 매매, 양도, 저당관계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배 등록증서의 재발급)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 해당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배등록증서를 재발급하여야 주어야 한다.

제14조(등록한 배의 표식)

등록한 배의 지정된 위치에는 배이름, 선적항을 표식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에는 국제해사기구번호를 함께 표식한다.

제15조(공화국국적취득의 신청)

공화국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는 해사감독기관에 국적취득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적취득신청서에는 배이름, 선적항, 국적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6조(배 등록의 삭제)

다른 나라에 판매되었거나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5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배와 폐선시킨 배는 등록에서 삭제한다.

제3장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

제17조(선원등록과 자격심사의 기본요구)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선원을 꾸리고 그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선원의 등록조건)

선원등록은 배치되었거나 채용한 선원에 대하여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선원등록부와 배기술자격등록부, 등록카드에 선원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선원등록의 방법과 기한)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등록하여야 한다.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배기술자격의 심사)

지휘선원과 배길안내사는 해사감독기관의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선원도 신청에 따라 배기술자격심사를 받을수 있다.

배기술자격은 5년에 한번씩 재심사한다.

제21조(선원증,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또는 재등록하였거나 배기술자격심사에서 합격한 선원에게 선원증 또는 배기술자격증, 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배에 타는 다른 나라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우리 나라의 배기술자격증을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22조(선원증의 효력)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항해하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권을 대신한다.

제23조(선원증과 배기술자격증의 역할)

선원증이 없이는 배를 탈수 없으며 배기술자격증이 없이는 선장, 부선장, 기관장, 부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사, 배길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

제24조(배의 최소안전정원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크기와 구조, 기관의 수량, 출력, 기술장비, 항해거리 같은것을 타산하여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정하고 최소안전정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항해하는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운항증서에 밝혀주어야 한다.

제25조(선원훈련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양성소 또는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선원에게 선원훈련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해난사고의 조사처리

제26조(해난사고조사처리의 기본요구)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는 해사감독기관의 중요임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해난사고의 종류)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파손,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것이 속한다.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사고로 인정한다.

제28조(해난사고의 처리관할)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 경제수역,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조사처리한다.

다른 나라 수역과 공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킨 우리 나라 배에 대하여서도 조사처리한다.

제29조(해난사고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해난사고보고서의 작성)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문건과 각종 증서, 배기술문건, 해도,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름작업기록부, 배운영일지 같은것을 함께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우리 나라 령해 또는 경제수역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해난사고보고서를 내야 한다.

제31조(해난사고의 감정)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어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는 방법으로 감정할수 있다.

제32조(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통제)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에 항해할수 없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책임있는자를 류동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심의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해난사고의 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결정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재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34조(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검사)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을 검사할수 있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해난사고의 조사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5장 배설계의 심의

제35조(배설계심의의 기본요구)

배설계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배와 설비,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심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의무적인 배설계심의)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심의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설비, 의장품을 생산할수 없다.

제37조(배설계심의의 신청)

배설계를 심의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낸다.

제38조(배설계의 심의방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에서 항해감당력과 구조, 재료, 설비, 의장품,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이 보장되었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제39조(배설계유효기간의 설정)

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제40조(배설계의 재심의)

심의 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의를 다시 받는다.

제41조(발명, 창의고안, 프로그램의 도입)

배에 발명이나 창의고안, 프로그램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42조(배설계의 내용표기)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로 향해하는 배설계의 내용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제6장 배검사

제43조(배검사의 기본요구)

배검사를 정확히 하는것은 배의 항해감당력을 보장하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건조, 개조, 수리정형과 설비, 의장품을 갖춘 정형을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4조(배검사의 구분)

배검사는 제조검사와 운항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조검사는 건조하는 배, 운항검사는 운영하는 배에 대하여 한다.

제45조(배검사의 신청)

배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낸다.

제46조(제조검사)

배의 제조검사는 건조검사와 예비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설비와 의장품에 대한 예비검사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하거나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47조(운항검사)

배의 운항검사는 초기검사, 년차검사, 중간검사, 갱신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검사, 립시운항검사, 선저외판검사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제48조(공정검사)

해사감독기관은 건조, 개조, 수리하는 배에 대하여 공정별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진행한 공정검사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

제49조(최종검사)

건조, 개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조, 개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서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50조(다른 나라에서 배의 운항검사)

공화국령역밖에서 항해하고있는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배의 운항검사는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한다.

공화국해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이 직접 하거나 다른 나라 배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51조(검사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제조 또는 운항검사에서 합격된 배에 운항증서, 협약증서, 선급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진행한 다른 나라 배에는 해당 증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52조(보험검사)

해사감독기관은 보험기관의 신청에 따라 배보험검사 혹은 상태평가감정을 하고 조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7장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검열

제53조(안전검열의 기본요구)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에 대한 안전검열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며 사람의 생명과

해양생태환경,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조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54조(안전관리검열의 종류)

안전관리검열은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과 완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로 나누어 한다.

잠정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운영을 시작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완전증서발급을 위한 검열은 이미 증서를 받고 운영하는 배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한다.

제55조(안전관리검열의 신청)

안전관리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를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검열신청과 배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제56조(안전관리증서의 발급)

검열신청을 받은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여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한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안전관리리행증서를, 배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리행증서와 안전관리증서는 5년, 잠정안전관리리행증서는 1년, 잠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57조(년차 또는 중간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안전관리리행증서 또는 안전관리증서를 발급받은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년차검열과 중간검열을 하고 증서의 효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난사고 같은것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검열을 할수 있다.

제58조(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의 안전관리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해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다른 나라 배와 배운영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검열을 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하여줄수 있다.

제59조(안전보장검열의 신청)

안전보장검열을 받으려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에 검열신청서를 내야 한다.

검열신청서는 배에 대한 검열신청과 항시설에 대한 검열신청으로 나누어 내야 한다.

제60조(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의 안전보장일군배치정형을 검열하고 해당 일군에게 배 및 항시설안전보장일군훈련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1조(안전보장계획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배, 항시설에 대한 안전보장평가를 하고 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를 작성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평가서와 안전보장계획서는 해사감독기관이 검토하고 승인한다.

제62조(안전보장기록부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이 안전보장기록부에 안전보장계획서의 리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안전보장기록부는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제63조(안전보장설비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시설에 안전보장설비를 갖춘 정형과 가동정형, 보수정비정형, 비상시의 사용준비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64조(안전보장증서의 발급)

배와 항시설의 안전보장정형에 대하여 검열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항운영기관에 안전보장증서 또는 잠정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증서는 5년, 잠정안전보장증서는 6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제65조(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검열)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려는 다른 나라 배의 안전보장정형을 검열하고 국제안전보장기준에 이르지 못한 배의 입항을 거절할수 있다.

다른 나라 배로부터 안전보장과 관련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며 배가 소속한 나라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다른 나라 배의 검열

제66조(다른 나라 배검열의 기본요구)

다른 나라 배의 검열을 강화하는것은 해상안전과 해양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근본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검열체제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7조(다른 나라 배의 검열기준)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 공화국의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68조(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들어온 다른 나라 배의 조사)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우리 나라 령해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에 대하여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요구에 따라 항해감당력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그러나 국제해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배에 대하여서는 공화국 해사법규에 따라 조사한다.

제69조(선급검사 또는 도크상가검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를 검열하는 과정에 배의 기술상태가 불량하거나 항해감당력에 의심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선급검사, 도크상가검사 또는 수리를 요구할수 있다.

제70조(다른 나라 배검열결과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 배의 검열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국제해사기구와 지역의 국배검열기구, 배가 속한 나라에 통보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장 배에 의한 바다환경오염의 통제

제71조(바다환경오염통제의 기본요구)

배와 해상시설물에 의하여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통제하는것은 해양 생태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바다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의 운영과정에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환경오염물질배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해상시설물에서 기름, 유독성물질, 버림물 같은것을 배출하지 않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물질의 배출기준과 배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73조(배의 구조, 복원성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환경오염을 막을수 있는 구조, 복원성의 요구대로 건조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현측과 선저는 파손에 의한 기름오염을 최대로 줄일수 있도록 2중선체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000t이상의 기름을 수송하는 배는 분리된 발라스트탱크를 가져야 한다.

제74조(기름의 적재제한)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선수탱크와 충돌격벽의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한 배의 해당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할수 있다.

제75조(발라스트물관리기준)

해사감독기관은 배가 발라스트물을 교체기준, 작업기준, 처리기술에 따라 정해진 수역에서 교체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발라스트물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제76조(유해도료의 사용금지)

해사감독기관은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유해도료 같은 생물살상제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유해도료를 배의 칠감으로 사용할수 없다.

제77조(저장된 오염물질의 처리)

해사감독기관은 입항하는 배의 기름찌끼, 버림물, 유독성물질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넘겼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제78조(작업기록부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오염물질작업기록부에 작업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였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작업기록부는 선장이 수표하여 정한 기간까지 배에 보관한다.

제79조(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를 검열하여야 한다.

기름수송배와 총톤수 400이상의 배에는 기름오염방지비상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제80조(국제오염방지증서의 검열)

해사감독기관은 배에 국제오염방지증서가 있는가를 검열하여야 한다.

위험화물을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의 적합성증서도 검열하여야 한다.

제81조(민사책임증서의 발급)

해사감독기관은 2 000t이상의 기름 또는 연유를 산적하여 수송하는 배에 기름오염 피해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는 민사책임증서를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10장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2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3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84조(해사정책 집행을 위한 문제토의)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해사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5조(해사감독기관의 임무)

해사감독기관은 해사부문의 법규와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86조(배사고방지대책월간)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한다.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7조(해사감독조건의 보장)

해사감독기관은 해사감독에 필요한 전문일군과 문건, 자료, 설비 같은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사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88조(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해사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89조(항해중지 또는 벌금)

검사, 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증서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90조(증서의 회수)

위조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발급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 같은 증서는 회수한다.

제91조(손해보상, 억류, 몰수, 기술자격정지, 강급, 박탈, 선원등록취소)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억류, 몰수하거나 원상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낮추거나 박탈하고 선원등록을 취소한다.

제92조(다른 나라 배에 대한 제재)

해사법규를 어긴 다른 나라 배는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9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농업, 수산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

종자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호로 채택
주체91(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농업법의 기본

제1조(농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 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업생산의 목적)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다.

국가는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농업발전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농업정책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수준이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가 굳건히 다져졌다.

국가는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4조(농업의 경리형태와 협동경리의 국영경리에로의 전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제5조(농업근로자들의 역할제고원칙)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국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농업의 다각화원칙)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부문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주체농법의 구현원칙)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지대의 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영농방법이다.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농법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을 농업생산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8조(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원칙)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농업에 대한 지원원칙)

농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방법개선의 원칙)

국가는 농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단위의 창발성을 높이며 농업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11조(농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농업생산

제12조(농업생산계획작성과 생산조직)

농업생산은 알곡, 남새,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누에고치 같은것을 생산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업생산부문의 배치)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생산의 다른 부문을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부문의 배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타산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농업생산의 전문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과학기술발전수준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물별, 집짐승종류별, 수종별, 누에종류별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종자의 생산)

종자생산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종묘장, 종란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종자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퇴화를 막으며 종자의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종자의 등록, 검사, 평가)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한다. 그러나 알곡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지대의 시험재배에서 좋은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 심는다.

종자의 등록과 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7조(알곡생산)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 강냉이, 감자, 콩을 비롯한 다수확알곡작물의 파종면적을 늘이고 비배관리를 잘하며 논벼농사에서 영양랭상모재배, 수직파재배, 불경재배, 소식재배, 밭농사에서 사이그루재배, 섞음그루재배 같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침땅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제18조(남새생산)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발전적을 알맞게 정하고 영양가와 수확량이 높은 남새종류와 품종을 널리 받아들이며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남새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기별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계단식재배, 온실재배를 하며 여러가지 앞선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공예작물생산)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호, 기름, 약용, 섬유작물 같은 공예작물을 적지에 집중적으로 심으며 비경지를 리용하여 더 많은 공예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20조(다모작)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모작방법을 받아들여 부침땅의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다모작의 규모는 로력, 종자, 물, 비료조건을 타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축산물생산)

축산물생산은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먹는집짐승을 위주로 하면서

지대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르며 그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수의방역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2조(과일생산)

과일생산은 사과, 배를 위주로 하고 율과일과 늦과일,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수종, 품종을 배합하여 한다.

과수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과일생산을 조직하며 점차 고급과일생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제23조(고치생산)

잠업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누에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누에를 배합하고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치기는 적기에 집중적으로 하며 먹이조건, 로력조건에 따라 균중적으로도 하여야 한다.

제24조(적지적작, 적기적작)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영농공정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대기방법을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관개용수를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농업의 기계화)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늘이고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용트랙도르 같은 기계설비는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27조(비료, 농약의 리용)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비료, 복합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농약, 살초제 같은것을 제때에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리용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줄수 있는 농약, 살초제는 농업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제28조(병해충피해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을 제때에 적발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해충발생지구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방역위원회를 내을수 있다.

제29조(자연피해방지)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바람, 고온, 저온, 우박,

서리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농작물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작물의 손실을 막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 로력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3장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0조(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나라의 귀중한 밑천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농업토지의 관리)

농업에서 토지는 기본생산수단이다.

농업토지에는 농업생산에 리용하거나 리용하기로 된 토지가 속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토지에 대한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2조(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려는 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농업토지의 확보)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찾기 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농업토지를 얻어내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는 내부망공사를 비롯하여 실제에 예견된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개간한 농업토지를 농업생산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간한 농업토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제때에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4조(지력제고)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농업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어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시약, 토지개량제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정리)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뚝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6조(과수밭, 뽕밭건설)

농업지도기관과 과수농장, 잠업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 뽕밭적지를 바로 정하고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에 편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과일나무, 뽕나무의 수종, 품종배치와 그루바꿈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37조(관개수리시설의 개선, 보수정비)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개선확장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는 그것을 리용하는 단위가 할수 있다.

제38조(농업생산용물의 확보)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용지수지의 물을 제때에 확보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마련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39조(영농용전력의 공급)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농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전력을 영농시기별로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농업부문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40조(농업설비, 농기구, 부속품의 생산)

기계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설비와 농기구, 부속품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며 농업설비,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는 농업설비, 농기구를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신용보증제)

국가는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대상과 신용보증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비료, 농약의 생산공급)

화학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살초제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43조(부림집집승의 관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집집승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44조(종자, 집집승먹이, 수의약품생산)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 집집승먹이, 수의약품, 연료생산기지과 인공수정기지 같은것을 실정에 맞게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45조(풀판의 조성)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먹는집집승을 기르기 위한 풀판적지를 조사장악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풀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농업부문의 기본건설)

협동농장의 농업토지와 관개수리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건설 같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본건설은 계획에 예견하여 국가자금으로 한다.

협동농장은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중소규모의 기본건설을 자체자금으로 할수 있다.

제47조(영농기자재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운수기관은 영농기자재를 농업생산의 기본단위인 농목장에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농기자재는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48조(농업과학기술의 개발도입)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과 농업생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수단,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4장 농업자원의 보호

제49조(농업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농업자원을 보호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체제를 세우고 농업자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자원보호시설의 건설)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물도랑파기, 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제방공사와 사방림, 방풍림, 수원함양림의 조성, 다락발건설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조사장악하고 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며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51조(농업자원보호시설의 보수정비)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전문기업소가, 작은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해당 리용단위가 보수정비한다.

제52조(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

라 대토를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농업자원피해대상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과 그 지대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건설이나 해로운 물질에 대한 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54조(보호구역, 격리구역)

국가는 농업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업토지, 작잠림지, 밤나무림지, 판개수리시설과 농사시험장,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의 필요한 지역에 보호구역 또는 격리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이나 격리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55조(보호구역, 격리구역에서 금지행위)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자원보호구역에서 농업자원보호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고 돌, 나무, 모래, 흙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파지 말며 격리구역에서 종자생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제56조(좋은 토종의 보호)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토종을 보호증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종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7조(리로운 동식물의 보호)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생산에 리로운 동식물의 생육, 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8조(기상예보와 통보, 배수시설관리)

기상수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리한 기후에 의한 농업자원의 손실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기상예보통보체제를 세우고 기상예보와 통보의 신속성,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수지, 갑문관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배수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농업생산물의 관리

제59조(농업생산물관리의 기본요구)

농업생산물의 관리는 농업생산물을 장악,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농업생산정형의 장악, 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장악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선별, 운반, 가공, 처리 같은것을 알뜰히 하여 허실과 부패변질, 불량품을 없애야 한다.

제62조(농업생산물의 포장)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포장용기를 마련하고 쓸수 있는 용기를 제때에 회수이용하며 농업생산물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된 용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농업생산물의 보관)

수매량정기관과 상업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매한 농업생산물보관은 수매량정기관, 기업소 또는 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수매한 량곡을 국가중간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64조(농업생산물의 처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계획과 계약 그밖에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벼는 걸곡으로 또는 정미하여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수 있다.

제65조(농업생산물검사)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기관이 위임한 기관, 기업소, 단체도 검사를 할수 있다.

제66조(농업생산물의 직매)

농목장은 남새, 과일, 젓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의 종류, 수량과 시기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67조(농업생산물의 수출)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종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8조(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관리를 개선하며 농업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69조(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업지도체계를 바로세우며 농업기술발전과 농업발전전망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농업생산전반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70조(지방농업지도기관의 임무)

지방농업지도기관은 지방의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지도하며 농업에 대한 물질기술적방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71조(농업생산공정의 장악, 기업관리의 개선)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은 농업사령체계와 기술지도체계를 세우고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2조(독립채산제, 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실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농목장과 농촌경영에 복무하는 기업소는 국가의 계획적지도밑에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관리운영에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사용료)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제때에 바쳐야 한다.

제74조(생산의 효과성제고, 분배)

농목장은 농업에 대한 계획화사업과 로력, 재정관리를 잘하고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기술자, 전문가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농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76조(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7조(원상복구, 손해보상, 회수)

농업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였거나 부침땅을 람용하였거나 또는 농업시설물, 설비, 자재를 파괴, 손상시켰거나 농업생산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부업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알곡수확량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업토지를 회수한다.

제7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농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0호로 채택

제1장 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제1조(농작물종자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은 농작물종자의 등록과 생산, 보관,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농작물종자는 농업생산발전의 밑천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그 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3조(농작물종자의 등록원칙)

농작물종자의 등록은 새로 개발한 농작물종자를 국가품종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작물종자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작물종자등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4조(농작물종자의 생산원칙)

국가는 농작물종자생산에서 전문화, 집중화, 과학화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농작물종자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원칙)

국가는 농작물종자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과학연구 및 인재양성사업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농작물종자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농작물종자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농작물종자의 등록

제8조(농작물품종비교시험의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 농작물품종을 육종하였을 경우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에 품종비교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조(농작물품종의 비교시험)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의뢰문건을 접수한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는 3년안으로 품종비교시험을 조직하고 새 품종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농작물품종비교시험을 3년안에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필요한 정도 더 늘일수 있다.

제10조(국가농작물품종의 등록)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는 품종비교시험과 원종생산단체를 거쳐 합격된 농작물종자를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농작물품종등록증을 발급한다.

국가농작물품종등록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낸다.

제11조(국가농작물품종등록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국가농작물품종등록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농작물품종등록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농작물종자의 생산도입)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농작물종자의 생산도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며 새로 육종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작물종자의 생산

제13조(농작물종자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농작물종자생산은 국가적인 농작물종자생산계획에 따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농작물종자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농작물종자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작물원원종, 원종의 생산단위)

농작물원원종, 원종의 생산은 원종농장에서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에서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농작물원원종, 원종을 생산할수 있다.

제15조(농작물종자의 채종단위)

농작물종자의 채종은 채종농장에서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채종농장이 아닌 농장도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 종자를 채종할수 있다.

제16조(농작물종자생산단위조직과 조건보장)

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를 생산하는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농작물종자 생산에 필요한 토지와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는 토양이 비옥하고 관수조건, 수송조건, 격리조건 같은것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17조(농작물종자의 생산조직)

농업지도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기술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농작물종자의 생산지표와 규모, 갱신주기의 설정, 포전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18조(농작물종자의 규격)

농업지도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생산공정별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키며 정해진 규격에 맞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의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농작물종자의 수확, 가공, 포장)

농업지도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농작물종자의 수확시기를 바로 정하고 제 때에 수확하여야 한다.

원종농장, 채종농장은 수확한 농작물종자의 탈곡, 건조, 정선, 선별, 피복 같은 가공과 포장을 표준화, 규격화하여야 한다.

제20조(농작물종자의 검사)

농작물종자에 대한 검사는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이 한다.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은 농작물종자생산과 보관에 이르기까지 농작물종자에 대한 포전검사, 실험실검사를 검사지표대로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1조(격리거리의 보장)

토지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과 정해진 격리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육종연구기관과 원종농장, 채종농장구역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2조(출입금지)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농장, 채종농장에는 외부인원이 들어 갈수 없다.

사업상필요에 따라 외부인원이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농작물종자의 비밀엄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정해진 일군만이 취급하며 승인없이 보여줄 수 없다.

제4장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제24조(농작물종자의 보관기관)

농작물종자의 보관은 농작물종자를 육종하거나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보관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5조(농작물종자의 보관시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농작물종자보관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6조(농작물종자의 보관방법)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농작물종자의 보관방법을 적용하여 농작물종자의 손상, 부패변질 같은 피해를 막고 그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농작물종자의 입출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농작물종자는 정기적으로 실사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농작물종자의 보관기간과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보관기간을 지켜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난 농작물종자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농작물종자의 리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제29조(농작물종자의 수송)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이나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입거나 허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계획에 따른 농작물종자의 공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를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이 없이 농작물종자를 공급할수 없다.

제31조(검사에서 합격된 농작물종자의 공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검사기관의 검사에서 합격된 농작물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검사에서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

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농작물종자의 씨뿌림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의 씨뿌림량을 지대별, 작물별, 품종별에 맞게 정하며 씨뿌리기 전 농작물종자처리를 기술규정대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쓰고남은 농작물종자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쓰고남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4조 (등록된 농작물종자의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고 채종체계를 거친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농작물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농업생산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농작물종자의 반출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에 리용하려는 농작물종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작물종자관리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로력을 동원하거나 자금, 연유, 비료, 농약, 농기계 같은것을 돌려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공로평가)

농작물종자를 새로 육종하고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해당하는 평가를 한다.

제39조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손해보상)

계획된 농작물종자를 가져가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1조(중지, 원상복구)

육종연구기관, 원종농장, 채종농장구역 안에서 농작물종자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농작물을 심거나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4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계획에 없는 농작물종자를 생산하였을 경우
2. 육종연구기관, 농작물품종비교시험장, 원종, 채종농장에 승인없이 들어가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농작물종자검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농작물종자를 망탕 공급하여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농작물종자를 계획에 없는 단위에 공급하였을 경우
6.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등록되지 않았거나 채종체계를 거치지 않은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농업생산에 리용하였을 경우
8. 농작물종자를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생산에 리용하였거나 다른 나라에 내보내었을 경우

제4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채택

제1장 농장법의 기본

제1조(농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장의 토대강화원칙)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소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3조(농장의 조직원칙)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내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제4조(농장의 경영활동원칙)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제5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강화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6조(농장에 대한 지도원칙)

농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농장지도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농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농장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7조(농장에 대한 지원원칙)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2장 농장의 조직

제8조(농장조직의 요구)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9조(농장조직신청)

농장을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농장조직신청문건의 심의)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농장조직결정)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농장의 등록신청)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13조(농장의 등록)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장에는 농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농장의 재등록)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농장등록증의 재발급)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반과 분조는 교착시켜야 한다.

제17조(농장의 기구조직)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농장원총회)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 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 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9조(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집행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20조(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농장의 감사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제21조(농장의 관리성원)

농장은 정해진 관리기구에 따라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 같은 관리성원을 둔다.

농장의 관리성원은 자기의 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장의 경영활동

제22조(분조관리제,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실시)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를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농업생산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농업생산조직)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제25조(고리식 또는 순환식생산체제수립)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고리식생산체제, 순환식생산체제를 세워야 한다.

제26조(종자생산, 공급)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영농준비와 영농작업수행)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 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농업토지의 조사, 장악, 등록)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농업토지의 정리)

농장은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폐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으로 효과가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진, 기계화포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0조(지력제고)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 같은것을 많이 내어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제31조(농업토지리용률의 제고)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32조(농업토지람용의 금지)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목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3조(물원천의 확보)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제34조(물의 공급, 리용)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토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발판수를 짜고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5조(관개수리시설과 설비의 보수)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며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한다.

제36조(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영농설비의 리용)

농장은 트랙또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38조(영농설비와 농기구의 보수정비)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9조(부림소관리)

농장은 작업반별 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며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영농자재리용의 효과성제고)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랑비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로력배치)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부문별, 단위별로 배치된 로력은 고착시켜야 한다.

제42조(로력일평가)

농장은 로력일수행정형을 생산공정별, 시기별로 종합분석하여 총화하며 농장원별로 일한 정형을 제때에 평가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해마다 재사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3조(재정총화)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기,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고정재산의 등록과 실사)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물 또는 화폐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농업생산정형의 등록과 보고)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7조(농업생산물의 허실방지와 보관)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종자와 식량, 집짐승먹이 같은것으로 정해진 수량만큼 남겨두고 국가에 수매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9조(농업생산물의 공급)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을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0조(농업생산물의 직매)

농장은 남새, 과일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농업생산물의 수출)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농장사업에 대한 지도)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트랙토르 같은것은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4조(농장원생활조건보장)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과 식량, 빨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농장사업의 정보화실현, 기술자, 전문가양성)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6조(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동을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연체료지불)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58조(손해보상)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9조(중지, 원상복구)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제60조(토지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제6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독립채산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농업토지를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5.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을 경우
7.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8.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승인없이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하였을 경우
10. 농업생산물을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아 허실하였거나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1.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였거나 그것을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12.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3. 농업생산계획과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4.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제6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61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 산 법

주체95(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3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축산법의 기본

제1조(축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산법은 종자집집승의 확보와 집집승의 먹이보장, 사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축산물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축산발전의 기본원칙)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 젖 같은 축산물을 풍족하게 생산공급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하도록 한다.

제3조(종자집집승의 확보원칙)

종자집집승은 축산발전을 위한 밑천의 하나이다.

국가는 축산부문에 육종사업을 힘있게 벌려 생산성이 높은 종자집집승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4조(집집승의 먹이보장원칙)

국가는 집집승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량을 늘여 집집승의 먹이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집집승의 사육원칙)

국가는 집집승의 사육을 전문화, 집약화하고 집단사육과 분산사육을 배합하면서 집집승사육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제6조(수의방역의 강화원칙)

국가는 축산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의방역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역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축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축산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종자집집승의 확보

제8조(종자집집승확보의 기본요구)

종자집집승확보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종자집집승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집집승의 우량원종을 얻어내며 그 유지와 확대번식을 축산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9조(품종의 육종)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먹이조건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집집승품종을 육종하여야 한다.

제10조(새 품종의 등록)

축산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한 새 품종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합격된 새 품종은 비상설품종등록심의회위원회에 등록하고 생산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1조(원종의 수입)

다른 나라에서 집집승원종 또는 순종을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들여온 집집승원종 또는 순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인공수정)

중앙농업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 인공수정기관은 합리적인 선택임방법을 연구 완성하고 인공수정을 계획적으로 하여 우량한 종자집집승을 생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집집승의 인공수정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 공급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원종장의 능력과 실패,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종자집집승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집집승의 품종별, 계통별, 암수별로 세워야 한다.

제14조(종자집집승의 공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종집집승, 원종알을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공급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종축장, 종금장은 해마다 국가원종장에서 원종을 받아 종축, 종금을 갱신보충하며 확대생산한 원종을 시(구역), 군에 공급하여야 한다.

시(구역), 군종축장, 종금장은 1대선택임종축, 종금 또는 순종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종자집집승, 종자알의 검사)

종자집집승과 종자알은 해당 종축검정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검사에서 합격된 종자집집승과 종자알에는 종축증명서, 종자알검사증을 발급한다.

증명서와 검사증을 발급받지 못한 종자집집승과 종자알은 공급하거나 교류,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종자집집승의 등록)

종축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축등록대장을 갖추고 종자집집승을 제때에 심사하여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종축등록대장을 폐기할 수 없다.

제17조(품종의 개량)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퇴화되었거나 생산성이 낮은 재래종의 종자집집승을 계획적으로 개량하여야 한다.

축산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치있는 종자집집승의 개량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종자집집승의 자체생산)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종자집집승을 자체로 생산, 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력이 명백하고 우량한 집집승을 종자로 선택하여야 한다.

종자집집승의 리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종자집집승리용기준에 따른다.

제19조(등록하지 않은 집집승품종과 원종의 리용금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집집승품종을 기를 수 없으며 중앙종축검정기관의 기술적지도와 통제밖에서 원종을 유지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과정에 있는 집집승품종과 원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20조(원종비밀의 엄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집승의 원종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원종집집승과 토종집집승, 원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갈 수 없다.

제21조(원종장의 출입)

원종장의 출입은 해당 기관이 발급한 출입증에 따라 한다. 이 경우 규정대로 소독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집집승품종, 종자집집승의 도래)

승인없이 집집승품종, 종자집집승을 도래시킬 수 없다.

집집승품종의 도래는 내각, 원종집집승의 도래는 중앙농업지도기관, 종자집집승의 도래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집집승품평회의 조직)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집집승품평회를 실정에 맞게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품평회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집집승은 종자로 등록하고 리용할 수 있다.

제3장 집집승의 먹이보장

제24조(집집승먹이보장의 기본요구)

집집승의 먹이보장은 집집승의 사육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종별, 관리형태별로 먹이소비기준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먹이생산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집집승원종장에는 먹이를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집집승먹이의 질보장)

집집승먹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의 기술적요구와 위생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집집승배합먹이에에는 정한 량의 단백질, 탄수화물, 광물질, 미량원소 같은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알곡먹이의 생산과 공급)

부침땅을 리용하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면적과 비옥도, 기상기후조건, 집집승의 먹성 같은것을 고려하여 집집승먹이작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생산한 알곡먹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 종자를 남겨두고 축산물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수매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실정에 맞게 알곡 및 알곡부산물소비계획을 주며 필요한 량을 현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7조(알곡먹이의 제한)

축산과학연구기관과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효과적인 먹이가공방법과 대응먹이를 적극 개발리용하며 알곡먹이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28조(먹이원천의 동원리용)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과 나무잎, 곡짚, 수초, 부식토, 천연광물질 같은 먹이원천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빈땅, 사이그루 같은 씨붙임면적계획밖에 집집승먹이로 심어 생산한 알곡은 공급계획에 관계없이 리용할수 있다.

제29조(집집승먹이의 보관)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확보한 집집승먹이를 부패변질되거나 영양성분이 파괴되지 않게 가공, 저장하여야 한다.

저장한 집집승먹이는 분실되거나 쥐, 조류 또는 벌레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풀판의 조성)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풀판을 조성하고 집집승먹이풀을 생산하여야 한다.

풀판조성은 산림토지, 하천부지, 부업지, 원로기지와 비탈밭, 폐기밭 같은데 할수 있다.

제31조(조성한 풀판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한 풀판을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등록된 풀판을 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32조(우량품종의 채종)

농업지도기관은 채종기지를 조성하고 우량한 품종을 채종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량품종의 풀씨를 들여왔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순화시켜 퍼뜨려야 한다.

제4장 집짐승의 사육

제33조(집짐승사육의 기본요구)

집짐승의 사육을 바로하는것은 집짐승의 마리수를 늘이고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선진사육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집짐승을 과학기술적으로 길러야 한다.

제34조(집짐승의 품종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대적특성과 기상기후조건, 먹이조건을 고려하여 집짐승의 품종을 배치하여야 한다.

집짐승원종장과 종축, 종금장 같은것은 외부와 격리시켜야 한다.

제35조(집짐승의 우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우리를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집짐승우리는 집짐승사육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 빛을 보장하며 환기시설, 먹이와 물공급시설, 배설물처리시설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가내부업축산)

축산물생산 또는 필요한 새끼집짐승보장을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내부업축산반을, 도시와 로동자구는 가내축산관리위원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개인부업축산)

공민은 돼지, 양, 염소, 토끼, 닭, 오리, 계사니, 개 같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 이 경우 집짐승의 마리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38조(먹이주는 방법)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먹이종류와 량, 먹이주는 시간과 방법을 바로 정하고 질좋은 먹이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집짐승의 방목)

풀먹는집짐승을 방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판면적과 풀생산량을 고려하여 놓아기르는 마리수를 정하고 돌림식놓아기르기를 하여야 한다.

좁은 면적의 풀판에 많은 집짐승을 방목하여 풀판을 못쓰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새끼밴 집짐승의 관리)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끼밴 집짐승이 병에 걸리거나 락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여 새끼낱이률을 높여야 한다.

새끼낱을 장소는 깨끗이 청소하고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새끼뺨 집짐승을 잡을수 없다.

제41조(토종집짐승의 보호, 번식)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소, 풍산개, 토종닭, 토종돼지 같은 토종집짐승을 적극 보호하고 번식시켜야 한다.

제42조(집짐승의 방역)

축산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의 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집짐승이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장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축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4조(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축산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축산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축산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원료, 자재, 자금, 토지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축산과학기술의 발전)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축산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축산을 발전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제47조(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축산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종자집짐승의 확보와 집짐승의 먹이보장, 사육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집짐승을 잘못 관리하여 죽였거나 또는 비법적으로 공급, 판매하였거나 축산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집짐승먹이를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축산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

주체86(1997)년 12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5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장 수의방역법의 기본

제1조(수의방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방역법은 수의방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질병의 발생, 전파를 막고 축산업발전과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한다.

제2조(동물질병의 예방원칙)

수의방역에서 기본은 예방이다.

국가는 동물의 환경위생, 먹이위생, 관리위생 같은 수의위생학적예방조건을 보장하여 동물의 질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수의방역사업원칙)

수의방역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의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원칙)

수의방역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수의방역사업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수의방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수의방역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일군양성사업원칙)

국가는 수의방역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일군을 전망성 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수의방역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의방역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

제8조(동물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기본요구)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제때에 치료하는것은 동물보호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질병을 미리 막으며 발생된 질병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방역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 동물원 같은 동물집단사육장에 방역초소와 방역울타리, 소독시설, 격리우리, 오수정화장, 두엄처리장, 폐축처리장, 도살장, 수의생물약품저장고, 수의실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방목장의 선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형, 기후, 물, 먹이조건 같은 동물의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방목장을 정하여야 한다.

방목장에는 동물의 물먹이터를 꾸려야 한다.

제11조(동물관리장소, 설비, 기재의 위생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을 관리하는 장소, 설비, 기재를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며 쥐, 유해곤충 같은것을 제때에 잡아없애야 한다.

제12조(동물먹이의 수의위생학적요구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의 먹이가공, 보관장소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동물먹이가공설비와 원료에 대한 소독을 하며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동물에게는 수의위생학적요구에 맞는 먹이와 물을 먹여야 한다.

제13조(동물, 동물먹이, 축산물관리일군의 검진)

동물 또는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관리하는 일군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관리할수 없다.

제14조(동물집단사육장의 출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집단사육장에 불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과 기재를 들여놓으려 할 경우에는 소독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의 검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의 검진은 일반검진, 종합검진으로 나누어 한다.

제16조(동물의 예방접종)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방접종계획을 세우고 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은 기본접종과 보충접종의 방법으로 한다.

제17조(동물의 종자, 새끼공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종자 또는 새끼를 건강하고 예방접종을 받은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동물종자, 새끼는 공급할수 없다.

제18조(새로 접수한 동물의 검역)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새로 들어오는 동물은 검역한다.

검역은 일정한 기간 검역우리에 넣고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도살하려는 동물의 검사)

도살하려는 동물은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수의방역기관은 도살하려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도살장소)

동물의 도살은 도살장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살장이 아닌 곳에서 동물을 도살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수의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동물도살후 검사)

수의방역기관은 동물도살후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검사증명서에는 병의 유무상태, 축산물의 용도와 가공, 사용, 처리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2조(동물, 동물먹이,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의 소독)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은 짐을 싣기 전과 부린 후에 소독한다. 이 경우 수의방역기관은 소독증을 발급한다.

동물과 동물먹이, 축산물을 전문으로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다른 짐을 실을수 없다.

제23조(목장, 동물먹이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의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장, 동물먹이가공공장, 축산물가공공장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옮기려 할 경우 수의방역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4조(질병에 걸린 동물의 치료)

수의방역기관은 질병에 걸린 동물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방지

제25조(동물전염성질병의 통보)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를 막는것은 동물의 무리폐사를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수의방역기관은 동물전염성질병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상급기관과 린접단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수의방역구역의 선정)

국가는 동물전염성질병의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물원종장이나 해당 목장 주변의 일정한 구역을 수의방역구역으로 정한다.

수의방역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7조(수의방역구역에서 동물의 사육)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구역에서 원종장이나 목장에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동물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수의방역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28조(병에 걸린 동물, 죽은 동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죽은 동물을 발견한 경우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의방역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해당 동물의 병성을 판정하여야 한다.

제29조(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의 격리)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격리시켜야 한다.

승인없이 동물격리장소에 출입할수 없다.

제30조(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의 치료)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고칠수 없거나 사람과 동물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는 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은 즉시 도살하여야 한다.

제31조(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이 있던 장소, 먹이, 물에 대한 방역조치)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동물을 관리하던 장소와 그 동물이 먹던 먹이, 물 같은것을 소독하거나 소각, 매몰, 폐기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으로 죽었거나 죽인 동물은 소각하거나 폐축처리장에 매몰하여야 한다.

제32조(오염된 축산물의 리용절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동물의 고기와 부산물을 식용 또는 동물먹이, 제품원료로 리용하려 할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오염된 방목장의 처리)

수의방역기관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된 방목장에 대하여 폐기, 운영의 립시정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이동, 판매하려는 동물, 축산물의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하려는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동물, 축산물은 이동시키거나 공급, 판매할수 없다.

제35조(모임장소에서 동물의 검사)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판매, 품평회 같은 목적으로 동물이 모이는 경우 동물에 대한 전염성질병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동물이 모이는 장소에는 수의방역초소, 동물격리소, 오물처리장 같은 수의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6조(동물전염성질병발생시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은 동물전염성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험성정도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 인원과 운수수단, 동물, 동물먹이, 축산물 같은것의 이동을 금지시킬수 있다.

국경을 차단할 경우에는 내각, 일정한 지역을 차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7조(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동물전염성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수의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지방정권기관, 검찰기관, 인민보안기관 같은 기관의 일군으로 구성한다.

제38조(수의비상방역위원회의 권한)

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동물전염성질병을 없애며 그 전파를 막기 위한 수의방역조치를 취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수의비상방역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인원, 설비, 운수수단을 수의방역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다.

제39조(국경동물검역)

해당 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거나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물과 동물성물품, 그것을 실은 운수수단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제40조(인수공통성전염병의 방지)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미리 막으며 그것이 발생된 경우 즉시 보건기관에 통보하고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발생된 인수공통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보건위생학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수의방역사업에 대한 지도)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전국의 수의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수의위생방역월간)

국가는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3월과 4월, 9월과 10월을 수의위생방역월간으로 한다.

제43조(수의위생방역월간의 수의방역)

농업지도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방역월간에 계절적특성에 따르는 수의방역사업을 균중적으로 벌려야 한다.

제44조(수의방역조건보장)

수의방역기관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시료, 자료, 설비, 로력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방역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수의방역일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방역부문의 일군대렬을 질적으로 꾸려야 한다.

수의방역부문에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일할수 있다.

제46조(수의방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의방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의방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방역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수의방역질서위반조서)

수의방역기관은 수의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필요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48조(제품생산의 중지)

동물의 질병에 따르는 축산물가공, 사용,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제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49조(동물, 축산물의 이동, 도살, 공급, 판매의 중지 또는 몰수)

승인없이 동물, 축산물을 이동시키거나 도살, 공급, 판매할 경우에는 그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몰수할수 있다.

제50조(손해보상)

치료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기술적요구대로 관리하지 않아 동물을 죽게 한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축산업발전과 동물자원보호,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

주체87(1998)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1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제1장 수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1조(수의약품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의약품관리법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의 병진단과 예방, 치료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의약품의 생산, 공급원칙)

수의약품생산과 공급을 잘하는것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질 좋고 효능높은 수의약품의 생산을 늘이며 그것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3조(수의약품의 보관, 리용원칙)

수의약품보관, 리용은 수의약품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생산된 수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수의약품의 검정원칙)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의 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검정수단을 현대화하고 검정방법을 개선하며 수의약품검정에서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수의약품관리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수의약학을 발전시키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수의약품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제7조(수의약품생산계획의 작성)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은 수의약품관리사업의 중요내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약품의 생산기관)

수의약품은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생물약품은 수의연구기관, 목장 같은데서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수의약품의 규격)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수의약품규격을 제정,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수의약품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준수)

수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멸균과 랭동, 세척, 무균조작, 포장 시설 같은 수의약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의약품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야 한다.

수의약품생산장소와 기술공정은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제11조(수의약품의 포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수의약품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을 포장한 용기에는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붙여야 한다.

제12조(수의약품공급계획의 작성)

수의약품공급은 수의약품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량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수의약품공급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의약품의 공급)

수의약품은 먼저 생산한것부터 공급한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수의약품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것이 없는 수의약품은 공급할수 없다.

제14조(수의약품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수의약품수송은 정해진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의약품의 판매)

수의약품은 정해진 장소에서 판매할수 있다.

수의약품의 판매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지표와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한다.

제3장 수의약품의 보관, 리용

제16조(수의약품보관, 리용에서 기술규정의 준수)

수의약품을 잘 보관하고 그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수의약품의 효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하였거나 공급받은 수의약품을 기술규정대로 보관, 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약품의 보관시설)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수의약품을 보관할수 없다.

제18조(수의약품의 보관)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수의약품보관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19조(독약, 극약, 마약의 보관과 입출고)

수의약품으로 리용하는 독약, 극약, 마약은 따로 보관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약, 극약, 마약에 대한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의약품보관시설의 보수)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보관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수의약품보관장소는 깨끗한 환경위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21조(공급받은 수의약품의 리용)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을 약리작용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독약, 극약, 마약의 리용은 수의사가 직접 하거나 그의 립회밀에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별, 동물별에 따르는 수의약품리용방법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제22조(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의 리용)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은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한다.

자체로 생산한 수의약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3조(일반수의약품의 리용)

공민은 수의화학약품, 수의고려약품 같은 일반수의약품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의 병치료에 리용할수 있다.

일반수의약품이 아닌 수의약품은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리용한다.

제24조(사용할수 없는 수의약품의 처리)

수의방역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수의약품, 사용설명서가 없거나 약표가 떨어진 수의약품을 리용하지 말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수의약품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수의약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 약리적으로 안전하고 효능이 높은것으로 들여와야 한다. 이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수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수의방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의약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수의방역기관은 그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의약품의 검정

제27조(수의약품검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 준수)

수의약품의 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질종고 효능이 높은 수의약품을 생산, 리용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수의약품검정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의약품검정기관)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수의방역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도 수의약품검정을 할수 있다.

제29조(수의약품검정대상)

수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수의약품
2.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려는 수의약품
3.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
4. 사고 또는 사건조사심의를 위하여 제기된 수의약품
5.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수의약품
6. 그밖에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의약품

제30조(수의약품검정관할)

국가규격을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수의약품, 전문수의약품생산기관, 기업소에서 생산한 수의약품,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중앙수의방역지도기관이, 자체소비를 위하여 생산한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검정한 수의약품을 다시 검정할수 있다.

제31조(수의약품검정기준)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해당 나라의 수의약품규격에 따른다.

수의약품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한데 따라 검정한다.

제32조(수의약품검정의뢰)

수의약품검정은 수의약품검정의뢰에 따라 한다.

수의약품을 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검정의뢰문건과 시료를 내야 한다.

제33조(수의약품검정내용)

수의약품검정의뢰를 받은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유효성, 무균성, 순수성, 무독성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의약품검정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검열을 조직할수 있다.

제34조(수의약품의 판정)

수의약품검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의약품검정이 끝난 다음 판정문건을 작성하여 검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수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5조(불합격된 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판매, 리용금지)

수의약품검정에 합격되지 못한 수의약품은 생산하거나 공급, 판매, 리용할수 없다.

제5장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의약품관리사업에서 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의약품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검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수의약품관리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의약품의 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수의약품생산의 중지)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의약품을 생산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수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42조(손해보상)

수의약품의 공급, 수송, 보관을 정해진대로 하지 못하여 수의약품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의약품관리와 동물의 병진단, 예방, 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수 법

주체91(2002)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3호로 채택
주체99(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과수법의 기본

제1조(과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수법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일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과일나무모의 생산원칙)

과일나무모의 생산은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일나무의 그루바꿈에 필요한 나무모를 키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일나무원종을 보존, 개량하며 키가 낮고 심은 다음 인차 높은 수확을 거둘수 있는 과일품종을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제3조(과수원의 조성원칙)

과수원조성을 바로하는것은 과수부문의 경영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과수원조성을 과일생산에 유리한 토지에 과일나무를 밀식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전인민적인 과수원관리원칙)

과수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근로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과수원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과일의 수확, 포장, 저장, 가공원칙)

국가는 과일을 제때에 수확하고 포장을 규정대로 하며 저장시설과 가공공정을 더 잘 꾸리도록 한다.

제6조(과수부문 경영방법의 개선원칙)

국가는 과수부문에 대한 경영방법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생산의욕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7조(과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과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과일나무모의 생산

제8조(과일나무모생산의 기본요구)

과일나무모의 생산을 늘이는것은 과수업발전의 선결조건이다.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체계를 바로세우고 과수원조성과 그루바꿈면적에 따르는 과일나무모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9조(원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기관)

원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10조(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기관)

원종과일나무모의 생산은 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가 한다.

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는 원원종과일나무모를 해당 지역에 풍토순화시켜 수확고가 높은 원종과일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11조(과일나무모의 생산단위)

과일나무모의 생산은 농업과학연구기관과 과일나무원종생산기업소, 과일나무모생산기업소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도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일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다.

제12조(과일나무모생산토지의 보장)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일나무모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일나무모밭은 토양이 비옥하고 판수조건, 수송조건이 유리한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과일나무모생산계획의 실행)

과일나무모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어미나무밭, 접가지어미나무밭을 잘 가꾸며 과일나무모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과일나무모의 검사)

과일나무모에 대한 검사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해당 검사기관은 생산된 과일나무모의 굵기, 크기, 영양상태, 병해충감염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15조(과일나무모의 공급)

과일나무모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과일나무모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에서 합격된 과일나무모를 공급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급한 과일나무모에 대하여서만 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16조(과일나무모의 포장)

공급할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과일나무모의 포장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과수원의 조성

제17조(과수원조성의 기본요구)

과수원의 조성을 전망성있게 하는것은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특성과 과수업의 발전추세, 과일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과수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과수원의 조성계획)

과수원조성은 국가계획에 따라 한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원조성계획을 국가계획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19조(과수원의 설계)

과수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과수원조성지역의 기후, 토양, 경사조건을 조사분석하고 과일생산공정을 기계화하며 로력과 농약을 적게 쓰면서도 단위당 면적에서 과일생산을 늘일 수 있게 과수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과수원조성토지의 보장)

과수원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과일품종의 배치)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율과일과 늦과일품종을 배합하여 과일나무를 심어야 한다.
빈그루는 제때에 보식하여야 한다.

제22조(과수원시설의 건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에 농약창고, 비료창고, 약물탱크, 과일선별장, 과일저장고를 건설하며 사방야계공사를 질적으로 하고 관수시설, 물빼기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과일나무의 그루바꿈)

과일나무그루바꿈은 과일나무들이 퇴화된 과수원부터 단계별로 한다. 이 경우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비료시비의 기준)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그루바꿈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급비료와 화학비료, 소석회 같은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주어야 한다.
비료시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4장 과수원의 관리

제25조(과수원관리의 기본요구)

과수원의 관리는 과일나무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과 환경조건보장의 기본공정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과수원의 토양분석, 개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의 토양분석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성화된 토양, 랭습해를 받는 토양, 굳은 토양은 제때에 개량하여야 한다.

제27조(과수원의 지력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거름 같은 질 좋은 자급비료를 생산하여 과수원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제28조(과일나무의 가지자르기, 열매숙아주기)

농업과학연구기관은 과일나무의 특성과 영양상태에 맞는 가지자르기방법, 열매숙음방법을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앞선 가지자르기방법과 열매숙음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제29조(과수원의 김매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후치질, 땅뒤집기, 살초제치기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과수원의 김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수원의 병해충구제)

농업과학연구기관은 효율적인 병해충구제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바로세우고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구제하여야 한다.

제31조(앞선 과학기술의 도입)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관리에서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과수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제32조(사이그루작물의 심기)

어린 과일나무를 심었거나 그루바꿈을 할 과수원에는 키낮은 집짐승먹이작물을 심을수 있다.

결과원에는 거름작물만 심는다.

제33조(자연피해로부터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 황사, 큰물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과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복토, 벼짚싸주기, 석회물바르기 같은것을 하여 과일나무가 추위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과일수확과 처리

제34조(과일수확과 처리의 기본요구)

과일수확과 처리는 익은 과일을 따들이고 보관,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일수확과 처리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상수확량의 판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종, 품종에 따르는 과일나무당 평균수확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판정한 수확고는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과일수확의 시기)

과일수확은 과일이 익은 차례로 한다.

수송도중에 부패변질되기 쉬운 과일, 먼곳으로 수송하여야 할 과일은 익기 전에 수확할수 있다.

제37조(과일의 공급)

과일공급은 계약에 따라 한다.

계약한 과일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과일의 직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과일의 일부를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과일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일보관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과일의 부패변질을 막아야 한다.

실정에 따라 갯도식, 반지하식 같은 보관시설을 꾸리고 과일을 보관할수 있다.

제40조(과일의 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떨어진 과일, 허물진 파일로 단묵, 통졸임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판매된 파일가공품을 과일생산실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제41조(과일의 수송)

과일수송은 정해진 용기에 넣어 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생산된 과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42조(과일생산량의 장악)

과수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과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과일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량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3조(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수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4조(과수부문의 지도)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수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과수부문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과수부문의 과학기술적지도)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아래단위의 과수부문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과수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과수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과수부문에 필요한 토지, 로력, 자금, 농약, 비료, 포장재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과수부문의 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과수업발전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며 유능한 과수부문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과수부문 사업의 감독통제)

과수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수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일나무모의 생산, 과수원의 조성과 관리, 과일수확과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보상)

승인없이 과일나무를 찍었거나 또는 과수원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계약된 과일나무모나 과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손실, 부패변질시킨것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과수업발전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 약 법

주제95(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39호로 채택

제1장 농약법의 기본

제1조(농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은 농약의 검정과 등록,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필요한 농약을 생산보장하며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농약의 분류)

농약은 농작물과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를 없애며 농작물과 산림자원의 성장을 조절하는데 리용하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제품이다.

농약에는 살충제, 살균제, 살초제, 훼로몬제, 기피제, 식물성장조절제, 생물농약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농약의 검정, 등록원칙)

농약의 검정과 등록은 농약의 질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약의 검정, 등록체계를 세우고 검정, 등록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농약의 생산, 공급원칙)

농약의 생산과 공급을 바로 하는것은 농약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농약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그 질을 높이며 수요에 맞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5조(농약의 보관, 리용원칙)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약의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관관리하며 생물농약의 리용을 장려하도록 한다.

제6조(농약관리부문의 투자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농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농약의 검정과 등록

제8조(농약검정, 등록의 기본요구)

농약의 검정과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농약에 의한 사고를 막고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농약을 생산, 수출입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정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농약의 검정기관)

농약검정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분석설비가 갖추어진 과학연구기관도 농약검정을 할수 있다.

제10조(농약검정신청)

농약을 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에 검정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검정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정확히 밝히며 농약제품전본과 검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농약의 검정대상)

농약의 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농약
2. 생산, 수출입하는 농약
3. 농약사고 같은 사유로 조사심의하는 농약
4.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농약
5.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농약

제12조(농약의 검정기준)

농약의 검정은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농약의 검정은 해당 나라의 농약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규격이 없는 농약의 검정은 농약검정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3조(농약의 검정방법)

농약검정기관은 농약의 질검사와 성분함량분석, 기초활성분석, 포전효과검정시험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농약의 독성검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같은것은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제14조(농약검정결과의 통지)

농약검정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농약검정기관은 농약검정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농약의 등록신청)

농약의 등록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농약을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등록신청문을 내야 한다.

등록신청문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신청리유를 밝히며 농약검정문건과 견본품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결합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결합있는 농약등록신청문건을 돌려보낼수 있다.

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결함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7조(농약의 등록심의)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접수한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농약의 등록심의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등록할수 없는 농약)

등록할수 없는 농약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농약
2.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주는 농약
3. 국제적으로 리용이 금지된 농약
4.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

제19조(농약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농약은 국가농약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농약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농약은 공개한다.

제20조(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농약등록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6개월안으로 중앙농업지도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농약의 생산과 공급

제21조(농약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농약의 생산과 공급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약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농약의 생산,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2조(농약의 규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생산을 규격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약의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3조(농약의 생산허가)

농약의 생산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수 있다.
농약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환경보호시설, 위생조건 같은것을 갖추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4조(농약의 포장)

농약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정해진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용기에는 농약이름, 성분함량, 수량, 생산날자, 기업소 이름, 유효기간, 독성분류 같은것을 밝힌 상표와 검사증을 붙여야 한다.

제25조(농약의 공급)

농약의 공급은 공급계획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을 사용기간안에 공급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상표, 검사증이 없는 농약은 공급할수 없다.

제26조(농약의 수송)

농약을 수송하려는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의 특성에 맞게 수송수단을 갖추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농약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농약의 수출입)

농약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농약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농약의 보관과 리용

제28조(농약보관, 리용의 기본요구)

농약의 보관, 리용을 잘하는것은 생산된 농약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농약의 보관시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약보관시설을 주기에 따라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30조(농약의 보관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보관관리자를 정하며 농약을 종류별, 포장별로 갈라 보관하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은 따로 보관하며 농약을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시킬수 없다.

제31조(농약의 입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입출고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농약의 입출고정형을 정확히 기록하며 매월 실사하여야 한다.

제32조(농약의 리용)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도서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독성이 센 농약의 리용은 농약기술자의 립회밀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기술규정의 준수)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로동보호대책을 세우고 안전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임신한 녀성, 젖먹이어린이가 있는 녀성은 독성이 센 농약을 다룰수 없다.

제34조(농약의 리용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설명서가 없는 농약은 리용할수 없다.

제35조(독성위험의 표식)

독성이 센 농약을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장소에 독성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농약에 의한 환경피해방지)

농약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이 바다, 강, 호소, 우물 같은 곳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리용한 용기, 도구를 강, 호소, 물길 같은 곳에서 씻을수 없다.

제37조(농약에 의한 사고의 통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약리용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제때에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8조(농약의 회수처리)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용기일이 지났거나 유효성분함량과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지표들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 농약을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농약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농약관리사업의 지도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통제기관)

농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약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2조(손해보상, 벌금)

농약의 보관과 리용을 잘하지 못하여 손상, 분실시켰거나 농작물과 산림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3조(중지, 몰수)

검정, 등록을 받지 않은 농약을 생산, 공급, 리용하거나 수출입할 경우에는 생산, 공급, 리용, 수출입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농약을 몰수한다.

제4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농약관리사업과 농업생산, 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 산 법

주체84(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5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산법의 기본

제1조(수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산자원조성의 원칙)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오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제3조(수산물생산과 가공원칙)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세소어업을 옹계 배합하고 물고기잡이일수를 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수산물가공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한다.

제4조(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제5조(수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수산부문의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데 대한 원칙)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오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수산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산자원 조성

제8조(수산자원 조성계획의 작성)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9조(양어, 양식적지조사)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중앙수산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0조(양어, 양식육종)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11조(양어장, 양식장에 넣을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양어장에 넣는 새끼고기의 질과 량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양어, 양식방법)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먹이기지)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양어, 양식시설물과 자연어장의 조성)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 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 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자연어장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15조(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수산자원리용권)

양어장, 양식장의 수산자원과 자연어장에 따로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제16조(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 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산물생산과 가공

제17조(수산물생산과 가공의 기본요구)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18조(수산자원의 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9조(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에 맞게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고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제20조(어장분할)

어장분할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물생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어장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

제21조(어기, 어장예보, 어황통보)

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 물고기떼탐색을 잘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고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3조(양어장, 양식장에서 정보당 생산량제고)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4조(수산물생산량의 장악)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장악하여 국가계획기관, 중앙통계기관, 수산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25조(고기배무이)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고기배를 무어야 한다. 배무이계획이 없이는 고기배를 무을수 없다.

제26조(수산물가공계획의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가공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수산물의 선도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수 없다.

제28조(수산물보관시설의 현대화와 포장, 운반용기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산물의 종합적가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제30조(수산물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산자원보호

제31조(수산자원보호월간)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산자원보호조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 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제33조(수산자원보호구관리)

수산자원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34조(수산자원보호실태자료)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제한)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수 없다.

제36조(양어수역에서 물고기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이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의 채취금지, 낚시질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8조(갑문, 언제의 물고기길)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길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성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39조(저수지, 호소의 물관리)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의 오염방지)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짱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폐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제5장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바다작업, 생활조건의 보장)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산물의 수출)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해정착성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4조(고기배의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배등록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고기배를 빌려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길수 없다.

제45조(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금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6조(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의 이관)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 증식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48조(생산, 수출 중지, 피해보상, 몰수)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 수출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 수출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 어 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호로 채택
주체90(200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2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양어법의 기본

제1조(양어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은 양어수역의 관리와 물고기의 자원 조성, 생산, 자원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어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양어부문의 투자원칙)

양어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양어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며 양어수역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조(물고기자원조성의 선행원칙)

물고기자원의 조성은 양어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서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확고히 앞세우며 그것을 적극 늘여나 가도록 한다.

제4조(물고기생산의 정상화원칙)

양어를 발전시켜 물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물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물고기자원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물고기자원을 보호할데 대한 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물고기자원보호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양어과학기술발전원칙)

국가는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양어부문의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양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양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양어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륝지수역에서 물고기를 기르고 잡는 질서를 규제한다.

르지수역에서 조개류, 새우류 같은것의 양식도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양어수역의 관리

제9조(양어수역의 장악과 관리분담)

양어수역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양어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양어수역을 장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어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분담하여야 한다.

제10조(양어수역의 분류)

양어수역은 인공양어수역과 자연양어수역으로 나눈다.

인공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하기 위하여 건설한 인공수역이, 자연양어수역에는 양어를 할수 있는 하천, 호소, 저수지, 물웅덩이, 판개용물길 같은 자연수역이 속한다.

제11조(양어적지의 조사)

양어적지조사는 양어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은 지역별, 수역별에 따르는 양어적지조사를 진행하고 그 자료를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2조(큰 규모의 자연수역리용)

자연수역을 리용하여 양어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를 중앙양어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에는 해당 수역의 이름, 략도, 만수면적과 갈수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3조(중소규모의 자연양어수역리용)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양어수역리용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수역의 리용을 허가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양어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양어장의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천, 습지대, 물웅덩이 같은 양어에 적당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양어장을 건설하여야 한다.

양어장건설은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양어수역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을 양어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역의 크기와 용도, 물고기의 생태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6조(양어수역, 시설물의 보수정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의 생태조건에 맞게 양어수역과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은 물고기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물깊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양어수역토지의 리용)

양어수역토지는 물고기의 자연먹이생산기지이다.

양어수역토지에는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양어수역에서 최대만수때 물이 차있던 곳으로부터 물이 줄어들 때 생기는 땅이 속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토지를 물고기의 먹이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제3장 물고기자원의 조성

제18조(물고기자원조성계획의 작성과 시달)

물고기자원의 조성을 잘하는것은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어야 한다.

제19조(물고기자원조성에 대한 연구)

중앙양어지도기관과 양어과학연구기관은 물고기의 원종을 보존하며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생산성이 높은 물고기품종을 연구개발하여 양어장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물고기종류별에 따르는 앞선 사육방법과 물고기를 속성으로 자래울수 있는 먹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엄지, 후보엄지물고기관리)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어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엄지, 후보엄지물고기의 사육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새끼물고기생산을 늘여야 한다.

퇴화된 품종의 물고기는 먹이가 적게 들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품종의 물고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엄지, 후보엄지물고기는 등록한다.

제21조(새끼물고기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의 살아남는 률을 높이며 정해진 크기와 무게가 보장된 새끼물고기를 양어수역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새끼물고기공급)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좋은 새끼물고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새끼물고기생산기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끼물고기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물고기의 알낱이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 리로운 풀을 조성하거나 알반개를 띄워주는 것 같은 물고기의 알낱이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양어수역에 띄워놓은 알반개를 거두어가는 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24조 (연해물고기의 양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고기길로 유인하여 유리한 자연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염지물고기를 잡아 공업적방법으로 번식시키는 사업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물고기먹이보장)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여러가지 영양가높은 먹이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풀을 조성 또는 채취하거나 지렁이, 싸그쟁이, 미생물 같은것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물고기자연먹이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6조 (물고기자원조성량의 장악)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물고기자원조성량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자원조성량을 국가계획기관,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물고기생산

제27조 (정보당 물고기생산량제고)

물고기생산은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립체적으로, 집약적으로 길러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제28조 (물고기생산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수역면적당 물고기종류별자원조성량과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물고기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않고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를 생산할수 없다.

제29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단위)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생산은 양어기업소와 물고기자원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물고기자원을 조성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물고기생산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양어수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야 한다.

제30조 (물고기생산정형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정형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정형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물고기생산의 현대화, 과학화)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생산방법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생산한 물고기보관)

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잡은 물고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물고기는 공급할수 없다.

제33조 (물고기공급과 수송)

국가계획기관과 양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물고기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5장 물고기자원의 보호

제34조 (물고기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물고기자원을 보호하는것은 양어사업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물고기자원보호시기, 보호하여야 할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잡이도구와 방법 같은것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제35조 (물고기자원실태의 조사)

양어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물고기자원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물고기자원실태조사자료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양어수역에서 물고기 차단)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양어수역의 물을 뽑는 양수장은 양어수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하여야 한다.

제37조 (물고기자원보호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 수문 같은 곳에 물고기길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수문의 조작과 물고기길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고기길에서는 번식을 위하여 강과 바다로 오르내리는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제38조 (호소, 저수지의 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호소, 저수지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양어수역의 오염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미짱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폐설물 같은것을 양어수역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기름이 새어 물고기의 생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배는 양어수역에서 운영할수 없다.

제40조(낙시질질서준수)

양어수역에서 낙시질을 하려는 공민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6장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양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중앙양어지도기관의 임무)

양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양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양어지도기관은 전국의 양어사업을 정확히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물고기병에 대한 예방치료)

중앙양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양어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병과 그 예방치료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며 연구성과를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44조(미생물번식에 필요한 원료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미생물번식에 리용할수 있도록 집짐승 배설물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양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양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양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양어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양어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양어수역관리권의 박탈)

양어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양어수역을 바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관리권을 박탈한다.

제48조(물고기생산중지, 피해보상, 몰수)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물고기를 생산하였거나 물고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물고기생산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한 물고기와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물고기잡이도구는 몰수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양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계량, 규격, 품질감독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 량 법

주체82(1993)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64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계량법의 기본

제1조(계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계량법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믿음성을 보장하며 계량을 정확히 하여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계량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계량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한 계산과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계량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는다.

제3조(계량단위제정원칙)

계량단위는 계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가는 계량단위를 바로 정하고 통일시키도록 한다.

제4조(계량원기의 등록, 보호원칙)

계량원기는 계량단위를 유지, 재현, 전달하는 유일한 기준계량수단이다.

국가는 계량원기를 국보로 등록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계량수단의 생산, 공급원칙)

국가는 계량수단생산기지를 꾸리고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한다.

제6조(계량수단의 리용원칙)

계량수단을 바로 리용하는것은 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며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그것을 리용하여 제품의 질과 량을 판정하도록 한다.

제7조(계량수단의 검정원칙)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은 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일원화된 정연한 계량검정사업체계를 세우고 계량수단을 정상적으로 검정하도록 한다.

제8조(계량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계량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량수단을 연구개발하여 계량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9조(계량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계량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계량단위의 제정

제10조(계량단위제정기관)

계량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국제단위계에 근거하여 인민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단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제계량단위의 구성)

법제계량단위는 국가적인 유일한 계량단위이다.

법제계량단위에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유도단위, 민족계량단위인 정보 같은 것이 속한다.

제12조(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

법제계량단위의 기본단위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단위와 같다.

1. 길이단위는 《미터》이며 《m》으로 표시한다.
2. 질량단위는 《키로그램》이며 《kg》로 표시한다.
3. 시간단위는 《초》이며 《S》로 표시한다.
4. 전류의 세기단위는 《암페어》이며 《A》로 표시한다.
5. 온도단위는 《켈빈》이며 《K》로 표시한다.
6. 물질의 량단위는 《몰》이며 《mol》로 표시한다.
7. 빛의 세기단위는 《칸델라》이며 《cd》로 표시한다.

제13조(법제계량단위의 공포)

법제계량단위를 공포하는 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의 이름과 기호를 국가규격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제14조(계량단위의 통일)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법제계량단위를 쓰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계량단위를 통일시켜야 한다.

민족계량단위는 국가가 정한 부문에서만 쓴다.

제15조(비법계량단위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

제16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관리의 기본요구)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계량단위를 통일시키고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보관,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7조(계량원기의 등록신청)

계량수단을 계량원기로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중앙계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원기와 대비, 검정한 자료나 기타 기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양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8조(계량원기의 등록심의 및 증서발급)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원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것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등록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에 계량원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19조(계량원기의 폐기 또는 사명변경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계량원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한다.

1. 다시 회복할수 없을 정도로 정밀정확도가 떨어졌을 경우
2. 계량원기가 파손되어 원상복구할수 없을 경우
3. 이미 쓰던 계량원기를 새로운 계량원기로 교체하려 할 경우

제20조(계량원기의 폐기 또는 사명변경승인)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를 폐기하거나 그 사명을 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계량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량원기의 폐기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등록에서 삭제하고 증서를 회수하며 계량원기의 사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다시 등록한다.

제21조(표준계량수단의 구비)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단위의 전달을 위하여 표준계량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표준계량수단은 계량원기에 의하여 검정된것이어야 한다.

제22조(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

표준계량수단의 등록과 폐기, 사명변경의 심의결정은 계량검정감독기관이 한다.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계량원기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23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관리담당자)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검정감독기관이 보관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도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제24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유지)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담당자를 정하고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계량원기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옮길수 없다.

제25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대비, 검정)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국제계량원기나 다른 나라 계량원기와 주기적으로 대비, 검정하여야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대비, 검정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제26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리용)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은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만 쓴다.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일반계량수단으로 리용할수 없다.

제27조(표준물질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계량수단의 검정이나 계량대상의 분석 같은것을 할 경우 표준물질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표준물질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은것이어야 한다.

제28조(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을 계획적으로 보충갱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충갱신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계량수단의 생산

제29조(계량수단의 품종확대와 계획적인 생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계량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계량수단의 품종을 늘이며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계량수단의 생산허가)

계량수단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량수단의 생산허가절차와 방법은 제품생산허가법에 따른다.

제31조(제품의 질제고)

계량수단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현대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계량수단수리기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계량수단수리기지를 꾸리고 계량수단을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계량수단의 수리에 필요한 자금, 설비, 자재, 로력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계량수단의 수리허가)

계량수단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의 기술심의)

새로 개발한 계량수단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생산 또는 리용하여야 한다.

제35조(계량수단의 수입)

계량수단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문건과 기술자료, 견본품 같은것을 내야 한다.

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계량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입계약을 맺을수 없으며 가격승인, 반입수속 같은것을 할수 없다.

제36조(계량수단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

다음의 계량수단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단위가 표시된 계량수단
2.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계량수단
3. 기술적특성이 국가적요구나 용도에 맞지 않는 계량수단

제37조(계량수단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공정별에 따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은 설비와 공정은 운영할수 없다.

제38조(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감독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계량검정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계량수단은 검정을 받을수 없다.

계량수단을 폐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량검정감독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계량수단의 검정

제39조(계량수단의 장악과 검정)

중앙계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장악하고 그에 대한 검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40조(계량수단검정의 구분)

계량수단의 검정은 국가검정과 자체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국가검정은 계량검정감독기관이, 자체검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가검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계량수단의 검정대상, 주기, 형식, 방법)

계량수단의 검정대상과 주기, 형식, 방법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과학기술의 성과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량수단의 검정대상, 주기, 형식, 방법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42조(계량수단의 검정주기준수)

계량수단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 주기에 검정받아야 한다.

제43조(계량수단의 검정장소)

검정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해당 계량검정기관에 가져다 검정받아야 한다.

계량검정기관에 가져갈수 없는 계량수단은 현지검정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지검정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계량수단의 자체검정허가)

계량수단을 자체로 검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검정실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표준계량수단을 갖추며 중앙계량지도기관의 허가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45조(검정의 과학화)

계량검정기관은 검정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며 검정방법을 현대화, 자동화, 정보화하여야 한다.

제46조(검정결과와 계량검정일군의 책임)

계량수단의 검정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계량검정일군은 계량수단의 검정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47조(분쟁해결을 위한 검정 또는 기술적판정)

계량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계량검정기관은 의뢰에 따라 해당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 또는 기술적판정을 할수 있다.

제6장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계량사업에 대한 지도)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량지도기관은 계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계량정책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의 자격)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계량검정 및 감독일군에 대한 자격심사사업은 중앙계량지도기관이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는 계량검정 및 감독사업을 할수 없다.

제50조(계량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

계량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은 계량검정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계량검정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계량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하여야 한다.

제51조(계량수단의 회수)

다음의 경우에는 계량수단을 회수한다.

1. 승인없이 계량수단을 생산, 수입, 수리하였을 경우
2. 계량수단을 사장시켰을 경우
3. 사명과 용도에 맞지 않는 계량수단을 리용하는 경우

제52조(운영중지)

계량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사고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정의 운영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53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법제계량단위가 아닌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등록, 폐기, 사명변경, 리용질서를 어겨 계량단위의 유지, 재현, 전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계량원기와 표준계량수단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파손시켰거나 정밀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계량수단에 대한 검정을 되는대로 하여 계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등록 또는 검정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계량수단을 리용하였을 경우
6. 계량수단의 생산, 수입, 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지 않고 설비와 공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8. 계량수단의 눈금과 량을 비법적으로 고쳤거나 눈금과 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하였을 경우
9. 해당 자격이 없이 계량검정 또는 감독사업을 하였을 경우

제54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5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

주체86(1997)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8호로 수정보충

제1장 규격법의 기본

제1조(규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규격법은 규격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보장하며 경제와 문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규격의 종류)

규격은 사회경제적효과성을 최대로 내게 하는 합리적기준이다.

규격에는 용어, 기호, 표기방법, 설계기준, 관리기준, 안전기준, 위생학적기준, 환경보호기준과 제품의 품종, 형, 치수, 호수, 기본특성, 기술적요구, 시험법, 상표표식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규격의 제정원칙)

규격의 제정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 생산과 경영활동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수준과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회경제적효과성이 높은 규격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4조(규격의 적용원칙)

규격의 적용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규격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규격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제정된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제5조(규격의 통일성보장원칙)

규격을 일원화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규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규격의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규격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규격일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규격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규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규격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규격의 제정

제8조(규격제정의 기본요구)

규격의 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규격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제정대상을 바로 정하고 규격제정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규격의 분류와 규격제정기관)

규격은 적용범위에 따라 국가규격,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으로 나눈다.

국가규격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제10조(국가립시규격)

국가규격제정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술경제적지표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은 국가립시규격으로 제정한다.

국가립시규격의 제정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규격제정의 제외대상)

공예품, 수예품, 미술작품 같은것은 규격을 제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하여 기술지표를 만든다.

제12조(규격제정의 제한조건)

국가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다른 규격을,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이 제정된 경우에는 시(구역), 군규격이나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없다. 그러나 국가표준규격에 준하여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을 제정할수 있다.

제13조(규격초안작성)

규격초안은 규격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작성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대상의 규격초안은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직접 작성할수 있다.

제14조(새 제품생산,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규격의 초안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 제품의 생산, 새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규격제정대상이 있을 경우 규격초안을 작성하여 중앙규격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15조(규격의 심의)

국가규격은 비상설규격제정위원회에서 그밖의 규격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규격합평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16조(규격의 효력)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기업소규격은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이미 제정된 국가규격,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을 시(구역), 군규격으로 제정할 경우에는 도(직할시)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규격의 수정보충)

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규격의 수정보충은 해당 규격의 유효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제정에 필요한 자료보장)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제품 같은것을 정해진 기간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의 략호)

국가규격의 략호는 《국규》이며 그의 대외적인 표기는 《KPS》이다.

부문규격, 도(직할시)규격, 시(구역), 군규격, 기업소규격의 략호는 중앙규격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0조(규격의 공시)

규격지도기관은 새로 제정한 규격, 수정보충한 규격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규격의 적용

제21조(규격의 의무적적용)

규격의 적용은 사회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정된 규격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생활분야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생활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도록 과학, 교육, 문화, 보건, 환경보호사업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인민경제부문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부문사이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설계 및 기술규정의 작성, 가격과 물자소비기준, 로동정량의 제정, 품질검사, 제품생산, 자재공급 같은데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대외경제계약체결시의 규격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경제계약을 맺을 경우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규격을 적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규격이나 해당 나라의 규격을 적용할수 있다.

제25조(규격의 유효기간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의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규격은 적용할수 없다.

제26조(상품의 규격표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 또는 상표에 규격락호와 번호, 제정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규격락호와 번호, 제정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 판매할수 없다.

제27조(표준물질, 기준견본)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적용에 필요한 표준을 만들수 있다. 이 경우 적용범위에 따라 중앙규격지도기관 또는 해당 규격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4장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규격사업에 대한 지도)

규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국가의 규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규격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규격적용판정)

규격지도기관은 규격적용판정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규격적용판정사업에 필요한 조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제30조(규격합평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규격합평회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규격제정계획작성, 규격초안심의, 규격적용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규격의 대외반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 규격을 출판물로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규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규격제정과 적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규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

주체86(1997)년 7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보충
주체92(2003)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4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품질감독법의 기본

제1조(품질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품질감독법은 품질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그 질을 높이며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품질감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품질감독은 질 좋은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품질감독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3조(품질감독대상)

품질감독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생산하는 공업제품과 반제품, 수리가공품, 원료, 자재와 협동생산품
2. 벼,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과 남새,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토산물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4. 사회급양과 가내편의봉사부문, 부업경영에서 생산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목제품, 약기류 같은 제품
5. 보관, 판매, 공급, 수송과정에 있는 제품
6. 수출입상품
7. 제품의 용기와 포장, 상표상태

제4조(공정검사원칙)

공정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원료, 자재의 낭비를 없애며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생산공정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제품검사원칙)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제품검사를 현대화, 과학화, 컴퓨터화하며 제품검사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품질검정원칙)

품질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제품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질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품질검정을 객관적립장에서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7조(품질감독의 일원화원칙)

품질감독을 일원화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품질감독체계를 바로세우고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품질감독일군의 자격)

품질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품질감독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국가는 품질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품질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품질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공정검사

제10조(공정검사의 기본요구)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의 입하로부터 제품완성에 이르기까지 기술관리를 바로하도록 통제하는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별로 검사원을 배치하고 공정검사를 정해진 기준대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정검사에 대한 감독)

품질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공정검사를 바로하도록 엄격히 감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품질감독기관은 직접 공정검사를 할수 있다.

제12조(공정검사에 필요한 자료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월생산계획, 판매계획, 공급계획, 제품생산허가증과 공업도안, 제품규격, 설계도면 같은 기술문건, 견본품, 각종 지도서를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생산계획을 받지 못하였거나 기술문건, 견본품 같은것이 준비되지 않은 제품은 생산할수 없다.

제13조(공정검사기준문건과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공정검사기준문건과 생산공정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공정검사기준문건과 생산공정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공정실험분석실과 측정수단의 구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험분석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정검사에 필요한 측정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측정수단은 쓸수 없다.

제15조(공정검사의 분류와 방법)

공정검사는 원료, 자재검사, 기술공정검사, 완제품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개당검사, 전량검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발취검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16조(공정검사기준과 검사표시)

공정검사는 공정검사기준문건과 견본품에 준하여 한다.

검사가 끝난 반제품과 완제품에는 검사표시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반제품과 완제품은 다음 공정에 넘길수 없다.

제17조(제품검사신청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받은 제품을 등급별로 갈라놓고 제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제품검사신청서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생산날자, 검사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8조(합격된 제품과 상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에서 합격된 제품에 상표를 붙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쓸수 없다.

제19조(공정검사정형의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달마다 공정검사정형을 해당 품질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품질감독기관은 공정검사정형을 종합하여 상급품질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제품검사

제20조(제품검사의 기본요구)

제품검사를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을 평가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제품의 질과 량, 기술조건, 상표와 포장상태, 위생 및 안정성보장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제품검사의 기준)

제품검사신청서를 접수한 품질감독기관은 제품별검사기준문건과 견본품에 준하여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품별검사기준문건과 견본품이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제품규격이나 국제규격에 준하여 할수 있다.

제22조(검사기준이 없는 제품의 검사)

제품별검사기준문건과 견본품, 해당 제품규격이나 국제규격이 없는 제품에 대한 검사는 제품을 생산하기 전 생산자와 수요자가 합의한 기술문건에 준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로부터 제품의 질에 대한 담보서를 받는다.

제23조(제품의 검사방법)

제품검사는 발취검사와 전량검사, 선택검사의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조립하여 시운전하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이동검사를 할수 있다.

제24조(제품검사의 위임)

품질감독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품검사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이 경우 상급품질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위임에 의한 제품검사)

제품검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26조(제품의 질등급)

제품은 질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합격품, 불합격품으로 나눈다.

제품의 질등급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제27조(제품의 검사장소)

제품검사는 제품의 질과 량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 계량수단, 시운전조건, 조명, 온도, 습도 같은것이 보장된 장소에서 한다.

제28조(제품의 검사시료)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수 있다.

경우에 따라 시료채취를 품질감독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정검사원, 시료채취공, 분석공도 할수 있다.

제29조(제품의 재검사)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다시 할수 있다.

제30조(제품검사도장)

제품검사를 한 제품에는 검사도장을 찍는다.

검사도장의 형식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1조(제품검사용지서, 품질증명서)

품질감독기관은 제품검사가 끝난 다음 제품검사용지서와 품질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제품의 출하검사와 그 확인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제품을 출하하려 할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출하하는 제품의 질과 량, 포장상태, 수송기재상태, 판매, 공급 대상 같은것을 확인하고 출하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생산실적확인,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고 판매가 실현된 제품에 대하여서만 생산실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검사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따로 정한 제품에 대하여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사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5조(수송, 보관, 판매,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품질감독기관은 수송, 보관, 판매, 공급하고있는 제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나타난 결함은 위반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36조(평가된 제품의 등록)

국가는 제품검사에서 평가된 질이 높은 제품을 2월2일제품으로 등록한다.

2월2일제품의 등록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이 한다.

제37조(비상설품질감독3인조)

국가는 품질감독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중요기업소와 시(구역), 군에 비상설로 품질감독3인조를 둔다.

품질감독3인조는 정권기관 일군, 품질감독기관 일군, 기업소기술일군으로 조직한다.

제4장 품질검정

제38조(품질검정의 기본요구)

품질검정은 제품의 질상태를 검토하여 사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품질검정기관은 생산한 제품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질검정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9조(검정방법)

품질검정은 정기검정과 수시검정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검정은 품질감독기관이 정한 대상과 주기, 방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하며 수시검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품질감독기관의 의뢰 또는 품질검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한다.

제40조(품질검정의 관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감독기관이 정한 검정대상과 주기에 따라 생산제품과 수출입상품에 대한 품질검정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정은 기관등록을 한 정권기관이 있는 지역의 품질검정기관에서 받는다.

제41조(품질검정의 신청)

품질검정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시료와 품질검정신청서를 품질검정기관에 내야 한다.

품질검정시료는 품질감독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동으로 채취하고 봉인한다.

필요에 따라 품질검정시료를 품질검정기관이 직접 채취할수 있다.

제42조(현지검정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기관에 현지검정을 의뢰할수 있다.

현지검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품질검정통지서와 재검정의뢰)

품질검정기관은 품질검정이 끝난 다음 품질검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품질검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품질검정을 다시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정을 철회할수 있다.

제44조(공증시험과 품질인증기호)

품질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품질인증을 위한 공증시험을 할수 있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품질인증기호를 붙인다.

제5장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집체적지도를 보장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비상설품질감독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46조(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의 임무)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은 품질감독체계를 세우고 생산공정과 생산제품, 수출입상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검정,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품질감독조건보장)

품질감독기관은 품질감독에 필요한 기술일군과 자료, 설비 같은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감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질제고대책월간)

국가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질제고대책월간을 정한다.

질제고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9조(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품질감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위반조서)

품질감독기관은 공정검사와 제품검사, 품질검정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조서를 받을수 있다.

위반조서에는 이름, 직장직위, 위반내용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51조(생산의 중지)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생산환경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원료, 자재의 질적지표를 보장하지 못하여 오작품, 불합격품을 계속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52조(제품의 출하중지)

상표 또는 포장상태가 불비하거나 검사표시가 없는 제품, 불합격품, 검사받지 않은 제품, 공구, 지구가 없는 제품과 수송기재가 어지러운것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출하를 중지시킨다.

제53조(생산실적평가의 제외)

제품검사기준문건과 시험분석수치를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54조(제품 또는 금액의 회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출하하였거나 불합격품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 또는 제품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

제55조(손해보상)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6조(보상, 회수금액의 집행방법)

보상시키거나 회수하는 금액의 집행은 품질감독기관이 발급한 통지서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린 금액의 집행은 은행기관이, 개별적일군에게 물린 금액의 집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책임자가 한다.

제5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품질감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

주체91(2002)년 7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25호로 채택
주체95(200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제품생산허가법의 기본

제1조(제품생산허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제품생산허가제의 실시원칙)

제품생산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정해진 제품에 대하여 생산허가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원칙)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게 제품생산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제품생산허가신청의 원칙)

제품생산허가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신청절차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개선완성하도록 한다.

제5조(제품생산허가심의원칙)

제품생산허가심의를 규격 또는 설계의 요구에 따르는 제품생산의 기술준비,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과학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제품생산허가사업의 조건보장원칙)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제품생산허가기관)

제품생산허가는 대상에 따라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과 부문제품생산허가기관,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이 한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제품생산의 허가대상

제9조(제품생산허가대상에 속하는 제품)

제품생산허가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제품생산허가대상에는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제약공업 같은 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하는 가공제품이 속한다. 그러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 제철성을 띠지 않는 제품과 시(구역), 군에서 자체로 규격, 가격을 정하고 생산하는 제품,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비규격제품은 생산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10조(제품생산허가대상의 구분)

제품생산허가대상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 나눈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의 요구, 해당 제품의 중요성,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

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 사회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제12조(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한 제품생산허가대상가운데서 인민경제 부문별로 해당 제품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여야 할 제품은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제13조(도, 직할시 제품생산허가대상)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과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직할시)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제14조(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승인 또는 합의)

제품생산허가기관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

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통지)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제품생산의 허가신청

제16조(제품생산허가신청사유)

제품생산허가신청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하거나 생산허가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 할 경우에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신청은 질지표 또는 원단위소비기준이 갱신되었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제17조(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작성)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은 제품별로 작성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는 제품의 기술적특성자료, 성능시험자료, 품질검정통지서, 위생학적담보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8조(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대한 확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해당 품질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제품생산의 기술준비와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제19조(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상급기관을 통하여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에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에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직접 낼수도 있다.

제20조(견본품의 제출방법)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의 견본품을 함께 내야 한다.

질량이 무겁거나 부피가 큰 제품의 견본품은 사진 또는 설계도면으로 대신할수 있다.

제21조(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등록)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날자, 제품명,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같은것을 밝힌다.

제22조(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수정)

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제품생산허가기관은 그것을 해당 기

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내여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결함을 고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23조(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으로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돌려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친 문건을 접수한 날을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로 한다.

제4장 제품생산의 허가심의

제24조(제품생산허가심의기간)

제품생산허가심을 정확히 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을 정해진 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새 심의와 재심의)

제품생산허가심의를는 새 심의와 재심으로 나누어 한다.

새 심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 재심의를는 제품의 생산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 한다.

제26조(제품생산허가심의내용과 방법)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에서 생산공정, 건본품의 특성, 생산기술준비정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산공정과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는 생산현장에서 한다.

제27조(심의의 위임, 의뢰와 회보)

제품생산허가기관은 건본품의 특성과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를 품질감독기관, 품질검정기관, 과학연구기관 같은 해당 기관에 위임하거나 의뢰할수 있다.

심의를 위임 또는 의뢰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심의를 바로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제품생산허가심의 위원회를 조직한다.

제28조(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와 보장)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품생산허가를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의 검토승인, 부결)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기일)

제품생산허가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30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

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은 5년까지, 부문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은 3년까지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규격, 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림시제품생산허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제품에 대하여 림시제품생산허가를 줄수 있다.

림시제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5장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생산허가대상제품의 계획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생산허가증을 받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서만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35조(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허가사업을 바로하여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며 같은 제품을 여러 단위에서 제가끔 생산하면서 제품의 질을 떨구거나 로력, 자재, 자금, 전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생산허가증발급정형자료의 제출)

부문,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은 분기마다 생산허가증발급정형을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에 문건으로 내야 한다.

제37조(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해당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는 취소된다.

제38조(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금지사유)

국가계획기관과 품질감독기관, 가격제정기관, 통계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에 대하여서는 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9조(감독통제기관)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생산, 출하의 중지, 벌금부과, 생산허가취소사유)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허가증에 밝혀진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를 중지시키며 벌금을 물리거나 생산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제품생산허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

주체97(2008)년 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4호로 채택

제1장 상품식별부호법의 기본

제1조(상품식별부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유통을 정보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상품식별부호사용의 장려원칙)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에 기계로 인식하여 처리할수 있는 선부호 또는 무선주파수 식별부호 같은것으로 표기한것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유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며 그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3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원칙)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원칙)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을 바로하는것은 상품유통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유일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보급, 물질기술적도대강화)

국가는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물질기술적도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상품식별부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품식별부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 등록

제8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의 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 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기업의 특성, 식별하려는 상품 같은것을 밝히며 기관등록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전자우편, 팩스 같은 통신 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11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발급)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12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변경)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 같은것을 밝힌다.

제13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재발급)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제14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서 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의 삭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에서 삭제한다.

제3장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

제16조(상품식별부호제정과 사용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기본내용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사용부문과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하며 자기의 상품식별부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식별번호의 제정)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 수만큼 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항목별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여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이 직접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여 줄수 있다.

제19조(항목별상품식별부호 및 기초자료의 제출)

제정한 항목별상품식별부호는 자체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식별항목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항목별상품식별부호의 등록, 보관)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접수한 항목별상품식별부호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상품식별부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부는 2중 또는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상품식별부호의 제작기관)

상품식별부호의 제작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정한 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도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할수 있다.

제22조(상품식별부호의 제작)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는 기관, 기업소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제작할수 없다.

제23조(상품식별부호의 표기)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이 한다.

제24조(상품식별부호의 검사)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필요한 검사수단을 구비하고 년에 1차이상 상품식별부호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결과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의 구비)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 같은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반환)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알리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삭제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금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에서 삭제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삭제된 사용자식별번호를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제29조(항목변경의 신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제4장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장려하며 사회주의상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1조(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2조(상품식별부호체제와 기술 및 그 응용분야의 제정공포)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체제와 상품식별부호기술 및 그 응용분야를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상품식별부호자료기지봉사)

상품식별부호등록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34조(상품식별부호사업료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35조(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자등록과 제정, 제작, 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벌금, 손해보상)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품식별부호를 위조 또는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7조(중지, 몰수)

상품식별부호제작에서 국가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작한 상품식별부호를 램발하였거나 승인없이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제작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제작에 리용된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제3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품식별부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39조(분쟁해결)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주체96(2007)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5호로 채택

제1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기본

제1조(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은 열설비와 내압설비의 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에너르기량을 없애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열 및 내압설비의 정의)

열 및 내압설비는 열을 생산, 리용하거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설비와 장치물이다.

열설비에는 보일러, 공업로, 증기발생장치, 펌 동기, 증기타빈, 기름가열기, 열관 같이 열을 생산, 리용하는 설비와 장치물이, 내압설비에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내압탱크, 내압병, 압축기, 산소-수소발생기, 폭발성가스취급시설 같은 것이 속한다.

제3조(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원칙)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을 현대화하며 감독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감독관할)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모든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 또는 관할부문의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한다.

제5조(열내압설비감독일군)

열내압설비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원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제6조(열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대상)

이 법은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당 감독기관에 적용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대상

제9조(감독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대상을 바로정하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 제작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설계기관과 공장에서 설계, 제작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1조(합의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합의를 받고 열 및 내압설비를 설치, 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2조(설치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3조(등록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하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4조(보수주기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보수주기를 지키는가를 감독한다.

제15조(기술문건을 갖추지 않은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설비경력서, 사용지도서를 비롯한 기술문건을 정확히 갖추고 담당제를 실시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제16조(기술검사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기술검사 받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제17조(이관, 폐기질서를 어긴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이관, 폐기질서를 지켰는가를 감독한다.

제18조(운전질서를 어기는 행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자격이 없는자가 열 및 내압설비를 운전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제3장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

제19조(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바로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기술검사의 대상)

새로 제작, 수입,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제작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작검사는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수입설비에 대한 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1조(의무적기술검사)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수입하였거나 설치, 개조, 보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열 및 내압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제22조(기술검사기준의 작성)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의 작성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검사의 신청)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신청서를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검사신청서에는 기관이름, 설비이름, 능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기술검사기간)

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15일안으로 검사대상을 료해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작검사)

제작검사는 새로 생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제26조(설치검사)

설치검사는 새로 설치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검사기준에 따라 한다.

제27조(정기검사)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되었거나 보수, 개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보수, 개조공정에 따르는 공정검사에 기초하여 개조설계도면, 검사기준에 따라 한다.

제28조(설비의 공정검사)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도입하여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자체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0조(기술검사증의 발급)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어 운영을 승인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증을 발급한다.

기술검사증에는 검사유효기간을 밝히고 검사도장을 찍는다.

새로 생산한 내압병에는 기업소이름, 제작검사날자를 밝힌 쇠도장을 찍는다.

제31조(기술검사로금)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료를 물어야 한다.

기술검사로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감독방법)

운영중에 있는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으로 나누어 한다.

집중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제33조(위반조서의 작성)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위법자의 신분관계, 단속날자, 위법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34조(감독사업조건의 보장)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

제35조(감독결과 처리의 기본요구)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는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어긴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대책적의견의 제기)

열 및 내압설비를 감독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설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위법행위의 심의결정)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는 30일안으로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제38조(중지)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이관, 개조, 수입하여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거나 또는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39조(손해보상)

열 및 내압설비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0조(벌금)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겨 연료와 열, 동력을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1조(몰수)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수입, 판매하였거나 불량한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돈을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품목록을 작성한다.

제4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 관리운영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3조(신소의 제기)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주체 85(199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6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 88(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12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2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수출입상품검사법의 기본

제1조(수출입상품검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워 수출입상품의 질과 량을 담보하고 무역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수출입상품검사대상)

수출입상품검사는 계약에 따라 다른 나라로 내가지나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상품, 다른 나라로 내가지 않으나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다.

집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증계 및 통과화물에 대한 상품검사도 할수 있다.

제3조(수출입상품검사의 신청원칙)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상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수출입상품검사의 객관성, 정확성보장원칙)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수출입상품검사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이 한다.

국가는 수출입품검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수출입상품검사기준의 준수원칙)

수출입상품검사기준을 준수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를 검사기준에 엄격히 준하여 하도록 한다.

제7조(수출입상품검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수출입상품검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

제8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정확히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당사자)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은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은 무역기관이 한다.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의 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의 제기, 검토확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수출입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 수출입상품의 품명과 판매자, 구매자, 수량, 품질, 포장조건, 품질보증기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접수한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상품검사료금)

수출입상품의 검사신청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검사료금을 물어야 한다.

배의 선창을 검사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검사료금을 문다.

선창검사는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제12조(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동포의 수출입상품검사신청)

다른 나라 법인, 공민과 해외조선동포도 필요에 따라 상품검사, 선창검사신청을 할수 있다.

제3장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

제13조(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의 검사방법을 개선하는것은 수출입상품검사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정해진 수출입상품검사방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14조(수출입상품검사장소)

수출입상품검사는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상품을 공급,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한다.

반드시 검사하여야 할 수출입상품에 대하여서는 무역항, 국경역,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 같은 수출입상품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한다.

제15조(생산단위에서의 수출상품검사)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출상품검사는 완제품검사와 출하검사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상품의 질과 수량,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은 수출상품생산실적으로 평가하거나 출하할수 없다.

제16조(수입상품의 검사)

수입상품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수입상품검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질,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철도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수출입상품을 싣거나 부리는 철도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화차의 위생상태와 봉인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상품의 적재, 포장상태와 수량도 확인한다.

제18조(무역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무역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상선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상품의 적재, 포장상태와 따로 정한 상품의 질과 수량을, 상선검사는 보관된 수출상품가운데서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가 있을수 있는 상품의 질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선창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창상태를 검사한다.

포장하였거나 개수화물로 된 수출입상품의 수량확인은 무역품검수기관의 검수결과에 준한다.

제19조(국경역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경역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도착검사와 통과검사로 나누어 한다.

도착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 상품의 적재 및 포장상태, 부패변질될수 있거나 사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품과 수입하는 산적화물의 질, 옮겨싣거나 부리는 포장된 상품의 수량을, 통과검사는 화차의 봉인상태와 외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산적화물의 질량확인은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된 국제련운사무기관의 검량결과에 준한다.

제20조(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의 수출입상품검사)

국제항공역, 국경인수도지점에서 수출입상품검사는 상품의 포장상태와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패변질될수 있는 상품과 사고가 생긴 상품의 질상태도 확인한다.

제21조(포장, 봉인의 철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지점에서 수출상품을 포장하거나 수입상품의 포장을 뜯으려 할 경우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밀에 하여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없이 화차, 선창에 봉인을 하거나 그것을 뜯을수 없다.

제22조(검사증서발급, 검사확인)

수출입상품검사가 끝나면 해당한 검사증서를 발급하거나 검사확인을 하여 준다.

검사증서가 없는 수출입상품은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23조(수입상품의 사고감정)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입상품의 사고에 대하여 감정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감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증명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준하여 해당한 손실을 보상받아야 한다.

제24조(감정한 상품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로 감정된 수입상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출입품검사기관과 무역기관의 합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내용과 맞지 않아 사용할수 없는 수입상품은 돌려보낸다.

제25조(기술감정, 실험분석의 의뢰)

수출입품검사기관은 필요에 따라 수출입상품의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기술감정과 실험분석을 의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정해진 기일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내용, 보상받은 정형의 통지)

무역기관은 수출한 상품에서 생긴 사고내용과 수입상품사고로 보상받은 정형을 수출입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한 상품의 사고원인을 제때에 해명하여야 한다.

제27조(세관과의 관계)

수출입품검사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에서 해당 세관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세관은 수출입상품검사를 받지 않은 상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기

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지도)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수출입상품검사조건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검사에 필요한 시간, 장소, 계량수단, 분석용시료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수출입상품검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입상품검사정형을 정확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중지 또는 회수)

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입상품을 결제, 수송, 공급,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회수할수 있다.

제3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수출입상품검사에 지장을 주었거나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잃었거나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

주체86(1997)년 7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43호로 수정보충

제1조(국경동식물검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동식물검역법은 국경에서 동식물검역질서를 엄격히 세워 동물검역전염병과 식물검역병해충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동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경동식물검역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경동식물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가는 국경동식물검역체계를 바로세우고 검역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국경동식물검역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동식물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국경동물검역전염병)

동물검역전염병은 국제동물검역전염병과 지정동물검역전염병이다.

국제동물검역전염병에는 국제수의기구가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지정동물검역전염병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동물전염병과 기생충병이 속한다.

제5조(국경식물검역병해충)

식물검역병해충에는 아직 분포되어있지 않거나 또는 일부 지역에만 분포되어있으면서 농작물을 비롯한 식물자원에 심한 피해를 주는 식물병해충 같은것이 속한다.

식물검역병해충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조(국경동물검역대상)

국경동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짐승, 새, 물고기, 조개, 게, 벌레 같은 동물과 그 표본
2. 고기, 알, 꿀, 젖, 발족, 장기, 피 같은 동물성산물

3. 털, 가죽, 뿔, 누에고치 같은 동물성생재료
4. 동물의 정액, 수정란, 종자알, 누에종자, 수정 또는 배자단계의 물고기알
5. 수의약품, 동물병원성미생물균주, 동물성약재
6. 동물먹이와 그 첨가제
7. 동물과 동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동물운반에 이용된 깔판, 포장재, 관리 도구
8. 다른 나라에서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7조(국경식물검역대상)

국경식물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식물과 그 표본
2. 식물의 종자 또는 번식재료
3. 알곡, 남새, 과일, 공예작물, 약초, 산나물, 바다나물, 목재, 꽃 같은 식물성 산물
4. 농약, 식물병원성미생물균주, 식물기생곤충표본
5. 식물성물품을 실은 운수수단, 식물성물품을 다루던 도구, 식물성물품포장재
6. 다른 나라에서 식물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제8조(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성미생물과 해충 같은 동식물에 해로운 유기체
2.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진 나라에서 들어오는 동식물검역 대상
3. 개인이 가지고 다니는 생고기와 생알
4. 동물의 사체
5. 토양

제9조(국경통과가 금지된 동식물검역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낼수 없는 검역대상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해당한 처리를 할수 있다.

우리 나라로 들어올수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을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국경 동식물검역장소)

국경 동식물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국, 국경도로경계 점 같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그러나 산 동물, 종자알, 씨앗 같은것은 검역장이나 검역포전에서, 수출품은 생산지나 출하지에서 검역할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지정된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곳에서도 동식물검역을 할수 있다.

제11조(국경 동식물검역시간)

우리 나라에 들어온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그것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 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나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은 해가 뜬 다음부터 지

기 전까지의 사이에 검역한다.

다른 나라로 내가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제12조(국경 동식물검역요구조건 합의신청서의 제기)

동식물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약을 맺기 전에 검역요구조건 합의신청서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경유를 받아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계약당사자와 합의할 내용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국경 동식물검역신청의 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서를 해당 국경검역기관에 내야 한다.

검역신청서는 수입하는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수출하는 검역대상이 생산지나 출하지 또는 마지막국경통과지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낸다.

제14조(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그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이 한다.

대리업무를 맡은 기관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5조(무역품이 아닌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무역품이 아닌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집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한다.

집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검역대상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검역대상의 검역신청)

운수수단과 그에 실려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신청은 운수수단의 책임자가 한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국경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7조(무역,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들어오는 검역대상의 검역)

무역이나 기증, 과학기술교류 같은 형식으로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한다.

애완용, 관상용, 교예용 같은 동물에는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전염병예방접종증명서와 동물건강진단서가 없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에서 예방접종과 진단을 받고 해당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운수수단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열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의 손님칸, 승무원칸, 짐칸, 취사장, 식료품창고 같은 곳을 검역하며 필요한 문건을 보거나 복사, 발취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품의 검역)

수출입품에 대한 국경동식물검역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의 지령에 따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지령에 따라 동식물검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중계, 통과수송하는 검역대상의 검역)

중계수송하거나 우리 나라를 통과하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은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동물 또는 식물검역증을 확인하고 운수수단과 화물의 외부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1조(개인소지품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려행자나 운수수단의 승무원이 가지고 다니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려행자나 운수수단의 승무원은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확히 받아야 한다.

제22조(운수수단에 실는 봉사물자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려행자나 승무원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실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

검역에서 합격되지 못한 동식물검역대상은 운수수단에 실을수 없다.

제23조(동물검역전염병, 식물검역병해충발생지에서 들여오는 운수수단, 물품의 검역)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검역전염병 또는 식물검역병해충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여오는 운수수단이나 물품에 대하여 검역할수 있다.

제24조(검역시료의 채취)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할수 있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5조(검역을 끝내는 시간, 예비검역, 도착지검역)

국경검역기관은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한다.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동식물검역대상에 대한 검역을 정해진 시간에 끝낼수 없을 경우에는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에서 완전검역을 할수 있다.

산동물, 종자알, 씨앗, 묘목 같은 검역대상은 국경검역기관에서 예비검역을 하고 도착지 해당 방역기관에 넘겨 완전검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역기관은 검역결과를 국경검역지도기관과 중앙방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검역을 받지 않은 검역대상의 이동금지)

검역을 받지 않은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없이 지정된 장소를 옮길수 없다.

제27조(국경동식물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한다.
2. 동물검역전염병에 걸린 동물과 접촉한 대상을 돌려보내거나 격리, 소독한다.
3. 동물검역전염병에 오염된 동물성물품을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거나 용도를 변경시킨다.

제28조(국경식품검역에서 제기된 대상의 처리)

국경검역기관은 식품검역병해충에 오염되었거나 잡초씨가 섞인 식물성물품에 대하여 돌려보내거나 소각, 소독하며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9조(검역증, 검역처리통지서의 발급)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진행하고 합격된 대상에 대하여 검역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돌려보내거나 도살, 매몰, 소각, 소독, 용도변경 같은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국경동식물검역에서 해당 기관과의 연계)

국경검역기관은 세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이나 검역이판통지서가 없는 동식물검역대상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제31조(운수수단에서 오물, 오수의 처리)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을 전파시킬수 있는 오물, 오수를 마음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물, 오수를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소독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32조(국경동식물검역조건보장)

국경검역기관은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동식물검역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국경검역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검역료금)

국경 동식물검역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한 검역료금을 물어야 한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4조(국경통과의 금지 또는 제한)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동물검역전염병이나 식물검역병해충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과지점에서 인원의 류동과 검역대상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35조(국경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반출입한 검역대상의 퇴송, 몰수 또는 억류)

국경 동식물검역질서를 어기고 동식물검역대상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억류 또는 몰수한다.

제3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들의 건강보호에 지장을 주었거나 동식물자원에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주체85(199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호로 수정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

제1조(국경위생검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경위생검역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원, 운수수단,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국경위생검역전염병의 종류)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은 국제검역전염병과 지정검역전염병이다.

국제검역전염병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전염병이, 지정검역전염병에는 중앙보건지도기판이 공포하는 전염병이 속한다.

제4조(국경위생검역대상)

국경위생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인원
2.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
3.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
4. 의약품, 혈액 및 혈장
5.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6. 다른 나라에서 위생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7. 시체를 넣은 관
8.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어오는 물품

제5조(국경검역기관의 임무)

국경위생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검역대상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제6조(국경위생검역장소)

국경위생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경도로경계점 같은 국경 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수단이 도착한 곳에서 할수 있다.

제7조(국경위생검역시간)

국경위생검역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운수수단이나 도보여행자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에 대한 위생검역은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운수수단이나 도보여행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제8조(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통보)

해당 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예정시간, 운수수단의 명칭과 국적, 승무원수, 위생상태, 적재화물이름과 수량, 출발한 나라이름 같은것을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9조(입국시 검역증명서소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출국시 검역증명서발급)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필요한 검진과 해당 나라의 역학상태에 따르는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수 없다.

제11조(입출국하는 운수수단의 국경위생검역문건)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는 취잡이증명서, 취잡이면제증명서 같은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전염병환자, 사망자의 통보와 그 처리)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서 전염병환자나 원인을 알수 없는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곧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국경검역기관은 즉시 현지를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국경위생검역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국경검역기관에 위생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위생검역신청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 및 수입하는 나라이름, 수송방법, 국경통과지점, 도착 또는 출발예정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인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공민과 외국인의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여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 소지정형을 확인하고 건강신고서에 따라 건강상태를 검진하여야 한다.

검역증명서, 건강상태확인이 끝난 다음 해당 손집을 검사한다.

제15조(운수수단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운수수단의 책임자에게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물어보고 승무원들의 건강상태와 승무원실, 식당, 취사장, 창고, 위생실 같은 곳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6조(출항위생검역증)

다른 나라로 나가려는 우리 나라 배는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다음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는다.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은 배는 출항할수 없다.

제17조(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승인없이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부릴수 없다.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없이 오르내린 인원과 싣고부리운 물품은 위생검역을 받는다.

제18조(물품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물품에 대한 위생검역은 필요한 검역문건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국경위생검역과정에 취하는 조치)

국경검역기관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격리시킨다.
2.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며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품을 소독 또는 매몰하며 그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돌려보낸다.
4. 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를 해부 또는 화장한다.
5.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예방접종 및 치료사업을 한다.
7. 위생검역이 끝날 때까지 해당 운수수단을 감시한다.

제20조(국경위생검역증명서발급시기)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이 끝난 다음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처리대상에 대하여서는 위생처리가 끝난 다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수수단에 오르는 작업인원과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작업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오르는 인원과 운수수단에 싣는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출국하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 외국인에 대한 국경위생검역)

우리 나라에서 나가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이나 외국인에 대한 위생검역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제23조(운수수단에서 오물 또는 오염된 물품의 처리)

우리 나라에 들어온 운수수단에서는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위생처리를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제24조(국경위생검역조건보장)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과정에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위생검역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역)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을 받은 대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위생검역을 끝낼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수 있다.

제26조(국경위생검역료금)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7조(국경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의 금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2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인민봉사, 건설, 도시 경영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상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3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1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사회주의상업법의 기본

제1조(사회주의상업법의 사명)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이며 그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상업법은 상업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을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상품공급원칙)

국가는 상품공급에서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여 상품에 대한 수요를 생산에 정확히 맞물리고 생산된 상품을 제때에 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제3조(상품원천조성과 확보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상품원천을 조성하며 수매, 가공사업을 강화하고 상품예비를 동원하여 더 많은 상품을 확보하도록 한다.

제4조(봉사원칙)

국가는 봉사혁명을 힘있게 벌려 상업조직과 기술, 봉사방법을 개선하고 상업시설의 현대화,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5조(상업관리원칙)

국가는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상업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상품류통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상품류통사업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점차 완전한 공급제에로 넘어가도록 한다.

제7조(상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품공급

제8조(상품공급의 기본요구)

상품공급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에 맞게 상품을 확보하고 공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품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이 골고루 차례지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의 정상적공급)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에 맞물리고 상품의 확보와 지역간 교류를 잘하며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정확히 인수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주문제)

상품공급은 주문제에 의한 공급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입, 분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 수입하여 해당 단위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의 분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상품 총량을 넘겨받아 상품을 도(직할시)별로 분배하며 도(직할시)정권기관은 그것을 시(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본위로 상품분배단위를 내올수 없다.

제12조(상품공급계약)

상업 및 상품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생산, 수입된 상품에 대한 인수 및 출하는 상품공급계획에 따라 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생산, 수입된 상품을 소매상업기관, 기업소가 직접 인수할수도 있다.

제13조(식료품공급)

지방정권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기지를 꾸리고 생산한 원료원천으로 여러가지 식료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산물의 공급)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공급용수산물을 넘겨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제15조(상비상품공급)

국가계획기관과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가 정하여준 일용잡화, 건재상품, 농촌상점에 갖추어놓아야 할 상품 같은 상비상품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비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어린이용상품공급)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품생산 및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양식품 같은 어린이용상품을 선차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농장결산분배용상품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 총량가운데서 중요상품의 일부를 남겨두었다가 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보내줄 상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중요대상의 상품공급)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중요대상에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은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19조(상품의 자체가공)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부식물과 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 같은 상품에 대한 자체가공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여행자용상품판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는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을 확보하며 주요역구내와 정류소에 매대를 꾸려놓고 손님들에게 여행용상품과 지방특산물, 청량음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민수용연료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계획에 맞물려 생산하며 주민세대와 비생산부문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골고루 공급하여야 한다.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민수용연료를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제22조(신용보증제)

국가는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상품류통의 장악지휘)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류통에 대한 장악지휘체제를 세우고 중요상품확보, 공급사업을 정기적으로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상품의 지역간 교류와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 같은것은 제때에 조절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상품예비의 조성)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자연피해와 특수하게 제기되는 대상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한 상품예비는 해당 상업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공급한다.

제25조(직매점의 운영)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직매점에서는 자기 부문 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상품을 위주로 하여 팔아주면서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직매점에서는 주민들에게 기준에 따라 공급하게 된 상품과 다른 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수 없다.

제26조(상품의 수송, 송달)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상품을 수송계획에 따라 수송, 송달하여야 한다.

제27조(상품의 비법판매금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회의, 강습, 경쟁, 지원 같은 명목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용상품을 빼내거나 안면 또는 직권을 람용하여 판매공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수 매

제28조(수매의 기본요구)

수매를 잘하는것은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켜 주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며 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농업생산물과 공업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제29조(수매에서 자원성원칙준수)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사업에서 국가와 수매시키는자의 리익을 옳게 결합시키고 자원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0조(수매의 구분)

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 지표별수매계획에 따라 농업생산물을 수매하며 주민들로부터 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 같은것을 자유수매하여야 한다.

제31조(수매의 다각화)

해당 중앙기관은 수매품을 쓰는 기관, 기업소에서 직접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각화하며 수매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수매의 다양화)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수매원천의 분산성과 수매품종의 특성에 맞게 계

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 같은 방법으로 수매사업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제33조(수매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기지와 원천을 조성하고 늘이며 수매원천을 조사 장악하여 수매품총액 및 지표별, 시기별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식료농산물의 계약수매)

주민공급, 봉사를 하는 상업기관, 기업소는 국영 및 협동농장공동경리에서 생산한 남새, 축산물 같은 식료농산물을 수매계획에 따라 생산단위와 계약을 맺고 수매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와 국영 및 협동농장은 수매계약을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35조(주민보유물품의 수매)

해당 기관과 수매기관, 기업소는 농촌상점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수매품을 수매하며 그것을 제때에 실어가야 한다.

제36조(산나물, 산과일의 수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나물과 산과일이 많이 나는 시기에 채취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 그것을 더 많이 수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제정, 수매선전)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중앙기관별로 수매품의 품종과 규격을 정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수매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매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38조(여유물건의 수매와 수매자의 신분확인금지)

상업기관, 기업소는 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여유로 가지고있는 물건을 수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매하는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제4장 사회급양

제39조(사회급양의 기본요구)

사회급양은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부담에서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기호와 위생영양학적요구에 맞는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음식물의 가지수)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기는 대중식사와 료리 같은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제41조(음식물의 질)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며 조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2조(청량음료)

사회급양 및 청량음료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 흔한 원료로 청량음료를 만들어 공급하여야 한다.

청량음료는 필요한 곳에 청량음료점과 간이매대, 이동매대 같은것을 꾸려놓고 판매하여야 한다.

제43조(주식물의 가공)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와 로동자구, 농촌리에 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꾸리고 주식물을 가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44조(음식물의 생산, 공급위생)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당의 주방설비와 비품, 도구 같은것을 그 특성에 맞게 갖추고 음식물생산과 공급에서 위생문화적요구를 지켜야 한다.

보건기관은 사회급양일군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려관봉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려관을 꾸려놓아야 한다.

려관에서는 봉사조직을 잘하여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1차가공품과 반제품의 생산)

지방정권기관과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제품공장을 꾸리고 1차가공제품과 반제품을 생산하여 식당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원자재의 공급)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 및 식료가공원료기지를 꾸리고 식당과 식료상점에 여러가지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비경지를 원료기지로 리용할수 있다.

제5장 편의봉사

제48조(편의봉사의 기본요구)

편의봉사를 바로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 같은 편의봉사망을 꾸리고 업종을 정해주며 앞선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신용보증제)

국가는 편익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가정문화용품 같은것의 수리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0조(편익봉사시설의 관리운영)

편익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익봉사시설을 인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관리운영하며 편익봉사에서 문화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편익수매)

지방정권기관과 편익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익수매상점을 지역별로 꾸리고 주민들이 수매시키려는 소비품을 수매하여 팔거나 다시 수리가공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52조(가내편익봉사)

지방정권기관과 편익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익봉사가내작업반과 가내편익봉사를원을 널리 운영하여야 한다.

편익봉사가내작업반, 가내편익봉사의원의 조직과 배치는 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3조(편익봉사용자재, 부속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익봉사용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지도기관은 편익봉사용자재,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6장 상품보관관리

제54조(상품보관관리의 기본요구)

상품보관관리는 상품을 질량적으로 검수선별하고 정확히 보관하며 상품의 손실을 없애고 품종구색을 갖추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를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상품기준재고와 상품회전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기준재고를 가지고있어야 하며 상품류통조직을 개선하여 상품회전률을 높여야 한다.

상품기준재고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상품검수와 입출고)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고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잘하여 상품류통과정에 사고를 없애야 한다.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식료품의 저장, 랭동)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지와 소비지에 저장, 랭동

시설을 꾸리고 식료품보관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식료품저장, 랭동시설에는 식료품보관에 피해를 줄수 있는 물건을 들수 없다.

제58조(상품의 포장용기)

상업기관, 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포장용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는 회수하여 다시 리용할수 있다.

제59조(상품의 실사)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60조(상품과 상업시설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과 상업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경비성원을 배치할수 있다.

제61조(물자재산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업부문의 상품을 비롯한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7장 상업의 문화성, 봉사성

제62조(봉사망의 관리)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상업의 본성적요구이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망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며 인민들에게 편리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봉사망의 조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지역의 특성과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봉사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주어야 한다.

제64조(봉사구역담당제)

상업기관, 기업소는 봉사구역담당제를 바로 실시하여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며 상점매대에 상품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팔아주어야 한다.

제65조(상품의 포장)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물리화학적특성과 용도, 규격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포장하며 상표와 가격표를 문화성있게 만들어 붙여야 한다.

제66조(상품의 진렬, 조명, 광고)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67조(봉사형식과 방법)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침, 저녁봉사와 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봉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켜야 한다.

제68조(상업일군의 임무)

상업일군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이다.

상업일군은 상품수요장악과 공급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리용하여 얻은 경험을 본받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며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8장 상업시설의 현대화, 상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

제69조(상업의 현대화, 과학화, 합리화의 기본요구)

상업시설을 현대화하고 상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은 나라의 상업을 인민 대중을 위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상업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봉사건물과 설비, 비품, 도구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경영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0조(봉사망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살림집을 건설하려 할 경우 봉사망건설을 예견하며 년간살림집건설계획가운데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봉사망건설을 계획화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미 건설하여놓은 봉사망을 잘 꾸려야 한다.

제71조(상업부문 작업의 기계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업부문 작업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 식료상점, 식당에 랭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계공업지도기관, 상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상업설비, 비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상업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계산, 랭동, 판매설비, 진렬 도구 같은 설비, 비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간판, 장식의 설치)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망의 업종별특성과 규모에 맞게 간판, 전기장식 등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상업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상업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4조(상업건물, 구조물, 설비의 등록리용)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상업봉사건물과 구조물, 설비 같은것은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75조(상업경영의 현대화)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 같은것을 받아들여 상업경영을 현대화하여야 한다. 상업부문에서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76조(상품의 계량)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현대화하고 상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인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77조(상업부문의 로동정량과 기술기능수준제고)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의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상업일군들속에서 기술학습을 정상화하여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78조(상업과학연구사업)

상업과학연구기관은 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며 상업부문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문제를 푸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험기구, 시약 같은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9조(상업시설보수)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하여야 한다.

제9장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0조(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부문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1조(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와 영업허가)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과 인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상점, 식당, 편의봉사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한다.

제82조(상품류통계획)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품류통계획을 비롯한 상업부문계획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상품의 생산과 수입, 공급계획은 마음대로 삭감하거나 조절할수 없다.

제83조(독립채산제)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고 류통비를 체계적으로 낮추며 재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84조(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양성제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85조(모범창조와 그 일반화)

상업지도기관과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부문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86조(시장의 관리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시장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보조적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시장에서는 팔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한도가격을 초과하여 상품을 판매할수 없다.

시장밖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87조(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과 봉사활동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8조(위약금, 몰수, 운영중지, 벌금)

상품을 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지 않고 비법적으로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는 계획수행평가를 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물리거나 거래한 상품과 돈을 몰수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국가가격제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격으로 영업하는 상점, 식당, 편의봉사당은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8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품류통과 봉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 정 법

주체86(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량정법의 기본

제1조(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량곡의 계획적소비원칙)

량정사업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제3조(량정부문 성과의 공고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

제4조(량곡수매원칙)

량곡수매를 잘하는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량곡수매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을 결합시키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량곡보관원칙)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6조(량곡가공원칙)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질 좋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량곡공급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집승머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량곡예비조성원칙)

국가는 예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량곡수매

제10조(량곡수매 조직)

량곡수매는 생산된 량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량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제11조(량곡수매방법)

량곡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나누어 량정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공민이 가지고있는 량곡에 대한 자유수매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량곡수매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량곡수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량곡수매계획은 생산할 량곡가운데서 생산자가 소비할 량곡을 내놓고 수매하는것으로 세워야 한다.

제13조(량곡생산정형의 장악)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정형을 대상별, 곡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량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량곡을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량곡수매대상)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의 수매, 자체소비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수매계획에 따르는 량곡을 먼저 수매시켜야 한다.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용도별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소비량을 내놓고 나머지를 량정기관에 수매시켜야 한다. 그러나 량곡을 수매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량곡을 해당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고 국가량곡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대로 소비하여야 한다.

제15조(량곡의 계량)

량정기업소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 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관, 기업소는 수매하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17조(량곡의 품질검사)

수매 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국가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량정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량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제18조(수매 량곡의 포장)

량곡은 포장한것으로 수매 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 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 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3장 량곡보관

제19조(량곡의 장약)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약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량곡의 보관기관)

량곡보관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21조(량곡창고의 배치)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량곡창고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울타리, 도랑 같은 량곡보호구조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신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제23조(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바꾸어쌓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약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제24조(량곡창고구역보호)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량곡보관과 관련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붙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량곡보관용기, 보호재)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량곡의 수송)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유개시설이 갖추어진 수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 같은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제27조(량곡의 입출고, 실사)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량곡의 파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량곡경비조직)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건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내오거나 없앨수 없다.

제4장 량곡가공

제29조(량곡가공의 기본요구)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제30조(량곡가공기업소)

국가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량정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량곡을 가공할수 있다.

제31조(량곡가공능력의 조성)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곡종별수요에 따라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업소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도정권기관 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출미률, 실수률)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량곡가공공정과 설비를 개조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의 출미률과 실수률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가공제품의 질제고)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품은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가공부산물회수)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강냉이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냉이눈을 회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35조(가공시설의 보수)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제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가공설비생산기지)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37조(가공전력보장)

전력공급기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제38조(량곡수급지휘)

량곡수급과 공급은 량곡에 대한 지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민경제부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량곡종합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량과 수매량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0조(량곡수급계획)

중앙량정지도기관은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따라 량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1조(량곡수급기지)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도정권기관은 량곡수급계획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를 바로 정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소비지로 보내게 된 량곡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2조(량곡운수수단 보장)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43조(량곡공급기준량)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식량공급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하거나 2중으로 공급할수 없다.

식량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4조(식량공급대상의 등록)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량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식량공급소의 배치)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는 식량공급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식량계량을 정확히 하며 식량공급에서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부업지, 비알곡생산단위의 종업원식량)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량정기관이 공급한다.

제47조(공업원료, 집집승먹이)

량정기관, 기업소는 공업원료, 집집승먹이 량곡을 용도별계획에 따라 해당하는 곡종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제48조(량곡절약)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낭비하지 말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수 없다.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량정지도기관의 임무)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정형을 늘 로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량정지도기관, 교육기관은 량정부문의 과학연구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3조(량정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량정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정사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손해보상, 몰수)

정해진 출미를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량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량정사업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7호로 채택

제1장 주민연료법의 기본

제1조(주민연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연료법은 주민연료의 확보,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연료사업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주민연료의 종류)

주민연료는 주민세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주민생활보장에 쓰이는 석탄, 석유, 가스, 땔나무 같은것과 그 대응연료이다.

국가는 주민연료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제3조(주민연료확보원칙)

주민연료를 충분히 확보하는것은 주민연료공급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주민연료를 공업연료보다 먼저 확보하도록 한다.

제4조(주민연료공급원칙)

주민연료의 공급은 주민세대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연료를 보장하는 봉사활동이다.

국가는 주문제에 기초하여 주민연료를 제때에 풀고루 공급하도록 한다.

제5조(주민연료계획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계획을 수요에 맞게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6조(주민연료절약원칙)

국가는 전기화 같은 경제적이고 편리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주민연료를 극력 절약하도록 한다.

제7조(주민연료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주민연료봉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주민연료의 확보

제8조(주민연료의 생산기지조성)

주민연료의 확보는 주민연료를 생산, 수송하여 공급원천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별특성에 맞게 주민연료생산기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연료의 우선적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열탄, 초무연탄, 연제탄, 버력탄 같은 주민연료를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저열탄, 초무연탄, 버력탄생산기지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이, 연제탄생산기지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제10조(석유, 가스의 생산보장)

중앙자재공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주민용석유, 가스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용석유, 가스공급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11조(주민연료원천동원)

지방정권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실정에 맞는 탄광, 땃나무림 같은 연료생산기지를 꾸리고 여러가지 주민연료원천을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농촌지역의 땃나무림지를 바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12조(주민연료의 수공급계약)

주민연료공급기관과 연료생산기업소는 주민연료계획에 기초하여 수공급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주민연료를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제13조(주민연료의 수송)

도시 또는 수요가 많은 주민지구의 주민연료는 철도로 수송한다.

수송조건에 따라 주민연료를 자동차 또는 배로 수송할수도 있다.

제14조(주민연료수송용순환화차의 보장)

철도운수기관은 주민연료수송용순환화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동차 또는 배를 동원하여 주민연료의 수송을 조직할수 있다.

제3장 주민연료의 공급

제15조(주민연료공급의 기본요구)

주민연료공급을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지방정권기관과 주민연료공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체제를 바로세우고 연료공급사업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연료공급대상과 공급기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로동자, 사무원세대와 지방정권기관에 등록된 비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연료공급은 주민연료공급기관이 그밖의 대상에 대한 연료공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7조(주민연료공급정형의 등록)

주민연료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공급정형을 세대별, 단위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연료공급대상에는 가족수, 종업원수, 살림집 또는 건물형식, 난방조건, 방수, 사용할 연료의 종류 같은것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주민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주민연료공급기관에서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연료공급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주민연료의 공급기준)

주민연료공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제20조(주민연료의 공급방식)

주민세대에는 연료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공급하거나 집중적으로 공급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연료를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제21조(주민연료의 송달)

지방정권기관과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연료공급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민세대에 연료를 날라다주는 체제를 세워야 한다.

주민연료공급기관은 주민연료의 정해진 질과 형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2조(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주민연료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은 주민연료의 확보와 공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연소효율과 대응연료)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의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대응연료를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 개발된 주민연료사용방법과 대응연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25조(전력을 리용한 난방, 취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주민세대의 난방, 취사 같은것을 전력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연료의 보관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주민연료의 보관관리를 잘하고 그 류실을 막아야 한다.

내각은 주민연료의 자연감모를 정해주어야 한다.

제27조(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주민연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주민연료의 생산, 수송, 공급, 보관,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8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주민연료의 수송설비, 보관용기 같은것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9조(연료공급의 중지)

주민연료의 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연료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제3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주민연료봉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

주체82(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1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건설법의 기본

제1조(건설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건설분야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판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은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고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3조(건설의 계획화원칙)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제4조(건설의 주체성원칙)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는것은 국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을 나라의 구체적현실과 자연지리적조건, 인민들의 수요와 생활감정, 풍습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5조(건설의 집중화, 효과성제고원칙)

국가는 건설에서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요대상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보장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건설의 공업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건설의 정규화, 정상화원칙)

국가는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여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도록 한다.

제8조(건설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건설공법을 비롯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널리 받아들여이도록 한다.

제9조(건설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건설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설총계획

제10조(건설총계획과 그 작성기초)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제11조(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력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 같은 하부구조 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13.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로 건물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물사이에 녹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건설총계획의 분류)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제13조(건설총계획의 승인)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총계획은 내각이 그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수 없다.

제14조(건설순위의 결정)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5조(건설위치지정서,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명시서발급신청을 하기 전에 건설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건설명시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이 발급한다.

제16조(토지의 리용허가)

승인된 건설총계획령역안에 있는 토지는 건설부지로 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순위에 맞게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를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설계

제17조(설계의 선행)

건설설계를 잘하는것은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건설설계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설계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앞세우도록 한다.

제18조(설계계약)

건설설계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9조(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의 보장)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의 기술과제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지하자원탐사자료 또는 중간시험공장의 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설계작성단계)

건설설계는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적으로 대상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의 질보장)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건설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며 설계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3조(설계안의 검토와 합의)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안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합평회)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 부문 일군이 참가한다.

제25조(설계의 승인)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내각 또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건설대상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는 다양한 설계가 제기되게 하며 류사한 설계는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건설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건설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의 승인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27조(설계총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시공

제28조(시공주기관, 기업소의 조직)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부문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를 조직하고 시공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9조(대상건설계획의 맞물림)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건설자재를 50%이상 준비하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제30조(건설허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허가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을 정확히 따져보고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은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부지의 정리)

지방정권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은 부지안에 있는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시공계약)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시공조직과 지도)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시공을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사장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문화성을 보장하며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시공의 질검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비롯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제35조(건설자재, 대상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서 워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36조(건설작업의 기계화, 자동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골재 및 부재생산기지, 건설기계의 생산, 수리기지를 꾸려 골재와 부재생산을 늘이고 건설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건설기계설비와 기공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건설물의 준공검사

제37조(준공검사의 기본요구)

준공검사는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제도를 강화한다.

제38조(준공검사방법)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할수 있다.

제39조(준공검사신청)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40조(준공검사위원회)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 일군으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물이 시공되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41조(준공검사결과의 평가)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42조(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받은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을 넘겨 주고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리용할수 없다.

제43조(건설물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6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건설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5조(건설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대상건설의 착공정형과 건설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미완성건설을 줄이며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협동시공)

국가계획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건설대상의 협동시공분담을 정확히 하고 시공에 대한 지휘를 잘하며 협동시공규률을 지켜야 한다.

제47조(현물평가제)

재정은행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의 질을 높이고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며 건설기간을 줄일수 있도록 현물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과학연구사업)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9조(건설기준의 제정, 적용)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앞선 건설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설총계획의 실현, 건설설계작성과 시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건설물철거, 손해보상)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거나 건설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2조(공사중지, 건설물몰수, 자금공급중지)

건설계획, 건설허가없이 건설하였거나 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건설물을 몰수하거나 건설자금공급을 중지한다.

제5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

주체81(1992)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37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시경영법의 기본

제1조(도시경영법의 사명)

도시경영은 도시와 농촌의 건물과 시설물을 보호관리하고 도시와 마을을 전망성 있게 꾸려나가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법은 도시경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과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주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건물과 시설물의 보호리용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물과 시설물은 우리 인민이 땀흘려 마련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사업을 개선하여 그 수명을 늘이고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건물과 시설물의 등록원칙)

건물과 시설물을 정확히 등록하는것은 도시경영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을 제때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관리한계와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제5조(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원칙)

도시경영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제를 세우며 주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알뜰히 꾸리도록 한다.

제6조(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도시경영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도시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도시경영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이 늘어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도시경영부문 일군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도시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시경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건물관리

제9조(건물의 보수)

건물관리는 도시경영사업의 중심과업이다.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물을 제때에 보수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제10조(건물의 분류와 관리분담)

국가소유의 건물은 살림집과 공공건물, 생산건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살림집과 공공건물관리는 도시경영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하며 생산건물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1조(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허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족수, 출퇴근거리, 직업상특성, 필요한 건물의 면적 같은것을 고려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리용허가증이 없이는 국가소유의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쓸수 없다.

제12조(건물의 보수형태)

건물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대보수와 중보수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지어준 건물의 대보수와 중보수는 해당 협동농장이 한다.

소보수는 건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협동단체소유와 개인소유의 건물을 위탁보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수비를 건물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3조(건물의 보수주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수주기에 따라 건물을 보수하여야 한다.

건물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건물의 보수시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물이 새는것을 막기 위한 건물의 보수를 장마철전으로, 겨울나이를 위한 건물의 보수를 겨울철전으로 끝내며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병원건물의 보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생산건물보수는 공장건물보수월간에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개조)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물, 낡은 건물을 쓰기 편리하고 도시미화에 어울리게 계획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건물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건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건물의 인계)

다른 건물로 옮겨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쓰던 건물을 건물관리기관에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건물의 비품을 가져가거나 시설물을 뜯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7조(개인살림집의 국가소유로 전환)

도시경영기관과 재정은행기관은 개인살림집을 소유자가 국가소유로 전환시켜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겨받고 보상하여주어야 한다.

살림집소유권을 국가소유로 넘긴 공민은 그 살림집을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8조(건물의 보호)

건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시설, 불끄는 시설, 피뢰시설을 늘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막으며 화재와 벼락의 피해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건물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거나 땅을 파는것 같은 건물의 수명과 관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상하수도, 난방시설운영

제19조(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정상적운영)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잘 운영하는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고 도시를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보수정비하며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0조(먹는물의 생산과 공급)

지방정권기관과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생산을

늘여 주민들에게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건설기관은 공급기준에 비하여 먹는물생산량이 적은 주민지구의 상수도시설을 개선, 확장, 신설하여야 한다.

제21조(먹는물의 수질기준보장)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 수질기준에 이른 먹는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에 이르지 못한 먹는물은 주민들에게 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업소는 먹는물의 정제와 소독에 쓰이는 약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위생보호구역의 선정)

먹는물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수원지, 배수지, 뽕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3조(위생보호구역의 관리)

상수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위생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빨래, 목욕 같은 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4조(먹는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먹는물을 정해진 용도대로 써야 하며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5조(오수, 산업폐수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관망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버림물을 정해진 기준대로 정화, 멸균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물빼기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수관을 비롯한 물빼기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제때에 보수정비하며 주민지구에 비물이 고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주민지구의 물빼기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으며 우수관에는 오수관을 련결시킬수 없다.

제27조(난방열의 생산, 공급)

난방열을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을 보내고 열효률을 높여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실내온도를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상하수도, 난방시설의 관리)

상하수도, 난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망에 대한 보수정비와 보온을 잘하여 먹는물과 난방열의 도중손실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보수정비한 상하수도, 난방시설에 대하여 도시경영

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난방관함저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관망에서 먹는물과 난방열을 뽑아쓰거나 거기에 설치된 변들을 조작할수 없다.

제29조(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을 기계화, 자동화, 원격조종화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상하수도, 난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0조(인입관건설명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관, 난방관에 새로 인입관을 편결하는 건설명시를 받으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도시도로, 하천정리

제31조(도시도로와 하천의 계획적정리)

도시도로, 하천의 정리상태는 도시의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도로와 하천의 실태를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분담)

도시도로에는 도시령역안에 있는 차길, 가로록지, 걸음길, 가로등, 다리, 굴길, 지하건능길, 지상건능길, 도로보호안전시설물, 도로표식물 같은것이, 도시하천에는 도시령역안으로 흐르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리용시설물이 속한다.

도시도로와 하천의 관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그러나 전용도로와 중요하천의 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33조(도시도로의 현대화)

국가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를 포장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버스, 전차정류소를 만들어놓으며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는 립체다리나 지하건능길, 지상건능길을 건설하고 현대적인 가로등,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도로의 보수정비)

도시경영기관은 도로를 제때에 보수정비하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된 구간의 도로를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차씻는 시설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입구에 차씻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며 포장도로와 잇닿은 작은 길의 일정한 구간을 포장하여야 한다.

운수기재를 운영하거나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짐실이와 차칭소를 잘하며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제36조(아스팔트도로의 리용)

아스팔트도로로 무한계도차를 몰고다니려 하거나 도로에서 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공사가 끝나는 차제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도시하천관리)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군중적운동으로 하천의 필요한 곳에 제방과 뚝을 쌓으며 높아진 하천바닥을 파내고 강기슭보호림을 조성하며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 불비한 개소를 제때에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을 애호하며 그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원림조성

제38조(록지면적의 확장)

원림조성을 잘하는것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조성계획에 따라 살림집구획을 비롯한 도시와 마을을 록화하여 주민 한사람당 록지면적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39조(가로수와 가로록지의 조성)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로선별로 종류를 규정하여 가로수를 심고 생나무 울타리와 꽃, 잔디 같은것으로 록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가로수의 종류를 바꿀수 없다.

제40조(공원, 유원지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를 꾸리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원, 식물원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원과 식물원을 우리 나라의 동물과 식물을 위주로 하여 꾸리고 그 종류를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42조(나무모, 꽃모의 생산)

도시경영기관은 나무모, 꽃모의 생산을 늘여 그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나무모, 꽃모, 꽃종자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나무, 꽃, 잔디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 꽃, 잔디 같은것이 잘 자랄수 있게 물을 주며 병해충을 없애고 김매기와 나무의 모양만들기를 제철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원림지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원림지역안에 있는 꽃과 나무를 꺾지 말며 그곳에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원림지역안에 있는 나무를 베거나 잔디 같은것을 뜯수 없다.

제6장 도시미화

제45조(건물, 시설물의 주변관리)

도시미화사업은 도시경영부문앞에 나선 문화혁명의 중요과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도시미화월간》과 《도시미화의 날》)

국가는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거두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4월과 10월을 도시미화월간으로, 매달 첫번째 일요일을 도시미화의 날로 한다.

제47조(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며 그속에 있는 유용물질을 회수,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지정된 장소에 모아놓거나 버려야 한다.

제48조(구획의 정리)

도시경영기관은 꽃밭정리, 어린이놀이터꾸리기, 물도랑치기 같은 구획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9조(문화휴식시설과 공동위생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스, 전차정류소와 극장, 영화관주변에 문화휴식시설을 갖추고 살림집구획과 광장, 운동장주변에 공동위생시설을 꾸리며 그것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의 도색, 장식물의 설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의 도색을 서로 대조되게 하며 퇴색된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을 제때에 도색하여야 한다.

거리, 유보도, 공원 같은 곳에는 가로등, 전기장식등, 소개판, 간판, 조각 같은 장식물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안에서 전화선, 전기선 같은것을 늘이려 할 경우에는 지방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유해가스, 먼지의 방지)

생산과정에 유해가스와 먼지를 발생시키는 기업소는 가스, 먼지잡이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지구로 유해가스와 먼지를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도시에서 유해가스를 기준보다 더 내보내는 룬전기재를 물고다닐수 없으며 도시의 중심구역에서 나무잎 같은 연기가 나는 물질을 불태울수 없다.

제52조(보이라운영시설의 관리)

보이라운영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창고, 탄재모이더, 탄재잡이시설을 갖추어 석탄가루와 탄재가 비바람에 날리거나 씻겨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화장시설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화장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화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모든 해당 기관이 승인한 일정한 지역에만 쓰며 오래된 묘지는 정리할수 있다.

제7장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4조(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5조(중앙도시경영기관의 임무)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전국의 도시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6조(건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의 등록)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 주민지구토지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 단체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제57조(주민지구토지의 리용)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구획, 위생보호구역, 공원, 유원지, 동물원, 식물원에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대상설계에 예견되지 않은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제58조(대상건설에 대한 검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 시설물의 수요와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본건설계획에 맞물리며 대상건설에 대한 중간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구획정리가 되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과 시설물은 넘겨주고 받을수 없다.

제59조(도시경영일군에 대한 국가적배려)

국가는 건물과 시설물보호관리사업에서 공로를 세워 주민들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도시경영일군에게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여러가지 배려를 돌린다.

제60조(도시경영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은 도시경영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상업기관은 건물의 소보수에 필요한 세멘트, 유리 같은 자재와 공구를 정상적으로 팔아주어야 한다.

제61조(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시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은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대상건설의 중지와 철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시경영질서를 어기고 진행하는 대상건설은 중지시키거나 철거시키며 허가없이 건물에 든자는 그 건물에서 내보낸다.

건물과 시설물을 파괴하였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도시경영용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썼거나 건물과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1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

제1조(살림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리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살림집의 구분)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 협동단체소유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나눈다.

국가는 살림집소유권과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조(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원칙)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인 도시살림집과 농촌살림집을 국가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준다.

제4조(살림집건설원칙)

살림집건설을 적극 벌리는것은 늘어나는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살림집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원칙)

살림집의 이관, 인수와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살림집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사업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원칙)

국가는 살림집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살림집리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살림집의 관리원칙)

살림집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며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살림집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살림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법의 적용)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살림집의 건설

제9조(계획적인 살림집건설)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승인절차준수)

살림집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명시서의 발급, 건설설계 및 계획의 승인, 토지리용허가, 건설허가 같은 승인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당한 건설승인을 받지 않고는 살림집건설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살림집건설대상을 정확히 따져보고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11조(살림집건설설계)

살림집건설설계는 도시건설전문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 기관, 기업소는 살림집건설설계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

작성한 살림집건설설계는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한 다음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지 않고 형식이 똑갈게 작성된 살림집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제12조(살림집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체결)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살림집건설의 시공은 전문건설기관, 기업소가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제13조(하부구조건설선행)

살림집건설은 하부구조시설이 완비된 조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시설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수 없다.

제14조(시공)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설계와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5조(시공의 질검사)

건설감독기관과 건설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과정에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한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6조(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건설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17조(구획정리)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건설한 다음 살림집건설설계에 따라 주민생활보장과 도시경영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것을 설치하며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된 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구획정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수 없다.

제18조(준공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살림집이 완공되면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들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살림집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것을 엄격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살림집에 대하여서는 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는다.

제20조(살림집의 질보증)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3장 살림집의 이관, 인수 및 등록

제21조(살림집의 이관, 인수)

완공된 살림집은 살림집관리기관에 넘겨준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준공검사에 참가하여 해당 살림집이 설계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건설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 살림집을 넘겨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2조(살림집이관, 인수 때 넘겨줄 문건)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관리기관에 살림집을 넘겨주는 경우 건설명세서, 토지이용허가증, 건설허가증, 지질측량조사서, 설계도면, 시공경력서, 예산서, 준공검사합격통지서 같은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문건이 없이 살림집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없다.

제23조(관리대상이 다른 살림집의 이관, 인수)

살림집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할에 따라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살림집관리기관에서 관리하던 살림집을 넘겨받을 경우에는 살림집의 구조적 안정성과 관리상태, 상하수도, 난방, 전기, 승강기시설의 기술상태 같은것을 확인하며 살림집관리에 필요한 각종 문건을 정확히 넘겨받아야 한다.

제24조(개인소유살림집의 이관, 인수)

개인소유살림집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소유살림집으로 전환할수 있다. 이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경력관계와 잔존가치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소유로 되어있던 살림집이 국가소유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해당 살림집은 그것을 소유하였던 공민이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25조(살림집등록체계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넘겨받은 살림집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등록은 새로 건설한 살림집을 넘겨받았을 경우에 하는 처음등록과 관리과정에 하는 정상등록, 관리관할에 따라 하는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구분하여 한다.

제26조(살림집등록방법)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 운영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과정에 등록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그 정형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살림집등록정형보고)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정형을 년에 1차씩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살림집의 배정 및 리용

제28조(살림집의 배정기관)

살림집의 배정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살림집배정신청 및 등록)

살림집을 보장받으려는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살림집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배정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장에 등록하며 살림집이 마련되는데 따라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0조(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살림집의 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2. 란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3.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도시계획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4.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
5. 국가가 협동농장에 지어준 살림집과 협동단체소유의 살림집은 농장에 직접 복무하는 농장원, 로동자, 사무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새로 건설한 살림집의 배정)

새로 건설한 살림집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되고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된 조건에서 배정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살림집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살림집은 배정할수 없다.

제32조(리용하던 살림집의 배정)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은 그것을 리용하던 공민이 살지 않을 경우에만 배정한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비어있는 살림집을 제때에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살림집리용신청)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은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살림집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살림집리용신청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4조(살림집리용허가)

살림집리용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신청리유와 거주조건, 살림집이 비어있는 정형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살림집을 배정받은 공민에게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살림집리용허가증에는 리용자의 이름, 직장직위, 가족수, 살림방수, 살림집의 주소, 번호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5조(살림집의 교환)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살림집교환신청을 받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교환조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살림집교환조건이 부당할 경우에는 살림집을 교환할수 없다.

제36조(살림집입사)

살림집리용허가를 받은 공민은 해당한 수속을 하고 제때에 살림집에 들어야 한다.

정당한 리유가 없이 정해진 기간안에 살림집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살림집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7조(살림집리용허가증의 반환)

공민은 살림집을 리용하다가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바쳐야 한다.

이미 리용하던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바치지 않고는 다른 살림집의 리용허가증을 발급받을수 없다.

제38조(살림집의 동거)

공민은 동거살림을 하려 할 경우 동거로 들어가려는 살림집리용자와 합의한 다음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동거살림을 하려는데 대하여 승인하였을 경우 동거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공민은 이사하는 경우 리용하던 살림집과 설치된 시설, 비품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상태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제40조(살림집꾸리기)

공민은 살림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농촌살림집에서는 울타리를 문화성있게 치고 주변에는 과일나무를 심으며 집집승우리와 창고 같은것을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제41조(살림집의 현판, 문패)

공민은 살림집의 출입문 또는 대문에 층과 호, 살림집리용자의 이름을 밝힌 문패를 달아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호동마다 호동표식판을 붙이며 다층살림집의 현판이나 단층살림집구역의 일정한 곳에 구역, 동, 호동, 현판, 인민반을 밝힌 현판을 달아야 한다.

제42조(사용료의 지불)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
살림집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3조(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나 등록되지 않은 살림집에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살림집리용허가증이 없이 살림집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하는 행위
3. 리기적목적 또는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살림집을 교환하는 행위
4. 돈, 물건을 받거나 부당한 요구조건을 걸고 살림집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
5.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
6. 비법적으로 둘이상의 살림집을 하나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
7.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8. 살림집으로 리용하지 못하게 된 장소에 비법적으로 들어가 사는 행위
9.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을 떼가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10. 살림집 또는 그 지하에 충격, 진동을 일으킬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승인없이 살림집가까이에서 폭발물을 터치는것 같은 행위
11. 담장 또는 울타리를 높게 치거나 터발을 정해진 면적보다 더 늘이는 행위
12. 그밖에 살림집의 수명과 판리, 도시미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장 살림집의 관리

제44조(살림집관리체계 확립)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그 주변은 언제나 위생문화성을 보장하며 살림집의 수명을 늘여야 한다.

제45조(살림집관리분담)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관리분담을 정확히 하고 지구별로 담당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담당관리원은 순회점검일지를 갖추고 담당한 지구의 살림집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기록하며 이상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6조(살림집보호)

살림집관리기관은 소화시설, 피뢰시설 같은 살림집의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을 늘 정비하여 화재나 자연피해로부터 살림집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7조(선전 또는 장식용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우나 벽체에 선전용 또는 장식용시설을 설치하

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도시미화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살림집우나 벽체에 설치하였던 시설을 철수하였을 경우에는 살림집상태를 원상대로 해놓아야 한다.

제48조(살림집의 보수주기)

살림집관리기관은 정해진 살림집보수주기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살림집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49조(살림집의 보수분담)

살림집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는 살림집관리기관이, 소보수는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이 한다.

제50조(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대보수, 중보수계획은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살림집의 보수설계보장)

살림집의 보수는 살림집보수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현실적이며 과학적인 살림집보수설계를 작성하여 보수에 앞서워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보수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살림집의 소보수)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살림집에 대한 소보수를 해줄수 있다. 이 경우 공민은 해당한 보수비를 물어야 한다.

제53조(살림집에 설치된 시설의 보수정비 및 운영)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운영하여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살림집에 상하수도, 난방, 전기, 통신, 방송, 승강기, 수채시설 같은것을 설치하거나 보수 또는 철수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살림집의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을 철거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려 할 경우 살림집관리기관의 합의를 받고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 할 경우에는 살림집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이상현상에 대한 통보)

공민은 살림집의 기초가 내려앉거나 벽체, 천막에 금이 생기거나 비가 새거나 상하수도, 난방관이 터진것 같은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살림집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6조(살림집의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살림집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자금과 자재, 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장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미화의 날 운영)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정한 4월과 10월 《도시미화월간》과 매월 첫주 일요일 《도시미화의 날》에 살림집과 그 주변을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과 그 주변을 꾸리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9조(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살림집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살림집의 건설과 이관, 인수, 등록, 배정, 리용, 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중지 및 원상복구)

건설질서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구조 또는 용도변경시킬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승인없이 살림집의 구조 또는 용도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61조(살림집의 회수)

다음의 경우에는 살림집을 회수할수 있다.

1.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샀을 경우
2. 승인없이 살림집을 리용할 경우

제6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건설절차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을 경우
2. 국가의 살림집건설정책과 도시경영정책의 요구에 맞지 않게 살림집건설승인을 망탕 하였을 경우
3. 살림집건설부지나 명시 같은것을 팔고 샀을 경우
4. 설계와 시공규정, 공법의 요구를 어기고 살림집을 건설하였거나 반복시공으로 로력, 자재, 자금을 낭비하였을 경우
5.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어겼을 경우
6.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상하수도, 난방, 전기시설 같은것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도시미화의 요구에 맞게 계획을 정리하지 않아 주민생활과 도시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제4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3조(형사적책임)

제6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4호로 채택

제1장 상수도법의 기본

제1조(상수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은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상수도시설은 생활용수를 생산하여 소비대상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상수도시설에는 물잡이구조물, 뿔프장, 정화구조물, 송수관, 배수관, 맑은물저장 및 조절구조물, 수도관, 소화전과 그 부속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상수도시설의 건설원칙)

상수도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상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상수도시설의 관리원칙)

국가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5조(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원칙)

국가는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수질이 좋은 생활용수를 수요에 맞게 생산, 공급하며 극력 아껴쓰도록 한다.

제6조(상수도시설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상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상수도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수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다른 법의 적용)

상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상수도시설의 건설

제9조(상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상수도시설건설은 생활용수의 보장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상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상수도시설건설의 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제12조(상수도시설건설설계)

상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의 용도, 규모, 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상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제13조(상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상수도시설건설을 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4조(인입관련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련결하려 할 경우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지 않고서는 인입관을 련결할수 없다.

제15조(완공된 상수도시설의 준공검사)

상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상수도시설은 상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상수도시설의 관리

제16조(새로 건설한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상수도시설을 상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와 설계도면 같은 상수도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7조(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상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제18조(상수도시설의 등록)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상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며 불비한 개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그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1조(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상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상수도시설의 자체보수)

상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상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술검사 또는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용수를 공급받을수 없다.

제24조(상수도시설의 동파, 부식방지)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상수도시설이 얼어터지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25조(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상수도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제 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생보호구역의 설정)

상수도시설을 보호하며 수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지와 배수지, 뽕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7조(위생보호구역에서의 금지사항)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며 땅을 파거나 나무를 찍는 행위
3. 목욕, 빨래, 사냥, 낚시질, 배놀이 같은것을 하는 행위
4. 산업폐수, 생활오수 같은것이 위생보호구역안으로 흘러들게 하는 행위
5. 금지된 곳으로 관리성원이 아닌 사람이나 배가 나드는 행위
6. 폭발물질, 독약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7. 그밖에 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수질에 영향을 주며 수원의 물량이 줄어들게 하는 행위

제28조(수원지, 배수지, 뽕프장과 그 주변의 위생성보장)

상수도관리기관은 수원지, 배수지, 뽕프장과 그 주변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려파지, 정수탱크, 배수탱크, 뽕프장 같은 상수도시설은 분기에 한번이상 청소 및 소독하며 그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기공구와 작업복은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야 한다.

제29조(상수도관리일군의 검진)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뽕프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일군은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건기관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뽕프장 같은 곳에서 일할수 없다.

제30조(송배수관보호)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요 송수관, 배수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책 같은것을 쌓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부터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을수 없다.

제31조(우물, 졸짱의 관리)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물, 졸짱에 대한 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물과 졸짱은 정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며 분기에 한번이상 보건기관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

상수도시설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리유와 생활용수의 보장실태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상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에 대한 합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

제33조(생활용수생산계획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4조(생활용수의 수질기준보장)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하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수질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생활용수는 공급할수 없다.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35조(수질검사)

상수도관리기관과 보건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정해진 기준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생활용수의 정제, 소독에 필요한 설비, 약품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용수의 정제와 소독에 쓰이는 설비, 약품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생활용수의 공급)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된 생활용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보장)

전력공급기관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전시키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수도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9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활용수공급)

생활용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40조(생활용수공급의 일시적인 중지)

상수도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려 할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들에게는 사전에 생활용수공급을 중지하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생활용수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급받은 생활용수를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생활용수는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42조(생활용수의 재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생활용수를 재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생활용수의 도중손실방지)

상수도관리기관은 생활용수의 도중손실을 막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상수도망에서 도중에 생활용수를 뽑아쓰거나 설치된 변들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생활용수의 사용료납부)

생활용수를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데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제5장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상수도사업의 지도)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상수도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7조(과학연구 및 인재양성)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상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상수도시설관리와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손해보상)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상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편결하였을 경우
3. 생활용수를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상수도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제2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어 그 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승인없이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리용하였을 경우

제51조(형사적책임)

제50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

주체98(2009)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6호로 채택

제1장 하수도법의 기본

제1조(하수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수도법은 하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버림물의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하수도시설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비물 같은 버림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하수도시설에는 오수망, 우수망, 뽕프장, 정화장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하수도시설건설원칙)

하수도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하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하수도시설관리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세우며 앞선 과학기술성파를 적극 받아들여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버림물의 처리원칙)

버림물의 처리는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오수망, 우수망, 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버림물을 제때에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하수도시설의 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하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

국가는 하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버림물의 처리를 원만히 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하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법의 적용)

하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버림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하수도시설의 건설

제9조(하수도시설건설의 계획화)

하수도시설건설은 버림물의 처리조건을 갖추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수도시설건설계획의 작성)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은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처리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하수도시설건설의 선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하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제12조(하수도시설건설설계)

하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의 용도와 규모, 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하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해당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한다.

제13조(하수도시설건설에서 설계의 요구준수)

하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하수도시설을 건설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4조(인입관연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오수관에 인입관을 연결하러 할 경우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능력을 정확히 따져보고 인입관건설과 관련한 합의를 하거나 건설명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가 없이는 인입관을 연결할수 없다.

제15조(완공된 하수도시설의 준공검사)

하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하수도시설은 하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하수도시설의 관리

제16조(새로 건설한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하수도시설을 하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7조(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의 이관, 인수)

하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하수도시설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하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제18조(하수도시설의 등록)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하수도시설관리체계의 확립)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하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며 불비한 개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준수)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1조(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하수도시설의 대보수와 유지보수)

하수도시설의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하수도관리기관은 하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하수도시설의 자체보수)

하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하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하수도관리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버림물을 내보낼수 없다.

제24조(하수도시설의 파손방지)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자연적영향으로부터 하수도설비와 관이 부식되거나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관, 우수관입구에는 모래잡이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25조(오수관, 우수관의 보호)

오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

무를 심을수 없다.

제26조(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퇴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하수도관리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하수도관리기관은 즉시 하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퇴치하여야 한다.

제27조(위생보호구역의 설정)

하수도시설을 보호하고 버림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하여 뽕프장과 정화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8조(위생보호구역의 관리)

하수도관리기관은 위생보호구역안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에는 위생보호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9조(하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

하수도시설을 폐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하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하수도시설의 폐기, 용도변경리유와 버림물의 처리실태를 따져보고 합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제4장 버림물의 처리

제30조(버림물의 정화, 멸균)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해진 배출기준대로 정화, 멸균한 다음 하수방출구역으로 내보내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내보낼수 없다.

제31조(배출기준준수정형의 조사)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버림물의 배출기준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업폐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생활오수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

산업폐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도시경영기관으로부터 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산업폐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33조(산업폐수의 수질분석결과통보)

산업폐수를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폐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버림물)

다음의 버림물을 정화하지 않고는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3. 유독성폐수와 병원성폐수
4.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버림물

제35조(미광물과 모래, 오물의 처리)

미광이나 모래, 오물이 들어있는 버림물은 그것을 거두어낸 다음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36조(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7조(비물처리)

하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수망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비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와 시설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5장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하수도사업의 지도)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하수도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전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40조(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하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하수도시설의 관리와 버림물처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손해보상)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하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우수관에 인입관을 련결하였을 경우
3. 하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폐기, 용도변경하여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하수도시설관리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버림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버림물을 내보내었을 경우
6. 우수망인입허가없이 산업폐수를 우수망을 통하여 내보내었을 경우
7. 우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였을 경우
8. 우수관, 우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어 그 관리와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우수망시설을 정비하지 않아 비물처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그밖에 이 법을 어겨 하수도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제4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 립 법

주체99(2010)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14호로 채택

제1장 원림법의 기본

제1조(원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법은 원림의 조성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원림의 정의)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놓은 녹화지역이다.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주변의 녹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원림계획의 작성, 실행원칙)

원림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도시원림화정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전국의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원림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인민적인 원림조성 및 보호관리원칙)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은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원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원림부문의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6조(기술자, 기능공양성 및 과학연구사업강화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원림부문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원림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원림의 조성

제8조(원림조성의 기본요구)

원림조성은 승인된 원림계획에 따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9조(원림계획작성기준)

국가의 도시건설정책은 원림계획작성의 기준이다.

원림계획작성기관은 도시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원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원림계획의 구분)

원림계획은 총계획과 그에 따르는 세부계획, 구획계획으로 나눈다.

원림총계획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또는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세부계획은 원림총계획에 따라, 구획계획은 세부계획에 따라 작성한다.

제11조(원림총계획과 세부계획의 작성기관)

원림총계획은 도시계획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원림총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해당 도시경영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제12조(원림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원림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유원지, 정원, 걸음길복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거리형성에 맞게 가로수와 녹지, 꽃밭을 배치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보호의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원림총계획과 세부계획의 승인)

평양시와 도소재지의 원림총계획은 내각이 승인하며 시, 군원림총계획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승인한다.

세부계획, 구획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가 승인한다.

제14조(도시와 마을의 원림조성)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마을에 공원, 유원지를 잘 꾸리며 살림집구획안에 녹지를 규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공원과 유원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고 생울타리, 잔디밭, 꽃밭 같은것을 조성하며 그와 어울리게 여러가지 체육시설, 문화오락시설, 봉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림조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덩굴식물 같은것을 심어 녹화면적을 늘리며 유해가스와 먼지, 소음이 많이 나는 산업지구와 공장, 기업소주변에는 환경보호림, 소음막이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6조(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정휴양소구내의 원림 조성)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구내와 그 주변에는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의 교육과 문화휴식, 건강증진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녹음이 우거지게 하며 여러가지 꽃나무와 약초도 심어야 한다.

제17조(강하천, 철길주변의 원림 조성)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안의 강하천기슭, 철길주변에 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역할을 하는 풍치림을 조성하며 경사가 급한 곳에는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지피식물을 심어야 한다.

제18조(건설대상의 원림 조성)

대상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이 끝나면 구획정리단계에서 원림조성을 원림계획대로 하여야 한다,

원림조성을 하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한 준공검사는 할수 없다.

제19조(원림식물의 사름률보장)

원림을 조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식물을 심은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사름률을 보증하여야 한다.

사름률보증기간에 죽은 원림식물에 대하여서는 원림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20조(원림관리구역안에서의 건물, 시설물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에 건물, 시설물,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자연풍치와 지형지물에 어울리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나무모와 꽃모, 지피식물의 생산보장)

도시경영기관은 채종장, 양묘장, 화포전, 온실 같은것을 잘 꾸리고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나무모와 꽃모, 꽃종자, 잔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동물원, 식물원의 공원화)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동물원과 식물원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공원화하여 동물원과 식물원이 동식물자원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는 교양기지, 문화휴식장소로 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원림의 관리

제23조(원림관리의 기본요구)

원림의 관리는 도로주변, 살림집지구, 공공장소 같은 곳의 풍치를 아름답게 꾸리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체제를 바로세우고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고 위생문화적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제24조(원림관리구역의 분담)

각급 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원림관리기업소의 전문관리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군중관리를 옹계 배합할수 있게 원림관리구역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원림의 등록)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원림관리구역안의 원림과 원림관리시설을 등록대장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원림의 정상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관리구역안의 록지와 나무에 대한 물주기, 김매기, 모양만들기 같은 원림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병충해의 방지)

도시경영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연구도입하여 병해충의 피해를 미리 막으며 원림관리구역에 대한 병해충예찰체계를 세워 발생한 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8조(원림의 보호)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원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원림관리구역안의 나무를 찍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공원, 유원지에서의 봉사활동)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 유원지안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원림관리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원림관리구역안에서는 승인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거나 나무가지, 꽃을 꺾는 행위
3. 나무와 잔디를 뜨거나 열매, 종자를 따는 행위
4. 관상용동식물을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
5. 록지를 못쓰게 만드는 행위
6. 원림관리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7. 농작물을 심는 행위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시경영정책을 정확

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원림조성과 관리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은 원림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비료, 농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림법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5조(원상복구의무)

원림구역안에서 공사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가 끝나면 곧 원림구역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6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원림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아 도시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원림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원림조성을 되는대로 하여 원림식물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고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원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와 꽃모, 잔디, 지피식물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지 못하여 원림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분담받은 구역에 대한 원림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원림을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6. 병해충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원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7. 이 법 제30조의 금지사항을 어기었을 경우

제37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 장 법

주체87(1998)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5(2006)년 8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01호로 수정보충

제1조(화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장법은 화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장을 장려하고 장례를 간편하게 하며 자연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화장의 장려원칙)

화장은 묘를 쓰지 않고 불로 령구를 처리하는 문화적인 장례방법이다.

국가는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3조(화장터 건설원칙)

화장터건설을 잘하는것은 화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장터건설계획을 바로세우고 투자를 집중하여 화장터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화장터의 위치, 규모)

지방정권기관은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화장터의 위치와 규모는 교통조건, 인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구수 같은것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령구의 처리방법)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수 있다.

제6조(화장의 신청)

화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기업소에 화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화장신청의 등록)

화장신청을 접수한 화장기업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8조(관의 생산보장)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래에 필요한 관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령구의 접수)

령구접수는 화장터 또는 령구가 안치된 장소에서 한다.

화장기업소는 령구를 접수한 다음 령구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령구안치)

접수한 령구는 화장터에 안치한다. 이 경우 고인과 영결하는 의식을 할수 있다.

제11조(화장의 보장)

화장기업소는 화장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묘지에서 파낸 유골도 화장할수 있다.

제12조(령구의 운반수단)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은 화장기업소가 보장한다. 그러나 화장기업소가 령구운반에 필요한 운수수단을 보장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쓸수 있다.

제13조(유골함)

화장한 유골은 함에 넣는다.

유골함에는 사망자의 이름을 밝히며 유골임자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붙여줄수 있다.

제14조(유골함의 인계 또는 처리)

유골함은 유골임자에게 넘겨준다.

유골임자는 유골함을 보관실에 보관시키거나 집에 가져갈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매장할수 있다.

제15조(유골함의 보관접수)

보관시키려는 유골함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고 유골임자에게 보관증을 준다.

등록대장에는 사망자의 이름, 유골함의 번호와 보관날자, 유골임자의 이름, 주소 같은것을 밝힌다.

제16조(유골함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보관시킨 유골함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유골함을 보관시킨 때부터 10년까지의 사이에 유골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17조(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유골보관시설과 매장장소를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장소에 꽃생산기지 같은것을 꾸려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8조(화장사업에 대한 지도)

화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화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장설비의 운영)

도시경영기관과 화장기업소는 앞선 화장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화장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제때에 하여 그 정상적운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화장부문 일군의 우대)

국가는 화장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선발배치하며 화장부문 일군들을 우대하도록 한다.

화장부문의 로력은 다른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21조(화장, 유골보관료금)

화장하거나 유골함을 보관시킨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2조(관생산용목재와 화장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림업기관,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관생산용목재와 화장에 필요한 설비, 전력, 연유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화장질서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장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화장시설을 못쓰게 만들거나 화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원상복구, 손해보상)

화장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국토, 환경보호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
피해방지 및 구조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주체66(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3-1호로 수정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밭갈이하는 땅은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어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안랴의 온갖 원썩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판리한다.

토지판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의 지도밑에 국토판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판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리발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명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제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제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 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제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제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 지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강과 중소하천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제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

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 도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불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정권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별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딸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

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땀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땀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 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벨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제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제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제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력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 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토지건설

제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역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발판개체계를 완성한다.

제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어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밭최쪽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집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밭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정권기관은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편제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양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목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목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 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인민위원회 또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어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어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판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속에서 산림을 램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판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판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판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판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 판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 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보호건설 및 관리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 립 법

주체 81(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주체 88(199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2호로 수정보충
주체 90(200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
주체 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43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3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4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1조(산림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산림과 그 소유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산림의 분류)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펄나무림으로 나눈다.

제4조(산림건설총계획의 작성과 실행원칙)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제5조(산림조성원칙)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

을 높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담당림 또는 조림구역을 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산림보호원칙)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산림자원의 리용원칙)

국가는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9조(산림경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제2장 산림조성

제10조(전망적인 산림조성)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 또는 조림구역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창성이깔나무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상록수를 배합하여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당 축적을 늘일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식수월간)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균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

국가계획기관은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바로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며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조성설계작성)

나무심기설계는 산림설계기관, 립업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 립업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립상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좋은 수종의 산림으로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뽕나무림, 풀판 같은것을 조성할수 있게 나무심기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나무모생산과 나무종자수매)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과 재질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지력이 높은 땅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삼목, 접목방법 같은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 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이 한다.

제15조(나무종자와 나무모의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담당림을 가지고있는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제16조(나무심기설계)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17조(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나무를 심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심은나무가꾸기, 덧심기를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약초와 산나물재배)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3장 산림보호

제19조(산림보호관리 의무)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산불방지기간)

국가는 산불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입산, 불놓이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토지의 리용, 산림부원의 채취 같은 목적으로 산림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림구역에 들어갈수 없다.

제22조(산불감시 및 산불끄기)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은 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제23조(산림병해충구제)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체계를 세우며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갈수 없다.

제24조(산림병해충구제수단의 연구도입)

산림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 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제25조(산림구역에서 건설, 채벌, 채취작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없이 산림구역에서 도로, 건물,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행위, 묘지를 쓰거나 나무를 찍거나 뜨는 행위, 산을 일구거나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 같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사방야계공사, 그 시설물의 보수정비)

국토환경보호기관, 립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7조(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 보존과 동식물자원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역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역이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구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짐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제28조(유용동식물의 보호증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리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제4장 산림자원의 리용

제29조(산림자원의 계획적, 효과적리용)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산림토지의 리용허가)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순환식채벌에 의한 목재생산)

순환식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방도이다.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제32조(나무베기허가)

나무베기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로부터 나무베기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제33조(나무베기허가사항준수)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허가중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벤 나무의 반출)

벤 나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통나무는 나무반출증이 없이도 실어갈수 있다.

제35조(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의 채취)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진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면서 산림을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제36조(산림토지, 벤 나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 나무 같은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 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나무원목은 뿔나무로 리용할수 없다.

제37조(산짐승, 산새의 사냥)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38조(산림자원의 수출입)

나무와 산짐승,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은 수출할수 없다.

나무로 만든 제품은 해당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새 품종의 산림식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그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5장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장악지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국의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산림건설총계획에 따르는 산림경영)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총계획의 비준은 내각이 한다.

제41조(산림자원의 리용, 변동정형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리용,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리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제42조(산림경영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3조(산림부문의 교육, 과학연구사업)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제44조(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

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람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이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 같은 산림자원이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산림자원이용중지)

나무심기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이용을 중지시킨다.

제46조(원상복구, 벌금, 손해보상금, 몰수)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었거나 떼거나 약초, 산열매 같은것을 채취하였거나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 또는 손해보상금을 물리며 비법적으로 얻은 생산물, 위법행위에 이용된 도구와 수단은 몰수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나무심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를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산림자원을 람벌, 채취, 수출하였거나 산불을 일으킨것 같은 산림조성, 보호, 이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

주체94(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99호로 채택

제1장 간석지법의 기본

제1조(간석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은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간석지의 정의, 등급규정원칙)

간석지는 밀물때 바다물에 잠기고 썰물때 드러나는 바다가의 땅이다.

개간면적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간석지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3조(간석지의 리용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간석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국가는 간석지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간석지의 조사원칙)

간석지의 조사를 잘하는것은 그것을 개간하고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간석지의 개간원칙)

간석지의 개간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한다.

제6조(간석지의 구조물관리원칙)

간석지의 구조물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개간한 간석지를 보호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 및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9조(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간석지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간석지의 조사

제10조(간석지의 조사요구)

간석지의 조사는 간석지의 형성과 특성을 료해하고 개간, 리용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조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석지의 조사기관)

간석지의 조사에는 간석지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 같은것이 속한다.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는 간석지설계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제12조(간석지조사구분)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자연지리학적조사, 지질학적조사, 생물학적조사, 해양기상학적조사, 수문학적조사로 구분한다.

제13조(간석지의 조사방법)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항공촬영 같은 선진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간석지의 조사속도와 과학성을 높이고 개간,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를 적극 찾으며 방조제법선과 배수갑문을 비롯한 간석지구조물의 건설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간석지조사에서 협동, 조사자료제출)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의 조사에서 서로 협동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한 간석지의 조사자료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3장 간석지의 개간

제15조(간석지개간계획의 집행)

간석지개간을 잘하는것은 간석지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간석지의 개간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농경지로 리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 조수력 발전소와 바다저류지, 큰물조절지, 산업부지, 살림집부지, 배대피지 같은것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국방상요구와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개간하며 모래가 많고 수심이 깊은 간석지에는 감탕잡이특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4. 채석장, 부재생산기지, 부두, 철도, 송배전선, 도로건설 같은 준비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5. 구조물을 강한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6.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7. 개간한 간석지를 빠른 기간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간석지의 개간계획작성)

간석지의 개간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간석지개간설계에 기초하여 개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 기술설계작성)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건설주기관이, 기술설계는 간석지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간석지설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비준한다.

제19조(간석지개간의 구분)

간석지의 개간은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로 나누어 한다.

외부망건설에는 방조제건설과 마감막이공사, 배수문건설이, 내부망건설에는 제방건설, 포전정리, 도로, 수로, 살림집건설 같은것이 속한다.

제20조(간석지개간의 담당자)

간석지의 외부망건설과 내부망의 하천제방, 조절지제방건설은 간석지건설기업소가, 그밖의 내부망건설은 내부망건설기업소와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간석지개간의 선후차)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을 확고히 앞세우며 막은 간석지를 리용하기 위한 내부망건설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제22조(간석지개간에서 협동)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에서 협동하여야 한다.

간석지개간에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간석지개간설계의 준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키며 선진공법을 적극 창안, 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대상은 건설할수 없다.

제24조(간석지의 외부망건설방법)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에서 방조제를 콘크리트, 돌,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 피복하며 배수문과 배갑문, 방조제의 바다물면변동부분과 물속부분의 건설에는 국가가 정한 자재만을 써야 한다.

외부망건설은 함형부재공법, 판부재공법, 콘크리트중량부재공법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간석지의 내부망건설방법, 시설배치)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망건설을 록지와 잇닿은 높은 지대로부터 낮은 지대로 하며 농업용포전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고 그에 맞게 도로, 수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은 기술공학적요구와 편리운영에 유리하게 구획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방풍림의 조성)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간한 간석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 주민지와 양어장, 소금밭 같은 생산기지의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제27조(시설건설의 담당자)

개간된 간석지의 리용을 위한 살림집, 상하수도, 주민지까지의 도로건설은 해당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전기, 통신시설의 건설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28조(개간한 간석지의 준공검사)

외부망과 내부망의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는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긴다.

제29조(개간한 간석지의 등록)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한 간석지의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간석지를 제때에 알곡생산과 갈생산, 소금생산, 양어 같은데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개간된 부침땅의 소금기를 빨리 빼야 한다.

제4장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제31조(간석지구조물관리의 요구)

간석지구조물의 관리는 방조제 같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전까지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개간한 간석지에 건설된 구조물의 관리를 위하여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조물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3조(준공검사후 간석지구조물의 관리)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석지구조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제34조(간석지구조물의 피해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의 구조물보호에 필요한 막돌, 부재 같은 보수자재를 확보하여놓아야 한다.

발생한 자연재해를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35조(간석지구조물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간석지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제36조(간석지제방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간석지의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석지제방축선으로부터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일정한 구간을 간석지제방보호구역으로 한다.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7조(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두시설이 없는 제방에는 배를 정박시킬수 없다.

제38조(간석지제방의 관리)

간석지제방과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에 농작물을 심거나 그곳에서 집짐승을 방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안쪽에 조성한 방풍림을 찍지 말아야 한다.

제39조(균중적인 간석지제방의 보호)

공민은 간석지의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구조물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제때에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간석지개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간석지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간석지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3조(개간기간 간석지의 리용)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 개간기간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마련하는데 개간지의 일부를 리용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4조(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5조(간석지개간, 리용의 중지)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간석지개간계획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간석지개간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승인없이 간석지를 개간하거나 리용할 경우
4. 간석지개간설계에 없는 대상을 건설할 경우

제46조(손해보상)

간석지의 구조물을 파손시켰거나 개간한 간석지를 류실시켰거나 또는 계획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이미 한 투자를 허실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간석지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

주체91(2002)년 1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6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6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하천법의 기본

제1조(하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천법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하천의 소유권)

하천에는 강, 내, 개울과 그 보호시설물이 속한다.
하천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하천의 구분)

하천은 규모에 따라 대하천, 중하천, 소하천으로 나눈다.
하천을 나누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판이 한다.

제4조(하천의 정리원칙)

하천의 정리를 잘하는것은 큰물피해를 막고 유리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하천정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하천을 전망성있게 정리하도록 한다.

제5조(하천의 보호원칙)

하천의 보호는 물의 오염과 하천시설물의 파괴, 손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하천보호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천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하천의 리용원칙)

하천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하천리용계획을 세우고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하천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하천을 정리, 보호,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국경하천의 정리, 보호, 리용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하천의 정리

제9조(하천정리의 기본요구)

하천의 정리는 하천보호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수계별정리전망계획과 년차별하천정리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하천의 정리분담)

대하천의 정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중소하천의 정리는 중소하천관리를 분담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평양시 중심구역안에 있는 대하천의 정리는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하천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하천의 조사,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의 구간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는 하천의 이름과 규모, 정리상태와 대상, 내용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하천의 정리설계)

하천의 정리설계는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하천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하천정리계획과 기술과제에 따라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설계요구의 준수)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시공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가 없이는 하천정리를 할수 없다.

제14조(하천정리의 선후차)

하천을 정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위험이 큰 하천의 구간과 주민지구, 산업지구, 농경지와 접하고있는 하천의 구간부터 먼저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하천정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하천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따라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 설비, 자재를 하천정리에 동원시킬수 있다.

제16조(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의 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년간으로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의 하천정리계획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는 총동원기간이 끝나는 차제로 한다.

제3장 하천의 보호

제17조(하천보호의 기본요구)

하천의 보호를 잘하는것은 하천을 정상상태로 유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분담받은 하천구간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제18조(하천보호시설물의 보수, 정비)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보수, 정비체계를 세우고 제방, 옹벽, 모래잡이언제, 수문 같은 하천보호시설물을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높아진 하천바닥은 제때에 파내야 한다.

제19조(사방야계시설물의 설치, 수원함양림의 조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하천에 흙, 모래,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제20조(하천제방의 보호)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방에 석축을 하거나 타래붓꽃, 잔디, 싸리나무 같은것을 심으며 하천주변에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21조(큰물피해의 방지)

하천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에 의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조사장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큰물관리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받은 하천의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제22조(큰물위험에 대한 관측, 통보)

기상수문기관은 하천의 수위와 물흐름량, 예견되는 비내림량 같은것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큰물위험에 대한 예보는 지체없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하천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하천기슭과 제방, 수질 같은것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보호구역을 정한다.

하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하천에서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에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내보내거나 유독성물질, 동물의 사체, 오물을 버리지 말며 하천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를 항행시키거나 집짐승을 목욕시키거나 룬전기재를 청소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하천시설물의 건설, 관리운영)

하천에 언제, 갑문, 발전소, 다리, 물막이죽 같은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흐름이나 배의 항행, 때목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갑문, 저수지제방 같은데는 물고기의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

제4장 하천의 리용

제26조(하천리용의 기본요구)

하천의 리용은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경제적수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의 물자원과 수역토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하천리용을 승인받는 경우)

하천의 리용을 승인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의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개용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
2. 하천수역토지를 농경지 또는 부업지로 리용하려 할 경우
3. 하천수역에 언제, 저수지, 발전소, 부두, 양어장, 물놀이장, 다리 같은것을 건설하거나 변경, 폐기하려 할 경우
4. 하천수역에서 사금, 모래, 자갈, 흙 같은것을 채취하려 할 경우
5. 하천의 물줄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
6. 배를 항행시키거나 때목을 나르려 할 경우
7. 하천의 주변에 심은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려 할 경우

제28조(하천리용승인의 신청)

하천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 또는 해당 기관에 하천리용승인신

청문건을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리용대상과 목적, 기간, 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9조(하천리용승인신청의 심의)

하천리용승인신청문건을 받은 기관은 2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부결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다.

제30조(하천수역토지의 리용)

하천의 수역토지를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등록대에 등록하고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덧제방을 쌓지 말아야 한다.

제31조(하천수역토지의 폐경)

농경지, 부업지로 리용하던 하천수역토지를 폐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토지를 이관받은 기관은 그것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

하천의 수역에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물,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제33조(하천수역작업장의 정리)

하천의 수역에서 건설 또는 채취작업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판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리할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주어야 한다.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4조(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하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5조(하천부문 사업의 지도)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하천정리, 보호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하천의 정리, 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하천의 정리, 보호에 보장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37조(하천부문 사업의 감독통제)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거나 물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키는것 같은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원상복구, 손해보상)

하천을 오염시키거나 하천보호시설물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 또는 승인없이 하천을 리용하였거나 물줄기를 변경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하천의 정리와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 문 법

주체90(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0호로 채택

제1장 갑문법의 기본

제1조(갑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갑문법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갑문의 건설원칙)

갑문은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며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갑문건설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새로운 갑문을 전망성있게 건설하도록 한다.

제3조(갑문의 관리원칙)

갑문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갑문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갑문관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갑문의 운영원칙)

갑문운영은 갑문설비를 조작하고 운수수단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갑문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5조(갑문부문의 과학연구와 일군양성원칙)

국가는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갑문사업분야에 대한 교류 및 협조)

국가는 갑문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갑문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갑문을 리용하는 다른 나라의 운수수단과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갑문건설

제8조(갑문건설의 기본요구)

갑문건설을 바로하는것은 수송능력을 높이고 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갑문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갑문의 설계기관)

갑문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갑문건설주기관은 해당 설계기관에 기술과제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

제10조(갑문의 규모와 위치확정)

갑문건설주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리구조물, 지반탐사자료, 수문학적동태 및 수리모형실험자료, 화물류통량, 물소요량, 갑문건설조건과 운영조건 같은것을 타산하여 갑문의 규모와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갑문의 설계)

갑문설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송과 판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의 보장, 수력자원의 리용, 퇴적물과 큰물, 고인물의 처리, 갑문수역의 생태환경변화와 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고려하여 갑문을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갑문건설에 대한 주문 및 계약)

갑문건설은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사이의 주문과 계약에 따라 한다.

필요에 따라 갑문건설을 건설주기관이 직접 할수도 있다.

제13조(갑문건설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준수)

갑문시공주기관은 갑문건설에서 공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제14조(갑문구조물의 건설)

갑문에는 갑실, 무넘이언제, 물받이구조물, 접근수로, 갑실유도부, 급배수시설, 제선장, 물고기길 같은 구조물을 건설한다.

큰 규모의 갑문에는 등대와 조종탑, 교량구조물, 발전소를 건설할수 있다.

제15조(갑문설비의 설치)

갑문에는 수문과 수리수문, 수밀장치, 권양설비를 설치한다.

계류설비, 안내설비, 뿔프 같은 보조설비도 설치한다.

제16조(배길개척, 갑문운영에 필요한 배의 배치)

갑문저수지의 류역이 넓고 수상운수에 의의가 있는 큰 규모의 갑문에는 배길개척과 갑문운영에 필요한 준첩선, 수로안내선, 끌배, 쇄빙선, 기름 및 오물포집선, 수문판측선을 둘수 있다.

제17조(갯문운영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갯문구역에는 갯문운영을 위한 신호설비와 배길표식물, 지휘통신수단을 설치한다.

기상, 수문 및 해양관측설비와 측정설비도 설치할수 있다.

제18조(갯문의 준공검사)

갯문건설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갯문은 넘겨주고 받을수 없다.

제19조(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의 퇴치)

갯문구조물과 설비의 보증기간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서는 갯문시공주기관 또는 설비제작기관이 책임진다.

갯문시공주기관과 설비제작기관은 갯문구조물건설과 설비제작에서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개용수문과 취수구의 개조, 건설)

갯문저수지의 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마철 큰물처리를 위한 최저수위에 맞게 저수지류역의 관개용수문과 취수구를 개조하거나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3장 갯문관리

제21조(갯문관리의 기본요구)

갯문관리는 갯문구조물과 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갯문저수지의 물을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갯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운수수단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수 있도록 갯문관리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2조(갯문언제의 집중검사)

갯문언제에 대한 집중검사는 해마다 한다.

갯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갯문언제의 침하, 변위, 부식, 패임 같은 변화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문과 설비의 기술검사)

갯문운영기관은 수문과 권양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주기를 지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술검사를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제24조(시설물의 보수정비)

갯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길표식물, 등대, 방파제 같은 시설물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갯문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갯문시설물과 수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갯문보호구역을 정한다.

갯문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갯문저수지구역에서의 건설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갯문저수지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이설작업을 하려 할 경우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갯문보호구역에서는 폭파, 굴착, 준칩 같은 갯문과 배길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7조(물깊이의 측정)

갯문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깊이측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갯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상태를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갯문저수지의 퇴적과 세굴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갯문시설물의 점검보수)

갯문운영기관은 장마철전으로 갯문시설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조작시험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갯문저수지의 수위조절)

갯문저수지의 수위조절사업은 갯문운영기관이 한다.

갯문운영기관은 지령체계를 세우고 갯문저수지의 물량을 타산하여 기준수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갯문저수지의 수위조절에 필요한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갯문저수지의 물관리)

장마철 갯문저수지의 물관리는 큰물지휘부가 한다.

큰물지휘부는 기상수문기관이 낸 기상수문예보와 관측자료, 수리운영자료와 관련 저수지들의 관리운영실태를 장악하고 물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갯문별류입량과 방수량의 통보)

갯문운영기관은 갯문별류입량과 방수량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버림물의 정화)

버림물을 갯문저수지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을 갯문저수지로 내보낼수 없다.

제33조(갯문수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

갯문을 통과하는 배는 갯문수역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갯문을 통과할수 없다.

제34조(갯문저수지구역의 관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갯문저수지구역에 풍치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곳에는 사방야계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4장 갑문운영

제35조(갑문운영의 기본요구)

갑문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갑문운영기관은 갑문운영조직을 바로하여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36조(배의 갑문통과시간)

배의 갑문통과는 낮에 한다.
필요에 따라 배를 밤에도 통과시킬수 있다.

제37조(배의 갑문통과순위)

배의 갑문통과는 도착순위대로 한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배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먼저 갑문을 통과시킬수 있다.

제38조(배의 갑문통과신청)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갑문운영기관에 갑문통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속기관명, 배의 길이, 너비, 흘수, 총톤수, 순톤수, 기관출력, 화물종류와 수량, 호출대호, 대기지점도착예정시간을 알려야 한다.

제39조(갑문운영기관의 임무)

갑문운영기관은 배의 조종상특성과 기관의 기술상태를 확인하고 갑문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경우 배의 크기, 기술적특성, 일기조건을 고려하여 갑실을 정하며 필요에 따라 끌배를 붙이고 배를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40조(무역잡배의 배길안내)

갑문을 통과하는 무역잡배는 의무적으로 배길안내를 받으며 갑문운영기관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는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41조(갑문을 통과하려는 배의 대기)

갑문을 통과하려는 배는 대기지점에서 기다려야 한다.
갑문을 통과하지 않을 배와 룬전기재는 갑문보호구역에 들어올수 없다.

제42조(배통과작업을 할수 없는 사유의 통보)

갑문운영기관은 재해성 기상 및 해상현상, 큰물처리, 갑실보수, 사고복구 같은 일로 배통과작업을 할수 없을 경우 갑문통과를 의뢰한 기관이나 배에 알려야 한다.

제43조(갑문수역에서 사고발생시의 책임)

갑문수역에서 배와 재산을 가라앉혔거나 표류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견져내거나 끌어내야 한다.

제44조(갑문의 통과료금)

갑문을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갑문통과료금을 물어야 한다.
갑문통과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교통운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갑문사업에 대한 지도)

갑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갑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갑문지도기관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갑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해당 기관은 갑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갑문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는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48조(갑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갑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갑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갑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갑문건설과 관리운영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갑문구조물과 설비, 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벌금 및 억류)

갑문저수지수역을 오염시켰거나 갑문통과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배와 인원을 억류할수 있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갑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

주체86(1997)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장 물자원법의 기본

제1조(물자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물자원과 그 구성)

물자원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물이다. 물자원에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과 광천, 지하수가 속한다.

제3조(물자원의 조사, 개발원칙)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잘하는것은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물자원을 적극 찾아내고 전망성있게 개발하도록 한다.

제4조(물자원의 보호원칙)

물자원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물자원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체 인민이 물자원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물자원의 리용원칙)

물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며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물자원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물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제7조(물자원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제8조(물자원조사, 개발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은 물자원을 장악하고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물자원조사기관)

땅결면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물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해당 과학연구 및 설계기관도 땅결면에 있는 물자원을 조사할수 있다.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지하자원탐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0조(물자원의 조사방법)

물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물자원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조사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제11조(물자원개발계획의 작성)

물자원의 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물자원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물자원의 개발승인)

물자원의 개발승인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개발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물자원개발신청서에는 물자원개발목적과 규모를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물자원의 개발설계)

물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설계기관은 물자원개발설계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물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물자원의 개발기준)

물자원의 개발은 물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시공에서 앞선 공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3장 물자원의 보호

제15조(물자원보호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보호는 물의 질과 량을 보존하고 물의 손실을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

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특성에 맞게 물자원보호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물자원의 보호분담)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요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저수지, 호소, 중소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7조(물자원의 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고 저수지, 호소, 우물, 굴포 같은 물잡이시설물의 보수와 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필요한 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된 물은 쓸모없이 흘러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18조(버림물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수 없다.

제19조(큰물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물관리에 필요한 기상수문관측자료와 기상예보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비상설큰물관리지휘부)

국가는 장마철기간 물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큰물관리지휘부를 조직한다.

큰물관리지휘부조직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장마철기간의 물관리)

장마철기간 물관리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큰물관리지휘에 필요한 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물빼기시설물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큰물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장악하고 장마철전으로 대책을 세우며 수문, 양수장을 비롯한 물빼기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물빼기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하천의 물흐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하천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물체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며 모래, 자갈 같은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

제4장 물자원의 리용

제24조(물의 절약)

물자원의 리용을 잘하는것은 물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량비를 없애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5조(계획적인 물리용)

물자원의 리용은 물리용계획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물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제26조(다른 지역 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물자원부족으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물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물리용시설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수관, 물길을 비롯한 물리용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 물손실을 없애야 한다.
물손실이 많은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제28조(용도에 맞는 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농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9조(물의 수출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물리용소비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리용소비기준을 초과하지 말며 물을 아껴써야 한다.

제5장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물자원의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물자원관리에 대한 지도)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물리용률의 제고)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물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물자원부문의 사업조건부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물자원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물의 리용중지, 손해보상)

물리용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거나 버림물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로 법

주체86(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3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2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6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9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9호로 수정보충

제1장 도로법의 기본

제1조(도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도로건설원칙)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제3조(도로관리원칙)

도로관리를 잘하는것은 도로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4조(도로의 리용원칙)

도로는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제5조(전인민적도로애호교양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과학연구, 기술자, 전문가양성, 과학기술도입원칙)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도로건설과 관리에서 선진과학기술과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도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도로건설

제8조(도로건설의 기본요구)

도로건설을 잘하는것은 도로망을 완성하고 도로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계획적으로,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건설계획)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할 도로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도로건설을 대상건설에 앞세울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0조(도로설계)

도로설계는 도로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세계적인 도로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주민지대를 우회시키며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도로건설의 담당자)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의 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도로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설계에 기초한 도로건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건설을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도로건설을 할수 없다.

제13조(기술규정, 표준공법의 준수)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건설,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공법을 지켜야 한다.

제14조(도로의 포장)

주요도로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장한다.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제15조(도로건설작업의 기계화)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갖추고 도로건설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건설의 질검사)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3장 도로관리

제17조(도로관리의 기본요구)

도로관리는 도로를 보수정비하여 그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도로의 급수)

도로는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급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한다.

제19조(도로관리의 담당자)

도로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1급부터 4급까지의 도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이, 5급, 6급도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20조(도로실태의 조사와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실태를 조사장악하고 도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도로등록대장에는 도로명, 도로의 급수와 길이, 너비, 포장실태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도로의 보수정비)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수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는 깎자갈 또는 석비레를 퍼거나 도로바닥을 깎고 다지는 방법으로 평탄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차세척)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도로 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장을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먼지, 흙탕물 같은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수 없다.

제23조(도로의 주변관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옆에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성격과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으며 나무사이의 간격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제24조(도로관리구간의 분담)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도로의 정상관리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잘하여 못쓰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의 필요한 구간에 도로관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도로보수정비기간)

국가는 도로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한다.

도로보수정비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집중적인 도로보수정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보수정비기간에 노력과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도로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고속도로와 중요도로로부터 정한 거리안에 건물을 짓지 말고 나무숲을 조성하며 고속도로주변에 있는 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로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승인없이 고속도로에 인입도로를 내거나 가로수를 찍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4장 도로리용

제28조(도로리용의 기본요구)

도로리용을 잘하는것은 교통의 안전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29조(고속도로의 리용)

고속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어지럽거나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고속도로로 운행할수 없다.

제30조(고속도로의 리용금지)

고속도로의 승인되지 않은 인입도로로는 차를 운행할수 없다.

공민은 고속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짐수송시의 도로관리)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포장도로에 흙을 묻혀들이지 말며 석탄, 세멘트 같은것을 수송하면서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 손상을 줄수 있는 짐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2조(도로표식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정해진 곳에 경고, 금지, 지시, 안내표식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표식물은 빛반사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도시도로의 차운행)

도시도로에서 차의 운행은 정해진 도로로만 할수 있다.

무한궤도차는 승인없이 세멘트, 아스팔트포장도로로 다닐수 없다.

제34조(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공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것 같은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공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차운행에 지장이 없게 돌림길,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제35조(도로사용료)

도로를 리용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관광, 짐수송 같은 목적으로 도로를 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묻다.

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제38조(도로판정검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마다 도로판정검열을 조직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도로관리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도로부문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도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0조(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도로건설의 중지)

승인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도로건설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로건설을 중지시킨다.

제42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주체 75(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 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 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3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82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2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1조(환경보호의 성격)

환경을 보호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
화위생적인 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나라의 환경을 보호관리하는 사업
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조(환경보호원칙)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이루어지고나가야 할 중요
한 사업이다.

국가는 환경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공업을 비롯한 해당 경
제부문이 현대적으로 발전하는데 따라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제3조(환경보호의 계획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환경을 꾸리기 위하여 환경보호관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을 형성하며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산업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제4조(공해방지대책의 선행원칙)

생산과 건설에 앞서 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공해방지대책을 먼저 세우고 생산과 건설을 진행
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끊임없이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5조(전인민적인 환경보호관리원칙)

환경을 보호관리하는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국의 강산과 향토를 사랑하며 나라의 환경을 더 잘 보호관리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6조(환경보호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제7조(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시험, 사용금지원칙)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

제8조(환경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환경보호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제10조(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의 기본요구)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조성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을 지어주며 후대들에게 더 아름답고 문화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그것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유리하게 꾸리고 잘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선정)

환경보호를 위하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2조(환경보호대책의 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동식물의 변화, 지형과 수질의 변화, 기후변동 같은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등록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보호관리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3조(자연풍치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시와 마을, 도로와 철길주변, 호수와 하천주변의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를 손상,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철길과 잇닿아있는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 수림화하며 부대기밭이나 무림목지를 없애야 한다.

제1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와 관광지, 휴양지에 탄광, 광산을 개발하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짓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동굴, 폭포, 옛성터를 비롯한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땅의 침하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지하건설을 할 경우 땅이 꺼져 환적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땅이 꺼져 피해를 받을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쓸수 없다.

제16조(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야생동물과 수중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종 및 위기종으로 등록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여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리용에 지장을 주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호증식하기로 된 동식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없이 잡거나 채취할수 없다.

제17조(문화휴식터건설과 원림, 녹지 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꾸리며 도로, 철길, 하천, 건물주변과 구획안의 빈땅이나 공동리용장소에 여러가지 환경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좋은 수종의 나무, 화초, 잔디 같은것을 심어야 한다.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에는 나무를 심고 양묘장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을 제외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본철길보호구역밖의 좌우 20m구간의 토지를 리용할수 없다.

제18조(국토환경보호월간)

국가는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토관리총동원월간, 식수월간, 도시미화월간 같은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한다.

국토환경보호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장 환경오염방지

제19조(환경보호기준의 준수)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것은 공해현상을 없애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한계기준과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0조(가스, 먼지잡이와 공기려과장치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과 시설물에 가스, 먼지잡이장치와 공기려과장치를 갖추고 가스나 먼지, 악취 같은것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며 로와 탱크, 배관 같은 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보이라는 운영할수 없다.

제21조(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설비의 가동금지)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료전기재와 포장하지 않은 물자를 실어 먼지를 일으킬수 있거나 어지러워진 료전기재는 운행할수 없으며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설비는 가동할수 없다.

인민보안기관은 료전기재에 대한 기술검사와 운행단속을 엄격히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특수기상조건에 의한 대기오염의 방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가스, 먼지 같은것이 특수한 기상현상의 영향으로 대기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을 경우 해당 설비의 가동과 료전기재의 운행을 조절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특수한 기상현상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나무잎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며 도시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그것을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오물처리장에 모아놓은 오물은 제때에 실어내야 한다.

제24조(버림물의 정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상수도시설의 보수정비, 먹는물의 려과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먹는물의 려과소독을 엄격히 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이 정확히 보장된 먹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취수구와 저수지, 배수구주변에는 공장, 기업소와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으며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해로운 화학물질을 칠수 없다.

제26조(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환경보호)

공화국의 령해, 경제수역과 항만, 포구, 갑문, 하천, 호소,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있는 배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것을 버리거나 뱉구지 말아야 한다.

자원개발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 같은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7조(배의 오염방지설비)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tons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검사를 할 경우 오염방지설비가 갖추어져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배로 인한 오염의 방지)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

제29조(정화장, 오물, 공업폐설물처리장의 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먹는물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박토장, 버력장, 저탄장, 연재 및 광채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꾸리며 그 리용이 끝난 다음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화학물질의 생산과 수입, 독성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려 할 경우 국가품질감독기관과 해당 검정기관의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는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은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다.

제31조(농약의 보관, 리용, 오염된 농산물의 판매, 공급금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의 보관, 리용을 정해진대로 하여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독성물질이 대기중에 날리거나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게 하며 땅속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약을 비행기로 뿌리려 할 경우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에는 그것을 제때에 해소시키고 농작물을 심어야 하며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판매, 공급할수 없다.

제32조(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성기체, 먼지, 버림물, 폐설물의 려과, 정화시설을 갖추고 방사능농도를 배출기준아래로 낮추어야 한다.

개방상태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주변환경에 대한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3조(방사성물질취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 공급, 운반, 보관, 사용, 폐기하려 할 경우 방사선감독기관 또는 인민보안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감독기관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오염된 물품의 수입금지)

환경보호와 인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오염된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은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식료품, 의약품, 생활용품, 동물먹이 같은것을 들여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금지)

해로운 물질을 내보내거나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환경을 심히 파괴시킬수 있는 폐기물과 설비, 기술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36조(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측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해로운 물질의 배출량과 농도, 소음과 진동의 세기를 정상적으로 분석, 측정, 기록하며 계통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가 없거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해로운 물질은 내보낼수 없다.

제37조(공해를 일으키는 건물, 시설물의 이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 기업소를 도시밖으로 내가고 화물수송도로와 철길을 주민구역밖으로 돌리거나 지하에 넣으며 오염피해를 받는 살림집을 생활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

도시의 중심에는 공해를 일으킬수 있거나 물동량이 많은 공장, 기업소를 건설할수 없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 시설물은 사용할수 없다.

제38조(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와 경제의 지속적발전요구에 맞게 석탄,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풍력, 조수력, 지열 같은 재생에너지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인증제도의 실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받을수 있다.

환경관리체계와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을 해주는 사업은 해당 환경인증기관이 한다.

제40조(재자원화기술의 도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정에 생기는 부산물과 폐기폐설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환경오염을 막고 원료, 자재의 소비를 줄이며 재자원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4장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

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
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43조(환경감시체계수립, 환경상태장악)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적인 환경감시체계를 세우고 나라의 환경상태
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정확히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환경경제지표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환경부문의 경제지표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45조(환경보호사업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및 측정사업과 관련하여 국토환경보
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기술과제와 설계의 심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과제와 설계의 작성을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하며 국
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기술과제와 설계는 심사비준할수
없다.

제47조(공해방지시설과 준공검사)

준공검사기관은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대상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승
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48조(환경실태장악)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에 1차씩 자기 단위의 환경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년에 1차씩 전국적인 환경실태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내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환경보호과학연구성과의 도입)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환경보호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요인
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막고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
화하며 그 성과를 환경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0조(환경보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진하여야 한다.

제51조(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건강,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3조(억류, 손해보상, 벌금)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 나라의 영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린다.

제54조(환경보호질서를 어긴 건물, 시설물의 운영중지, 몰수)

환경보호질서를 어기고 대상건설을 진행하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료전기재를 운행시킬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건물, 시설물을 철수시키고 위법행위에 리용된 물자와 돈은 몰수하며 파괴된 환경은 원상복구시킨다.

제5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7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

제1조(환경영향평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부정적영향을 없애거나 최대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사업이다.

계획에는 국토계획과 건설총계획이, 개발에는 자원 및 에너르기의 개발이, 건설에는 신설, 기술개선, 증축, 개축, 이개축이 속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원칙)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환경피해의 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미리 막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원칙)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환경보호의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계획의 작성과 개발, 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결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원칙)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며 환경영향평가사업을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적용대상)

이 법은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제9조(환경영향평가문건신청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기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계획작성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할수도 있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문건작성을 위한 조사)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와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그것으로 하여 있을수 있는 환경변화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방법)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해당 계획에 환경보호편을 주는 형식으로,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은 대상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류별로 한다.

제13조(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

환경영향평가문건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개발, 건설의 특성
2. 계획, 개발, 건설이 진행될 현지의 실태
3. 계획, 개발, 건설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예측평가한 자료
4.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거나 줄이기 위한 대책

제1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시기)

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작성된 계획조안의 심의전단계, 개발,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은 건설위치지정서와 건설명시서의 발급신청 전단계에서 한다.

제15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에 제기한다.

우리 나라에서 개발, 건설을 하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타말로 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함께 내야 한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

제16조(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의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문 전문일군들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기간)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에 대하여서는 심의기간을 15일간 더 연장할수 있다.

제18조(환경영향평가에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의무)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과 환경보호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문건이 작성되었는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심의관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내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하는 건설총계획
2. 중앙기관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설계를 승인하는 대상, 합영합작기업, 외국인기업
3.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대상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상

제20조[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심의관할]

도(직할시)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문건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도(직할시), 시(구역), 군국토건설총계획과 해당 부문별건설계획
2. 도(직할시), 시(구역), 군이 담당한 개발, 건설대상

제21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조건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결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부결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3조(심의에서 제기된 의견의 처리)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심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된 결함을 고치고 다시 심의해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취소)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개발, 건설이 승인되어 3년이 지났으나 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4장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

제25조(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환경영향평가승인통지를 받는데 따라 해당 계획을 작성하거나 개발, 건설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설계의 작성)

해당 설계기관은 기술설계에 환경영향평가결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발생한 부정적영향에 대한 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계획의 작성, 개발,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부정적영향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결정집행에 대한 검사)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개발, 건설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는 대상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요구를 집행하지 않은 개발,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을 줄수 없다.

제29조(환경영향평가승인을 받지 않은 대상의 부결)

국가건설감독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국가계획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계획, 개발, 건설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0조(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환경영향평가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통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정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중지, 손해보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평가결정을 어기고 계획을 작성하였거나 개발, 건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

주체86(1997)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조(바다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바다오염방지원칙)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잘하는것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바다오염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수질보호구역)

국가는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조(수질보호구역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보호구역에서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탐사작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문건)

해안에 항, 연유저장고, 원자력발전소 같은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하고 해당 시설물의 건설을 합의해주어야 한다.

제6조(버림물의 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제7조(해안에서 미광, 광재, 오물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에 미광, 광재, 오물 같은것을 버리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8조(항과 갑문수역의 오염관찰)

항,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받아 처리하

는 시설을 갖추며 항과 갑문수역이 오염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제9조(농약을 친 논의 물처리)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수 있을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바다자원의 탐사, 개발설비보수)

바다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 개발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점검하며 설비운영과정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제11조(배의 오염방지설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는 항해할수 없다.

제12조(배운영과정에 생긴 오염물질의 처리)

배운영과정에 생긴 오염물질은 바다에 버릴수 없다.

항에 정박하고있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기름용기와 신고부리는 설비의 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기름을 싣거나 배에서 기름을 부리려 할 경우 해당 설비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유독성물질의 수량과 농도통보)

배로 유독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물질의 수량과 농도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을 신고부릴수 없다.

제15조(배의 사고발생시 오염방지)

배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질서를 지켜 배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

배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알리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바다오염행위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바다오염해소를 위한 로력, 설비의 동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그것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제19조(바다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20조(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바다오염방지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3조(설비철수, 배운영중지)

바다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바다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철수시키거나 배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제24조(원상복구, 벌금, 손해보상)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며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2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바다오염방지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주체97(2008)년 9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7호로 채택

제1장 대동강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대동강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은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대동강오염을 막고 대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 개선하는것은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대동강연안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3조(도시, 산업시설배치원칙)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도시와 마을, 산업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4조(대동강오염방지구역의 설정)

국가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대동강오염방지구역을 정한다.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는 대동강상류로부터 서해잡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구역이 속한다.

제5조(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원칙)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는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선차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제때에 세우도록 한다.

제6조(오수정화시설설치 및 운영)

대동강류역의 주민지구와 기업소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 내보내는것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대동강류역의 주민지구와 해당 기업소들에 현대적인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오염된 물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제7조(대중적인 대동강의 환경보호사업)

대동강의 환경보호사업은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대동강의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과학연구)

국가는 대동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대동강류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지켜야 할 질서를 규제한다.

대동강의 관리, 리용,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

제10조(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체계수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를 엄격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대동강의 수질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에 수질조사지점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주에 2차이상 수질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물철과 장마철 물량 또는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는 매일 수질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대동강의 환경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보호시설물의 건설 및 보수, 정비상태와 강바닥정리상태, 물량변화상태, 물고기 또는 물풀의 서식상태, 적조현상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군중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으로 오수가 흘러들거나 물고기가 죽거나 그 밖에 환경파괴현상 같은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4조(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의 기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상태에 대한 조사자료를 장소별, 날자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환경이 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5조(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통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와 그에 따르는 대책적문제를 종합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월에 1차씩 통보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수질 및 환경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그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오수정화시설 완비)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것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능력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지 않은 생활오수나 산업폐수는 내보낼수 없다.

제17조(오수정화시설건설계획의 작성 및 실행)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오수정화시설건설을 반영하고 상부구조건설에 앞세워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건설계획과 설계의 요구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건설하지 않고는 다음단계의 건설을 할수 없다.

제18조(오수정화시설의 정비보수 및 능력확장)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오수정화장과 뿔프장, 오수망에 대한 정비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수정화시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오수관통수능력이 모자라거나 오수망이 없는 지역에는 제때에 오수정화장과 오수망을 새로 건설하거나 그 능력을 확장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오수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오수망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폐수의 정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과학적인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산업폐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산업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망탕 내보내는 기업소는 운영할수 없다.

제21조(도시오수망을 통한 산업폐수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업폐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려 할 경우 도시경영기관으로부터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오수망을 통해 내보내는 산업폐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 할경

우에는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도시오수망인입허가를 받아 산업폐수를 도시오수망으로 내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보내는 산업폐수를 정상적으로 분석하여 도시경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산업폐수)

다음의 산업폐수는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폐수
2. 오수정화에 지장을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 산업폐수
3. 유독성폐수와 병원성폐수
4. 미광물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메게 할수 있는 산업폐수

제23조(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의 정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를 엄격히 소독, 정화하여야 한다.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기, 폐설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소독 또는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제24조(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설치)

도시경영기관은 오수관, 우수관, 도랑, 대동강합류점 같은 곳에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여 모래, 감탕,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관과 우수관, 도랑, 대동강합류점에 쌓인 모래, 감탕, 오물은 제때에 쳐내야 한다.

제25조(항, 부두, 갑문구역에 오수, 오물처리시설설치)

항, 부두,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정화장, 오물처리장 같은 것을 갖추고 정박하고있거나 통과하는 배의 오수와 오물을 받아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구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거나 파내야 한다.

제4장 대동강의 환경보호

제26조(대동강환경보호사업의 기본요구)

대동강의 환경보호는 대동강을 오염이 없고 아름다운 강으로 보존하고 대동강류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을 아름답게 꾸리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제27조(대동강관리분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관리담당 구간을 정확히 정하고 분담받은 구간에 대한 제방공사, 호안공사, 응벽공사, 강바닥파기, 물줄기바로잡기 같은것을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사방야계시설물의 설치, 수원함양림의 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방야계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원함양림을 조성하여 큰물과 산사태로부터 대동강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원함양림은 채벌할수 없다.

제29조(대동강류역의 원림조성)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류역에 잔디와 타래붓꽃, 떨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계획적으로 원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대동강제방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비료, 농약으로 인한 오염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류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대동강에서 세척할수 없다.

제32조(미광, 버력, 오물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에 버력, 오물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광산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침전지를 만들어 미광이 대동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기름류출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수역과 그 기슭에서 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자갈 채취 같은 작업과정에 설비와 룰전기재의 기름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동강수역과 그 기슭에서 설비와 룰전기재를 세척할수 없다.

제34조(배의 오수, 오물처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운영과정에 나오는 오수, 오물을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배의 오수, 오물은 대동강과 그 기슭에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

제35조(환경보호담보증의 발급)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은 배는 대동강에서 운항할수 없다. 이 경우 오염방지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배는 해당 협약에 따른다.

환경보호담보증을 발급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36조(유독성물질, 기름의 실고부러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유독성물질, 기름을 실거나 부러려 할 경우 수

량, 농도, 용기와 설비의 상태를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싣거나 부릴수 없다.

제37조(유해물질의 류출방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운항과정에 기름 같은 유해물질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항무감독기관은 유해물질의 류출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배의 발라스트물교체수역의 선정)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배의 발라스트물교체수역을 서해갑문밖에 정하여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에서 배의 발라스트물을 뽑지 말아야 한다.

제39조(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

중앙갑문지도기관은 서해갑문 같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물을 교체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갑문의 수문조절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대동강의 정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바닥파기, 물풀제거, 호안정리 같은 대동강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대동강정리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대동강물환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갑문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대동강 환수체계를 세우고 대동강물을 주기적으로 환수시켜야 한다.

제42조(물고기의 서식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동강에서 물고기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대동강에서는 폭약, 농약이나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제43조(건설, 탐사,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동강에 갑문, 물길, 항, 부두 같은 시설물과 공장을 건설하거나 그 류역에서 지하자원을 탐사,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과 공장의 건설, 지하자원의 탐사, 개발은 할수 없다.

제5장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동강오염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전력,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전력과 설비, 자재, 로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동강의 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오수정화정형 료해대책)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여 내보내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8조(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설계대로 오수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산업폐수를 환경보호기준의 요구에 맞게 정화하지 않고 내보낼 경우
3. 도시오수망인입허가없이 산업폐수를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 경우
4. 미광침전지를 만들지 않고 미광을 대동강으로 흘러보낼 경우
5. 운항도중 기름 같은 유해물질을 류출시킬 경우
6. 환경보호담보증이 없거나 환경보호검사를 받지 않고 배를 운항할 경우
7.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과 기름을 실거나 부릴 경우

제49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수질 및 환경조사를 바로하지 못하여 대동강환경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오수정화시설의 건설, 보수, 정비, 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정화하지 않은 오수가 대동강으로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3. 오수정화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를 보장해주지 않아 오수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오수관을 우수관에 련결하여 오수가 그대로 대동강으로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산업폐수를 내보냈거나 도시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는 산업폐수를 내보냈을 경우
6.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폐수, 폐기, 폐설물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모래 또는 오물잡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모래, 감탕, 오물을 제때에 쳐내

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대동강관리담당구간에 대한 관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대동강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농작물을 심었거나 축조한 돌을 뽑았거나 수원함양림을 채벌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 비료, 농약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그것이 대동강에 흘러들게 하였을 경우
11. 대동강에서 설비와 룰전기재 같은것을 세척하였거나 기름, 유해물질을 류출시켰을 경우
12. 미광, 버럭, 오물 같은것을 대동강에 버렸을 경우
13. 배출기준을 어기고 생활오수, 산업폐수를 대동강에 배출하였을 경우
14. 대동강에서 폭약, 농약, 유독성물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15. 감문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동강의 감탕을 빼고 물을 교체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오수정화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오수정화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배의 오수, 오물처리를 바로하지 않아 대동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0조(형사적책임)

제4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

주체100(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7호로 채택

제1장 방사성오염방지법의 기본

제1조(방사성오염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환경방사능의 감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사성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다.
방사성물질에는 우라늄, 토륨 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과 플루토늄, 스트론튬, 세슘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물질이 속한다.
방사선을 만들어 내보내는 시설 및 장치도 방사성물질과 같이 취급한다.
2. 핵시설이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 또는 보관하는 시설이다.
핵시설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 핵가속장치, 방사성물질의 생산, 가공, 저장, 재처리시설 같은것이 속한다.
3. 환경방사능이란 대기, 물, 토양, 생물 같은 자연환경속에 포함되어있는 자연 및 인공방사능이다.

제3조(방사성오염의 미연방지원칙)

방사성오염을 철저히 막는것은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방사성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방사선피해를 제때에 제거하도록 한다.

제4조(방사성오염방지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그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방사성오염방지사업의 과학화, 현대화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방사성오염방지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균증적인 방사성오염방지사업원칙)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사성오염의 위험성을 잘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한 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한다.

제7조(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방사성물질을 다루거나 핵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와 련관되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제9조(방사선안전기준에 따르는 방사성오염방지대책수립)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것은 방사성오염을 막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방사성물질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기준에 따르는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선안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제10조(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신청)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핵안전감독기관에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신청문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목적과 방법, 방사성오염방지대책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1조(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승인)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신청문건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한데 기초하여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방사선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승인을 해줄수 없다.

제12조(방사성물질의 등록)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및 장치는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장치는 리용할수 없다.

제13조(방사성물질의 공급, 이관,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공급하거나 이관, 반환하려 할 경우 핵 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 이관,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방사성물질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보관하려 할 경우 방사선을 차폐할수 있게 특별히 제조된 보관용기에 핵종별로 따로따로 넣어 방사선안전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 다른 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

방사성물질보관장소는 핵안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으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 주변에는 보호구역을 정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5조(방사성물질의 입출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주거나 받을 경우 입출고문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성원의 립회밀에 내주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입출고정형은 입출고대장에 정확히 등록한다.

제16조(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서의 금지행위)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그 량을 승인없이 공개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보관장소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변경시키는 행위
3. 외부인원을 출입시키는 행위
4. 방사성물질보관장소주변에서 인화성, 폭발성물질 같은것을 다루는 행위

제17조(방사성물질의 수송시 검사 및 허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독기관의 방사선 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방사성물질수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와 수송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할수 없다.

제18조(방사성물질수송시 안전대책)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과정에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방사성오염준위가 높아져 주변환경에 방사선피해를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송을 즉시 중지하고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세운 다음 수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수송수단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사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제19조(방사성물질의 수출입)

방사성물질의 수출입은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방사성물질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의 수출입과 관련된 문건을 중앙핵안전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방사성물질의 품명과 수량, 기술적특성, 용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방사성물질의 취급자격)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은 해당 자격을 가져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취급자격을 주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성원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할수 없다.

제21조(방사성물질취급성원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게는 유해가급급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며 필요한 영양제,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 및 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진단 및 치료기구, 방사성약품,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장치를 생산하거나 리용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핵기술리용시 방사선안전보장)

진단 및 치료, 지질탐사, 결함탐지, 자동화, 과학연구를 위하여 핵기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장치나 기구, 방사성물질보관용기, 작업장소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관련이 없는 성원을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장 핵시설의 안전관리

제24조(핵시설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과 절차,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5조(핵안전성분석평가)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선안전을 담보하는 핵안전성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핵안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성분석평가는 예비안전성분석평가와 최종안전성분석평가로 나누어 한다.

예비안전성분석평가는 핵시설의 건설허가단계에서, 최종안전성분석평가는 운영허가단계에서 한다.

핵안전성분석평가보고서에는 부지조사자료, 핵시설의 사고발생 확률분석평가자료,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평가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6조(통제구역, 보호구역, 감시구역의 설정)

방사선피해를 막기 위하여 핵시설주변의 일정한 구역에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은 연간 10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선보호구역은 연간 1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

선감시구역은 방사선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7조(핵시설의 방사능감시)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방사능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이 방출될 경우에는 제때에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8조(핵시설주변에 대한 방사능감시)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주변의 공기, 물, 토양, 생물에 대한 방사성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도가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제29조(방사성폐기물량을 낮출데 대한 요구)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기술을 갱신하여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의 량을 정해진 기준아래로 극력 줄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량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제30조(방사성폐기물의 등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등록한 다음 정해진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전문기관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처리)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려 할 경우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32조(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 및 방법)

방사성폐기물처리기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와 처리정형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장소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주민지구나 수원지, 농경지, 저수지, 호수, 바다 같은 장소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수 없다.

제33조(방사성폐기물의 환경배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핵안전감독기관의 승

인을 받아 환경에 배출할수 있다.

방사선오염도가 정해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폐기물은 환경에 배출할수 없다.

제34조(방사성폐기물, 방사성오염물질의 수입금지)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성오염물질의 수입은 금지한다.

방사성폐기물이나 방사성오염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역을 통과할수 없다.

제5장 환경방사능의 감시

제35조(환경방사능감시체계의 수립)

핵안전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환경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환경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환경방사능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환경방사능감시소를 설치한다.

제36조(환경방사능의 감시령역)

핵안전감독기관은 중요행사장,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지역 그밖의 필요한 지역과 수역을 환경방사능감시령역으로 정하고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제37조(환경방사능감시대상과 내용)

환경방사능감시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기, 물, 토양, 생물속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감시지역의 유효선량과 연간루적선량 및 집단선량을 감시한다.
3.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4. 건물, 원료, 자재, 설비, 제품 같은것에 포함되어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제38조(환경방사능의 감시방법)

환경방사능감시는 정상감시, 특별감시, 이동감시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39조(탐사시료에 대한 방사능검사)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탐사시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능검사를 받지 않고 탐사시료를 내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0조(탄광, 광산개발시 방사선안전검사)

탄광, 광산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승인을 받기전에 핵안전감독기관으로부터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의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해줄수 없다.

제41조(방사성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탄광, 광산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탄광, 광산을 장악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과 생산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발생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건설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을 참가시키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건설물에는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할수 없다.

제43조(생산환경, 제품,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

핵안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환경과 제품,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체계를 세우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허가 또는 규격승인, 수출입승인 같은것을 해줄수 없다.

제44조(방사선안전검사방법)

제품 또는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안전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방사성오염피해발생시 비상대책)

내각과 중앙핵안전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핵사고 또는 핵폭발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방사성오염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조성되었을 경우 다음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환경방사능감시대상에 대한 특별감시를 조직한다.
2. 핵사고, 핵폭발이 일어난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3. 방사성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음료수에 대한 방사성오염검사를 엄격히 하고 방사선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생산, 공급, 판매, 리용하도록 한다.
4.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받아들여 토양속의 방사성물질이 농축산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방사성오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학검진을 엄격히 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운다.
6. 신문, 방송 같은 선전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에 알려주도록 한다.

제46조(방사선측정수단에 대한 검정)

방사선측정수단은 핵안전감독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사선측정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6장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방사성오염방지사업의 지도)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방사성오염방지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였을 경우
2. 방사성물질의 등록, 공급, 이관, 반환, 보관, 입출고, 수송, 수출입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및 리용과 핵기술의 리용질서를 어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핵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핵안전성분석평가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핵시설과 그 주변의 방사선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방사성폐기물의 등록, 처리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사성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어기고 방사성폐기물을 환경에 배출시켰을 경우
8. 방사성물질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9. 환경방사능감시를 바로하지 않아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방사선안전담보가 없이 건설을 하였거나 제품을 생산 또는 수출입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방사선측정수단에 대한 검정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0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주체100(2011)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836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기본

제1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과 지진, 화산의 감시 및 예보,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지진, 화산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원칙)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작성에서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지진, 화산감시와 예보원칙)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는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서는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국가감시 및 군중감시체계와 예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지진, 화산의 감시와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4조(지진, 화산피해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지진, 화산에 의한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한다.

제5조(지진, 화산피해구조원칙)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는 지진과 화산에 의한 피해를 제때에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수단을 총동원하여 인원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며 피해지역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한다.

제6조(지진, 화산에 대한 지식보급)

국가는 교육기관들에서 학생들에게 지진, 화산에 대한 교육을 정상적으로 주며 신

문, 방송, 강연 같은것을 통하여 인민들속에 지진, 화산과 그 피해방지 및 구조에 대한 상식을 잘 알려주도록 한다.

제7조(지진, 화산에 대한 과학연구)

국가는 지진, 화산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8조(국제적인 교류와 협조강화)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9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 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

제10조(계획작성기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의 작성은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준하여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작성한다.

백두산지구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중앙지진기관에서 따로 작성한다.

제11조(계획에 반영할 내용)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의 총적방향과 목표
2. 지진, 화산의 감시와 통보, 예보체계
3. 주민대피 및 소개대책
4.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개대책
5.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보호대책
6. 지진, 화산피해발생시 긴급구조 및 치료대책과 구조설비, 자재, 자금보장대책
7. 이밖에 필요한 내용

제12조(계획의 심의, 승인)

중앙지진기관에서 작성한 백두산지구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전국적인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에서 작성한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은 비상설도(직할시), 시(구역), 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다.

제13조(계획의 변경)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활동상태의 변화에 따라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계획의 실행)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지진, 화산감시와 예보

제15조(지진, 화산감시, 예보의 기본요구)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과 감시, 통보 및 예보사업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감시방법)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는 전문관측과 군중감시로 나누어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전문관측은 지진기관에서 관측기재로 하며 군중감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물과 지하수 같은 자연이상현상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조(관측망의 형성)

중앙지진기관은 해당 지역마다 필요한 장소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정보통신수단들로 련결시켜 국가적인 지진, 화산관측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제18조(관측보호구역의 설정)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관측시설과 기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측소의 일정한 구역을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은 중앙지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군중감시초소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물, 지하수 같은것이 있는 필요한 장소에 지진, 화산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자연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지진, 화산관측자료의 보고, 전송)

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관측을 중단없이 하며 관측한 자료와 그 분석자료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중앙지진기관에 보고, 전송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이상현상의 기록, 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감시기록부를 갖추고 나타나는 자연이상현상에 대하여 매일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이상현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백두산화산활동에 대한 감시와 보고)

백두산지구 화산관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백두산의 화산활동에 대한 관측과 자연

이상현상에 대한 감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판측 및 감시결과를 중앙지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과학연구자료의 통보)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집한 자료를 중앙지진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감시자료의 분석과 기록, 보존)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과 관련한 전국의 판측자료와 균중감시자료를 종합하여 제때에 정확히 분석하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판측과 감시자료는 영구보존한다.

제25조(피해성지진과 화산에 대한 집중감시)

중앙지진기관은 판측자료와 균중감시자료를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피해성지진, 화산이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감시를 조직하여야 한다.

집중감시결과 피해성지진이 발생하거나 화산이 분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과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보)

중앙지진기관은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대한 예보는 국가경보신호체계에 따라 전기통신수단과 기타 정해진 수단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진, 화산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

제27조(공동연구)

해당 기관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과 공동으로 지진, 화산 판측 및 연구사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지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

제28조(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

중앙지진기관은 지역별지진세기를 표시한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발생 또는 화산 분출시 피해예측정도를 표시한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진세기구획도는 지진자료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지진, 화산피해예측도는 지진세기구획도와 화산활동자료 같은 해당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제29조(자료보장)

중앙지진기관은 지진세기구획도와 지진, 화산피해예측도의 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내진기준의 준수)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진기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지진기관과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31조(위험성이 큰 대상의 피해방지대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자력발전소, 언저, 연유 및 가스저장고, 폭발물질, 화학물질,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보관고같이 피해가 클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진, 화산 피해방지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한다.

제32조(대피장소 및 이동경로설정)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장소와 이동경로, 설비, 물자를 소개하는 장소와 이동경로를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정확히 알고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피는 해당 단위별로 한다.

제33조(대피훈련)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에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와 주민들의 긴급대피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훈련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대피지휘)

피해성지진, 화산예보시 대피지휘는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피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35조(긴급구조대의 조직)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는 구조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제36조(긴급구조훈련)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피해성지진, 화산에 대처한 긴급구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구조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방지대책)

내각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백두산화산분출에 의한 피해로부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5장 지진, 화산피해의 구조

제38조(긴급구조대책안의 작성, 비준)

중앙지진기관은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 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의 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지진, 화산피해 긴급구

조대책안에 따라 자기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 반영할 내용)

지진, 화산피해긴급구조대책안에는 긴급구조지휘부의 조직과 지휘체계, 지진, 화산피해정형의 장악과 통보체계, 인원구조 및 생활조건보장대책 같은 내용들을 반영한다.

긴급구조대책안은 실지 정황에 따라 수정할수 있다.

제40조(구조지휘)

내각과 중앙지진기관,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지휘부를 조직하고 구조지휘를 바로하여 피해를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긴급구조지휘부가 지휘하는데 따라 지진, 화산피해 구조사업에 적극 동원되어야 한다.

제41조(피해정형의 장악과 보고)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정형과 구조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긴급구조조치)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의 구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무너진 건물, 구조물에 깔리거나 갇힌 인원들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한 조치
2. 부상자들을 치료 또는 후송하기 위한 긴급의료조치
3. 파괴된 도로, 철도, 전력, 통신 같은 기초시설의 복구조치
4. 피해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고 그들에게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위생방역조치
6. 지진, 화산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화재, 큰물피해, 폭발, 산사태, 붕락,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의 류출 같은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7. 사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조치
8. 이밖에 필요한 조치

제43조(긴급구조대의 동원)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긴급구조대를 동원하여야 한다.

지진, 화산에 의하여 유독성물질, 방사성물질이 류출되는것 같은 2차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구조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긴급구조를 위한 설비, 물자동원)

지방인민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구조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동원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구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를 의무적

으로 동원시켜야 한다.

제45조(지진, 화산피해복구)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진, 화산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지역을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6장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지진기관과 지방인민정권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은 전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지방인민정권기관은 자기 관할지역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의 조직, 운영)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지방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를 둔다.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각급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대책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지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제49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전력공업기관, 체신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지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지진, 화산관측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지진, 화산징후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지진, 화산관측보호구역에서 질서를 어겨 관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자료통보, 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건설에서 내진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내진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물에 대한 보강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아 사고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지진, 화산피해구조사업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무책임하게 동원되어 손실을 더 크게 주었을 경우
7. 조건보장을 잘하지 않아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52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

주체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5호로 채택

제1장 폐기폐설물취급법의 기본

제1조(폐기폐설물취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폐기폐설물취급법은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 처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오염을 미리 막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폐기폐설물의 정의)

폐기폐설물은 생산과 건설, 생활과정에 나오는 경제적리용가치가 없거나 적은 물체 또는 물질이다.

폐기폐설물에는 폐기물, 폐설물, 오수, 오물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폐기폐설물의 취급원칙)

폐기폐설물취급을 바로하는것은 나라의 환경과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폐기폐설물을 방사성폐기폐설물, 유독성폐기폐설물, 일반폐기폐설물로 구분하여 취급처리하며 폐기폐설물의 배출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재리용하도록 한다.

제4조(산업시설, 주민지구의 배치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의 수송량을 줄이고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산업시설과 주민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성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6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폐기폐설물을 배출하거나 보관, 수송,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제8조(폐기폐설물배출, 보관, 수송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의 배출을 줄이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배출과 보관, 수송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배출승인문건의 신청)

폐기폐설물을 배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배출승인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배출승인신청문건에는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배출승인신청문건검토)

폐기폐설물의 배출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폐기폐설물은 배출승인을 할수 없다.

제11조(배출조건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승인한 폐기폐설물의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배출하려는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질 경우에는 폐기폐설물배출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2조(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배출하는 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수리보수주기를 지켜야 한다.

제13조(배출량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배출실태를 매일 조사장악하고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의 배출실태는 월에 1차씩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관시설의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되는 폐기폐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을 고려하여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폐기폐설물보관시설은 사람이나 동물, 자연에 피해가 미치지 않으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곳에 꾸리며 유독성폐기폐설물의 보관시설주변에는 경계울타리를 치고 표식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보관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독성폐기폐설물을 담은 용기결면에는 폐기폐설물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수송승인의 신청)

유독성폐기폐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폐기폐설물의 종류와 수량, 분석자료, 수송방법, 경로 같은 것을 밝힌 수송문건을 내야 한다.

제17조(수송수단)

폐기폐설물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따르는 환경보호설비를 갖춘 수송수단을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환경보호설비를 갖추지 않은 수송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18조(폐기폐설물의 상하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싣고부리울 경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환경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장 폐기폐설물의 처리

제19조(폐기폐설물처리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처리를 바로 하는것은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의 처리를 제때에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의 담당자)

유독성폐기폐설물과 일반폐기폐설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처리한다. 이 경우 유독성폐기폐설물처리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방사성폐기폐설물의 취급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제21조(처리시설)

폐기폐설물의 처리는 처리시설이 있는 곳에서 한다.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처리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방법)

폐기폐설물의 처리는 재리용하거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방법으로 한다.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폐기폐설물처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처리장소)

폐기폐설물을 처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폐기폐설물처리장소는 환경보호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24조(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광, 광재, 연재, 버럭처리장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며 그 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25조(병원성폐기폐설물의 처리)

병원성폐기폐설물은 승인된 소각처리시설에서 철저히 소각하며 버림물은 정화시설에서 정화소독하여 내보내야 한다.

제26조(배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의 처리)

배에서 생긴 유독성폐기폐설물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며 기타 폐기폐설물은 함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27조(철도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의 처리)

철도운영기관은 중요철도역들에 폐기폐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열차에서 생긴 폐기폐설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폐기폐설물처리금지구역)

주민지구와 공원, 유원지, 명승지, 관광지, 부침땅, 도로, 철길, 항, 부두, 하천, 호소, 저수지, 연안, 령해 같은 곳에 폐기폐설물을 버리거나 매몰할수 없다.

제29조(폐기폐설물의 재이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출된 폐기폐설물을 재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폐기폐설물의 넘겨주기와 받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폐설물을 넘겨주거나 받으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폐기폐설물의 용도와 처리방법 같은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합의하여 주어야 한다.

제31조(폐기폐설물처리설비, 기술의 수출입)

폐기폐설물처리설비,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보호담보서, 시료 또는 견본, 성분분석표, 용도, 설비와 기술의 상태, 수준자료 같은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폐기폐설물의 검사, 검역)

국경을 통과시키는 폐기폐설물은 해당 기관의 검사, 검역을 받는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환경영향평가와 수출입합의를 받지 않은 폐기폐설물은 국경을 통과시킬수 없다.

제33조(다른 나라의 폐기폐설물과 처리설비, 기술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을 심히 오염시켜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폐기폐설물이나 환경영향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폐기폐설물의 처리설비, 기술 같은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거나 리용할수 없다.

제34조(폐기폐설물의 처리기간)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폐기폐설물의 처리기간을 종류별에 따라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폐기폐설물에 대한 처리기간은 6개월을 넘길수 없다.

제4장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폐기폐설물취급사업감독통제기관)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폐기폐설물취급사업조건보장)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폐기폐설물취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중지, 손해보상, 벌금)

폐기폐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질서를 어겨 환경을 손상, 파괴,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기업운영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5호로 채택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제1조(자연보호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자연보호구의 정의)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자연보호구에는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환경보호정책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수많은 자연보호구들이 설정되어 자연환경보호사업과 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끊임없이 개선발전시켜 나간다.

제4조(자연보호구의 설정원칙)

자연보호구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것은 그를 거점으로 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를 설정하고 그 수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5조(자연보호구의 조사원칙)

자연보호구의 조사를 바로하는것은 자연보호구에서 모든 자연적인 요소들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조사의 과학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전인민적인 자연보호구관리원칙)

자연보호구관리사업은 전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연보호구를 관리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자연보호구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이 부문에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자연보호구관리의 현대화,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8조(자연보호구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자연보호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제9조(자연보호구설정기관)

자연보호구의 설정은 자연보호구대상을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자연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0조(자연보호구의 설정지역)

자연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정할수 있다.

1.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2. 동식물종이 집중분포되어있는 지역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이 있는 지역
4.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

제11조(자연보호구의 범위설정)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내오려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상요구를 고려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제기)

자연보호구를 내오려는 기관은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에는 보호구의 이름과 보호대상, 목적, 위치, 면적, 보호구로 정하려는 지역의 특징과 현 상태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3조(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의 심의)

자연보호구설정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해당 지역을 자연보호구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연보호구의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를 설정할데 대한 내각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것을 국가자연보호구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양식과 방법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15조(자연보호구의 변경)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등록된 자연보호구의 이름이나 면적 같은것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이름, 면적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의 조직)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관련한 평가심을 위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자연보호구평가심의위원회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들로 구성한다.

제17조(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 완충구역설정)

자연보호구에는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 같은 기능구역을 설정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생태통로설정)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린접한 자연보호구들사이에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퍼져나갈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제19조(자연보호구의 조사기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제20조(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

자연보호구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조사한다.

1. 지질, 지형, 토양, 기후 같은 자연지리적환경의 변화상태
2. 동식물의 종류와 구조, 분포상태, 이동정형
3.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동식물의 마리수와 분포상태
4. 자연보호구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인들

제21조(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조사수단을 현대화하고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자료의 기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과정에 발견한 과학적인

자료들을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자료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조사구역의 설정 및 기재설치)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필요한 기재를 설치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사정형에 대한 통보)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에 대한 조사정형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 자연보호구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제25조(자연보호구관리규범 및 관리체제수립)

자연보호구관리를 바로하는것은 자연보호구안의 모든 보호대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자연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범을 바로 정하고 정연한 관리체제를 세워야 한다.

제26조(자연보호구관리기관)

자연보호구의 관리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보호구의 관리분담을 바로하고 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7조(자연보호구관리계획)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은 5~10년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자연보호구의 표식)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 경계표식을 하고 필요한 장소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자연피해방지)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에서 산불을 엄격히 방지하며 자연피해로부터 자연보호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제30조(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 및 방역)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동식물의 서식조건을 잘 보장해주며 예찰 및 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동물전염병,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31조(동식물의 번식)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은 자연보호구안의 동식물을 계획적으로 번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구에서 외래종의 동식물은 번식시킬수 없다.

풍토순화시킨 외래종의 동식물을 번식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금지사항)

자연보호구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나무를 베는 행위
2. 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3.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4. 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것을 개발하는 행위
5. 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행위
6.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경관을 파괴할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
8. 그밖에 자연보호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

제33조(자연보호구중심구역의 질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는 인원의 출입과 건물, 시설물의 건설을 금지한다.

과학연구 같은 목적으로 자연보호구의 중심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 환경보호지도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제34조(자연보호구완충구역의 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연보호구의 완충구역에 들어가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수 있다.

제35조(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자연보호구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자연보호구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5장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환경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자연보호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자연보호구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자연보호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사업에 돌려쓸수 없다.

제39조(과학지식보급, 대중교양)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자연보호구에 대한 과학지식보급과 대중교양사업을 널리 진행하여야 한다.

제40조(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연보호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원상복구 및 손해보상)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자연보호구의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피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자연보호구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동식물의 서식조건보장사업과 방역사업을 잘하지 않아 동식물의 서식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자연보호구에 승인없이 외래종을 번식시켜 생태계를 파괴시켰을 경우
5. 자연보호구중심구역, 완충구역의 질서를 어기었을 경우
6.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3호로 채택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5(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제1조(유용동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용동물보호법은 리로운 동물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용동물을 증식시키고 국토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유용동물의 종류와 증식원칙)

유용동물은 사람들의 생활에 리익을 주는 사슴, 까치, 클락새 같은것이다.
국가는 유용동물의 보호증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그 종류와 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3조(전국가적유용동물보호원칙)

유용동물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유용동물보호체계를 바로세우고 전체 인민이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유용동물의 조사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유용동물의 조사등록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용동물의 종류와 분포상태, 자원량 같은것을 조사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구의 선정)

국가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동물보호구, 새보호구를 정한다.
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보호구에서의 유용동물의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유용동물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동물보호구, 새보호구에서 사냥, 채벌, 채취, 방목, 개간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7조(서식장소의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용동물의 서식장소를 보호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는 새둥지 같은것을 만들어주며 먹이조건이 불리할 때에는 보충먹이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8조(새끼, 알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의 새끼를 잡거나 알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유용동물의 새끼와 알을 다른 동물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제9조(유용동물의 인공번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0조(유용동물의 분포지역 확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일부 지역에만 살고있는 유용동물을 이주순화시켜 분포지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경우 자연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용동물의 보호기간)

유용동물보호기간은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용동물보호기간에 유용동물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며 그 번식조건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2조(희귀한 동물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 동물과 희귀한 동물을 잡지 말며 그 마리수가 늘어날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보존해주어야 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하게 된 동물도 잡지 말아야 한다.

제13조(사냥허가신청)

유용동물을 잡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허가신청서에는 사냥목적, 기간, 수단, 지역과 사냥할 동물의 종류, 수량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4조(사냥허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사냥허가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냥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만 사냥수단을 내주어야 한다.

제15조(사냥수단의 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냥허가받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수단으로 잡아야 한다.

독약, 폭약, 전기 같은것을 리용하여 유용동물을 잡을수 없다.

제16조(잡은 유용동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잡은 유용동물을 허가받은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유용동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유용동물의 사냥금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유용동물의 자원량을 고려하여 사냥금지기간과 구역, 잡지 말아야 할 동물의 종류를 정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냥터의 지정)

사냥터를 지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지정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 기관에 내야 한다.

사냥터를 지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제19조(사냥터의 관리)

사냥터를 지정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냥터관리시설을 갖추고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유용동물을 인공적으로 번식시키지 않고는 사냥터를 운영할수 없다.

제20조(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유용동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1조(유용동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유용동물보호증식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2조(유용동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23조(유용동물보호증식을 위한 과학지식보급)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유용동물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과학지식보급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4조(유용동물보호부문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유용동물보호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5조(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용동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용동물의 보호와 사냥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보상, 사냥허가취소)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어기고 유용동물을 잡은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사냥허가를 취소한다.

제2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용동물보호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주체87(1998)년 5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1조(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은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토환경보호단속원칙)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국토환경보호단속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국토환경보호단속기관)

국토환경보호단속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토환경보호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4조(범위반자의 신분확인)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범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며 위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물건을 확인하거나 각종 문건을 볼 수 있다.

제5조(단속된자와 증인의 동행요구)

범위반자의 신분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자와 증인에게 해당 기관까지 함께 갈것을 요구할수 있다.

단속된자와 증인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법행위의 고착)

위법행위는 단속조서에 고착시키며 증인으로부터 확인서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록화할수 있다.

제7조(위법행위현장, 수단, 물건의 검증)

위법행위현장, 위법행위와 관련한 수단, 물건을 검증할 경우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운다. 이 경우 조서에 검증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8조(단속조서, 확인서의 작성)

단속조서 또는 확인서는 범위반자나 증인의 자필로 받을수 있다.

단속조서에는 위법내용, 작성자와 범위반자, 증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9조(범위반자의 억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경우에는 억류한다. 이 경우 위법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도 억류할수 있다.

억류한 운수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제10조(억류기간)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은 8시간까지이다.

필요에 따라 단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을 24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11조(신변보호기재, 무기의 사용)

범위반자를 단속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재 또는 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제12조(위법행위의 조사)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1. 범위반자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수 있다.
2. 기관, 기업소, 단체에 출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수수단을 세우고 조사할수 있다.
3.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과학기술적방조를 받을수 있다.
4. 범위반자단속에 필요한 인원과 수단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5. 억류한 운수수단, 압수한 물건, 문서를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제13조(범위반자의 처리)

범위반자의 처리는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토의하고 결정한다.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참작하여 범위반자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범위반자의 처리기간)

범위반자의 처리기간은 위법행위를 단속한 때로부터 30일간이다.

제15조(범위반자의 이관)

범위반자를 단속한 감독통제기관은 그를 거주한 지역의 해당 기관에 넘겨 처리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서와 증거물, 해당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16조(교양처분)

위법행위의 정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교양처분을 한다. 이 경우 범위반자의 보호자나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으로부터 해당한 담보서를 받는다.

제17조(대책적의견제기)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8조(벌금, 손해보상)

국토와 자원, 환경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19조(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방법)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국토환경보호감독기관이나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해당 중앙은행기관에, 개별적공민에게 물리는 벌금, 손해보상금의 적용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서를 보내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국토자원의 리용중지, 리용권박탈)

위법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국토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그 리용권을 박탈한다.

제21조(몰수)

위법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부당하게 얻은 생산물, 금액은 몰수한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우며 몰수품목록 2통을 만든다.

몰수품목록에는 작성자와 립회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

제2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토환경보호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재정, 금융, 보험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에 산수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

주체84(1995)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5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25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6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재정법의 기본

제1조(재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화폐자금의 분배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자금은 전적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돌려진다.

국가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 사회주의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며 로동에 의한 분배를 옹기 실현하도록 화폐자금을 분배한다.

제3조(국가예산의 편성, 집행원칙)

국가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집행하는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오는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균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구현하여 현실적이고 동원적인 국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제4조(재정의 유일적, 계획적관리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정은 사회주의적소유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의거한다.

국가는 재정관리를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요구에 맞게 유일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자금리용원칙)

나라의 자금을 아껴쓰고 절약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은 자금으로 생산과 건설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제6조(재정총화원칙)

국가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형총화와 맞물려 하며 그 시기성과 과학성,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제7조(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재정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재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재정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국가예산

제9조(국가예산편성기관의 임무)

국가예산은 전반적인 나라살림살이를 규정하는 기본재정계획이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예산을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리고 수입원천과 자금수요를 타산하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편성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예산의 심의승인)

국가예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승인된 국가예산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11조(국가예산의 구성과 예산년도)

국가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한다.

예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12조(중앙예산, 지방예산의 집행)

중앙예산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지방예산은 지방정권기관이 집행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중앙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승인된 지방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예산수입원천)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재정기관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따라 국가예산수입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예산수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과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낮추어 순소득 또는 소득을 더 많이 창조하는 방법으로 국가예산수입금을 늘여야 한다.

제15조(인민경제사업비)

국가예산자금은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지출에 우선적으로 돌린다.

재정기관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과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출을 앞세우면서 경공업과 농업에 대한 지출에도 힘을 넣어야 한다.

제16조(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

재정기관은 국가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례지도록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을 늘여야 한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속한다.

제17조(국방비)

국가는 조국을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킬수 있게 국방비를 지출한다.

제18조(국가관리비)

국가관리비는 항목별, 용도별로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기구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사무를 과학화, 간소화하여 국가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제19조(예비비)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추가적조절,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추가적시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적립한다.

예비비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지출한다.

제20조(국가예산자금의 계획적지출)

재정기관은 관, 항, 목별지출계획에 따라 국가예산자금을 정확히 지출하여 그것이 효과있게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전국적의의를 가지는 경제, 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제22조(지방예산의 원천과 지출대상)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한다.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금은 지방예산으로 보장한다.

제23조(지방예산제)

지방예산제는 국가의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균을 기본단위로 실시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지방의 살림살이를 짜고들어 지방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고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재정적특전을 준다.

제3장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

제24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관리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사회주의재정의 중요구성부분이며 인민경제계획실행을 보장하는 기본수단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관리를 인민경제계획실행과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관리의 형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 또는 예산제로 관리한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은 독립채산제로 관리하며 생산,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기관의 재정은 예산제로 관리한다.

제26조(재정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재정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정계획은 실행할수 없다.

제27조(재정계획의 실행)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고 경영활동을 짜고 들어 재정계획을 항목별, 월별, 분기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계획실행정형의 평가)

재정계획실행정형에 대한 평가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계획 같은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제29조(화폐자금의 합리적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자금을 생산경영활동, 인민적시책 같은 목적에 합리적으로 써야 한다.

제30조(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

자체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수입으로 생활비를 줄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한다.

국가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운영한다.

제31조(류동자금)

류동자금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구입에 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류동자금회전을 촉진시켜 자금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2조(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

기본건설자금과 대보수자금은 계획에 예견된 설계예산범위에서 재정계획에 맞물려 국가예산에서 받아쓴다. 이 경우 기본건설 및 대보수대상의 투자계획과 자금공급계

획을 해당 은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본건설자금, 대보수자금의 공급은 건설주의 질검사와 건설감독기관의 질검사에서 합격된 공사실적확인에 따라 한다.

계획에 없는 공사에 대한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받아쓸수 없다.

제33조(기술발전과 생산확대자금)

국가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며 그밖의 과학기술계획지표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자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새 기술도입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 기술도입리익금과 자체 과학기술발전자금, 기업소기금에서 실정에 맞게 쓸수 있다.

제34조(원가의 저하)

원가는 경영활동의 질을 규정하는 기본지표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 과학기술을 결합시켜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제35조(가격, 요금의 적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제품의 판매 또는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이나 요금 같은것을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36조(순소득, 소득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순소득 또는 소득에서 국가납부 몫을 국가예산에 먼저 바치고 나머지를 자체충당금, 장려금, 상금기금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수 있다.

계획기간에 채 쓰지 못한 자체과학기술발전자금, 상금기금 같은 자체로 쓰게 된 자금은 국가예산에 동원하지 않는다.

제37조(수입금, 여유자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입금이나 여유자금을 국가예산에 바쳐야 한다.

제38조(경영손실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를 잘하여 경영손실을 내지 말아야 한다.

경영손실은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39조(재정회계문건의 작성과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회계문건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재정회계문건의 내용은 고칠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총화

제40조(재정총화의 기본요구)

재정총화를 바로하는것은 나라살림살이를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총화를 정해진 기간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1조(국가예산집행총화)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이 제출한 국가예산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2조(중앙, 지방예산집행총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내각에서, 중앙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해당 중앙기관에서 한다.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월, 분기, 반년, 연간총화는 지방정권기관에서 한다. 이 경우 지방예산집행에 대한 연간총화보고는 해당 인민회의가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43조(일생산 및 재정총화)

일생산 및 재정총화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제도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44조(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는 직장을 단위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별생산 및 재정총화와 월원가검토회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제4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진행하는 재정총화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을 주기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계획에 따르는 수입과 지출, 생활비, 자체기금, 상금기금, 국가에 이익을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46조(재정총화결과의 공개)

재정총화결과는 공개한다.

재정총화에 대한 공개는 기관, 기업소, 단체적으로 하고 직장, 작업반에서도 한다.

재정총화결과에 대한 공시는 월에 1차 한다.

제47조(재정회계결산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반년, 연간회계결산서를 만들어 회계검증을 받은 다음 해당 상급기관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과 해당 상급기관의 기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재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

국가는 재정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를 둔다.

제49조(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재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집행정형과 재정계획실행정형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재정기관의 임무)

해당 재정기관은 아래단위 또는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여 처리하며 재정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통계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51조(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

국가적인 재정문제의 발기와 국가가 진행하는 대외경제거래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재정적담보, 다른 나라와의 국가채권, 채무청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2조(재정검열)

재정검열은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정사업을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제53조(재정검열위원회와 재정검사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정통제에 생산자대중이 널리 참가할수 있게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재정검열위원회 또는 재정검사위원회의 결정집행정형은 해당 재정기관이 장악한다.

제54조(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영계산체제를 바로세우고 업무계산, 회계계산 같은 경영계산을 정확히 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3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2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0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5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국가예산수입법의 기본

제1조(국가예산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산수입법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국가예산의 납부,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관리와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가예산수입의 정의)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이다.

국가예산수입은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국가예산수입의 구성)

국가예산수입은 중앙예산수입과 지방예산수입으로 나눈다.

중앙예산수입은 중앙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 지방예산수입은 지방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납부금으로 한다.

제4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원칙)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국가예산수입을 늘이는 원칙)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생산을 늘이고 절약사업을 힘있게 벌려 국가예산수입을 부단히 늘이도록 한다.

제6조(합법적권리와 리익보장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국가예산납부부의 부담을 줄수 없다.

제7조(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원칙)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 확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문건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8조(국가예산납부의무의 원칙)

국가예산납부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예산납부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9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원칙)

국가는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가예산수입사업은 재정기관이 한다.

제10조(국가예산수입부문 일군의 자격)

국가는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예산수입부문의 일군으로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2장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

제11조(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예산납부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계획, 원가계획, 순소득 또는 소득계획, 리윤계획, 국가예산납부계획, 은행돈자리번호 같은 국가예산납부자료를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제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되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 경영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등록신청문건을 따로 내야 한다.

제13조(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심의)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재정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예산납부자료등록신청문건의 심의결정)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납부자료의 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등록 또는 부결에 대한 결정을 2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발급)

해당 재정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 업종밖의 생산,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제16조(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의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국가예산납부자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정한 기일안으로 재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변경된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전표의 경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것을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관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것은 사용할수 없다.

제18조(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할수 없다.

제19조(국가예산납부등록증의 위조와 팔고사기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팔고사지 말아야 한다.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국가예산의 납부

제1절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

제20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거래수입금은 소비품의 가격에 들어있는 사회순소득의 일부를, 봉사료수입금은 봉사료에 들어있는 순수입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성된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을 국가예산에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방법)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계산은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비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22조(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은 정한데 따라 판매한 가격 또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요금으로 계산한다.

제23조(적용하는 납부비률)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납부비률을 적용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정기관도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비률을 정할수 있다.

제24조(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납부)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의 정상납부는 소비품판매수입금과 봉사료금이 조성될 때마다 한다.

확정납부는 달마다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과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납부한다.

제2절 국가기업 이익금과 협동단체 이익금

제25조(국가기업 이익금과 협동단체 이익금의 정의, 납부대상)

국가기업 이익금과 협동단체 이익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윤 또는 소득의 일부를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기업 이익금 또는 협동단체 이익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익금의 계산방법)

국가기업 이익금과 협동단체 이익금의 계산은 조성된 리윤 또는 소득에서 한다.

대상에 따라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계산할수 있다.

제27조(리윤 또는 소득의 계산방법)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원가, 거래수입금 또는 봉사료수입금 같은 것을 덜고 확정한다.

거래수입금과 봉사료수입금이 적용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리윤은 판매수입금 또는 봉사료금에서 원가 같은 것을 덜고 확정한다.

소득은 판매수입금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원가를 덜고 확정한다.

제28조(수입금의 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물판매수입, 건설조립작업액, 대보수작업액, 부가금, 봉사료 같은 수입금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생산물판매수입금은 판매한 가격으로, 건설조립작업액과 대보수작업액은 실제에 산가격으로, 부가금은 구입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으로, 봉사료는 봉사를 제공하고 받은 료금으로 계산한다.

제29조(리익금의 정상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정상납부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국가기업리익금 또는 협동단체리익금이 판매수입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판매수입금이 조성될 때마다 한다.

대상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이 따로 정한 납부비율을 적용할수 있다.

제30조(리익금의 확정납부)

국가기업리익금과 협동단체리익금의 확정납부는 달마다 리윤 또는 소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하며 미납액은 5일안으로 추가납부하고 파납액은 재정기관에서 반환받거나 다음달 바칠 몫에서 공제납부한다.

제31조(지방유지금의 납부)

시(구역), 군예산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유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지방유지금을 국가기업리익금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국가예산납부에서 특혜보장)

국가의 투자를 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거나 국가적으로 돌봐주어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33조(통합, 분리될 때의 국가예산납부금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 분리될 경우 그 시기까지 회계결산을 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15일안으로 소재지의 재정기관에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결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예산소속에 따르는 국가예산납부금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감가상각금

제34조(감가상각금의 정의, 납부대상)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가치를 마멸된 정도에 따라 생산물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는 자금이다.

감가상각금의 납부는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된 생산적고정재산에 대하여 한다.

제35조(감가상각금납부의 제외대상)

감가상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정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비생산적고정재산

2.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생산적 고정재산
3. 이밖에 감가상각금을 바치지 않기로 한 고정재산

제36조(감가상각금의 계산방법)

감가상각금의 계산은 형태별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에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한다. 필요에 따라 정액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할수 있다.

제37조(감가상각금의 구성, 적립규모)

감가상각금은 고정재산의 시초가격보상액과 대보수비보상액으로 나눈다.

감가상각금의 적립규모는 고정재산의 시초가격을 내용년한기간 한해에 회수할 자
금에 따라 정한다.

제38조(감가상각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감가상각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초가격을 보상한 고정재산에 대하여서는 대보수비만을 납부한다.

제 4 절 부 동 산 사 용 료

제39조(부동산사용료의 정의, 납부대상)

부동산사용료는 국가의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토지, 건물, 자원 같은것에 대하여 한다.

제40조(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

부동산사용료의 납부항목에는 농업토지사용료, 부지사용료, 생산건물사용료, 어
장사용료, 수산자원증식장사용료, 자동차도로시설사용료, 자원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41조(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농업부문의 대학, 전문학교
에서 육종에 리용하는 농업토지
2. 새로 개간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토지
3. 자연재해로 류실 또는 매몰된 농업토지
4. 국가 및 협동적소유의 살림집기준부지
5. 철도운영시설부지
6. 협동단체와 기업소의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생산용건물
7. 이밖에 부동산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부동산

제42조(부동산사용료의 계산방법)

부동산사용료의 계산은 리용하는 부동산가격 또는 면적에 따르는 부동산사용료기
준을 적용하여 한다.

제43조(부동산사용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사용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
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를 비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절 사회보험료

제44조(사회보험료의 정의, 납부대상)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

제45조(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금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사회보험자와 사회보장자가 받는 년금 및 보조금
2. 비재적근로자에게 주는 로동보수자금
3. 이밖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승인받은 수입금

제46조(사회보험료의 계산방법)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협동단체의 공동자금에서 바칠 사회보험료계산은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비률을 적용하여 한다.

제47조(사회보험료의 납부비률)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로동보수액의 1%로 한다.

기업소와 협동단체의 사회보험료납부비률은 월판매수입금에 따라 계산된 생활비의 7%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의 사회보험료납부는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한다.

제48조(사회보험료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료를 은행기관에서 로동보수자금을 받는 날 또는 결산분배를 받는 달에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자체사회보험기금으로 적립한다.

제6절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제49조(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과 자체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가격편차수입금, 대외경제관계에서 조성된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에는 국가재산판매수입금, 가격편차수입금, 무역편차리익금, 차관 및 연불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50조(국가재산판매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포장용기, 설비, 비품 같은 국가소유의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된 수입금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체의 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판매하여 조성한 수입금은 자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51조(가격편차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가격변동조치로 가격편차수입금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완제품 또는 상품의 가격편차수입금은 판매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납부하며 류동재산의 가격편차수입금은 가격이 변동된 날부터 30일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격변동조치로 생긴 손실은 국가예산에서 보상하여줄 수 있다.

제52조(무역편차리익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활동과정에 조성된 무역편차리익금을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무역편차리익금의 계산은 수출입상품호상간 편차손익을 상쇄하여 한다.

제53조(차관, 연불수입금의 납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관 또는 연불로 들어온 물자를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금을 더한 판매수입금을 3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차관으로 외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외화관리기관이 정한 대외결제은행의 돈자리에 넣고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을 받아 7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리익배당금의 납부)

합영, 합작기업의 공화국 당사자는 리익배당금의 일부를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외화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환자시세에 따르는 조선원의 25%를, 물자로 받은 리익배당금은 상품판매수입금의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절 기타수입금

제55조(기타수입금의 정의, 납부대상)

기타수입금은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없이 조성된 수입금과 통제적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조성된 수입금 그밖의 수입금을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다.

기타수입금에는 무상로력동원수입, 국가수수료, 관세, 벌금 및 몰수품수입, 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 재산보험료,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56조(무상로력동원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에서 생활비를 지불받는 로력을 지원받았을 경우 그들이 번 로동보수몫을 정한 기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국가수수료, 관세의 납부)

해당 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받은 국가수수료를, 세관은 관세경계선을 통과하는 물자에 부과하여 받은 관세를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벌금 및 몰수품수입금의 납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위법행위에 부과한 벌금과 법에 따라 몰수품을 처리하고 조성한 수입금을 10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시효기간이 지난 채무수입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권자의 지불청구가 없는 채무액을 시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재산보험료의 납부)

보험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은 연간재산보험료에서 피해보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해 1월안으로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의 납부)

공화국령역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금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에 따른다.

제62조(개인수입금의 납부)

공민은 시장 같은데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하여 조성한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데 따라 수입금을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

제63조(국가예산납부문건관리의 기본요구)

국가예산납부문건의 관리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기록, 계산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 리용하는 문건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장부의 비치, 기록)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장부를 의무적으로 갖추고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금리용정형과 판매수입금의 기록은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 또는 기초서류 같은것에 준하여 한다.

제65조(국가예산납부에 대한 결산)

국가예산납부의 결산은 년초부터 루계적으로 한다.

결산은 분기별, 년간으로 한다.

제66조(국가예산수입결산서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확정계산서를 달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결산서를 분기마다 작성하고 정한 기일안으로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국가예산납부문건의 보관기간)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장부와 은행기관에서 발급한 국가납부전표 같은것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와 관련한 분기표, 년간회계결산서 같은것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8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9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70조(재정기관의 국가예산납부사업지도)

재정기관은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국가예산납부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재정기관과 합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1조(국가예산수입사업조건의 보장)

해당 재정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수입사업과 관련한 재정기관의 요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국가예산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재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예산수입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3조(계량수단에 의한 통제)

재정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 같은것을 리용하여 국가예산납부정형을 통제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재정기관이 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연재료적용)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납액에 체납일당

1%를 적용하여 가산한 연체료를 물린다. 이 경우 국가예산강제납부통지서를 해당 은행기관에 보낸다.

은행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지출을 중지하고 수입금이 조성되는 차제로 국가예산납부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75조(판매수입금의 회수와 영업중지)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연장받지 않고 생산,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수입금을 회수하거나 그 행위를 중지시킨다.

제76조(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예산납부금을 적게 바쳤을 경우
2. 국가예산수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중앙예산수입금을 지방예산수입금으로 옮겨놓았을 경우
4.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았거나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은행돈자리번호를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6. 국가예산납부자료를 정한 기일안으로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7. 판매수입금과 국가예산납부조성액을 허위신고하였을 경우
8.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납부금을 적게 또는 더 받았거나 집금한 돈을 정한 기일안으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9. 경유를 받지 않은 국가납부전표, 카드, 판람료금표, 벌금증서 같은것을 사용하였을 경우
10. 승인없이 경리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었을 경우

제7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국가예산수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 계 법

주체92(2003)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28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9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87호로 수정보충

제1장 회계법의 기본

제1조(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법은 회계계산과 분석,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활동에서 재정적실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회계의 정의와 회계원칙)

회계는 경제활동을 화폐적으로 반영하고 통제하며 타산하는 재정판리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회계에서 통일성과 객관성, 정확성, 시기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회계의 분류)

회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로 나눈다.

경영회계에는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가, 종합회계에는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중앙회계가 속한다.

제4조(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원칙)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적인 돈계산체제를 세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회계년도와 회계화폐)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6조(회계업무를 정보화할데 대한 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회계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제7조(회계연구사업,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회계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회계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우도록 한다.

제8조(회계분야의 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회계를 하는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자금의 변동을 일상적으로 기록계산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산단계에 따르는 회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경영회계계산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재산, 저장품, 로동보수, 비용지출과 원가, 생산물, 상품, 물자, 화폐재산, 채권채무, 자금수입과 지출, 경영수입과 지출 및 분배, 외화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지방회계계산은 지방재정기관이 한다.

지방재정기관은 지방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3조(부문의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부문의회계계산은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문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금융회계계산은 은행기관과 보험기관이 한다.

은행기관은 무현금결제업무, 신용업무, 발권 및 현금출납업무, 대외결제 및 신용업무에 대하여, 보험기관은 보험재정상태와 보험업무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회계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중앙회계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예산수지, 재정상태, 경영수지, 외화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계산단계의 구분)

회계계산은 경상계산과 결산으로 나누어 한다.

경상계산은 경제거래가 생길 때마다, 결산은 주기에 따라 한다.

제17조(회계문건의 분류)

회계문건에는 회계서류와 회계장부, 회계결산서가 속한다.

회계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판이 한다.

제18조(경상계산의 기초)

경상계산은 시초서류 또는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법적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는 시초서류, 회계보고문건은 경상계산의 기초자료로 쓸수 없다.

제19조(경상계산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을 종합계산과 세분계산, 시순식계산과 체계식계산, 현물계산과 금액계산을 결합하여 하여야 한다.

경상계산은 복식기입방법으로 한다.

제20조(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상계산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상계산결과검토는 시순식계산자료와 체계식계산자료,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틀린 자료는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쳐야 한다.

제21조(회계결산의 근거)

회계결산은 경상계산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에 앞서 빠진 거래를 등록하고 미결거래를 청산하며 재산실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결산의 주기)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경영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회계결산서의 제출기관)

회계결산서의 제출은 다음의 기관에 한다.

1. 경영회계결산서는 해당 지방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2. 지방회계결산서는 상급기관에 한다.
3. 부문회계결산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에 한다.
4. 금융회계결산서는 해당 재정기관과 상급기관에 한다.
5. 중앙회계결산서는 내각에 한다.

제24조(회계결산서의 효력)

회계결산서는 해당 상급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비준받지 않은 회계결산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장 회계분석

제25조(회계분석의 기본요구)

회계분석을 바로하는것은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적라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분석의 내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보장과 리용의 효과성, 경영수지, 예산집행정형, 화폐류통, 외화수지, 국제수지 같은것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27조(회계분석의 근거)

회계분석은 회계결산서에 기초하여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분석에 경상계산자료, 계획 및 통계자료, 업무계산자료, 기술경제적기준자료 같은것도 리용할수 있다.

제28조(회계분석방법)

회계분석은 대비분석, 분류분석, 련관분석의 방법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석목적에 맞게 그 수법을 옹계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분석자료의 종합과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분석자료는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재정적라산과 생산 및 재정총화자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분석의 주기)

회계분석주기는 순, 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장 회계검증

제31조(회계검증의 중요성, 당사자)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의 정확성,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은 중앙,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과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2조(회계검증대상)

회계검증은 경영회계결산서에 대하여 한다.

검증에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회계서류도 볼수 있다.

제33조(회계검증장소)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 나가 할수도 있다.

제34조(회계검증신청)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간에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5조(회계검증기간의 준수, 검증방법)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결산서를 정해진 기간안에 검증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은 회계결산서의 표와 자료의 정확성, 련관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6조(회계검증결과의 확인과 발견된 결함의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결과를 제때에 확인하여야 한다.

검증과정에 발견한 결함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고치도록 서면으로 의견을 주어야 한다.

제37조(회계검증의 의무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38조(국가수수료)

회계검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국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국가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장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회계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회계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의 의무)

지방재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계산, 분석, 검증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문건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문건을 편찬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화재, 자연재해 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 문서고나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2조(회계일군의 자격과 자질향상)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일군을 꾸리고 그들의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사업의 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사업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회계일군은 회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계와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는 모임에 참가할수 있다.

제44조(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에 대한 인계인수는 회계일군이 임명, 해임, 동원, 병치료 같은 원인으로 회계사업을 할수 없을 경우에 한다.

인계인수는 제3자의 립회밀에 서면으로 한다.

제45조(감독통제기관)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사업정지, 벌금부과, 손해보상)

회계를 잘못하여 경제적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고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자격급수강급, 박탈)

회계문건을 제때에 작성하지 않았거나 회계검증을 정확히 하지 못하여 경제관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회계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회계사업에 간섭하거나 또는 회계문건을 위조하였거나 보존기간이 끝나기 전에 없애버리는것 같은 행위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

주체97(2008)년 3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39호로 채택

제1장 회계검증법의 기본

제1조(회계검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회계검증법은 회계검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실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재정규률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회계검증의 정의와 체계 확립)

회계검증은 경영회계자료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검토확인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3조(회계검증의 분류)

회계검증에는 정기검증과 비정기검증이 있다.

정기검증에는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결산검증이, 비정기검증에는 조업검증, 해산 및 통합검증, 인계인수검증, 대외협조검증이 속한다.

제4조(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 해당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5조(회계검증원)

회계검증원은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회계검증원의 자격은 해당 자격심의회위원회가 심의하고 준다.

제6조(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의 보장원칙)

국가는 회계검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물질기술적도대강화원칙)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의 물질기술적도대를 강화하여 회계검증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8조(회계검증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회계검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9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회계검증기관과 경영회계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검증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

제10조(회계검증의 대상규정과 관할준수)

회계검증의 대상과 관할을 바로 정하는것은 회계검증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의 대상을 과학적으로 정하고 관할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1조(회계검증의 대상)

회계검증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
2. 기관, 기업소, 단체가 조업하거나 해산 및 통합되거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 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 해당 시기의 회계결산서
3.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협조한 물자나 자금의 리용에 대한 회계결산서
4. 회계결산서작성의 기초로 되는 회계서류와 장부

제12조(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의 관할)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그에 소속된 해당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검증을 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도 할수 있다.

제13조(도 및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의 관할)

도회계검증기관은 도소재지안에 있는 중앙 및 도예산소속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직할시회계검증기관은 직할시급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을 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도 할수 있다.

제14조(시, 군회계검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회계검증기관은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과 도(직할시)회계검증기관, 해당 회계검증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자기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회계검증을 한다.

제15조(해당 회계검증기관의 관할)

무력기관 같은 해당 기관과 그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회계검증은 그 부문의 회계검증기관이 한다.

제3장 회계검증의 절차와 방법

제16조(회계검증질서의 준수)

회계검증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회계검증을 편향없이 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회계검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의 신청과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7조(회계검증의 장소)

회계검증은 회계검증기관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 할수도 있다.

제18조(회계검증의 신청)

회계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형태에 따르는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재정회계책임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결산검증의 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기에 따라 분기, 반년, 연간결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결산검증의 신청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결산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할 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검증방법)

결산검증은 분기, 반년, 년간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계획수행표, 국가예산납부의무수행표, 수입과 지출 및 분배대조표, 원가결산표, 채권, 채무상태결산표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조업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새로 창설되었거나 개건현대화되어 조업할 경우에는 조업검증을 받는다.

조업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업하기 15일전에 조업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업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신청할수 있다.

제22조(조업검증방법)

조업검증은 조업과 관련하여 리용한 재산과 채권채무상태, 조업준비로력비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업준비기간에 생산하여 실현한 시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문건도 검토확인할수 있다.

제23조(해산 및 통합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통합될 경우에는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는다.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었거나 통합된 날부터 15일안으로 해산 및 통합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산 및 통합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24조(해산 및 통합검증방법)

해산 및 통합검증은 해산 및 통합된 시기의 재산과 채권, 채무상태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해산 및 통합되기 전 분기회계결산서와 해산 및 통합통지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조하여 검토확인한다.

제25조(인계인수검증신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 또는 재정회계책임자가 조동되거나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검증을 받는다.

인계인수검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안으로 인계인수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인계인수검증방법)

인계인수검증은 인계인수를 하기 전까지의 재산과 채권, 채무상태 같은것을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검토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계인수검증에서 미결건이 있을 경우에는 실사표를 따로 작성하고 그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혀 검증문건에 첨부한다.

제27조(대외협조검증)

대외협조검증은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정부, 기업, 개인으로부터 협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는 협조 받은 물자나 자금의 리용상태를 반영한 회계결산서를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결산서에 반영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검증의 조건보장)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 관련한 현지료해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검증기간)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검증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검증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0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계검증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회계검증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거나 회계문건을 위조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회계검증결과의 처리)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것을 고칠데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기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고 그 정형을 회계검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2조(위법행위에 대한 제기)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과정에 엄중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 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회계검증내용, 검증과정에 제기된 문제, 회계검증원의 견해, 총체적인 평가, 회계검증원의 이름과 수표, 회계검증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4조(회계검증보고서의 처리)

회계검증보고서는 회계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회계결산서에 첨부하며 해당 회계결산서에는 검증도장을 찍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증도장을 찍은 회계결산서에 회계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증을 받은 회계결산서는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제35조(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한 의견의 제기)

회계검증과 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기관은 제기받은 의견을 10일안으로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재검증)

회계검증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되었거나 그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검증을 한다.

재검증은 회계검증을 한 기관의 상급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회계검증을 한 기관이 재검증을 할수도 있다.

제4장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회계검증지도기관은 회계검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회계검증사업에 대한 총화)

회계검증기관은 회계검증사업에 대하여 분기에 1차 총화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40조(회계검증원의 의무)

회계검증원은 회계검증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며 회계검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비법적인 사실을 묵인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회계검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회계검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회계검증사업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2조(자격급수강급, 박탈)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1. 회계검증신청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하여 회계검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회계검증을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잘못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회계검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주체93(2004)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제1조(중앙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화폐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발권은행)

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중앙은행권과 화폐류통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폐류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폐의 가치와 환율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제4조(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금융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제9조(중앙은행의 구성)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10조(중앙은행리사회)

중앙은행은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둔다.

중앙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들로 구성한다.

제11조(중앙은행리사회 리사장)

중앙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제12조(중앙은행의 소재지)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제13조(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폐유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은행일군의 양성)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제3장 중앙은행권

제15조(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중앙은행권의 제조)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기념주화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기념주화를 발행할수 있다.

기념주화의 형식과 종류는 내각이 정한다.

제18조(중앙은행권의 교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중앙은행권의 소각)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폐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중앙은행권의 보관)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23조(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제4장 화폐류통조직

제24조(화폐류통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폐류통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폐류통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화폐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류통에 내보내거나 류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제26조(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폐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제조직)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결제를 신속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결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28조 (금융기관의 대부)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29조 (화폐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30조 (기준리자률의 제정)

기준리자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대부리자률과 예금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수 있다.

제32조 (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기관은 채권발행등록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발행된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할수 있다.

제34조 (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과 관련한 정보교환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화폐유통자료의 종합)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편제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을 할수 있다.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기관의 설립승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설립이 승인된 금융기관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해산하거나 통합하려는 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통합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청산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손해보상)

금융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벌금)

승인없이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의 화폐유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6조(자격급수의 박탈)

중앙은행에 해당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금융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호로 채택
주체92(2003)년 6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89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제1장 화폐류통법의 기본

제1조(화폐류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폐류통법은 현금과 무현금류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화폐류통을 공고히 하고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류통화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류통화폐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 《원》이며 보조단위는 《전》이다.
국가는 화폐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주적화폐제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화폐류통조직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화폐류통은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으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현금류통과 무현금류통을 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그것을 옹호하게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현금류통원칙)

현금류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현금류통에서 중앙집권적규율을 강화하며 지방별현금류통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무현금류통원칙)

무현금류통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물자류통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인민경제 부문간, 지역간 련계가 밀접해지는데 따라 무현금결제의 범위를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화폐의 순환원칙)

상품보장은 화폐류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상품생산을 늘여 화폐의 구매력을 높이고 그 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제7조(다른 나라 화폐의 류통금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다른 나라의 화폐를 류통시킬수 없다.
국가는 중앙은행권과 다른 나라 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하도록 한다.

제8조(중앙은행권의 관리원칙)

국가는 중앙은행권의 관리를 바로하며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은행과 맺은 협약에 따라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제9조(화폐류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화폐류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화폐류통)

특수경제지대에서의 화폐류통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현금류통

제11조(현금류통조직)

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의 상품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류
통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12조(현금계획의 작성)

현금계획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과 재정계획에 기초하여 지역별, 항목별로 세운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을 세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현금계획의 집행)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금계획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14조(현금류통의 조절)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계획적으로 조절하여 적당한 현금류통량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금류통의 조절은 현금계획범위에서 조절화폐로 하여야 한다.

현금계획을 초과하여 현금류통을 조절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유가증권의 발행)

중앙은행은 현금류통을 조절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현금수입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판매, 사회급여, 편의봉사수입 같은것을 적극 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계획과 상품류통액계획은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의 수입)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수입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현금을 자체의 수입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현금의 입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된 현금을 제때에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켜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입금기간을 정하고 현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현금의 지불)

현금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지불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받은 현금은 정해진 항목과 기준대로 써야 한다.

제20조(현금지불날자)

중앙은행기관은 시기별현금지불의 균등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지불날자를 정해주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소의 로동보수자금지불날자는 직장별로도 정할수 있다.

제21조(현금의 보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정형을 정확히 등록하고 현금을 안전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금고판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현금보유한도의 규정)

중앙은행기관의 현금보유한도는 중앙은행이 정한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현금보유한도는 해당 중앙은행기관이 정한다.

제23조(현금보유한도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보유한도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유한도를 넘는 현금은 중앙은행기관에 입금시키거나 저금시켜야 한다.

제24조(유휴화폐의 동원)

지방정권기관과 중앙은행기관은 저금, 보험사업을 균중적으로 조직하여 유휴화폐를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제25조(저금의 비밀과 신용보장)

공민은 저금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저금의 비밀과 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현금의 수송)

중앙은행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안전하게 날라야 한다.

현금수송을 의뢰받은 교통운수기관은 현금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수송을 무장경비성원의 호송밑에 할수 있다.

제27조(돈의 교환, 회수)

중앙은행은 현 돈과 못쓰게 된 돈을 제때에 교환, 회수하여야 한다.
공민은 돈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3장 무현금류통

제28조(무현금류통조직)

무현금류통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생산수단거래 같은데 적용하는 화폐류통 형태이다.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무현금류통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무현금결제)

무현금류통은 무현금결제를 통하여 실현된다.

무현금결제는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제30조(돈자리의 개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은행기관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돈자리도 둘수 있다.

제31조(돈자리의 승인)

돈자리를 두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돈자리승인신청서를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돈자리승인신청서를 검토하고 돈자리를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32조(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물자의 대금결제)

중앙은행기관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의 대금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제33조(화폐자금의 지불 및 청구)

화폐자금을 지불 또는 청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문건을 만들어 중앙은행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문건을 검토하고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만 결제하여야 한다.

제34조(환자결제)

중앙은행은 화폐자금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점사이의 환자결제를 조직한다.

중앙은행기관은 결제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예산의 결제)

중앙은행기관은 국가예산집행과 관련한 결제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제는 예산소속에 따라 하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6조(결제방법의 개선)

중앙은행기관은 물자류통에 자금류통을 접근시킬수 있도록 결제환절을 줄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결제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장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7조(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화폐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8조(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폐류통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적은 자금으로 물자류통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자금의 지불과 리용에 대한 지도)

중앙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생활비자금을 비롯한 로동보수자금을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지불하며 화폐자금을 정확히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화폐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화폐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폐류통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1조(금액의 회수, 손해보상)

화폐자금을 류용, 랑비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금액의 국고납부, 은행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시키거나 은행거래를 중지시킨다.

1.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현금을 가지고있을 경우
2.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을 어기고 물자거래를 하였을 경우
3. 계획밖에 건설을 벌려놓았을 경우
4.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기하여 자금을 부당하게 받았을 경우

제4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화폐류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9호로 채택

제1장 상업은행법의 기본

제1조(상업은행법의 사명)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 같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은 상업은행의 설립과 업무, 회계, 통합 및 해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업은행의 역할을 높이고 금융거래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상업은행의 설립원칙)

상업은행의 설립을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 요구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의 설립에서 공정성, 객관성과 실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상업은행의 업무원칙)

상업은행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는것은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상업은행업무에서 신용을 지키며 그것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상업은행의 운영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이 경영활동에서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제5조(상업은행일군의 양성원칙)

국가는 상업은행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상업은행의 일군은 해당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6조(상업은행사업의 지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상업은행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국가는 상업은행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설립운영하는 상업은행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상업은행의 설립운영과 외국투자은행의 설립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업은행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상업은행의 설립

제9조(상업은행의 설립승인)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은 중앙은행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할수 없으며 《은행》이라는 글자를 기판명칭에 리용할수 없다.

제10조(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의 제출)

상업은행을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신청문건에는 은행명칭, 밀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11조(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의 심의)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설립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업은행설립승인문건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2조(상업은행의 운영준비)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한 기간에 은행을 정상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운영준비기간을 밀자금규모와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정해주어야 한다.

제13조(상업은행의 설립등록, 영업허가증발급)

운영준비를 끝낸 상업은행은 30일안으로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기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등록된 상업은행에 10일안으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업은행의 기구)

상업은행은 관리부서, 업무부서, 정보처리부서, 양성부서, 내부경리부서 같은 부서를 둘수 있다.

필요에 따라 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제15조(지점, 대표부의 설치)

상업은행은 국내와 국외의 여러 지역에 지점, 대표부 같은 기구를 내올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6조(상업은행의 변경등록)

상업은행은 은행명칭, 밀자금, 거래대상, 업무범위, 소재지 같은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 변경등록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3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업은행에 통지 해주어야 한다.

제17조(영업허가증의 재교부)

상업은행은 영업허가증을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상업은행의 업무

제18조(상업은행업무종류)

상업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금업무
2. 대부업무
3. 돈자리의 개설과 관리업무
4. 국내결제업무
5. 대외결제, 수형과 증권의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업무
6. 외화교환업무
7. 거래자에 대한 신용확인 및 보증업무
8. 금융채권발행 및 팔고사기업무
9. 귀금속거래업무
10. 고정재산등록업무
11. 화폐의 팔고사기업무
12. 이밖에 승인받은 업무

제19조(예금)

상업은행은 유희화폐자금을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 거래자로부터 예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예금을 늘이기 위한 봉사활동을 다양하게 벌려야 한다.

제20조(예금의 지불과 비밀보장)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예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할 경우 원금과 리자를 제때에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예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지불준비금의 보유)

예금의 정상적인 지불을 위하여 상업은행은 정한 지불준비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지불준비금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제22조(준비에금)

상업은행은 정한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상업은행이 통합 및 해산되는 경우에 찾아쓸수 있다.

제23조(대부조건)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줄수 있다. 이 경우 상업은행은 대부금을 계약내용에 맞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의 원천)

대부원천은 거래자로부터 받아들인 예금과 자체자금, 중앙은행에서 받은 대부금 같은것으로 한다.

상업은행은 대부원천을 초과하여 대부를 줄수 없다.

제25조(대부계약)

상업은행은 상환능력이 있는 거래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된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를 주어야 한다.

대부계약서에는 대부금액, 대부용도, 담보, 상환기간과 방식, 리자를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6조(대부금의 담보, 보증)

상업은행은 대부를 주기 전에 차입자로부터 대부금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세워야 한다.

담보는 차입자의 자금으로 마련한 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보증은 해당 상급기관 또는 지불능력이 있는 제3자가 서면으로 한다.

제27조(대부의 상환)

상업은행은 계약에 따라 대부원금과 리자를 정한 기간에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원금과 리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제하려는 경우 해당 상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예금 및 대부리자를)

상업은행은 정한 기준리자와 변동폭범위에서 예금리자와 대부리자를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제29조(결제의 조직)

상업은행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통하여 화폐거래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결제는 돈자리에 화폐자금이 있을 경우에 만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0조(돈자리의 개설)

상업은행은 거래자에게 현금 및 환치거래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줄수 있다.

거래자는 한 은행에 하나의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상업은행은 승인을 받아 외국은행에 외화돈자리를 둘수 있다.

개인의 돈자리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예금할수 없다.

제31조(대금의 결제)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대금결제는 환치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2조(대외결제, 수형, 증권인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

다른 나라와의 경제거래에 따르는 대외결제, 수형, 증권인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승인받은 해당 상업은행이 진행한다.

대외결제, 수형, 증권인 인수 및 할인, 환자조작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외화의 교환)

해당 상업은행은 외화교환업무를 할수 있다.

외화교환업무는 기준환자시세와 변동폭범위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34조(거래자의 신용확인 및 보증)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거래자의 경영상태와 신용에 대하여 확인하여주거나 보증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거래자는 경영상태자료를 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확인, 보증은 신용장 또는 보증장 같은것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금융채권의 발행 및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할수 있으며 류통종의 각종 채권을 팔거나 살수 있다.

금융채권의 발행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귀금속의 거래)

귀금속의 거래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귀금속의 수매와 보관, 판매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37조(고정재산의 등록)

해당 상업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은 부문별, 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8조(화폐의 팔고사기)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화폐의 팔고사기는 환자시세에 따라 조선원과 외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봉사료금)

상업은행은 거래자로부터 업무에 따르는 봉사료금을 받을수 있다.

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0조(국고업무의 대리)

국고업무대리는 해당 상업은행이 한다.

해당 상업은행은 중앙은행의 국가예산자금지출문건에 따라 자금을 신속히 지출하며 거래자가 바치는 국가예산납부금을 중앙은행에 제때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41조(통계자료의 제출)

상업은행은 화폐류통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작성하고 정한 기간에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자료에는 화폐류통정형과 예금, 대부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상업은행의 회계

제42조(회계제도의 수립)

상업은행은 모든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 계산, 분석하고 결산하는 회계제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회계는 시초서류 또는 아래단위의 회계보고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43조(회계결산의 주기)

상업은행은 주기에 따라 회계결산을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주기는 분기, 반년, 년간으로 한다.

제44조(회계결산서의 작성)

상업은행은 회계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 리익금 및 손실금과 그 처리정형, 채권채무관계 같은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5조(회계결산서의 검증, 제출)

상업은행의 회계결산서는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은 회계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문건의 보관, 취급)

상업은행은 회계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문건은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보여줄수 없다.

제47조(회계년도, 기준화폐)

상업은행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계는 조선원으로 한다.

제5장 상업은행의 통합 및 해산

제48조(통합 및 해산사유)

상업은행은 경영과정에 거래자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할수 있다.

제49조(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제출)

다른 상업은행에 통합하거나 해산하려는 상업은행은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작성은 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50조(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의 심의)

통합 및 해산신청문건을 받은 중앙은행은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통합 및 해산이 승인된 상업은행의 영업허가증은 즉시 회수한다.

제51조(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업무청산)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은 정한 절차에 따라 은행업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통합 및 해산되는 상업은행의 업무청산을 바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

통합되는 상업은행의 채권채무관계는 통합하는 상업은행에 그대로 넘어간다.
통합한 상업은행은 넘겨받은 채권채무를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3조(벌금)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예금을 받아들였거나 대부를 주었을 경우
2. 정한 기준리자율과 변동폭범위를 초과하여 예금 또는 대부리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3. 정당한 리유없이 결제문건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외화교환을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정한 봉사료금을 적게 또는 초과하여 받았거나 받지 않았을 경우
6.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중지하였거나 업무시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제54조(업무중지)

업무를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은행업무를 하였을 경우
2. 거래자의 요구대로 예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준비금을 중앙은행에 예금하지 않았을 경우
4. 업무검열을 방해하였을 경우

제55조(상업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업은행의 설립승인을 취소한다.

제5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업은행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7조(분쟁해결)

상업은행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52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화관리법의 기본

제1조(외화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은 외화의 수입과 리용, 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외화에 대한 정의)

외화에는 전환성있는 외국화폐와 국가채권, 회사채권 같은 외화유가증권이 속한다.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외화지불수단과 장식품이 아닌 금, 은, 백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화, 은화와 귀금속도 외화에 속한다.

제3조(외화관리의 중요원칙)

외화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것은 외화관리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외화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은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외국환자업무는 무역은행이 한다.

다른 은행도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환자업무를 할수 있다.

제5조(외화현금의 류통금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에서는 외화현금을 류통시킬수 없다.

외화현금은 조선원과 바꾸어 쓴다.

제6조(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원칙)

외화의 사고팔기와 저금, 예금, 저당은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을 통하여서만 할수 있다.

외국환자업무를 맡은 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외화업무를 한다.

제7조(환자시세결정)

조선원에 대한 외국환자시세의 종류와 적용범위, 고정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조선원에 대한 결제환자시세, 현금환자시세를 정하는 사업은 무역은행이 한다.

제8조(대외결제외화)

대외결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외화로 한다.

우리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결제와 관련한 협정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에 대한 보호)

국가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국민의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10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외화수입이 있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서 외화수입이 있거나 외화를 리용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과 조선동포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적용하는 외화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외화수입과 리용

제11조(국가외화의무납부률의 제정)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외화수입지출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국가외화의무납부률을 정하여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번 외화를 제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2조(다른 나라, 국제기구 대표부의 외화돈자리)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부는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외화를 입금시켜야 한다.

제13조(외국투자기업의 외화돈자리)

외국투자기업은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고 번 외화를 입금시켜야 한다.

다른 은행이나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외화의무납부금의 우선적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계획을 제때에 실행하며 국가외화의무납부금을 우선적으로 바쳐야 한다.

제15조(국민의 외화보유와 팔기, 저금)

국민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보유할수 있다.

외화를 팔거나 저금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의 외화저금과 팔기)

외국인은 공화국령역밖에서 송금하여온 외화,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를 외국환자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저금하거나 팔수 있다.

제17조(외화의 리용범위)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리용할수 있다.

1.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려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 같은 비무역거래
3. 은행에서 조선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

제18조(대외결제방법)

대외결제는 신용장, 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를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써야 한다.

지정된 지표와 항목과 다르게 외화를 쓰려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외화수입계획을 초과한 외화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화수입계획을 초과한 금액을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지표와 항목에 써야 한다.

제21조(외화의 예금, 저금에 대한 비밀보장과 반환의무)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외화예금과 저금의 비밀을 보장하며 해당한 리자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예금자,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은행의 대부)

공화국의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외화를 대부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외화대부계획을 세워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대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대부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외화유가증권의 발행승인)

외화유가증권을 발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외화반입과 반출

제25조(외화의 반입과 수수료, 관세면제)

외화현금과 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에 들여올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6조(외화현금의 반출)

외화현금은 은행이 발행한 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 입국할 때 세관신고서에 밝힌 금액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7조(외화유가증권의 반출)

외화유가증권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한 외화유가증권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8조(귀금속의 반출)

귀금속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입국하면서 들여온 귀금속은 세관에 신고한 범위에서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29조(외국투자가의 리윤 기타 소득금의 반출)

외국투자자는 기업운영에서 얻은 리윤과 기타 소득금을 공화국령역밖으로 세금없이 송금할수 있다.

투자재산은 세금없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0조(외국인의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반출)

외국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로임과 기타 합법적으로 얻은 외화의 60%까지를 공화국령역밖으로 송금하거나 가지고 나갈수 있다.

제4장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외화수입과 지출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제32조(도인민위원회의 외화관리)

중앙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직접 한다. 그러나 지방예산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외화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도인민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33조(외화채권, 채무에 대한 통일적장악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 대한 외화채권, 채무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외화생활비, 외화려비에 대한 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로 지불하는 생활비, 려비 같은것의 지출기준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관리)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부터 분기, 연간재정상태표와 필요한 업무통계자료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연간외화계획실행결산서의 제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기, 연간외화계획실행결산서를 만들어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화계획실행정형을 총화하고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외화관리정형에 대한 검열)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의 외화관리정형을 검열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환자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검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연체료부과)

국가의 화의무납부금을 제때에 정확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39조(손해보상)

예금, 저금자가 요구하는 외화를 제때에 내주지 못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0조(벌금부과)

외화를 정해진 기간까지 입금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입금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41조(몰수)

비법적으로 거래하였거나 공화국령역밖으로 도피시킨 외화와 해당 물건은 몰수한다.

제4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외화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9호로 채택

제1조(자금세척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비법적인 자금, 재산의 조성과 유통을 막고 금융체계의 안정보장에 이바지한다.

제2조(자금세척의 정의)

자금세척은 비법적으로 얻은 자금,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한 것처럼 하는 행위이다. 자금세척에는 비법적으로 마련한 자금, 재산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그것을 알면서 도와준 것 같은 행위가 속한다.

제3조(자금세척의 방지원칙)

자금세척을 방지하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방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자금세척행위를 엄격히 단속통제하도록 한다.

제4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의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자금세척방지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자금세척에 리용될수 있는 자금, 재산)

자금세척에 리용될수 있는 자금,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위조 또는 변조한 화폐나 증권, 그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2. 마약, 무기의 밀수, 밀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3. 비법적인 화폐, 상품매매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4. 비법적인 부동산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5. 추가적소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대부, 투자 같은 신용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6. 국가납부금과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으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7.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얻은 자금이나 재산
8. 비법적인 귀금속, 유색금속의 거래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9. 매음, 도박, 퇴물, 협잡, 횡령, 강도 같은 행위로 얻은 자금이나 재산

제6조(돈자리개설의 신청)

돈자리를 개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돈자리개설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돈자리개설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신분, 주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7조(돈자리개설의 승인과 부결)

금융기관은 돈자리개설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분을 정확히 알수 없는 돈자리개설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돈자리신청)

금융기관은 대리인을 통한 돈자리개설신청이 제기될 경우 그의 신분과 위임장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명 또는 암호로 돈자리개설을 할수 없다.

제9조(돈자리를 개설하지 않은 자의 금융봉사)

금융기관은 돈자리를 개설하지 않은 자와 자금거래를 하려 할 경우 그의 신분, 주소, 력권, 영업허가증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려 할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와 대방의 신분, 주소 같은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제10조(현금의 지불신청)

현금의 지불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현금지불신청서를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현금지불신청서에는 금액, 용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1조(현금의 지불)

금융기관은 현금지불신청서를 검토하고 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지불할수 없다.

제12조(거래자의 자금, 재산거래의 확인)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경영규모와 업무내용, 직업 같은것에 맞지 않는 큰 규모 또는 일정한 규모로 자주 반복되는 자금과 재산거래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세척의 보고)

자금세척행위를 발견한 금융기관은 즉시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금세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정재산의 장악과 보고)

금융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고정재산을 빠짐없이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폐기하려 하거나 새로 생긴 고정재산을 금융기관과 재산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과 분석)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폐류통통계자료를 제때에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금융기관은 화폐류통통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기록)

금융기관은 거래내용을 장부, 전자매체, 마이크로필름 같은것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은행명칭, 거래시간, 돈자리, 자금의 원천과 목적지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7조(거래문건의 보관기간)

금융기관은 거래문건을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국내거래문건은 5년 또는 10년, 대외거래문건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서의 작성시달)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방지를 위한 지도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도서에는 자금세척방지를 위한 업무의 조직, 방법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태자료의 보고)

금융기관은 업무상태자료를 분기 1차 금융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제출된 업무상태자료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업무내용의 검열기간)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자금세척으로 의심되는 금융기관과 거래자의 업무내용을 7일간 검열할수 있다.

검열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다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자금세척방지자료의 보장)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검증과 통보)

회계검증기관은 정기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을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과정에 자금세척으로 의심되는 자료는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자금세척자료의 처리)

금융감독기관은 발견한 자금세척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에는 세척하였거나 세척하고있는 자금, 재산의 금액, 수량, 원천, 소유자, 책임관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24조(자료의 비밀보장)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과정에 알게된 거래자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자료의 비밀 또는 조사중에 있는 자료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거나 승인없이 보여줄수 없다.

제25조(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다른 나라의 제기에 따라 자금세척방지사업을 협조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협조는 자료조사, 정보교환, 자금이나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 몰수, 범인인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26조(자금세척방지협조의 거절조건)

다른 나라에서 제기한 자금세척방지협조를 거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화국의 주권과 사회경제적안정, 발전을 파괴하려는 정치적인도가 있을 경우
2. 공화국의 법에 저촉될 경우
3. 피고의 권리를 충분히 담보할수 없을 경우
4. 인도주의적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5. 공화국에서 내린 최종판결이 기본요인으로 될 경우
6. 외교적경로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전달되었을 경우

제27조(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융감독기관이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자금세척방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자금세척방지사업의 현대화, 정보화)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을 현대화, 정보화하며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자금세척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금융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자금세척방지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 재산의 동결과 몰수)

자금세척행위와 관련있는 자금이나 재산은 동결 또는 몰수한다.

제31조(업무중지)

돈자리개설절차를 어겼거나 의심스러운 자금세척자료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중지시킬수 있다.

제3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자금세척방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 험 법

주체84(1995)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
주체91(2002)년 5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38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9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9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89호로 수정보충

제1장 보험법의 기본

제1조(보험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사람과 재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손해보상제도이다.
2. 피보험이익이란 보험대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이익이다.
3.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이 현실로 된것이다.
4. 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이다.
5.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6.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7. 보험수익자란 인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8. 보험료란 보험자가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자금이다.
9.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었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는 자금이다.
10. 보험보상금이란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이다.

11.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나는 때까지이다.
12.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준 피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13.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담보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담보시키는 보험이다.

제3조(보험의 분류)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생명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기술보험, 자동차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제4조(자원성, 의무성, 신용의 원칙, 보험종류와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기관)

국가는 보험당사자들이 자원성과 의무성, 신용의 원칙을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에 맞게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새로운 보험종류를 내오거나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조(보험업무의 담당자)

공화국령역안에서 보험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가, 해외조선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6조(보험에 드는 원칙)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해외동포가 보험에 드는 경우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도록 한다.

제7조(보험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보험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8조(법의 적용제한)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보험계약

제9조(보험계약과 당사자들의 지위)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이다.

보험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계약당사자)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수 있다.

제11조(피보험이익)

보험계약은 보험대상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맺을수 있다.
피보험이익이 없이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2조(보험계약의 체결방법)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밝힌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며 보험대상과 관련한 보험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표준조건을 제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계약의 성립시점)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한 때에 성립된다.

보험증권의 형식과 내용은 보험회사가 정하고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보험증권에 밝혀야 할 사항)

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힌다.

1.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3. 보험대상
4. 보험가격
5. 보험금액
6. 담보하는 위험과 담보하지 않는 위험
7. 보험기간
8. 보험료와 그 납부방법
9.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의 지불방법
10. 이밖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사항

제15조(보험계약당사자들의 의무)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제16조(보험료의 납부)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제17조(보험계약의 효력)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보험계약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제18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안에 보험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수송화물보험계약 같은것은 취소할수 없다.

제20조(보험대상의 양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대상과 함께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보험사고의 통지)

보험계약기간에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경감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쓴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23조(보험사고에 대한 감정)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현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손해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해감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보상청구문건의 제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보상청구문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제25조(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의 지불)

보험자는 보상청구문건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보험금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

제27조(효력이 가지지 못하는 보험계약)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에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28조(재보험계약)

재보험계약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맺고 리행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장 인체보험

제29조(인체보험의 대상)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수 없다.

제30조(인체보험에 드는 단위)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들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청구권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31조(보험계약에서 당사자의 동의)

보험계약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그러나 형제, 자매나 친척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제32조(보험금액의 선정)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제33조(보험수익자의 선정)

보험수익자의 선정은 피보험자가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보험금청구서의 제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금청구서에는 사망확인서 또는 로동능력상실확인서 같은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다.

제35조(인체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불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과실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불한다.

제36조(불상사보험에서 보험금의 지불)

불상사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지불한다.

제37조(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3.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제38조(제3자에 대한 청구권)

생명보험에서 제3자의 잘못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불상사보험에서는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제4장 재산보험

제39조(재산보험의 대상)

재산보험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 또는 재산과 련관된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제40조(보험가격과 보험금액)

보험가격은 화폐로 평가한 보험대상의 가치이며 보험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격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제41조(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은 경우의 보상책임)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격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2조(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보상책임)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격에 해당한 보상책임만을 진다.

제43조(중복보험에서의 보상책임)

한 대상을 같은 보험조건으로 여러 보험에 넣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매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들이 담보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격을 초과할 경우 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자기가 담보한 보험금액과 보험금액 총액의 비율에 따른다.

제44조(보험대상의 관리, 안전상태료해)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관리 또는 안전상태에 대하여 료해할수 있으며 결함을 발견

하면 그것을 고칠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45조(보험위험의 변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변동되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46조(보험보상방법)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보상은 수리, 교체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47조(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가지는 경우)

보험사고로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가격의 전부를 지불하였을 경우 그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제48조(추가보험료의 납부와 보험보상)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었던 보험대상을 보험보상금으로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추가보험료를 납부하면 남은 보험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에 해당한 보험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9조(보험기간의 연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계약폐기의사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새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보험보상금을 지불한다.

제51조(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의 포기)

보험자가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합의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제52조(배상책임보험에서의 배상금지불)

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증재비용, 소송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제5장 보험회사

제53조(보험회사의 설립승인)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할수 없다.

제54조(보험회사의 설립조건)

보험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규약과 내부준칙
2.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를
3. 정해진 등록자금
4. 업무장소와 시설
5. 필요한 경영관리성원

제55조(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합의를 받은 다음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제56조(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검토기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60일안에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57조(영업허가증의 발급, 보험회사의 설립일)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보험회사의 설립일로 한다.

제58조(보험회사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보험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회사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며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설립승인의 취소사유)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정해진 등

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60조(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화국령역안에 지사, 대표부, 대리점을 설립할수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소재지의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제61조(해외보험대표부, 보험회사의 설립)

보험회사는 공화국령역밖에 보험대표부 또는 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명칭, 규약, 업종, 등록자금, 업무장소 같은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3조(보험담보금의 적립)

보험회사는 정해진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담보금의 적립규모와 방법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4조(등록자금의 관리)

보험회사는 등록자금을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은행에 넣어야 한다.

등록자금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리용할수 없다.

제65조(재정총화문건의 제출)

보험회사는 결산년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낸다.

제66조(보험대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제67조(보험중개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인이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며 중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8조(보험회사의 분리, 통합, 해산)

분리, 통합, 해산하려는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해산할수 없으며 분리, 통합만을 할수 있다.

제6장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 해결

제69조(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기관)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제70조(중앙보험지도기관의 사업범위)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2. 세계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3.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보험업종을 승인한다.
4.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보험담보금의 규모, 적립방법을 정한다.
5. 보험회사, 보험지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6.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분리, 통합, 해산을 승인한다.
7.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계약신청서, 보험증권 같은 보험관련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승인한다.
8. 재보험업무거래를 승인 또는 제한, 금지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1조(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대상과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과 해당 분야의 국가적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제72조(보험관련문건의 보관기일)

기관, 기업소, 단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 자료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보험회사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중지)

보험회사에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를 적용하거나 보험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3. 재정회계관련문건들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6.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등록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분리, 통합, 해산하였을 경우
8.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조직하였을 경우

제74조(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2. 보험사고와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고 그에 따르는 문건을 만들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3. 문건을 위조하여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4.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들고도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75조(개별적일군에 대한 벌금부과)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리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 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제76조(형사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책임있는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77조(분쟁해결)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과학기술, 지적소유권, 체신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판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주체77(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7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제1조(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과학기술중시원칙)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적립장구현원칙)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조(핵심기초기술, 기초과학, 기술공학발전원칙)

국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같은 핵심기초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초과학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새 기술에 의한 경제의 현대화와 자연부원개발리용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며 자연부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6조(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 배합원칙)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제7조(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도록 한다.

제8조(과학자, 기술자, 대중의 열의동원)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며 과학자, 기술자,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제9조(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과학기술발전전략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를 밝힌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도서에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주요부문과 대상, 도달목표, 해결할 과학기술적내용, 투자규모, 과학기술력량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과학기술발전계획의 분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3조(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심의비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과학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비준한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관, 기업소, 단체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와 보장조건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 등록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하고 그 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제16조(과학기술사업조직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과학연구기관의 조직)

과학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성, 중앙기관, 대학, 기업소에 들수 있다.

과학연구기관의 조직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18조(기초,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 조직운영)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대학에 두고 국가예산으로 운영한다.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대학은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실력있는 과학자로 꾸려 그들이 첨단과학기술연구에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응용부문 연구기관 조직운영)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성, 중앙기관, 기업소는 응용부문 연구기관을 꾸리고 반독립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을 위하여 중앙과학연구기관산하의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을 해당 성, 중앙기관에 이중중속시킬수 있다.

제20조(설계기관의 조직운영)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컴퓨터 지원에 의한 설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봉사기관 조직운영)

해당 기관은 기술봉사기관을 꾸려야 한다.

기술봉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수집과 봉사, 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 도입과 관련한 상담, 협조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소경영관리평가기준)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기술관리와 새 기술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23조(기술관리강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기술공정과 설비, 동력, 품질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개진)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개진대상을 정하고 현대적기술에 의한 기술개진을 하여야 한다.

기술개진은 이미 마련된 생산기술공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절실하고 실리가 큰 대상부터 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혁신운동)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와 생산자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발명, 창의고안, 합리화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제품창조와 류통)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지적제품을 창조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제27조(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려 파견된 기업소의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야 한다.

제28조(공동연구, 협동연구)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연구기관들사이에 계약을 맺고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중심의 조직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기술부문에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게 여러가지 형태의 연구중심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0조(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창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 대학에 인재양성,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일체화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1조(선진기술도입대책)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경제지도기관, 무역기관은 특허기술수입, 합영합작기업창설, 설비납입, 과학기술정보수집 같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려는 기술의 발전수준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2조(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를 조직할수 있다.

제33조(과학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국가통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심의회와 도입

제34조(과학기술심의회, 도입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의 심의회와 도입은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35조(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 발명심의회위원회, 도입위원회 조직)

과학기술의 심의는 비상설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와 비상설발명심의회위원회, 해당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가 한다.

비상설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와 비상설발명심의회위원회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는 해당 중앙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또는 기업소에 둔다.

제36조(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 발명심의회위원회, 도입위원회의 임무)

비상설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수행과정에 이룩된 성과, 새 기술에 의하여 꾸리는 생산기술공정과 기업소건설을 위한 기술과제, 기술수출입제안을, 비상설발명심의회위원회는 발명, 특허, 창의고안 같은것을,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는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과학기술성과, 선진기술도입,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심의한다.

제37조(과학기술심의회문건제기와 심의)

과학기술을 심의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회신청서와 과학기술문건을 비상설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 비상설발명심의회위원회 또는 해당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에 내야 한다.

비상설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와 비상설발명심의회위원회, 해당 과학기술심의회도입위원회는 제기된 과학기술심의회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38조(통과된 과학기술의 등록)

과학기술심의회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은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도입할수 없다.

제39조(중요과학기술의 도입)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도입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의 도입계획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40조(계약에 따르는 과학기술도입)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기관과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약에 따라 등록된 과학기술을 도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제41조(과학기술인재양성과 장려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장려하는것은 과학기술사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과학기술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2조(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양성 및 양성생과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양성생을 보낼수 있다. 이 경우 양성생선발은 실력본위로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제고)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 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자격급수사정사업)

과학자, 기술자는 자격급수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자격급수사정은 과학기술성과와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한다.

제45조(학위수여사업강화)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논문심의회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원사, 후보원사의 책임성, 역할제고)

과학원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창발적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표창)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제48조(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상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적성공으로 국가에 경제적리익을 주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제49조(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은 과학기술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로 쓰게 된 리윤가운데서 일정한 몫을 과학기술발전자금으로 정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0조(과학기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실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의 배치)

해당 기관은 실력있는 대학 및 박사원졸업생을 과학기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2조(최신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최신과학연구설비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최신과학연구설비는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동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다른 나라 도서구입, 과학기술정보자료보장)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의 필요한 과학기술도서와 잡지를 정상적으로 들여오며 과학기술정보자료기지와 컴퓨터정보봉사당을 현대적으로 꾸려 과학기술정보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54조(과학자, 기술자의 사회적동원면제)

로동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5조(과학자, 기술자의 생활조건과 우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해주어야 한다.

제7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6조(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7조(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과학원과 연구소,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연구사업과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9조(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회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중지사유)

과학기술심의회를 받지 않고 기술공정과 설비를 개조하거나 건설, 기술수출입을 하거나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61조(학위, 급수박탈사유)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였거나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급수를 사정받았을 경우에는 박탈한다.

제6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주체93(2004)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7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의 기본

제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정의와 법의 사명)

유전자전이생물은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생물분류학적《과》의 범위를 벗어난 세포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전적특성을 가진 생물체와 그 산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 관리, 자료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고 인민들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이바지한다.

제2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원칙)

과학기술적인 담보밑에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는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류출사고를 미리 막으며 환경에 부정적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며 자료수집과 교환,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원칙)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필요한 설비를 현대적으로 갖추며 전문일군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제6조(대중참가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며 그들이 유전자전이생물 안전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재조합데핵산을 가지고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과 유전자전이식품, 사

료, 가공용유전자전이생물, 유전자 또는 유전자운반체, 프라이머, 프로모터, 비루스, 비로이드 같은것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해당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인체 용유전자전이의약품의 수출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국제 조약과의 관계)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제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은 위험성평가와 승인을 받아야 연구개발하거나 생산, 수출입할 수 있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은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가 한다.

제1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수출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수입당사자가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문건을 내지 않을수 있다.

제1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에 첨부할 문건)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리 수출당사자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위험성평가문건과 해당 기관의 심의문건을 요구하여 신청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나라 또는 지역에서 위험성평가문건과 심의문건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내야 한다.

제12조(과학연구, 전시회용유전자전이생물의 반입승인)

과학연구,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입승인을 받을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한 통보)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그 품명과 수량, 포장 및 표식상태, 출발지와 도착지, 수송방법 같은것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문건접수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접수하면 90일안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입신청문건의 접수통지절차와 방법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른다.

제15조(결합있는 신청문건의 반송)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에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낼수 있다.

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결합을 고치고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16조(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담당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을 받은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는 전문과학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위험성평가료금을 물어야 한다.

제17조(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방법)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의뢰받은 기관은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유전자전이생물의 특성과 그것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 용에 미칠수 있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위험성평가항목과 기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8조(위험성평가보고서제출)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를 진행한 과학연구기관은 위험성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위험성평가보고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검토한 자료와 위험성평가자료를 종합하여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문건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분석을 요구하거나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제2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통지기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심의결과를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70일안으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신청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2.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전이생물

제22조(제심의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부결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여 출데 대한 의견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통지하여주어야 한다.

제23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의 취소)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이 승인된 유전자전이생물이 사람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적리용,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을 경우
2. 속임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을 받았을 경우
3. 승인받은 목적, 내용과 다르게 유전자전이생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24조(위험성이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및 공개)

위험성이 없는것으로 평가된 유전자전이생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소를 통하여 공개한다.

유전자전이생물을 공개할 경우에는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5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승인절차의 간소화)

위험성이 없는것으로 공개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서는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장 유전자전이생물의 관리

제26조(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등급에 따르는 설비, 측정기구를 갖추고 폐쇄적리용기준과 실험조작규범의 요구대로 연구개발사업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연구개발의 위험성등급과 폐쇄적리용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7조(유전자등록 및 검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에 리용하는 유전자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며 국가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정받지 않은 유전자는 연구개발에 리용할수 없다.

제28조(연구개발한 유전자전이생물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새로 연구개발하였을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유전자전이생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전자전이생물은 생산에 도입할수 없다.

제29조(유전자전이생물의 생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전자전이생물을 밀폐된 장소에서 생산하려 할 경우 폐쇄적리용기준, 자연환경상태에서 생산하려 할 경우 환경방출조건에 따르는 안전보장대책을 세우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생산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은 소독하여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제30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송)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야 한다.

밀폐하지 않은 수단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송할수 없다.

제31조(유전자전이생물의 표식)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 물품을 포장하고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전이생물표식을 허위로 하거나 마음대로 변경 또는 삭제할수 없다.

포장, 표식형식과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에서 발급한 수출 또는 수입승인문건을 해당 기관에 내고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을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하고 검사,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검사방법)

해당 검사, 검역기관은 수출입하는 유전자전이생물의 수출입승인문건구비상태와 포장 및 밀폐, 표식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문건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과 포장 및 밀폐, 표식상태가 불비한 유전자전이생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억류하고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유전자전이생물의 보관)

유전자전이생물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밀폐된 보관시설을 꾸리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유전자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관하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35조(유전자전이생물의 판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험성평가를 받고 안전성이 담보된 유전자전이생물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표식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유전자전이생물은 판매할수 없다.

제36조(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정형을 정상적으로 살피며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피해발생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과정에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제때에 취해야 한다.

제38조(유전자전이생물의 폐기, 퇴송, 멸균, 소독조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승인없이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거나 그것이 금지, 제한되었거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전이생물에 대하여 폐기, 퇴송, 멸균, 소독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4장 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

제39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의 기본요구)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는것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안전보장을 위한 중요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자료교환소를 꾸리고 컴퓨터에 의한 자료교환망을 형성하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집, 교환하여야 한다.

제40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요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비밀엄수)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취급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누설하거나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2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의 보호제기)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신청문건에 반영된 자료를 특별히 보호해줄데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명칭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유전자전이생물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일반자료, 사고방지를 위한 비상대책 그밖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료 같은 것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43조(보호자료의 확정)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보호하여 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보호할수 없는 유전자전이생물자료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44조(보호자료의 공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보호하는 자료라 하더라도 유전자전이생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합의하고 공개할수 있다.

합의되지 않은 자료는 공개할수 없다.

제5장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의 지도기관)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

국가는 유전자전이생물관리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내각에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전이생물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과 생물안전에 관한 국제조약의 리행대책을 토의결정한다.

비상설생물안전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47조(유전자전이생물지식의 보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 교육기관, 자연보호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인민들속에 유전자전이생물지식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48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유전자전이생물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 수송, 보관, 판매, 자료보호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비법적인 유전자전이생물의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행위에 대한 제재)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을 어겼거나 안전보장대책을 세우지 않고 유전자전이생물을 연구개발, 생산,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몰수한다.

제50조(유전자전이생물안전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유전자전이생물을 정해진대로 포장, 표시하지 않았거나 밀폐하지 않고 수송, 보관,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물품을 폐기 또는 몰수한다.

제51조(유전자전이생물자료보호질서위반에 대한 제재)

비법적으로 유전자전이생물자료를 루실하였거나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

주체93(2004)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제1장 소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1조(소프트웨어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프트웨어산업법은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검사, 유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지위, 발전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은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전)

소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세워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늘이고 정보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소프트웨어의 검사원칙)

소프트웨어의 검사는 생산된 소프트웨어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의 유통원칙)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발전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판매, 수출입, 정보봉사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소프트웨어의 생산

제8조(소프트웨어생산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의 생산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의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단위등록신청)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것을 밝힌 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1조(등록증발급)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소프트웨어의 개발능력과 전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소프트웨어, 협동생산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제13조(생산승인대상의 소프트웨어)

조작체계소프트웨어, 경영업무소프트웨어, 정보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일적으로 리용할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량속,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할 수 없다.

제15조(주문생산)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지표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대외주문계약의 승인)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문건을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할 소프트웨어의 품명, 납입기일, 지불조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도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할수 있다.

제18조(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생산, 유통하려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문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보장과 제정)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부문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생산공정 확립 및 기술지도)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의 검사

제21조(검사기관)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바로하는것은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소프트웨어의 검사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한다.

제22조(검사받을 의무)

소프트웨어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품인증 또는 관리체계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제23조(검사신청서의 제출)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24조(검사방법)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효율성, 신뢰성, 호환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한다.

제25조(자료요구)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 설비 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검사증발급)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합격통지서와 품질검사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불합격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제27조(검사료금)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8조(기밀보장)

소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과 해당 일군은 소프트웨어를 검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

검사에 리용한 기술문건과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제4장 소프트웨어의 류통

제29조(소프트웨어의 류통질서준수)

소프트웨어의 류통은 생산된 소프트웨어를 판매, 수출입하거나 정보봉사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류통시켜야 한다.

제30조(상표, 생산단위표시)

생산한 소프트웨어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이름,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날자를 정확히 밝힌다.

제31조(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한다.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판매할수 없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상표가 없거나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소프트웨어의 수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수출할수 없다.

제34조(소프트웨어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정보봉사)

소프트웨어의 설치, 보수봉사와 정보가공봉사, 정보설비봉사, 자문봉사, 정보체계구축봉사, 컴퓨터망봉사 같은것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신용보증제)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판매와 정보봉사에서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제37조(소프트웨어의 가격제정)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내기준가격과 대외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정한다.

국내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대외기준가격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38조(소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성파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프트웨어의 기술연구, 생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0조(소프트웨어전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신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42조(소프트웨어생산기지의 확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추세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화수준을 높이며 소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단위를 늘여야 한다.

제43조(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한 설비,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4조(정보통신보장)

중앙통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신보장을 위한 현대적인 통신하부구조를 완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제6장 소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기본요구)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지도기관)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 검사, 유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개발, 봉사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노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전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8조(감독통제)

소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의 생산, 검사, 유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50조(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소프트웨어를 유통시켰거나 승인없이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와 돈을 몰수한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의 생산과 유통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

주체94(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96호로 채택

제1장 유기산업법의 기본

제1조(유기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기산업법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품질인증,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토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유기산업의 정의, 유기제품의 수요보장원칙)

유기산업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하여 만든 비료, 농약, 사료, 수의약품, 원료, 자재, 가공첨가제 같은것을 거의나 쓰지 않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유익한 농산물, 수산물, 목제품,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공예품, 방직 및 피복제품 같은것을 생산하는 경제부문이다.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그 구조를 개선완비하여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유기제품생산의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원칙)

유기제품의 규격을 바로 정하고 생산을 전문화하는것은 유기제품생산의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생산을 표준화, 규격화, 전문화하도록 한다.

제4조(유기제품의 품질인증원칙)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유기제품의 수출입원칙)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이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유기제품의 수출입질서를 바로세우고 더 많은 유기제품을 수출하도록 한다.

제6조(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 과학지식보급원칙)

국가는 유기산업부문의 교육발전에 힘을 넣으며 이 부문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유기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유기제품의 생산

제8조(생산계획의 작성)

유기제품의 생산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유기제품생산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9조(규격의 제정, 갱신)

유기제품의 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규격을 환경보호와 생태계의 균형유지, 위생안전성과 질을 보장할수 있게 정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공정확립과 기술적문제협의)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생산과정에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련관계획의 실행)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생산과 련관된 원료, 자재의 생산 및 보장, 수송계획을 제때에 실행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부문의 균형보장)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규격을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기본생산부문과 보조생산부문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기제품의 수요와 해당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13조(유기제품의 종자)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종자로 생산을 하여야 한다.

유전자변이종자는 유기제품의 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제14조(유기제품생산과 비유기제품생산의 구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과 비유기제품을 엄격히 구별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비유기제품을 생산하다가 유기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이 정한 전환기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토지, 종자, 생산방법을 바꿀수 없다.

제15조(새로운 유기제품의 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유기제품을 자체로 개발하거나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유기제품의 포장과 표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유기제품을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고 재순환 및 재이용할수 있거나 생물학적으로 분해할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하며 《유기》라는 표시가 있는 상표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재생에너르기의 개발리용)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생산에서 석탄, 원유 같은 화석에너르기소비를 극력 줄이고 자기 단위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태양열, 풍력, 생물가스 같은 재생에너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재자원화기술의 도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자원화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정에 폐설물이 극력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은 무독화, 정화하여야 한다.

제19조(유기제품의 가격제정)

유기제품의 가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은 유기제품의 특성과 수요, 생산 및 보관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유기제품의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3장 유기제품의 품질인증

제20조(품질인증기관)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은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는 제품인증, 관리체계인증, 성원인증 같은것이 속한다.

제21조(품질인증신청서의 제기)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인증신청서를 해당 품질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품질인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명칭, 주소, 제품명 또는 관리체계명, 제품 또는 생산공정의 품질관리상태 같은것을 밝히며 상표등록증, 생산허가증, 위생방역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품질인증신청의 심의기간, 자체검사)

해당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안으로 품질인증심의를 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심의회에서 합격되었을 경우에는 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인증표식을 정하여 주며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증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에 대한 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설비와 기구를 갖추고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인증신청자의 의무)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표준조작법, 제품규격문진, 공정일지 같은것을 갖추며 해당 품질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설비 같은것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료금)

유기제품의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증료금을 물어야 한다.

유기제품의 인증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5조(품질인증에 대한 의견제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의 품질인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품질인증을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품질인증신청)

다른 나라의 규격으로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을 통하여 해당 나라 또는 국제기구에 품질인증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품질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4장 유기제품의 수출입

제27조(수출입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수출을 늘이고 수입을 줄일수 있도록 유기제품의 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생산능력과 시장수요, 실현가능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제28조(유기제품을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해당 업종, 지표를 승인받은 무역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기술합의신청서의 제기)

유기제품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취급할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다음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에 기술합의신청서를 내야 한다.

기술합의신청서에는 생산단위, 제품명, 규격, 수량, 생산날자, 대상국, 수송방법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0조(기술합의신청서의 검토)

기술합의신청서를 받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합의를 받지 않은 무역회사는 유기제품을 수출입할수 없다.

제31조(수출입기준가격의 제정)

유기제품의 수출입기준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관세)

수출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하는 유기제품에 대하여서는 같은 품목의 비유기제품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제5장 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유기산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은 유기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장악등록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4조(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과 포장, 보관, 수송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보상금, 보조금의 지불)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환기에 있는 유기농산물생산단위에는 해당하는 보상금을,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단위에는 보조금을 지불할수 있다.

유기산업부문에 주는 보상금, 보조금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국가계획기관,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6조(과학연구사업강화와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유기산업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37조(감독통제)

유기산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유기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유기제품의 생산, 품질인증과 검사, 수출입질서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유기제품의 생산 및 취급중지, 손해보상)

유기제품의 질과 위생안전성이 기준지표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유기제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그 질과 위생안전성을 떨구었을 경우에는 해당 유기제품의 생산 또는 취급을 중지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유기산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 상 법

주체94(2005)년 1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68호로 채택

제1장 기상법의 기본

제1조(기상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상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

제2조(기상사업의 본질과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기상사업은 대기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기상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3조(기상관측원칙)

기상관측을 바로하는것은 기상정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상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기상예보원칙)

기상예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여러가지 기상정보에 의거하여 예견되는 기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발표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기상예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상예보를 하도록 한다.

제5조(기상시설의 관리원칙)

기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것은 기상시설의 파손을 막고 기상관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기상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가동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기상과학연구와 인재양성원칙)

국가는 기상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상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기상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기상관측

제8조(기상관측의 정의와 구분)

기상관측은 날씨와 대기변화과정을 연속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상관측은 관측위치에 따라 지면기상관측, 고층기상관측, 해상기상관측 같은 것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상관측을 할수 있는 기관)

기상관측은 기상관측기관이 한다.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관측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10조(기상관측장의 선정과 승인)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장을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를 대표하며 기상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 전기와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과 하천수역으로부터 떨어진 개활지대에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상관측방법)

기상관측기관은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

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은 관측기재로,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은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기상관측자료의 기록)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제때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

제13조(기상전보문, 월보, 년보의 작성)

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전보문, 기상월보, 기상년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상전보문은 정한 시간에, 기상월보와 년보는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상급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4조(기상월보, 년보의 심사, 보존)

중앙기상자료심사기관은 기상월보와 년보의 심사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상월보와 년보는 영구보존한다.

제15조(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는 기상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기상관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열,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기상예보

제17조(기상예보의 중요요구와 구분)

기상예보를 과학성있게 하는것은 예견되는 날씨조건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기상예보는 날씨의 예견기간에 따라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장기예보로 구분한다.

제18조(기상예보자료의 작성)

기상예보기관은 정기기상관측자료와 기상통신망으로 받는 기상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상예보자료는 대기운동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제19조(기상예보의 기관)

기상예보는 중앙기상예보기관과 지방기상예보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예보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예보를, 지방기상예보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상예보를 한다.

제20조(기상예보의 통보)

기상예보의 통보는 방송보도기관이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기상예보를 접수하면 제때에 TV와 소리방송으로 보도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신문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낼수도 있다.

제21조(재해성기상경보)

기상예보기관은 폭우와 센 바람, 태풍, 우박, 황사, 산불, 해일, 한파 같은 기상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경보를 하여야 한다.

방송보도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22조(기상재해의 방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

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재해조사와 평가에 해당 시기의 기상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3조(기상정보의 봉사)

기상정보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기관에 의뢰하여

기상정보봉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상정보봉사로금을 내야 한다.

기상정보봉사로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4조(기상과학지식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 기후특징과 태풍, 해일, 황사 같은 재해성기상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같은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기후자료의 조사, 평가와 통보)

기상기관은 기후자료에 대한 종합적조사와 평가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평가된 기후자료로 기후통보를 낸다.

제26조(비법적인 기상자료의 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 기상재해, 대기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장 기상시설의 관리

제27조(기상시설의 구분)

기상시설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기상시설에는 기상관측장과 기상측정수단, 기상위성 및 레이다설비, 통신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제28조(기상시설의 관리기관)

기상시설의 관리는 해당 기상기관이 한다.

해당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기상시설의 등록과 검정, 보수)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의뢰하는 기상측정수단도 검정하여야 한다.

제30조(기상관측장의 위치변경금지)

기상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중요대상건설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관측장과 필요한 건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31조(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상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장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2조(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기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3조(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4조(과학기술적지도)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관측과 예보, 기상자료심사와 보존, 기상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기상관측, 예보일군의 자격)

기상관측, 예보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

제36조(기상측정수단생산과 전력, 통신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기상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기상측정수단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필요한 통신과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감독통제)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상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8조(벌금, 손해보상)

기상관측과 재해성기상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재해성기상정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거나 기상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9조(원상복구)

승인없이 기상관측장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제4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상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주체90(2001)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채택
주체95(2006)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2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저작권법의 기본

제1조(저작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

제2조(저작권의 보호원칙)

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저작물의 리용원칙)

저작물의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저작물의 리용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저작권접권의 보호원칙)

국가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외국인의 저작권보호)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결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6조(저작권보호의 제외대상)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

제7조(저작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저작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8조(저작권대상선정의 기본요구)

저작권의 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저작권보호의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과학논문, 소설, 시 같은 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가극, 연극, 교예, 무용 같은 무대예술저작물
4. 영화, 텔레비존편집물 같은 영상저작물
5.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같은 미술저작물
6. 사진저작물
7. 지도, 도표, 도면, 략도, 모형 같은 도형저작물
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10조(저작린접권의 대상)

원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만든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제11조(편집저작물의 대상)

사전이나 선집 같은 편집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된다. 이 경우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서 창조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저작권의 제외대상)

국가관리문진과 시사보도물, 통보자료 같은것은 상업적목적이 없는 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3장 저작권자

제13조(저작권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분야의 저작물을 창작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이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권리와 재산적권리를 가진다.

제14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2. 저작물에 이름을 밝힐 권리
3.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15조(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2.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3.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윤색, 번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4.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제16조(저작권의 소유)

개인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자가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하여서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7조(공동소유의 저작권)

두명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자들이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저작권은 저작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된다. 이 경우 대표를 선출하여 권리를 행사할수도 있다.

제18조(영상저작물저작권의 소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제작한자가 가진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리용된 소설, 대본, 음악, 미술저작물 같은것에 대한 저작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제19조(원저작권자의 권리보호)

저작물을 개작, 편집한자는 저작권행사에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자만이 가진다.

인격적권리는 양도, 상속할수 없으며 무기한 보호된다.

제21조(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양도)

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수 있다.

재산적권리를 다른 나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계승)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를 가진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될 경우 그 권리는 계승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진다.

제23조(저작물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그것을 창작한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공동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4조(법인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보호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재산적권리는 저작물이 발표된 때부터 50년까지 보호한다.

제25조(저작권보호기간의 계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발표되었거나 창작자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

제4장 저작물의 리용

제26조(저작물리용의 기본요구)

저작물의 리용은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저작물을 보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의 요구대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저작물의 리용, 허가)

저작물의 리용은 저작권자가 한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저작권자를 찾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저작물을 리용할수 있다.

제28조(저작물의 우선적리용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소속된 공민이 직무수행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29조(저작물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허가 또는 승인받은 범위에서 저작물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30조(저작물리용권의 양도)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 또는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물의 리용을 허가한 저작권자나 승인한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저작물의 리용료금)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하는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2조(저작물의 무허가리용)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또는 가정적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제5장 저작린접권자

제33조 (저작린접권자의 의무)

저작린접권자는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 녹음, 록화, 방송을 한자 또는 그의 권리를 넘겨받은자이다.

공연, 녹음, 록화, 방송을 한자는 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 (저작린접권자의 공연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공연한자는 이름을 밝히거나 공연을 복제, 방송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제35조 (저작린접권자의 녹음, 록화물제작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녹음 또는 록화물을 제작한자는 그것을 복제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녹음 또는 록화물, 복제물을 배포할수도 있다.

제36조 (저작린접권자의 방송권리)

저작물을 리용하여 방송한자는 그 방송물을 녹음, 록화, 사진촬영 같은 방법으로 복제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을 할수도 있다.

제37조 (저작린접물의 사용)

공연물, 녹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8조 (저작린접권의 보호기간)

저작린접권보호기간은 공연, 녹음, 록화,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까지이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공연, 녹음, 록화, 방송을 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한다.

제39조 (저작린접권의 양도, 상속)

저작린접권은 양도 또는 상속할수 있다.

제40조 (저작린접물의 무허가리용)

공연물, 녹음 또는 록화물, 방송물은 제32조에서 정한 경우들에 한하여 저작린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6장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1조(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저작권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2조(저작권사업의 지도)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저작권자와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43조(저작권사업의 대리기관조직)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은 저작권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4조(저작물의 모방, 표절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표하기 위하여 제출된 남의 저작물을 모방하거나 표절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저작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보상)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8조(분쟁해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

주체87(1998)년 5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발명법의 기본

제1조(발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발명권, 특허권부여)

발명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이다.

국가는 심의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준다.

제3조(발명등록의 신청원칙)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 심의등록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발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발명의 심의등록원칙)

발명의 심의등록을 정확히 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발명의 심의등록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원칙)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6조(발명사업의 장려원칙)

국가는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대중적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리며 과학기술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7조(발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발명등록의 신청

제8조(발명등록신청의 기본요구)

발명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창조한 과학기술의 우선권을 인정받고 과학기술적내용을 평가받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적성파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의 신청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으로 이룩한 발명등록의 신청)

우리 나라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이 공동으로 이룩한 과학기술적성파에 대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그들의 이름으로 하거나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제10조(발명등록기관)

발명등록의 신청은 발명등록기관에 한다.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이 한 발명등록의 신청은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 한다.

제11조(발명등록신청문건)

발명등록신청문건은 내용별, 전별로 갈라 만든다. 그러나 내용을 서로 분리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등록신청문건을 하나로 만들수 있다.

발명등록신청문건에는 등록신청서, 기술설명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2조(발명등록의 신청절차)

발명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발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제품의 견본, 모형, 시편, 시료 같은것을 내야 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접수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조(특허권신청료금)

새로운 과학기술적성파에 대하여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발명의 심의등록

제14조(발명등록신청의 심의내용)

발명의 심의등록은 제기된 발명의 정확성을 검토평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기술의 특성, 수준, 공업적 실현가능성, 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따져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전문기관에 과학기술평정과 시험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제15조(발명의 우선권)

발명의 우선권은 발명등록기관이 발명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국제협약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6조(발명등록신청에 대한 현지료해)

발명등록기관은 발명등록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지료해를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신청내용의 현지료해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설발명심의위원회)

국가는 발명의 정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비상설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도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8조(발명의 등록, 부결통지)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 또는 부결통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부결통지서에는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9조(등록이 결정된 발명의 등록)

등록이 결정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한다.

발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발명을 등록하고 발명권, 특허권을 소유한자에게 해당한 증서를 준다.

발명권을 소유한자에게는 발명메달과 상금도 준다.

제20조(발명등록의 공개)

발명등록기관은 발명의 등록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발명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21조(발명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제기)

발명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발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나라에 특허권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새로운 과학기술적성과에 대한 특허권을 다른 나라에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4장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

제23조(과학기술리용권보호)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추동하며 그 권리를 담보하여주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발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으로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의 리용권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자)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은 그 소유자가 한다.

제25조(특허권의 보호기간)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우선권을 받은 날부터 15년이다.

특허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권보호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26조(특허권보호료금)

특허권소유자는 특허권보호에 필요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7조(특허권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1. 특허권소유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2. 특허권보호료금을 정해진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3.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비상설발명심의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을 경우

제28조(특허로 보호되는 과학기술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특허로 보호되고있는 과학기술을 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29조(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은 양도하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여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는 해당한 계약을 맺고 발명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공동소유의 특허권 리용)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소유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승인없이 해당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을 승인하려 할 경우에는 다른 특허권공동소유자의 합의를 받는다.

제31조(특허권의 이관)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이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특허권이나 그 과학기술의 리용권을 넘겨받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소유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32조(특허권의 교체)

특허권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발명권으로 바꾸어준다.

발명권은 특허권으로 바꿀수 없다.

제33조(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소유자의 승인없이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리용할수 있다.

1. 우리 나라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수리정비에 리용하는 경우
2. 과학연구와 실험에 리용하는 경우
3.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리용하는 경우

제34조(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질서)

발명권을 받은 과학기술의 리용권이나 자료, 제품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장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6조(발명사업에 대한 지도)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발명목표를 정확히 주고 그 실현과 도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7조(과학기술토론회와 기술혁신전시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적기술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토론회, 기술혁신전시회, 경험교환회, 현상모집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8조(발명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발명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발명가, 도입자에 대한 우대와 평가)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발명으로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평가한다.

제40조(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발명사업에 대한 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등록의 신청과 발명의 심의등록질서를 세우고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1조(손해보상)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발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3조(의견상이의 해결)

발명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표 법

주체 87(1998)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6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 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14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03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상표법의 기본

제1조(상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신청과 심의, 상표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상표와 그 종류)

상표는 서로 다른 생산자 또는 봉사자의 같은 제품이나 봉사를 구별하기 위하여 글자, 그림, 수자, 기호, 색깔, 3차원적인 형태 또는 그것들의 결합체로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에는 제품상표, 봉사상표, 집단상표, 증명상표, 담보상표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상표등록의 신청원칙)

상표등록의 신청은 상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표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상표등록의 심의원칙)

상표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상표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상표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상표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상표권의 보호원칙)

상표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유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이름난 상표를 고착시키도록 한다.

제6조(상표사업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상품생산과 봉사업종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표의 조형화, 예술화를 실현하며 상표사업을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7조(상표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표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8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

상표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상표심의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표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상표등록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상품 및 봉사분류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며 상표견본, 영업허가와 관련한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상표등록신청문건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전자우편,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11조(외국인의 상표등록신청문건제출)

우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대리기관은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2조(외국에 하는 상표등록의 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한 상표를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상표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상표등록신청문건의 결합퇴치)

결합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상표등록기관은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결합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합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5조(상표등록의 신청날자)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고쳤을 경우에도 상표등록의 신청날자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상표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를 출품하였을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문건은 전람회, 전시회에 상표가 출품된 날부터 3개월안에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외국법인, 공민의 상표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 또는 임의의 나라에서 받은 상표의 등록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나라 상표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상표등록의 재신청)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보호기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서는 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의

제19조(상표등록의 심의기간)

상표등록의 심의는 상표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상표등록심의자료)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상표로 등록할수 없는 표식, 표기)

다음에 해당하는 표식, 표기는 상표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2. 국호나 그 약자로 만들었거나 국장, 국기, 훈장, 메달과 같거나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 표식
3.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표식
4. 상품 또는 봉사에 대한 허위적내용을 담은 표식
5. 상품명, 조성, 특성 같은것만의 표기
6. 검사표식이나 단순한 수자, 기하학적표식
7. 전람회,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8.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의 표식으로 되었거나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어긋나는 표식
9. 널리 알려진 상표, 유명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식
10. 우리 나라를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

제22조(상표등록의 심의)

상표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받은 상표를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의 심의결과는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준다.

제23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재발급과 상표공개)

등록이 결정된 상표는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등록한 상표는 상표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상표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하려는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년안에 상표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상표를 신청하였거나 상표를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등록이 부결된 상표에 대한 재심의제기)

상표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상표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상표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을 경우 확정된다.

제26조(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상표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할수 있다.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상표등록기관과 의견을 제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상표권의 보호

제27조(상표권보호의 기본요구)

상표권을 보호하는것은 상표사업의 중요내용이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상표권의 소유자)

상표권은 상표등록기관에 상표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상표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상표권소유자의 권리)

상표권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2.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상표권침해행위를 중지시킬데 대한 권리와 손해보상청구권
4. 등록된 상표의 취소권

제30조(상표권의 양도)

상표권을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양도문건을 만들어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권을 양도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합의를 받으며 상표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권양도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양도는 상표등록기관에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상표의 사용허가)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상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사용하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경우 상표사용허가계약을 맺으며 정해진 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사용허가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상표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한 통제권)

사용허가를 받은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책임진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용허가를 한 상표에 따르는 상품, 봉사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상표권의 양도,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상표의 사용허가를 할수 없다.

제34조(상표권의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상표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10년씩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35조(상표권보호기간의 연장)

상표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의 제기기간)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표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그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상표등록의 변경)

상표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상표등록변경신청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등록변경내용을 국가상표등록부에 등록하고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38조(상표권의 취소)

상표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등록취소문건을 상표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9조(상표권의 효력상실)

상표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상표를 등록한 날부터 5년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상품의 질을 높이며 상표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상표사업지도기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표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상표지도기관은 상표사업에 대한 지도와 상표의 심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분쟁처리를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한다.

제42조(상표관련사항의 공개)

상표등록기관은 상표를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과 수요자의 기호에 맞게 보기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국가규격과 국제판례를 지키도록 한다.

상표의 등록신청, 등록과 그 변경, 갱신,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에 대하여서는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일군양성)

중앙상표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상표사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상표사업부문에 필요한 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상표와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 들여오거나 허위 및 위조상표를 붙인 상품, 상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수출입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45조(상표사업과 요금)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표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표사업과 관련한 요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46조(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표등록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상표등록의 신청, 심의질서를 지키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보상, 몰수, 영업중지)

상표권에 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허위 및 위조상표를 제작, 인쇄, 리용,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위법행위에 리용된 상표, 상품 같은것은 몰수하거나 영업활동을 중지시킨다.

제48조(생산, 봉사의 중지, 등록취소)

상표권을 비법적으로 양도, 사용허가하였거나 등록된 상표를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생산 또는 봉사를 중지시키거나 상표의 등록을 취소시킬수 있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상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분쟁해결)

상표와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표등록기관, 비상설상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

주체87(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제1조(공업도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업도안과 그 분류)

공업도안은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것이다.

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품, 가구류, 전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속한다.

제3조(공업도안등록의 신청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은 공업도안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공업도안등록의 심의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체계를 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공업도안권의 보호원칙)

공업도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공업도안권을 보호한다.

제6조(공업도안의 갱신원칙)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제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한다.

제7조(공업도안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업도안사업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제8조(공업도안등록신청의 기본요구)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안등록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창작한 공업도안에 대한 등록신청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신청을 공동으로 하려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10조(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작성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별로 만든다. 그러나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한 공업도안은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만들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는 도안명, 도안의 분류, 신청자 및 창작가의 이름 같은 것을 밝히며 도안과 도안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한다.

제11조(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텔렉스, 팩스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12조(다른 나라 법인의 공업도안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공업도안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결합퇴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합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4조(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공업도안등록신청날자)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합이 있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정해진 기일에 고쳤을 경우에도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공업도안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3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다른 나라 법인의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공업도안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다른 나라에 하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을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내야 한다.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제19조(공업도안등록심의기간)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업도안등록심의자료의 요구)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할수 없는 공업도안)

다음의 도안은 공업도안으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도안
2. 이미 공개되어 사용하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도안
3. 우리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도안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것의 도안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안
6.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

제22조(공업도안등록심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의 심의결과는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공업도안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안은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는 공업도안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공업도안은 공업도안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한 재심의제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공업도안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제27조(공업도안권보호의 기본요구)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것은 공업도안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공업도안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공업도안권의 소유자)

공업도안권은 공업도안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공업도안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공업도안권소유자의 권리)

공업도안권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2.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

제30조(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공업도안권 양도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권의 양도는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공업도안의 사용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 계약을 맺고 공업도안사용허가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공업도안에 따르는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

공업도안사용을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공업도안사용을 허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의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할수 없다.

제34조(다른 나라에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의 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다.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을 5년씩 두번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낸다.

제36조(공업도안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그 보호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공업도안등록의 변경)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도안등록변경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변경내용을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공업도안등록의 취소)

공업도안등록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취소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증도 내야 한다.

제39조(공업도안권효력의 상실)

등록된 공업도안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그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공업도안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업도안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공업도안창작을 장려하며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공업도안지도기관의 임무)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공업도안지도기관이 한다.
공업도안지도기관은 공업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공업도안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등록, 보호기간연장,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과 공업도안등록신청자의 이름, 주소변경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공업도안사업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한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4조(공업도안의 창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5조(공업도안소유권과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기는데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공업도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공업도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질서를 지키고 공업도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손해보상, 몰수)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8조(사용중지, 등록취소)

승인없이 등록된 공업도안을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공업도안등록을 취소시킨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업도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분쟁해결)

공업도안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이나 비상설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

주체92(2003)년 8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

제1장 원산지명법의 기본

제1조(원산지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은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 원산지명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특산품의 질을 보존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원산지명으로 되는 조건)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것이다.

원산지명으로는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자기의 고유한 질적특성을 가지는 특산품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지리적명칭이 된다.

제3조(원산지명등록의 신청원칙)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을 정확히 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원산지명등록의 심의원칙)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는 특산품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원산지명권의 보호원칙)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산지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원산지명사업의 개선강화원칙)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이름난 특산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원산지명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원산지명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제8조(원산지명등록신청의 제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은 원산지명사업의 첫 공정이다.

특산품에 원산지명을 밝히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밝힐 내용)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특산품의 생산지를 밝히며 특산품의 기술기능적특성과 생산방법, 자연지리적요인 같은것을 밝힌 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다른 나라 법인의 원산지명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원산지명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말로 된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가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을 증명하는 문건과 대리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합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의 처리)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결합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안에 결합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2조(원산지명등록신청날자의 인정)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합이 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정해진 기일에 고쳐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3조(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의 발급)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접수증에는 접수날자,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14조(원산지명의 다른 나라에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등록된 원산지명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제15조(원산지명등록신청의 심의기간)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명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보장)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명으로 등록할수 없는 지리적명칭)

원산지명으로 등록할수 없는 지리적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독특한 자연지리적 환경이나 기술기능적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산품이 생산된 곳의 지리적명칭
2.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지리적명칭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양속에 맞지 않는 지리적명칭
4. 상표로 등록되었거나 상표권을 침해할수 있는 지리적명칭
5. 이미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유사한 지리적명칭

제18조(원산지명등록신청서의 심의결과처리)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를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원산지명등록증의 발급과 공보)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원산지명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며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원산지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한 원산지명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부결된 원산지명에 대한 의견처리기간)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이 부결된 경우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결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

제22조(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처리기간)

원산지명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다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제23조(원산지명권보호의 기본요구)

원산지명권의 보호는 원산지명사업의 중요요구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원산지명권의 소유자)

원산지명권은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제25조(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

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원산지명을 사용할 권리 또는 사용을 허가할 권리
2. 원산지명권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와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
3. 등록된 원산지명을 취소할 권리

제26조(원산지명의 보호기간)

원산지명의 보호기간은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원산지명의 사용을 중지한 날까지이다.

제27조(원산지명의 등록변경신청)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의 보호기간안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원산지명등록변경신청서를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변경신청내용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원산지명의 사용허가계약)

원산지명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소유자와 원산지명사용허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보장)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명권소유자는 원산지명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0조(원산지명권의 양도, 변경리용금지)

원산지명권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없으며 등록된 원산지명은 변경시켜 리용할수 없다.

제31조(원산지명권의 취소)

원산지명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취소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2조(원산지명권의 효력상실)

원산지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원산지명을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산지명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3조(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고 인민경제 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원산지명사업의 지도기관)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원산지명지도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원산지명사업의 지도내용)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을 특산품의 내용에 맞게 정확히 제정하며 원산지명의 등록신청, 등록과 변경, 취소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원산지명과 관련한 요금)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과 관련하여 정해진 요금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제때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과 관련한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7조(비법적인 원산지명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원산지명을 제정, 인쇄, 판매하거나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원산지명사업의 감독통제기관)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산지명의 등록신청과 등록,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등록취소, 리용중지)

원산지명의 등록,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의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원산지명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40조(벌금, 손해보상, 몰수)

원산지명권에 따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또는 해당하는 손실을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원산지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분쟁해결)

원산지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1호로 채택

제1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소프트웨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의 등록원칙)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보호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 등록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시기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소프트웨어의 개발장려, 저작권보호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장려하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제4조(외국인의 저작권보호원칙)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처음으로 등록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은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제5조(국가적관심과 투자를 늘일데 대한 원칙)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소프트웨어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도록 한다.

제6조(조약의 효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소프트웨어보호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7조(소프트웨어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

제8조(중요성과 등록기관)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바로하는것은 소프트웨어보호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소프트웨어의 등록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한다.

제9조(등록신청서의 제출과 내용)

소프트웨어를 보호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신청서를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 신청자의 이름과 국적, 주소, 신청날자 같은것을 밝히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 소프트웨어개요,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0조(등록심의기간)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루스검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심의방법)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를 소프트웨어개발자를 확인하고 이미 등록된 소프트웨어와 같거나 유사한것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작한 소프트웨어의 등록심의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가를 료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필요한 자료요구와 보장)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저작권증의 발급)

등록을 승인한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저작권증을 발급한다.

소프트웨어의 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낸다.

제14조(소프트웨어의 등록공개)

등록된 소프트웨어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국가 또는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등록과 관련한 의견제기와 그 처리)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의 보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신청서,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 매체를 정해진 보관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고에는 소프트웨어의 파손,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다른 나라 소프트웨어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소프트웨어는 리용할수 없다.

제18조(소프트웨어등록부의 열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등록기관의 소프트웨어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제3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제19조(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도 저작권자로 된다.

제20조(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발표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에 개발자의 이름을 밝힐수 있는 권리
3. 개발자의 이름, 소프트웨어의 명칭, 내용 같은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할 권리

제21조(인격적권리의 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소프트웨어개발자가 가진다.

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는 양도할수 없다.

제22조(소프트웨어의 재산적권리)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를 복제, 전시, 배포할수 있는 권리
2. 소프트웨어를 개작할수 있는 권리
3. 소프트웨어의 리용을 허가할 권리와 해당한 요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
4. 소프트웨어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수 있는 권리
5.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침해행위로 생긴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제23조(재산적권리의 양도등록)

계약에 따라 재산권을 양도받은자는 소프트웨어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재산권을 양도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개인의 이름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가 소유한다.

여럿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는 개발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25조(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소유)

위탁의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당사자들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소유한다.

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소유와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밝힌다.

제26조(미성인의 소프트웨어저작권소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미성인도 소유할수 있다.

미성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행사는 부모 또는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제27조(소프트웨어저작권이 국가소유로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그가 저작권의 증여의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거나 저작권을 넘겨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을 국가의 소유로 한다.

제4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의 보호

제28조(보호의 일반요구)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보호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저작권의 보호기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인격적권리보호기간은 무기한으로 하며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경우에 따라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수 있다.

제30조(보호기간의 계산)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등록한 날부터 3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양도받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재산적권리보호기간은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남은 기간까지로 한다.

제31조(소프트웨어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리용은 허가받은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료금지불)

소프트웨어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3조(문학예술저작물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학예술저작물을 소프트웨어의 개발, 개작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허가없이 할수 없는 행위)

소프트웨어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소프트웨어를 리용, 복제, 전시, 배포, 개작, 번역, 판매, 방영하는 행위
2.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이름 또는 소프트웨어의 명칭을 변경시키는 행위
3. 소프트웨어를 수출입하는 행위
4.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보호조치를 파괴, 제거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

제35조(허가없이 소프트웨어를 리용할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복제하여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리용할 경우
2. 법기관에서 사건조사에 리용할 경우
3. 무상으로 배포된것을 리용할 경우

제5장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프트웨어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지도기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보호사업체제를 바로세우고 소프트웨어의 등록, 보관,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기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소프트웨어의 등록과 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리기관을 둘수 있다.

대리기관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으로 꾸려야 한다.

제39조(감독통제)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민족의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바이러스의 제작, 복제, 유포행위, 컴퓨터망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파괴, 비법적인 열람행위 같은것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0조(손해보상, 몰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고 비법적으로 얻은 돈과 리용된 소프트웨어를 몰수한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소프트웨어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분쟁해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

주체86(199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체신법의 기본

제1조(체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체신에 대한 소유권)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체신발전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다.

제4조(전기통신능력을 높일데 대한 원칙)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전화통신과 텔렉스, 팩스 같은 전신통신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5조(우편통신의 보장원칙)

우편통신을 보장하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여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6조(방송수요의 보장원칙)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체신시설의 관리원칙)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신속성, 정확성, 비밀의 보장원칙)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체신사업의 정규화, 규범화원칙)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10조(체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기통신

제11조(전기통신보장의 기본요구)

전기통신을 보장하는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

제12조(전기통신계획의 작성과 실행)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신, 전화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13조(전기통신의 자동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이며 현대체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중앙과 도(직할시),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사이의 통신선로를 현대화하며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한 통신선과 전선대 같은 통신시설은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통신시설 운영을 컴퓨터화하고 전화의 질과 봉사성, 전화회선의 리용률을 높이며 전보중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15조(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회선수를 늘이고 새로운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구내전화의 기술지표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와 정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구내전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통신시설과 설비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할 수 없다.

제18조(전기통신수단리용에서 국가기밀루설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 과정에 국가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우편통신

제19조(우편통신의 기본요구)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편지, 전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체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의 배치와 우편업종승인기관)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여야 한다.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우편물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의 기계화, 자동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물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22조(우편통신업무의 정규화, 우편용품의 규격화, 표준화)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3조(우편물의 수송)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 해당 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여 우편물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우편물의 검사, 검역)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우편통신원, 체송승무원의 사업조건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편통신원, 체송승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데는 우편물을 신고부리는 장소와 우편물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

제26조(우편물의 취급)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것을 지켜야 한다.

문건, 신분증명서, 화폐, 량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것은 우편으로 보낼수 없다.

제27조(우편물의 퇴송과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달할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전달할수 없거나 돌려보낼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데 따라 처리한다.

제28조(국제우편통신업무의 당사자)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우편물사고의 책임)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체송,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원인 같은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4장 방송시설운영

제30조(방송시설운영의 기본요구)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안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1조(방송의 출력과 질, 주파수)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

고 주파수를 늘여야 한다.

제32조(새로운 텔레비존방송체계)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텔레비존방송망과 그 증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를 늘이며 텔레비존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텔레비존방송을 할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33조(유선방송시설의 정비, 정해진 방송프로의 증계)

체신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진 기술기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를 증계하며 그 증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4조(경보방송체계와 시험운영)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수 있게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유선방송시설의 설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6조(전파리용의 효과성제고)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세워 전파리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37조(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송신설비의 설치, 운영금지)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송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수 없다.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38조(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지휘통신망의 현대화, 수자식종합통신체계)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전국적인 수자식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40조(우편물취급단위와 취급시설, 통신취급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중요철도역, 항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데는 통신취급실을 설치한다.

제41조(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건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의 생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43조(체신부문의 과학연구사업)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44조(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5조(체신시설물의 건설과 준공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의 립회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수 있다.

제46조(체신시설물의 리용권)

체신시설물의 리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47조(체신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

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 하도록 한다.

제49조(체신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 하여야 한다.

제50조(전파감시와 주파수관리)

체신기관은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와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기고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제1장 전기통신법의 기본

제1조(전기통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지휘통신과 산업통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적수단에 의하여 음성, 영상, 글자, 수자, 기호, 그림 같은 것을 송수신 및 전송하는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망이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송하기 위한 전기통신수단과 체계로 이루어진 망을 말한다.
3. 전기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보장에 리용되는 기계나 장치, 선로 같은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가입자란 전기통신망을 리용하여 전기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제3조(전기통신발전원칙)

전기통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전기통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그 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4조(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시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기통신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에서 신속성, 정확성, 안전성, 봉사성, 문화성, 비밀보장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전기통신분야의 과학연구와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전기통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한다.

제7조(전기통신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기통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기통신시설을 건설 및 관리하거나 전기통신을 보장,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전기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제9조(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0조(전기통신시설건설의 설계작성)

전기통신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은 건설대상과 규모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전기통신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전기통신시설건설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건설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구내전기통신시설을 따로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체신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건설한다.

제12조(설계에 기초한 전기통신시설건설)

전기통신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전기통신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제13조(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건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것을 건설하는 경우 체신기관과 합의하여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검사)

전기통신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전기통신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15조(전기통신시설관리의 담당자)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는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따로 설치한 구내전기통신시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제16조(전기통신시설의 점검)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고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통신시설의 보수)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 정비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나 그밖의 사정으로 전기통신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

전기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시설보호구역안의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전기통신기계실출입금지)

전기통신기계실에는 성원의 다른 인원이 들어갈수 없다.

필요에 따라 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전기통신시설관리조건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시설의 관리를 위한 체신기관, 기업소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3장 전기통신의 보장과 리용

제22조(전기통신의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보장)

전기통신을 제때에 보장하는것은 체신기관, 기업소의 기본임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의 조직과 운영을 바로하여 전기통신을 신속정확하고 안전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전기통신계획의 작성)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늘어나는 전기통신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전기통신의 수요와 질보장)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시설을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전기통신망을 통한 여러가지 봉사)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과학기술보급, 원격교육, 원격의료봉사, 화상회의 같은 여러가지 통신봉사를 할수 있다.

제26조(전기통신리용신청)

전기통신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통신종류에 따르는 리용신

청서를 만들어 체신기관에 내야 한다.

전기통신리용신청과 관련한 절차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7조(전기통신리용신청에 대한 심의)

전기통신리용신청을 받은 체신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8조(명의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가입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에 명의변경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전기통신리용조건보장)

체신기관은 전기통신리용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1개월안으로 통신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전기통신가입자자료의 관리)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가입자자료를 정확히 등록하고 규정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전기통신가입자자료는 승인없이 열람할수 없다.

제31조(전기통신리용질서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과정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전기통신수단에 불건전한 자료를 입력하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32조(전기통신시설, 수단외 비법적인 반입, 매매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전기통신수단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정해진데 따라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비법적으로 전기통신수단을 등록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4조(전기통신요금)

전기통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해당하는 요금을 물어야 한다.

전기통신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5조(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통신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전기통신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통신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전기통신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8조(행정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전기통신시설건설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도로, 공공건물, 살림집 같은것을 건설하면서 전기통신하부구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았거나 망탕 하였을 경우
3. 전기통신관리 및 보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기통신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전기통신리용질서를 어겨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전기통신리용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수단을 파손시켰을 경우
7. 전기통신수단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제39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9호로 채택

제1장 컴퓨터망관리법의 기본

제1조(컴퓨터망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컴퓨터망관리법은 컴퓨터망의 관리운영과 리용, 정보자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화를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컴퓨터망은 컴퓨터 호상간 또는 컴퓨터와 말단장치들을 통신선로로 련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처리하는 체계이다.

컴퓨터망을 이루는 구성요소에는 컴퓨터와 통신선로, 말단장치, 컴퓨터망보안시설, 운영프로그램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컴퓨터망관리체계의 수립원칙)

컴퓨터망관리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컴퓨터망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컴퓨터망관리체계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제4조(컴퓨터망의 가입원칙)

컴퓨터망가입은 컴퓨터망의 리용을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컴퓨터망에 가입할수 있는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컴퓨터망봉사원칙)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정보봉사령역을 계속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제6조(컴퓨터망보안원칙)

컴퓨터망보안은 컴퓨터망의 안전한 운영과 정보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담보

이다.

국가는 컴퓨터망보안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컴퓨터망보안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컴퓨터망관리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컴퓨터망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제8조(컴퓨터망의 분류)

컴퓨터망은 지역적범위와 리용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적인 범위에서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전국망
2. 도, 시, 군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지역망
3. 인민경제부문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부문망
4.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단위를 구성하고 정보통신을 보장하는 컴퓨터국부망

제9조(컴퓨터망구성전망계획의 작성)

중앙체신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국가적인 컴퓨터망구성전망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과학기술발전의 요구, 컴퓨터망보안전략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컴퓨터망구성 및 관리운영의 담당자)

컴퓨터전국망과 컴퓨터지역망은 체신기관이, 컴퓨터국부망과 컴퓨터부문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구성하고 관리운영한다.

제11조(컴퓨터망명역이름의 등록)

컴퓨터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명역이름을 해당 체신기관에 등록하고 IP주소를 할당받아야 한다.

제12조(컴퓨터망명역이름, IP주소의 변경)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칭이 달라졌거나 위치를 옮겼을 경우 해당 체신기관에 컴퓨터망명역이름을 변경등록하고 IP주소를 다시 할당받아야 한다.

제13조(컴퓨터망접속승인 및 설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전국망에 접속하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컴퓨터와 말단장치, 경로기의 설치위치, 유일식별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컴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운영실의 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성원의 다른 인원을 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보내려 할 경우에는 기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컴퓨터망의 정상운영보장)

통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정보통신보장중에 있는 경로기, 교환기, 봉사기 같은 컴퓨터망설비는 중앙통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운영을 중지시킬수 없다.

제16조(통신료금)

컴퓨터전국망을 리용하여 정보통신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통신료금을 물어야 한다.

통신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컴퓨터망의 가입

제17조(컴퓨터망가입의 기본요구)

컴퓨터망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컴퓨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컴퓨터망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컴퓨터망을 리용할수 없다.

제18조(컴퓨터망가입의 승인기관)

컴퓨터전국망가입승인은 중앙통신지도기관이, 지역망가입승인은 해당 지역체신기관이, 국부망, 부문망가입승인은 그 관리운영기관이 한다.

제19조(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의 제기)

컴퓨터망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컴퓨터망가입신청자의 이름, 주소, 소속관계, 컴퓨터망가입종류, 선로리용조건, 컴퓨터망령역이름,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정형, 전자증명서소지정형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0조(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의 심의기간)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접수한 기관은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컴퓨터망가입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심의조건보장)

컴퓨터망가입신청문건을 심의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확인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

장하여야 한다.

제22조(컴퓨터망이용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가입이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컴퓨터망을 리용할수 있는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통신설비의 등록, 전자증명서의 발급)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에 가입할수 없다.

컴퓨터와 기타 정보통신설비의 등록은 전파감독기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전자인증기관이 한다.

제4장 컴퓨터망정보봉사

제24조(컴퓨터망정보봉사의 기본요구)

컴퓨터망정보봉사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컴퓨터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 교환,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봉사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한다.

제25조(컴퓨터망정보봉사의 승인신청)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정보봉사승인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컴퓨터망정보봉사의 목적과 업종, 지표, 조건 같은것을 밝히며 컴퓨터망봉사체제설계문건, 컴퓨터망보안심의문건, 운영소프트웨어의 품질검사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컴퓨터망정보봉사승인신청문건의 심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정보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으로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정형을 신청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컴퓨터망정보봉사의 업종준수)

컴퓨터망봉사에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실시간대화, 전자도서관, 원격교육봉사 같은것이 속한다.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컴퓨터망정보봉사의 변경, 중지)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의 업종과 지표를 변경하거나 정보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정보자료의 보급)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정보봉사설비와 조건을 갖추고 인민경제의 정보화와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컴퓨터망정보봉사설비의 정상운영)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컴퓨터망에 대한 불법침입과 컴퓨터바이러스전파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31조(컴퓨터망정보봉사설비의 운영상태기록)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설비의 운영상태를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컴퓨터망봉사설비운영상태를 기록한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한다.

제32조(컴퓨터망을 통하여 주고받을수 없는 자료)

컴퓨터망정보봉사를 하거나 컴퓨터망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비밀에 속하거나 기타 불건전한 자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제33조(봉사로금)

컴퓨터망정보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보봉사를 해준데 대한 요금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컴퓨터망정보봉사로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5장 컴퓨터망보안

제34조(컴퓨터망보안체계의 수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컴퓨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세우지 않고서는 컴퓨터망을 운영할수 없다.

제35조(컴퓨터망보안기준의 준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기준의 요구에 맞게 신분확인기능, 접근통제기능, 자료확인기능, 사건기록 및 추적기능, 보안관리기능 같은 보안기능을 원만히 갖춘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세워야 한다.

컴퓨터망보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제36조(컴퓨터망보안체제심의신청)

컴퓨터망보안체제는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37조(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8조(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방법)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는 신청한 문건에 대한 검토와 컴퓨터망체계상에서 보안기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제39조(컴퓨터망보안체계의 갱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체계를 갱신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재심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컴퓨터망보안기술연구개발 및 도입)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보안과 관련한 새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41조(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의 리용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새로 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컴퓨터망보안프로그램은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제42조(심의과정에 알게 된 비밀준수)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성원은 컴퓨터망보안체계심의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컴퓨터망보안체계의 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보안체계를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며 그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컴퓨터망보안체계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문건은 기요문건취급절차에 따라 보관취급한다.

제44조(비정상적인 현상에 대한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에 불법침입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정보산업발전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컴퓨터망관리사업의 지도기관)

컴퓨터망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컴퓨터망의 구성과 운영, 컴퓨터정보봉사, 컴퓨터망보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 재정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감독통제)

컴퓨터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중앙소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컴퓨터망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컴퓨터망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8호로 채택

제1장 전자인증법의 기본

제1조(전자인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자인증법은 전자인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컴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정보화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증이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자의 신분, 전자거래의 정확성 같은것을 전자적으로 확인하는것을 말한다.
2. 전자거래란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 처리, 전송 또는 보관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가입자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의 서명자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검증할수 있도록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된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6. 전자인증열쇠란 신분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을 만드는데 리용하는 정보 또는 장치를 말한다.
7. 전자증명서란 가입자의 신분이나 자격 같은것을 증명하는 전자적정보를 말한다.
8. 전자인증기관이란 전자인증봉사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증체계의 수립원칙)

전자인증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컴퓨터망과 전자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국가적인 전자인증체계를 통일적으로 세우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전자인증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자인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법의 적용)

이 법은 컴퓨터망, 전자거래체계를 관리운영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리용하는 국제기구, 다른 나라의 단체, 기업, 국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인증대상과 방법

제7조(전자인증대상)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서 전자인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의 신분, 자격
2.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
3.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내용의 정확성
4. 기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 대상

제8조(전자인증등급의 구분)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눈다. 전자인증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9조(전자인증등급의 제정기관)

전자인증등급은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그러나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여야 할 부문의 전자인증대상에 대한 등급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등급을 바로 정하고 전자인증사업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의 발급)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에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자인증기관에 신분이나 자격,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유일식별정보 같은것을 등록하고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와 전자증명서발급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11조(전자인증열쇠의 관리)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를 정해진 질서대로 안전하게 보관리용하며 그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전자인증열쇠를 분실당하였거나 로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폐기)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전자인증기관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의 사용중지, 회복 및 폐기를 요구할수 있다.

퇴직 또는 조동 같은 이유로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제때에 전자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가입자신분 및 컴퓨터실체의 인증방법)

가입자의 신분인증, 컴퓨터를 비롯한 말단장치의 실체인증은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전자인증열쇠의 소유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열쇠의 비밀을 로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14조(전자문서의 인증방법)

전자문서를 작성하였거나 승인한 가입자는 전자인증열쇠로 전자문서에 서명한 다음 전자증명서와 함께 발송한다.

전자문서를 접수한 가입자는 발송자가 보낸 전자증명서를 리용하여 해당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내용에 대한 서명자의 승인을 확인한다.

제15조(전자사본의 효력)

종이문서를 전자사본하는 방법으로 입력된 전자문서는 사본자, 사본날자, 원본과의 동일성을 전자서명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전자거래의 증빙문서로 리용할수 있다.

제16조(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에 도장을 찍거나 수표한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서명에 리용되는 전자인증열쇠가 서명당시 서명자의 유일한 소유로서 서명자에 의해서만 리용되고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에 서명한 후 그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제17조(보관된 전자문서의 효력)

가입자가 보관한 전자문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종이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전자문서내용을 열람, 검색할수 있어야 한다.
2. 전자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재현할수 있어야 한다.
3. 전자문서의 작성자와 송수신자, 시간, 장소 같은것을 식별할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전자인증수단의 리용승인, 규격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자인증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장치수단을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하였을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거나 보급, 리용하여야 한다.

전자인증과 관련한 규격을 제정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19조(컴퓨터망, 전자거래체계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려 할 경우 전자인증

을 비롯한 보안대책을 세운 다음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인증비용료금)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가입자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전자인증기관

제21조(전자인증봉사신청)

전자인증봉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물질기술적조전을 갖추고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인증봉사신청의 심의)

전자인증봉사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가를 따져보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전자인증봉사의 내용과 범위를 밝힌 전자인증봉사허가증을 발급한다.

제23조(전자인증기관의 자격)

전자인증봉사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자인증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것과 같은 전자인증봉사를 할수 있다.

제24조(전자인증업무준칙의 작성 및 등록)

전자인증기관은 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전자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전자인증봉사의 안전성보장)

전자인증기관은 봉사와 관련한 업무사항을 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전자인증봉사를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6조(전자인증봉사의 중지)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려 할 경우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증봉사를 중지하기 30일전에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자인증봉사의 위임)

전자인증기관은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자인증봉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임할수 있다.

전자인증봉사를 위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전자인증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의 보관관리)

전자인증기관은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정해진 기간까지 안전하게 보관관

리하여야 한다.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는 변경, 삭제하거나 루설할수 없다.

전자인증기관에 보관된 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열람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장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9조(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지도)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은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며 전자인증사업을 표준화, 규격화하고 전자인증체계의 부문구조와 전자인증기능을 더욱 완비해나가야 한다.

제30조(전자인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자인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자인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보상)

전자인증기관은 전자인증봉사과정에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전자거래업무자료를 류실, 파피시켜 가입자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제3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전자인증열쇠, 전자증명서를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가입자가 허위로 발급 받았을 경우
2. 비법적으로 전자인증열쇠의 사용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다른 가입자의 전자인증열쇠를 도용하였을 경우
3. 전자증명서에 기입된 내용이 달라진 후에도 재발급받지 않고 그대로 리용하였을 경우
4. 전자인증질서를 지키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새로 개발하였거나 갱신한 전자인증관련 프로그램과 장치수단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 보급, 리용하였을 경우
6. 승인없이 컴퓨터망이나 전자거래체계를 운영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전자인증봉사를 하였거나 중지하였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자인증봉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8. 전자인증업무준칙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9. 전자인증봉사기록내용과 가입자정보를 변경, 삭제하였거나 루설시켰을 경우

제3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

주체95(2006)년 8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40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전파관리법의 기본

제1조(전파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파관리법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파장애를 없애고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전파설비의 등록원칙)

전파설비의 등록은 무선통신설비, 방송설비, 특수전자설비 같은 전파설비를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리용하려는 전파설비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한다.

제3조(전파설비의 리용원칙)

전파설비를 바로 리용하는것은 주파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국가는 전파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파관리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제5조(전파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파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6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영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표부, 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7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전파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전파설비의 등록

제8조(전파설비등록의 기본요구)

전파설비를 등록하는것은 전파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등록하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따로 정한 전파설비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제9조(전파설비의 등록신청)

전파설비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내야한다.

전파설비등록신청서에는 리용자의 이름, 주소, 품명, 용도, 구입경로, 리용하려는 주파수, 출력, 통신시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0조(등록신청의 처리)

전파설비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전파감독기관은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파설비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전파설비의 기술검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또는 수입한 전파설비에 대하여 전파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은 전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12조(전파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하거나 설치, 구조변경, 이관, 폐기하거나 전파설비의 설치장소를 옮기려 할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전파설비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정용 전파설비를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고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동용전파설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파설비의 등록, 검사료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를 등록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았을 경우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장 전파설비의 리용

제15조(전파설비리용의 기본요구)

전파설비의 리용은 전파를 통하여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에 전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설비의 리용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6조(주파수의 사용)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에서 할당한 주파수, 호출부호, 통신시간을 지켜야 한다.

할당받은 주파수, 호출부호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17조(무선통신의 대상)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상과만 하여야 한다.

조난, 자연재해, 해적행위 같은 비상정황을 알리는 무선통신은 승인없이 할수 있다.

제18조(통신망의 리용)

무선통신망, 위성통신망을 구성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이동용 방송설비의 리용)

이동용 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감독기관이 승인한 주파수, 출력, 봉사구역, 사용전기마당세기 같은 기술기준한계를 지켜야 한다.

제20조(제압방송설비의 리용)

제압방송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가동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설비의 가동지령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21조(시험전파의 발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파설비의 정상상태를 검사하거나 시험전파를 내보낼수 있다. 이 경우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고주파설비의 리용)

고주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한도에서 장애전파가 발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애전파발사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고주파설비는 리용할수 없다.

제23조(컴퓨터의 보안조치)

컴퓨터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를 통하여 비밀자료가 루설되지 않도록 해당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전파설비리용문건의 구비)

전파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문건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문건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제25조(무선통신일군)

무선통신은 무전수자격을 가진 전임무전수 또는 무선통신담당 일군이 한다.

무전수의 자격판정은 비상설무전수자격심사위원회가 한다.

제26조(무선통신의 안전보장)

무선통신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선통신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무선통신의 안전보장사업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7조(방송설비의 조작)

방송설비의 조작은 해당 자격을 가진 무선공이 한다.

해당 자격이 없는자는 방송설비를 조작할수 없다.

제4장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8조(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무선통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9조(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전파감독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0조(주파수의 조정)

국가는 전국적인 주파수조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비상설로 주파수조정위원회를 둔다.

주파수조정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리용하는 주파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제31조(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전파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파설비의 등록과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요구)

전파감독기관은 전파관리와 관련한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파감독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벌금적용, 전파설비의 몰수)

전파설비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리용이 금지된 전파설비를 수입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제34조(전파설비리용의 중지)

정해진 주파수, 출력, 호출부호 같은 제원을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전파설비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35조(해당한 자격의 박탈)

정해진 무선통신안전보장질서를 어기고 무선통신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자격을 박탈한다.

제36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전파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교육, 문화, 체육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주체88(1999)년 7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7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82호로 수정보충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1조(교육법의 사명)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 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구현원칙)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4조(교육과 실천의 결합원칙)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 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5조(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원칙)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기본형태이다.

국가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한다.

제6조(수재 교육원칙)

수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수재 교육체계를 바로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교육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온 사회의 인테리화원칙)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교육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 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제9조(교육과학연구사업원칙)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교육이론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10조(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옹호원칙)

국가는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

제11조(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제12조(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 무료교육의 권리)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것은 온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

공민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다.

제14조(학령어린이의 취학의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 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5조(주민지역과 떨어져있는 지역의 어린이, 장애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 롱아 같은 장애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무료교육의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7조(장학금)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롱아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군관복무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학생,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준다.

제18조(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장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 무의무략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19조(교육기관, 교육일군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이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교육기관을 내오고 교육사업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교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20조(교육기관의 구분)

교육기관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것이 속한다.

제21조(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군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2조(교육기관의 배치)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지역에는 교육기관을 배치할수 없다.

제23조(교육기관의 운영비용)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교육기관은 재정에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일군과 그 자격)

교육일군에는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6조(교수사업)

교원은 교수사업을 직접 맡아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수 있다.

제27조(교육일군의 임무)

교육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28조(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본요구)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9조(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 예능교육)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부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

제30조(교수교양방법)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높은 교육단계에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교육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강령의 구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강령에 반영한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제33조(교육강령의 작성)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의 전문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교칠수 없다.

제35조(교수안작성)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협의를 거쳐 완성한다.

제36조(교육강령의 집행)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37조(교육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재정은행기관은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39조(학교건설과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1조(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특화물의 보장)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특화물 같은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도서출판용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43조(교육기관과 봉사시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어야 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후방기지도 정해줄수 있다.

제44조(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할수 있다.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6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일군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의 보장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양성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학생모집)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모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부문의 학생 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

제49조(사회교육에 대한 지도)

지방정권기관은 사회교육시설과 청소년과외교양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가정의 교육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교육후원기금의 설립)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후원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교육후원기금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외동포, 국제기구, 다른 나라 자선단체들이 보내온 협조자금, 자선자금과 물자 같은것으로 적립하여 리용한다.

제51조(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6호로 채택

제1장 고등교육법의 기본

제1조(고등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과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고등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육성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체제를 더욱 개선완비하고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제3조(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원칙)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을 바로하는것은 고등교육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자, 전문가양성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제4조(고등교육일군대렬강화원칙)

고등교육일군은 고등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일군양성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일군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교육일군대렬을 학위, 학직소유자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한다.

제5조(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원칙)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교수교양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제6조(고등교육사업조건보장원칙)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고등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고등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고등교육의 실시

제8조(고등교육체계의 구분)

고등교육체계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있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다 같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9조(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는 나이)

중등일반교육을 받은 16살이상의 공민은 재능과 희망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없이 고등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제10조(무료교육의 실시)

국가는 고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전학, 답사와 관련한 모든 고등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1조(고등교육의 구분)

고등교육은 교육의 목적과 수준에 따라 전문학교교육, 대학교육으로 나눈다.

대학교육에는 본과교육, 박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이 속한다.

제12조(전문학교교육)

전문학교교육은 중등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으로서 대학교육보다 낮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전문학교교육년한은 2~3년이다.

제13조(대학본과교육)

대학본과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대학교육년한은 3~6년이다.

제14조(박사원교육)

박사원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서 본과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박사원교육년한은 2~4년이다.

제15조(과학연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은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박사원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과학연구원교육년한은 3~5년이다.

제3장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제16조(고등교육기관의 구분)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전문학교, 대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속한다.

내각과 고등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학교의 조직)

전문학교는 중등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적수요를 보장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전문학교를 나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의 합의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8조(대학의 조직)

대학은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수요를 고려하여 종합대학과 부문종합대학, 부문별대학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대학을 나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박사원의 조직)

교육 및 과학후비를 비롯한 한급 높은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대학 또는 과학연구기관에 박사원을 조직할수 있다.

박사원을 나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과학연구원의 조직)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대학에 과학연구원을 조직할수 있다.

과학연구원을 나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사, 기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조직할수 있다.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나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고등교육기관의 명칭)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제23조(학생 모집)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은 해당 교육을 받은 공민가운데서 실력과 품행이 우수한 대상들로 선발하여 모집한다.

학생모집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4조(입학)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시험조직을 바로하여 지덕체를 겸비하고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학교에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제때에 등교시켜야 한다.

입학시험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5조(학부, 강좌의 설치)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의 사명과 규모에 따라 학부, 강좌를 둘수 있다.

학부, 강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6조(통신학부 및 학과 설치)

고등교육기관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주간학부 및 학과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통신학부 및 학과를 두고 현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신교육을 줄수 있다.

제27조(고등교육사업을 위한 부속시설의 설치)

고등교육기관은 도서관, 출판사, 실습장, 박물관, 연구소, 중간시험공장, 인쇄실, 부속학교 같은것을 실정에 맞게 두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고등교육일군과 학생

제28조(고등교육일군의 구분)

고등교육일군에는 학생들의 교수교양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고등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9조(교원의 양성)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통하여 양성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제30조(교원의 자격)

교원은 국가의 교육정책, 전공부문의 과학과 기술, 교육리론과 방법에 정통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녀야 한다.

교원의 자격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준다.

교원은 전공분야의 학위를 소유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의 자격급수)

교원자격급수는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1급과 2급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비상설급수사정위원회가 그밖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재교육)

교원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공분야별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3조(교원의 임무)

교원은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리론수준,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여 교수사업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원은 책임교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과학연구과제와 교과서, 참고서집필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학생의 임무)

학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2.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한다.
3. 과정안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교수와 시험, 실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준칙과 내부질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제35조(졸업증서)

전문학교교육, 대학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학적 전 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36조(장학금)

학생에게는 정해진데 따라 장학금을 주며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준다.

제5장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의 조직

제37조(교육강령의 작성)

교육강령은 고등교육기관이 작성한다.

작성한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교육강령은 승인없이 교칠수 없다.

제38조(교육강령의 집행)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39조(학제, 전공학과지표의 준수)

고등교육기관은 정해진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대학의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는 내각이, 전문학교의 학제와 학과지표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학제와 학과지표는 해당기관이 정한다.

제40조(교육내용의 구성)

고등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며 전문분야의 과학기술기초교육을 충분히 주는 기초우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사고능력, 연구능력,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41조(교수교양방법)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똑똑히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자립성과 창의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며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제42조(수재교육)

고등교육기관은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천성적으로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재교육을 줄수 있다.

수재교육은 수재반 또는 수재학급을 따로 조직하여준다.

제43조(학생과학연구소조의 운영)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학생과학연구소조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학생과학연구소조에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고 과학적탐구력과 재능이 있는 수재형의 학생들을 망라시킨다.

제44조(초빙강의)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일군들을 초빙하여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새로운 과학리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유능한 교수,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출연시킬수 있다.

제45조(실습, 견학, 답사조직)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실습, 견학, 답사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46조(류학생 교류)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문화교류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에 류학생을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의 류학생을 받을수 있다.

제47조(교수교양의 정보화)

고등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먼거리교육을 장려한다.

제48조(학생의 실력평가)

고등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 교양)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을 지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50조(과학연구사업의 조직)

고등교육기관은 교수교양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이론실천적문제를 풀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51조(과학연구사업의 담당자)

과학연구사업의 담당자는 교원, 연구사이다.

고등교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과제를 바로 선정하고 교원, 연구사에게 정확히 분담하며 그것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는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52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적문제해결)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현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 경우 유능한 교원, 연구사와 재능있는 학생들을 현장에 파견할수 있다.

제6장 고등교육사업의 조건보장

제53조(고등교육사업조건의 계획적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고등교육부문의 재정예산)

재정은행기관은 고등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자금은 다른 사업에 류용할수 없다.

제55조(학교건설과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56조(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교과서,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의 보장)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물 같은것을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58조(실습, 견학, 답사조건의 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봉사시설)

고등교육기관은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숙사와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0조(후방사업)

고등교육기관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에게 필요한 후방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1조(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와 조건보장을 위한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고등교육기관과 정상적인 령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62조(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교사와 기숙사, 실습지 같은 교육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63조(교원에 대한 우대)

국가는 교원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제7장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4조(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고등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실속있게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과학연구사업)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과학연구기관은 고등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고등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제66조(고등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7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2. 학생모집 및 입학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에 대한 자격급수사정과 학위, 학직수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학생의 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장학급수여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7.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거나 낭비하였을 경우
8. 고등교육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이밖에 고등교육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68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67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주제 100(2011)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로 채택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제1조(보통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 데 이바지한다.

제2조(보통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보통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4조(교육교양조건의 보장원칙)

학생들의 교육교양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학생도서관, 소년단야영소, 유치원 같은 교육교양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도록 한다.

제5조(교원양성원칙)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사범교육체제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교육부문의 유능한 교원들을 전망성 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6조(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보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보통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통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단계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보통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제9조(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은 누구나 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부시킨다.

제10조(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한다.

제11조(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이다.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없이 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제12조(학령어린이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장애를 받는 어린이는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수 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제13조(무료교육)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4조(장학금)

국가는 맹,聋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제15조(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보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맹,聋아 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

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제16조(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같은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때에 출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교원, 학생에게는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보통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기준의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바로하는것은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4년제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6년제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
4. 장애인교육을 위한 맹,聋아학교
5.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제20조(학교의 배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계획, 학생수와 통학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교건설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맡아 우선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 운동장, 수영장 같은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1조(학교의 명칭)

소학교와 중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맹,聋아학교, 학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학교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소학교, 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중학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과 도에 제1중학교를 내오고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주어야 한다.

제1중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학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학원을 내오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원관리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원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5조(맹,聋아학교의 운영)

맹,聋아학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하는데 따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보통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학교건물과 구획, 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사와 실험실, 실습지 같은것을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제27조(보통교육일군의 구분)

보통교육일군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보통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8조(교원양성)

국가는 중앙과 도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내오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범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졸업후배치)

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사범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배치는 중앙교육지도기

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0조(교원의 자격)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준다.

교원은 높은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자격급수)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급수는 교종별로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판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교원자격급수판정을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교원급수사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자격급수사정절차와 방법, 평가기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재교육강습)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종별, 과목별로 단기강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제33조(교수능력제고)

보통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교원의 책임과 역할)

교원은 앞날의 역군을 키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지니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도록 한다.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35조(교육교양사업의 개선요구)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보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보통교육기관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제36조(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보통교육기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교육강령에 따라 교육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강령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37조(학급편성)

보통교육기관은 일정한 수와 비율의 남녀학생들로 학급을 편성하고 학급단위로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교양을 받는다.

제38조(학급담임제, 학과목담당제의 실시)

보통교육기관은 교육단계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학급담임제와 학과목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급담임제로, 중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과목담당제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9조(분과의 조직)

보통교육기관은 교원의 자질과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하기 위한 분과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소학교에는 학년을 단위로 하는 학년분과를, 중학교에는 학과목별로 학과목분과를 둔다.

제40조(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국어문학, 력사, 지리 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제41조(교육교양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교육강령의 의무적인 집행)

보통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학생들이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들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43조(학생의 실력평가)

보통교육기관은 실력평가를 위한 시험을 정해진데 따라 실속있게 조직하며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소화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 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조직을 무질서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수재교육)

보통교육기관은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주어 그들이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실력이 특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년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졸업시키거나 해당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시킬수 있다.

제45조(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국가는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을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이있고 다방면적인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청년동맹조직, 학부형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도덕과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교육과학연구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보통교육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재정은행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50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강화)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증시기품을 철저히 세우고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배치 및 건설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거나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교사와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배치사업을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학생들을 승인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6. 시험조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교과서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출판, 인쇄하여 상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9.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주체 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7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어린이의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원칙)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어린이양육에서 부모의 자유보장원칙)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어린이보육교양법의 혁명전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어린이보육교양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학령전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육교양하는 제도와 질서를 규제한다.

제6조(어린이보육교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7조(어린이에 대한 배려의 증대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

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양하는 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한다.

제9조(망명자의 자녀양육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어린이에 대한 정의)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어난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어린이보육교양에서 주체사상의 요구관철)

국가는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어린이보육교양조건보장)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탁아소, 유치원의 건설과 비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같은것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4조(아동공원과 놀이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15조(어린이식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어린이식료품)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 고기, 알, 과일, 남새와 당과류 같은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어린이용품)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의 양육)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는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보호)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어머니의 보호)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젓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로동시간을 줄이고 그들에게 응급 생활비를 준다.

제21조(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의 보호)

국가는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3명이상의 쌍둥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정한 기간 옷과 포단, 젓제품 같은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22조(어린이양육의 기본요구)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어린이의 생활환경)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하며 공기, 햇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

제24조(주식과 새참)

탁아소와 유치원은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여야 한다.

제25조(의료봉사)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 료기관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아동병동)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어린이료양)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어린이의 건강과 발육)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어린이교육교양의 기본요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위 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교육 교양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계급교양)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

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집단주의교양)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로동을 사랑할데 대한 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3조(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할데 대한 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4조(도덕교양)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이례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35조(지능교육)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주어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36조(학교전의무교육)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는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같은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어린이교양의 형식과 방법)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제5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보육원, 교양원

제38조(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어린이들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건장하며 지능이 발달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미래의 역군으로 키우는 기관이다.

제39조(어린이보육교양기관의 분류)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의 기간에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

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0조(탁아소, 유치원의 배치)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여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와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제41조(보육원과 교양원)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보육원, 교양원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일군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42조(보육원, 교양원의 품모)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북,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제43조(보육원, 교양원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4조(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의 자격)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어린이보육교양기관 일군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45조(혁명가적품성의 소유)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46조(어린이를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울 의무)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어린이보육교양강령과 탁아소, 유치원사업규범을 만들며 보육교양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한다.
2.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보육원, 교양원의 양성과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4. 어린이보육교양사업과 관련한 기술방법적인 지도를 한다.

제49조(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조직지도한다.

1.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해당 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도록 한다.
2.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의료봉사를 주기 위한 사업을 한다.
3.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하고 보육교양설비를 갖추며 식료품을 비롯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

제50조(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방법)

국가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한다.

제51조(어린이보육교양사업의 정규화, 규범화)

탁아소와 유치원은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보육원, 교양원의 양성)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과학연구사업, 문예작품창작)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문예기관은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같은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제54조(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한다.

제55조(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같은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사회협동단체에 의한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보장)

사회협동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은 닭, 염소, 젖소 같은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육아원, 애육원의 어린이보육교양)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통제사업은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어린이보육교양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

주체87(1998)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제1장 도서관법의 기본

제1조(도서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관법은 출판물의 수집과 서고관리, 도서관리용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의 정규화, 규범화원칙)

도서관은 인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여주는 인민학습의 중요거점이다.

국가는 도서관망을 더 잘 형성하고 도서관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3조(출판물의 수집원칙)

출판물의 수집을 잘하는것은 도서관의 장서를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체계를 세우고 출판물수집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4조(서고관리원칙)

서고관리는 출판물을 보관하고 원상대로 유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서고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5조(도서관리용원칙)

도서관리용조직을 바로하는것은 사회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의 리용률을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

제6조(도서관일군의 지위와 역할)

도서관일군은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보급자, 사회적학습의 조직자이다.

국가는 도서관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제7조(도서관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서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도서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서관실운영도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출판물의 수집

제9조(출판물수집의 기본요구)

출판물의 수집은 도서관운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출판물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집하며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물수집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도서관은 도서관의 사명과 규모에 맞게 출판물수집계획을 세워야 한다.

출판물수집계획은 장서편성기준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제11조(출판물의 주문예약)

도서관은 출판물보급기관과 주문예약을 바로하고 도서,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을 제때에 수집하여야 한다.

중요하거나 가치있는 출판물은 먼저 수집하여야 한다.

제12조(출판물수집방법)

출판물은 기증, 납본, 구매, 복사 같은 방법으로도 수집한다.

개별적공민으로부터 출판물을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준다.

제13조(외국출판물의 수집)

출판물수집은 다른 나라와 호상 교환을 통하여 할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4조(출판물의 등록)

도서관은 수집한 출판물의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출판물등록대장을 만들고 수집한 출판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재등록은 상급기관의 승인밑에서만 할수 있다.

제15조(출판물의 분류)

등록한 출판물은 정해진 분류표와 자모순기호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분류한 도서의 정해진 자리에는 도서기호를 쓰고 도서기호표를 붙인다.

제16조(축소필림과 록음물, 록화물수집)

도서관은 열람, 대출자의 학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축소필림과 록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도 수집하여야 한다.

제3장 서고관리

제17조(서고관리의 기본요구)

서고관리를 잘하는것은 출판물의 손상을 막고 그 이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선결 조건이다.

도서관은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서고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출판물 기타 자료의 보관)

출판물은 내용과 성격, 형태 같은것에 따라 구분하여 서로 다른 서고에 보관한다. 축소필림과 특음물, 록화물 같은 자료는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한다.

제19조(출판물의 보관조건)

도서관은 서고에 난방시설과 조명,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고의 온도와 습도는 정해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출판물의 소득)

도서관은 광선, 유해곤충 같은것에 의하여 출판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광선막이대 책을 세우고 출판물에 대한 소득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화재사고의 방지)

도서관은 화기수감장치, 자동소화장치를 비롯한 방화기재를 갖추며 화재사고요소를 제때에 없애야 한다.

서고에는 인화성물질을 보관할수 없다.

제22조(낡은 책의 수리)

도서관은 낡아진 책을 제때에 수리하며 신문, 잡지합본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출판물의 제적)

쓸모가 없는 출판물은 제적한다. 출판물의 제적은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제24조(서고의 출입)

도서관은 서고출입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승인없이 서고에 출입할수 없다.

제25조(출판물의 실사)

도서관은 서고에 보관된 출판물의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실사과정에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4장 도서관리용

제26조(열람, 대출자의 편의도모)

도서관리용은 열람, 대출자의 학습조건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실을 알뜰히 꾸리고 열람, 대출자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제27조(도서관의 일보는 날자)

도서관은 일보는 날자,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승인없이 일보는 날자, 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제28조(도서관의 리용방법)

도서관에 보관된 출판물의 리용은 열람, 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출판물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 대출)

열람, 대출신청을 받은 도서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출판물을 제때에 내주어야 한다.

대출하는 출판물은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열람, 대출한 출판물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히 다루며 그것을 어지럽히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열람하는 출판물은 열람실밖으로 내갈수 없다.

제31조(통신대출, 이동문고)

도서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요구에 따라 통신대출, 이동문고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통신대출비용은 대출을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담한다.

제32조(호상대출, 국제대출)

열람, 대출을 요구하는 출판물이 없을 경우에는 호상대출이나 국제대출을 조직할수 있다.

출판물의 국제대출은 정해진 도서관이 한다.

제33조(출판물의 반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도서관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정확히 받아들여야 한다.

제34조(출판물리용의 실효)

도서관은 열람, 대출자의 학습열의를 높여주며 출판물리용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열람, 대출자의 수준에 맞게 감상문쓰기, 읽은책발표모임 같은 여러가지 실효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35조(출판물의 소개)

도서관은 출판물소개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출판물소개사업은 도서전시, 새책소개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36조(과학기술보급)

도서관은 실정에 맞게 과학기술자료통보, 새 기술통보강의, 과학리론강의, 과학

강연 같은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의와 강연은 해당 전문가를 준비시켜 할수 있다.

제37조(출판물소개자료의 편집발행)

도서관은 문헌소개목록, 자료소개색인, 해제자료, 문헌개관 같은 출판물소개자료를 편집발행하여 열람, 대출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열람, 대출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때에 조사해주어야 한다.

제38조(도서관의 건물, 시설물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서관의 건물과 시설을 소중히 다루며 그것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도서관부문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도서관운영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40조(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

도서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서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도서관부문의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도서관운영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2조(도서관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도서관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비품,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서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서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서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손해보상, 리용중지)

열람, 대출한 출판물을 분실하였거나 손상시켰거나 도서관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도서관리용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4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서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주체83(1994)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5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문화유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문화유물의 종류)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같은 역사유물이 속한다.

제3조(문화유물의 소유권)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역사유물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제4조(문화유물보호관리의 기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개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늘여 민족의 유산인 문화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5조(문화유물을 역사적사실과 현실에 맞게 복구개건하고 보호관리할데 대한 원칙)

문화유물을 보호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역사적사실과 발전하

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복구개선하고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전국가적, 전사회적문화유물보호관리원칙)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제7조(문화유물의 리용원칙)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제8조(문화유물보호관리의 과학화원칙)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문화유물발굴, 수집의 계획화)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유물의 발굴기관과 발굴승인)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문화유물을 발굴할수 없다.

제12조(문화유물발굴승인절차)

문화유물을 발굴하려는 기관은 해당 발굴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화유물의 발굴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유물의 발굴방법)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문화유물발굴자료 및 발굴한 문화유물의 이관)

문화유물을 발굴한 기관은 문화유물발굴보고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작성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발굴한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5조(문화유물발견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문화유물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물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수 없다.

제16조(역사유물의 수집)

역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역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제17조(수매 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의 처리)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 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8조(문화유물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것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문화유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한다.

문화유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역사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0조(문화유물의 평가신청)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문화유물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물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시기, 현 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와 위치지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문화유물의 심의평가방법)

문화유물평가신청을 받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역사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물의 역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것을 역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은 역사적의의와 조형예술적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보존문화유물로 평가한다.

제22조 (문화유물의 등록)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물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물의 등록번호, 이름, 등록일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보존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제23조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의 기록)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문화유물을 등록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문화유물의 이관, 이름의 정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5조 (문화유물의 과학기술적인 보존관리)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문화유물보존관리의 담당자)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 (역사유적보호구역)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은 역사유적보존관리와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8조 (역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역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제때에 철수시켜야 한다.

농경지가 역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29조(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쓰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제30조(력사유적표식주, 설명문판의 설치)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문화유물의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제31조(문화유물의 보수, 수복, 소독)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제32조(문화유물보존에서 온도와 습도보장, 사고방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33조(력사유적의 리용)

력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력사유적리용자의 의무)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5조(력사유물의 보관, 모조품의 리용)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문화유물의 촬영, 벽화무덤의 참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건설대상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나쁜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상을 배치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38조(역사유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역사유물은 팔고 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의 영구보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제40조(전형적인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역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

제41조(역사유적의 형성안)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역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형성안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2조(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역사유적복구개건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43조(역사유적복구개건대상의 계획화)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대상을 기본건설계획 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44조(역사유적복구개건의 질과 준공검사)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역사유적의 이설)

역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역사유물의 복원)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수 있다.
역사유물의 복원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제6장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문화유물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8조(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문화유물보존관리분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50조(박물관,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 민속촌건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에 박물관, 역사교양마당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공원이나 민속촌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 민속촌을 꾸리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문화유물보호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של수 없다.

제52조(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 성과도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53조(문화유물을 통한 교양)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옹계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54조(문화유물애호월간)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물애호월간으로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문화유물애호월간에 문화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55조(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

국가는 문화유물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를 둔다.

비상설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와 각급 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는 문화유물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각급 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해당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7조(원상복구, 손해보상)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8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문화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2.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철수하지 않았거나 문화유물보호에 나쁜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건설대상을 배치하여 문화유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4. 문화유물을 팔고 사거나 거간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문화유물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6. 발견한 역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7. 제29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9조(형사적책임)

제5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주체84(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7(2008)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큰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한 교양사업강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보존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 같은데 전적으로 리용되고있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어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제4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제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더 많이 찾아내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대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대중적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9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제10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승지의 지형도와 천연기념물의 위치도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제11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위치
2.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역사적유래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크기와 특성, 리용 또는 보존가치와 전망
4.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대의 자연지리적상태
5. 명승지안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

제1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발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신청)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리용과 보존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근거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

내각의 승인을 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름,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2. 정작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거나 의의있는 동물
3. 학술적 및 풍치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4. 지리, 지질학적형성조건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제18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사유)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다음의 경우 삭제할수 있다.

1. 지진, 벼락, 화재, 오염 같은 원인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2. 동식물이 불품이 없거나 사멸되었을 경우

제19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절차)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제20조(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 확립)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태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을 바로 조직하고 그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것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연체공사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며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9조(산림자원의 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제와 산불감시체제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동식물자원의 보호)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수 없다.

제32조(지반침하의 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수 없다.

제33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운행하는 행위
2.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소음, 진동, 먼지를 일으키는 행위
3. 식당, 국수집 같은것을 꾸러놓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5. 총기류, 폭발물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것을 불태우는 행위
7. 휴지, 담배꽂초, 오물 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 8. 승인없이 해당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
- 9.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을 버려 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3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파손되었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5조(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 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강화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지도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 경우
3.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를 망탕 하여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제3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등록된 천연기념물을 팔고싶거나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제44조(형사적책임)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 육 법

주체86(1997)년 3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5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제1장 체육법의 기본

제1조(체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법은 인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체육사업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육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체육제도가 굳건히 마련되고 체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러졌다.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체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원칙)

체육사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여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며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한다.

제4조(체육기술과 과학발전원칙)

체육기술과 과학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은 체육발전의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체육기술과 과학발전의 기본방향을 바로 정하고 체육기술과 과학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한다.

제5조(체육선수양성원칙)

체육선수는 체육기술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체육선수를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고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제6조(체육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체육사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체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이 부문의 물질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7조(체육사업지도원칙)

국가는 체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체육사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8조(체육선수, 일군의 우대원칙)

국가는 체육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체육선수와 일군을 표창하며 그들을 우대한다.

제9조(체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체육부문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제10조(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의 계획화)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인민들을 체육활동에 참가시켜 그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설군중체육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을 내오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비상설군중체육조직은 대중체육을 조직하고 필요한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마련하는 사업을 한다.

제12조(학교체육)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에서 기본은 학교체육이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교육의 질을 높여 청소년학생들의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고 그들이 체육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소유하며 룡상, 구기, 체조, 수영 같은 체육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외체육활동)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 단체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과외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과외체육활동은 청소년학생들의 소질과 취미, 계절적조건과 지대적특성에 맞게 조직하며 실정에 따라 체육종목별소조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학령전어린이의 체육)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학령전어린이들의 연령과 성장발육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체육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5조(집단체조)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기교와 예술성이 배합된 집단체조를 창작하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집단체조를 통하여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체육월간과 체육의 날)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한다.
체육월간과 체육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7조(대중체육)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의 체력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침체조,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같은 대중체육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의 날에는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조직할수 있다.

제18조(가정체육)

해당 기관은 인민들이 가정에서 체력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체력단련은 체조, 걷기, 달리기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19조(인민체력검정)

국가는 인민들의 체력단련상태를 판정하기 위하여 인민체력검정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체력검정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인민체력검정대상자는 체력검정에 빠짐없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중체육경기조직)

체육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대중체육경기조직은 부문별, 종목별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국적인 경기대회도 조직할수 있다.

제21조(대중체육본보기단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중체육의 본보기단위를 꾸리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제3장 체육기술

제22조(체육교수훈련강령과 기술발전계획)

체육기술은 체육운동을 수행하는 수법이며 체육발전수준의 기본표징이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체육교수훈련강령과 체육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3조(체질에 맞는 체육기술)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나라의 실정과 인민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제24조(파악있는 체육종목기술)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는 축구, 룡구, 마라손을 비롯한 파악있는 체육종목의 기술을 선차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다른 체육종목의 기술도 발전시켜야 한다.

제25조(체육선수훈련의 과학화)

체육단체는 체육선수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체육훈련은 체육선수를 육체적으로 단련시키며 체육기술을 련마하고 전술체계를 완성하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체육단체와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은 체육훈련과 경기에서 협동작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6조(체육경기조직)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별, 종목별체육경기와 체육선수의 수준별경기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체육선수는 체육경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약물과 체육기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27조(체육인급수)

국가는 체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목별체육인급수를 정한다.

체육인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제28조(체육선수후비, 특기선수양성)

체육지도기관과 체육단체, 해당 기관은 체육발전전망과 선수에 대한 수요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체육선수후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특기선수를 양성하여야 한다.

체육선수후비선발은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후비양성기관)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선수후비양성기관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선수후비양성기관은 체육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우수한 체육선수후비를 키워야 한다.

제30조(체육일군양성)

중앙체육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 있는 체육기술, 과학, 의료일군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체육과학

제31조(체육과학발전계획)

체육과학은 체육운동의 리치를 연구하여 체육선수의 육체적능력과 경기기술을 높이 발양시키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나라의 현실과 현대체육과학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과학발전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2조(대중체육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방향과 지표를 정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대중체육에 대한 연구는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제33조(체육과학연구사업)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 훈련수단과 방법 같은것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체육기초과학발전)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의학, 체육생화학, 체육심리학, 생물력학 같은 체육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체육과학분야도 개척하여야 한다.

제35조(체육선수영양공급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선수에 대한 영양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체육시설, 기재연구)

체육과학연구기관은 체육시설과 기재, 과학실험기구 같은것을 창안제작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체육과학연구성과와 앞선 경험의 도입)

체육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강화하며 체육과학연구성과와 앞선 경험을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 개발한 체육과학기술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중앙체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체육과학연구기지축성)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사업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39조(체육정보사업)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체육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정보사업을 강화하고 수집한 체육정보를 체육발전에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체육의 물질적보장

제40조(물질적보장의 기본요구)

체육의 물질적보장은 체육시설을 건설하고 체육부문에 필요한 기자재와 공급물자를 생산보장하는 사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체계를 세우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체육시설물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체육지도기관, 건설기관,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

여 체육시설물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체육시설물설계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2조(체육시설물의 관리)

국가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자체투자로 건설한 체육시설물관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체육시설물과 기재를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43조(체육시설물의 보수)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체육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제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체육시설물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체육기자재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기자재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체육기자재를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체육인용기자재공급은 중앙체육지도기관이, 대중용체육기자재공급은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45조(대중체육시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의 대중화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공원, 유원지 같은 장소에 필요한 체육시설,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46조(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체육인영양물자공급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체육인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47조(체육인영양공급기준)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은 체육종목과 선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정한다.

체육인영양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대상에 따라 중앙체육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6장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건장한 체력을 보장하고 체

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체육사업에 대한 지도)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체육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은 체육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체육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정권기관의 임무)

체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체육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체육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상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육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시상품,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체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3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체육시설과 기자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체육사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보건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주체 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주체 90(2001)년 2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4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제1조(인민보건사업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제2조(인민보건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가 마련되어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이 빛나게 실현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보장된다.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더욱 공고발전시킨다.

제3조(예방의학제도의 공고발전원칙)

사회주의의학에서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

제4조(치료예방의 현대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주체적인 의학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과 수단을 원만히 보장하여 치료예방사업을 끊임없이 현대화, 과학화한다.

제5조(보건일군의 계획적양성원칙)

국가는 보건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만든다.

제6조(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보건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의 인민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망명자의 건강보호원칙)

국가는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무상으로 치료하여주며 그들의 건강을 보살펴준다.

제8조(보건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제9조(무상치료의 권리)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무상치료의 내용)

무료의료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약은 모두 무료이다.
2.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는 무료이다.
3. 근로자들의 료양의료봉사는 무료이며 료양을 위한 왕복려비는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4. 해산방조는 무료이다.
5. 건강검진, 건강상담, 예방접종 같은 예방의료봉사는 무료이다.

제11조(여성과 어린이의 건강보호)

국가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장려하며 한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여성들과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제12조(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의 건강관리)

국가는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인민군후방가족들의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제13조(로동능력상실자, 무의무락어린이,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의 건강보호)

국가는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와 만성환자, 년로한 환자

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이 잘 차례지도록 그들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

제14조(환자, 산전산후의 여성과 그 부양가족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의 보장)
환자 및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여성들과 그 부양가족들에게 식량, 보조금, 분배몫을 준다. 이 경우 식량, 보조금,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의료봉사망의 배치, 의료봉사의 전문화)
국가는 도시와 농촌, 공장, 기업소, 어촌, 립산마을에 인민병원,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현대적으로 꾸리며 산원, 소아과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 전문료양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언제 어느곳에서나 불편없이 치료를 받도록 한다.

제16조(고려치료)
국가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치료방법인 고려치료방법을 발전시키며 고려의료망을 늘이고 의료기관들에서 현대의학적진단에 기초한 고려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17조(료양치료)
국가는 온천, 약수지대와 기후가 좋은 지대에 현대적인 료양시설을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이 자연인자에 의한 료양치료의 혜택을 더 잘 받도록 한다.

제3장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제18조(예방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한 요구)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19조(위생선전과 교양)
보건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선전사업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자신이 위생문화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과학적으로 건강을 보호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생활문화, 생산문화)
생활환경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보호하며 안전한 로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예방의학의 중요내용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키며 위생문화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생활문화와 생산문화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21조(살림집,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공공시설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배치하고 건설하며 그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제22조(공해의 방지)

국가는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로수와 녹지를 많이 조성하며 여러가지 유해가스과 유해물질에 의하여 대기, 하천, 토지 같은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산업성질병의 방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양제를 비롯한 로동보호물자와 위생보호용구를 보장하며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산업성질병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제24조(제품의 생산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을 비롯한 제품을 생산하고 취급하는데서 국가가 정한 위생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5조(어린이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들에게 건강과 발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성장촉진제 같은 영양제를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끊임없이 증진시킨다.

교육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체육을 대중화하고 생활화하여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몸을 튼튼히 단련하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전염병의 방지)

국가는 전염병을 미리 막기 위한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보건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의 발생조건을 없애고 소독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에 대한 면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의사담당구역제)

국가는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선진적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를 공고발전시킨다.

제4장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제29조(의학과학연구사업의 기본요구)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기초의학과학연구사업을 전

망성있게 진행하면서 치료예방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제30조(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의 연구)

보건기관과 의과학연구기관은 고려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려의학과 민간료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제31조(의약품, 의료설비, 기구의 연구)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최신과학기술성파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들의 체질에 맞는 의약품과 현대적인 의료설비, 의료기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의과학자와 보건일군의 협조)

보건기관과 의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의과학연구사업에 보건일군을 널리 참가시키며 의과학자와 보건일군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의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제33조(의과학연구조건보장)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의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준다.

제5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제34조(제약, 의료기구공업의 발전)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대규모의 중앙제약, 의료기구공업과 함께 중소규모의 지방제약, 의료기구공업을 발전시킨다.

제35조(의약품, 의료기자재의 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건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의약품, 의료기자재의 질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과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의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포장의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약초의 재배와 채취)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려약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고려약생산을 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하며 그 재배와 채취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약수의 수요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이름있는 약수터에 약수생산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약수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제39조(보건기관의 성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의 행복한 생활과 원만한 사회적활동을 보장하는 인민적보건기관이다.

제40조(보건기관의 분류)

보건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료양소, 위생방역소, 검역소 같은 치료예방기관과 의약품공급기관, 의약품검정기관이 속한다.

제41조(보건일군의 임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건일군은 인민들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보건일군은 자기 임무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총복이 되어야 한다.

제42조(환자에 대한 보건일군의 정성)

보건일군은 환자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바쳐 치료하여야 한다.

제43조(보건위생지식의 보급)

보건일군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보건위생에 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여 인민들이 위생상식과 건강상식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보건일군의 과학기술수준제고)

보건일군은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의료활동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정해진 기술규정과 행동규범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45조(보건일군에 대한 국가적배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일군은 인민들의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보건일군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여러가지 혜택을 돌린다.

제7장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의 기본요구)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국의 인민보건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의 인민적인 보건시책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인민보건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인민보건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인민보건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9조(보건위생사업의 대중화)

인민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거리와 마을, 가정과 일터를 위생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50조(인민보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인민보건정책집행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인민보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료 법

주체86(1997)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3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89(200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3호로 보충

제1장 의료법의 기본

제1조(의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은 의료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 사업을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의료부문성과의 공고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보건정책에 의하여 선진적인 의료제도가 마련되고 의료부문의 물질기술적도대도 튼튼히 꾸러졌다.

국가는 의료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의료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무상치료제혜택의 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의료사업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기초한다.

국가는 무상치료제에 의한 혜택이 인민들에게 원만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4조(의사담당구역제 실시원칙)

의사담당구역제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우월한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국가는 의사담당구역제를 바로 정하고 의료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의사담당구역제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병의 예방원칙)

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예방을 치료에 앞세우고 위생방역사업과 환경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벌려 병을 미리 막도록 한다.

제6조(의학과과학기술발전원칙)

의료사업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다.

국가는 의료사업의 전문화수준을 높이고 의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의료사업에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일도록 한다.

제7조(고려치료방법의 적용원칙)

고려의학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의료사업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 방도이다.

국가는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옹계 배합하여 발전시키고 치료사업에 고려치료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의료활동에서 정성원칙)

의료일군은 의료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의료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료활동에서 정성을 다하도록 한다.

제9조(의료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의료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의료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의료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의료검진과 진단

제11조(의료검진과 진단의 기본요구)

의료검진과 진단은 의료사업의 첫 공정이다.

의료기관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병의 원인과 본태를 밝혀야 한다.

제12조(의료검진장소)

의료검진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직장 또는 가정 같은데서도 의료검진을 할수 있다.

제13조(의료검진방법)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의료검진은 개별검진과 집단검진, 선택검진, 전반적검진, 전문과적검진, 정기검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의료검사에서 사망 같은 불량한 결과가 나타날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의료일군의 검진)

의료일군에 대한 의료검진은 정기적으로 한다.

검진에서 전염병균이 나타난 의료일군의 의료활동은 중지시킨다.

제15조(환자의 등록과 통보)

의료기관은 의료검진에서 발견한 환자를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진결과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진단)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과학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빠른 시간안에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하거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생체조직, 가검물의 채취)

의료기관은 정확한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생체조직과 가검물을 채취할수 있다. 환자의 생체조직을 채취할 경우에는 그에 심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진단방법의 창조와 도입)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유리한 진단방법을 창조하거나 도입하여야 한다. 새로 창조하였거나 처음 도입하려는 진단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확정된 진단의 기록)

의료기관은 확정된 진단을 환자병력서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에 대한 기록은 필요에 따라 외래어로 할수 있다.

제20조(진단의 통지)

확정된 진단은 환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는 진단에 대하여서는 보호자에게만 알려줄수 있다.

제21조(전염병의 통보)

의료기관은 진단과정에 전염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현장소독 같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환자치료

제22조(환자치료의 기본요구)

환자치료는 환자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집체적협의제와 개별적책임제를 강화하며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특성에 기초하여 치료계획을 세우고 환자를 제때에 치료하여야 한다.

제23조(환자치료장소)

환자치료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환자가 있는 직장, 가정 같은데서도 환자를 치료할수 있다.

제24조(치료일군의 자격)

환자치료는 의료일군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의료일군자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자는 환자치료를 비롯하여 비법적인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구급환자의 치료)

의료기관은 구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여야 한다.

담당구역의 구급환자가 왕진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치료조작내용의 통고)

의료기관은 예견하는 치료조작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수술을 예견할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치료방법)

의료기관은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피부이식을 비롯한 조직이식과 장기이식, 인공장기치환술 같은 치료는 의학적적응판계를 의사협의회에서 검토하고 하여야 한다.

제28조(특별의료조작)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인공임신조작을 하며 선천성대기형, 유전자병 같은것을 막기 위한 의료조작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적응판계를 검토 하여야 한다.

제29조(약물처방)

의료기관은 약물처방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자의 병적고통이 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마약성진통제 같은것을 정해진 량보다 더 처방할수 있다.

제30조(소생가능성없는 환자의 의학적평가처리)

수술 같은것을 하면서 기술규정을 지키고 정성을 다하였는데도 불량한 결과가 나타났거나 뇌사상태같이 환자를 소생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경우 그에 대한 의학적평가처리는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데 따라 한다.

제31조(고려의학적방법, 자연인자의 도입)

해당 의료기관은 고려약료법, 침료법, 뜸료법, 부항료법 같은 고려의학적방법과 약수, 온천, 감탕 같은 자연인자를 환자치료에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환자치료문건)

의료기관은 병력서, 진단서, 처방전 같은 환자치료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환자치료문건은 원본 또는 부분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환자치료에서 책임성과 봉사성)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서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어야 한다.

제34조(다른 나라에서 받은 의료일군자격)

다른 나라에서 의료일군자격을 받은 우리 나라 공민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이 우리 나라에서 의료활동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자격인증을 받는다.

제4장 의료감정

제35조(의료감정의 기본요구)

의료감정을 공정하게 하는것은 의료사고나 로동능력상실정도를 과학적으로 확증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감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6조(의료감정대상)

의료감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다.

1. 감독통제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의료감정을 의뢰한 경우
2. 의료기관의 통보 또는 공민이 의료감정을 청원한 경우
3. 의료검열과정에 의료감정사유가 나타난 경우
4. 그밖에 필요한 경우

제37조(의료감정장소)

의료감정은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이 요구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료감정을 할수 있다.

제38조(의료감정형식)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은 생체감정, 시체감정, 증거물감정, 문서감정 같은 형식으로 한다.

제39조(의료감정의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의료감정의뢰문건을 접수한 의료기관은 의료감정대상에 대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에 해당 일군을 립회시키며 전문일군협의회 같은것을 조직할수 있다.

제40조(시체감정)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감정을 한다.

시체감정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시체감정을 할수 있다.

제41조(의료감정결과의 통지)

의료기관은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청원한 공민에게 감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감정문건을 발급할수 있다.

제5장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보건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

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의료사업에 대한 지도)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의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의료활동과 의료부문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5조(의료기관의 신설, 통합, 분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을 신설, 통합, 분리하거나 없앨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전문의사인정위원회)

국가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사급수를 정하며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한다.

의사급수를 정하고 전문의사인정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47조(의료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의료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의학과학연구사업, 의료일군양성)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의학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의료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의료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의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0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의료시설,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의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주체86(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제1조(전염병예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을 없애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전염병의 지정)

전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퍼지는 병이다.

국가는 전염병을 지정하고 그가운데서 전파속도가 빠르고 사망률과 로동능력상실이 높은 병을 특수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전염되어 앓는 병을 인수공통성전염병으로 규정한다.

제3조(전염병의 적발, 격리원칙)

전염원을 적발, 격리하는 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전염병예방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큰 힘을 넣으며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도록 한다.

제4조(전염경로의 차단원칙)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발생된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원칙)

전염병예방접종을 잘하는것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원칙)

국가는 전염병예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전염병예방사업의 대중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전염병예방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염병예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제9조(전염원의 적발, 격리의 기본요구)

전염원의 적발, 격리는 전염병환자와 보균자를 찾아내며 그를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원을 적발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며 적발된 전염원을 제때에 격리시켜야 한다.

제10조(전염원의 조사장악)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전염병환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자, 보균자, 인수공통성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염원의 적발, 검진)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원을 적발하기 위한 검진대상과 범위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전염원검진은 검진주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염원, 전염병의심자의 통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발한 전염원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적발된 전염원과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그를 등록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방역위원회)

국가는 전염병의 돌림상태에 따라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한다.

비상방역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4조(전염병균오염물건의 소독)

전염병균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대로 소독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 없다.

제15조(전염병 환자 발생 단위의 운영 중지)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균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전염병 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16조(전염병 환자의 격리)

전염병 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 환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 환자를 살림집에도 격리시킬수 있다.

병이 서로 다른 전염병 환자들은 한호실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제17조(전염병 환자의 수송)

전염병 환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킬 경우에는 위생차에 실어보낸다. 그러나 위생차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소독한다.

제18조(전염병 환자 거처지의 표식)

전염병 환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하는 표식을 붙인다.

전염병 환자가 있다는 표식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9조(전염병 환자 거처지의 출입)

전염병 환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 치료를 맡은 의료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염병 환자가 있는 입원실, 살림집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0조(전염병 환자의 치료)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전염병 환자의 병상태와 체질적특성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치료하여야 한다.

전염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균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제21조(전염병 환자의 퇴원)

전염병 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완치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 환자는 퇴원시킬수 없다.

제22조(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처리)

전염병 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를 살림집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들여오지 말고 화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를 매장하려 할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대로 한다.

제3장 전염경로 차단

제23조(전염경로 차단의 기본요구)

전염경로를 차단하는것은 전염병균이 퍼지는 길을 막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

물을 없애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특성과 계절적조건에 맞게 전염경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제24조(전염병균과 매개물 제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균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 같은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5조(음료수소독)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며 먹는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먹는물은 공급할수 없다.

제26조(음료수와 그 생산공급시설 검사)

전염병예방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였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전염병예방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7조(버림물의 정화)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림물정화정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정화하여 급수원보호구역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제28조(변소, 오물장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 같은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통제)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전염병예방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청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같은것을 잡을수 없다.

제30조(의료기구, 주방도구소독)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같은것은 리용할수 없다.

제31조(식료품취급일군, 보육교양원의 검진)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균을 가지고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제32조(계획적인 예방접종)

전염병예방접종은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염병예방기관은 정기접종과 임시접종대상을 조사장악하고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예방접종장소)

전염병예방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다.

필요에 따라 이동작업장 같은데서도 전염병예방접종을 할수 있다.

제34조(예비접종과 대중접종)

전염병예방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예방약으로 예비접종을 하여 부반응정형을 판정한 다음 대중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예비접종에서 질이 담보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 대중접종을 조직할수 없다.

제35조(예방약의 보관, 운반)

해당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추고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운반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는 접종을 할수 없다.

제36조(보충접종)

보건지도기관과 전염병예방기관은 전염병예방접종효과를 검토하고 집단면역수준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면역기준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37조(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

수의방역기관은 집짐승에게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을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집짐승예방접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1조(전염병예방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전염병예방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4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전염병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전염병예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주체86(1997)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1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의약품관리법의 기본

제1조(의약품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은 의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치료예방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의약품생산원칙)

의약품생산을 늘이는것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신약과 고려약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고
도록 한다.

제3조(의약품검정원칙)

의약품검정은 의약품의 질을 검사하고 판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의약품검정수단을 현대화하며 의약품검정의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의약품보관, 공급원칙)

의약품보관과 공급을 잘하는것은 치료예방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

국가는 의약품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제5조(의약품리용원칙)

의약품은 인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의약품을 병의 예방과 치료목적에 맞게 정확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의약품관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의약품관리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
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의약품에 대한 과학연구사업, 기술자,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의약품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약제사를 비롯한 필요한 기
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제8조(의약품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의약품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의약품생산

제9조(의약품생산의 계획화)

의약품생산은 의료약, 예방약 같은것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의약품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의약품생산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 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약품생산자)

의약품생산은 생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의료예방기관은 자기 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생산할수 있다.

의약품의 생산허가는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제11조(의약품생산능력조성)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의약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품종별에 따르는 의약품생산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의약품생산능력조성은 보건부문의 수요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약품생산기술일군의 책임성과 역할)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생산에서 기술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의약품생산기술일군은 제약기사, 약제사 같은 기술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제13조(약전과 의약품규격)

의약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과 의약품규격에 맞게 생산한다.

약전과 의약품규격을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14조(의약품생산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생산과 관련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약품의 포장)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의약품포장용기와 재료는 해당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것으로 써야 한다.

제16조(의약품생산공정의 위생)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의약품생산에서 위생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3장 의약품검정

제17조(의약품검정의 기본요구)

의약품검정을 바로하는것은 의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약물사고를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의약품검정을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약품검정일군)

의약품검정일군은 약제사, 의사와 화학, 생물학 같은 부문을 전공한 기술자, 전문가가 될수 있다.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이 의약품검정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약품검정대상)

의약품검정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규격을 새로 제정하기 위하여 만든 의약품
2. 생산, 공급, 판매하는 의약품
3. 수매 공급하는 고려약재
4. 다른 나라로 내보내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의약품
5. 약물사고와 그밖의 사유로 조사심의하는 의약품
6. 수요자와 공급자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의약품
7. 그밖에 질을 판정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제20조(검정의 기준)

의약품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 또는 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의약품에 대한 검정은 해당 나라의 약전 또는 의약품규격에 따라 한다. 그러나 해당 나라의 약전이나 의약품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약품검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한다.

제21조(검정의 구분)

의약품검정은 의뢰검정과 검열검정으로 나누어 한다.

의뢰검정은 의약품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의뢰, 검열검정은 의약품검정기관 또는 검열기관의 계획에 따라 한다.

제22조(검정의뢰문건과 검정시료의 제출)

의약품을 검정받으려는 기관은 의약품검정기관에 검정의뢰문건과 검정시료를 내야 한다.

검정시료는 의약품의 질을 정확히 판정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제23조(검정의 과학화, 표준화)

의약품검정기관은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의약품검정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의약품검정수단과 방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4조(검정의 판정)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이 끝난 다음 판정문건을 작성하여 의약품검정을 의뢰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의약품검정에 대한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25조(검정시료의 보관)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에 리용한 시료를 등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관기일이 1개월이 못되는 의약품에 대하여서는 검정시료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검정시료의 처리)

보관기일이 지난 의약품검정시료의 질이 보존된 경우에는 수요자기관에 넘겨준다. 그러나 의약품검정시료가 변질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처리한다.

제27조(불합격된 의약품의 처리)

의약품검정기관은 의약품검정에서 불합격된 의약품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합격된 의약품처리안을 만들어 상급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의약품보관과 공급

제28조(의약품보관, 공급의 기본요구)

의약품보관과 공급은 의약품의 질을 보존하고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수요자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을 책임적으로 보관하고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29조(의약품보관시설)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의 특성과 보관량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0조(의약품의 보관방법)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는 보관방법을 적용하여 의약품의 손상, 부패변질 같은 피해를 막고 그 량과 질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독약, 극약, 마약의 보관)

독약, 극약, 마약, 정유함유고려약,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같은 의약품은 정해진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한다.

제32조(의약품의 보관용기)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용기를 잘 관리하며 그 회수비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33조(의약품의 입출고)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창고에서 의약품의 입출고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창고에 보관하고있는 의약품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의약품보관시설의 보수)

의약품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보관시설을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한 의약품보관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의약품의 계량)

의약품공급기관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공급하는 의약품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검정받아야 한다.

제36조(의약품의 공급순위)

의약품공급기관은 먼저 생산한 의약품부터 공급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소비단위에 도착하기 전에 유효기간이 지날수 있는 의약품과 약표, 설명서 같은것이 없는 의약품은 공급할수 없다.

제37조(의약품의 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의약품수송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눈, 비, 동파, 류실 같은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의약품의 판매)

의약품은 정해진 약국 또는 의약품매대에서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 일반판매지표 또는 치료예방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다.

일반판매지표로 정하지 않은 의약품은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약국에서 판매할수 있다.

제5장 의약품리용

제39조(의약품리용의 기본요구)

의약품리용을 잘하는것은 약리작용과 용도에 맞게 의약품의 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의료예방기관은 의약품을 정해진 방법과 용량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의약품리용방법과 용량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제40조(의약품의 리용범위)

의료예방기관에서 만든 의약품은 자기 단위에서만 리용한다.

의료예방기관에서 만든 의약품을 다른 의료예방기관이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1조(대중의약품의 리용)

공민은 대중의약품을 설명서에 따라 리용할수 있다. 그러나 대중의약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을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42조(독약, 극약, 마약의 리용)

의료예방기관은 독약, 극약, 마약을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독약, 마약을 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조작, 립회하거나 감시한다.

제43조(의약품중독사고의 통보)

의료예방기관과 공민은 의약품에 의한 중독사고 같은것이 나타났을 경우 의약품 공급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약품중독사고 같은것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제때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의약품의 수입허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다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보건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독약, 마약의 소유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독약, 마약을 승인없이 가지고있지 말아야 한다.

제6장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의약품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의약품관리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의약품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보건지도기관의 임무)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약품관리사업을 료

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9조(의약품관리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의약품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의약품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의약품의 생산과 검정, 공급, 보관,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생산중지)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위생규범을 어기고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생산을 중지시킨다.

제52조(손해보상)

의약품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의약품을 손상, 분실하였거나 의약품공급, 검정질서를 어겨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의약품관리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 초 법

주체93(2004)년 12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9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1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약초법의 기본

제1조(약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초법은 약초의 재배,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약초의 수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약초자원을 적극 늘이고 고려약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약초의 정의)

약초는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약초에는 재배하였거나 자연적으로 자라 약재로 쓰이는 식물의 뿌리, 껍질, 꽃, 잎, 열매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약초재배원칙)

약초재배를 잘하는것은 고려약생산을 늘이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재배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약초재배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원칙)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는 산에 약초를 심으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약초를 관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체계를 세우며 약초 한뿌리를 캐고 두뿌리, 세뿌리를 심는 원칙에서 약초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도록 한다.

제5조(약초의 수매원칙)

약초의 수매를 바로하는것은 생산, 채취한 약초를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약초수매원칙을 적극 탐구동원하며 계획수매, 계약수매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약초를 수매하도록 한다.

제6조(약초에 대한 과학연구원칙)

국가는 약초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약초를 재배하고 그 자원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7조(사회주의에국주의교양과 과학지식보급사업강화)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에국주의교양과 약초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약초자원을 조성보호하는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교류와 협조강화원칙)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약초의 재배

제9조(약초의 과학기술적인 비배관리)

약초의 재배는 약초를 심고 가꾸며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를 제때에 심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약초재배계획의 작성과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약초에 대한 국가적수요, 재배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재배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약초의 전문재배와 군중재배)

약초재배는 전문재배와 군중재배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재배는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이, 군중재배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제12조(약초재배면적보장과 약초생산의 전문화)

약초재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재배면적을 적지에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13조(약초의 품종배치)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품종배치를 의약품생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연지리적조건, 약초의 특성 같은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심기, 비료주기, 김매기 같은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며 병해충,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약초에는 유기질비료, 생물비료를 위주로 주며 화학비료를 줄 경우에는 허용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여러가지 방법의 약초재배)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방

법으로 약초를 재배하여야 한다.

다른 지방에서 자라는 약용가치가 좋은 약초를 재배하려 할 경우에는 풍토에 점차 적응시키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약초밭의 지목변경)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밭을 목이거나 거기에 다른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한다.

약초밭에 다른 작물을 심으려고 할 경우에는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다른 나라의 약초재배)

약초를 재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약초종자를 들여다 재배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약초재배월간)

국가는 약초를 전군중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약초재배월간》을 정한다. 《약초재배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9조(균중적인 약초재배)

지방정권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재배월간에 기관, 기업소, 단체, 마을과 살림집주변, 산기슭, 하천주변을 비롯한 빈땅에 여러가지 약초를 심고 가꾸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

마약원료로 쓰이는 약초의 재배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이 경우 재배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1조(약초수확과 생산량보고)

약초관리기업소와 해당 협동농장은 약초수확시기를 품종별, 포전별로 정하고 제때에 거두어들이며 그 생산량을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통계기관은 약초생산량을 품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제3장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제22조(전망적인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

약초자원을 적극 조성하고 보호하는것은 약초자원을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은 약초자원의 조성과 보호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약초자원의 조사)

약초자원에 대한 조사는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약초자원조사기관과 해당 기관은 약초자원의 분포상태와 자원량을 정확히 조사하

여야 한다.

조사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24조(약초자원 조성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산림경영기업소와 약초관리기업소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약초자원 조성계획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25조(약초자원 조성설계의 작성)

약초자원 조성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 같은것을 조사분석하고 약초자원 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약초자원 조성설계요구의 준수)

약초자원의 조성은 약초자원 조성설계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 조성설계의 요구대로 정해진 산림토지에 약초를 적기에 집중적으로 심어 약초자원 조성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7조(약초의 조성면적확장과 사름률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약초자원 조성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이며 약초심기와 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약초자원보호구설정)

국가는 약초자원을 보호증식시키기 위하여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한다.

약초자원보호구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9조(약초자원보호구에서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자원보호구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약초자원의 생태 환경을 파괴하거나 약초자원보호증식에 지장을 주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제30조(약초자원에 대한 소개선전)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보호할 약초자원의 종류와 생물학적특성, 약초채취시기와 방법 같은것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31조(약초원종보존과 새로운 약초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만 있거나 특이한 약초원종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새로 발견한 약용식물은 제때에 약초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를 받아 채취할수 있는 약초)

자원이 줄어들거나 중요한 야생약초는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채취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는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약초채취허가신청서의 제출)

약초를 채취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약초관리기업소에 약초채

취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신청을 받은 약초관리기업소는 채취하려는 약초의 종류와 목적, 수량 같은것을 밝힌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만들어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제34조(약초채취허가증의 발급)

약초채취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약초채취계획과 자원량에 근거하여 약초채취허가증을 제때에 발급하여야 한다.

약초채취허가증에는 약초를 채취할 지역과 시기, 종류와 수량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35조(대용약초의 채취)

국가적으로 자원이 줄어들고있는 약초는 일정한 기간 채취를 금지시키고 그것을 대용할수 있는 약초를 채취할수 있다.

대용할수 있는 약초의 종류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제36조(약초채취에서 지킬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자원의 보존과 증식에 지장이 없도록 약초채취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뿌리채로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씨가 여문 다음 종자를 받고 하며 잎, 꽃, 열매를 리용하는 약초의 채취는 뿌리나 덩굴에 손상을 주거나 나무를 찌지 말고 하여야 한다.

제4장 약초의 수매

제37조(약초수매계획시달)

약초의 수매는 생산, 채취한 약초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생산량과 채취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약초수매계획을 세우고 제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8조(약초수매기관)

약초수매사업은 약초관리기업소가 한다.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수매계획에 따라 약초를 제때에 수매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약초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39조(약초수매방법)

약초관리기업소는 약초의 등급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수매가격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0조(약초의 보관과 공급)

약초관리기업소는 수매받은 약초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관리하여 약초의 부패, 변질을 막아야 한다.

수매받은 약초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41조(약초수출)

약초를 비롯한 고려약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제5장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요구)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약초생산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약초부문에 대한 지도기관)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고려약생산지도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약초부문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균중적인 약초의 재배와 조성, 보호)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고려약생산관리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약초의 재배와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사업을 균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육종체계, 채종체계수립과 종자공급)

고려약생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약초종자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우량품종의 약초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초종자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 시험재배에서 평가된 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6조(약초부문 사업에 필요한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약초재배와 수매, 약초자원의 조성, 보호에 필요한 로력과 토지,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약초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제48조(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약초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약초자원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약초부문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벌금, 손해보상)

채취가 금지된 약초를 채취하거나 약초채취를 망탕하여 약초자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0조(약초의 수매와 수출, 밀매중지, 몰수)

약초의 수매, 수출입질서를 어겼거나 약초를 밀매한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약초를 몰수한다.

제5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약초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

주체92(2003)년 8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35호로 채택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제1장 마약관리법의 기본

제1조(마약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에 의한 사회적위험을 미리 막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마약의 정의)

마약은 만성적인 중독 및 습관성현상을 일으키고 정신육체적으로 여러가지 이상현상을 나타내는 마약원료식물 같은 천연 및 합성물질이다.

마약의 규정은 이 법의 부록 1, 2에 따른다.

제3조(마약의 생산, 공급원칙)

마약의 생산과 공급은 마약관리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치료와 교육,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마약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제4조(마약의 보관, 리용원칙)

마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마약의 변질과 류실을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마약의 보관에서 기술적요구를 지키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쓰도록 한다.

제5조(마약의 수출입원칙)

마약은 필요에 따라 수출, 수입할수 있다.

국가는 마약의 수출과 수입을 정해진 무역질서와 국제질서에 맞게 하도록 한다.

제6조(마약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마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7조(마약관리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마약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부록 3, 4에 지적된 물질을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마약의 생산과 공급

제8조(마약의 생산근거)

마약생산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받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마약을 생산할수 없다.

제9조(마약의 생산허가기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마약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예방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제10조(마약생산허가신청)

마약생산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마약생산허가신청서에는 생산목적, 능력, 기간, 기술적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생산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마약원료식물재배에 필요한 토지의 리용허가)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관리기관에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목적, 능력, 면적 같은것을 밝힌 토지리용허가신청서를 생산허가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국가적으로 승인된 마약원료식물재배토지의 리용허가는 받지 않는다.

제12조(마약원료식물의 재배)

마약원료식물재배 토지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식물의 비배관리를 기술규범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마약원료식물재배에 리용하는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 그루바꿈을 할수 있다.

제13조(마약원료의 채취)

마약원료의 채취는 필요한 인원으로 경비를 세우고 한다.

채취한 마약원료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이관, 처리한다.

제14조(마약의 생산준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장소와 공정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마약생산과 관련한 기술규범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생산장소를 변경하거나 생산공정을 보수하거나 기술규범을 수정보충할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마약의 생산기술적요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과 제정된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마약의 규격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제16조(마약의 검정)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의약품검정기관, 수의약품검정기관은 마약 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마약을 제때에 정확히 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마약생산자의 자격)

마약생산은 제약기사, 약제사, 수의사 같은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소유하였거나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마약생산일군은 마약생산에서 기술 및 위생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8조(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를 세워야 한다.

마약생산과 관련이 없는자는 마약생산현장에 들어갈수 없다.

제19조(마약의 포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마약을 종류와 용도별로 갈라 정확히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의 결면에는 마약의 종류와 표시기호, 주의 또는 경고표식이 첨부된 약표와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붙여야 한다.

제20조(마약생산설비의 관리)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과 설비, 토지는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 설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마약의 공급기관)

마약의 공급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정한 의약품공급기관 또는 수의약품공급기관이 한다.

일반판매형식으로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제22조(마약의 공급)

마약공급기관은 공급계획에 따라 마약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제23조(마약의 계량)

마약공급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갖추고 마약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해당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수단은 쓸수 없다.

제24조(마약의 공급순위)

마약공급기관은 먼저 생산한 마약부터 공급하여야 한다.

변질되었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것이 없는 마약은 공급할수 없다.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은 검정기관의 검증을 받아 처리한다.

제25조(마약소개선전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학, 수의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대중보도수단으로 마약과 관련한 자료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마약의 수송기관)

마약의 수송은 그것을 생산 또는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마약공급기관, 교통운수기관이 한다.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이 눈, 비를 맞거나 얼거나 변질, 류실,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마약의 수송)

마약의 수송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발급한 수송지령서에 따라 한다.

수송지령서에는 정해진 표식을 한다.

제28조(마약의 호송)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에 마약수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호송원을 보장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에 마약의 호송을 의뢰할수 있다.

제29조(마약의 수송수단)

마약은 무개차량이나 배의 갑판우에 실을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개차량으로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마약수송의 신속성보장)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제때에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경우 운수기관은 마약을 실은 수송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제3장 마약의 보관과 리용

제31조(마약의 보관기관)

마약의 보관은 해당 보건지도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제32조(마약보관시설의 관리)

마약의 보관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2중관건장치가 되어있는 마약창

고, 마약장, 마약함 같은 보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마약의 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보관을 약리학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하며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보관된 마약의 입출고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4조(마약의 실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한 마약을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실사는 2명이상의 정해진 인원이 하여야 한다.

제35조(공민의 마약보관금지)

공민은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환자인 공민은 해당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의료예방기관에서 공급한 마약을 정해진 한도에서 가지고있을수 있다.

제36조(마약의 폐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마약의 폐기는 해당 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수의약품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이 경우 마약을 소각 또는 화학적변화를 시키거나 땅속 깊은 곳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37조(마약제조용물질의 보관)

천연 또는 합성방법으로 마약제조에 리용되는 물질의 보관은 마약보관질서에 따른다.

제38조(마약사고의 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 변질, 류실, 분실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곧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9조(마약의 리용허가)

마약의 리용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한다.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리용허가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마약리용허가신청서에는 마약의 종류와 리용목적, 장소,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또는 수의방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예방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마약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40조(마약의 리용범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을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을 원료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
3. 교육실습과 과학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이밖에 내각이 승인한 경우

제41조(병치료에 마약의 리용)

공민은 의료기관의 병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치료에 마약을 리용할수 있다.

마약의 리용은 의료예방기관에서 또는 그 기관의 립회밑에 가정에서도 할수 있다.

제42조(마약의 취급자)

마약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취급자를 정하여야 한다.

마약취급자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 같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이 될수 있다.

제43조(마약의 리용결정)

마약을 리용할데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마약취급자 2명이상이 참가한 협의회 또는 군급이상 인민병원 의사협의회에서 한다. 이 경우 마약의 종류, 사용형태, 사용기간, 하루 사용량, 한출고지령서당 또는 한처방당 한도량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4조(지령과 처방에 의한 마약의 리용)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마약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은 권한있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발급한다.

의사, 수의사는 자기를 위하여 처방하거나 병진단서가 없이 처방할수 없다.

제45조(마약의 긴급처방)

의료예방부문 또는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구급치료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결정이 없이 병상태에 따라 정해진 량의 마약을 처방할수 있다.

제46조(마약의 사고통보)

마약은 담당약제사와 의사, 수의사, 교원, 연구사의 립회, 감시밑에서 제조, 치료, 실습, 실험 같은 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리용과정에 중독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해당 인민보안기관, 의료예방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자체 또는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과 그 성분이 있는 물질의 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를 받고 자체로 만들었거나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치료 및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도 리용할수 있다.

제48조(마약의 회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쓰고 남은 마약을 제때에 마약공급기관에 바쳐야 한다.

마약보유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제49조(정해진 용도에 따르는 마약의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유하고있는 마약을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 한다.

승인없이 마약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팔수 없다.

제4장 마약의 수출입

제50조(마약의 수출입기관)

마약의 수출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무역회사는 마약의 수출입을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51조(마약의 수출입승인)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계획된 범위안에서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52조(마약의 수출입수속)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출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을 통과시킬 나라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마약의 대량수입)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많은 량의 마약이 요구될 경우 마약의 수입을 승인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마약의 세관검사)

수출입승인을 받은 마약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마약은 중계무역을 위하여 들여올수 없으며 정해진 목적지를 변경할수 없다.

제55조(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의 통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해마다 상반년안으로 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을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마약수출입의 요구)

마약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국제질서에 따르는 상표와 설명서가 있어야 수출입할수 있다.

우편물로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으며 수출입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돈자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수 없다.

제57조(특수경제지대에서 마약의 수출입)

무관세지역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질서에 따른다.

제58조(마약밀수의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을 밀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59조(부록 3, 4에 해당되는 물질의 수출입)

의존성이 있는 정신자극성물질(부록 3)과 마약 및 각성제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물질(부록 4)의 수출입은 마약의 수출입질서에 따라 한다.

제5장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0조(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마약부문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1조(마약관리사업의 지도)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제를 바로세우고 마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62조(마약의 보관리용, 수출입정형의 보고)

마약을 보관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분기 1차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과 관련한 장부와 문건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마약관리사업의 감독통제기관)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마약관리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4조(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취소)

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의 생산, 공급, 수출입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2. 정해진 생산공정,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규범을 어기고 마약을 생산할 경우
3. 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마약을 보관하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마약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5. 마약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마약관리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이밖에 마약관리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제65조(손해보상)

마약관리를 잘못하여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66조(몰수)

위법행위에 쓰인 마약생산설비와 마약,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6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부록 1(마약)

1. 노르레보르파놀
2. 노르모르핀
3. 노르메타돈
4. 노르코데인
5. 노르피파논
6. 노르아시메타돌
7. 니코디코데인
8. 니코모르핀
9. 니코코딘
10. 드로레바놀
11. 디메녹사돌
12. 디메틸티암부렌
13. 디메페프타놀
14. 디페녹신
15. 디피파논
16. 디페녹시레트
17. 디히드로모르핀
18. 디히드로코데인
19. 디암프로미드
20. 디옥사페틸부티레트
21. 디에틸티암부렌
22. 대마수지
23. 데조모르핀
24. 텍스트로모라미드
25. 텍스트로프록시펜
26. 라세모라미드
27. 라세모르판
28. 레보르파놀
29. 레보모라미드
30. 레보메트로판
31. 레보펜아실모르판
32. 모라미드중간체
33. 모르핀
34. 모르핀메토브로미드
35. 모르핀-N-옥시드
36. 모르페리딘
37. 미로핀
38. 메타돈
39. 메타돈중간체
40. 메타조신
41. 메타히드록시펜타닐
42. 메트로폰
43. 메틸디히드로모르핀
44. 메틸데소르핀
45. 베타메타놀
46. 베타메프로딘
47. 베타세틸메타돌
48. 베타트라미드
49. 베타프로딘
50. 베타히드록시펜타닐
51. 벤졸릴모르핀
52. 벤질모르핀
53. 벤제티딘
54. 3-메틸티오피렌타닐
55. 3-메틸펜타닐
56. 수펜타닐
57. 진삭각농축물
58. 코데인
59. 코데인-N-옥시드
60. 코덱심
61. 코카인
62. 클로니타젠
63. 케토베미돈
64. 트리메페리딘
65. 티오피렌타닐
66. 킬리딘
67. 헤마콘
68. 테바인
69. 파라-플루오로펜타닐
70. 폴코딘
71. 푸레티딘
72. 프로피람
73. 프로페리딘
74. 프로헵타진
75. 퍼리트라미드
76. 피미노딘
77. 페나독손
78. 페나조신

- | | |
|--------------------------|--------------------------|
| 79. 페남프로미드 | 101. 알파메타돌 |
| 80. 페노모르판 | 102. 알파-메틸티오펜타닐 |
| 81. 페노페리딘 | 103. 알파-메틸펜타닐 |
| 82. 페티딘중간체B | 104. 알파메프로딘 |
| 83. 페티딘중간체C | 105. 알파세틸메타돌 |
| 84. 페티딘중간체A | 106. 알파프로딘 |
| 85. 페테딘 | 107. 알펜타닐 |
| 86. 페파프 | 108. 옥시모르폰 |
| 87. 펜타닐 | 109. 옥시코돈 |
| 88. 히드로모르폰 | 110. 이소메타돈 |
| 89. 히드로모르폰-N-옥시드 | 111. 예크고닌 |
| 90. 히드로모르피놀 | 112. 에토니타젠 |
| 91. 히드로코돈 | 113. 에톡세리딘 |
| 92. 히드록시페티딘 | 114. 에트로핀 |
| 93. 헤로인 | 115. 에틸모르핀 |
| 94. 아닐레리딘 | 116. 에틸메틸티암부텐 |
| 95.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 117. 엠피피피 |
| 96. 아세틸메타돌 | 118. 웨세메토르판 |
| 97. 아세틸- α -메틸펜타닐 | 119. 대마 |
| 98. 아편 | 120. 베타-히드록시-
3-메틸펜타닐 |
| 99. 아제토르핀 | 121. 염산디히드로엔트로핀 |
| 100. 알릴프로딘 | |

부록 2(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

- | | |
|-------------------------------|--|
| 1. 브로람페타민 (DOB) | 14. 에스칼린 |
| 2. 까티논 | 15. 메트카피논 |
| 3. 디이티 (DET) | 16. 4-메틸아미노렉스 |
| 4. 디엠에 (DMA) | 17. 엠엠디에 (MMDA) |
| 5. 디엠에치피 (DMHP) | 18. 파라핵실 |
| 6. 디엠티 (DMT) | 19. 피엠에 (PMA) |
| 7. 디오이티 (DOET) | 20. 프실로진 |
| 8. 엔-에틸헤남
페타민 (MDE) | 21. 프실로지빈 |
| 9. 에티찌클린딘 (PCE) | 22. 톨리찌틀리딘 |
| 10. 에트립라민 | 23. 에스티피,
디오엠 (STP, DOM) |
| 11. N-히드록시헤남페타민 (N-
OHMDA) | 24. 헤남페타민 |
| 12. (+)-리제르기드 (LSD) | 25. 테노찌틀리딘 |
| 13. 엠디엠에 (MDMA) | 26.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의
광학이성체와 립체이성체들 |

27. 티엠에 (TMA)
28. 암페타민
29. 덱삼페타민
30. 드로나비놀
31. 페네틸린
32. 레탐페타민
33. 레보메탐페타민
34. 메클로쿠알론

35. 메탐페타민
36. 메탐페타민라제마트
37. 메타쿠알론
38. 메틸페니다레
39. 펜지클리딘
40. 펜메트라진
41. 쉐코바르비탈
42. 지페프롤

부록 3(의존성이 있는 정신자극성물질)

1. 아모바르비탈
2. 부페노르핀
3. 부탈비탈
4. 까틴
5. 찌클로바르비탈
6. 플루니트라제팜
7. 클루타리미드
8. 펜타조신
9. 펜토바르비탈
10. 알로바르비탈
11. 알프라졸람
12. 암페프라운
13. 아미노렉스
14. 바르비탈
15. 벤즈벤타민
16. 브로마제팜
17. 브로티졸람
18. 부토바르비탈
19. 카마제팜
20. 클로르디아제폭시드
21. 클로바잠
22. 클로나제팜
23. 클로라제파트
24. 클로티아제팜
25. 클록사졸람
26. 델로라제팜
27. 디아제팜
28. 에스라졸람
29. 제트클로르비놀

30. 에티나마레
31. 에틸로플라제파트
32. 에틸암페타민
33. 펜캄파민
34. 펜프로포렉스
35. 플루라제팜
36. 할라제팜
37. 할록사졸람
38. 케타졸람
39. 레페타민
40. 로프라졸람
41. 로라제팜
42. 로르메타제팜
43. 마진돌
44. 메다제팜
45. 메페노렉스
46. 메프로바다트
47. 메소카르브
48. 메틸페노바르비탈
49. 메티프릴론
50. 미다졸람
51. 니메타제팜
52. 니트라제팜
53. 옥사제팜
54. 옥사졸람
55. 페몰린
56. 펜디메트라진
57. 페노바르비탈
58. 펜페르민

- 59. 피나제팜
- 60. 피프라드롤
- 61. 프라제팜
- 62. 피로발레론
- 63. 쉐코부라바르비탈

- 64. 데마제팜
- 65. 데트라제팜
- 66. 트리아졸람
- 67. 비닐비탈
- 68. 플루디아제팜

부록 4(마약 및 각성제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물질)

- | | |
|-------------------------|-----------------|
| 1. 과망간산칼리움 | 12. 페닐초산 |
| 2. 노르에페드린 | 13. 초산무수물 |
| 3. 류산 | 14. 아세톤 |
| 4. 리제르긴산 | 15. 안트라닐산 |
| 5. 에틸에틸케톤 | 16. 염산 |
| 6. 사프롤 | 17. 이소사프롤 |
| 7. 4메틸렌디옥시페닐-
2-프로판논 | 18. 1-페닐-2-프로판논 |
| 8. 톨루올 | 19. 에르고메트린 |
| 9. 프세우도에페드린 | 20. 에르고타민 |
| 10. 피페로날 | 21. 에틸에테르 |
| 11. 피페리딘 | 22. 에페드린 |
| | 23. N-아세틸안트라닐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주체87(1998)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7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조(식품위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식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식품위생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

국가는 식품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식품생산취급일군의 위생성보장)

국가는 식품생산취급일군들속에서 식품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식품생산기업소의 위생조건보장)

식품일용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위생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생산에서 위생기준준수)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에서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위생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6조(식품생산표준조작법)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의 위생상태를 보장할수 있는 식품생산 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식품생산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식품의 오염방지)

식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품생산의 특성에 맞게 환기 같은것을 보장하며 해로운 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오염막이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식품을 생산할수 없다.

제8조(위생보호물자의 리용)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은 위생시설과 옷, 모자, 마스크, 신발 같은 위생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시설을 표준대로 갖추고 위생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기준에 맞는 원료, 자재의 리용)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기준에 맞는 원료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부패변질되었거나 오염된 원료자재로는 식료품을 생산할수 없다.

제10조(생산공정의 위생)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에서 살균, 가열, 냉각 같은 공정을 지켜야 한다.

식료품생산공정은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식료품의 첨가물)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자연색소, 향료, 알카리, 맛내기, 방부제 같은 첨가물을 넣어 식료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식료품의 포장)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포장을 위생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겉면이나 설명서에는 식료품생산날자, 보존기간, 보관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3조(식료품위생상태의 검사, 검정)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료품의 위생상태를 검사하거나 검정하여야 한다. 검사,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식료품은 판매할수 없다.

제14조(수입하는 식료품의 합의)

식료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 기관과 합의한다.

위생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식료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없다.

제15조(식료품의 보관)

식료품보관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식료품의 운반)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에 맞는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식료품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식료품수송수단은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공급하는 식료품의 위생)

식료품은 상표와 설명서, 위생상태를 확인하고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침전물이 생긴 식료품, 변질되었거나 벌레가 생긴 식료품, 설명서가 없는 식료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제18조(이동판매하는 식료품의 위생)

식료품을 이동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식료품중독사고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샀거나 공급받은 식료품의 위생상태가 불결하여 중독사고가 나타났을 경우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료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식료품의 판매공급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

제20조(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생산의 위생)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생산에서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생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료자재로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할수 없다.

제21조(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의 위생검사)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은 위생검사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는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제22조(식료품용기, 포장재의 회수리용)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회수하여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세척, 소독한다.

제23조(위생관리에서 앞선 수단과 방법의 도입)

식료품을 생산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서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 받아들여려는 위생관리수단과 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식료품생산취급시설의 보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취급시설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위생적인 식료품생산취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식료품생산취급일군의 검진)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취급일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식료품을 생산취급할수 없다.

제26조(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료품위생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7조(식료품생산기업소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 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를 위생 환경과 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제28조(식료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식료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식료품생산취급의 중지)

식료품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는 식료품생산과 취급을 중지시킨다.

제31조(손해보상)

식료품위생관리를 잘하지 않아 식료품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식료품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주체87(1998)년 7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3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제1조(공중위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중위생부문의 물질기술적수단현대화)

국가는 공중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3조(공중위생교양)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공중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위생월간)

국가는 공중위생사업을 활발히 벌리기 위하여 위생월간을 정한다.
위생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조(대기오염의 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기, 가스 같은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시켜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독성물질의 처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의 처리장을 꾸리고 그것을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독성물질은 처리장이 아닌 곳에 버릴수 없다.

제7조(물의 수질기준보장)

물은 용도에 따라 먹는물, 생활용물 같은것으로 나누며 그 수질기준을 보장한다.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8조(물위생시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위생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위생시설을 갖추었거나 보수하였을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물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물소독은 염소소독, 자외선소독, 오존소독, 끓여서 하는 소독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10조(물원천의 보호)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 생활용물, 산업용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하천, 호소, 저수지, 지하수 같은것을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버림물을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토양의 오염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성물질에 의한 토양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토양에서 독성물질이나 기생충알 같은것은 위생기준이하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위생)

설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하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향좌, 크기와 건물사이의 거리를 위생적요구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13조(난방, 환기의 위생기준)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난방, 환기를 위생기준에 맞게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살림집, 공공건물의 난방, 환기시설을 없애거나 그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14조(건물의 조명)

살림집과 공공건물에는 인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자연 또는 인공조명을 보장한다.

조명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시설은 설치할수 없다.

제15조(오물장, 변소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주변에 오물장, 변소 같은 시설을 꾸리고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오물은 정해진대로 수집운반하고 무해화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장소의 위생)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회관, 영화관, 극장, 체육관, 역기다림칸, 광장, 공원, 거리 같은 공공장소에 위생시설을 꾸리고 정상적으로 청소, 소독하여야 한다.

공공장소를 리용하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 곳에서 피워야 한다.

제17조(숙박소의 위생)

편의봉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텔, 려관, 합숙을 비롯한 숙박소의 손님방, 휴게실, 세면장 같은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세면대, 침구를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세척, 소독하지 않은 시설, 비품으로 손님봉사를 할수 없다.

제18조(목욕탕, 수영장의 위생)

목욕탕, 수영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욕실, 욕조, 수영조, 탈의실 같은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수질검사를 제때에 하여 수질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염성질병이 있는자, 술에 취한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위생문화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자는 목욕탕, 수영장을 리용할수 없다.

제19조(리발관, 미용원의 위생)

리발관, 미용원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실, 대기실 같은것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관리하여야 한다.

리발, 미용을 할 경우에는 소독한 도구와 세척한 수건을 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유희장의 위생)

유희장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희시설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유희장의 위생시설에 대한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빨래집의 위생)

편의봉사기관은 빨래집을 위생문화적으로 꾸려야 한다.

전염병을 전파할수 있는 빨래감은 소독한 다음 빨래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급양시설, 수단의 위생)

사회급양기관은 식사실, 주방, 옷보관실을 위생적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음식그릇, 수저가락, 수건 같은것은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제23조(위생용품의 위생)

위생용품생산은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용품을 위생기준에 맞게 생산하고 포장하여야 한다.

제24조(상하수도, 편의봉사, 사회급양일군의 건강검진)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하수도, 편의봉사,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의 직접부문에서 일하는 일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제25조(공중시설리용)

공민은 공중시설리용에서 위생규범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하며 불결한 몸차림이나 해로운 물질에 오염된 상태로 공중시설을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공중위생감시와 검사)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중위생감시와 검사를 과학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27조(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공중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8조(공중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공중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29조(공중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중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중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공중위생상태가 불결한 단위의 운영중지)

공중위생상태가 불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영은 중지시킨다.

제31조(손해보상)

공중위생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3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중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

주체94(2005)년 7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00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7호로 수정보충

제1조(담배통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담배통제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담배는 잎담배와 그것을 가공하여 사람이 리용할수 있게 만든 담배제품을 말한다.

제3조(담배통제원칙)

담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담배의 생산과 수입, 판매를 제한하며 흡연률을 낮추도록 한다.

제4조(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원칙)

금연활동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담배의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금연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5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담배의 생산과 수출입, 판매, 흡연의 통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이 해당 법규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담배생산기관)

담배는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 생산할수 있다.

잎담배의 생산승인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담배제품의 생산승인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제7조(담배생산승인신청)

담배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만들어 대상에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생산목적과 생산량, 제품의 규격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담배생산승인신청의 심의)

담배생산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

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보건,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9조(담배생산계획)

담배는 계획에 따라 생산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담배생산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생산할수 없다.

제10조(잎담배의 생산, 구매)

잎담배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 좋은 잎담배를 생산하여 제때에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잎담배의 구매는 계획에 맞물린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하여야 한다.

제11조(담배의 제조)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를 현대화하고 앞선 제조기술을 받아들여 질 좋은 담배를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한 담배는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 상업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2조(담배의 포장과 표기)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를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담배곽에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밝힌 경고문과 니코틴함량, 타르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담배의 상표)

담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표법의 요구대로 등록된 담배상표를 붙여야 한다.

같은 원료와 제조기술, 방법으로 생산한 담배에 서로 다른 상표를 붙이거나 사람의 흥미를 끌게 하는 장식, 표기 같은것을 할수 없다.

제14조(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이 경우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은 승인해 줄수 없다.

제15조(담배의 수출입)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지 않은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수속은 할수 없다.

제16조(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합의신청)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거나 담배를 임가공하거나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그와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조선담배협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합의신청서양식은 조선담배협회가 정한데 따른다.

제17조(담배의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합의)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접수한 조선담배협회는 15일안으로 심의하고 합의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의 또는 부결결정정형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합의신청서심의에 필요한 자료보장)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생산의 합영, 합작과 담배임가공, 담배 또는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의 수출입과 관련한 합의신청서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선담배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일담배의 수출제한)

일담배는 수출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담배를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조선담배협회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수출용담배의 처리)

수출용담배를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전량 수출하여야 한다.

수출용으로 생산한 담배는 상업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제21조(담배의 수출입검사, 검역)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에 대한 검사, 검역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22조(담배의 판매장소)

담배는 정해진 상점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상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수 없다.

승인되지 않은 상점과 개인은 담배판매행위를 할수 없다.

제23조(담배판매가격)

담배는 국가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한 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한다.

담배판매가격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4조(담배를 팔아줄수 없는 대상)

미성인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제25조(담배의 수출입, 판매금지)

다음의 담배는 수출입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1.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담배
2.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함량, 타르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

제26조(담배선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가 잘 팔리게 할 목적으로 담배선전을 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흡연장소)

담배를 피우려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며 담배꽂초를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피우는 장소를 따로 정해놓고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흡연금지장소)

다음의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2.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 회의실, 역대기실 같은 공중집합장소
3. 탁아소,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사무실, 상점
4.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철동차, 버스 같은 려객운수수단
5. 걸음길과 정류소
6. 화재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장소
7. 이밖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정해놓은 장소

제29조(흡연금지대상)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교육교양을 강화하며 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30조(담배의 해독성선전)

보건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담배가 사람의 건강에 해로우며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준다는데 대하여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31조(조선담배협회)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에 비상설로 조선담배협회를 둔다.

조선담배협회는 식료일용공업, 보건, 무역, 세관, 품질감독, 담배생산부문의 일군들로 조직한다.

조선담배협회는 담배의 생산과 합영, 합작, 임가공, 수출입, 판매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대책을 토의결정하며 이 법에서 정한데 따라 해당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3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2. 담배생산승인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3. 계획에 없는 담배를 생산하였을 경우
4. 일담배를 계획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매하였을 경우
5.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함량, 타르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를 생산하였거나 수입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6. 조선담배협회와 합의없이 담배생산을 합영, 합작하였거나 담배를 임가공하였거나 담배와 담배생산원료, 자재, 설비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7. 담배판매질서를 어졌을 경우
8. 흡연금지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제3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3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사회복지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근로자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

주체96(2007)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13호로 채택

제1조(적십자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십자회의 지위)

적십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적십자단체이다.

적십자회는 공민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조직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이다.

제3조(적십자회의 활동원칙)

적십자회는 국가의 해당 법규와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공화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보충의정서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제4조(적십자회사업의 조건보장)

국가는 적십자회사업을 중시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

적십자표식을 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인원과 물자,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송과 봉사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제5조(대회)

적십자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회이다.

대회는 각급 적십자단체들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한다.

대회에서는 결산기간 적십자회의 사업총화보고를 심의하고 사업방향들을 결정하며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제6조(중앙위원회)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회에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대회휴회기간 적십자회전반사업을 지도하며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

들을 집행한다.

제7조(적십자회의 산하조직)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산하조직을 내올수 있다.

제8조(적십자회의 임무)

적십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큰물, 태풍, 해일 같은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인민들의 건강복리를 증진시키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급의료봉사활동, 보건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며 국가보건기관의 사업을 협조한다.
3. 전시에는 상병자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제공하며 인민들에 대한 보호, 구호사업을 한다.
4. 나라의 분렬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사업과 해외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방조를 제공한다.
5. 청소년들속에서 보건위생선전, 재난구호훈련 같은 사업을 한다.
6.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 인도주의와 관련한 법규를 보급한다.
7.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8. 이밖에 국가가 위임하는 인도주의사업을 한다.

제9조(국제적인 지원의 요청)

적십자회는 큰 규모의 재난시에 국제적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십자협조사업은 적십자회를 통하여 한다.

제10조(국제구호활동의 참가)

적십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구호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제11조(적십자표식)

적십자회는 흰색바탕에 붉은색십자표식을 사용한다.

제12조(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

적십자표식은 보호와 식별표식으로 사용한다.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3조(적십자회의 예산)

적십자회는 해마다 재정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재정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국가의 보조금, 기증받는 물자와 자금, 자체수입금 같은것으로 이루어진다.

제14조(예산의 지출)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은 항목에 따라 한다.

적십자활동밖의 목적에 재정예산을 지출할수 없다.

제15조(예산지출에 대한 감독)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기관은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관세면제)

국가는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적십자국제기구에서 기증하는 물자와 자금을 대하여 관세의 면제 같은 특혜를 보장한다.

제17조(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명칭을 쓰거나 표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적십자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주체97(2008)년 1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3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사회보장법의 기본

제1조(사회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 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사회보장대상)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한다.

제3조(사회보장부문의 투자원칙)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개선 강화하도록 한다.

제4조(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제5조(사회보장기관의 운영원칙)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제6조(사회보장금지출 확대원칙)

국가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보장금의 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제7조(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적원호)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8조(사회보장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사회보장수속

제9조(사회보장수속의 기본요구)

사회보장수속을 바로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사회보장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10조(사회보장의 신청)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1조(사회보장신청문건의 기재사항과 첨부문건)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 경력, 수훈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으며 로동수첩과 그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다.

병 또는 부상을 리유로 사회보장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서를 첨부한다.

제12조(사회보장신청문건의 심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한다.

제14조(사회보장자등록정형 통보)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5조(건강이 회복된 사회보장자의 직업보장)

해당 인민위원회는 병 또는 부상으로 사회보장을 받던 공민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1개월안으로 알맞는 일자리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자의 의무)

사회보장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로동능력상실에 의한 사회보장자는 정기적으로 로동능력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2. 거주지, 가족수 그밖의 생활상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3. 국가의 법규범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4.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지불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5. 사회보장금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으며 분실, 오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금의 지출

제17조(사회보장금지출의 기본요구)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금을 정확히 지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보장금의 지출대상)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 중지, 변동)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달부터 계산하여 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을 중지, 변동시켜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불을 중지 또는 변동시킨다.

제21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회수 또는 추가지불)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적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해에 한하여 더 지불된 몫을 회수하거나 적게 지불된 몫을 추가로 지불한다.

제22조(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3.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5. 기타 따로 정한 법규에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제23조(한가지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불)

사회보장자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연금외에 보조금을 더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4장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제24조(사회보장기관조직운영의 기본요구)

사회보장기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기관의 운영체제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제25조(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영예군인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조직하고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영예군인보양소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양로원, 양생원 같은것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조직하고 관리운영한다.

제26조(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할수 있는 대상)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부양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할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을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사회보장기관에 내야 한다.

제27조(사회보장자파송신청)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려는 대상이 제기되었을 경우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신청리유, 부양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제28조(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의 심의)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영예군인보양소와 다른 도에 있는 양로원, 양생원 같은 곳에 보낼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급인민위원회를 거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사회보장자파송증의 발급)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된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자파

송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은 해당 사회보장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보낸다.

제30조(사회보장자의 파송)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 보내는 사업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맡아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가는 사회보장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자와 그를 데리고가는 공민의 려비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31조(사회보장자의 생활조건보장)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32조(생활보장시설구비)

사회보장기관은 학습실, 침실, 식당, 진료소, 리발실, 세목장 같은 후생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며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사회보장자들의 건강보장)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며 치료간호조직을 잘 짜고 들어야 한다.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기면 제때에 전문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보장기관의 부업경리)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부업경리를 할수 있다.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수입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기관운영에 쓴다.

제35조(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낸다.

1. 보호자, 부양자가 나타났을 경우
2. 로동행정기관의 로력과견장을 받았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3개월이상 정해진 부양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4. 사회보장기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생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6조(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자의 생활조건보장)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자에게는 퇴소증을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온 사회보장자에게 살림집과 일자리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5장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제37조(보조기구생산, 공급의 기본요구)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기구의 생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9조(보조기구의 공급승인신청)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기구의 공급)

보조기구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공급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제41조(비용부담)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가는데 든 러비는 국가와 본인이 부담한다.

구체적인 비용부담관계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42조(보조기구의 수리)

보조기구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사용과정에 보조기구가 못쓰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수리하여주거나 다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제43조(교정기구초대소의 조직운영)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를 위한 교정기구초대소를 꾸리고 그들이 교정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머무르는 기간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6장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4조(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을 철저히 집

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5조(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6조(사회보장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47조(감독통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회수 및 벌금, 손해보상)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9조(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사회보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

주체96(2007)년 4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14호로 채택
주체96(2007)년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33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년로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년로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은 년로자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년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여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년로자의 나이, 보호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년로자는 남녀 60살이상의 공민이다.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있는 남자 60살, 여자 55살이상의 공민은 이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년로자의 지위와 보장원칙)

년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이다.

국가는 년로자들에게 혁명의 선배,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년로자보호부문의 투자원칙)

년로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시책이다.

국가는 년로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년로자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공로있는 년로자의 특별보호원칙)

국가는 혁명투사와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공로자 같은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년로자를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도록 한다.

제6조(년로자에 대한 사회적관심원칙)

국가는 사회주의도덕교양과 미풍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년로자를 관심하고 도와주며 존경하는 기풍이 높히 발양되도록 한다.

제7조(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노인자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노인자의 부양

제8조(노인자부양의 기본요구)

국가는 노인자에 대한 국가적부양과 가정부양을 결합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노인자에 대한 부양을 사회생활과 인간생활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행동준칙으로 여겨야 한다.

제9조(가정부양의무자)

노인자의 부양의무자로는 배우자, 같이 살거나 따로 사는 자녀, 손자녀가 된다. 형제, 자매도 부양의무자로 될수 있다.

제10조(사회적부양의무자)

노인자의 요구와 해당 공민의 승낙에 따라 가정부양의무자가 아닌 공민도 노인자를 부양할수 있다.

제11조(가정부양자의 의무)

부양의무자는 노인자가 건강하고 편안하게 오래 살도록 돌보아주어야 한다.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노인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제12조(국가적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 노인자는 국가가 부양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노인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의 부양을 받을수 있다. 이 경우 부양비용은 부양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식료품 및 생활용품의 보장)

국가부양기관 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친혈육의 심정으로 노인자를 따듯이 보살피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노인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식료품과 기호에 맞는 생활용품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연금, 보조금보장)

노인자는 국가로부터 연로연금과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노인자에게 정해진 연금, 보조금을 정확히 내주어야 한다.

연금, 보조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5조(무장애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설계기관, 해당 건설기업소는 노인자의 생활상안정과 편리를 도모하도록 도시계획과 살림집 및 대상설계, 건설에서 무장애환경을 보장하여

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개성적특성과 생활에 편리하게 살림방을 꾸려주어야 한다.

제16조(재산보호)

년로자는 개인재산소유 및 처분권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는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가 리용하고있는 살림집과 그의 재산, 생활용품 같은것을 해당 년로자와의 합의없이 마음대로 처분할수 없다.

제3장 년로자의 건강보장

제17조(건강보장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보람찬 삶을 누리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 담보이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년로자에 대한 치료간호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병치료 및 간호)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의 년로자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사업을 하며 왕진을 비롯한 의료사업에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년로자의 질병간호상식을 배우고 운신할수 없는 년로자에 대한 간호를 특별히 잘하여야 한다.

제19조(치료방법의 개선)

보건기관과 의료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치료에서 현대의학과과학기술과 고려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필요한 지역에 년로자전문병원 또는 전문과를 내올수 있다.

제20조(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비타민, 칼슘 같은 미량원소가 풍부한 영양식품, 장수보약제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보청기, 안경,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와 회복치료기구를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제22조(대중체육의 조직)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년로자를 위한 대중체육활동을 조직하며 로인물동체조, 로인태권도 같은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장수자보호)

중앙년로자보호기관과 출판보도기관, 지방정권기관은 100살이상의 장수자를 등록하고 장수경험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는다.

제4장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

제24조(문화정서생활의 기본요구)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은 년로자가 여생을 보람있고 낙천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의 문화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문화정서생활거점의 배치)

지방정권기관과 설계기관, 건설감독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년로자를 위한 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체육오락기재와 회복치료기구를 설치하며 전쟁로병과 년로자를 위한 현대적인 종합문화봉사시설을 수요에 맞게 꾸려야 한다.

제26조(문화정서생활의 조직)

년로자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적명절이나 년로자의 날을 맞으며 그들의 문화정서적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예술활동, 체육오락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기관은 년로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보급기관은 년로자의 가정에 신문, 잡지 같은 출판물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제28조(문화오락시설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년로자에게 여러가지 문화오락시설과 기재, 회복치료기구를 보장하여 그들이 공원, 유원지, 낚시터, 놀이터, 명승지 같은 문화휴식장소에서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휴양, 관광, 탐승)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년로자의 요구에 따라 봄과 가을 또는 의의있는 날들에 휴양, 견학, 관광, 탐승 같은것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제5장 년로자의 사회활동

제30조(사회활동의 기본요구)

년로자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국가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31조(사회활동의 내용)

년로자는 강연, 담화, 강의, 전승, 번역, 창작, 예술활동, 공원 및 유원지관리, 공증질서유지 같은 사회활동을 할수 있다.

제32조(년로자의 사회활동참가)

지방정권기관과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의 연령, 건강상태, 지식정도 같은것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33조(년로자의 근무연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가 계속 근무하려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알맞는 직종에서 일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년로자의 사업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후대교양)

년로자는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활동을 통하여 후대들에게 고귀한 혁명전통과 민족의 력사와 문화, 앞선 세대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 같은것을 물려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국가적표창)

국가는 사회활동에 참가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년로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제6장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년로자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년로자보호사업의 지도)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년로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8조(년로자보호기관의 조직)

국가는 년로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내각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년로자보호위원회를 둔다.

년로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중앙년로자보호련맹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9조(년로자보호기금의 창설)

년로자보호기관은 년로자보호기금을 세울수 있다.

년로자보호기금은 년로자보호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국제기구와 자선단체, 해외동포의 자선자금 같은것으로 적립하고 리용한다.

제40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년로보장으로 들어간 년로자를 따듯이 대해

주고 돌보아주며 풍부한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어야 한다.

제41조(인재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노인자보호사업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42조(노인자보호사업조건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노인자종합문화봉사 시설, 국가부양기관 같은 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출판보도수단에 의한 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신문, 방송 같은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노인자들속에서 발양되는 미풍과 락천적인 생활모습, 노인자를 보호하는데서 모범적인 사실을 널리 소개하여야 한다.

제44조(사회적우대)

지방정권기관과 상업기관, 편의봉사, 교통운수기관은 《노인자자리》, 《노인자봉사의 날》의 제정, 주문봉사 같은 방법으로 노인자를 우대하며 《국제노인자의 날》을 맞으며 노인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통제)

노인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노인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노인자보호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노인자보호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손해보상, 벌금, 몰수)

인격모욕, 천대, 치료거절, 부당한 재산처리, 노인자보호기구 및 보호시설의 파손 같은 노인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 또는 벌금을 물리며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노인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주체92(2003)년 6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5호로 채택

제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제1조(장애자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자의 회복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장애자의 인격과 권리의 보장원칙)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자유, 리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제3조(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장애자를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장애자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4조(장애발생의 예방원칙)

장애의 발생과 악화를 막는것은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장애의 원인으로 되는 질병을 제때에 적발치료하며 교통사고, 로동재해 같은 요인에 의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제5조(장애자의 조사와 장애정도의 평가원칙)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장애정도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조(장애자에 대한 협조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고상한 량심과 의리를 가지고 장애자를 친절히 대하며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제7조(장애자의 우대원칙)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한 영예군인을 비롯한 장애자를 사회적으로 우

대하도록 한다.

제8조(장애인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장애인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제9조(장애자회복치료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회복치료는 장애자의 기능장애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에 대한 치료조직을 짜고들며 그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자의 장악등록)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장애류형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옮긴 장애자의 등록자료는 관할지역의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11조(장애자회복치료기관의 조직)

국가는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한다.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12조(의료일군의 장애자회복치료)

장애자에 대한 회복치료는 해당 치료기관에서 한다. 그러나 의료일군의 방조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가정에서도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할수 있다.

제13조(장애자의 회복치료방법)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회복치료에서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면서 자연인자도 받아들이고 현대적인 회복치료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과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을 제때에 림상실천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기구의 생산보장)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장 장애자의 교육

제15조(장애자교육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장애자에게 풍부한 지식과 자질을 갖추수 있게 하는 기본방도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교육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6조(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학령전장애자를 탁아소, 유치원 또는 전문회복치료기관에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장애자의 보육교양비용은 국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학령장애자의 장악등록)

교육기관은 소학교에 입학할 연령에 이른 장애자를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장애자의 고등교육받을 권리)

장애자는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이 경우 실력을 위주로 한다.

제19조(특수학교의 조직운영)

장애자의 육체적, 정신적특성과 장애류형에 따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내오거나 맹인,聋아인, 지능배양학교 같은 특수학교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특수학급을 조직하는 사업은 교육지도기관이, 특수학교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20조(특수학교과정안의 작성)

교육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특수학교과정안을 바로 작성하여야 한다.

장애자를 위한 특수교육은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교육교재의 출판)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 또는 손말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재를 집필, 출판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학교의 교육기구와 시설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학교의 조직운영)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연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컴퓨터라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것을 조직운영할수 있다.

제23조(점자와 손말의 발전)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점자와 손말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애자가 정상적으로 리용하는 시설의 관리자는 간단한 점자와 손말을 알아야 한다.

제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제24조(장애자문화생활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문화생활은 장애자에게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중요한 사

업이다.

체육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체육, 문화, 오락활동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장애자의 체육종목선정)

체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건강에 유리한 체육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일반화하여야 한다.

체육은 장애자의 자립적활동능력을 높여나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26조(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조직)

문화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기지)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에 장애자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꾸려야 한다.

기지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8조(장애자의 미풍소개)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들속에서 발양되는 창조적인 생활과 아름다운 소행을 제때에 소개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의 편집발행)

출판보도기관은 장애자를 위한 출판물을 편집발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편집발행에 드는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제5장 장애자의 로동

제30조(장애자로동의 기본요구)

장애자의 로동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그들을 사회성원으로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로동에 적극 참가하게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능력이 있는 장애자를 장악하여야 한다.

제31조(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조직)

장애자의 로동조직이 필요한 지역에는 전문기업소, 단체를 조직할수 있다.

기업소, 단체를 조직하는 사업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32조(장애자의 배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장애정도와 성별, 연령, 체질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33조(장애자기업소, 단체의 생산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장애자전문기업소, 단체의 생산과 그 생산물의 실현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제34조(장애자의 로동조건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의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주지 않고는 장애자에게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5조(장애자의 로동나이)

장애자가 로동할수 있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16살미만의 장애자에게는 로동을 시킬수 없다.

제36조(장애자의 로동시간)

장애자의 하루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자의 하루로동시간을 8시간아래로 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시책에 따르는 방조를 받는다.

제37조(장애자의 휴식보장)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로동과 휴식을 옹계 조직하며 정양과 휴양, 료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장애자의 로동법규준수)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는 로동법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맡은 기대, 설비를 알뜰히 관리하고 분담된 일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자의 표창)

국가는 공로있는 장애자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제40조(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자의 보조금지불)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에게 보조금을 준다.

제41조(장애자의 양생원, 양로원생활보장)

국가는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자의 의사에 따라 양생원 또는 양로원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제6장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2조(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장애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장애자보호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43조(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장애자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지도기관의 임무)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의 장애자보호사업실태를 료해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장애자보호위원회의 조직)

국가는 장애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협의하고 통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장애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장애자보호위원회의 실무사업은 장애자련맹이 한다.

제46조(장애자보호사업조건외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장애자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의료기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7조(장애자의 생활환경보장)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자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자가 리용하는 건물, 시설물에는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48조(장애자의 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편의봉사기관, 체신기관은 장애자에게 교통수단, 편의시설, 체신수단의 리용에서 편의를 보장하며 그를 친절히 대하고 우선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맹인같이 자립적능력이 심히 제한 또는 상실된 장애자는 시안의 버스, 배를 비롯한 려객운수수단을 무상으로 리용할수 있다.

제49조(장애자의 날)

국가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더 잘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의 날》을 정한다.

장애자의 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0조(장애자의 후견의무)

장애자의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된다.

후견인은 장애자의 자립적능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면서 후견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제51조(장애자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장애자보호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장애자보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의사, 교원을 비롯한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장애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장애자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53조(원상복구, 손해보상)

장애자보호시설과 설비, 기구를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장애자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7호로 채택

제1장 아동권리보장법의 기본

제1조(아동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아동에 대한 정의)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다.

이 법에서 아동은 16살까지이다.

제3조(아동의 평등권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조(아동중시원칙)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제5조(교육, 보건분야에서 아동권리보장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제6조(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원칙)

아동은 사법분야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아동에 대한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제일 좋은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9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11조(생명권과 발전권)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이름을 가질 권리, 보살핌을 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권리)

다음의 아동은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제14조(출생등록)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 한다.

제15조(아동의 신원보존)

아동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원을 정확히 등록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가입, 견해표시)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 작품 같은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것 같은 행위는 할수 없다.

제17조(사생활, 가족, 서신, 명예, 인격보호)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18조(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금지)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제19조(아동로동의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0조(신소, 청원의 권리)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여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망명아동의 보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공화국에 망명한 아동, 개별적으로 공화국령역에 들어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3장 교육, 보건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22조(아동에게 교육, 보건분야의 혜택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요구)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제24조(아동교육기관)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 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같은것이 속하며 사회교육기관에는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것이 속한다.

제25조(아동의 입학과 졸업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령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

아동교육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아동의 인격존중)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아동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아동은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흥장, 동물원, 식물원 같은 시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9조(출판물,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

제30조(장애아동의 보호)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꼭 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聋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의 양육)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2조(외진 지역의 아동교육조건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 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34조(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아동병원, 병동의 배치)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료양시설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의 보장)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38조(가정에서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39조(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

제40조(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제41조(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조건보장)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가정에서 아동의 의사존중)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가정에서 처벌금지)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후견인의 선정)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제45조(아동의 수양, 립양)

공민은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

제46조(아동의 상속권)

아동은 상속권을 가진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아동이라는 이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제47조(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법기판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아동에 대한 형사책임추궁 및 사형금지)

14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9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과 차별하지 않는다.

제50조(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기판은 아동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법기판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2조(증인신문에서 아동의 보호자립회)

법기판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제53조(체포, 구속의 통지)

법기판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체포, 구속의 이유와 구속장소 같은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4조(리혼을 막기 위한 교양)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을 가진 부부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55조(리혼시 아동양육)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56조(아동의 양육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6장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7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아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

국가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59조(자금, 자재, 설비, 물자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보호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물자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아동의 교육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1조(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아동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

주체99(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7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4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여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1조(여성권리보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남녀평등의 원칙)

남녀평등을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제3조(여성에 대한 사회적관심)

여성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여성권리보장계획)

국가는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권리보장사업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중요업무이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사업을 중요직능으로 정하고 관할지역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단체의 여성권리보장의무)

여성동맹은 여성권리보장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이 법과 여성동맹규약에 따

라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은 이 법에 따라 자기 조직에 속한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8조(법기관의 여성권리보장의무)

법기관들은 각종 범죄 또는 범위반행위에 의하여 여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적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여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10조(법의 규제범위와 적용)

이 법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여성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

제11조(사회정치적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2조(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여성대의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한다.

제13조(국적취득, 변경, 보존의 권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성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4조(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

여성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들은 여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15조(여성간부의 등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한다.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사법분야의 보호)

법기관은 여성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며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신소청원의 권리)

녀성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녀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18조(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녀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옳바른 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제19조(입학, 진학, 졸업배치에서 남녀평등의 보장)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녀학생의 신체와 건강의 보호증진)

교육기관에서는 녀학생의 육체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며 녀성을 위한 해당 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녀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제21조(의무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의무)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가 중등일반의무교육체계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으로 앓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를 빠짐없이 취학시켜야 한다.

제22조(직업기술교육조건의 보장)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녀성들이 직업기술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3조(문화생활의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치료받을 권리)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기관은 녀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녀성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녀성들이 불편없이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에게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 해주어야 한다.

제25조(농촌여성들의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여성들이 도시여성들과 똑같이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4장 로동의 권리

제26조(로동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녀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로동조건외 보장)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로력배치에서의 차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녀성을 받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29조(녀성근로자의 로동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로동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정해진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녀성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로동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해진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는 녀성들에게 작업을 시킬수 없다.

녀성은 산전산후기간, 젓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0조(녀성에게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

로동행정지도기관은 녀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을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젓먹이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로동보수에서의 남녀평등)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똑 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 전액 지불한다.

제32조(기술, 기능자격 및 급수판정에서의 남녀평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자격, 기능자격, 급수판정을 할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3조(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국가적으로 여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여성에게 일시킬수 없다.

제34조(부당한 제적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젓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이유로 여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제35조(사회보험제의 적용)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병 또는 부상 같은 이유로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여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5장 인신 및 재산적권리

제36조(인신 및 재산분야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여성의 인신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7조(인신의 불가침권)

여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여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8조(건강, 생명의 불가침권)

여성은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갓난 여자아이를 죽이거나 여자아이를 낳은 여성, 임신한 여성, 앓고있는 여성, 장애여성, 년로한 여성을 학대, 팔시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제39조(유괴, 매매행위금지)

누구도 여성을 유괴하거나 매매, 강간, 룬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여성에 대한 유괴, 매매, 강간, 룬간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그러한 행위를 한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제40조(매음행위금지)

매음행위를 한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조장, 강박한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41조(여성의 인격, 명예 존중)

여성은 인격권과 명예권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여성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2조(가정에서 여성의 재산권)

결혼한 여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가진다.

여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여성은 남편과 리혼할 경우 자기의 개별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다.

제43조(재산상속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리유로 여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44조(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여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45조(여성의 결혼자유권)

여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여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6조(가정폭행의 금지)

가정에서는 여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 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행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리혼제기중지사유)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중에 있거나 해산후 1년 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수 없다.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리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48조(리혼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실정에 근거하고 자녀와 여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과 관련한 분쟁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해결한다.

제49조(미성년자녀보호에 대한 권리, 의무)

여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는 여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0조(출산의 자유)

여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여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제51조(임산부에 대한 보호)

여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여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산기의 여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제7장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3조(여성단체의 임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여성동맹조직은 여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성동맹조직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제54조(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여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여성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여성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북남경제협력부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주체94(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1조(북남경제협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북남경제협력에는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 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남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북측과 경제협력을 하는 남측의 법인, 개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북남경제협력원칙)

북남경제협력은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하며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한다.

제5조(지도기관)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남경제협력계획안의 작성
2. 북남경제협력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
3.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합의서, 계약서의 검토
4. 북남경제협력에 필요한 로력의 보장
5. 북측지역에 있는 남측당사자와의 사업
6. 남측당사자의 북측지역 출입방조
7.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
8. 북남당사자사이의 련계보장
9. 북측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발급
10. 이밖에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

제7조(협력사업의 기초, 방법)

북남경제협력은 당국사이의 합의와 해당 법규, 그에 따르는 북남당사자사이의 계약에 기초하여 직접거래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협력금지대상)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 민족의 미풍양속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의 북남경제협력은 금지한다.

제9조(협력장소)

북남경제협력은 북측 또는 남측지역에서 한다.

합의에 따라 제3국에서도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있다.

제10조(북남경제협력의 승인)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판이 한다.

승인없이 북남경제협력을 할수 없다.

제11조(협력신청서의 제출)

북남경제협력을 하려는 북측 또는 남측당사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판에 해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남측당사자는 공증기판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서의 양식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판이 정한다.

제12조(신청서의 검토처리)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판은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승인서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13조(출입증명서의 지참)

북남경제협력의 당사자는 남측 또는 북측지역에 출입할 경우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르는 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수송수단에도 정해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검사, 검역)

북남경제협력당사자 또는 해당 수송수단은 출입지점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같은 검사와 검역을 받아야 한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검역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15조(남측당사자의 체류, 거주)

북남경제협력을 하는 남측당사자는 출입사업기판의 승인을 받고 북측지역에 체류할수 있다.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서의 체류, 거주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6조(재산리용 및 보호)

북남당사자는 경제협력에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 같은것을 리용할수 있다.

투자재산은 북남투자보호합의서에 따라 보호된다.

제17조(로력채용)

북측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남측당사자는 필요한 로력을 북측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남측 또는 제3국의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반출입승인)

북남경제협력물자의 반출입승인은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한다.

공업지구, 관광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관세)

북남경제협력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공업지구와 관광지구에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북측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의 세금납부, 동산 및 부동산리용, 보험가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북남당국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결제은행, 결제방식)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결제업무는 정해진 은행이 한다.

결제방식은 북남당국사이의 합의에 따른다.

제22조(사고에 대한 구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북측지역에서 남측당사자 또는 그 수송수단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구조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북남경제협력사업내용의 비공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상대측 당사자와 합의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24조(사업조건보장)

해당 기관은 북남경제협력과 관련한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의 사업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감독통제)

북남경제협력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북남경제협력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6조(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사업중지, 벌금부과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제27조(분쟁해결)

북남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주체91(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
주체92(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개성공업지구법의 사명)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업지구의 개발방법, 구역구분)

공업지구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것으로 나눈다.

제3조(투자당사자와 투자가의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투자의 금지 및 장려부문)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피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수 없다.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공업지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공업지구사업에 대한 관여제한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여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

제8조(구속, 체포, 수색금지,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합의서, 조약적용)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법규준수, 협의처리사항)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과 공업지구관리기판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공업지구개발업자선정)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이 한다.

제11조(토지임대차계약 및 토지리용증발급)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리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토지임대기간)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 심의)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판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 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는다.

제15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비용부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개발공사의 착수시점과 단계)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수도 있다.

제18조(기업의 배치, 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 재임대)

개발업자는 하부구조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이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수 있다.

제19조(개발업자의 영업활동범위)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20조(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공업지구관리기관)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업자의 지정
2.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에 대한 지도
3. 공업지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4.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 용수, 물자의 보장
5. 대상건설설계문건의 접수보관
6.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북측지역 판매실현
7. 공업지구의 세무관리
8. 이밖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제23조(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의, 협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으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일군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투자조건의 조성과 투자유치
2.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3.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4. 토지이용권, 건물, 료전기재의 등록
5.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6. 하부구조시설의 관리
7. 공업지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8.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증명서발급
9.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준칙작성
10. 이밖에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

제26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리사장이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

남측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 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편의보장)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받으며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0조(개성시에 대한 관광 및 봉사제공)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것을 관광할수 있다.

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광고 및 야외광고물설치에 대한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물자의 반출입)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반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관세의 면제 및 부과사유)

공업지구에 들어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34조(검사 및 검역방법)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35조(기업창설신청 및 승인, 부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

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기업의 로력채용)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물자의 구입 및 판매, 가공위탁)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 수도 있다.

제40조(상품가격 및 봉사료금)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류통화폐와 기준화폐)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의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것을 사용할수 있다.

류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42조(기업의 은행돈자리)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43조(세금납부, 소득세률)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외화의 반출입, 송금)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수 있다.

제45조(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분쟁해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복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합의서의 효력)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복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외교, 대외경제부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채정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
지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

주체87(1998)년 12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제1조(조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약법은 조약의 체결과 이행, 폐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약을 바로 맺고 정확히 이행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조약의 체결원칙)

조약은 국가의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조약체결에서 자주권존중,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한다.

제3조(조약의 체결명의)

조약은 국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명의로 체결한다.

제4조(조약체결의 승인)

조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체결할수 있다. 그러나 기본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약과 경제, 과학기술, 문화분야의 일반조약 같은것은 외무성의 합의를 받아 체결할수 있다.

제5조(조약체결문건의 작성)

조약을 체결하려는 기관은 조약초안을 비롯한 조약체결문건을 만들어 외무성에 내야 한다.

조약초안에는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명예견날자와 장소, 조약의 효력관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6조(전권대표)

조약초안토의를 위한 회담과 조약문에 서명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의 위임을 받은 전권대표가 한다.

전권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에서 조약체결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전권위임장의 발급대상)

국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는 내각총리 또는 외무상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해당 기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에게

는 기관책임자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준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약체결명의로 관계없이 전권대표에게 체약상대방과 대등한 위임장을 줄수 있다.

제8조(전권위임장의 발급의뢰)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조약을 체결하는 전권대표의 위임장을 발급하는 사업은 의무성이 한다.

위임장을 발급받으려는 기관은 조약의 명칭, 전권을 위임받을 일군의 직위와 이름, 조약체결장소 같은것을 밝힌 위임장발급의뢰문건을 의무성에 내야 한다.

제9조(조약의 체결형식)

조약은 쌍방 또는 다방사이에 체결한다.

필요에 따라 이미 체결된 다방조약에도 가입할수 있다.

제10조(조약의 어문)

쌍방조약은 조선어문과 체약상대방의 어문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체약쌍방이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할수 있다.

다방조약은 체약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어문으로 작성한다.

제11조(조약의 효력)

국가 또는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중요조약과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해당 기관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12조(조약의 비준, 승인제기)

조약의 비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비준 또는 승인에 필요한 문건을 만들어 의무성과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조약의 비준, 승인)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중요조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한다.

국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최고주권기관의 비준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비준하며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약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한다.

제14조(비준 및 승인문건의 교환 또는 통보)

비준 또는 승인문건의 교환사업과 비준 또는 승인여부를 체약상대방이나 조약문을 보관하는 나라에 통지하는 사업은 의무성이 한다.

제15조(조약의 수정보충, 효력기간연장)

조약의 수정보충과 효력기간연장, 다방조약의 가입절차는 이 법에 따른다.

제16조(조약의 등록)

체결된 조약을 유엔사무국에 등록하는 사업은 의무성이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에 따른다.

제17조(조약의 리행의무)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에서 지닌 의무를 어김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조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체약상대방에게 알리고 해당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조약의 폐기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조약을 폐기할수 있다.

1. 체약상대방과 조약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체약상대방이 조약의 본질적내용을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3.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제19조(조약폐기문건의 제기)

조약을 폐기하려는 기관은 조약의 효력을 없애거나 조약에서 탈퇴할데 대한 문건을 만들어 외무성에 제기하여야 한다.

외무성은 문건을 검토하고 그것을 해당 기관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조약의 폐기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준을 받은 중요조약의 폐기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의 폐기결정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내각의 승인을 받은 조약과 기타 조약의 폐기결정은 내각이 한다.

제21조(조약사업에 대한 지도)

조약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외무성이 통일적으로 한다.

외무성은 조약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2조(조약원문의 등록과 이관)

조약을 체결한 기관은 조약원문을 정해진 기간에 외무성에 내야 한다.

외무성은 조약원문을 등록하고 그것을 중앙문헌지도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조약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국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주체85(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23호로 수정보충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제1조(출입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며 출국, 입국하는 우리 나라 공민과 입국, 출국,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민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출입국증명서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와 사증 같은것을 말한다.
4. 체류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에 일정한 기간 머무르는것을 말한다.
5. 거주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에 거주등록을 하고 사는것을 말한다.
6. 여행이란 외국인이 우리 나라 영역에서 체류지 또는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것을 말한다.

제3조(국경통과지점)

출입국은 정해진 국경통과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경통과지점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

제4조(출입국수속의 당사자)

출국, 입국,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그러나 공무로 출국, 입국, 체류, 여행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수속할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제5조(출입국수수료)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증수수료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물린다.

제6조(출입국사업담당자)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도 한다.

제7조(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제9조(출입국사유)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0조(려권, 사증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렬권, 사증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1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효력)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은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출입국할수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2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의 발급신청)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3조(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공민은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4조(선원증에 의한 출입국)

공민은 증양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지고 출입국할수 없을 경우에는 외무성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렬권,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5조(출입국의 확인)

국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확인인 해당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

제16조(해외국민의 입출국)

다른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은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통하여 령권,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제17조(출입국증명서의 재발급)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국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출국금지대상)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법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 한 국민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제3장 외국인의 입출국

제19조(사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외국인은 우리 나라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령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제20조(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우리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초청기관이나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외교 및 령사대표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신청문건에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동의문건을 첨부한다.

제21조(외국인의 입출국수속)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22조(선원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출국할수 있다.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이 비행기, 열차,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국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

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수 있다.

제24조(관광증에 의한 외국인의 입출국)

우리 나라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출국할수 있다.

제25조(입국금지대상의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수 없다.

1.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국제테로범
3.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4. 전염병환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자
5. 위조하였거나 심히 오손되어 확인할수 없는 증명서를 가진자
6. 해당 기관이 나라의 안전을 침해할수 있다고 인정한자

제26조(외국인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안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의 체류, 거주등록삭제)

체류,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등록, 거주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바친다.

제28조(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일정한 기간 출국하려 할 경우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외국인장기체류증, 외국인거주등록증은 입국한 다음 돌려준다.

제29조(외국인의 출입국시 자동차리용)

우리 나라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승인받은 자동차로 출입국할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0조(출국금지대상의 외국인)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제4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여행

제31조(외국인의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우리 나라 영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2조(외국인의 체류구분)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이상으로 한다.

제33조(외국인의 체류등록)

우리 나라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안에 체류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사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외국인의 도중체류등록)

외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인의 체류등록관할)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 또는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도 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36조(외국인장기체류증의 발급)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체류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 성원
2.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3.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 비행장, 철도역에 입국한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38조(다른 나라 선원, 승조원, 승무원의 체류등록)

다른 나라 배, 비행기, 렬차의 선원, 승조원, 승무원이 정해진 항, 비행장, 철도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48시간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장기체류등록의 변경, 외국인장기체류증의 재발급)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장기체류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장기체류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장기체류증을 분실하였거나 심히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는다.

제40조(외국인의 거주)

우리 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미성인은 외국인출생증을 발급받는다.

제41조(거주지의 이동수속)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외국인거주등록의 변경, 외국인거주등록증, 출생증의 재발급)

거주한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거주등록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4일안으로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변경등록을 하고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외국인거주등록증, 외국인출생증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을 경우에도 재발급받는다.

제44조(외국인의 려행)

거주한 외국인, 사사용무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발급한 려행증을 가지고 려행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외국인은 려행증에 해당 지역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국제기구대표기관 성원, 기타 공무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려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수 있다.

제5장 제 재

제45조(공민에게 주는 제재)

공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6조(외국인에게 주는 제재)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키거나 체류, 려행승인을 취소한다.

정상이 무거울 경우에는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7조(제재와 관련한 신소)

제재와 관련한 신소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제1장 무역법의 기본

제1조(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 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무역의 기본원칙)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제3조(다각화, 다양화원칙)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신용준수원칙)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최혜국대우, 자국민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민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무역회사

제11조(무역거래의 당사자)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의 당사자이다.

무역거래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

제12조(무역회사의 설립조건)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제13조(무역회사의 승인과 등록, 영업허가기관)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회사설립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립된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무역회사의 권리,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5조(무역회사의 거래범위)

무역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제16조(무역계약의 체결)

무역회사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수출입업무)

무역회사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무역회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거래, 결제방식)

무역회사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신용장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무역가격의 제정)

무역거래는 정해진 기준가격과 운임으로 한다.

대외기준가격과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국내기준가격과 운임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0조(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무역회사는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회사설립질서에 따른다.

제22조(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무역회사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무역회사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영업허가증회수사유)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년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무역회사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제25조(무역회사의 책임한계)

무역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회사의 책임은 다른 회사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제26조(무역회사의 채권, 채무)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회사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회사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무역회사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7조(무역회사의 취소등록)

통합되거나 해산되는 무역회사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치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한 무역회사는 무역거래를 할수 없다.

제3장 무역계획

제28조(무역계획의 내용)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9조(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0조(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무역계획초안을 받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대외관로, 시장가격 같은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해당한 의견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출입총액 같은 종합적인 계획과 중요물자의 지표만 밝혀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물자의 지표목록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무역계획을 월별로 분할작성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역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출입지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가 자체로 정한다.

제32조(수출입지표설정원칙과 결과보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수출입총액범위에서 수입지표는 승인된 업종에 맞게, 수출지표는 승인된 업종과 자체수출기지에서 생산한 지표로 정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무역화물수송계획은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연간, 분기별, 월별로 세운다.

무역회사에서 내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은 해당 기관이 종합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제34조(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5조(무역계획의 변경)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무역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제36조(무역사업지도기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37조(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38조(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0조(수출입의 제한경우)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제41조(수출입의 금지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제42조(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3조(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44조(상금, 특혜제공)

수출품, 수출협동품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였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제45조(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제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봉사원천을 개발하였을 경우 정해진데 따라 무역거래자격을 받을수 있다.

제46조(지방무역활성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47조(시, 군무역회사의 조직)

살림살이를 자체로 하나갈수 있을 정도의 수출기지를 꾸린 시(구역), 군에는 무역회사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시, 군무역회사의 운영)

시(구역), 군에 내오는 무역회사는 수출기지조성과 대외사업 같은것을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의 지도밑에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자체의 돈자리를 가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시(구역), 군에서 자체로 생산한 제품은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수출한다.

제49조(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 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50조(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1조(수출입활동의 중지, 영업허가중의 회수)

수출입을 제한하는 상품을 승인없이 수출입하였거나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중을 회수한다.

제5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무역회사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3조(분쟁해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주체 84(1995)년 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2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외경제계약법의 기본

제1조(대외경제계약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규
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협조와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대외경제계약의 분류)

대외경제계약에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계약이 속한다.

제3조(대외경제계약의 당사자)

대외경제계약의 우리측 당사자로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제4조(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원칙)

국가는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제5조(조약과 국제관례의 존중원칙)

국가는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도록
한다.

제6조(계약체결과 책임원칙)

국가는 대외경제계약당사자들이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으며 그 리행과정
에 생긴 채무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과 리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계약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감독통제할수 있다.

제8조(대외경제계약법의 규제대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은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리행에 대한 절
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제9조(계약체결범위와 신용상태의 확인)

계약당사자는 승인된 업종, 지표, 수량의 범위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의 법인등록과 재산, 리행담보 같은 신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은 중앙무역지도기판이 만든 표준계약서에 따라 맺는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달리 정하려 하거나 표준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의 승인대상)

공화국령역안에 외국투자기업을 창설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것과 관련한 계약, 거래액이 많거나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계약의 체결은 중앙무역지도기판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초안을 중앙무역지도기판 또는 해당 기관에 내고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방식)

계약체결은 계약당사자들이 참가하여 한다.

경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의 참가없이 한편 당사자가 제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제13조(계약의 체결형식)

계약체결은 서면으로 한다.

팩스나 전자우편 같은 통신수단으로 맺은 계약도 서면계약으로 인정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계약은 다음과 같은 때에 효력을 가진다.

1.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수표한 때
2.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효력발생조건이 이루어진 때
3.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때

제15조(위임, 위탁계약)

계약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도 맺을수 있다.

제16조(계약서의 부록과 계약전문서의 효력)

상품목록, 기술자료 같은것은 계약서의 부록으로 첨부한다.

계약을 맺기 전의 합의서나 통신교환문서 같은 문서는 계약이 맺어진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17조(계약서의 수표)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표한다.

제18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계약)

나라의 안전에 해를 주거나 경제적리익에 손해를 주는 계약, 기만이나 강요로 맺은 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장 대외경제계약의 리행

제19조(계약리행기간, 계약내용의 준수의무)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계약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없이 계약내용을 변경시켜 리행할수 없다.

제20조(계약당사자의 권리)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리행할 경우 그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정확한 리행을 요구할수 있으며 자기의 계약상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제21조(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의한 계약리행의 중지)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 자연재해, 봉쇄, 급성전염병발생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계약의무리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어찌할수 없는 사유의 발생과 내용, 범위를 곧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알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공증문건을 보내야 한다.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리행이 지연된 기간은 그만큼 연장된다.

제22조(상대방의 허물에 의한 계약리행의 중지)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의무리행을 태공하거나 계약을 리행할 능력이 부족한것 같은 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그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에게 계약리행을 중지한데 대하여 알려야 한다.

제23조(중지되었던 계약의무의 리행)

계약리행을 중지한 계약당사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상대편 계약당사자가 계약리행을 담보하는데 따라 계약의무리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동의)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못한 계약당사자는 그 의무를 계속 리행하려 할 경우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계약리행기간의 변경)

계약리행기간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제4장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제26조(계약의 양도)

계약당사자는 상대편 계약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자기의 계약상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계약의 양도기간은 계약리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일부 변경할수 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수정, 삭제, 보충이 속한다.

제28조(계약의 취소경우)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소할수 있다.

1. 정한 기일에 계약을 리행할수 없거나 그 리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당사자가 리유없이 계약의무리행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선언한 경우
3. 계약위반으로 계약체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커다란 경제적손실을 입은 경우
4. 계약을 리행하지 못한다에 대하여 시정할 기간을 주었으나 그 기간에 리행하지 못한 경우
5.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계약리행기간이상 지속되는 경우
6. 이밖에 계약에서 정한 취소조건이 발생한 경우

제29조(계약의 취소범위)

계약의 취소는 계약을 어겼거나 리행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0조(계약취소에 대한 권고)

계약을 승인한 기관은 해당 계약이 효력을 가진 때부터 6개월이상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도록 할수 있다.

제31조(계약에서 손해보상, 청산, 분쟁해결조항의 효력)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해보상, 청산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조항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제32조(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형식과 절차)

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계약을 양도, 변경,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승인한 기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5장 대외경제계약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제33조(보상청구권과 보상의무)

계약을 어긴 계약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보상청구권을 가지며 손해를 입힌 계약당사자는 보상의무를 진다.

제34조(위약금 또는 손해보상)

계약을 위반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은 화폐, 현물, 재산권으로 하거나 가격조절 또는 자체비용으로 허물을 없애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제35조(손해보상청구기간)

손해보상청구는 계약에서 정한 손해보상청구기간에 한다.

계약에 손해보상청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르며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시효기간에 할수 있다.

제36조(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손해보상청구기간)

보증조건이 설정된 계약대상의 허물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는 보증기간에 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한다.

보증기간에 계약대상의 허물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을 완전히 확증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먼저 알리고 허물이 확증된 다음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허물을 확증하는 기간이 보증하는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손해보상청구기간은 확증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37조(손해보상청구서의 제기)

손해보상을 받으려는 계약당사자는 손해보상청구서를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내야 한다.

손해보상청구서에는 계약서번호와 계약대상, 손해의 형태와 범위, 보상청구근거, 요구조건을 밝히고 해당 검사기관의 확인문건 또는 공증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손해보상과 그 거절)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계약당사자는 정한 기간에 손해보상을 청구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보상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손해보상청구거절은 보상청구기간 또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났거나 보상청구근거가 명백하지 못하거나 혹은 허물을 보여줄데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허물있는 계약대상물을 마음대로 처리한것 같은 경우에 한다.

제39조(리자, 연체료)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지적한 계약금과 손해보상금, 위약금 같은것을 정한 기간에 물지 않았을 경우 늦어진 일수에 해당하는 리자 또는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제40조(계약위반에 대한 책임면제)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행하지 못하였거나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책임면제사유를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41조(손해를 막을 의무, 보상받을수 없는 손해)

계약당사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것을 제때에 막아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받을수 없다.

제42조(분쟁해결)

계약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

주체89(2000)년 1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78호로 채택

제1장 가공무역법의 기본

제1조(가공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공무역법은 가공무역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외화수입을 늘이고 대외경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가공무역의 원칙)

국가는 가공무역을 장려한다.

가공무역은 거래대상자, 거래형식, 가공지표를 잘 선정하고 가공능력과 국제시장 수요를 타산하여 외화수입을 늘이며 신용을 지키는 원칙에서 한다.

제3조(가공무역의 형식)

가공무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받아 그 요구대로 가공, 조립하여주고 가공비를 받는 위탁가공무역과 외국기업으로부터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세관의 감독밑에 무관세로 수입하고 그것을 가공, 조립하여 수출하는 보세가공무역 같은 여러가지 형식으로 한다.

제4조(가공무역을 할수 있는 지역)

가공무역은 여러 지역에서 한다. 그러나 보세가공무역은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만 할수 있다.

제5조(가공무역의 당사자)

가공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필요에 따라 공장, 기업소도 가공무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급기관과 합의한다.

제6조(관련법규)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무역법과 대외경제계약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따른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가공무역을 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규에 따라 한다.

제7조(가공무역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가공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가공무역의 대상선정과 심의

제8조(가공무역대상선정의 요구)

가공무역대상의 선정은 가공무역의 선행공정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경제기술적잠재력과 신용있는 대상, 가공능력을 리용하여 리익을 많이 벌수 있는 대상, 과학기술발전과 해당 단위의 설비갱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전의 합의사항)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기업과 계약을 맺기 전에 품명, 수량, 생산보장기간, 상표, 원산지명, 가공비와 그 지불방법 같은것을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공무역신청의 심의기관)

가공무역신청의 심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지대관리운영기관이 심의한다.

제11조(가공무역신청서의 내용)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에 다음과 같은것을 밝힌 가공무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1. 위탁가공무역신청서에는 무역회사 또는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외국기업의 명칭과 소재지, 외국기업에서 제공받을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생산보장기간, 가공능력, 경제기술타산자료, 가공비와 그 계산기초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2. 보세가공무역신청서에는 보세지구명, 보세가공무역을 할 공장, 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업종, 가공능력, 수입할 원자재, 반제품, 부분품의 명세, 수입액, 가공제품명과 그 수량, 설비 및 기술상태, 수익성타산자료, 수출실현담보자료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가공무역승인을 할수 없는 대상)

가공제품생산을 맡아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상, 가공비를 낮게 정한 대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줄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가공무역승인을 할수 없다.

제13조(가공무역신청심의기간, 결과통지)

가공무역심의기관은 가공무역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가공무역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가공무역계약의 체결 및 리행

제14조(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계약을 맺을때 대한 요구)

가공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는것은 가공무역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중요담

보이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신청이 승인된 다음 외국기업과 가공무역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5조(가공무역계약서에 밝힐 사항)

위탁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원료, 반제품, 부분품명과 그 수량, 가공, 조립할 제품명과 그 수량, 상표, 원산지명, 생산보장기간, 가공비의 규모와 지불방법, 위약책임 및 손해보상, 분쟁해결 같은것을 밝히며 보세가공무역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거래상품명과 그 수량, 규격 및 품질, 가격, 제품을 주고받는 방법, 위약책임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제16조(세관등록)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계약을 맺은 날부터 5일안으로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리행, 담보금적립요구)

계약당사자는 가공무역계약을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에 계약리행담보금을 세울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18조(위약금지불 및 손해보상청구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위약금의 지불,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1. 정당한 리유없이 계약리행을 지연시켰거나 거절한 경우
2. 포장, 품질, 수량 같은것이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3. 계약에서 정한 가공비 또는 상품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4. 그밖의 계약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제19조(가공조립품의 접수거절사유, 위약금)

외국기업은 가공조립품의 포장을 계약조건대로 하지 않았거나 원료, 반제품, 부분품을 다른것으로 바꾸어 가공, 조립하였을 경우 재포장을 요구하거나 가공조립품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이 경우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20조(가공조립품을 넘겨받지 않을 경우의 처리)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이 가공조립품을 제때에 넘겨받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위약금과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가공조립품을 넘겨받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것을 판매 처분할수 있다.

제21조(계약의 변경과 그에 대한 통지)

가공무역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기간을 변경시킬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해당 가공무역심의기관과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제공된 기술의 비밀보장)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계약에 따라 외국기업이 제공한 기술의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제4장 가공무역기업의 경영

제23조(경영질서준수의 요구)

경영질서를 바로세우는것은 가공무역의 중요한 요구이다.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가 정한 질서대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4조(물자반입에 대한 허가와 관세면제)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에 필요한 원료, 반제품, 포장재, 기계설비, 경영용물자를 외국기업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입할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받지 않으며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국내로력, 원료, 자금 같은것의 신청과 공급)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작업에 필요한 국내의 로력, 원료, 동력, 용수, 포장재, 자금 같은것의 소요량을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상급기관은 제기된 소요량을 검토하고 국가계획 또는 지대계획에 맞물려 공급해주어야 한다.

제26조(가공의뢰계약)

가공능력의 부족으로 일부 특수한 부분을 가공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공장, 기업소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기업에 그 가공을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맺는다.

제27조(국가의무납부금의 납부, 감가상각금납부면제대상)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으로 얻은 수입가운데서 정해진 몫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가공무역에 쓰이는 기계설비, 료전기재 같은 고정재산은 감가상각금납부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제28조(번 외화의 리용)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가공무역을 하여 번 외화를 거래은행에 넣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몫을 기계설비, 경영용물자, 우대상품의 구입과 무역상담, 기술교류, 연구 및 실습비용으로 쓸수 있다.

제29조(당사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가공무역을 하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번 외화를 류용하거나 외국에 예금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업종, 지표를 변경하거나 늘이는 행위
3. 가공조립품을 국내에 파는 행위
4. 가공용물자를 류용하는 행위

제30조(세관에 통지하여야 할 사유)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국가적조치로 가공용물자를 다른채 돌려쓰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려 할 경우 계약상대측과 사전합의를 한 다음 해당 세관에 알려야 한다.

제31조(가공무역업종변경신청 및 심의승인)

가공무역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신청문건을 가공무역 심의기관에 내야 한다.

가공무역심의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채무의 보상)

가공무역을 하는 과정에 생긴 채무는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의 비용으로 보상한다.

제33조(기술자초빙 및 견습)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제품의 가공, 조립을 위하여 다른 나라 기업의 기술적 방조를 받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를 초빙하거나 자기 기술자, 로동자를 기술전습을 위하여 외국에 보낼수 있다.

제34조(외국기업품질검사원의 체류, 가공설비의 반출입)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는 외국기업의 품질검사원을 체류시킬수 있으며 외국기업이 제공하였던 가공설비를 교체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반출입할수 있다.

제35조(가공무역경영기간, 세관등록취소사유)

가공무역기업의 경영기간은 가공무역계약기간과 같다.

가공무역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그밖의 사유로 가공무역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등록취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요구)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가공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공무역사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7조(지도기관)

가공무역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을 통하여 가공무역사업을 장악지도한다.

제38조(상금 같은 우대실시사유)

가공무역을 하여 국가에 큰 이익을 준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에는 상금을 주는 것 같은 우대를 한다.

제39조(세관의 통제강화)

중앙세관지도기관은 가공무역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세관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세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운영기관과의 연계밑에 가공무역을 위하여 들여온 물자를 류용하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영업중지, 가공무역승인취소, 몰수, 벌금부과사유)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가 가공용물자를 다른데 돌려썼거나 가공품을 국내에 판매하였거나 번 외화를 류용 또는 해외에 예금시켰거나 가공무역업종을 변경 또는 확대시켜 가공무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가공무역승인을 취소시키며 해당 물자를 몰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가공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무역회사, 공장, 기업소, 지도통제기관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분쟁해결)

가공무역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

주체87(1998)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기술수출입법의 기본

제1조(기술수출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법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 수출입허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하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기술의 수출입대상)

기술의 수출입대상에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술과 상표, 공업도안, 과학기술 저작, 기술비결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기술수출을 늘여나가도록 한다.

제3조(수출입기술의 심의원칙)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정확히 심의하는것은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과학기술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체계를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기술의 수출입허가원칙)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지표를 승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출입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하도록 한다.

제5조(기술수출입계획 및 계약규률준수원칙)

기술의 수출입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기술수출입의 당사자)

기술의 수출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가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기술수출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기술의 수출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수출입기술의 심의

제8조(수출입기술의 심의기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는 기술수출입허가의 선행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에 대하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수출입기술의 심의신청)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심의신청문건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심의신청문건에는 기술심의신청서, 기술문건, 기술평정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입기술의 심의기간, 내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기술의 수출입심의에서는 과학기술적담보, 기술경제적효과성, 수출입가능성, 기밀담보 같은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기술의 심의의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필요한 분석을 의뢰하거나 심의에 전문일군을 참가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출입기술의 심의결과통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의 수출입심의결과를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기술의 수출입허가

제13조(기술수출입허가기관)

기술의 수출입허가를 바로하는것은 기술수출입사업발전의 기본담보이다.

기술수출입허가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4조(기술수출입허가신청)

기술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에는 수출입계약서를 첨부하며 거래할 나라, 회사명칭, 기술명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의 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검토하고 허가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부결할데 대한 결정문건은 기술수출입허가신청문건을 제기한 무역회사에 보내야 한다.

제16조(기술수출입허가방식)

기술의 수출입허가는 기술진당으로 한다.

같은 기술이라도 수요자가 다를 경우에는 수출입허가를 다시 받는다.

제17조(기술수출우선권과 위탁수출)

기술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수출조건을 갖추고있을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수출우선권을 가진다. 그러나 기술수출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무역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수출입허가취소)

내각은 필요에 따라 기술수출입거래를 중지시키고 기술수출입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과 리익에 지장을 줄수 있는 기술은 수출입할수 없다.

제19조(수출입기술의 반출, 반입승인)

수출입허가를 받은 기술은 반출, 반입승인을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기술의 반출, 반입승인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0조(기술의 수출입승인문건검토)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허가문건, 가격승인문건, 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반출, 반입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21조(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기술수출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22조(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술수출입계획작성,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판로개척 같은 기술수출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수출입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적담보, 기술경제적효과성,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전망 같은것을 타산하여 기술수출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술수출입계획에는 기술수출계획, 기술수입계획, 기술준비계획, 기술준비협동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제24조(기술수출입계약의 체결과 리행)

무역회사는 기술수출입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기술수출입계약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수출입거래의 기준가격, 운임)

기술수출입거래는 정해진 기준가격, 운임으로 한다.
기준가격, 운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제26조(기술수출입거래방식)

무역회사는 정해진 은행을 통한 신용장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으로 기술수출입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수출입기술의 질과 납입기일보장)

세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할수 있게 제때에 검사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기술수출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입하려는 기술의 준비, 반출입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9조(번 외화의 리용)

기술을 수출하여 번 외화의 일정한 몫은 과학기술발전에 쓴다.

제30조(기술수출입의 중지, 기술자료, 번 외화의 몰수)

수출입하려는 기술을 심의받지 않았거나 기술의 수출입허가, 가격승인, 반출입승인 같은 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입을 중지시키거나 기술자료, 번 외화를 몰수한다.

제3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

주체98(2009)년 11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7호로 채택

제1장 종합설비수입법의 기본

제1조(종합설비수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종합설비수입법은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조립과 시운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설비란 공장, 학교, 병원, 배, 방송국 같은 해당 대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일식으로 갖추어진 설비이다.
2. 납입자란 계약에 따라 종합설비의 납입의무를 진 다른 나라의 회사이다.
3. 종합설비수입회사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 또는 종합설비를 수입하도록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이다.
4. 수요자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를 운영할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5. 시공주기관이란 수입한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제3조(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 심의원칙)

종합설비수입계획의 작성과 심의는 종합설비수입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원칙)

국가는 종합설비의 반입에서 기일을 보장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5조(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원칙)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은 시공주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에서 시공주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표준조작법과 과학기술적요구를 지키도록 한다.

제6조(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종합설비의 수입당사자)

종합설비의 수입은 종합설비를 전문 수출입하는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도 종합설비를 수입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설비의 수입계획과 계약

제8조(종합설비수입의 계획작성단계)

종합설비의 수입계획은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기술합의단계를 거쳐 만든 초안을 국가계획기관이 심의, 승인하는 방법으로 세운다.

수요자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과 기술합의 및 심의, 계획작성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9조(예비기술과제의 작성기관)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의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도 예비기술과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예비기술과제에 기재할 사항)

예비기술과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종합설비의 이름과 기술적특성
2. 설비별능력과 운영조건
3. 납입자나라이름과 납입기간
4. 종합설비의 수송조건
5. 종합설비의 가격, 부피, 질량
6. 종합설비의 수입근거
7.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자료

제11조(예비기술과제의 합의)

수요자기관은 작성한 예비기술과제를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내고 합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10일안으로,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20일안으로 예비기술과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를 수입할 무역회사를 정해주어야 한다.

제12조(예비기술과제의 승인)

수요자기관은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예비기술과제를 국가계획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예비기술과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수요자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수입주문서와 예비제안서)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회사와 함께 승인받은 예비기술과제에 준하여 수입주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입주문서를 납입자에게 보내어 예비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예비제안서는 입찰의 방법으로 받을수도 있다.

제14조(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 및 확정제안서의 접수)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수요자기관과 예비제안서에 대한 기술합의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보내어 확정제안서를 받아야 한다.

납입자로부터 받은 확정제안서는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5조(납입자가 요구하는 자료보장)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납입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자료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보낸다.

제16조(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작성)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각각 작성하여 국가계획기관에 낸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7조(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의 심의, 승인)

국가계획기관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낸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계획초안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시달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설비수입계획의 변경)

종합설비수입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 또는 종합설비수입회사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와의 계약체결)

종합설비수입계획을 시달받은 수요자기관과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은 예비기술과제에 반영된 사항에 준하여 맺어야 한다.

제20조(납입자와의 종합설비수입계약체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수입계획, 수요자기관과 맺은 계약에 기초하여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납입자와 종합설비수입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사본을 수요자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3장 종합설비의 반입과 검수

제21조(종합설비의 반입수속)

종합설비반입수속은 종합설비수입회사가 한다.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에 정해진 문건을 내고 종합설비의 반입을 위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문건넘겨주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납입자로부터 종합설비의 수송 및 보관관리와 관련한 기술 규정, 지도서 그밖의 필요한 자료들을 넘겨받아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기 60일전에 수요자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23조(국경통과지점의 변경)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을 변경하려는 수요자기관은 설비납입기간이 시작되기 3개월전에 그 사유를 종합설비수입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경통과지점의 변경통지를 받은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의 국경통과지점 변경신청문건을 세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종합설비의 넘겨주기)

종합설비수입회사는 종합설비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수요자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화물송장, 계산서를 함께 넘겨준다.

제25조(종합설비검수조의 조직)

수요자기관은 검수조를 조직하고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검수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 시공주기관과 해당 기관의 일군들을 망라시켜야 한다.

제26조(종합설비의 도착검수)

종합설비의 도착검수는 국경통과지점 또는 납입계약에 따르는 도착지에서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가 도착하면 세관과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밀에 봉인상태와 수량, 외부포장상태를 확인하고 그 정형을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종합설비의 해체검수)

종합설비의 해체검수는 대상건설과 조립순위에 따라 납입자와 세관, 수출입품검사기관의 립회밀에 한다.

검수조는 종합설비의 포장을 해체하기 전에 포장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납입자가 보낸 출하문건, 포장명세서에 기초하여 설비의 수량, 기술문건 같은것을 확인하고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설비의 보관)

종합설비의 보관은 수요자기관이 한다.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를 기본공정설비, 건설조립설비, 자재, 시약, 기공구,

예비부속품으로 나누고 건설 및 조립순위, 공정별, 부분별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종합설비의 위탁보관)

수요자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설비를 보관할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시공주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공주기관이 종합설비를 보관관리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

제30조(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의 넘겨주기)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에 종합설비와 그 조립 및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종합설비와 그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문건을 종합설비수입회사가 넘겨줄수도 있다.

제31조(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의 작성)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조립을 위한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자와 합의한 설계의 요구와 기술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2조(종합설비의 조립)

종합설비의 조립은 시공조직설계, 공정계획에 따라 한다.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설비와 기공구, 자재를 미리 준비하며 조립기일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33조(시공주기관의 변경)

수요자기관은 시공주기관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요자기관의 립회밀에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4조(설비별, 공정별시운전)

시공주기관은 종합설비의 시운전을 하기 전에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먼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상태, 시운전정형과 관련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5조(종합적인 시운전)

시공주기관은 계약조건에 맞게 설비별, 공정별시운전을 한 다음 종합적인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시운전에는 수요자기관, 시공주기관, 종합설비수입회사, 납입자가 참가한다.

제36조(종합설비의 가동상태 확인 및 인계인수)

시공주기판과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시운전이 끝나면 납입자와 합의한 생산능력, 제품의 질, 기술조건, 시공 및 조립상태 같은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설비의 가동상태가 계약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종합설비수입회사의 립회밀에 납입자와 시공주기판, 수요자기관사이 인계인수조서를 만들고 종합설비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7조(종합설비의 운영을 위한 준비)

수요자기관은 종합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로력을 준비하고 기술자, 기능공을 미리 양성하며 시운전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료, 자재, 연료 같은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제38조(기술자파견 및 초청)

수요자기판과 시공주기판은 종합설비의 조립,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 기능을 배우오도록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여 방조를 받을 수 있다.

기술자를 다른 나라에 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기술자를 초청하는 사업은 종합설비수입회사를 통하여 한다.

제5장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9조(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밀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이 정확히 진행되도록 그에 대한 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자료와 설명의 요구, 전문기관의 인입)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종합설비수입정형을 료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할수 있으며 제기된 기술감정, 시험분석을 전문기관에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며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종합설비수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종합설비수입을 위한 예비기술과제의 작성, 합의 및 심의절차를 지키지 않아 종합설비수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종합설비를 수입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종합설비수입계획을 변경시켰을 경우
4.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계약을 잘못 맺어 손해를 주었을 경우
5. 반입수속절차를 어기고 종합설비를 반입하였을 경우
6. 종합설비에 대한 검수를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7. 종합설비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그것을 분실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종합설비를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9. 종합설비의 조립과 시운전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10. 종합설비의 비정상상태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해당한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필요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11. 종합설비의 수송을 제때에 하지 않아 그 조립과 시운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기타 종합설비수입과 관련한 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제4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42조의 행위로 나라의 경제발전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

주체98(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6호로 채택

제1조(수출품원산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경제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품원산지란 수출품을 생산한 나라의 명칭이다.
2. 수출품원산지증명이란 수출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것을 확인하여주는 사업이다.
3. 수출품원산지증명서란 원산지증명기관이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인증문서이다.
4. 수출당사자란 다른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다.
5. 수입당사자란 공화국령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제3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효력)

수출품의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사이에 맺은 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수출품의 원산지증명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사업은 조선상업회의소와 해당기관이 한다.

제6조(원산지를 우리 나라로 하는 수출품)

다음에 해당되는 수출품의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1. 공화국령역에서 채취한 광물과 그 가공품
2. 공화국령역에서 채집한 식물과 그 가공품

3. 공화국령역에서 사육한 동물과 그 가공품
4. 공화국령역에서 잡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
5. 우리 나라의 원료, 자재로 생산한 제품
6. 다른 나라에서 부분품을 들여다가 새롭게 만든 제품
7. 수입한 원료, 자재를 리용하여 공화국령역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제품

제7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원칙)

원산지증명기관은 해당 수출품이 원산지증명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수출품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품원산지증명의 신청당사자)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신청은 수입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수출당사자가 한다.

수출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제9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의 원산지증명을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를 내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품명, 수량, 생산지 같은것을 밝히고 신청기관의 공인을 찍는다.

제10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증명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품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명칭, 수송수단, 품명, 수량, 발급날자 같은것을 밝히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부수에 따르는 유일번호와 인증도장을 찍는다.

제11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의 부결)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신청서의 내용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고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신청자가 결함을 고치지 않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제12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언어)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표기는 조선어로 한다.

필요에 따라 조선어와 함께 국제공용어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표기할수도 있다.

제13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원산지증명기관에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있다. 그러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을 할수 없다.

제14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 기재할 내용)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에는 수출당사자의 명칭, 주소, 재발급리유,

발급받았던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부수, 발급일자, 번호 같은것을 밝히고 원산지증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표식을 하고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원본에 기입했던 번호를 다시 기입한다.

제16조(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회수)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오손리유로 그것을 다시 발급할 경우 오손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7조(요금)

수출당사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정해진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18조(자료의 보관기일)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한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원산지증명관련자료요구에 대한 처리)

원산지증명기관은 수입당사자가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알려줄수 있다.

제20조(감독통제)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증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중지, 회수, 벌금부과)

수출품원산지증명과 관련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였거나 승인없이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수출품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하거나 발급한 수출품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23조(신소와 그 처리)

수출품원산지증명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6호로 채택

제1조(상업회의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법은 상업회의소의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업회의소란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한 무역촉진단체이다.
2. 회원이란 상업회의소에 가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법인이다.

제3조(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원칙)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제적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상업회의소를 설립한다.

국가는 상업회의소의 활동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제4조(상업회의소활동에 대한 법적보호)

상업회의소는 자기의 합법적인 활동에 대하여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5조(적용대상)

이 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제6조(상업회의소의 구성)

상업회의소는 소장, 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에 필요한 수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

상업회의소의 최고결의기관은 회원총회이다.

제8조(회원총회의 소집)

회원총회는 매해 1차씩 상업회의소가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상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비정기회원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9조(회원총회의 소집통지)

상업회의소는 회원총회를 소집하기 1개월전에 회의소집날자와 장소, 토의문제 같은것을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업회의소의 운영자금)

상업회의소는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 같은것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운영한다.
회원가입비와 회비, 봉사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업회의소가 정한다.

제11조(상업회의소 분소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필요한 지역에 분소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분소는 상업회의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

제12조(사무소, 대표부의 설치)

상업회의소는 다른 나라에 사무소, 대표부를 두고 운영할수 있다.

제13조(비상설부문별위원회의 조직)

상업회의소는 자기 사업을 위하여 비상설부문별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비상설부문별위원회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토의한다.

제14조(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

상업회의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 상업회의소, 기업, 단체들과 대외경제협력 및 교류를 위한 합의서 같은것을 체결하고 리행한다.
2. 법인확인서, 수출입상품용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불가항력증명서 같은 대외무역활동에 필요한 인증문건들을 발급한다.
3. 국제무역거래조건의 해석과 관련한 규칙, 신용장통일규칙, 표준상업양식 같은 국제적인 판례, 관습, 협정내용들을 회원들에게 보급한다.
4.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박람회, 전람회, 상담회 같은것을 조직한다.
5.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기업 또는 개인사이에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상업적연계를 맺어준다.
6. 수출상품, 특허기술제품, 상표의 소개, 수출기지조성, 판로개척, 물자교류, 투자유치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문봉사를 한다.
7. 특허권소유자 또는 상표권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특허와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대리봉사를 한다.

제15조(회원의 가입대상)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가입할수 있다.

제16조(회원의 가입신청)

상업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은 상업회의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원가입신청서에는 상업회의소가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회원가입심의와 회원등록)

회원가입신청서를 접수한 상업회의소는 그것을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원가입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회비납부)

회원은 상업회의소에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루설금지)

상업회의소는 사업과정에 알게 된 회원들의 내부자료를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회원의 제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제명한다.

상업회의소는 회원이 제명되었을 경우 회원등록대에서 삭제하고 회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신소청원과 그에 대한 료해처리)

상업회의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 수있다.

해당 기관은 신소청원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

주체100(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1호로 채택

제1장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기본

제1조(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제철도화물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당사자들의 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당사자들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신용준수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서 당사자들이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국제철도화물수송의 보장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조직과 방법을 개선하며 수송수단을 현대화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제때에 실어나르도록 한다.

제5조(국제철도화물수송의 지도기관)

국제철도화물수송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대외협조와 교류원칙)

국가는 국제철도화물수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7조(법의 적용)

이 법은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적용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가 승인한 철도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장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 및 계약

제8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작성)

국제철도화물수송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과 그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제9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분기별로 된 연간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시달받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월별로 구체화, 세부화하여 해당 철도운수기관과 철도를 통하여 화물을 다른 나라에 내가거나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하래부터 짐임자라고 한다.)에 보내야 한다.

제10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변경)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계획기관에 변경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는다.

제11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로는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가 될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에 근거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12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제의)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 화물의 품명과 수량, 발송역과 통과하는 국경역, 도착역, 화물을 보내는자와 받는자의 이름, 수송조건, 수송기간 같은것을 밝힌 짐부침문건을 해당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체결)

짐부침문건을 받은 철도운수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아야 한다.

짐부침문건과 화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짐부침문건에 발송역의 확인도장을 찍는다.

제14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효력)

철도운수기관의 확인도장이 찍힌 짐부침문건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문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15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변경)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철도화물수송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금지대상)

반출입이 금지된 물자, 철도수송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3장 국제철도화물의 수송자

제17조(국제철도화물수송의 담당자)

국제철도화물수송의 담당자는 철도운수기관이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정해진 기간안에 정확히 수송하여야 한다.

제18조(철도운수기관의 책임기간)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을 넘겨받은 때부터 넘겨줄 때까지 계약에 정해진 범위에서 해당 화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9조(국제철도화물의 취급역과 배차조직)

국제철도화물은 정해진 화물역에서 취급한다.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역에 화차를 제때에 대야 한다.

제20조(국제철도화물의 실기)

국제철도화물은 차관짐, 적은짐, 짐함짐으로 나누어 실는다.

철도운수기관과 짐임자는 화물을 화차의 적재량과 해당한 규정의 요구대로 실어야 한다.

제21조(국제철도화물의 보관관리)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이 류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수송하는 화물은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넘겨줄수 없다.

제22조(국제철도화물의 직송)

철도운수기관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목적지까지 국제철도화물을 직송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철도화물의 도착통지)

철도운수기관은 국제철도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2시간전에 짐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철도화물의 넘겨주기)

철도운수기관은 수송한 국제철도화물을 짐임자에게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도착통지를 받고도 짐임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짐임자에게 알리고 화물을 임의의 창고나 장소에 보관시킬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25조(국제철도화물의 실기와 부리기작업)

국제철도화물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계약에서 정한 당사자가 한다.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화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싣고부려야 한다.

제26조(철도운수기관의 손해보상책임)

철도운수기관은 수송기간이 지연되었거나 수송과정에 국제철도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실, 손상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보상액은 화물전부의 값을 초과할수 없다.

제27조(철도운수기관의 책임면제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의 발생에 대하여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화물자체의 자연적특성 또는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짐임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4. 이밖에 철도운수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책임면제를 받으려는자의 입증책임)

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 넘겨주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철도운수기관은 자기의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9조(책임면제권의 상실)

철도운수기관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면서도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짐임자

제30조(국제철도화물의 넘겨주기)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 따라 철도운수기관에 화물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 건강과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실기와 보관관리, 부러기에 적합한 화물을 넘겨주어야 한다.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화물은 넘겨줄 수 없다.

제31조(국제철도화물에 대한 자료제공)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의 품명, 수량, 포장, 표시, 질량, 부피, 성질 같은 것과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철도운수기관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철도운수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32조(실물 화물의 보장)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에서 정한 기일 안에 화물신기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화물신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화물신기를 중단없이 할 수 있도록 화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국제철도화물의 수속)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 가격승인 같은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운임 및 요금)

짐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하는데 드는 운임 및 요금을 철도운수기관에 물어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5조(국제철도화물의 넘겨받기)

집임자는 국제철도화물이 도착하면 철도운수기관으로부터 화물을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집임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도착한 화물의 손실, 손상정형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검사비용은 검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검사비용을 부담한자는 화물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있는자에게 검사비용반환청구를 할수 있다.

제36조(국제철도화물의 손실, 손상에 대한 통지)

집임자는 넘겨받은 국제철도화물이 손실, 손상되었을 경우 화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14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수기관과 함께 확인한 화물에 대하여서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수 있다.

정해진 기간안에 화물의 손실, 손상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해보상청구권은 소멸된다.

제37조(집임자의 손해보상청구)

집임자는 국제철도화물수송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킨 철도운수기관에 손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근거와 금액을 밝힌 손해보상청구서와 짐부침문건, 해당 철도역에서 작성한 사고조서를 정해진 기일안으로 철도운수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철도운수기관은 손해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의 리용)

집임자와 철도운수기관은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리용하여 국제철도화물을 수송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송이 끝나면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을 제때에 돌려보내야 한다.

다른 나라 화차와 짐함은 국내철도화물수송에 리용할수 없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체차료의 부과)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초과시킨 경우에는 허물있는자에게 해당한 체차료를 물린다.

제40조(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철도화물수송에 지장을 준 당사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1조(신소와 그 처리)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해결)

국제철도화물수송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주체 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17호로 채택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84호로 수정보충
주체 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780호로 수정보충
주체 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991호로 수정보충

제1조(외국인투자법의 사명과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은 우리 나라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그들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외국투자관계의 기본법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가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산이나 재산권, 기술비결을 들여오는것이다.
2. 외국인투자가란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다.
3. 외국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우리 나라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다.
5.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출자몫을 상환하거나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6.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운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7. 외국인기업이란 외국인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8. 외국기업이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9. 외국투자은행이란 우리 나라에 설립한 합영은행,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다.
10. 특수경제지대란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투자, 생산, 무역, 봉사와 같은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창설)

외국투자자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을 창설운영할수 있

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투자관리기관에는 해당 중앙기관과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이 속한다.

제4조(외국투자자의 권리와 이익보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투자당사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우리 나라에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수 있다.

제6조(투자부문 및 투자방식)

외국투자자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류통,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7조(투자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장려부문 투자의 우대)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창설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외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보장)

국가는 특수경제지대안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에 물자구입 및 반출입, 제품판매, 로력채용, 세금납부, 토지이용 같은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10조(외국투자자들의 입출국편리보장)

국가는 우리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입출국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투자의 금지 및 제한대상)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저해를 주는 대상
2. 자원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3.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4.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5. 경제적효과성이 적은 대상

제12조(투자재산과 재산권)

외국투자자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같은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은행은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내올수 있으며 다른 나라 회사들과 연합할수 있다.

제14조(법인자격대상)

외국인투자기업과 합영은행, 외국은행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외국은행지점은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토지의 임대기간)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여준다.

토지임대기간은 최고 50년까지로 한다.

임대받은 토지는 토지임대기관의 승인밑에 임대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저당잡힐수 있다.

제16조(로력의 채용)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7조(세금의 납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투자은행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재산세 같은 세금을 정해진데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리윤의 재투자)

외국투자는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19조(투자재산의 보호)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은행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거두어들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며 법적절차를 거쳐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해준다.

제20조(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 또는 은행업무에서 얻은 합법적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 또는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21조(경영비밀의 보장)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자가와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제22조(분쟁해결)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 영 법

주체 73(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호로 채택
주체 83(1994)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4호로 수정보충
주체 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 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 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 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 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 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 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3호로 수정보충

제1장 합병법의 기본

제1조(합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병법은 합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합병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영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합영부문과 장려대상)

합영은 기계공업, 전자공업, 정보산업, 과학기술, 경공업, 농업, 림업, 수산업, 건설건설공업, 교통운수, 금융 같은 여러 부문에서 할수 있다.

국가는 첨단기술의 도입,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생산, 하부구조건설 같은 대상의 합병을 장려한다.

제4조(합영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

합영기업은 경영활동과정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등록자본으로 책임진다.

제5조(합영기업의 소유권과 독자성)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제6조(합영기업의 법인자격)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등록된 날부터 우리 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합영기업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제7조(합영기업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영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영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8조(법의 적용)

합영기업의 창설, 운영, 해산 및 청산은 이 법에 따라 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합영기업의 창설

제9조(합영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영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들은 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영계약서사본, 합영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영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0조(합영기업의 등록)

합영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1조(출자몫, 출자재산과 재산권)

합영기업에 출자하는 몫은 합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영당사자들은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공업소유권, 토지이용권, 자원개발권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 재산 또는 재산권의 값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12조(출자몫의 양도)

합영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영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합영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출수 있다.

제14조(출자기간, 지적재산권의 출자)

합영당사자는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출자는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등록자본)

합영기업의 등록자본은 총투자액의 30~50% 이상 되어야 한다.

합영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인 경우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은 줄일 수 없다.

제3장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제16조(리사회와 그 지위)

합영기업에는 리사회를 둔다.

리사회는 합영기업의 최고결의기관이다.

제17조(리사회 의 권능)

합영기업의 리사회에서는 규약의 수정보충, 기업의 발전대책, 등록자본의 증가, 경영계획, 결산과 분배,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검열원의 임명 및 해임, 기업의 해산 같은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8조(합영기업의 관리성원)

합영기업에는 책임자, 부책임자, 재정회계원을 두며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둘 수 있다.

책임자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19조(합영기업의 재정검열원)

합영기업에는 그 기업의 관리일군이 아닌 성원으로 재정검열원을 둔다.

재정검열원은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리사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합영기업의 관리운영기준)

합영기업은 규약, 리사회의 결정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제21조(합영기업의 조업기간)

합영기업은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조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조업기일을 연장한 기업에는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제22조(합영기업의 영업허가, 조업일)

합영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영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23조(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합영기업은 정해진 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해당 계획을 내야 한다.

제24조(관세의 부과)

합영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25조(합영기업의 업종)

합영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로력채용)

합영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제27조(로력의 관리)

합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노동법규에 따라 로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합영기업의 돈자리)

합영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9조(자금의 대부)

합영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대부받을 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정해진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30조(재정관리와 회계계산)

합영기업은 재정관리와 회계계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31조(합영기업의 보험가입)

합영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32조(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보장)

합영기업의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합영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합병기업의 결산과 분배

제33조(합병기업의 결산년도)

합병기업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년간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34조(합병기업의 결산방법)

합병기업의 결산은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하고 결산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예비기금의 적립)

합병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해마다 얻은 결산리윤의 5%를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합병기업의 결산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만 쓸수 있다.

제36조(기금의 종류와 조성)

합병기업은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종업원들을 위한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리용대상과 범위는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다.

제37조(리윤의 분배)

합병기업은 결산문건을 재정검열원의 검열을 받고 리사회에서 비준한 다음 리윤을 분배하여야 한다.

리윤분배는 결산리윤에서 소득세를 바치고 예비기금을 비롯한 필요한 기금을 공제한 다음 출자몹에 따라 합병당사자들사이에 나누는 방법으로 한다.

제38조(세금의 납부 및 감면)

합병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병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39조(기업손실의 보상)

합병기업은 당해년도의 결산리윤에서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기간을 현속하여 4년을 넘길수 없다.

제40조(회계결산)

합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41조(리윤의 재투자)

외국측 투자가는 합병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 나라에 재투자할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수 있다.

제42조(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영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경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5장 합영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43조(합영기업의 해산사유)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의 만료, 지불능력의 상실, 당사자의 계약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을 경우 해산된다.

제44조(합영기업의 만기전 해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결정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이 경우 청산위원회는 리사회가 조직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영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5조(합영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리사회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46조(분쟁해결)

합영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 작 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2호로 수정보충

제1조(합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합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합작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합작의 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합작을 장려한다.

제4조(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의 합작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합작투자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작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이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6조(합작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는 합작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작계약서사본, 합작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 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합작기업의 등록)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8조(영업허가와 조업일)

합작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9조(합작기업의 업종)

합작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출자몹의 양도)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몹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로력의 채용)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2조(관세의 부과)

합작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3조(보험가입)

합작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14조(투자의 상황과 리윤분배)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황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기업소득의 우선적리용)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황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수 있다.

제16조(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작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영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17조(공동협의기구)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로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8조(회계결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19조(세금납부)

합작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작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0조(합작기업의 해산)

합작당사자들은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상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있는 당사자가 진다.

제21조(청산위원회의 조직)

합작당사자들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

제22조(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23조(분쟁해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31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기업법의 기본

제1조(외국인기업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은 외국인기업의 창설운동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외국인기업의 정의)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자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기업의 창설부문과 창설금지대상기업)

외국투자자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료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공업과 운수 및 봉사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외국인기업을 창설운영할수 있다.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수 없다.

제4조(투자보호원칙)

국가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5조(외국투자자의 법규준수의무)

외국투자자는 우리 나라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정해진 지역에 창설운영되는 외국인기업에 적용한다.

제2장 외국인기업의 창설

제7조(외국인기업 창설신청문건의 제출)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려는 경우 기업창설신청문건을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창설신청문건에는 기업의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종업원수, 존속기간 같은 사항을 밝힌 기업창설신청서와 규약사본, 경제기술라산서, 투자가의 자본신용확인서 같은것이 속한다.

제8조(외국인기업창설신청의 심의, 기업의 창설일)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업창설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낸다.

제9조(외국인기업의 등록)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등록, 세무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10조(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설립)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제11조(건설의 위탁)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을 창설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 나라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제12조(투자기간)

외국투자가는 외국인기업창설승인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13조(외국인기업창설승인의 취소사유)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가가 정한 투자기간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인기업창설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장 외국인기업의 경영활동

제14조(업종의 변경)

외국인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생산 및 수출입계획의 제출)

외국인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년, 분기 생산 및 수출입계획을 내야 한다.

제16조(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판매)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데 따라 우리 나라에서 원료, 자재,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17조(외국인기업의 돈자리)

외국인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 또는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화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 수 있다.

제18조(재정회계)

외국인기업은 재정회계문건을 기업에 두어야 한다.

기업의 재정관리와 회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하는 재정회계법규에 따라 한다.

제19조(로력의 채용)

외국인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일부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직업동맹조직)

외국인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조직을 내올 수 있다.

직업동맹조직은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기업과 노동조건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외국인기업은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리윤의 재투자과 국외송금)

외국인기업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리윤을 재투자할 수 있으며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규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외국인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에 들어야 한다.

제23조(세금의 납부)

외국인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외국인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24조(관세의 면제)

외국인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내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5조(등록자본)

외국인기업은 등록자본을 늘일 수 있다.

등록자본은 존속기간안에 줄일 수 없다.

제26조(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의 료해)

투자관리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인기업의 투자 및 세금납부정형을 료해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기업의 해산과 분쟁해결

제27조(기업의 해산 및 존속기간연장)

외국인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8조(제재)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기업해산 같은 제재를 준다.

제29조(기업의 해산 및 파산등록과 재산처리)

외국인기업은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기업의 해산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수 없다.

제30조(분쟁해결)

외국인기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

주체82(1993)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2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1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은행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은행법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분야에서의 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외국투자은행의 분류와 설립지역)

외국투자자는 우리 나라에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외국투자은행에는 합영은행과 외국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이 속한다.
외국인은행과 외국은행지점은 특수경제지대에 설립할수 있다.

제3조(외국투자은행의 소유권, 경영활동의 독자성)

외국투자은행은 은행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제4조(외국투자은행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

국가는 우리 나라에 설립된 외국투자은행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제5조(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법규)

외국투자은행의 관리운영은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제6조(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은행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은행이 한다.

제7조(법의 규제내용)

이 법은 외국투자은행의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제2장 외국투자은행의 설립과 해산

제8조(외국투자은행의 설립신청서제출)

외국투자은행을 설립하려는 투자가는 은행명칭, 책임자의 이름과 경력, 등록자본금, 불입자본금, 운영자금, 출자비율, 업무내용 같은것을 밝힌 은행설립신청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9조(합영은행의 설립신청)

합영은행의 설립신청은 합영당사자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합영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합영계약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투자가의 영업허가증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0조(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

외국인은행의 설립신청은 외국투자가가 한다.

은행설립신청서에는 외국인은행의 규약, 경제타산서, 본국의 은행감독기관 동의서, 투자가의 재정상태표, 영업허가증사본,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

외국은행지점의 설립신청은 외국은행본점이 한다.

은행지점설립신청서에는 본점의 규약, 년차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와 본점의 영업허가증사본, 지점의 세무 및 채무에 대하여 책임진다는 보증서, 지점의 경제타산서, 본국의 은행감독기관 동의서, 외국환자업무승인문건사본 같은것을 첨부한다.

제12조(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과 영업허가)

외국투자은행설립신청서를 접수한 중앙은행은 50일안에 은행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외국투자은행설립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3조(외국투자은행의 주소등록, 세무등록)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은행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소등록을 한 외국투자은행은 주소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투자은행의 해산사유와 등록취소수속)

외국투자은행은 승인된 영업기간의 만료, 은행의 통합, 지불능력의 부족, 계약의무의 불리행, 자연재해 같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 해산된다. 이 경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해산승인을 받으며 청산위원회의 감독밑에 청산사업이

끝나면 은행설립등록기관에 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투자은행의 영업기간연장)

외국투자은행은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은행업무를 계속하려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영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국투자은행의 등록변경)

외국투자은행은 규약을 고치거나 은행을 통합, 분리하고 등록자금과 운영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며 업종을 늘이거나 줄이고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바꾸려 할 경우 30일전에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투자한 자본의 양도)

외국투자은행의 투자가는 중앙은행의 승인밑에 투자한 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양도하는 합병은행의 한편 출자자는 상대방 출자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투자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

제18조(등록자본의 보유한도)

합병은행과 외국인은행은 정해진 액수의 등록자본금을 해당 외화로 보유하며 1차 불입자본금은 등록자본금의 50%이상 되어야 한다.

외국은행지점은 정해진 액수의 운영자금을 해당 외화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19조(1차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

외국투자은행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1차불입자본금과 운영자금을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하고 회계검증사무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보유한도)

외국투자은행은 자기 자본금을 채무의 보증액 또는 자기 부담채무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합병, 외국인은행의 예비기금적립)

합병은행과 외국인은행은 예비기금을 등록자본금의 25%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연간결산리윤의 5%범위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자본금을 늘이거나 경영손실을 보상하는데 쓴다.

제22조(기금의 종류와 적립비율)

외국투자은행은 상금기금, 문화후생기금, 기술발전기금 같은 필요한 기금을 적립할수 있다.

기금의 종류와 규모, 적립비율은 자체로 정한다.

제4장 외국투자은행의 업무와 결산

제23조(외국투자은행의 업무내용)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할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외국인의 외화예금
2. 외화대부, 시좌돈자리잔고초과지불업무, 외화수형 할인
3. 외국환자업무
4. 외화투자
5. 외화채무 및 계약의무리행에 대한 보증
6. 외화송금
7. 수출입물자대금결제
8. 비거주자들사이의 거래업무
9. 외화유가증권의 매매
10. 신탁업무
11. 신용조사 및 상담업무
12. 기타 업무

제24조(외국투자은행의 자금대출한도)

외국투자은행은 한개 기업에 자기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할수 없다.

제25조(예금지불준비금)

외국투자은행은 소재지의 중앙은행지점에 돈자리를 열고 예금지불준비금을 두어야 한다.

제26조(결산년도)

외국투자은행의 결산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년간업무결산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한다.

제27조(재정관리와 재정결산문건의 제출)

외국투자은행은 재정관리를 외국인투자기업재정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연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28조(외국투자은행에 대한 우대)

외국투자은행은 다음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1. 영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이익이 나는 첫해에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면제받을수 있다.
2. 우리 나라 은행과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하여 얻은 리자수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3. 은행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과 은행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우리 나라령역밖으로 제한없이 송금할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29조(벌금부과)

외국투자은행에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승인없이 은행의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예비기금을 정한 규모대로 적립하지 않은 경우
3. 업무검열을 방해하였거나 검열에 지장을 준 경우
4. 정기보고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한 경우

제30조(영업중지)

외국투자은행이 승인된 업종밖의 업무를 하였거나 승인없이 등록자본금, 운영자본금을 줄였을 경우에는 영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31조(은행설립승인의 취소)

은행설립신청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0개월안으로 은행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32조(분쟁해결)

은행업무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주체95(2006)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0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7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9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등록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등록법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기업등록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외국투자기업등록이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이다.

제3조(등록기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은 투자관리기관이 하며 주소등록은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세무등록은 해당 재정기관이, 세관등록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조(외국투자기업의 의무적등록원칙)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운영을 할수 없다.

제5조(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보호원칙)

등록된 외국투자기업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6조(수수료납부)

등록을 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7조(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기관)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등록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등록)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의 등록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창설등록

제9조(기업창설등록의 기본요구)

외국투자기업은 창설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을 형태별, 부문별, 업종별로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창설등록증, 설립허가증의 발급)

투자관리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의 창설을 등록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는 기업창설등록증을, 지사, 사무소, 대리점에는 설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법인자격)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을 한 날부터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2조(창설등록의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은 창설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창설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창설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이유 같은것을 밝힌다.

제13조(창설 및 설립등록의 삭제)

투자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지사, 사무소, 대리점이 해산되거나 파산되었을 경우 창설 및 설립등록을 삭제하고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주소등록

제14조(주소등록기관 및 명칭)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이 승인한 명칭으로 한다.

제15조(주소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6조(주소등록신청서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기업의 명칭과 등록하려는 주소,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의 주소등록신청서에는 명칭, 주소, 책임자의 이름, 존속기

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17조(주소등록증의 발급)

주소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주소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주소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와 투자관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18조(경영활동보장조건)

주소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은 물, 전기, 통신 같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받을수 없다.

제19조(주소등록신청기일의 연장)

외국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일안에 주소등록신청을 할수 없을 경우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소등록기일연장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의 발급일, 연장하려는 이유, 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제20조(주소등록의 변경)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을 변경한 외국투자기업은 15일안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업소재지를 다른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옮기려 할 경우에는 이미 한 등록을 삭제하고 새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유효기간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소등록의 삭제, 주소등록증의 회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주소등록을 삭제하고 주소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세무등록

제23조(세무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총투자액과 등록자본, 업종, 존속기간,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창설등록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은 세무등록신청서에 명칭과 주소, 종업원수 같은것을 밝히고 설립허가증과 주소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세무등록신청의 심의)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무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25조(세무등록증의 내용)

세무등록증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세무등록날자와 번호 같은것을 밝힌다.

제26조(세무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무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무등록을 한 재정기관에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무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기관이 발급한 변경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등록증의 재발급)

세무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재정기관은 그것을 7일안으로 검토하고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제28조(세무등록의 삭제, 세무등록증의 회수)

해당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세무등록을 삭제하고 세무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세관등록

제29조(세관등록신청서의 제출)

외국투자기업은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존속기간, 업종, 거래은행, 돈자리번호 같은것을 밝히며 창설등록증 또는 설립허가증, 주소등록증의 사본, 은행의 재정담보서 그밖에 세관이 요구하는 문건을 첨부한다.

제30조(세관등록신청의 심의)

세관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5일안으로 검토하고 세관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세관등록대장에 등록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31조(세관등록의 변경)

외국투자기업은 세관등록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세관에 세관등록변경신청서를 내야 한다.

세관등록변경신청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를 밝히고 해당 기관이 발급한 변경등록승인문건을 첨부한다.

제32조(세관등록의 삭제)

세관은 외국투자기업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세관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6장 제재 및 신소

제33조(제재)

등록을 하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였거나 등록증을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제34조(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6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5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8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에 정확히 바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세무등록, 변경등록, 취소원칙)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의 세무등록은 해당 재정기관에 한다.

기업을 창설하거나 통합, 분리, 해산할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으로 세무등록과 그 변경, 취소수속을 한다.

제3조(재정회계계산과 문건보관)

외국투자기업의 재정회계계산은 외국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회계계산법규에 따라 한다.

재정회계계산과 관련한 서류는 5년동안 보관한다. 필요에 따라 보관기간을 늘일 수 있다.

제4조(세금의 계산화폐와 납부당사자)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바치는 세금은 조선원으로 계산하여 수익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5조(세무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세무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6조(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에게 적용한다.

제7조(해당 조약의 적용)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8조(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

외국투자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물판매소득, 건설물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 같은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에 지사, 사무소, 대리점을 설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기업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9조(기업소득세의 세률)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25%로 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된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첨단기술부문, 하부구조건설부문, 과학연구부문 같은 장려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10조(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세률)

외국기업이 우리 나라에서 배당소득, 리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 같은 기타 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세는 소득액에 20%의 세률을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10%의 세률을 적용한다.

제11조(기업소득세의 계산)

기업소득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수입금에서 원료 및 자재비, 연료 및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직장 및 회사관리비, 보험료, 판매비 같은것을 포함한 원가를 덜어 리윤을 확정하며 그 리윤에서 거래세 또는 영업세와 기타 지출을 공제한 결산리윤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2조(기업소득세의 예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는 분기마다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안으로 기업소득세납부서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기업소득세의 확정납부)

외국투자기업은 년간결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확정하여 미납금에 대하여서는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는다.

기업이 해산될 경우에는 해산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세담보를 세우며 결산이 끝난 날부터 15일안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기업이 통합되거나 분리될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기업소득에 대하여 결산하고 통합, 분리선포일부터 2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4조(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부)

외국기업의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때부터 15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수익인이 신고납부하거나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한다.

제15조(기업소득세의 감면과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1.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우리 나라에 차관을 주었거나 다른 나라 은행이 우리 나라 은행 또는 기업소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리자소득에 대하여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2. 장려부문과 특수경제지대의 생산부문 외국인투자기업이 10년이상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3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2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3. 철도, 도로, 비행장, 항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리윤이 나는 해부터 4년간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줄수 있다.

제16조(재투자분에 대한 세금액의 감면과 반환)

외국투자가가 기업에서 분배받은 리윤을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하부구조건설 부문에 재투자하였을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받을수 있다.

경영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재투자한 자본을 철회할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업소득세액을 바친다.

제3장 개인소득세

제17조(개인소득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서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우리 나라에 1년이상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은 우리 나라 령역밖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서도 개인소득세를 바쳐야 한다.

제18조(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의한 소득
2. 리자소득
3. 배당소득

4. 고정재산임대소득
5. 재산판매소득
6.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7.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8. 증여소득

제19조(개인소득세의 세률)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다음과 같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5~30%로 한다.
2.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0%로 한다.
3.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정해진데 따라 소득액의 2~15%로 한다.
4. 재산판매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세률은 소득액의 25%로 한다.

제20조(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월로동보수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1조(배당소득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배당소득, 재산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해당 소득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2조(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리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은행에 예금하고 얻은 소득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3조(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계산)

고정재산임대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임대료에서 로력비, 포장비, 수수료 같은 비용으로 20%를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4조(개인소득세의 납부)

개인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로동보수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로동보수를 지불하는 단위가 로동보수를 지불할 때 공제하여 5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로동보수를 지불받아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재산판매소득, 증여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 다음달 10일안으로 수익인이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한다.
3. 리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비결의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과 관련한 봉사제공에 의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분기마다 계산하여 다음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수익금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 납부하거나 수익인이 신고납부한다.

제4장 재산세

제25조(재산세의 납부대상과 면제대상)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제26조(재산등록)

외국인은 재산을 해당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소유한 때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3. 재산은 해마다 1월 1일현재로 평가하여 2월안으로 재등록을 한다.
4. 재산을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등록취소수속을 한다.

제27조(재산세의 과세대상액)

재산세의 과세대상액은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으로 한다.

제28조(재산세의 세률)

재산세의 세률은 등록된 재산값의 1~1.4%로 한다.

제29조(재산세의 계산)

재산세는 재산을 등록한 다음달부터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된 값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0조(재산세의 납부)

재산세는 분기가 끝난 다음달 20일안으로 재산소유자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장 상속세

제31조(상속세의 납부의무)

우리 나라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외국인은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령역밖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상속세를 바쳐야 한다.

제32조(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상속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운데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금액으로 한다.

제33조(상속재산값의 평가)

상속재산값의 평가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34조(상속세의 세률)

상속세의 세률은 상속받은 금액의 6~30%로 한다.

제35조(상속세의 계산)

상속세는 과세대상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6조(상속세의 납부)

상속세는 상속자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할수 있다.

제6장 거래세

제37조(거래세의 납부의무)

생산부문과 건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거래세를 바쳐야 한다.

제38조(거래세의 과세대상)

거래세의 과세대상에는 생산물판매수입금과 건설공사인도수입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39조(거래세의 세률)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의 1~15%로 한다.

기호품에 대한 거래세의 세률은 생산물판매액의 16~50%로 한다.

제40조(거래세의 계산)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액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액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업과 봉사업을 함께 할 경우 거래세와 영업세를 따로 계산한다.

제41조(거래세의 납부)

거래세는 생산물판매수입금 또는 건설공사인도수입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42조(거래세의 면제)

수출상품에 대하여서는 거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수출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정해진데 따라 거래세를 납부한다.

제7장 영업세

제43조(영업세의 납부의무)

봉사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은 영업세를 바쳐야 한다.

제44조(영업세의 과세대상)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교통운수, 동력, 상업, 무역, 금융, 보험, 관광, 광고, 려관, 급양, 오락, 위생편의 같은 부문의 봉사수입금으로 한다.

제45조(영업세의 세률)

영업세의 세률은 해당 수입금의 2~10%로 한다.

제46조(영업세의 계산)

영업세는 업종별수입금에 정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외국투자기업이 여러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영업세를 업종별로 계산한다.

제47조(영업세의 납부)

영업세는 봉사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8장 자원세

제48조(자원세의 납세의무와 자원의 구분)

외국투자기업은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 자원세를 바쳐야 한다.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자원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자원세를 바친다.

자원에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광물자원, 산림자원, 동식물자원, 수산자원, 물자원 같은것이 속한다.

제49조(자원세의 과세대상)

자원세의 과세대상은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

제50조(자원세의 세률)

자원의 종류에 따르는 세률은 내각이 정한다.

제51조(자원세의 계산방법)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이루어진 수입금 또는 정해진 가격에 해당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채취과정에 여러가지 자원이 함께 나오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

제52조(자원세의 납부)

자원세는 자원을 수출하거나 판매하여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자원을 소비할 때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제53조(자원세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는 자원세를 감면하여줄수 있다.

1. 원유, 천연가스 같은 자원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5~10년간 면제하여 줄수 있다.
2. 자원을 그대로 팔지 않고 현대화된 기술공정에 기초하여 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거나 국가적조치로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3.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서는 자원세를 덜어줄수 있다.

제9장 지방세

제54조(지방세의 납부의무와 종류)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제55조(도시경영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

도시경영세의 과세대상은 외국투자기업의 월로임총액, 거주한 외국인의 월수입액으로 한다.

제57조(도시경영세의 계산과 납부)

도시경영세의 계산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투자기업은 달마다 로임총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2. 거주한 외국인은 달마다 수입액에 1%의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본인이 신고납부한다. 경우에 따라 로임을 지불하는 단위가 공제납부할수도 있다.

제58조(자동차리용세의 납부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리용할 경우에 자동차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자동차의 등록)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자동차를 소유한 때부터 30일안으로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자동차리용세액)

자동차류형별에 따르는 리용세액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1조(자동차리용세의 납부)

자동차리용세는 해마다 2월안으로 자동차리용자가 해당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자동차를 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자동차리용세를 면제받을수 있다.

제10장 제재 및 신소

제62조(연체료부과)

재정기관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세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일이 지난 날부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매일 0.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제63조(벌금부과)

다음의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1. 정해진 기간안에 세무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세납부서, 재정결산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 세금을 적게 공제하였거나 공제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제6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65조(신소와 그 처리)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은 세금납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주체97(200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07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기본

제1조(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관리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조성하고 분배, 리용하는 기업관리의 한 부분이다.
2. 재정수입이란 경영활동과정에 기업이 벌어들인 모든 형태의 화폐자금이다.
3. 재정결산이란 일정한 기간 기업의 경영활동결과를 재정적측면에서 수자적으로 확정, 검토, 총화하는 경제활동이다.
4. 비용이란 기업이 생산 또는 봉사에 쓴 모든 화폐적지출이다.
5. 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밑천을 화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6. 등록자본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한 자본이다.
7. 고정재산이란 현물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산과정에 여러번 참가하여 자기의 가치를 새로 생산되는 생산물에 일부분씩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8. 류동재산이란 한번의 생산순환과정에 완전히 소비되어 새로운 생산물에 자기의 가치를 전부 이전시키는 재산이다.
9. 총투자액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한 자본의 총액이다.

제3조(재정관리의 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대상에는 해당 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한 재정계획과 투자재산, 경영활동과정에 늘어난 재산, 리윤분배금, 투자상

환금이 속한다.

제4조(재정관리의 책임자)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재정관리의 제1책임자는 기업책임자이며 제2책임자는 재정회계책임자이다.

제5조(기업의 돈자리)

외국인투자기업은 돈자리를 외국환자업무를 하는 우리 나라에 있는 은행에 두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6조(기업의 회계법규)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를 우리 나라의 외국투자기업회계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관리문건의 작성양식과 보관기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문건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며 5년간 보관한다. 그러나 회계검증문건은 10년간 보관하며 연간재정결산문건, 고정재산과 관련한 문건은 기업의 존속기간까지 보관한다.

제8조(투자재산의 보호원칙)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일 경우에는 해당 보상을 하도록 한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투자보호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호한다.

제9조(재정관리사업의 지도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10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 합영은행, 외국인은행에 적용한다.

지사, 사무소, 대리점도 이 법에 따라 재정관리를 할수 있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장 자본의 조성

제11조(자본의 조성방식과 구성)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 신용, 증여, 리윤축적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수 있다.

자본에는 등록자본과 차입자본이 속한다.

제12조(출자기간과 등록자본의 구성, 규모)

투자자는 기업창설승인문건에 정한 기간안에 출자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의 구성과 규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등록자본은 기업의 존속기간에 늘일수 있으나 줄일수는 없다.

제13조(출자재산의 내용과 지적재산권의 비률)

투자자는 계약에 따라 화폐재산, 현물재산과 토지이용권, 자원개발권, 기술비결 같은 재산권으로 출자할수 있다.

출자재산의 구성비율은 계약에서 또는 외국투자자가 정한다. 이 경우 지적재산권의 출자비율은 등록자본의 20%를 넘을수 없다.

제14조(출자재산의 인정시점)

출자재산을 인정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재산은 우리 나라에 있는 은행의 돈자리에 넣었을 때
2. 부동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이전하는 등록수속이 끝났을 때
3. 부동산밖의 현물재산은 소유권 또는 리용권의 이전수속을 하고 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구내에 옮겨놓았을 때
4. 재산권은 해당 소유권증서를 외국인투자기업이 넘겨받았을 때
5. 기술비결은 계약에서 정한 기술이전이 실현되었을 때

제15조(출자재산의 가격)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현물재산과 재산권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출자재산관리와 투자검증)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재산관리를 투자가별로 하여야 한다.

투자자의 출자확인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투자검증을 받는다.

제17조(출자몹의 양도)

투자자는 출자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당사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계획

제18조(재정계획의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은 기업이 자체로 세운다.

재정계획의 토의결정은 해당 기업의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한다.

제19조(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을 따로 세워야 한다.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는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만을 예견한다.

제20조(조업준비기간의 지출항목)

조업준비와 관련한 지출에는 행정관리비, 설비조립비, 건물의 건설 및 관리비, 건물임대료, 시제품생산비, 기능공양성비의 지출 같은것이 속한다.

조업준비기간에는 지방세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만 납부한다.

제21조(부문별계획의 작성)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승인받은 업종에 따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산, 상업, 무역, 금양 같은 부문별로 구분하여 년, 분기별로 세워야 한다.

제22조(재정계획의 항목)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항목에는 판매 및 봉사수입금계획, 비용계획,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 리운 및 분배계획, 납부금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재정계획의 항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3조(재정계획의 작성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계획작성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판매 및 봉사수입계획은 계획기간에 판매할 품종별수량과 전년도말 단위당 국제시장가격에 기초하여 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료금수입, 임가공수입, 기타 수입 같은것을 예견하여 세운다.
2. 비용계획은 생산계획에 따르는 생산비계획, 류통비계획, 경영비계획으로 갈라 세운다.
3. 고정재산감가상각금계획은 적립계획과 리용계획으로 나누어 적립계획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세우고 리용계획은 적립된 감가상각금을 원천으로 세운다.
4. 리운계획은 판매 및 봉사수입에서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와 원가 및 류통비를 확정하고 세우며 분배계획은 리운에서 기업소득세, 예비기금, 기업의 기금을 댄 금액으로 세운다.
5. 납부계획은 계획년도에 납부하기로 되어있는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수료, 토지사용료 같은 납부금을 정한데 따라 예견한다.

제24조(재정계획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해 재정계획을 12월 25일까지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계획의 변경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장 고정재산

제26조(고정재산의 대상과 분류)

고정재산에는 투자가가 출자한 고정재산과 기업의 자금으로 마련한 고정재산, 양

도받은 고정재산이 속한다.

고정재산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사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27조(고정재산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등록대장을 갖추고 고정재산을 장소별, 형태별로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등록대장에는 등록일자, 등록번호, 고정재산명, 규격, 시초가치, 내용년한, 설치장소, 생산년월일, 생산지, 취득년월일 같은것을 밝힌다.

제28조(고정재산의 등록시점과 가격)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3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등록가격은 취득가격에 운임, 상하차비, 보험료, 설치비, 보관비 같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 시초가치로 한다.

제29조(고정재산의 실사)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마다 한번이상 고정재산을 실사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고정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30조(고정재산의 폐기, 양도, 저당과 재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의 결정으로 등록된 고정재산을 폐기하거나 양도, 저당, 재평가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정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류동재산

제31조(류동재산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을 현물재산과 화폐재산으로 나누어 장소별, 형태별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현물재산에는 원료, 자재, 연료, 용기 및 포장재, 소공기구, 미성품, 반제품, 완제품 같은것이, 화폐재산에는 현금과 예금 같은것이 속한다.

제32조(화폐재산의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 예금 같은 화폐재산에 대한 관리는 기업의 재정일군이 한다.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현금은 해당 은행에 입금시킨다.

제33조(투자한 현물재산의 가격)

투자한 현물재산의 가격은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투자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34조 (류동재산의 실사)

외국인투자기업은 류동재산실사를 달마다 진행하여야 한다.

실사결과 류동재산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제35조 (류동재산의 평가, 재평가)

외국인투자기업은 필요에 따라 류동재산에 대한 평가, 재평가를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생산제품의 가격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제품의 가격을 원료, 반제품, 부분품의 구입가격에 상하차비, 운임, 가공비와 같은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6장 비 용

제37조 (비용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비용을 원가와 기타 지출로 갈라 공정별, 항목별로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원가에는 원료 및 자재비, 연료비, 동력비, 로력비, 감가상각금, 물자구입경비, 기업관리비, 류통비 같은것을 포함시킨다.

기타 지출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이 없이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

제38조 (조업준비비의 보상)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비를 조업한 다음 년도별로 나누어 원가에 넣어 보상하여야 한다.

제39조 (감가상각금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고정재산감가상각금을 계산적립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감가상각형식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감가상각형식은 해당 재산의 내용년한이 끝날 때까지 변경할수 없다.

제40조 (로임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임을 직제와 직종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41조 (대외사업비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표단영접비, 교제비, 대표단파견비 같은 대외사업비를 원가에 넣어 계산하여야 한다.

대외사업비의 지출기준은 순판매액 또는 순영업액의 0.3~1%까지의 범위에서 기업이 정한다.

제42조 (관리비와 판매비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관리비와 판매비를 원가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직업동맹조직의 활동자금은 기업관리비에, 재가공비는 판매비에 포함시켜 계산

한다.

제43조(사회보험료의 계산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기준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44조(기타 지출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무현금결제, 수수료와 채권손실금, 환자시세편차손실금 같은 것을 기타 지출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해당 수수료와 채권손실금은 경상계산하며 환자시세편차손실금은 년마다 계산한다.

제7장 재정수입

제45조(재정수입의 구성)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수입은 기업활동을 하여 얻은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구성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수입을 제때에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46조(조업준비기간의 수입금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업준비기간에 시제품의 판매수입이나 기타 수입이 이루어졌을 경우 그 수입금으로 조업준비기간의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며 남은 수입금은 미처분리윤으로 적립하였다가 기업이 조업한 다음 결산리윤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한다.

제47조(수입금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진 생산물판매수입, 상품판매수입, 건설공사인도수입, 봉사수입, 운임수입, 요금수입, 임가공수입 기타 수입을 부문별로 갈라 수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재정결산기말에는 모든 수입을 종합하여 계산한다.

제48조(임가공료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임가공과 관련한 재정수입을 주문자로부터 받은 가공료로 계산하여야 한다.

제49조(대치물자와 관련한 수입금의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물을 우리 나라에서 판매하고 그 값으로 대치물자를 받아 수출하는 경우 판매한 값을 재정수입으로, 대치물자의 값을 구입지출로 계산하여야 하며 생산비는 대치물자판매수입금으로 보상한다.

제8장 재정결산과 리윤분배

제50조(재정결산주기, 재정결산문건의 제출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결산은 분기, 년별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회계결산서, 재정총화보고서,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재정결산문건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분기재정결산문건은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안으로, 연간재정결산문건은 다음해 2월안으로 내야 한다.

제51조(재정총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재정총화는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에서 한다.

제52조(소득의 계산, 확정)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을 결산리윤과 분배할 리윤으로 갈라 다음과 같이 계산, 확정하여야 한다.

1. 결산리윤은 판매 및 봉사수입금에서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를 공제하고 원가 및 류통비와 기타 지출을 덜어 확정한다.
2. 분배할 리윤은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와 예비기금, 기업기금 같은 금액을 공제한 다음 확정한다.

제53조(예비기금의 적립)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성될 때까지 해마다 결산리윤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예비기금은 기업손실을 메꾸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 쓴다.

제54조(손실충당)

외국인투자기업은 예비기금으로 다 메꾸지 못한 지난해 손실을 해당 년도의 결산리윤에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리윤으로 편속하여 4년간 메꿀수 있다.

제55조(기금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10%까지 범위안에서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 상급기금, 문화후생기금, 양성기금 같은 기금을 조성하고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쓸수 있다.

제56조(기금의 리용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금은 다음의 대상에 리용한다.

1. 생산확대 및 기술발전기금은 발명, 창의고안, 과학기술과 앞선 작업방법의 도입, 설비의 갱신 같은데 리용한다.
2. 상급기금은 종업원들과 관리 및 간접보조부문일군에게 주는 상급, 생산경쟁상급에 리용한다.
3. 문화후생기금은 합숙, 탁아소, 유치원, 식당 같은 문화후생시설의 건설과 보수 및 갱신, 문화오락기재의 마련, 후방물자의 구입, 사회적지원에 리용한다.
4. 양성기금은 기능공, 기술인재의 양성에 리용한다.

제57조(리윤의 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분배할 리윤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출자몫을 상환하는데 리용하여야 한다.

재투자하거나 등록자본을 늘이는데도 리용할수 있다.

제58조(출자몫상환과 리윤분배)

합작기업은 외국투자자의 출자몫상환과 리윤분배는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경우 생산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9조(세금,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의 납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 토지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청산

제60조(재정청산의 사유와 청산담당자)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청산을 하여야 한다.

재정청산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제61조(청산위원회의 구성)

청산위원회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리사회가 조직한다.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해당 기업의 책임자, 채권자대표, 재정회계일군 그밖의 필요한 성원으로 한다.

제62조(청산위원회의 조직권한)

외국인투자기업이 파산되거나 투자관리기관의 행정적조치에 따라 해산될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 또는 투자관리기관이 청산위원회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투자관리기관, 해당 재정기관의 일군을 청산위원회의 성원으로 참가시킨다.

제63조(청산안의 작성)

청산위원회는 해산 또는 파산되는 기업의 공인파 재산을 넘겨받고 청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넘겨받은 재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64조(청산안의 합의)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안은 투자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에 의한 청산의 경우에는 해당 재판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재정청산과정에 납부금을 비롯한 재정청산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제65조(청산재산의 처리순위)

청산재산의 처리는 납부금, 청산비용, 로동보수, 담보채권이 붙은 채무, 일반채무의 청산 같은 순위로 한다.

처리하고 남은 재산은 출자몹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나누어준다.

제66조(손해보상당사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이 해산되었을 경우 입은 손해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보상한다.

제67조(청산위원회의 보고서제출)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난 날부터 10일안으로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기업이 파산되었을 경우에는 청산보고서를 해당 재판기관에 낸다.

제68조(청산사업의 결속)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이 끝났을 경우 주소등록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같은 것을 해당 기관에 바치고 거래은행의 돈자리를 막아야 한다.

제10장 감독통제 및 신고

제69조(감독통제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정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0조(자료요구와 그 보장의무)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감독통제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71조(제재)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벌금부과, 영업중지 같은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72조(신고와 그 처리)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주체95(2006)년 10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7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6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기본

제1조(외국투자기업회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 회계 검증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회계의 객관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 우리 나라에서 3개월이상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외국기업의 지사, 사무소, 대리점 같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3조(회계년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새로 창설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조업을 시작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해산 또는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해산, 파산되는 날까지이다.

제4조(회계의 화폐단위)

외국투자기업의 회계화폐단위는 조선원으로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회계의 화폐단위를 외화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회계결산서는 조선원으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제5조(회계문건의 작성언어)

외국투자기업의 회계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한 회계문건에는 조선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6조(회계사업의 담당자)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한다.

제7조(회계검증기관)

회계검증은 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사무소가 한다.

제8조(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외국투자기업 회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9조(회계관습의 적용)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2장 회계계산

제10조(회계계산의 기본요구)

회계계산은 발생한 경제거래에 기초하여 회계서류를 만들고 장부에 기록계산하며 회계결산서를 작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외국투자기업은 회계계산을 회계관련법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계산의 대상)

외국투자기업의 회계계산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금 또는 출금한 화폐자금
2. 발행 또는 인수한 유가증권
3. 인수 또는 발송한 현물재산
4. 발생 또는 청산한 채권, 채무
5. 증가 또는 감소한 자본
6. 발생 또는 처리한 수입과 원가, 비용
7. 확정 또는 분배, 처리한 리윤, 손실
8. 이밖에 회계계산이 필요한 대상

제12조(회계계산의 원칙)

회계계산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회계기록을 정확한 자료와 증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2. 회계계시와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계산시점, 재산평가방법을 기간별로 비교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4.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자본초과금과 리윤적립금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5. 회계계시와 금액의 중요내용을 회계결산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서류의 작성 및 발행)

외국투자기업은 경제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거래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회계서류를 작성발행하여야 한다.

회계서류에는 전표, 집계표, 분기표 같은것이 속한다.

제14조(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

회계서류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목을 쓴다.

2. 발행번호와 날자를 밝힌다.
3.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같은 회계계산자료를 밝힌다.
4. 경제거래내용을 쓴다.
5. 현금거래서류에는 수납인과 출납원의 도장을 찍는다.
6. 발행한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밝힌다.

제15조(회계서류의 검토, 처리)

다른 기관, 기업에서 발행한 회계서류를 접수한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서류의 양식, 기록내용, 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는 기업책임자 또는 회계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돌려보낸다.

제16조(회계서류의 제작성)

결함이 있는 회계서류를 돌려받은 외국투자기업은 그것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전표는 수정할수 없다.

제17조(회계장부의 작성)

외국투자기업은 검토확인한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는 분기일기장, 종합계시원장, 세분계산장부로 구분한다.

제18조(회계장부에 밝힐 사항)

회계장부에 밝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표지에는 회계년도, 장부이름, 계시번호, 외국투자기업의 명칭을 밝힌다.
2. 첫째페이지에는 목록과 목록별페이지번호를 밝힌다.
3. 둘째페이지부터는 페이지번호와 기록하는 회계서류의 날자, 분기표번호, 경제거래 내용과 금액을 밝힌다.
4. 마지막페이지에는 장부의 마감을 확인한 회계부서책임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19조(회계장부와 현물의 대조확인)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을 정기적으로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의 내용과 현물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인을 찾고 맞추어야 한다.

제20조(회계장부의 수정)

회계장부에 잘못 기록한 내용은 삭제하고 다시 기록하거나 수정분기를 한다. 이 경우 삭제하고 다시 기록한 부분에는 수정한자의 도장을 찍는다.

제21조(2중장부작성금지)

외국투자기업은 발생한 경제거래를 해당 장부에 사실대로 기록, 계산하여야 한다.

2중장부를 리용할수 없다.

제22조(장부작성방법의 변경)

회계장부는 시작부터 마감까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장부작성방법의 변경은 회계관련법규에 따른다. 이 경우 변경사유를 재정상태설명서에 밝혀야 한다.

제23조(회계계시의 리용)

외국투자기업은 정해진 회계계시를 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중요경제거래는 새로운 회계계시로, 일반경제거래는 류사한 회계계시를 리용하여 표시할수 있다.

제24조(경상계산결과의 검토)

경상계산결과의 검토는 종합계산자료와 세분계산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틀린 자료는 원인과 책임한계를 밝히고 고친다.

제25조(회계조정)

회계조정은 회계관련법규의 해당 내용이 수정보충되었거나 회계결산서를 보다 정확히 표시할수 있을 경우에만 한다.

제26조(미확정거래의 기록)

미확정거래가운데서 손실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한다. 그러나 손실액을 예측할수 없거나 리익액을 예측할수 있을 경우에는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27조(재정상태표의 작성)

재정상태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류동성배렬법으로 배렬한다.
2. 재산의 합계를 채무, 자본의 합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3. 재산, 채무, 자본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4. 양식을 계시식으로 한다.

제28조(손익계산서의 작성)

손익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발생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배렬한다.
2. 수입의 합계에서 비용의 합계를 덜어 결산순리윤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3. 수입과 비용상태를 반영한 매 계시를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29조(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

손익처분계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리윤분배계산서는 전년도 조월리윤적립금, 결산순리윤, 예비기금할당액, 기업기금할당액, 리윤배당금, 다음년도 조월리윤적립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손실처리계산서는 전년도 조월손실액, 결산손실액, 손실처리에 돌려지는 예비기금, 다음년도 조월손실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리윤처분액과 손실처리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제30조(현금류동표의 작성)

현금류동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정활동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현금의 기초잔고와 기간증감액을 합계하여 기말잔고로 표시한다.
3. 항목의 기간증가액과 기간감소액을 총액으로 표시한다.
4. 간접법으로 작성한다.

제31조(결산기가 지난 다음 발생한 사항)

결산기가 지난 다음에 발생하여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재산, 채무, 자본에 반영한다. 그러나 재정상태표의 작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은 재정상태설명서에만 반영한다.

제32조(회계결산서의 작성)

회계결산서의 작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또는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를 검토하고 종합편찬한다.
2. 결산년도와 전년도의 회계자료를 비교하여 표시한다.
3.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에 따르는 보조명세표를 만든다.
4. 잘못 이해할수 있는 회계내용을 재정상태설명서에 반영한다.

제33조(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

회계결산서의 작성주기는 분기, 년간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분기회계결산서를 분기가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년간회계결산서는 회계년도가 지난 다음해 2월안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결산서의 책임)

회계결산서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가 수표한다.

책임자와 회계부서의 책임자는 수표한 회계결산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5조(회계계산의 금지행위)

회계계산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재산, 채무, 자본을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평가기준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2. 수입을 숨기거나 지연 또는 앞당겨 계산하는 행위
3. 비용, 원가를 허위기록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계산시점과 계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는 행위
4. 리익계산, 리윤분배방법을 승인없이 변경하여 허위리익을 조성하거나 리익을 숨기는 행위

제36조(회계프로그램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

회계프로그램리용에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활동을 통일적인 편관속에서 반영할수 있는 회계프로그램을 디용하여야 한다.
2. 회계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산방법과 회계의 원리에 맞아야 한다.

3. 회계결산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화면양식, 인쇄양식은 회계문건양식과 같아야 한다.
5. 회계정보자료에 대한 2중보관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회계장부를 외부기억매체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한부를 인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7. 자체로 개발한 회계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기업의 업무분리, 재산실사)

외국투자기업은 출납업무, 회계장부작성업무, 회계문건보관업무, 재산보관업무를 각각 분리시키고 재산실사의 범위, 기간, 실사방법을 정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사업의 인계인수)

회계사업의 인계인수는 해당 일군의 립회밀에 한다.

회계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회계부서책임자가, 회계부서책임자의 인계인수에 대한 립회는 기업책임자가 한다.

제39조(회계문건의 보관)

외국투자기업은 회계문건을 화재, 습기, 퇴색을 방지할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회계서류는 5년, 회계장부와 년간회계결산서는 10년 보관한다.

제3장 회계검증

제40조(회계검증의 내용)

회계검증은 외국투자기업회계의 적법성,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회계검증에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청산검증 같은것이 속한다.

제41조(투자검증)

새로 창설되거나 통합, 분리되는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100만원이상의 재산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투자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투자검증의 기간)

기업창설에 대한 투자검증은 조업전까지, 통합, 분리에 대한 투자검증은 기업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재투자에 대한 투자검증은 해당 투자가 끝난 날부터 1개월안에 받는다.

제43조(투자검증의 방법)

투자검증은 외국투자기업이 제출한 투자검증신청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외국투자기업은 투자검증신청서에 투자상태표와 화폐재산출자명세표, 현물재산출자명세표, 부동산출자명세표, 지적소유권출자명세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검증)

외국투자기업은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분기회계결산서에 대한 검증도 받을수 있다.

제45조(결산검증의 방법)

결산검증은 회계결산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회계검증사무소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리윤분배계산서, 손실처리계산서, 현금류동표, 보조명세표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6조(년간회계결산서의 검증기간)

외국투자기업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년간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청산검증)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은 청산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청산검증은 재판소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48조(청산검증의 방법)

청산검증은 해산되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정상태표, 채권채무명세표, 재산실사표, 재산분배표 같은것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9조(회계장부, 서류의 열람)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장부, 서류 같은것을 열람할수 있다.

제50조(회계검증기간 발생한 경제거래의 통보)

외국투자기업은 결산검증을 신청한 다음 발생한 중요한 경제거래에 대하여 회계검증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회계검증사무소는 검증과정에 알게 되었거나 통지받은 중요한 경제거래사항을 회계검증보고서에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검증사무소의 의무)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검증보고서의 작성)

회계검증사무소는 회계검증이 끝나면 회계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회계검증보고서에는 검증대상, 검증의견, 보고날자, 회계검증원의 이름 같은것을 밝히고 회계검증사무소의 도장을 찍는다.

제53조(검증의견)

회계결산서를 검증한 회계검증사무소는 해당 외국투자기업에 검증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어야 한다.

검증의견은 긍정의견, 조건적긍정의견, 부정의견, 검증거절로 구분한다.

제54조(검증료금)

회계검증 또는 회계검증과 관련한 봉사를 받은 외국투자기업은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장 감독통제 및 신고

제55조(회계감독기관)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제56조(회계감독방법)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7조(벌금적용)

벌금을 물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 없는자를 회계일군으로 채용하였을 경우
2. 회계서류, 회계장부를 갖추지 않았거나 정확하지 않은 회계서류에 기초하여 회계계산을 하였을 경우
3. 정해진 회계계시를 리용하지 않고 승인없이 회계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4. 정당한 리유없이 연간회계결산서를 정한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회계문건을 오손시켰거나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6.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경우
7. 회계검증사무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58조(행정적 및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신고와 처리)

외국투자기업의 회계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재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할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주체98(200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53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7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기본

제1조(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은 로력의 채용, 로동과 휴식, 로동보수, 로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종업원의 해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며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로력채용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로력을 기본으로 채용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관리인원이나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을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16살아래의 미성인은 채용할수 없다.

제3조(로동조건의 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제4조(로동보수지불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지불하며 로동보수액을 체계적으로 늘인다.

종업원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서는 같은 보수를 받는다.

제5조(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 나라 공민인 종업원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제6조(타사업 동원금지원칙)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은 자연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않는다.

제7조(지도기관)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제8조(적용대상)

이 법은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 같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는 외국투자은행과 외국기업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로력의 채용 및 로동계약의 체결

제9조(로력보장기관)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하는 사업은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한다.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로력보장사업을 할수 없다.

제10조(로력보장신청)

로력을 보장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보장신청서를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로력보장신청서에는 채용할 로력자수와 성별, 연령, 업종, 기술기능급수, 채용기간, 로동보수관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제11조(로력모집 및 보장)

로력보장신청을 받은 로동행정기관은 30일안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로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의 로력을 다른 지역에서 보장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로동행정기관과 합의한다.

제12조(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로동행정기관이 보장한 로력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용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은 채용하지 않을수 있다.

제13조(외국인로력채용)

외국인투자기업은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 투자관리기관에 외국인로력채용문건을 내야 한다.

외국인로력채용문건에는 이름,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지식정도, 기술자격, 직종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14조(로동계약의 체결과 리행)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직업동맹조직과 로동계약을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로동계약에는 로동시간, 휴식, 로동조건, 생활조건, 로동보호, 로동보수지불, 상벌문제 같은것을 밝힌다.

제15조(로동계약의 효력)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업동맹조직과 맺은 로동계약문건을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 기관에 내야 한다.

로동계약은 맺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로동계약의 변경)

로동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기업소재지의 로동행정 기관에 변경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로동과 휴식

제17조(로동시간)

종업원의 로동시간은 주 48시간, 하루 8시간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로동시간을 정해진 시간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계절적영향을 받는 부문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연간 로동시간범위에서 실정에 맞게 로동시간을 달리 정할수 있다.

제18조(로동시간의 준수)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안에 로동을 시켜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로동시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다.

종업원은 로동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제19조(일요일, 명절일의 휴식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명절일과 일요일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1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정기휴가, 보충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해마다 14일간의 정기휴가를 주며 증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종업원에게는 7~21일간의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산전, 산후휴가의 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임신한 여성종업원에게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장 로동보수

제22조(로동보수의 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의 로동보수를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종업원에게 주는 로동보수에는 로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이 속한다.

제23조(월로임최저기준의 제정)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투자관리기관이 한다.

월로임최저기준은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생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24조(로임기준의 제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생산수준과 종업원의 기술기능숙련정도와 로동생산능률이 높아지는데 맞게 로임기준을 점차 높여야 한다.

제25조(휴가비의 지불 및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은 정기휴가,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종업원에게 휴가일수에 따르는 휴가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휴가비는 휴가전 3개월간의 로임을 실가동일수에 따라 평균한 하루로임액에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6조(생활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이 기업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하지 못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제27조(휴식일로동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절일과 일요일에 종업원에게 로동을 시키고 대휴를 주지 못하였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8조(연장작업, 야간작업에 따르는 가급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시간외의 낮연장작업을 시켰거나 로동시간안의 밤작업을 시켰을 경우 일한 날 또는 시간에 한하여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로동시간외의 밤연장작업을 시켰을 경우에는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주어야 한다.

제29조(상금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로 상금기금을 조성하고 일을 잘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출수 있다.

제30조(로동보수의 지불)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해진 날자에 전액 화폐로 주어야 한다.

로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나가는 종업원에게는 해당 수속이 끝난 다음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5장 노동보호

제31조(노동안전, 산업위생조건보장)

외국인투자기업은 노동안전시설과 고열, 가스, 먼지 등을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등을 잘 보장하는 산업위생조건을 갖추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완비하여 노동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미리 막으며 종업원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일터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노동안전교양)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안전기술교육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노동안전기술교육기간과 내용은 업종과 직종에 맞게 자체로 정한다.

제33조(위험개소 제거)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 및 작업조직에 앞서 노동안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생산과정에 사고위험이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생산을 멈추고 위험개소를 정비한 다음 생산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34조(노동안전조치)

외국인투자기업은 생산과정에 가스, 먼지, 고열, 습도, 방사선, 소음, 진동, 전기마당 같은 유해로운 요소들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현장에는 안전주의표식을 하며 노동재해발생에 대처할수 있는 보호수단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제35조(여성종업원의 보호)

외국인투자기업은 여성종업원을 위한 노동보호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임신하였거나 젖먹이어린이를 키우는 여성종업원에게는 연장작업, 밤작업을 시킬수 없다.

제36조(탁아소, 유치원운영)

외국인투자기업은 실정에 맞게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탁아소, 유치원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제37조(노동보호물자의 공급)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에게 노동보호용구와 작업필수품, 영양식료품, 보호약제, 해독제약, 피부보호제, 세척제 같은 노동보호물자를 제때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의 처리 및 사고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작업과정에 종업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 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우며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기관은 사고심의를 조직하고 사고원인을 밝히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6장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제39조(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종업원이 병, 부상 같은 원인으로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에는 보조금, 년금의 지불과 정양, 휴양, 견학 같은것이 속한다.

제40조(보조금, 년금의 계산)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보조금, 년금은 해당 법규에 따라 계산한다.

제41조(사회보험기금의 조성)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은 사회보험기금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회보험기금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로 조성한다.

제42조(사회보험료의 납부)

외국인투자기업과 종업원은 달마다 해당 재정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납부비율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43조(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리용)

외국인투자기업은 결산리윤의 일부로 종업원을 위한 문화후생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있다.

문화후생기금은 종업원의 기술문화수준의 향상과 군중문화체육사업, 후생시설운영 같은데 쓴다.

제7장 종업원의 해임

제44조(종업원의 해임의 기본요구)

외국인투자기업은 로력채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일할 나이가 지나기 전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종업원을 내보낼수 없다.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에는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5조(종업원의 해임사유)

종업원을 내보낼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부상으로 자기의 현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기업의 경영이나 기술조건의 변동으로 로력이 남을 경우
3. 로동규률을 위반하여 엄중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기술기능수준의 부족으로 자기 직종에서 일할수 없을 경우
5. 기업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

제46조(종업원해임에 대한 합의 및 통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종업원을 내보내려고 할 경우 직업동맹조직과 합의한 다음 사전에 당사자와 기업소재지의 노동행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7조(종업원을 해임시킬수 없는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내보낼수 없다.

1. 병, 부상으로 치료받고있는 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산전, 산후휴가, 어린이에게 젖먹이는 기간일 경우

제48조(종업원의 사직)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직할것을 제기할수 있다.

1. 병이 생겼거나 가정적인 사정으로 일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기술기능이 부족하여 맡은 일을 수행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대학, 전문학교, 기능공학교에 입학하였을 경우

제8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9조(벌금 및 기업활동의 중지)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업에게는 벌금을 물리거나 기업활동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50조(신소와 그 처리)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분쟁해결)

이 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생긴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주체89(2000)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04호로 채택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0호로 수정보충

제1장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기본

제1조(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파산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파산되는 기업의 채권채무를 정확히 청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파산의 정의)

이 법에서 파산이란 재판소가 채무를 리행할수 없게 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기업을 해산시키는 행위이다.

제3조(기업의 파산조건)

채무를 정한 기간안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채무가 자기 재산을 초과하거나 엄중한 손실로 기업을 더 유지할수 없거나 일반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킬수 있다.

기업파산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다.

제4조(기업파산의 중지)

우리 나라에서 자금을 방조받을수 있거나 상환기간이 된 채무를 파산제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안에 청산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기업을 파산시키지 않을수 있다.

제5조(화해에 의한 기업파산수속의 중지)

기업파산이 제기된 후 당사자들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행중의 파산수속을 중지할수 있다.

제6조(기업파산사건의 재판관할)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기업소재지에 있는 도(직할시)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기업파산사건은 해당 특수경제지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취급처리한다.

제7조(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에 적용한다.

제2장 파산제기와 파산선고

제8조(파산제기의 당사자)

파산제기는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업과 그 채권자가 한다.

기업의 해산처리를 맡은 청산위원회도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는 해당 재판소에 서면으로 한다.

제9조(채권자의 파산제기)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채권금액을 받지 못하게 된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해당 기업을 파산시킬데 대하여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3명이상이 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1명이상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파산시킬 기업의 명칭과 주소를 밝히고 채권을 상환받지 못한 리유, 파산제기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기업의 파산제기)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회의 결정에 따라 면책을 목적으로 자기 기업의 파산을 제기할수 있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기업의 손해정형, 채무를 상환할수 없는 리유를 밝히고 채무 및 재산목록 같은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위원회의 파산제기)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절차에 따라 조직된 청산위원회는 청산사업과정에 그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소에 파산제기를 하여야 한다.

파산제기서에는 기업의 명칭, 주소, 재산 및 채무자료와 청산절차로 기업을 해산할수 없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제12조(파산제기의 취소)

파산제기자는 기업의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파산제기를 취소할수 있다. 이 경우 파산제기취소신청을 해당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제13조(파산제기의 접수, 부결)

재판소는 파산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파산제기를 접수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다.

제14조(파산의 판결)

재판소는 파산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 기업파산을 선고하고 판결서등본을 파산제기자와 해당 기업에 보내야 한다.

판결서에는 파산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이름, 파산근거, 판결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5조(파산판결을 받은 기업의 경영활동중지)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판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회계재산과 정상적인 재산거래 및 경영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6조(파산선고의 통지)

파산선고를 통지받은 기업은 그날부터 2일안에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고 필요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파산기업법정대표의 의무)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파산수속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소의 허가 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떠날수 없으며 파산과 관련한 질문에 설명을 하거나 파산수속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파산기업거래의 무효인정)

파산기업이 파산제기 6개월전 또는 파산제기후에 재산을 감추었거나 분배하였거나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 파산제기후 또는 그 30일전에 자기 채권을 법적근거없이 포기한 행위, 기업파산을 예견하고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9조(청산위원회의 조직)

재판소는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5일안에 2~3명으로 구성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원으로서는 해당 기업창설을 승인한 기관, 재정은행기관 일군 그밖의 일군이 될수 있다.

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재판소가 임명한다.

제20조(청산위원회의 사업)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60일까지의 채권신고기간,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과 파산선고후 20일안에 제1차 채권자회의 소집날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에 진 채무를 반환하여야 할 날자, 파산기업의 재산을 가지고있는자가 그것을 신고 및 반환하여야 할 날자 같은 파산수속시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파산기업의 채권자, 채무자, 파산재산소지자들에게 파산통지를 한다.
3. 파산기업의 공인, 회계장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명단 기타 문건을 넘겨받는다.
4. 파산기업법정대표의 립회밀에 기업재산의 가격을 평가한다.
5. 파산기업의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재정상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판소에 낸다.
6. 필요에 따라 파산기업의 재산에 봉인을 하고 해당한 조서를 작성한다.
7. 파산기업의 경영업무를 결속한다.
8. 기업파산선고때까지 리행하지 않은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그 리행을 중지시킨다.

제21조(제1차 채권자회의)

청산위원회는 정한 날자에 제1차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차 채권자회의는 채권자들속에서 채권자회의 책임자를 정하고 청산위원회로부터 기업의 파산경위와 재산 및 채무실태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제22조(채권자회의결정)

채권자회의결정은 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총액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채택된다.

채권자회의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장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및 확정

제23조(채권자의 채권신고)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채권자는 채권신고기간안에 청산위원회에 서면으로 채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신고서에는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채권명, 채권금액, 채권기간 및 채권발생근거 같은것을 밝히며 채권밖의 청구권을 가지고있을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그와 관련한 증명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채권의 등록)

청산위원회는 채권신고를 받는 차제로 채권등록을 하여야 한다.

채권등록은 채권신고문건의 양식에 따라 한다.

제25조(채권신고의 무효)

채권신고기간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무효이다.

파산에 대하여 통지한 청산위원회는 그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채권자에게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청산위원회의 채권조사)

청산위원회는 채권조사기간안에 신고내용에 근거하여 채권조사를 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관계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알아보는 방법으로 한다.

제27조(의견있는 채권의 처리)

청산위원회는 의견이 제기된 채권에 대하여 관계있는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의견제기자를 대상으로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재판소에 채권확정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재판소는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를 청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8조(채권의 확정)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이 차이나는 채권,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채권의 확정은 청산위원회가 한다.

제29조(채권표의 작성)

채권의 조사 및 확정을 끝낸 청산위원회는 다음의 방법으로 채권표를 만든다.

1. 우선권의 유무에 따라 채권을 구분하고 채권액크기의 순위로 기록한다.
2. 채권밖의 청구권은 리자, 손해보상금, 위약금, 벌금, 수수료, 소송비용 같은 것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3.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시점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채권금액을 계산하여 기록한다.
4. 채권금액과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제기된 내용은 채권별로 기록한다.

제30조(채권표의 효력)

청산위원회는 작성된 채권표를 채권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재판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된 채권표는 모든 채권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1조(채권신고서, 채권표의 보관, 열람)

채권신고서, 채권표는 재판소에 보관한다.

재판소는 파산기업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문건을 보여줄수 있다.

제4장 파산재산의 분배

제32조(파산재산의 구성)

파산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파산재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의 화폐재산과 현물재산, 지적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같은것이 속한다.

파산수속과정에 취득한 재산도 파산재산에 속한다.

제33조(파산재산의 확보)

분배할 파산재산의 확보는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미납된 출자몫을 받아들이고 파산기업의 채권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이 되지 않은 채권은 파산선고날을 시점으로 해당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34조(채권과 채무의 상쇄)

청산위원회는 파산기업의 채무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있을 경우 채권과 채무를 서로 상쇄시킬수 있다.

상쇄는 무역은행이 당일 발표하는 외화교환시세표에 따라 한다.

제35조(재산의 현금화)

청산위원회는 재산분배를 위하여 생산제품 또는 기계설비, 지적소유권 같은 재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36조(파산재산의 분배순위)

파산재산의 분배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
2. 로임과 보험금
3. 세금을 비롯한 국가의무납부금
4. 파산수속중에 제약취소로 생긴 위약금

5. 담보채권
6. 무담보채권
7. 채권밖의 청구권

제37조(국가수수료, 파산수속비용지출정형의 통지)

국가수수료 및 파산수속비용의 지출정형은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 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청산위원회의 통지에 대하여 제기된 의견의 처리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제38조(우선분배순위의 채권)

무담보채권가운데서 우선분배순위로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다른 무담보채권보다 먼저 분배하도록 그 순위를 정한다.

제39조(파산재산분배표의 작성)

청산위원회는 분배순위와 채권표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만들어야 한다.

파산재산분배표에는 분배하여야 할 총금액, 실지로 분배하는 금액, 분배받을 채권자의 명칭(이름), 주소, 분배액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40조(담보채권의 리자, 부족되는 파산재산의 분배액계산)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표의 담보채권분배액에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재산분배날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 제36조에 규정한 순위에 따라 분배액을 정하다가 재산이 부족되어 더 할당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분배순위의 채권에 대한 분배액은 같은 비율로 정한다.

제41조(파산재산분배표의 효력)

파산재산분배표는 청산위원회가 채권자회의에 제출한다.

채권자회의에서 파산재산분배표가 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비준을 받으며 부결된 경우에는 재판소의 판정에 따른다.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파산재산분배표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다.

제42조(파산재산분배의 실시, 기업파산총화보고서의 작성)

파산재산의 분배는 재판소가 비준한 파산재산분배표에 근거하여 청산위원회가 한다.

청산위원회는 파산재산분배를 끝낸 날부터 10일안에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만들어 재판소에 내야 한다.

제43조(기업파산총화보고서의 심의, 기업파산종결의 판정)

재판소는 청산위원회의 기업파산총화보고서를 심의하고 판정으로 파산을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산종결에 대하여 청산위원회에 통지하여 파산관계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기업파산종결판정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

제44조(정산 못한 채권, 파산종결후 발견된 재산의 처리)

파산기업의 재산부족으로 정산하지 못한 채권은 무효로 한다.

파산이 종결된 후에 발견된 파산기업의 재산은 해당 사건을 취급한 재판소가 은행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5장 화 해

제45조(화해제기의 당사자)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리사회 또는 공동협의회에서 토의하고 화해를 제기할 수 있다.

제46조(화해제기서의 제출)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은 화해제기를 할 경우 채권의 조사 및 확정기간안에 화해제기리유, 채무상환방법, 담보 같은것을 밝힌 화해제기서를 청산위원회에 내야 한다.

화해조건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여야 한다.

제47조(화해제기의 심의)

청산위원회는 화해제기를 받은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재판소에 알리고 재판소의 의견에 따라 채권자회의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해심의를 위한 채권자회의에는 채권자, 화해제기자, 청산위원회 성원들이 참가한다. 채권자들의 제기에 따라 파산기업의 채무를 대신 반환하여줄자도 참가할 수 있다.

제48조(화해제기자의 설명, 화해조건의 변경)

화해제기자는 채권자회의에서 화해제기리유와 화해조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채권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해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49조(화해제기의 가결)

화해제기는 채권자회의에 참가한 채권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고 그들의 채권액이 파산채권 총액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가결된다.

제50조(가결된 화해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

재판소는 채권자회의에서 가결된 화해에 대하여 판정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에 대한 재판소의 판정은 채권자 및 화해제기자에게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51조(화해가결판정의 통지, 화해취소의 제기)

재판소는 채권자회의 화해가결에 대한 판정을 한 날부터 5일안에 그에 대하여 화해제기자에게 알려야 한다.

화해승인판정통지를 받은 기업은 화해조건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의무리행을 태공한 기업에 대하여 재판소에 화해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화해취소제기에 대한 판정)

재판소는 화해취소제기가 있는 날부터 10일안에 판정으로 화해취소제기를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화해취소승인판정이 있을 경우 중지하였던 파산수속은 계속된다.

제6장 제 재

제53조(손해보상, 벌금)

청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손해보상을 시키거나 벌금을 물릴수 있다.

1.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리유없이 채권자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청산위원회와 채권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 답변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설명이나 답변을 한 경우
2. 파산재산을 감추었거나 채무문건을 위조하였거나 허위적인 채무를 승인한 경우
3. 회계장부 또는 전표를 위조, 소각하였거나 그 내용을 알수 없게 하였거나 청산위원회가 마감한 회계장부를 고친 경우
4. 파산기업의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재판소의 허가없이 기업소재지, 거주지를 리탈하였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 통신련락을 하여 파산집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기업의 채무자 또는 파산재산의 소지자가 재판소가 정한 기간안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거나 파산기업의 재산을 반환하지 않아 파산수속에 지장을 준 경우
6. 이밖에 파산수속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제54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기업의 파산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주체88(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
주체97(2008)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6호로 수정보충

제1장 대외경제중재법의 기본

제1조(대외경제중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경제중재란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에 따라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을 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중재부의 재결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이다.
2.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사이의 계약 또는 그밖의 경제법률관계에서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약속이다.
3. 중재부란 대외경제분쟁사건의 취급처리를 맡은 단독중재원 또는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원집단이다.
4. 재결이란 대외경제분쟁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부가 내린 결정이다.
5. 외국적요소란 당사자들가운데 어느 일방이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이거나 업무장소, 거주지, 주소지 또는 분쟁재산이나 중재장소가 다른 나라에 있는것 같은 다른 나라와 련관되는 조건들이다.
6. 중재위원회란 대외경제분쟁해결사업을 조직하고 중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설중재기관이다.
7. 재판기관이란 최고재판소 또는 최고재판소가 지정한 재판기관이다.
8. 해당 기관이란 재판기관밖의 권한있는 국가기관이다.
9. 조정이란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조정인이 되어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 또는 타협하도록 노력하는 행위이다.

제3조(대외경제중재의 특성)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으며 중재부가 내린 재결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제4조(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적요소와 함께 당사자들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한 분쟁
2. 국가가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위임한 분쟁

제5조(중재의 당사자)

대외경제중재의 당사자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경우에 따라 공민도 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6조(분쟁해결원칙)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는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있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통지의 효력)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통지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었거나 그의 업무장소 또는 거주지, 우편주소에 전달되었을 경우 접수된것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를 알수 없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업무장소, 거주지, 우편주소로 통지가 발송되었을 경우에만 접수된것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기권과 그 효력)

당사자가 중재와 관련한 합의 또는 이 법에 어긋나게 중재가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즉시 또는 정해진 기간안에 의견을 제기하지 않아 중재사건의 취급이 계속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의견제기권을 포기한것으로 한다.

제9조(중재사건의 이관)

이 법 제4조에 규정한 중재사건이 재판기관에 제기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고도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사건을 중재위원회에 넘겨준다.

중재합의가 무효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중재부의 독자성보장)

국가는 대외경제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사건의 취급과 처리에 간섭할수 없다.

제11조(국제적인 교류와 협조)

국가는 대외경제중재활동에서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장 중재합의

제12조(중재합의와 그 방법)

당사자들은 대외경제거래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중재합의문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할수 있다.

제13조(중재합의의 형식)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수표한 문건이나 당사자들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팩스, 전자우편 같은 데 중재의사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있을 경우와 중재합의가 구두 또는 행동 그밖의 수단이나 형식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있거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중재합의로 인정한다.

제14조(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일방의 중재합의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의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할수 있다.

제15조(중재합의의 무효사유)

다음의 경우 중재합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1. 중재합의가 법이 정한 중재관할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2. 중재합의당시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
3. 강요에 의하여 중재합의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중재합의와 보존조치와의 관계)

중재제기를 하기 전이나 사건취급단계에서 중재위원회, 중재부 또는 재판기관, 해당 기관에 재산보존조치 같은 임시조치를 취해줄데 대한 당사자일방의 제기와 그에 대한 승인은 중재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제17조(중재제기조건)

중재제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청구사실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중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이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1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재제기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중재제기방법과 접수 및 부결통지)

중재신청은 중재제기서와 중재위원회가 정한 첨부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받은 날부터 5일안에 그것을 검토하고 중재제기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접수통지서를 각 당사자들에게 보내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신청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9조(대리인에 의한 중재제기)

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제기를 하거나 항변할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국민이나 외국인이 될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3장 중재부

제20조(중재부의 구성)

중재부의 중재원수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수를 1명 또는 3명으로 정한다.

제21조(중재원의 선정절차)

중재원의 선정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로 중재원을 선정한다.

1. 중재부를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하려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각각 1명의 중재원을 선정한 다음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15일안에 책임중재원을 선정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원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원이 책임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선정된 중재원의 요구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2. 중재부를 중재원 1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중재원 선정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당사자일방의 요구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원을 선정한다.

당사자들은 2항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

제22조(중재원선정에서 중재위원회의 의무)

중재위원회는 중재원을 선정할 경우 당사자들의 요구 또는 이 법에 규정한 중재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독자적인 중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23조(중재원의 자격)

중재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될수 있다.

1. 중재위원회의 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 또는 경제부문의 일군
3. 변호사,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일군
4. 중재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조선동포 또는 외국인

제24조(중재원의 배제사유)

중재원으로 선정된자는 선정된 때부터 사건의 취급처리가 끝날 때까지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이 제기될수 있는 모든 사유를 중재위원회와 당사자들에게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기의 공정성과 독자성에 대하여 의심받을 사유가 있거나 이 법에 정해진 자격 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재원은 배제될수 있다.

제25조(중재원의 배제절차)

당사자들은 중재원의 배제절차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원을 배제하려는 당사자는 이 법 제24조에 규정된 중재원의 배제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10일안에 해당 이유를 밝힌 중재원배제신청문건을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배제신청을 받은 중재원이 사임하지 않거나 상대방당사자가 배제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배제신청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배제절차나 앞항의 절차에 따라 중재원이 배제되지 않을 경우 배제신청자는 중재부의 배제신청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배제신청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원배제신청과 관련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없으며 중재원은 자기에 대한 배제신청이 제기된 기간에도 해당 사건을 취급하고 재결을 내릴수 있다.

제26조(중재원의 사임, 교체사유)

중재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와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재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중재원이 자기 사업을 할수 없는 법적 또는 실제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2. 중재원이 정당한 리유없이 사건해결을 지연시킬 경우

제27조(중재원을 다시 선정하는 절차)

중재원이 배제, 사임, 교체되는 경우 다른 중재원의 선정은 배제, 사임, 교체되는 중재원의 선정에 적용하였던 절차에 따른다.

제28조(중재부의 권한)

중재부는 중재합의의 존재여부, 효력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 증거를 분쟁해결과 판단의 기초로 삼을것인가와 증거의 타당성, 중재부의 관할권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합의의 존재여부와 효력에 대하여 결정할 경우 중재부는 계약서의 중재조항을 다른 조항의 효력과 별개로 보아야 한다.

분쟁과 관련한 계약이 무효한것으로 결정되어도 중재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9조(중재부와 관련한 의견제기)

당사자들은 중재부가 관할권이 없다는데 대한 의견을 첫 항변서의 제출기간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가 중재원을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중재부가 권한범위를 벗어나 사업하는데 대한 의견은 사건취급기간안에 해당 사유가 나타난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부는 분쟁당사자들의 의견제기가 정당한 사유로 늦어졌을 경우 그 의견을 받아들일수 있다.

제30조(중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처리)

중재부는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의견에 대하여 별도로 먼저 결정하거나 재결에 포함시켜 결정할수 있다.

중재부가 별도로 관할권을 가지고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안에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으며 제기된 의견과 관련하여 중재위원회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서는 의견을 제기할수

없다.

중재위원회가 제기된 의견을 처리하는 기간에도 중재부는 해당 사건의 취급을 계속하거나 재결을 내릴수 있다.

제31조(림시조치)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당사자일방의 신청 또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산보존처분 같은 림시조치에 대하여 결정할수 있으며 피신청자와 신청자에게 림시조치에 해당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가 림시조치결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부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그 집행을 의뢰할수 있다.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림시조치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해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재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림시조치의 해제, 취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는 림시조치에 대한 결정과 그 집행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는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즉시 그것을 취소하거나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중재절차

제33조(당사자들의 지위)

당사자들은 분쟁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자기의 주장사실을 충분히 진술할수 있다.

제34조(중재절차의 결정)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35조(중재장소)

중재장소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당사자들의 편의, 사건해결의 전반상황을 고려하여 중재장소를 정한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장소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중재원들의 협의, 증인이나 감정인 기타 사건관련자들과 사실확증, 재산이나 문건의 조사 같은것을 할수 있다.

제36조(중재의 시작일)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는 피신청자가 중재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된다.

제37조(중재언어)

당사자들은 중재언어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부가 중재언어를 결정하며 중재부의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조선어로 한다.

정해진 중재언어는 당사자들의 문건, 중재심리, 재결, 결정과 그밖의 통지에도 사용된다.

제38조(청구와 항변)

원고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중재부가 정한 기간안에 자기의 청구사실과 분쟁내용, 요구사항을 주장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항변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문건이나 증거물을 제출할수 있으며 사건취급기간안에 자기의 청구내용, 항변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청구내용 또는 항변내용의 수정, 보충이 부당하여 사건해결이 지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을수 있다.

제39조(중재심리방식)

중재부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심리를 구두로 할것인가 또는 문건으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사이에 구두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일방의 요구에 따라 사건취급의 필요한 단계에서 구두심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당사자의 의무불리행에 대한 처리)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중지하고 결속을 하며 피고가 충분한 이유없이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취급을 계속한다.

앞항의 경우 피고가 항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인정으로 되지 않는다.

중재부는 원고와 피고가운데서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중재심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증거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건심리를 하고 제출된 증거에 기초하여 재결을 내릴수 있다.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거나 중재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감정인, 증인)

당사자들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부는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고 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당사자들이 감정과 관련한 문서, 물건 등을 감정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당사자일방의 요구 또는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인, 증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답변하게 할수도 있다.

제42조(증거조사의 의뢰)

중재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거나 재판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당사자도 중재부의 승인을 받아 증거조사를 의뢰할수 있다.

증거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문건에 필요한 사항을 밝힌다.

제43조(증거조사결과의 통지)

증거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15일안에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인심문조서등본이나

감정조사등본, 검증조사등본 같은 증거조사문건을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중재부에 보내야 한다.

제44조(맞증재)

피고는 접수된 중재사건에 대하여 맞증재를 신청할수 있다.

맞증재는 기본증재와 직접 관련되는것이여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맞증재로 중재사건처리가 지연된다고 인정할 경우 맞증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을수 있다.

제5장 재 결

제45조(재결의 준거법)

재결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재결의 준거법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중재부는 분쟁사건과 가장 밀접한 련관이 있고 적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조건과 국제판례를 고려하여 결정하거나 재결을 내려야 한다.

제46조(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가결로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중재부성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중재원이 의사결정을 한다.

제47조(화해)

당사자들은 중재사건취급처리의 임의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서로 화해할수 있다.

중재부는 당사자들이 화해하였을 경우 사건처리를 결속하고 화해결정을 하여야 한다.

화해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8조(조정)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다.

조정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9조(재결문의 작성형식)

재결문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재결문에는 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3명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의 재결문에는 과반수중재원의 수표가 있어야 한다.

제50조(재결문의 내용)

재결문에는 재결의 근거로 되는 사유와 재결문의 작성날자, 중재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재결은 재결문에 밝혀진 날자, 장소에서 내린것으로 한다.

제51조(재결문의 발송)

재결이 내려지면 중재위원회는 재결문등본을 당사자들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주어야 한다.

제52조(중재의 종결)

중재는 재결 또는 다음의 경우 중재부의 결정으로 끝난다.

1.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을 경우
2. 원고와 피고가 중재를 끝내는데 합의하였을 경우
3. 중재부가 중재를 계속하는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부는 원고가 중재제기를 취소하였으나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며 분쟁을 끝까지 해결하는것이 피고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재사건취급을 끝내지 말아야 한다.

중재부의 사업은 이 법 제54조와 제5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의 종결과 함께 끝난다.

제53조(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의 신청)

다음의 경우 당사자들은 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결문의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1. 재결문에서 계산상 또는 문구상결함 같은것을 정정하려 할 경우
2. 재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경우
3. 청구는 하였으나 재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추가재결을 요구할 경우

중재부는 일방당사자가 재결문에 대한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재결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재결문의 정정, 해석 및 추가재결)

중재부는 재결문에 대한 정정, 해석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안에 정정이나 해석을 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석문은 재결문의 한 부분으로 된다.

추가재결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45일안에 추가재결을 내려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재부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재결문의 정정, 해석 또는 추가재결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재결문의 정정과 해석, 추가재결의 형식은 이 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른다.

제6장 재결의 효력 및 취소제기

제55조(재결의 효력발생일)

재결의 효력은 재결문을 작성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56조(재결에 대한 취소제기)

재결에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그것을 취소시켜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재결의 취소제기는 재판기관에 한다.

제57조(재결의 취소제기사유)

재결의 취소제기는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1. 당사자가 중재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라는 사실
2.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3.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4. 재결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5.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에 따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어긋나거나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을 경우 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제58조(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

재결취소신청의 유효기간은 당사자들이 재결문이나 그 정정문, 해석문, 추가재결문을 받은 날부터 2개월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재결에 대하여 재판기관의 집행판정이 확정된 후에는 재결의 취소신청을 제기할수 없다.

제59조(재결의 취소와 관련한 재판기관의 조치)

재판기관은 재결의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재결의 취소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다시 하도록 통지하며 재결의 취소사유가 재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퇴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요구할수 있다.

제7장 재결의 집행

제60조(재결의 집행)

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재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재결문에 재결집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61조(재결의 집행신청)

책임있는 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당사자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재결집행신청문건에는 재결문의 등본을 첨부한다.

제62조(재결의 집행, 제재조치)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재결집행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에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판정, 결정으로 재결을 집행시켜야 한다.

재결의 집행은 집행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집행문에 따라 재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제활동중지, 벌금부과, 몰수, 출입국중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63조(해당 나라의 재판기관에 집행신청)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공화국영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나라의 재

판기관에 재결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제64조(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승인과 집행은 공화국의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65조(다른 나라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거부사유)

다음의 사실이 증명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중재부가 내린 재결의 집행을 거부할수 있다.

1. 당사자가 중재 합의당시 준거법에 따라 무능력자이거나 중재 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 또는 당사자들이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사실
2. 당사자가 중재원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항변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
3. 재결이 중재 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중재 합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사실
4. 중재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중재심리를 한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
5. 재결이 아직 당사자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재결을 내린 나라의 재판기관 또는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집행정지되어있다는 사실
6. 해당 분쟁이 재결을 내린 나라의 법에 의하여 중재절차로 해결할수 없다는 사실
7. 재결의 집행이 공화국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

주체82(1993)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0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5호로 수정보충

제1장 토지임대법의 기본

제1조(토지임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토지임차자)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은 토지를 임대받아 리용할수 있다.

제3조(임차자의 토지리용권과 그 한계)

토지임차자는 토지리용권을 가진다.

임대한 토지에 있는 천연자원과 매장물은 토지리용권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4조(토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토지임대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밑에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부서가 맺는다.

제5조(토지리용권의 출자)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영, 합작기업에 토지리용권을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지의 임대기간)

토지임대기간은 50년안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토지에 대한 임차자의 재산권)

임대한 토지의 리용권은 임차자의 재산권으로 된다.

제8조(임차한 토지의 리용)

임차한 토지는 우리 나라 토지관련법규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리용한다.

제2장 토지의 임대방법

제9조(토지의 임대방법)

토지의 임대는 협상의 방법으로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입찰과 경매의 방법으로도 토지를 임대할수 있다.

제10조(토지임대기관이 제공할 자료)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임차희망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한다.

1. 토지의 위치와 면적, 지형도
2. 토지의 용도
3. 건축면적, 토지개발과 관련한 계획
4. 건설기간, 투자의 최저한계액
5. 환경보호, 위생방역, 소방과 관련한 요구
6. 토지임대기간
7. 토지개발상태

제11조(협상)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차희망자는 제공된 토지자료를 연구한 다음 기업창설승인 또는 거주승인문 건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이용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20일안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준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임차희망자는 토지의 면적, 용도, 임대목적과 기간, 총투자액과 건설기간, 임대료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는다.
4.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넘겨주는 값을 받은 다음 토지이용증을 발급하고 등록한다.

제12조(입찰)

입찰을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의 자료와 입찰장소, 입찰 및 개찰날자, 입찰절차를 비롯한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거나 입찰안내서를 지정한 대상자에게 보낸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응찰대상자에게 입찰문건을 판다.
3.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과 관련한 상담을 한다.
4. 입찰자는 정한 입찰보증금을 내고 봉인한 입찰서를 입찰함에 넣는다.
5.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경제, 법률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성원을 망라하여 입찰심사위원회를 조직한다.
6. 입찰심사위원회는 입찰서를 심사, 평가하며 토지개발 및 건설과 임대료조건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7.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입찰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급한다.

8. 락찰자는 락찰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한 토지리용권값을 지불한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사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연기하려 할 경우에는 정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에 신청하여 30일간 연장받을수 있다.
9. 락찰되지 못한 응찰자에게는 락찰이 결정된 날부터 5일안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준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에 대한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다.
10. 락찰자가 정한 기간안에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에는 락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제13조(경매)

경매를 통한 토지의 임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토지자료, 토지경매날자, 장소, 절차, 토지의 기준값 같은 경매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한다.
2.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공시한 토지의 기준값을 기점으로 하여 경매를 붙이고 제일 높은 값을 제기한 임차희망자를 락찰자로 정한다.
3. 락찰자는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다음 토지리용증을 발급받고 등록한다.

제14조(임차한 토지의 리용, 보증계약)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과 용도를 변경하는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토지리용권의 양도와 저당

제15조(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과 그 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

토지리용권을 양도하거나 저당하는 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에 정해진 기간안에서 남은 리용기간을 넘을수 없다.

제16조(토지리용권의 양도조건)

토지임차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토지리용권을 넘겨주는 값의 전액을 물고 계약에 지적된 투자몹을 투자하여야 임차한 토지의 리용권을 판매, 재임대, 증여 또는 저당할수 있다.

제17조(토지리용권의 양도범위)

토지리용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넘어간다.

제18조(토지리용권의 판매)

토지리용권의 판매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약을 맺고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는다.
2. 토지이용권의 판매자는 계약서사본을 첨부한 토지이용권판매신청문건을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는다.
3. 토지이용권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해당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권명의 변경등록을 한다.

제19조(임대한 토지의 우선구매권)

토지임차자가 토지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은 우선적으로 그것을 구매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20조(임차한 토지의 재임대)

토지임차자는 임차한 토지를 재임대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한 재임대신청서를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토지이용권의 저당)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도 함께 저당된다.

제22조(토지이용권의 저당계약제결)

토지이용권을 저당하는 경우 저당하는자와 저당받는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맞게 저당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저당받는자는 저당하는자에게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사본, 토지이용증사본, 토지의 실태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제23조(토지이용권의 저당등록)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저당계약을 맺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저당토지의 처분)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자는 저당한자가 저당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저당계약기간안에 기업을 해산, 파산하는 경우 저당계약에 따라 저당받은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처분할수 있다.

제25조(처분한 저당토지의 리용)

토지이용권을 저당받은자가 처분한 토지이용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부착물을 가진자는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고 해당 등록기관에 명의변경등록을 하며 토지임대차계약에 맞게 토지를 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저당토지의 재저당 및 양도금지)

토지이용권을 저당한자는 저당계약기간안에 저당받은자의 승인없이 저당한 토지이용권을 다시 저당하거나 양도할수 없다.

제27조(토지이용권저당등록의 취소)

채무상환이나 기타 원인으로 토지저당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저당받은자와 저당한자는 10일안으로 토지이용권저당등록을 취소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제28조(토지임대료의 지불의무)

토지임차자는 정해진데 따라 토지임대료를 물어야 한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임대기관에 묻는다.

제29조(토지개발비)

토지를 임대하는 기관은 개발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차자로부터 토지개발비를 토지임대료에 포함시켜 받는다.

토지개발비에는 토지정리와 도로건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난방시설건설에 지출된 비용이 속한다.

제30조(토지임대료의 지불기간)

토지임차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90일안에 토지임대료의 전액을 물어야 한다.

토지종합개발대상같이 많은 면적의 토지를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임대기관이 승인한 기간안에 토지임대료를 나누어 물수 있다.

제31조(리행보증금의 지불의무)

협상, 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임차한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안으로 토지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리행보증금을 내야 한다.

리행보증금은 토지임대료에 충당할수 있다.

제32조(토지임대료의 미납에 대한 연체료)

토지임대기관은 임차자가 토지임대료를 정한 기간안에 물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매일 미납금의 0.0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물린다.

연체료를 련속 50일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33조(토지사용료의 지불의무)

외국투자기업과 외국투자은행은 해당 재정기관에 토지사용료를 해마다 물어야 한다.

장려대상에 대하여서는 토지사용료를 10년까지 낮추어주거나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5장 토지리용권의 반환

제34조(토지리용권의 반환과 잔존가치보상)

토지리용권은 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임대기관에 자동적으로 반환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부착물도 무상으로 반환된다.

토지임대기간이 40년이상인 경우 그 기간이 끝나기 10년안에 준공한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잔존가치를 보상하여줄수 있다.

제35조(토지이용권등록취소수속)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토지이용증을 해당 발급기관에 반환하고 토지이용권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토지임대기간의 연장)

토지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토지임차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토지를 임대한 기관에 토지이용연기신청서를 내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맺고 해당한 수속을 하며 토지이용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임차한 토지의 반환비용과 정리)

토지임차자는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과 설비, 부대시설물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고 토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토지이용권의 취소)

토지이용권은 임대기간안에 취소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안에 토지이용권을 취소하려는 경우 토지임대기관은 6개월전에 토지임차자와 합의하고 같은 조건의 토지로 교환해주거나 해당한 보상을 하여준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39조(벌금, 회수, 원상복구, 계약무효)

토지이용증이 없이 토지를 리용하였거나 승인없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토지이용권을 양도, 지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고 토지에 건설한 시설물을 회수하거나 토지를 원상복구시키며 양도 및 저당계약을 취소시킨다.

제40조(토지이용권의 취소)

임차자가 토지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총투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토지를 개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권을 취소할수 있다.

제41조(신소와 그 처리)

토지임차자는 받은 제재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일안에 제재를 준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접수한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분쟁해결)

토지임대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 관 법

주체 72(1983)년 10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 79(1990)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4호로 수정보충
주체 82(1993)년 1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1호로 수정보충
주체 90(2001)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68호로 수정보충
주체 98(2009)년 6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2호로 수정보충
주체 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4호로 수정보충

제1장 세관법의 기본

제1조(세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은 세관등록과 수속,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세관의 정의와 설치장소)

세관은 나라의 관문이다.

국가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 같은 필요한 곳에 세관을 설치한다.

제3조(세관의 임무)

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기타 물품을 검사하고 감독한다.
2.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인원의 짐과 휴대품을 검사한다.
3.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부과하고 받아들인다.
4.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과 보세물자의 반출입을 감독한다.
5.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 임시반출입물자의 리용, 처리정형을 감독한다.
6.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을 들어오거나 내가는 행위, 밀수행위, 허위신고 행위를 조사단속한다.
7. 세관통계를 작성한다.
8.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4조(세관등록, 수속의 간소화원칙)

국가는 세관등록을 정확히 하며 세관을 통과하는 물자의 수속공정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세관검사원칙)

국가는 세관검사방법을 개선하고 검사수단을 현대화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짐, 국제우편물, 국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제때에 정확히 하도록 한다.

제6조(관세부과원칙)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과 수출을 장려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게 부과하며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물자에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도록 한다.

제7조(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금지원칙)

국가는 세관과 그와 련관된 기관들의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가르도록 한다. 세관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8조(세관일군의 책임성과 역할제고, 전문가양성원칙)

국가는 세관일군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세관부문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세관분야의 대외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세관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 국경을 통과하여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는 외국투자기업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도 속한다.

특수경제지대의 세관사업절서는 따로 정한다.

제2장 세관등록 및 수속

제11조(세관등록)

수출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관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물자를 반출입할수 없다.

제12조(세관등록신청과 승인)

세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관등록신청서와 함께 무역회사영업허가증, 기업창설승인서, 은행담보서, 수출기지등록증, 세무등록증 같은 필요한 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3조(세관수속의 당사자)

세관수속은 짐과 운수수단을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수속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세관수속기간)

세관수속은 해당 물자가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제15조(세관수속문건의 제기와 검토)

세관수속은 정해진 세관에서 한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세관수속문건을 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관수속문건을 세관에 직접 낼수도 있다.

세관수속문건을 접수한 세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수속을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제16조(공민의 세관신고)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도착하면 휴대품과 귀금속, 보석, 화폐, 유가증권, 따로 부친 짐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중계짐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 영역을 거쳐 다른 나라에 중계수송하는 짐에 대한 세관수속은 그 짐을 맡아 중계수송하는 기관이 한다. 이 경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세관수속을 할수 있다.

반출입금지품은 우리 나라 영역을 거쳐 중계수송할수 없다.

제18조(우리 나라를 경유하는 운수수단의 세관수속)

우리 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나라로 가는 운수수단은 세관수속을 하여야 통과할수 있다. 이 경우 세관수속당사자는 운수수단에 대한 문건과 실은 짐의 명세서를 세관에 내야 한다.

제19조(반출입물자의 통과지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은 세관이 있는 곳으로만 들어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장 세관검사와 감독

제20조(세관의 검사대상)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모든 짐, 국제우편물, 공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는 세관이 한다.

세관검사를 받지 않은 짐, 국제우편물, 국민의 휴대품과 운수수단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21조(세관검사제외대상)

당, 국가, 정부대표단성원,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대표기관의 외교력권소지자 그밖에 따로 정한 국민의 휴대품과 따로 부친 짐, 외교우편물과 외교신서물에 대하여서는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출입금지품, 반출입통제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할수 있다.

제22조(세관의 단속통제대상)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출입통제품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세관은 무기, 총탄, 폭발물, 독약, 극약, 마약 같은 반출입금지품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출입통제품, 국가무역계획에 없거나 가격승인을 받지 않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통제하여야 한다.

제23조(세관검사장소)

세관검사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제우편물취급장소와 그밖의 정해진 곳에서 한다.

국민의 짐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는 련차나 배 같은 운수수단안에서도 할수 있다.

제24조(세관검사방법)

세관은 짐과 국제우편물, 휴대품을 기계로 검사하거나 헤쳐보는 방법으로 검사할수 있다.

밀수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운수수단, 국민에 대하여 검색도 할수 있다.

제25조(이동세관검사, 통과짐의 세관검사)

세관은 이동검사를 하거나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짐을 검사할수 있다.

이동세관검사절차, 우리 나라 령역을 통과하는 짐의 세관검사절차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세관검사의뢰와 회보)

세관은 수입하는 대형설비, 짐함짐, 유개화차짐 같은것에 대한 세관검사를 짐도착지의 해당 기관에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짐임자는 짐의 도착정형을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짐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7조(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의 수송)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은 도착지까지 세관의 감독밑에 수송한다.

해당 교통운수기관은 세관검사를 의뢰한 짐을 책임적으로 수송하며 세관의 승인 없이 수송도중에 부리우거나 도착지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28조(운수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은 운수수단의 짐칸, 손님칸, 선원실, 승무원실 같은 필요한 장소를 검사할 수 있다.

세관검사과정에 반출입금지품 또는 반출입통제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 물품을 일정한 짐칸에 넣고 감독한다.

제29조(세관의 봉인)

세관은 필요에 따라 세관이 감독하는 짐 또는 그것을 보관한 창고, 집합, 운수수단의 짐칸 같은것에 봉인을 할수 있다.

봉인은 세관의 승인없이 뜯을수 없다.

제30조(검사, 검역기관들과의 연계)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에 설치된 통행검사기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해진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인원과 물자는 통과시킬수 없다.

제31조(세관이 관할하는 집에 대한 감독)

세관은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보세창고, 면세창고, 무관세상점 같은데서 관할하고있는 집,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 같은것이 손실되거나 승인없이 처분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실어가지 않은 짐, 임자없는 짐 같은것은 세관이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

제32조(잘못 들어온 짐의 처리)

잘못 들어온 다른 나라의 짐, 국제우편물, 임자없는 짐은 세관의 승인밑에서만 처리할수 있다.

제33조(세관검사와 감독조건의 보장)

세관검사를 받거나 세관이 감독하는 집을 보관, 리용, 가공, 처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외국투자기업은 세관검사 또는 감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세관이 관할하는 집과 운수수단의 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이 관할하는 집과 운수수단을 옮기거나 다른 곳으로 내가려 할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의 포장, 재포장, 선별작업 같은것을 하려 할 경우에도 세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짐의 사고신고)

세관이 관할하고있는 집을 나르거나 보관, 관리하는자는 짐의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그밖의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국제우편물의 리용에서 금지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편지나 인쇄물속에 물건을 넣지 말며 소포속에도 편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보석 같은것을 넣지 말아야 한다.

국제우편물을 리용하여 반출입금지품과 반출입통제품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 장사를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가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7조(공민의 짐과 휴대품)

우리 나라 국경을 넘나드는 공민은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기념품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직업적으로 우리 나라 국경을 넘어다니는 공민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용품과 생활필수품만을 가지고 다닐수 있다.

제38조(이사짐과 상속재산의 반출입)

이사짐과 상속재산은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이사짐과 상속재산이라도 반출입금지품은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으며 반출입통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4장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

제39조(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의 납부의무)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의 부과는 세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관세와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은 수입품은 국경도착가격, 수출품은 국경인도가격으로 하며 국제우편물과 공민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물품은 소매가격으로 한다.

제41조(관세의 계산)

관세의 계산은 해당 물자의 가격과 국경을 통과하는 당시의 관세률에 따라 한다.

세관은 관세계산의 기초로 삼은 물자의 가격이 해당 시기 국제시장가격보다 낮게 신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신고된 물자의 가격을 다시 평가해줄 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42조(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의 제정, 공포)

관세경계선을 통과하여 반출입한 후 사용 및 소비되는 짐에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은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관세부과대상과 관세률을 공포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3조(조약에 따르는 관세률)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에 관세특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혜관세률을 적용하며 관세특혜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4조(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자의 관세률)

관세률이 정해져있지 않은 물자에는 그와 유사한 물자의 관세률을 적용한다.

제45조(관세와 세관료금의 납부화폐)

관세와 세관료금은 국가가 정한 화폐로 납부한다.

제46조(관세의 납부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세납부계산서에 따라, 해당 공민은 관세납부통지서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관세납부계산서, 관세납부통지서의 발급은 해당 세관이 한다.

제47조(관세의 납부시기)

물자를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세를 해당 물자가 반출입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집의 관세납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국제우편물과 공민의 집은 세관이 정한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찾을수 있다.

세관은 정해진 기간안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관세액에 맞먹는 집을 담보물로 하고 남은 집을 먼저 내출수도 있다.

제49조(관세의 면제대상)

다음의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국가적조치에 따라 들여오는 물자
2.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에서 우리 나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지원하는 물자
3. 외교력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이나 그 성원이 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정해진 기준의 범위에서 들어오는 사무용품, 설비, 비품, 운수수단, 식료품
4.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무관세상점물자
5. 가공무역, 중계무역, 재수출 같은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보세물자
6.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립시반출입하는 물자
7. 해당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있는 물자
8. 이사집과 상속재산
9.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공민의 집, 국제우편물

제50조(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법 제4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온 물자와 생산한 제품을 우리 나라 영역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
2. 무관세상점물자를 용도에 맞지 않게 판매하려 할 경우
3. 가공, 중계, 재수출 같은 목적으로 반입한 보세물자를 우리 나라 영역에서 판매하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4. 국제상품전람회나 전시회 같은 목적으로 립시반입한 물자를 우리 나라 영역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5. 해당 대표단성원과 외교려권을 가진 공민,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이나 그 성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여 물자를 들여오거나 내가는 경우
6. 국제우편물 또는 공민의 짐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51조(면제대상의 관세납부절차)

이 법 제50조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2조(관세의 추가부과)

세관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부과하였을 경우 해당 물자를 통과시킨 날부터 3년안에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수 있다.

제53조(관세의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받은 관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준다.

1. 국가적조치로 해당 물자의 반출입이 중지되었을 경우
2. 수출입물자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수송도중 전부 또는 일부 못쓰게 되었을 경우
3. 관세의 부과 또는 계산을 잘못하여 관세를 초과납부하였을 경우

제54조(관세의 반환신청)

관세납부당사자는 이 법 제5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관세를 납부한 날부터 1년안에 해당 관세를 돌려줄것을 세관에 요구할수 있다.

세관은 관세반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운영)

대외경제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을 설립, 운영한다.

보세지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보세전시장의 설립, 운영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56조(보세기간)

보세기간에는 보세물자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세기간은 보세공장, 보세창고에서는 2년으로 하며 보세전시장에서는 세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7조(보세기간의 연장)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집임자는 보세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보세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세관은 보세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58조(보세물자의 반출입담보)

보세물자를 가공, 포장, 조립하기 위하여 보세지역밖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관세액에 맞먹는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세관에 맡겨야 한다.

세관은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돌려준다. 그

러나 보세물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반입되지 않으면 세관에 맡긴 담보물 또는 담보금을 관세로 처리할수 있다.

제59조(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조치)

중요공업부문과 나라의 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특별보호관세, 반투매관세, 보복관세의 부과대상과 세율, 부과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0조(선박톤세의 부과)

우리 나라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우리 나라 소유의 배,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소유의 배는 선박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선박톤세는 외국선박대리기관이 납부한다.

제61조(세관료금의 납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관검사료, 세관집보관료 같은 세관료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5장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2조(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세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3조(세관사업에 대한 지도와 복종)

세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세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아래 세관들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세관은 중앙세관지도기관에 복종한다.

제64조(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관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비상설관세심의위원회는 내각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65조(세관의 협조의뢰)

세관은 밀수행위를 조사, 단속하거나 또는 관할하고있던 짐, 운수수단이 없어졌거나 기술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기관, 국경경비기관, 전문감정기관, 과학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할수 있다.

협조를 의뢰받은 기관은 제때에 필요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제66조(련관기관일군협의회와 합의된 문제의 처리)

국경교두와 국경철도역 같은데서는 세관과 통행검사소, 수출입품검사점역소, 무

역지사일군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세관장이 주관하며 합의된 문제들은 세관장의 지휘밑에 처리한다.

제67조(관세납부문건, 면세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조사)

세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세납부문건을 검열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자의 보관, 리용, 처리정형을 조사할수 있다.

제68조(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세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세관수속과 검사, 관세의 부과와 납부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9조(연체료의 부과)

세관은 관세, 선박톤세, 세관료금을 정한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할수 있다.

제70조(억류, 몰수, 벌금, 중지처벌)

짐,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휴대품을 비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경우에는 억류, 몰수, 벌금, 업무활동중지 같은 처벌을 줄수 있다.

제7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72조(신소와 그 처리기간)

세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세관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는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주체100(2011)년 5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채택

제1장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기본

제1조(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이하부터 국제관광특구라고 한다.)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제관광특구의 지위와 위치)

국제관광특구는 관광 및 그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관광지구이다.

국제관광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온정리 일부 지역과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제3조(국제관광특구발전원칙)

세계의 명산 금강산을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꾸리는것은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금강산을 여러가지 관광목적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꾸리고 관광을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4조(투자장려 및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 기관, 단체도 투자할수 있다.

국가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자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5조(재산보호원칙)

국가는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6조(국제관광특구관리의 담당자)

국제관광특구의 관리는 중앙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기판(이하부터 국제관광특구지도기판이라고 한다.)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이하부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한다.

제7조(국제 교류와 협력)

국가는 국제 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 관광기구, 다른 나라 관광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법규 적용)

국제 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관광 및 관광업 기타 경제활동은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에 따라 한다.

제2장 국제관광특구의 관리

제9조(국제 관광특구지도기관의 지위)

국제 관광특구지도기관은 국제 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중앙지도기관이다.

제10조(국제 관광특구지도기관의 임무와 권한)

국제 관광특구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지도
2. 국제 관광특구법규의 시행세칙작성
3. 국제 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심의, 승인
4. 대상건설설계문건사본의 접수보관
5. 국제 관광특구의 세무관리
6.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

제11조(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지위)

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 관광특구를 관리하는 현지집행기관이다.
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제12조(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국제 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제 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작성 및 실행
2. 관광자원의 조사, 개발, 관리
3. 관광선전과 관광객모집, 관광조직
4. 국제 관광특구에서의 질서유지, 인신 및 재산보호
5. 토지, 건물의 임대
6.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설승인, 등록, 영업허가
7. 토지리용권, 건물, 료전기재의 등록
8.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9.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10. 국제 관광특구하부구조시설물의 관리
11. 국제 관광특구의 환경보호, 소방대책

12.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반출입에 대한 협조

13. 이밖에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13조(공동협의기구의 조직운영)

국제관광특구에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 투자가, 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하는 공동협의기구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공동협의기구는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 조정한다.

제14조(국제관광특구의 출입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무사증제를 실시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인원과 수송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을 거쳐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하는 질서, 국제관광특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15조(검사, 검역)

국제관광특구에 출입하는 인원, 동식물과 수송수단은 통행검사와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 검역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안전과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 검역사업을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관리)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풍치림을 베거나 명승지, 바다기슭의 솔밭, 해수욕장, 기암절벽, 우아하고 기묘한 산세, 풍치좋은 섬을 비롯한 자연풍치와 동굴, 폭포, 옛성터 같은 천연기념물과 명승고적을 파손시키거나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며 정해진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소음, 진동기준 같은 환경보호기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통신수단의 리용)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장 관광 및 관광봉사

제18조(관광당사자)

국제관광특구에서의 관광은 외국인이 한다.

공화국공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수 있다.

제19조(관광형식과 방법)

관광은 등산과 유람, 해수욕, 휴양, 체험, 오락, 체육, 치료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한다.

관광객은 국제관광특구안에서 자유롭게 관광할수 있다.

제20조(관광환경과 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관광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관광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관광객을 위한 봉사)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에서 숙박, 식당, 상점, 카지노, 골프, 야간구락부, 치료, 오락 같은 여러가지 관광봉사시설을 꾸리고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22조(국제적인 행사진행)

국제관광특구에서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전람회, 토론회, 예술공연, 체육경기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수 있다.

제23조(교통보장)

국제관광특구지도기판과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는 국제비행장과 항만, 관광철도, 관광도로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의 교통상편리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

제24조(기업창설)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을 위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여행업, 숙박업, 식당업, 카지노업, 골프장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업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제25조(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준수)

국제관광특구의 개발은 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를 건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개발총계획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제26조(기업창설승인, 등록)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을 창설, 운영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기업창설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기간안에 기업등록과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하부구조건설승인)

국제관광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승인은 국제관광특구지도기판이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 같은 하부구조건설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28조(지사, 대리점, 출장소의 설립)

국제관광특구에는 지사, 대리점, 출장소 같은것을 내올수 있다. 이 경우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돈자리의 개설)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은행 또는 다른 나라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리용할수 있다.

제30조(외화유가증권의 거래)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외화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31조(보험가입)

기업과 개인은 국제관광특구안에 설립된 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수 있다.

제32조(버림물의 처리)

기업은 현대적인 정화장, 침전지, 오물처리장 같은 환경보호시설과 위생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관광과 환경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정화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33조(로력채용)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은 공화국의 로력과 다른 나라 또는 남측 및 해외동포로력을 채용할수 있다.

제34조(류통화폐)

국제관광특구에서 류통화폐는 전환성의화로 한다.

전환성의화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국제관광특구지도기관이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35조(외화의 반출입과 송금, 재산의 반출)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얻은 리윤과 소득금을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다른 나라에서 국제관광특구에 들어왔던 재산과 국제관광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경영기간이 끝나면 공화국령역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36조(세금)

국제관광특구에서 기업과 개인은 해당 법규에 정해진 세금을 물어야 한다.

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발전소건설 같은 특별장려부문기업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

제37조(물자의 반출입)

국제관광특구에서는 정해진 금지품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한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다.

제38조(관세면제 및 부과대상)

국제관광특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기업경영에 필요한 물자,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해진 규모

의 사무용품, 생활용품에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세면제대상의 물자를 국제관광특구밖에 팔거나 국가에서 제한하는 물자를 국제관광특구안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39조(인원, 수송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국제관광특구관리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제관광특구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정된 비행장을 통하여 국제관광특구로 출입할 경우에는 비행장통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40조(제재)

이 법을 어겨 국제관광특구의 관리운영과 관광사업에 지장을 주었거나 기업, 개인에게 피해를 준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시키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공화국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1조(분쟁해결)

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절차로 해결하거나 공화국의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

주체82(1993)년 1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0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1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83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7호로 수정보충

제1장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기본

제1조(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라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적인 중계수송, 무역 및 투자, 금융, 관광, 봉사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위)

라선경제무역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제3조(산업구의 건설)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 첨단기술산업, 국제물류업, 장비제조업, 1차가공공업, 경공업, 봉사업, 현대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산업구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제4조(투자당사자)

경제무역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우리 나라 령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수 있다.

제5조(경제활동조건보장의 원칙)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회사,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토지이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투자자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무역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는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투자자의 재산과 리익, 권리보호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자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자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해당 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

제8조(경제무역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경제무역지대에서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과 라선시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9조(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

경제무역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적용법규)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경제무역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무역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무역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제11조(개발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2.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리용
3. 경제무역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4. 생산과 봉사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
5.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6. 사회공공의 리익보장
7.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제12조(개발계획과 그 변경)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에는 개발총계획, 지구개발계획, 세부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13조(경제무역지대의 개발방식)

경제무역지대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기업이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 기업에게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과 관리, 경영권을 특별히 허가해주어 개발하는 방식, 개발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방식 같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개발할수 있다.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할수도 있다.

제14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기업의 위임, 개발사업권승인증서의 발급신청은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5조(토지종합개발경영과 관련한 토지임대차계약)

토지종합개발경영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식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16조(토지임대기간)

경제무역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7조(부동산의 취득과 해당 증서의 발급)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토지리용권, 건물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토지이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제18조(토지이용권과 건물의 양도와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19조(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이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20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안의 공공 건물과 살림집, 부착물 같은것을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21조(개발공사착수시점과 계획적인 개발)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2조(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의 개발리용)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도급생산방식으로 농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장 경제무역지대의 관리

제23조(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3.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5. 국제관례의 참고

제24조(관리위원회의 설립, 지위)

경제무역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내온다.

관리위원회는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

제2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에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6조(관리위원회의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27조(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자기의 관할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설계문건의 보관
7.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의 수립
8.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관할지역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28조(관리위원회의 사무소설치)

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소 같은것을 둘수 있다.

사무소는 관리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사업을 한다.

제29조(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과 산업구와 정해진 지역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0조(라선시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로력보장
3. 이밖에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위임한 사업

제31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무역지대의 발전전략작성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연계
3.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연계
4.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5. 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6. 경제무역지대생산품의 지대밖 국내판매협조

제32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예산작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3조(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협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의 운영)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라선시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의 해당 성원, 주요기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제35조(원산지관리)

경제무역지대에서 원산지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한다.

원산지관리기관은 상품의 원산지관리사업을 경제무역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4장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

제36조(심의, 승인절차의 간소화)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제37조(기업의 창설신청)

투자가는 산업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관리위원회에, 산업구밖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라선시인민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 또는 라선시인민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제39조(지사, 사무소의 설립과 등록)

경제무역지대에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 데 따라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0조(기업의 권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울수 없다.

제41조(기업의 업종 및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42조(계약의 중지와 리행)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지대밖 우리 나라 기업과의 경제거래)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4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들사이의 거래되는 상품과 봉사가격, 경제무역지대안의 기업과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기초식품 같은 중요 대중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로금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기업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재정적보상을 한다.

제45조(무역활동)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 같은 여러가지 형식의 무역활동을 할수 있다.

제46조(특별허가경영권)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특별허가대상으로 경영하게 할수 있다.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나누어주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자연부원의 개발허용)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

을 받아 지대의 자연부원을 개발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밖의 자연부원개발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을 통하여 한다.

제48조(경제무역지대상품의 구입)

경제무역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고 지대안의 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제49조(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라선시인민위원회 또는 판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월로임최저기준)

경제무역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라선시인민위원회가 판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수 있다.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52조(기업의 회계)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회계계산과 결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할수 있다.

제5장 관 세

제53조(특혜관세제도의 실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제54조(관세의 면제대상)

관세를 면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에 필요한 물자
2.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수입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3.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오는 물자
4.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5. 통과하는 다른 나라의 화물
6. 다른 나라 정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국제기구가 기증하는 물자
7. 이밖에 따로 정한 물자

제55조(관세면제대상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무관세상점의 상품을 제외하고 관세면제대상으로 들어온 물자를 경제무역지대안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56조(수입원료, 자재와 부분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업이 경제무역지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지 않고 지대 또는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판매할 경우에는 그 상품생산에 쓰인 수입원료, 자재와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시킬수 있다.

제57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무역지대에서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관세면제대상에 속하는 물자를 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해당 세관에 내야 한다.

제58조(관세납부문건의 보관기일)

기업은 관세납부문건, 세관검사문건, 상품송장 같은 문건을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통화 및 금융

제59조(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무역지대에서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조선원에 대한 외화의 환산은 지대외화관리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60조(은행의 설립)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내고 은행업무를 할수 있다.

제61조(기업의 돈자리)

기업은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 령역밖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지대외화관리기관 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2조(자금의 대부)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은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제무역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받을수 있다.

대부받은 조선원과 외화로 교환한 조선원은 중앙은행이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써야 한다.

제63조(보험기구의 설립과 보험가입)

경제무역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64조(유가증권의 거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7장 장려 및 특혜

제65조(소득의 송금, 투자재산의 반출)

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법적인 리윤과 리자, 리익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 같은 소득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무역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66조(수출입의 장려)

경제무역지대의 기업 또는 다른 나라 개인업자는 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계약을 맺고 상품, 봉사, 기술거래를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제67조(기업소득세률)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한다.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68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무역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준다.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제69조(토지리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70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71조(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소득세의 반환)

경제무역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72조(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의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라선시인민위원회는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73조(경영과 관련한 봉사)

경제무역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제량 같은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74조(관광업)

경제무역지대에서는 바다기슭의 출발과 백사장, 섬 같은 독특한 자연풍치, 민속 문화 같은 유리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널리 조직하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75조(편의보장)

경제무역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거주자, 체류자에게는 교육, 문화, 의료, 체육분야의 편리를 제공한다.

제76조(물자의 자유로운 반출입)

경제무역지대에는 물자를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으며 그것을 보관, 가공, 조립, 선별, 포장하여 다른 나라로 내갈수 있다. 그러나 반출입을 금지하는 물자는 들여오거나 내갈수 없다.

제77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무역지대의 개발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78조(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의 출입)

다른 나라 선박과 선원은 경제무역지대의 라진항, 선봉항, 응상항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유무역항출입질서에 따라 나들수 있다.

제79조(외국인의 출입, 체류, 거주)

외국인은 경제무역지대에 출입, 체류, 거주할수 있으며 려권 또는 그것을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정해진 통로로 경제무역지대에 사증없이 나들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무역지대에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8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80조(신소와 그 처리)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라선시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1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82조(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무역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83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무역지대의 관할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경제무역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주체100(2011)년 12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06호로 채택

제1장 경제지대법의 기본

제1조(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은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워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경제지대의 지위와 위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에는 평안북도의 황금평지구와 위화도지구가 속한다.

제3조(경제지대의 개발과 산업구성)

경제지대의 개발은 지구별, 단계별로 한다.

황금평지구는 정보산업, 경공업, 농업, 상업, 관광업을 기본으로 개발하며 위화도지구는 위화도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한다.

제4조(투자당사자)

경제지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법인이나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우리 나라 영역밖에 거주하고있는 조선동포도 이 법에 따라 경제지대에 투자할수 있다.

제5조(경제활동조건의 보장)

투자가는 경제지대에서 회사,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기업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시장진출 같은 분야에서 투자가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투자장려 및 금지, 제한부문)

국가는 경제지대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생활, 환경보호에 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7조(경제지대관리운영의 담당자, 관리위원회사업에 대한 관여금지원칙)

경제지대의 관리운영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지도와 방조밑에 관리위원회가 맡아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관은 관리위원회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제8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

경제지대에서 투자가의 재산과 합법적인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는 법에 따라 보호된다.

국가는 투자가의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사회공공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거나 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게 통지하고 해당한 법적절차를 거치며 차별없이 그 가치를 제때에 충분하고 효과있게 보상하여주도록 한다.

제9조(신변안전과 인권의 보장, 비법구속과 체포금지)

경제지대에서 공민의 신변안전과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구속, 체포하지 않으며 거주장소를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사이에 체결된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적용법규)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 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 세칙, 준칙을 적용한다.

경제지대의 법규가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된 협정, 량해문, 합의서 같은 조약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하며 경제지대밖에 적용하는 법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경제지대법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장 경제지대의 개발

제11조(경제지대의 개발원칙)

경제지대의 개발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지대와 그 주변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자원, 생산요소의 비교우세보장
2. 토지, 자원의 절약과 합리적리용
3. 경제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보호
4. 생산과 봉사의 국제경쟁력제고
5. 무역, 투자 같은 경제활동의 편의보장
6. 사회공공의 리익보장
7.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경제발전의 보장

제12조(경제지대의 개발계획과 그 변경)

경제지대의 개발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한다.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은 해당 개발계획을 승인한 기관이 한다.

제13조(경제지대의 개발방식)

경제지대에서 황금평지구는 개발기업이 전체 면적의 토지를 임대받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위화도지구는 개발당사자들사이에 합의한 방식으로 개발한다.

제14조(개발기업에 대한 승인)

개발기업에 대한 승인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이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개발기업에게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발기업의 위임, 개발사업권승인증서의 발급신청은 관리위원회가 한다.

제15조(토지임대차계약)

개발사업권승인증서를 받은 개발기업은 국토관리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토지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 면적과 구획, 용도,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지불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토관리기관은 토지임대료를 지불한 개발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하여 준다.

제16조(토지임대기간)

경제지대에서 토지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게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까지로 한다.

지대안의 기업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7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철거, 이설을 맡은 기관, 기업소는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개발지역안의 공공건물과 살림집, 부착물 같은것을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제18조(개발공사의 착수시점)

개발기업은 개발구역안의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 이설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9조(하부구조시설 및 공공시설건설)

경제지대의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은 개발기업이 하며 그에 대한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을 다른 기업을 인입하여 건설할수 있다.

제20조(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및 임대가격)

개발기업은 개발계획과 하부구조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개발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 임대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양도, 임대가격은 개발기업이 정한다.

제21조(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과 그 등록)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유효기간안에 토지이용권과 건물소유권을 매매, 교환, 증여, 상속의 방법으로 양도하거나 임대, 저당할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변경등록을 하고 토지이용증 또는 건물소유권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장 경제지대의 관리

제22조(경제지대의 관리원칙)

경제지대의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법규의 엄격한 준수와 집행
2. 관리위원회와 기업의 독자성보장
3. 무역과 투자활동에 대한 특혜제공
4. 경제발전의 객관적법칙과 시장원리의 준수
5. 국제관계의 참고

제23조(관리위원회의 설립, 지위)

경제지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대에 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맡아하는 현지관리기관이다.

제24조(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과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에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25조(관리위원회의 책임자)

관리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장이다.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한다.

제26조(관리위원회의 사업내용)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준칙작성
2. 투자환경의 조성과 투자유치
3. 기업의 창설승인과 등록, 영업허가
4. 투자장려,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
5. 대상건설허가와 준공검사
6. 대상건설설계문건의 보관
7. 경제지대의 독자적인 재정관리체계수립
8.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의 등록
9. 위임받은 재산의 관리
10. 기업의 경영활동협조
11.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의 건설, 경영에 대한 감독 및 협조

12. 경제지대의 환경보호와 소방대책
13.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에 대한 협조
14. 관리위원회의 규약작성
15. 이밖에 경제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위임하는 사업

제27조(기업책임자회의의 소집)

관리위원회는 기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기업책임자회의를 소집할수 있다.

기업책임자회의에서는 경제지대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문제를 토의한다.

제28조(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정형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9조(평안북도인민위원회의 사업내용)

평안북도인민위원회는 경제지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법과 규정의 시행세칙작성
2. 경제지대개발과 관리, 기업운영에 필요한 로력보장
3. 이밖에 경제지대의 개발, 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이 위임한 사업

제30조(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의 사업내용)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경제지대의 발전전략작성
2. 경제지대의 개발, 건설과 관련한 국내기관들과의 사업연계
3. 다른 나라 정부들과의 협조 및 연계
4. 기업창설심의기준의 승인
5. 경제지대에 투자할 국내기업의 선정
6. 경제지대생산품의 지대밖 국내판매협조

제31조(사업계획과 통계자료의 제출)

관리위원회는 해마다 사업계획과 경제지대의 통계자료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판과 평안북도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4장 기업의 창설 및 등록, 운영

제32조(기업의 창설신청)

경제지대에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관리위원회에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기업의 등록, 법인자격)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기업은 정해진 기일안에 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은 우리 나라 법인으로 된다.

제34조(기업의 권리)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규약에 따라 경영 및 관리질서와 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 세울 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 지불형식, 생산물의 가격, 리윤의 분배방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은 할수 없으며 법규에 정해지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지을수 없다.

제35조(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로력의 채용)

기업은 우리 나라의 로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로력을 채용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월로임최저기준)

경제지대의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월로임최저기준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업과의 거래)

기업은 계약을 맺고 경제지대밖의 우리 나라 영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원료, 자재,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수 있다.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39조(상품, 봉사의 가격)

경제지대에서 기업들사이에 거래되는 상품과 봉사가격, 경제지대안의 기업과 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식량, 기초식품 같은 중요 대중필수품의 가격과 공공봉사료금은 평안북도인민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기업에 생긴 손해에 대한 재정적보상을 한다.

제40조(기업의 돈자리)

기업은 경제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우리 나라 영역밖의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두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제지대에 은행 또는 은행지점을 설립하는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보험가입과 보험기구의 설립)

경제지대에서 기업과 개인은 우리 나라 영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며 의무보험은 정해진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경제지대에서 투자가는 보험회사들,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지사, 사무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제42조(기업의 회계)

경제지대에서는 기업의 회계계산과 결산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하도록 한다.

제43조(기업의 세금납부의무와 기업소득세률)

경제지대에서 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특별히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한다.

제44조(지사,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경제지대에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사무소는 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세무등록, 세관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장 경제활동조건의 보장

제45조(심의, 승인절차의 간소화)

경제지대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처리방법으로 경제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제46조(류통화폐와 결제화폐)

경제지대에서는 정해진 화폐를 류통시킨다.

류통화폐와 결제화폐는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폐로 한다.

경제지대에서 외화교환, 환률과 관련한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외화, 리윤, 재산의 반출입)

경제지대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으며 합법적인 리윤과 기타 소득을 제한없이 경제지대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투자가는 경제지대에 들어왔던 재산과 지대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한없이 경제지대밖으로 내갈수 있다.

제48조(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제지대에서 지적재산권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관리위원회는 경제지대에서 지적재산권의 등록, 리용, 보호와 관련한 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49조(원산지관리)

경제지대에서 원산지관리사업은 원산지관리기관이 한다.

원산지관리기관은 상품의 원산지관리사업을 경제지대법규와 국제관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50조(특별허가경영권)

경제지대에서는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하여 특별허가대상으로 경영하게 할수 있다.

특별허가경영권을 가진 기업이 그것을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거나 나누어주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경제지대상품의 구입)

경제지대밖의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맺고 경제지대의 기업이 생산하였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수 있다.

제52조(계약의 중지와 리행)

기업은 계약을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며 계약을 성실하게 리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경영과 관련한 봉사)

경제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은행, 보험, 회계, 법률, 계량 같은 경영과 관련한 봉사를 할수 있다.

제54조(광고사업과 야외광고물의 설치승인)

경제지대에서는 규정에 따라 광고업과 광고를 할수 있다.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55조(건설기준과 기술규범)

경제지대에서의 건설설계와 시공에는 선진적인 다른 나라의 설계기준, 시공기술 기준, 기술규범을 적용할수 있다.

제56조(관광업)

경제지대에서는 자연풍치, 민속문화 같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제관광을 발전 시키도록 한다.

투자가는 규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 관광업을 할수 있다.

제57조(통신수단의 리용)

경제지대에서는 우편, 전화, 팩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58조(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통행검사, 세관, 검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지대의 개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 운수수단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59조(유가증권거래)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 유가증권을 거래할수 있다.

제6장 장려 및 특혜

제60조(투자방식)

투자가는 경제지대에 직접투자나 간접투자 같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할수 있다.

제61조(수출입의 장려)

기업은 경제지대안이나 지대밖의 기업과 제약을 맺고 상품거래, 기술무역, 봉사무역을 할수 있으며 수출입대리업무도 할수 있다.

제62조(기업소득세의 감면)

경제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여준다.

기업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기간, 감세률과 감면기간의 계산시점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다.

제63조(토지비용과 관련한 특혜)

경제지대에서 기업용토지는 실지수요에 따라 먼저 제공되며 토지의 사용분야와 용도에 따라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방법에서 서로 다른 특혜를 준다.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64조(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반환)

경제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

제65조(개발기업에 대한 특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66조(특별허가대상경영자에 대한 특혜)

관리위원회는 특별허가대상의 경영자에게 특혜를 주어 그가 합리적인 리윤을 얻도록 한다.

제67조(경제지대의 출입)

경제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러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경제지대로 출입하는 질서, 경제지대에서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68조(특혜관세제도와 관세면제)

경제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지대에 들어오는 물자, 기업의 생

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자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9조(물자의 반출입신고제)

경제지대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반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70조(교육, 문화, 의료, 체육 등의 편리제공)

경제지대에서는 거주자, 체류자에게 교육, 문화, 의료, 체육 같은 분야의 편리를 보장한다.

제7장 신소 및 분쟁해결

제71조(신소와 그 처리)

기업 또는 개인은 관리위원회,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2조(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은 분쟁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안은 분쟁당사자들이 수표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제73조(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합의에 따라 경제지대에 설립된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수 있다.

중재는 해당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른다.

제74조(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들은 경제지대의 관할재판소 또는 경제지대에 설치된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경제지대에서의 행정소송절차는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전

낸 곳 법률출판사
인쇄소 조선출판물수출입사 인쇄소
인쇄 주체101(2012)년 7월 20일
발행 주체101(2012)년 7월 30일

7-25117